

발간등록번호

11-1101000-000052-13

2012

정부업무평가 백서



국무총리실
Prime Minister's Office

2012 정부업무평가 백서



지난 5년간 정부업무평가와 성과관리에 쏟은 노력과 생생한 현장 경험을 담았습니다

정부업무평가는 정책이 제대로 기획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또 당초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고 있는지를 살피고 따짐으로써, 국정 운영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담보하고 정책 품질의 개선을 유도하는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이는 정부나 공공기관의 정책 사이클이 지속적으로 선순환이 되도록 숨을 불어넣는 국정운영의 핵심과정입니다.

때문에 정부는 1961년 심사분석제도를 도입한 이래 지난 50년 간 보다 적실성 있는 평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마침내 2006년 우리 여건에 맞는 평가 틀을 만들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이를 법제화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평가업무와 성과관리를 일원화하여 정부업무 평가가 국정운영의 종합적 관리도구로서, 또 각 부처 및 소속공무원들에 대한 성과관리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정부업무평가는 이와 같은 새로운 평가 시스템을 정책현장에 뿌리내리는 과정, 즉 새 옷을 우리 몸에 맞추는 과정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정부는 자체평가의 강화 및 평가와 성과관리의 연계라는 큰 방향을 유지하면서도 미진한 부분이 있을 때마다 이를 보완하고 개선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서열화를 원칙적으로 폐기하고 국정운영의 책임성과 즉응성을 높이기 위해 현안 정책 평가를 강화한 것 등이 그 예입니다.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을 활성화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이제 우리나라 정부업무평가제도는 선진국과 비교해도 결코 손색없는 수준에 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자에는 인도네시아, 가나, 알제리 등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우리의 정부업무평가와 성과관리 제도를 벤치마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5년간 정부업무평가와 성과관리에 쏟은 노력과 생생한 현장 경험을 담아 백서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백서가 국민 여러분께 그동안 정부가 보다 나은 성과 창출을 위해 기울여온 노력을 소상히 알리는 기회가 되고, 공직자들에게는 업무의 소중한 지침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정부업무 평가와 성과관리 제도를 이해하고 학문적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는데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2년 12월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장

김희성



정부업무평가 50년은 우리 국정운영능력 향상의 50년이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정부업무평가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과 활동을 하였습니다.

정부업무평가제도는 1961년의 심사분석제도를 출발점으로 하여 50년의 역사를 거쳐 오는 동안 많은 경험과 변화를 통해 발전적으로 진화해왔으며, 국정운영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결과 정부업무평가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를 확보하였으며, 국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1기, 2기 및 3기를 거쳐 오는 동안 총 93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가 기관장 책임하에 잘 이루지고, 그 결과 자체평가역량이 제고되도록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별 핵심과제의 추진 성과와 정책관리역량, 정책 및 민원만족도 등에 대한 특정평가를 통해 국무총리의 통합적 국정관리에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특정평가의 경우 200여명에 이르는 민간전문가들을 활용하여 평가보고서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였으며, 중앙행정기관에 평가보고서를 환류시킴으로써 정책개선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평가와 공공기관 평가에 대해서는 담당기관에서 수립한 평가계획과 평가실시 후 제출된 평가결과를 심의 및 의결하였으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평가가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정부업무평가는 평가의 기획에서부터 평가의 수행 및 점검, 그리고 평가결과 의 환류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순환적으로 이뤄질 때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부업무평가 백서』에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정부업무평가 활동과 성과를 중심으로 담았습니다.

아무쪼록 「정부업무평가 백서」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들 뿐 아니라, 정부업무평가에 관심이 있는 학계 및 연구기관, 나아가 국민에게 귀중한 자료와 정보로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정부업무평가의 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정부업무평가위원들과 정책분석평가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12월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장

정윤수



더 나은 정책, 더 나은 만족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정부업무평가를 통해
보다 나은 정책과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1년 정부업무평가 보고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회의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현장점검

혁신적인 정책, 대한민국의 미래





정부업무평가 연찬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현장점검과 각종 오리엔테이션 및 연찬회를 개최하여 정책개선사항을 연구하고, 정부업무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정부업무평가단 오리엔테이션



정부업무평가 워크숍



학술대회 참석_한국정책학회 및 한국정책분석 평가학회



국제학술대회 참석_러시아





행정의 효율성, 책임성 담보

정부업무평가는 행정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등
국정운영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부업무평가위원 위촉식



총리님 환담

CONTENTS

제1장 정부업무평가개요

제1절 정부업무평가체계

1. 기본개념	004
2. 정부업무평가의 목적 및 기본원칙	005
3. 정부업무평가 추진체계	007
4. 정부업무평가 종류 및 절차	009
5. 정부업무평가결과의 공개 및 활용	014

제2절 정부업무평가의 연혁: 정부업무평가 50년사

1. 개요	016
2. 기획조정실의 심사분석제도: 1961.9 ~ 1981.10	020
3.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제도: 1981.11 ~ 1994.12	021
4. 행정조정실의 정책평가제도: 1990.4 ~ 1994.12	022
5. 행정조정실의 심사평가제도: 1994.12 ~ 1998.2	024
6. 국무조정실의 기관평가: 1998.2 ~ 2006.3	025
7. 통합 정부업무평가: 2006.4 ~ 현재	027
8. 종합분석	029

제2장 정부업무평가 운영 실적

제1절 중앙행정기관 평가

1. 자체평가	036
2. 특정평가	053
3. 정책현안과제 분석	139

제2절 지방자치단체 평가

1. 종합정리	205
2. 평가내용 및 결과	214

제3절 공공기관 평가

1. 종합정리	226
2. 연도별 평가결과	232

CONTENTS

제3장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 실적

제1절 정부업무 성과관리 체계

1. 기본개념	276
2. 정부업무 성과관리의 목적 및 기본원칙	277
3. 정부업무 성과관리 추진체계	279
4.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성과	282

제2절 정부업무 성과관리 연도별 주요내용

1. 2008년	283
2. 2009년	289
3. 2010년	294
4. 2011년	300
5. 2012년	304

제4장 향후 발전방향

제1절 정부업무 평가 발전방향

1. 중앙행정기관 평가	310
2. 지방자치단체 평가	311
3. 공공기관 평가	313

제2절 정부업무 성과관리 발전방향	316
--------------------	-----

특별기고

정부업무평가제도 운영성과 허만형(중앙대 교수)	320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성과와 향후 과제 정윤수(명지대 교수, 제4기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장)	330

부록

1-1 정부업무평가기본법	340
1-2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시행령	354
2-1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362
2-2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개최 일지(2008년~2012년)	364
3 전자통합평가시스템 구축·활용	388

특정평가 결과 보고서

2008년 특정평가 결과 보고서	398
2009년 특정평가 결과 보고서	414
2010년 특정평가 결과 보고서	454
2011년 특정평가 결과 보고서	492
2012년 특정평가 결과 보고서	540

표 목 차

제1장	〈표 1-2-1〉 정부업무평가의 연혁: 도입단계	016
	〈표 1-2-2〉 정부업무평가의 연혁: 과도기	017
	〈표 1-2-3〉 정부업무평가의 연혁: 재정비 단계	017
	〈표 1-2-4〉 정부업무평가의 연혁: 발전단계	018
	〈표 1-2-5〉 정부업무 평가제도의 변천 개요	019
	〈표 1-2-6〉 행정조정실의 정책평가 일정	023
	〈표 1-2-7〉 심사분석(경제기획원)과 정책평가(행정조정실)의 기능 비교	024
	〈표 1-2-8〉 국무조정실 심의평가 1심의관실과 심의평가 2심의관실	026
	〈표 1-2-9〉 국무조정실 기관평가의 종류	027
	〈표 1-2-10〉 2008년 이후 정부업무평가의 변화	028
제2장	〈표 2-1-1〉 자체평가부문 변동 현황	037
	〈표 2-1-2〉 2008년 일반재정사업 평가대상	040
	〈표 2-1-3〉 2009년 일반재정사업 평가대상	044
	〈표 2-1-4〉 2009년 행정관리 역량 부문 실태점검 기준	045
	〈표 2-1-5〉 2010년 일반재정사업 평가대상	047
	〈표 2-1-6〉 실태점검 기준	049
	〈표 2-1-7〉 연도별 특정평가 부문 변동 현황	053
	〈표 2-1-8〉 특정평가 부문별 개념	054
	〈표 2-1-9〉 2008년 규제개혁 평가대상기관	055
	〈표 2-1-10〉 2008년 규제개혁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056
	〈표 2-1-11〉 2008년 규제개혁 기관별 평가결과	057
	〈표 2-1-12〉 2008년 정책만족도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058
	〈표 2-1-13〉 2008년 민원만족도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058
	〈표 2-1-14〉 2008년 정책만족도 평가결과	059
	〈표 2-1-15〉 2008년 민원만족도 평가결과	060
	〈표 2-1-16〉 2009년 하반기 핵심과제 평가대상 기관	062
	〈표 2-1-17〉 2009년 상반기 핵심과제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063
	〈표 2-1-18〉 2009년 하반기 핵심과제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063
	〈표 2-1-19〉 2009년 핵심과제 평가결과(부단위 경제분야)	064
	〈표 2-1-20〉 2009년 핵심과제 평가결과(부단위 사회문화분야)	064
	〈표 2-1-21〉 2009년 핵심과제 평가결과(부단위 외교안보·일반행정분야)	065
	〈표 2-1-22〉 2009년 핵심과제 평가결과(청단위 경제분야)	065
	〈표 2-1-23〉 2009년 핵심과제 평가결과(청단위 일반행정 분야)	066

〈표 2-1-24〉 2009년 녹색성장 평가대상 기관	067
〈표 2-1-25〉 2009년 녹색성장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067
〈표 2-1-26〉 2009년 국정관리역량 평가 착안사항(예시)	069
〈표 2-1-27〉 2009년 국정관리역량 기관별 평가결과	070
〈표 2-1-28〉 2009년 정책소통·홍보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071
〈표 2-1-29〉 2009년 정책소통·홍보 기관별 평가결과	073
〈표 2-1-30〉 2009년 규제개혁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074
〈표 2-1-31〉 2009년 규제개혁 기관별 평가결과	075
〈표 2-1-32〉 2009년 정책만족도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076
〈표 2-1-33〉 2009년 민원만족도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076
〈표 2-1-34〉 2009년 정책만족도 평가결과(부단위 경제 분야)	077
〈표 2-1-35〉 2009년 정책만족도 평가결과(부단위 사회문화 분야)	078
〈표 2-1-36〉 2009년 정책만족도 평가결과(부단위 외교안보·일반행정 분야)	078
〈표 2-1-37〉 2009년 정책만족도 평가결과(청단위 경제 분야)	079
〈표 2-1-38〉 2009년 정책만족도 평가결과(청단위 일반행정 분야)	080
〈표 2-1-39〉 2009년 민원만족도 평가결과(부단위)	081
〈표 2-1-40〉 2009년 민원만족도 평가결과(청단위)	081
〈표 2-1-41〉 2010년 핵심과제 평가대상	082
〈표 2-1-42〉 2010년 핵심과제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083
〈표 2-1-43〉 2010년 핵심과제 기관별 평가결과	084
〈표 2-1-44〉 2010년 일자리 창출 과제 평가대상기관	085
〈표 2-1-45〉 2010년 일자리 창출 과제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085
〈표 2-1-46〉 2010년 일자리 창출 과제 기관별 평가결과	086
〈표 2-1-47〉 2010년 녹색성장 평가대상 기관	087
〈표 2-1-48〉 2010년 녹색성장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087
〈표 2-1-49〉 2010년 국정관리역량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089
〈표 2-1-50〉 2010년 국정관리역량 기관별 평가결과	090
〈표 2-1-51〉 2010년 정책소통·홍보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091
〈표 2-1-52〉 2010년 정책소통·홍보 기관별 평가결과	092
〈표 2-1-53〉 2010년 규제개혁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093
〈표 2-1-54〉 2010년 규제개혁 기관별 평가결과	094
〈표 2-1-55〉 2010년 정책만족도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095
〈표 2-1-56〉 2010년 민원행정서비스만족도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096
〈표 2-1-57〉 2010년 정책만족도 평가결과(부단위)	096

표 목 차

〈표 2-1-58〉 2010년 정책만족도 평가결과(청단위)	097
〈표 2-1-59〉 2010년 민원만족도 평가결과(부단위)	097
〈표 2-1-60〉 2010년 민원만족도 평가결과(청단위)	097
〈표 2-1-61〉 2011년 핵심과제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100
〈표 2-1-62〉 2011년 핵심 과제 기관별 평가결과	102
〈표 2-1-63〉 2011년 일자리 창출 과제 평가대상기관	103
〈표 2-1-64〉 2011년 일자리 창출 과제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103
〈표 2-1-65〉 2011년 일자리 창출 과제 기관별 평가결과	104
〈표 2-1-66〉 2011년 일자리 창출 과제 평가대상기관	104
〈표 2-1-67〉 2011년 서민생활안정과제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105
〈표 2-1-68〉 2011년 서민생활 안정 과제 기관별 평가결과	106
〈표 2-1-59〉 2011년 녹색성장 과제 평가대상 기관	106
〈표 2-1-60〉 2011년 녹색성장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107
〈표 2-1-61〉 2011년 정책관리역량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109
〈표 2-1-62〉 2011년 정책관리역량 기관별 평가결과	110
〈표 2-1-63〉 2011년 정책홍보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111
〈표 2-1-64〉 2011년 정책홍보 기관별 평가결과	112
〈표 2-1-65〉 2010년 일자리 창출 과제 평가대상기관	113
〈표 2-1-66〉 2011년 규제개혁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113
〈표 2-1-67〉 2011년 규제개혁 기관별 평가결과	114
〈표 2-1-68〉 2011년 정책만족도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115
〈표 2-1-69〉 2011년 민원 만족도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116
〈표 2-1-70〉 2011년 정책만족도 평가결과(부단위)	116
〈표 2-1-71〉 2011년 정책만족도 평가결과(청단위)	117
〈표 2-1-72〉 2011년 정책만족도 평가결과(부단위)	117
〈표 2-1-73〉 2011년 정책만족도 평가결과(청단위)	117
〈표 2-1-74〉 2012년 핵심과제 상반기 세부평가지표	120
〈표 2-1-75〉 2012년 핵심과제 하반기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121
〈표 2-1-76〉 2012년 핵심과제 기관별 평가결과	123
〈표 2-1-77〉 2012년 일자리 과제 평가대상기관	124
〈표 2-1-78〉 2012년 일자리 과제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124
〈표 2-1-79〉 2012년 일자리 과제 상반기 과제별 평가결과	125
〈표 2-1-80〉 2012년 일자리과제 기관별 평가결과	126
〈표 2-1-81〉 2012년 녹색성장 과제 평가대상 기관	127

〈표 2-1-82〉 2012년 녹색성장과제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127
〈표 2-1-83〉 2012년 녹색성장과제 평가등급	128
〈표 2-1-84〉 2012년 녹색성장과제 기관별 평가결과	129
〈표 2-1-85〉 2012년 정책관리역량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130
〈표 2-1-86〉 2012년 정책관리역량 기관별 평가결과	131
〈표 2-1-87〉 2012년 규제개혁 평가대상기관	132
〈표 2-1-88〉 2012년 규제개혁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132
〈표 2-1-89〉 2012년 규제개혁 기관별 평가결과	133
〈표 2-1-90〉 2012년 정책홍보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134
〈표 2-1-91〉 2012년 정책홍보 기관별 평가결과	135
〈표 2-1-92〉 2012년 정책만족도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136
〈표 2-1-93〉 2012년 민원 만족도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137
〈표 2-1-94〉 2012년 정책만족도 평가결과	137
〈표 2-1-95〉 2012년 중앙행정기관 민원만족도	138
〈표 2-2-1〉 지방자치단체 평가종류	206
〈표 2-2-2〉 지방자치단체 평가 현황(2008년 2월)	207
〈표 2-2-3〉 개별평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예시)	208
〈표 2-2-4〉 합동평가 실시계획 포함 내용	208
〈표 2-2-5〉 합동평가 흐름도	209
〈표 2-2-6〉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계획 포함 내용	210
〈표 2-2-7〉 VPS 온라인 평가체계 구성도	212
〈표 2-2-8〉 합동 평가업무 운영체계	213
〈표 2-2-9〉 예산절감 및 업무부담 완화(2008년 전후 비교 추산치)	213
〈표 2-2-10〉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시현황(2001년이후)	214
〈표 2-2-11〉 평가방법 흐름도	220
〈표 2-3-1〉 개별 법률에 의한 평가대상 공공기관(2012년 기준)	227
〈표 2-3-2〉 개별 법률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평가절차	228
〈표 2-3-3〉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공공기관 평가절차	232
〈표 2-3-4〉 2008년도 공기업 기관별 평가결과	234
〈표 2-3-5〉 2008년도 준정부기관 기관별 평가결과	235
〈표 2-3-6〉 2008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평가결과	239
〈표 2-3-7〉 2008년도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소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평가결과	241
〈표 2-3-8〉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평가결과	244
〈표 2-3-9〉 2009년도 공기업 기관별 평가등급	245

표 목 차

〈표 2-3-10〉 2009년도 준정부기관 기관별 평가결과	246
〈표 2-3-11〉 2009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평가결과	249
〈표 2-3-12〉 2009년도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결과	250
〈표 2-3-13〉 2009년도 지식경제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급표	250
〈표 2-3-14〉 2009년도 지식경제부 소관 연구회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결과	250
〈표 2-3-15〉 2009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평가대상 연구기관	252
〈표 2-3-16〉 2009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결과	253
〈표 2-3-17〉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평가결과	255
〈표 2-3-18〉 2010년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평가결과	256
〈표 2-3-19〉 2010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평가결과	260
〈표 2-3-20〉 2010년도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결과	260
〈표 2-3-21〉 2010년도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결과	261
〈표 2-3-22〉 2010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평가결과	263
〈표 2-3-23〉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평가결과	265
〈표 2-3-24〉 2011년도 기금 자산운영평가 사업별 평가점수 평균	267
〈표 2-3-25〉 2011년도 기금 자산운영평가 사업별 평가점수 평균	267
〈표 2-3-26〉 2011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결과	268
〈표 2-3-27〉 2011년도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결과	269
〈표 2-3-28〉 2011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결과	271

제3장

〈표 3-1-1〉 정부업무 성과관리체계도	280
〈표 3-1-2〉 정부업무 성과관리 추진체계도	280
〈표 3-2-1〉 2008년 성과관리계획 수립 관련 주요일정	284
〈표 3-2-2〉 2008년 성과관리계획 수립 현황	285
〈표 3-2-3〉 2008년 기관평균 관리과제 및 성과지표 현황	285
〈표 3-2-4〉 2007년 대비 조정 내역	286
〈표 3-2-5〉 2008년 성과관리 운영실태 점검항목 및 배점	287
〈표 3-2-6〉 2008년 각 부처 성과관리 수준 현황	288
〈표 3-2-7〉 2009년 성과관리계획 수립 관련 가이드라인	290
〈표 3-2-8〉 2009년 성과관리계획 수립 관련 주요일정	290
〈표 3-2-9〉 2009년 성과관리계획 수립 현황	291
〈표 3-2-10〉 2008·2009년 연도별 계획 현황 비교	291
〈표 3-2-11〉 2009년 성과관리 운영실태 점검항목 및 배점	292
〈표 3-2-12〉 2009년 각 부처 성과관리 수준 현황(39개 기관)	293

〈표3-2-13〉 2010년 성과관리계획 수립 관련 주요일정	296
〈표3-2-14〉 2010년 성과관리계획 수립 현황	296
〈표3-2-15〉 2009·2010년 연도별 계획 현황 비교	297
〈표3-2-16〉 2010년 성과관리 실태점검 점검항목 및 배점	297
〈표3-2-17〉 2010년 각 부처 성과관리 수준 현황	299
〈표3-2-18〉 2011년 성과관리계획 수립 관련 주요일정	301
〈표3-2-19〉 2011년 성과관리계획 수립 현황	301
〈표3-2-20〉 2010·2011년 연도별 계획 현황 비교	302
〈표3-2-21〉 2011년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실태점검 점검항목 및 지표	302
〈표3-2-22〉 2011년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실태점검 결과 우수 기관	303
〈표3-2-23〉 2011·2012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상 관리과제 비교	304
〈표3-2-24〉 2012년 성과관리계획 수립 관련 주요일정	305
〈표3-2-25〉 2012년 성과관리계획 총괄 현황	306
〈표3-2-26〉 2011·2012 연도별 계획 현황 비교	306

제1장

정부업무평가개요

‘계획-집행-평가’라는 정책집행과정 중 평가에 해당하는 정부업무평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정에 의해 현재의 통합적 정부업무평가제도가 구축되었다. 지난 50여년의 역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정부업무평가제도는 지대한 발전을 거듭해왔다. 현재 평가제도의 장점들을 유지하고, 지금의 한계와 어려움들은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제1절 정부업무평가 체계

1. 기본개념	004
2. 정부업무평가의 목적 및 기본원칙	005
3. 정부업무평가 추진체계	007
4. 정부업무평가 종류 및 절차	009
5. 정부업무평가 결과의 공개 및 활용	014

제2절 정부업무평가의 연혁: 정부업무평가 50년사

1. 개요	016
2. 기획조정실의 심사분석제도: 1961.9 ~ 1981.10	020
3.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제도: 1981.11 ~ 1994.12	021
4. 행정조정실의 정책평가제도: 1990.4 ~ 1994.12	022
5. 행정조정실의 심사평가제도: 1994.12 ~ 1998.2	024
6. 국무조정실의 기관평가: 1998.2 ~ 2006.3	025
7. 통합 정부업무평가: 2006.4 ~ 현재	027
8. 종합분석	029

제1장 정부업무평가개요

제1절 정부업무평가체계

1. 기본개념

정부업무평가란 정책·사업·업무 등에 관하여 계획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를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업무평가는 ‘정부업무’와 ‘평가’의 합성어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 제1호는 “평가라 함은 일정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동조 제2호는 “정부업무평가는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공공기관에서 행하는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상의 법률상 정의에 따르면, 정부업무평가란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행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업무평가는 계획(plan), 집행(do), 평가(see)의 정책집행과정 중 평가에 해당하는

것이다. 계획은 조직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의 설정,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을 개발하는 활동이고, 집행은 결정된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다. 평가는 일반적으로 집행된 정책이 당초 설정한 목표나 효과를 달성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지 등을 분석하고 평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업무평가는 정책추진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사후적 점검이라는 점에서 감사원 감사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감사가 준수법적 행위로 업무추진의 합법성 및 책무성 확보에 중점을 두는 데 비해, 정부업무평가는 정부 정책의 성과 및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업무평가는 수행방식에 따라 자체평가, 특정평가, 재평가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 등에 대해 일정 절차를 거쳐 스스로 수행하는 평가를 말한다.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법령 및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 등에서 정한 일정범위의 정책 등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통하여 하향식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재평가는 이미 실시된 자체평가의 결과에 대해 자체평가를 수행한 기관 이외의 기관이 별도의 절차를 통해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이미 실시된 자체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한적으로 실시된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을 통해 도입된 성과관리는 정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이들 목표의 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목표실현을 위한 과제의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이 수행하는 정책 및 사업 등의 지속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주기적인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정부업무평가의 목적 및 기본원칙

정부업무평가는 정책품질제고를 유도하여 국민의 정책만족도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통합적 정부업무평가제도를 구축하고, 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함으로써

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평가실시와 관련해서는 ‘자율성, 독립성, 객관성, 전문성, 참여기회 보장’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공정성·수용성을 제고한다.

가. 정부업무평가의 목적

정부업무평가는 통합적인 성과관리체계의 구축 및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해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여 정책 등의 품질을 제고시킴으로써 국민의 만족도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통합적인 성과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해 기존에 개별법을 통해 수행되던 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관, 조직 및 개인에 대한 성과측정 및 보상 등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관이 수행하는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스스로 평가함으로써 자체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나. 정부업무평가의 기본원칙

정부업무평가의 기본원칙으로는 우선 통합적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구축을 들 수 있다. 통합적 정부업무평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정의 주된 취지로서 각 중앙행정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평가에 대해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평가를 실시토록 함으로써 평가의 남설 및 중복 평가를 지양하고 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이 시행하는 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함으로써 개별적인 평가로 인한 평가대상 기관의 부담 및 중복평가로 인한 비효율성 제거를 도모 하고 있다. 통합적 평가의 실시를 위해서는 평가시기를 가급적 일원화하고 평가대상을 조정하는 한편, 평가지표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평가의 실시와 관련된 기본원칙으로는 평가의 자율성, 독립성, 객관성, 전문성, 참여기회 보장 등을 들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시하는 평가는 각 기관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의 객관성,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해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평가대상이 되는 해당 정책의 관련자가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평가의 공정성 및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정부업무평가 추진체계

가. 국무총리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평가의 기본 방침 및 추진방향을 결정한다.

동시에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평가 시행의 주체이다.

정부업무평가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는 정부업무의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한 중장기 계획인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평가의 기본방침 및 추진방향을 결정한다. 또한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을 기초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연도별 시행계획인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평가 대상 기관에 통보함으로써 매년도 평가추진을 위한 실행방안을 마련·시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정평가의 시행 주체이다. 특정평가의 대상·기준·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 등에 반영하고, 국무총리실 및 평가 협조기관 등을 통해 특정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한 자체평가결과에 대해 확인·점검 결과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에 있어 문제가 있어 다시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실시한다.

그 밖에 정부업무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평가대상 기관에 대해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통합적인 평가수행을 위해 전자통합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기관 및 단체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정부와 민간의 위원이 함께 정부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기반 구축을 책임진다.

정부업무평가의 기획·조정·총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정부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기반 구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두고 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 자격의 민간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15인 이내로 구성된다. 정부위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자체평가의 각 부문을 주관하는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의 장관을 위원으로 하고 있으며, 민간위원은 대학,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고 있다. 심의대상이 되는 평가결과 또는 업무에 관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척 또는 회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정부업무평가의 기획·조정·총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중장기 평가기반의 구축·추진에 관한 사항,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정부업무평가제도와 관련된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평가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평가관련 기관 간 협조 및 평가업무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자체평가 및 특정평가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련된 사항 등을 그 심의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 평가총괄관련기관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에 관한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자체평가 결과의 확인 및 점검을 시행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 부문별 총괄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대해 자체평가결과의 확인 및 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자체평가는 주요정책, 재정사업, 행정관리역량 등 3대 부문으로 구분된다. 각 부문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한 자체평가결과의 객관성 및 공정성 등에 대해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확인·점검 시 필요한 경우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평가총괄 관련 기관에 대해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평가총괄 관련기관은 부문별 평가지침 및 평가지표의 작성, 자체평가결과의 확인·점검 및 재평가 실시여부 등 자체평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정부업무평가 종류 및 절차

가. 중앙행정기관 평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는 해당기관이 스스로 실시하는 자체평가와 국무총리가 평가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정책 및 시책 등에 대해 실시하는 특정평가로 크게 구분된다.

1) 자체평가

(1) 평가개요

‘자체평가’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은 평가의 자율성 보장 및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위해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해, 자체평가의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자체평가의 효율적 운영과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자체평가 지표 및 매뉴얼 등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평가총괄관련기관의 협조를 통해 개발·보급하고 있다.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지행계획을 기초로 하여 자체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사업, 업무 등을 스스로 선정한다. 단, 그 기관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필수적 정책,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 자체평가결과와 조직·예산 등 성과관리를 위한 연계가 필요한 정책 등을 포함하여 평가대상을 선정한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의 실시를 위해 평가 담당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자체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원의 2/3 이상을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자체평가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은 평가 또는 각 부처 소관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2) 평가절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마련된 정부업무평가지

행기회에 기초하여 당해 기관의 자체평가 대상 및 구체적인 평가 방법,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체평가결과의 정책·예산·인사 등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을 담은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한다. 자체평가계획은 매년 4월말까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각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계획을 제출받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제출된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다. 계획의 보완 또는 자료의 추가제출이 필요할 경우 이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두어 자체평가 계획의 충실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체평가의 실시는 평가실시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년도에 추진된 정책 및 사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각 기관은 자체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체평가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설명회 개최, 정책추진 현장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등을 실시할 것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는 적극 권장하고 있다.

각 중앙행정기관은 전년도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한 자체평가결과를 매년도 3월 말까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는 자체평가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해 확인·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확인·점검 결과 자체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최종 심의·의결을 통해 각 부처의 자체평가결과는 최종 확정이 된다. 그러나 확인·점검 결과 평가결과의 객관성·공정성에 있어 문제가 있어 다시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하게 된다.

2) 특정평가

(1) 평가개요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국정의 통합적 운영을 위해 실시하는 하향적 평가라는 점에서 자체평가와 구분된다.

특정평가의 대상은 2개 부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주요 현안시책,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부문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는 각 중앙행정기관이 공통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시책으로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부문, 기관 또는 정책 등의 추진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부문으로 그 대상을 구분하고 있다. 그 밖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평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문 또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체적인 평가대상은 매년 초에 수립되는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을 통해 확정·공개된다.

(2) 평가절차

특정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당해연도 특정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특정평가의 대상·방법·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정평가의 시행에 앞서 구체적인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지표 등을 마련하여 이를 평가대상 기관에 통보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평가대상 기관은 특정평가 부문별로 평가실시에 필요한 실적자료 등을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평가 실시를 위해 국무총리는 특정평가를 위하여 특정평가의 대상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평가업무 수행자로 하여금 특정평가 대상기관을 방문하여 평가에 관한 자료를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각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한 정책 등의 국민만족도 조사의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특정평가 각 부문별 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국무총리는 특정평가결과에 대하여 위원회가 의결한 때에는 이를 특정평가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평가결과를 전자통합평가체계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 평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발굴·시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는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평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평가

(1) 평가개요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평가는 합동평가와 개별평가로 나누어 진다. 합동평가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 그 밖에 대통

령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평가이다. 개별평가는 업무의 특성·평가 시기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의미한다.

평가대상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적인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시책,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시책 등이다.

(2) 평가절차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하여 합동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동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평가의 실시는 합동평가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동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하에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별평가의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이 직접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동·개별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지체 없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제출토록 규정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성·공정성의 검증 및 통합적인 평가추진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1) 평가개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소관 사무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대상 기관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모두 포함한다. 평가 대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정책 및 사업 전반이며,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및 업무 등도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2) 평가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지행계획에 기초하여 소관 정책 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자체평가 계획에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당해연도 주요 정책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 자체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자체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기반의 구축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공공기관 평가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는 공공기관의 특수성·전문성을 고려하고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외부의 기관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는 개별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평가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하여 실시하는

공공기관 평가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다.

1) 개별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평가

(1) 평가개요

개별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평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에서 평가 대상 기관을 명시하고 있다. 개별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평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한 공공기관 평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평가절차

공공기관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그 평가

계획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제출된 평가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은 개별 법률 등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평가

(1) 평가개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평가절차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2조 제3항에 의해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공공기관 평가의 경우에도 개별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평가와 동일하게 평가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그 평가계획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제출된 평가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은 개별 법률 등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정부업무평가결과의 공개 및 활용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평가결과는 공개되도록 한다.

또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조직·예산·인사 및 보수체계에 반영한다.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정책의 중단, 축소 등 시정조치를 하거나 자체적인 감사를 진행한다.

가. 평가결과의 공개 및 보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각종 평가결과는 전자통합평가시스템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평가결과는 평가실시 주체가 직접 공개하며,

자체평가의 경우 해당 중앙 행정기관의 장, 특정평가의 경우 국무총리가 공개한다.

평가결과 보고를 위해 국무총리는 각종의 평가결과를 종합한 평가결과보고서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거나, 별도의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한 최종적인 자체평가결과를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정책 책임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나. 평가결과와 예산·인사 등의 연계

정부업무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해 정책개선 및 성과관리 도모를 위해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조직·예산·인사 및 보수체계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특히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 시 반영함으로써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한다. 그리고 정부의 재정운용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평가결과를 예산편성 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평가결과 활용의 실행력을 담보하고 있다.

다.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및 보상

중앙행정기관은 평가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정책의 중단, 축소 등 시정조치를 하거나 자체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반면,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사례로 인정되는 소속부서·기관 및 조직 구성원에 대해서는 포상수여 및 성과급 지급 등 경제적 인센티브 및 인사상의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우수기관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에서 포상금 지급을 통해 정책의 성과제고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2절 정부업무평가의 연혁: 정부업무평가 50년사

1. 개요

정부업무평가제도는 ‘도입, 과도, 재정비, 발전단계’의 4단계 과정을 거쳐 2006년 4월 통합적 제도로 구축되었다.

국내·외 정책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국민의 행정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다양화·복잡화되면서 정부의 정책 및 기능 역시 확대되어 왔다. 이에 제한된 예산과 인력으로 추진되는 정부 정책의 목적과 수단은 적절한지, 시행과정은 효율적인지, 집행 결과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실현되었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정부부문의 경쟁력과 국가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961년 5·16 직후 공공분야에 심사분석제도가 도입·실시된 이래 심사분석, 심사평가, 정책평가, 국정평가 및 기관평가 등 다양한 개념 및 형태로 정부업무평가를 실시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정부업무평가제도는 2006년 4월 통합 정부업무평가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를 크게 4단계(도입, 과도, 재정비, 발전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먼저, 도입단계는 정부업무에 대한 평가라는 개념이 우리 정부에 처음 도입된 시기로 당시 내각수반(現 국무총리) 기획조정실(1961. 9~1981. 10)의 심사분석이라는 업무로 추진되었다.

〈표 1-2-1〉 정부업무평가의 연혁: 도입단계

- 1961년 9월 내각수반 하에 내각기획통제관을 신설하고 최초로 심사분석제도를 도입하여 기획조정실에서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기능 수행
- 매년 정부업무 전반에 관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집행결과에 대하여 분석·평가 실시
- 평가교수단 등을 활용하여 예산사업 중심으로 사업추진 관련 진도분석,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책 중심의 ‘과정평가’ 기능 수행(「정부의 기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947호)
- 동 평가제도는 1981년 제5공화국 출범 후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 시 그 기능을 경제기획원에 이관하고 폐지(1981. 11)

둘째, 과도기 단계로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1981. 11~1994. 12)과 행정조정실의 정책평가(1990. 4~1994. 12)로 이원화되었다.

〈표 1-2-2〉 정부업무평가의 연혁: 과도기

• **경제기획원에 의한 심사분석**

- 1981년 심사분석업무를 경제기획원 심사분석국으로 이관
- 부처업무에 대한 심사분석은 부처 자율로 수행하도록 하고, 기획원은 각 부처의 심사분석결과를 종합·조정하는데 주력
- 사업진도 위주의 분석 및 공기업 등 투자기관의 경영평가에 역점

•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의 정책평가**

- 전 정부적 차원의 국정흐름을 진단하는데 한계를 지닌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제도를 보완하고, 총리의 내각통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행정조정실에 정책평가기능을 신설(「정부 주요 정책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정」, 총리령 제364호, 1990. 4)
- 주요 국정현안과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각 부처가 추진 중인 시책들을 분석·평가하고 정책목표 달성여부를 점검(연 2회 정책평가보고회)
- 평가대상정책의 적합성, 시의성, 정책 추진의 효과성·능률성, 국민만족도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정책평가와 심사분석의 비교**

- 정책평가는 국정전반에 걸친 주요 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해당 부처의 차기 업무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 제고 도모
- 심사분석은 개별 단위사업 및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진도와 부진원인을 분석하여 해당사업의 합리적 추진을 도모

셋째, 재정비 단계로 행정조정실에서 심사평가(1994. 12~1998. 2)를 수행하였다.

〈표 1-2-3〉 정부업무평가의 연혁: 재정비 단계

•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업무와 총리실의 정책평가업무를 통합하여 심사평가기능을 수행(「정부업무의 심사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431호, 1994. 12)**

- 다만,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평가는 경제기획원에서 계속 수행
- 정부시책 및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 정부시책의 책임성 확보를 목적
- 당해 연도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주요시책에 대한 '정기평가'와 국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한 '수시평가'로 구분

넷째,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된 국무조정실에서 심사평가(1998.3~2006.3) 기능을 강화한 발전 단계이다.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심사평가제도를 대폭 개편하여 이른바 '기관평가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0년 12월에는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정부업무평가의 법적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하였으며 다음 해 5월부터 동법에 의한 평가를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표1-2-4〉 정부업무평가의 연혁: 발전단계

• 기관평가제 도입

- 평가기능의 혁신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각 부처의 업무 추진성과와 추진의지 등 기관역량, 그리고 국민의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관평가제'를 도입
- 평가의 전문성·객관성 확보를 위한 '정책평가위원회' 및 '평가전문위원' 구성·운영
-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평가대상 분야별로 평가기준과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평가를 추진하고 평가 환류 기능도 대폭 강화
 - ※ 기관평가제 운영의 기본취지는 공공부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유인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임

•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 제정·운영

- 정부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근거 마련 등을 통해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통합성 도모
- 평가대상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

다섯째,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해 통합 정부업무평가제도를 도입한 현재는 통합단계(2006.4~현재)로 구분할 수 있다.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는 2003년 7월 '국가평가인프라 구축'을 행정개혁 로드맵 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 '국정평가인프라구축기획단'을 중심으로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하였다. 이에 종전의 법을 대체한 「국정평가기본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일 년여 동안의 국회 심의 등을 거쳐 2006년 4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을 제정·시행하게 되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은 그간 개별적·중복적으로 실시되던 각종 평가의 통합실시를 규

정함으로써 평가대상 기관의 부담을 경감하였다. 또한 자체평가 중심의 평가를 통해 자율적 정책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평가결과의 예산, 조직 및 인사관리 등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그간 제기되어온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변천 과정은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2-5〉 정부업무 평가제도의 변천 개요

내용	단계		과도	재정비	발전	통합
	도입					
담당기관	기획조정실	경제기획원	행정조정실	행정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
시기	1961.9~ 1981.10	1981.11~ 1994.12	1990.4~ 1994.12	1994.12~ 1998.2	1998.3~ 2006.3	2006.4~ 현재
내용	5·16직후 1961년 정부 부문에 최초로 심사분석제도를 도입하여 기획조정실에서 정부정책의 평가기능을 수행	1981년에 심사분석 업무를 경제기획원 심사평가국으로 이관	행정조정실에 정책평가기능 신설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경제기획의 심사분석업무와 행정조정실의 정책평가업무를 통합하여 심사평 가기능 수행 - 정부투자기관 평가는 경제기획원 에서 계속 수행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심사평가제도를 대폭 개편하여 「기관평가제도」 도입	참여정부 출범 이후 통합적 정부업무평가 제도 및 성과관리제도 도입 추진
근거	정부의 기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규정 (대통령령 제6143호 1972. 4)	정부의 기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0821호 1982.5)	정부주요 정책 평가및조정예 관한규정 (총리령 제364호 1990.4)	정부업무의심 사평가 및 조정예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4531호 1995.2)	정부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 (법률제6347 호 2001.1.8)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법률제7928 호 2006.4.1)

2. 기획조정실의 심사분석제도: 1961. 9 ~ 1981. 10

기획조정실의 심사평가제도는 5.16직후,

국가·경제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했다.

가. 도입배경

5·16 직후인 1961년 정부부문에 심사분석 제도를 도입,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기능이 「정부조직법」상 최초로 신설되었다. 심사분석 제도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부족한 자원으로 국가·경제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정을 원활히 통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도입하였다. 이때부터 기능이 경제기획원으로 이관될 때 까지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에서 심사분석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추진체계

내각수반 밑에 내각기획 통제관실을 신설(1961.9.4)하여 내각수반의 기획통제에 관한 사무를 보좌하였으며, 각 원·부처의 정책과 기획의 심사·분석·평가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였다. 이후, 제 3공화국 헌법공포(1962.12.26)로 대통령제가 채택됨에 따라 정부조직의 전면적 개편과 함께 내각수반이 국무총리로 개편되면서 내각기획 통제관실이 폐지되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을 신설(1963.12.16)하여, 기본운영계획 조정제도 및 심사분석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기획조정실에 정부정책의 평가기능을 수행하는 업무가 「정부조직법」에 최초로 규정된 것이다. 또한, 기획조정실을 설치하여 국무총리의 기획통제 업무를 보좌하였다.

다. 평가방법

당시 심사분석제도는 매년 정부업무 전반에 대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집행결과에 대하여 분석·평가하는 방식이었다. 또한 1971년부터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평가교수단을 구성, 운영하여 각 부처에 대한 부분적인 통제기능을 수행하였다.

한편 대통령령 제6143호로 「정부의 기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규정」을 제정(1972.4.14)하여 심사분석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3.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제도: 1981.11 ~ 1994.12

원칙적으로 정부활동 전반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심사분석은 1990년부터 행정조정실에서 운영되었다.

가. 도입배경

1981년 11월 정부의 대폭적인 기구개편과정에서 기획조정실이 폐지되고 심사분석업무는 경제기획원으로 이관되어 신설된 심사분석국에서 주관하게 되었다. 신설된 심사분석국에서는 1982년 5월 심사분석 업무의 근거법령인 「정부의 기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규정」을 전문 개정하여 제도 개선을 도모하였다.

나. 추진체계

1984년 「정부 투자기관 관리 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경제기획원 심사분석국의 기능이 일부 조정되면서 1984년 6월에는 심사분석국을 심사평가국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심사평가국에서는 각 부처의 주요업무 전반에 대한 심사분석을 실시하였으며, 1990년부터는 행정조정실에서 각 부처의 핵심시책에 대한 ‘정책평가제도’를 별도로 도입하여 운영하였다.

다. 평가방법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은 그 실시목적 및 시기에 따라 집행관리와 성과분석(사후평가)으로 구분되며 집행관리는 다시 실시목적 및 기법에 따라 점검과 집행 중 평가로 세분되어 운영되었다. 심사분석은 원칙적으로 정부활동 전반을 평가대상으로 하며, 하나의 활동 또는 일련의 상호 연관된 모든 활동이 그 대상이 된다. 즉, 각 부처의 기능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어떠한 시책이나 사업에 대하여도 심사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각 부처의 기능수행을 위한 업무는 시책과 사업으로 구분되며 사업은 다시 건설적 사업과 시책적 사업으로 구분하였다.

심사분석 결과는 「정부의 기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규정」에 의거, 경제기획원장관(지방의 경우 내무부장관)에게 통보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중앙의 경우 예산사항에 대해서는 경제기획원장관이 예산편성 또는 분기별 예산배정에 반

영도록 배치하며, 비 예산사항에 대하여는 국무총리를 통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였다.

대통령의 지시에 의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어 심사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는 심사분석 결과를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한편, 시정을 요구받은 기관장은 지체 없이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경제기획원장관(지방의 경우, 내무부장관)에게 통보하였다.

4. 행정조정실의 정책평가제도: 1990.4 ~ 1994.12

행정조정실에서 '평가지침'을 전달하여, 각 부처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행정조정실에서 이를 종합조정평가하였다.

가. 도입배경

행정조정실의 정책평가제도는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 제도가 전 정부적 차원의 국정흐름을 진단하는데 한계성을 갖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대안제시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제6공화국 중반기를 맞아 주요 정책과제에 대하여 전 정부적 차원에서 점검·평가·조정함으로써 국무총리의 내각통할 기능을 강화하여 대통령에 대한 보좌기능을 착실히 수행하였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국내 정치·사회 여건변화 속에서 정부 주요 정책을 일관성 있고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대정부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데 그 배경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나. 추진체계

정책평가제도의 도입으로, 심사평가는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과 행정조정실의 정책평가로 이원화된 체계 내에서 이루어졌다.

총리령(제364호)으로 「정부 주요 정책 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정」이 공포(1990.4.16)됨에 따라 행정조정실에 평가기능이 신설되어 제2행정조정관실에 정책평가심의관실이 설치되었다. 당시 행정조정실의 정책평가는 각 부처의 자체평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상위평가를 실시하는 종합평가형태를 취하였다. 또한 상위평가도 부처별로 1~2개 특정정책의 추

진상황에 초점을 둔 실적평가중심으로 시행되면서 단기적이고 외형적인 평가 위주로 흐르지 않느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 평가방법

정책평가 시 역점을 둔 주요 평가사항은 업무추진의 능률성 분석, 정책집행의 과정분석, 정책추진의 성과분석, 일반적인 사항 이외의 분야에 대한 검토분석(특기사항) 등이 있었다. 행정조정실에서 주로 평가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2개 부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업무와 관련되는 정부의 주요 정책이었다.

정부 주요 정책은 매년 대통령이 제시하는 국정운영에 대한 주요시책과제와 부처업무보고 등을 중심으로 행정조정실에서 관계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선정한, 실질적 평가가 가능한 구체적 국정운영 주요과제이다.

심사분석제도에 비해, 이 시기의 평가제도는 2개 부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된 업무와 같이 범위가 넓은 정책을 전 정부적 차원에서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평가지침’을 행정조정실에서 각 부처에 시달(정책평가심의관실 주관)하면, 각 부처는 평가지침에 근거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행정조정실에 제출하였고, 행정조정실은 부처 자체평가를 토대로 종합조정평가를 실시했다.

종합조정평가는 부처 자체평가내용 검토를 위하여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점검리스트(세부실천계획 포함)’를 통해 이에 따른 사실 검증에 최대한 집중했다.

정책평가심의관실은 각 평가반에서 평가한 결과를 사항별로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평가조정회의’를 운영(행정조정실장 주재)하였고, 부처별 과제에 대한 ‘평가조정회의’결과를 국무총리에 보고했다.

〈표 1-2-6〉 행정조정실의 정책평가 일정

- 각 부처 자체평가(연 2회) 보고
- 총리실의 종합조정평가(자문회의 활용)
- 상반기 : 국무회의 보고 (7~8월)
- 하반기 : 연말 국무회의 및 대통령 보고 (국정평가에 포함)

이러한 평가결과에 따라 제도보완, 예산의 효율적 활용, 포상제도 반영 등 필요조치를 강구하되 각 부처를 독려·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었다. 또한, 차년도 각 부처 업무계획에도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중·장기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다.

〈표 1-2-7〉 심사분석(경제기획원)과 정책평가(행정조정실)의 기능 비교

1994년 6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제도는 개별적 특정단위사업 및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추진 진도와 부진 원인을 분석하여 해당 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을 도모하였고, 행정조정실에서 주관하는 정책평가의 근본취지는 국정전반에 걸쳐 주요 정책과제의 종합적인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그 개선방향을 각 부처 차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정부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있었다.

양 제도는 대상과제의 선정기준과 평가목적에서 차이점이 있었으나, 정책추진의 합리성이라는 측면에서 상호보완성을 지니고 있었다.

5. 행정조정실의 심사평가제도: 1994.12 ~ 1998.2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업무와 행정조정실의 정책평가업무를 통합했다.

이에 따라 행정조정실에서 심사평가를 종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가. 도입배경

1994년 이전까지의 정책평가는 각 부처의 자체평가를 1차 기초 자료로 하여 행정조정실에서 상위평가를 실시하는 형태를 취하였으며, 부처별로 1~2개 특정정책의 추진상황에 초점을 둔 실적평가중심으로 시행되면서 단기적이고 외형적인 평가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었다. 이에 1994년 12월 23일에는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종래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업무와 행정조정실의 정책평가업무를 심사평가업무로 통합하여 행정조정실의 심사평가제도가 시행되었다.

나. 추진체계

1994년 12월 기구개편으로 통합된 심사평가업무는 행정조정실 제2행정조정관에서 제4행정조정관으로 변경되었으며, 제4행정조정관 밑에 심사평가1심의관과 심사평가2심의관의 2개 심의관으로 확대되었다.

제4행정조정관은 내각 사정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나, 1994년 12월 조직개편으로 정부심사평가업무도 담당하게 된 것이다.

다. 평가방법

정기 심사평가는 업무추진성과에 대한 집중분석 실시 시 전체적인 사업목적이나 취지 등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내용의 달성 여부와 당초 기대하였던 정책효과 달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평가하였다. 수시 심사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중 국무총리가 국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였다. 특히, 이는 현장중심의 구체적 사례분석을 실시하는데 있어 현지 확인·점검을 통한 문제해결 위주의 심사평가실시와 신속한 대응방안을 강구하였다. 정기 심사평가 실시결과는 반기별로 국무회의에 보고하였으며 수시 심사평가결과에 대해서도 수시로 차관회의에 상정하는 등 적기에 사무조치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다. 특히 심사평가결과 및 시정조치이행상황에 대해서는 '정책평가 보고대회' 등의 형식으로 별도로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한편 행정조정실의 심사평가제도는 정부업무 추진현황 및 집행성과를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집행과정 및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하였다. 심사평가결과 예산반영이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원 등 관계부처에 통보하여 예산편성 및 배정 시 반영하였다. 평가결과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부처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관리하고, 조치 미흡사항은 관계부처회의, 차관회의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 강구하는 한편, 시정조치 이행상황을 안건화하여 반기별로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등 평가결과의 환류를 강화하였다.

6. 국무조정실의 기관평가: 1998.2 ~ 2006.3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심사평가제도를 대폭 개편하여 '기관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행정조정실이 국무조정실로 격상되면서 관련업무의 중요도도 높아졌다.

가. 도입배경

1997년 말부터 정부업무평가제도는 세계화추진위원회의 대정부 건의를 비롯하여 '국민의 정부' 출범을 위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종래의 정책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

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공공부문이 공익·공평성을 견지하는 가운데 행정의 효과성과 능률성을 한층 높이고 책무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처 유인체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제기되고, 이를 수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평가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98년 2월 25일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고 조정·평가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조정실이 장관급인 ‘국무조정실’로 격상·확대 개편되면서, ‘기관평가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제4행정조정관도 심사평가조정관으로 변경되어 심사평가 업무가 강조되었다.

기관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의 주요업무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이를 추진하는 행정체제의 추진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평가하는 것으로 종래의 「정부업무의 심사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정」을 전문개정(대통령령 제15774호, 1998.4.15)하여 제5조에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기관평가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과거의 실적평가 중심에서 평가기능에 경쟁요인을 도입하여 각 기관의 경영능력을 중시하는 평가체제로 전환하였다.

나. 추진체계

1) 국무조정실

기관평가의 총괄적 주관은 국무조정실이 담당하며, 심사평가조정관 밑에 심사평가1심의관실과 심사평가2심의관실을 두었다.

〈표 1-2-8〉 국무조정실 심의평가 1심의관실과 심의평가 2심의관실

- 심사평가1심의관실은 정부업무에 대한 평가계획 및 제도발전, 평가기준·지표·평가환류 등 평가제도 관련업무와 경제분야에 대한 심사평가를 담당
- 심사평가2심의관실은 지방자치단체평가와 정부업무 중 사회문화 분야(교육, 복지, 환경, 문화 등), 일반행정분야(통일, 외교, 국방, 행정, 법무 등)에 대한 심사평가를 담당

2) 정책평가위원회

정부업무 평가의 전문성, 객관성을 제고하고 평가제도 발전을 위하여 1998년 4월 17일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의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정책평가위원회를 구성, 국무총리 자문기구로 출범하였으며, 2001년 5월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 시행 이후 심의기구로 변화되었다.

다. 평가방법

정부업무 등에 관한 평가의 종류에는 중앙행정기관 평가와 지방자치단체 평가가 있다.

〈표 1-2-9〉 국무조정실 기관평가의 종류

- 중앙행정기관 평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 대한 자체평가 및 소속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
 - 국무총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주요 정책과제 평가, 기관역량 평가 및 국민만족도 조사 등 기관평가 실시
 - 또한 국무총리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업무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과제 평가를 실시
- 지방자치단체 평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기관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사무, 국고보조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성과 단계별로 과제를 평가할 수 있는 공통평가기준을 설정(6개 평가기준, 10개 평가착안사항)하였으며, 모든 주요 정책과제에 공통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 실시하였다.

각 부처도 공통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되, 필요 시 별도의 평가착안사항에 대해 평가하였다.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미흡한 사항은 개선조치토록 하여 사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개선조치 사항의 이행상황은 상·하반기 정기평가 시 점검하였다.

7. 통합 정부업무평가(2006.4 ~ 현재)

‘참여정부’ 출범 이후 통합적 정부업무평가제도 및 성과관리 제도를 도입 추진했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국무총리실을 주축으로하여 통합적 평가활동을 진행하였다.

가. 도입배경

참여정부 출범 이후 종전의 평가에 대해 개별·중복적인 평가로 인한 평가업무의 과중,

자체평가제도의 형식적 운영, 평가결과의 활용 미흡 그리고 평가와 성과관리의 연계 미흡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획기적 개편을 추진하였다. 이에 종전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을 대체하는 「국정평가 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 2006년 3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06년 4월부터 통합 정부업무평가제도를 도입·시행하게 되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의 제정 이후에도 세부적으로는 적지 않은 변화들이 있었으며, 2008년 이후에 연도별로 변화된 중요한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표 1-2-10〉 2008년 이후 정부업무평가의 변화

〈2008년〉	- 서열화 원칙의 폐기 및 제한적 적용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실무위원회 폐지 및 분과위원회 구성
〈2009년〉	- 특정평가 부문 확대 (녹생성장 과제 등 신설) - 수시현안평가의 강화 - 자체평가의 자율성 확대 및 부담 경감
〈2010년〉	- 특정평가 부문 확대 (일자리 창출 과제 신설) - 정책과제별 중요도와 난이도의 고려
〈2011년〉	- 특정평가 부문 확대 (서민생활안정 과제 신설) - 자체평가의 자율성 강화 (주요 정책 및 재정사업의 통합) - 전자통합평가시스템의 활성화 (e-IPSES)
〈2012년〉	- 특정평가 부문 정비 - 자체평가의 강화 (행정관리역량평가 등) - 평가대상 기관 확대 (국가과학기술 위원회, 원자력 안전위원회 등)

나. 추진체계

1)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종전의 정책평가위원회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로 개편하였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정부위원(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총리실장)과 민간위원을 포함하도록 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평가결과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07년까지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었으나, 2008년부터는 이를 폐지하고,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조정하였다.

2) 국무총리실

국무총리실 정책분석평가실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사무처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평가 수행 및 심의·의결 기능을 지원할 수 있고,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총괄 기능을 담당한다. 2010년 이전에는 심사평가조정관실이 담당하였으나, 직제개편으로 정책분석평가실로 개편되었다.

다. 평가방법

정부업무평가의 종류는 크게 중앙행정기관평가, 지방자치단체평가, 공공기관 평가 등으로 나누어 진다. 평가는 각 부문별 특성에 맞는 정책과정별(계획-집행-산출-결과-활용 등)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평가결과는 공개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는 조직·예산·인사 등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2008년 이후의 자세한 평가 방법 및 연도별 평가결과는 제2장, 제3장에 기술)

8. 종합분석

50여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평가제도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긴박한 경제현실의 타개를 위해 시작된 효율적 도구,
현재 복잡하고 다양한 국정운영에서 필수적인 관리도구로 확대된 것이다.

가. 평가제도 변천 개요

1961년에 기획조정실에 의하여 시작된 심사평가는 국무총리실 정책분석평가실이 주관하는 정부업무평가에 이르기까지 50여년에 걸쳐 발전해 왔다. 이 기간에 걸쳐 이루어져 온 평가제도의 변화는 도입기, 과도기, 재정비기, 발전기, 통합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발전을 국가운영의 제1목적으로 삼던 시기인 1960년대에 심사분석제도는 부족한

자원으로 경제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심사분석은 각 부처의 예산사업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었으며,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 국가발전을 위한 경제계획과의 연계성이 강조되었다. 현재에 이르러 정부업무평가는 복잡하고 다양한 국정운영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도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성과관리의 도구로도 활용되는 등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정부업무에 대한 정부의 평가라는 좁은 시각에서 이제는 공공부문 전체를 포괄하는 영역에 대한 민관 합동의 평가로 변화함으로써 거버넌스 시대의 협치적 특성이 평가에서도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추진체계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평가제도의 변화는 자율성, 협력성의 강화를 중요한 특징으로 볼 수 있다. 평가목적 및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성과지향성, 관리지향형 등을 중요한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평가대상이라는 관점에서는 통합화, 민생지향형 등을 들 수 있다.

나. 추진체계의 변화: 자율성과 협력성의 강화

심사분석제도 도입기에는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에서 주관해오다가 경제기획원과 국무총리실(행정조정실)이 함께 심사분석과 정책평가를 수행하던 과도기를 거치고,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국무총리실이 평가주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공공기관평가, 지방자치단체 평가 등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다양한 정부기관들과의 협력적 평가의 틀이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성격은 우리나라 정부업무평가가 다원적이고 유기적인 틀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정부업무에 대한 다양한 평가제도들을 통합한 데 기인한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업무평가 제도는 추진체계 측면에서 볼 때 자율성에 기초를 둔 공동평가이자 협력적 평가로써 특성을 강화해 온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로 자체평가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오고 있는데, 이 또한 피평가기관과 평가기관의 협력적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며 동시에 평가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에 해당한다.

협력적 시스템으로써 우리나라 평가제도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이다.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국무총리와 공동위원장을 맡도록 함으로써, 정부업무평가에 있어서 민간의 자율성과 전문성

을 확보하고, 동시에 국정운영의 한 주체로서 국민의 시각이 정부업무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정부업무평가의 영역에서도 실현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 평가목적과 성격의 변화: 국정운영의 종합적 관리도구

제도 시행 초기에 경제발전을 위한 수단적 점검도구로서 시작된 심사분석은 이제 종합적인 국정운영 관리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평가의 목적 또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점검 수준에서 이제는 성과지향성과 책임성에 근거를 둔 종합적 국정운영의 수단으로 발전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정책과정이 '계획 - 집행 · 점검 - 평가 - 환류'의 체계적인 틀을 갖추게 되었고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하였다는 점은 정부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이다. 이는 기존에 세워진 목표와 성과달성기준에 대한 사후적 확인의 역할과 함께, 목표달성 수준과 환경변화의 측면을 결합하여 미래 목표전략의 수정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과거지향적 평가의 틀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 평가대상의 변화: 공공부문 전체를 대상으로 한 종합적 평가

제도시행 초기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던 심사분석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정 이후, 사실상 공공부문 거의 전체를 망라하는 종합적 평가체도로 자리잡고 있다. 중앙행정기관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들이 모두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의 평가 틀내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평가대상 기관만이 아니라 평가내용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행실적의 점검과 예산집행의 확인 등 기초적인 내용에서 진일보하여, 정책목표와 전략의 수립과정과 배경, 집행의 효과성과 효율성, (만족도 조사를 포함한) 정책 결과의 성과 및 장기적 효과까지 함께 평가할 수 있도록 변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정부업무평가는 대상기관과 평가내용 모두에 있어서 망라적이고 종합적인 평가체계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는 기존에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여러 평가체계를 단일 기본법의 수립을 통하여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제도적으로 통합평가를 완성한 것이다.

평가대상 정책의 변화에 있어서 최근에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다부처 관련 정책 및 민

생정책들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강화한 것이다. 이는 서민생활안정, 일자리과제, 규제 개혁 등 국무총리의 조정역할을 강조하는 특정평가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이다. 과거에는 행정기관 내부의 관리적 측면이 강조되었으나, 최근에는 국민생활과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주면서 동시에 여러 부처들이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정책분야들을 특정 평가 제도를 통하여 점검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운영에 있어서 국무총리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변화라 할 수 있다.

제2장

정부업무평가 운영 실적

정부업무평가에는 중앙행정기관 평가와 지방자치단체 평가 그리고 공공기관 평가가 있다.

그간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와 '특정평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평가로 민생현황과 정책의 대국민만족도 등을 여실히 조사하여 이를 발전해왔다.

제1절 중앙행정기관 평가

1. 자체평가

- 가. 종합정리 036
- 나. 연도별 평가내용 및 결과 038

2. 특정평가

- 가. 종합정리 053
- 나. 연도별 평가내용 및 결과 055

3. 정책현안과제 분석

- 가. 종합정리 139
- 나. 연도별 평가내용 및 개선방향 140

제2절 지방자치단체 평가

1. 종합정리

- 가. 평가목적 및 배경 205
- 나. 평가종류 206
- 다. 평가절차 및 방법 208
- 라. 평가결과 활용 210
- 마. 지방자치단체 평가추진 성과 211

2. 평가내용 및 결과

- 가. 총론 214
- 나. 연도별 평가내용 및 결과 216

제3절 공공기관 평가

1. 종합정리

- 가. 개념 226
- 나. 평가대상 226
- 다. 평가절차 228
- 라. 평가결과 활용 232

2. 연도별 평가결과

- 가. 총론 232
- 나. 2008년 233
- 다. 2009년 244
- 라. 2010년 255
- 마. 2011년 266
- 바. 2012년 272

제2장

정부업무평가 운영 실적

제1절 중앙행정기관 평가

1. 자체평가

가. 종합정리

1) 자체평가 개념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장의 책임 하에 기관의 기능을 대표할 수 있는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기 위한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자율과 책임이라는 성과관리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이다. 자체평가가 각 기관에서 얼마나 잘 정착되고 활성화되어 있는지는 정부조직의 성과관리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 연도별 변화

자체평가는 주요 정책, 재정사업, 행정관리역량 등 크게 3개 부문으로 나뉜다. 주요 정책 부문은 각 부처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이다. 재정사업 부문은 다시 「국가재정법」에 따른 재정사업에 관한 평가¹⁾(이하 일반재정사업)와 「국가연구개발사업

1) 「국가재정법」에서는 「재정사업 자율평가」로 지칭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R&D사업)에 관한 평가로 나뉜다. 행정관리역량 부문은 기관의 전반적인 관리업무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인사, 조직, 정보화관리 등에 대한 노력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주요 정책과제 부문은 1990년부터 매년 실시하였으며, 재정사업과 행정관리역량 부문은 기획예산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등에서 나뉘어 시행되다가 2006년에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자체평가에 통합되어 실시하고 있다.

자체평가가 그동안 3개 부문으로만 구성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3개 부문으로 평가되다가 2011년에 행정관리역량은 특정평가로 이관되고 주요 정책으로 평가부문이 일원화 되었다. 그러다 2012년에 행정관리역량을 자체평가로 이관하고, 「국가재정법」상의 재정사업 평가를 자체평가 부문으로 다시 환원하였다.

〈표 2-1-1〉 자체평가 부문 변동 현황

연도	2008~2010년	2011년	2012년	평가시행기관	평가총괄관련기관 ²⁾
부문	주요 정책	주요 정책	주요 정책	중앙행정기관장 (자체평가위원회)	국무총리실
	재정사업		재정사업		기획재정부
	행정관리역량	*특정평가로 이관	행정관리역량		행정안전부

3) 평가결과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평가결과를 정책개선, 인사, 예산, 조직 관리 등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또한, 각 중앙행정기관은 전년도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한 자체평가결과를 매년 3월 말까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는 자체평가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결과 각 부처에서 실시한 자체평가 결과에 문제가 있어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자체평가를 우수하게

2)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8조(평가총괄관련기관) :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문별 총괄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부문별 자체평가결과의 확인·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부문별 평가총괄관련기관 - 주요 정책부문 : 국무총리실, 재정사업부문 : 기획재정부, 기관역량부문 : 행정안전부)

운영한 기관에 포상과 공무원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자체평가가 내실있게 운영되고 그 결과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4) 자체평가 추진 성과

자율과 책임이라는 성과관리 이념이 자체평가를 통해 구현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업무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와 방법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결과를 인사·보수와 연계하여 내부경쟁을 유도하는 등 자체평가를 통한 정부업무 성과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정책현장 방문, 정보제공 확대 등을 통해 각 기관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고, 평가방식을 개선하여 자체평가 관대화 경향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정부 주요 정책의 성과제고를 위해 각 기관의 자체평가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진단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우수사례 공유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자체평가 운영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나. 연도별 평가 내용 및 결과

1) 2008년

각 기관의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평가지표를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재평가 수준의 확인·점검 대신 운영실태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자체평가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1) 주요 정책 부문

① 평가 개요

2008년은 자체평가 제도의 자율성을 확대한 중요한 해였다. 평가지표와 배점을 각 기관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자율평가지표'를 도입하였다. 각 기관에서 실시한 자체평가결과를 국무총리실이 확인하여 평가결과를 수정하는 재평가 형태의 확인·점검 대신 각 기관에서 자체평가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② 평가내용

40개 중앙행정기관이 자체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각 부처의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주요 정책과제'가 평가대상이었다. 다만,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있더라도 위원회 운영 등 단순 지원업무는 주요 정책과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007년에는 자체평가 시 적용해야 하는 평가지표를 국무총리실에서 확정하여 알려주었으나, 2008년부터는 각 부처에서 반드시 설정해야 하는 공통평가지표의 배점을 절반으로 줄이고, 각 부처가 기관특성과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자율평가지표를 50%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자율평가지표' 도입은 성과관리가 필요한 주요 정책 과제를 직접 개발한 평가지표로 평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각 부처의 평가역량과 책임감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007년까지는 부처별 종합평가를 실시할 때, 각 부처의 자체평가결과와 특정평가결과를 합산한 종합점수를 활용했다. 이에, 각 기관에서는 자체평가 점수를 관대하게 부여하는 관행이 있었고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각 부처의 자체평가 점수를 확인·점검하여 평정점수를 재조정했다.

그러다 2008년부터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평가지표를 구성하도록 하고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확인·점검을 폐지하고 운영 실태 위주로 점검했다. 또한, 각 기관에서 자체평가결과를 조직·인사 등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체평가 시 우수, 다소우수, 보통, 다소미흡, 미흡 등 5개의 상대등급을 적용하도록 했다.

③ 평가결과

2008년 주요 정책과제(2,090개)에 대한 자체평가 평균 점수는 90.8점으로 2007년 91.9점보다 다소 하락했다. 각 부처가 주요 정책과제(2,090개)에 대해 5개 상대등급을 적용해 평가한 결과, 317개(15.2%)과제는 우수, 538개(25.7%) 과제는 다소 우수, 817개(39.1%)과제는 보통, 300개(14.4%)과제는 다소 미흡, 118개(5.6%) 과제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자체평가의 객관성과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전 부처의 자체평가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환경부, 해양경찰청 등 자체평가 운영이 우수한 11개 부처를 포상했다.

(2) 재정사업 부문

① 평가 개요

정부조직 개편 및 2008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에 따라 2007년 R&D사업 평가에 이어 정보화사업 평가 기능이 기획재정부로 이관되었다. 평가부문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전체 사업을 매년 1/3씩 평가하는 일반재정사업 평가방식으로 통일하고 재정·R&D·정보화 사업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는 평가항목의 명칭, 구성 등을 동일한 기준으로 정비하였다.

사업 목적과 수혜대상이 유사한 사업인 경우 통합하거나, 경상적 행정경비의 속성을 지녀 사업적 성격이 약한 사업의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는 등 평가결과와 예산 반영과의 실질적인 연계와 부처의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평가단위를 조정하였다.

② 평가 내용

각 부처가 2008년 전체 재정사업 중 1/3에 해당하는 사업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선정·평가하되 경상경비 등 평가실익 없는 사업은 제외하였다.

〈표 2-1-2〉 2008년 일반재정사업 평가대상

구 분	기관수	사업수	예산규모
일반재정	33개 부처	346개 사업	21조원
R&D사업	15개 부처	70개 사업	2조 2,108억원
정보화사업	29개 부처	108개 사업	9,447억원

일반재정은 계획·집행·성과 단계의 11개 공통지표와 사업유형별 1~3개 지표를 추가하였고, R&D·정보화사업은 계획·집행·결과 및 활용 단계에 따라 6개 및 5개 지표를 활용하여 평가하였다. 평가지표별로 '예', '아니오'로 평가하여 '예'로 평가된 질문의 점수를 종합하여 사업별로 4~5단계 등급화 하였다.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이상 등급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증액하고 '미흡' 이하 등급 사업은 10%이상 삭감 또는 사업폐지 검토하도록 하였다. 기획재정부가 평가분야별로 조세연구원, KISTEP 및 정보화진흥원의 협조를 받아 부처 자체평가결과가 지침에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는지 점검하였다.

③ 평가결과

일반재정 부문의 전체 평균 점수는 65.9점으로 전년도(66.7점) 대비 0.8점 하락하였다. 평가등급별 분포는 우수이상 5.5%, 보통 73.7%, 미흡이하 20.2%로 전년도 평가결과에 비하여 미흡이하 및 우수이상 등급은 감소(미흡이하 : 27.0% → 20.2%, 우수이상 : 14.3% → 5.5%), 보통등급은 대폭 증가(58.7% → 74.3)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평가항목별로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항목은 전년 수준인 98점으로 매우 양호한 상태가 지속된 반면, '성과계획의 적정성' 항목의 점수는 전년보다 다소 상승 하였으나 여전히 미흡하고, '집행의 효율성'과 '성과목표 달성도' 항목도 점수 하락과 함께 미흡상태가 지속되었다.

R&D사업 부문의 전체 평균점수 79.2점으로 전년도(84.2점)에 비해 5.0점 하락하였다. 평가등급별 분포는 우수이상 10.0%, 보통 68.6%, 미흡 21.4%로 2007년도 평가결과에 비하여 우수이상 등급은 감소(24.4% → 10.0%)하고, 미흡 등급은 증가(12.2% → 21.4%)하였다. 이는 평가결과의 예산연계를 강화하면서 성과지표의 적절성 등에 대한 확인·점검을 엄격히 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평가항목별로는 '사업내용 타당성', '추진체계', '집행관리' 등의 점수는 상당히 양호(100점 대비 92~97점 수준)한 반면, '성과관리 적절성', '성과달성도', '평가결과의 활용' 등의 점수는 상당히 미흡(58~77점)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정보화사업 부문의 전체 평균점수는 79.8점으로 전년(91.35점) 대비 큰 폭(11.55점)으로 하락하였다. 평가등급별로는 우수이상 20.3%, 보통 55.6%, 미흡 24.1%으로 평가되었다. 평가항목별로는 R&D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계획 및 집행관리의 적절성'의 점수는 양호한 반면, '성과지표·목표의 적절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지표의 점수는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3) 기관역량 부문

① 평가개요

2008년 기관역량 평가는 각 부처의 정책과 행정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조직, 인사, 정보화, 변화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기관의 관리역량을 평가했다.

② 평가 내용

40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인사관리·조직관리·재정운용·정보화수준·정보공개·변화관리 등 6개 분야, 26개 평가지표, 63개 세부평가지표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 각 부처에서 우선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에서 확인·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확인·점검은 전자통합평가시스템을 통해 부처별 자체평가결과를 1차 점검한 후,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③ 평가결과

평가결과 전반적으로 정보화수준(88.58점), 정보공개(88.03점), 조직관리(86.62점) 분야의 운영실적은 높았으나 변화관리(84.97점), 인사관리(82.06점), 재정운용(73.68) 분야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변화관리 추진방식이 'Top-Down'에서 'Bottom-Up'으로 전환됨에 따라 변화관리 프로그램의 구성과 실행이 다소 지연되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초과현원 해소 등 현안문제로 체계적인 인사관리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기관별로는 국민권익위원회, 특허청 등 7개 기관이 6개 분야 전반에서 균형있게 우수한 실적을 보였다.

2) 2009년

주요 정책 부문은 모든 평가지표와 측정방법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완전 자율화하고, 행정관리역량은 평가항목을 통폐합하고 평가지표를 축소하여 부처의 평가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1) 주요 정책 부문

① 평가 개요

2008년은 평가지표를 공통지표와 자율지표를 혼합하여 설계하도록 하였으나, 2009년부터 평가지표와 측정방법을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하여 자체평가 자율성을 더욱 확대했다.

② 평가내용

40개 중앙행정기관이 자체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대상은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주요 정책과제'이다. 2009년에는 각 부처가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지표를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하고 2008년과 마찬가지로 5개 등급으로 각 부처에서 상대평가를 실시했다.

③ 평가결과

2009년 주요 정책과제(1,945개)에 대한 자체평가 평균 점수는 87.7점으로 2008년(90.8점)보다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부처가 주요정책과제(1,945개)에 대해 5개 등급을 적용해 평가한 결과, 271개(13.9%)과제는 우수, 510개(26.2%) 과제는 다소 우수, 770개(39.6%)과제는 보통, 286개(14.7%)과제는 다소 미흡, 108개(5.6%) 과제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자체평가의 객관성과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지식경제부, 농촌진흥청 등 자체평가 운영이 우수한 11개 부처를 선정하여 포상했다.

(2) 재정사업 부문

① 평가개요

일반재정, 정보화 각 부문에 대해 별도의 평가지침 적용하던 것을 통합평가지침을 마련하여 각 부문 12개 공통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모든 사업을 평가하던 것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됨에 따라 광특회계 중 지역발전계정사업은 평가에서 제외하였다.

'미흡'등급 사업에 대해 평가시행 차년도 예산편성시에만 10% 삭감하던 것을 차기 평가주기 도래시까지 매년 10% 삭감 원칙을 적용하여 평가결과의 재정운용과의 연계를 강화하였다.

② 평가내용

각 부처가 2009년 전체 재정사업 중 1/3에 해당하는 사업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선정·평가하되 경상경비 등 평가실익 없는 사업은 제외하였다.

〈표 2-1-3〉 2009년 일반재정사업 평가대상

구 분	기관수	사업수	예산규모
일반재정	33개 부처	477개 사업	53조원
R&D사업	16개 부처	70개 사업	2조 9,667억원
정보화사업	26개 부처	79개 사업	5,532억원

평가결과에 따라 원칙적으로, '우수' 이상 등급 사업은 예산을 증액하고, '미흡' 이하 등급 사업은 10% 이상 삭감 또는 사업폐지를 검토하도록 하였다.

③ 평가결과

일반재정 부문의 전체 평균 점수는 62.2점으로 전년도(65.9점) 대비 3.7점 하락하였으며, 기금사업이 예산사업에 비해 평균 2.2점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어 기금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평가등급별로는 우수이상 4.7%, 보통 70.8%, 미흡이하 24.5%로 2008년 평가결과에 비하여 미흡이하 등급은 증가(20.2% → 24.5%), 보통등급과 우수등급은 감소(보통 : 74.3% → 70.8%, 우수 : 5.5% → 4.7%) 하였다. 평가항목별로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항목은 전년 수준인 98.7점으로 양호하고, '사업관리의 적절성' 항목은 조기집행 강화 등의 원인으로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성과계획의 적정성' 항목과 '성과달성 및 환류' 항목의 점수는 전년보다 하락하여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R&D사업 부문의 전체 평균점수는 66.0점으로 전년(79.2점) 대비 13.3점 하락하였다. 등급별로는 우수이상 10.0%, 보통 70.0%, 미흡이하 20.0%로 2008년도 평가결과에 비하여 우수이상 등급은 동일하나, 미흡이하 등급은 다소 감소(21.4% → 20.0%)하였다. 평가항목별로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집행의 효율성' 등의 점수는 상당히 양호(100점 대비 95~97점 수준)한 반면, '성과계획의 적정성'의 점수는 상당히 미흡(22점)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정보화사업 부문의 평가 대상사업의 전체 평균 점수는 63.2점으로 전년도(79.8)에 비해 크게 하락하였다. 등급별로는 우수이상 5.1%, 보통 73.4%, 미흡이하 21.5%로 전년도에 비하여, '우수'이상 사업(20.3% → 5.1%)과 '미흡'이하 사업(24.1% → 21.5%)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보통' 사업의 비율은 증가(55.6% → 73.4%)하였다. 평균점수 하락에도 불

구하고 '미흡'이하 사업 비율이 감소한 것은 R&D 사업과 마찬가지로 평가등급 및 기준점 수 변경에 기인한 것이다. 평가항목별로는 '사업 계획의 타당성'(92.1점) 및 '사업관리의 적절성'(86.8점)항목은 전년도 수준으로 양호한 반면, '성과계획의 적정성'(51.9점)과 '성과달성 및 사업평가결과의 환류'(51.9점) 항목은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3) 행정관리역량 부문

① 평가개요

자체평가 '기관역량'을 '행정관리역량'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에 맞추어 평가분야도 변경했다. 업무 연계성과 상호 유사성 기준에 의하여 기존 평가분야를 6개(인사관리, 조직관리, 정보공개, 변화관리, 정보화수준, 재정운용)에서 4개(인사관리, 조직관리, 정보화관리, 재정운용)로 전환했다.

② 평가내용

40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행정관리역량을 구성하는 조직관리, 인사관리, 정보화관리 3개 분야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평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9년부터 확인·점검을 폐지하고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즉 각 부처 행정관리역량 자체평가의 운영현황을 점검하여 기관 스스로 행정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표 2-1-4〉 2009년 행정관리 역량 부문 실태점검 기준

- 충실성(25점) : 의견개진 충실성(10점), 결과분석 및 개선방안 적절성(15점)
- 객관성(50점) : 점수의 신뢰성(15점), 핵심지표 목표달성 정도(35점)
- 부합성(25점) : 분야·평가지표별 우수사례의 적절성(25점)

점검방식은 전자통합평가시스템을 통한 서면점검과 현장점검을 병행하고, 부·실·위원회/처·청단위 2개 그룹별로 나누어 우수·보통·미흡 기관으로 등급화했다.

③ 평가결과

40개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관리역량에 대한 자체평가운영 수준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진단(전체 평균점수 77.9점)되었다.

3) 2010년

부처에 자체평가 자율권을 부여하는 대신 적극적인 내부 경쟁을 유도하여 평가 관대화 경향을 완화하고, 주요 정책과제와 행정관리역량에 대한 실태점검을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들을 도출하는 컨설팅 형식으로 실시했다.

(1) 주요 정책 부문

① 평가개요

2010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제도를 크게 바꾸지 않고, 주요 정책부문, 재정사업, 행정관리역량 등 3개 부문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대상과 방법도 2009년과 동일하게 운영했다.

② 평가내용

39개 중앙행정기관이 자체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대상은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주요 정책과제'이다. 다만,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행정지원부서 등을 포함하여 과(팀) 단위별로 1개 이상의 과제가 선정되도록 하여 모든 과단위가 최소 1개 이상의 평가대상 과제를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2009년과 마찬가지로 각 부처가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지표를 자체적으로 선정하도록 했다. 자체평가 시 5개 등급의 상대평가 제도도 예년대로 유지했다.

③ 평가결과

2010년 주요 정책과제(2,122개)에 대한 자체평가 평균 점수는 81.4점으로 2009년(87.7점)보다 하락되어 자체평가 관대화 경향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부처가 주요 정책과제(2,122개)에 대해 5개 상대등급을 적용해 평가한 결과, 290개(13.7%)과제는 우수, 531개(25.0%) 과제는 다소 우수, 861개(40.6%)과제는 보통, 304개(14.3%)과

제는 다소 미흡, 136개(6.4%) 과제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는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을 컨설팅과 개선방안 도출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였으며,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부처 등급화는 하지 않았다.

(2) 재정사업 부문

① 평가개요

예산사업별로 매년 1/3을 선정·평가하던 것을 성과계획서상의 성과목표 중 1/3을 선정하여 해당 성과목표에 포함된 관리과제를 모두 평가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부처의 관대화 평가 관행을 개선하고, 성과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전 분야에 걸쳐 상대평가제도('우수'이상 20% 이내, '미흡'이하 10% 이상)를 도입하였다(단, 평가 사업수가 5개 이하인 부처는 적용 제외). 부처 평가부담 완화 및 평가지표 실효성 제고를 위해 12개 공통지표를 10개 공통지표로 통합·축소하고, 성과계획서의 국회 제출로 기획재정부의 성과계획 및 지표의 적정성 검증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계획단계의 평가배점을 하향(30 → 20점)하였다.

② 평가내용

각 부처가 2010년 전체 재정사업 중 1/3에 해당하는 사업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선정·평가하되 경상경비 등 평가실익 없는 사업은 제외하였다.

〈표 2-1-5〉 2010년 일반재정사업 평가대상

구분	기관수	사업수	예산규모
일반재정	36개 부처	389개 사업	50.4조원
R&D사업	15개 부처	87개 사업	4조 8,296억원
정보화사업	28개 부처	93개 사업	8,493억원

③ 평가결과

일반재정의 전체 평균 점수 62.0점으로 전년도(62.2점) 대비 0.2점 하락하였다. 평가등급별로는 우수이상 6.7%, 보통 63.2%, 미흡이하 30.1%로 2009년도 평가결과에 비해 우

수이상 등급과 미흡이하 등급은 증가(4.7% → 6.7%, 24.5% → 30.1%), 보통등급은 감소(70.8% → 63.2%)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항목별로는 '성과계획의 적절성'과 '성과달성 및 환류' 항목은 전년대비 개선되었으나,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관리의 적절성' 항목은 전년보다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R&D사업의 전체 평균점수 65.7점으로 전년도(66.0점)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별로는 우수이상 6.9%, 보통 78.2%, 미흡이하 15.0%로 전년도에 비하여, '우수'이상 사업(10% → 6.9%)과 '미흡'이하 사업(20% → 15.0%)은 감소한 반면, '보통' 사업의 비율은 증가(70% → 78.2%)으로 평가되었다. '미흡이하' 등급이 감소한 것은 집행 및 결과 단계에 부분배점 도입, 전년도 미흡사업 수정평가 등에 따라 '보통'은 증가한 반면 '미흡이하'는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평가항목별로는 '사업계획의 타당성'(92.8점)은 비교적 우수하였으나, '성과계획의 적절성'(21.3점)은 여전히 미흡한 편이며, '사업집행의 적절성'(86.8점)에 비해 결과단계의 '성과달성 및 평가결과 활용'(61.3점) 항목은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정보화사업의 전체 평균점수 65.8점으로 전년도(63.2점) 대비 다소 증가하였다. 평가등급별로는 우수이상 7.5%, 보통 76.4%, 미흡이하 16.1%로 2009년 평가결과에 대비 우수 이상 등급과 보통 등급은 증가(5.1 → 7.5%, 73.4 → 76.3%), 미흡이하 등급은 감소(21.5 → 16.1%)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평가항목별로는 '사업 계획의 타당성'(87.4점) 및 '성과 계획의 적절성'(85.5점) 항목은 매우 양호한 반면, '사업관리의 적절성'(63.1점)과 '성과달성 및 환류(57.5점)' 항목은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사업관리의 적절성' 항목은 전년대비 예산집행률 배점 강화 (5 → 15점) 및 확인·점검 강화에 따라 전년 수준에 비해 크게 저조(86.8 → 63.1점)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3) 행정관리역량 부문

① 평가개요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과 서비스 수준에 영향을 주는 조직·인사·정보화 등 3개 영역에서 22개 지표를 토대로 평가를 실시했다.

② 평가내용

40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조직·인사·정보화 부문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 인사 관리는 효율적인 기관 인사시스템구현과 성과지향적 인재육성·관리를, 조직관리는 정부 기능·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고객 대응성 향상을, 정보화관리는 국가정보화 추진방향과의 부합성, 정보보호체계의 적절성을 평가했다.

실태점검은 자체평가의 충실성 등을 5단계 척도로 점검하여 잘된 점, 미흡한 점을 도출하고 부처 자율적으로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실태점검 방식은 전자통합평가 시스템을 통해 서면점검 위주로 실시하고 현장점검도 병행했다. 자체평가결과는 그대로 인정하고 점검반은 자체평가의 적합성 정도만 우수·보통·미흡으로 등급화했다.

〈표 2-1-6〉 2010년 행정관리 역량 부문 실태점검 기준

- 평가운영의 충실성(25) : 평가의견 및 평가결과 분석 적절성
- 평가결과의 객관성(50) : 평가결과 점수의 신뢰성, 핵심지표 목표달성 정도
- 평가목표와 부합성(25) : 우수사례의 적절성

③ 평가결과

대부분의 부처에서 평정근거 제시 노력과 평가결과 충실성 정도가 높게 나타나는 등 자체평가 운영수준은 전반적으로 양호했다. 그러나 미흡사유와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4) 2011년

자체평가 부문을 성과관리 체계를 고려하여 주요 정책으로 일원화하고, 행정관리역량은 특정평가 부문으로 이관했다.

(1) 평가개요

평가부문을 구분하지 않고, 주요 정책 부문만 자체평가에서 평가하고, 재정사업 부문은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자율평가 형식으로 별도로 실시했다. 행정관리역량은 특정평가

로 이관하여 평정했다. 또한,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을 강화하여 점검결과를 토대로 우수 기관을 선정하고 포상했다.

(2) 평가내용

40개 중앙행정기관이 자체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대상은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주요 정책과제'이다. 관리과제 단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으나, 필요시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성과목표 단위로도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상위 단위의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09년과 마찬가지로 각 부처가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모든 평가지표를 자체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상대등급 제도도 예년처럼 유지하였으나, 평가 변별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등급기준을 5등급에서 7등급으로 세분화했다. 전체과제에 대해 일괄적인 등급부여가 곤란할 경우, 업무성격이 상이한 그룹별로 구분하여 상대등급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3) 평가결과

2011년 40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실시된 주요 정책과제(2,168개)에 대한 자체평가 평균 점수는 80.3점으로 2007년부터 꾸준히 관대화가 완화된 추세를 유지했다. 이는 자체평가결과를 재평가하여 기관을 서열화했던 확인·점검 제도를 운영실태만 점검하는 제도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40개 기관이 주요 정책과제(2,168개)에 대해 7개 상대등급을 적용해 평가한 결과, 95개(4.4%)과제는 매우우수, 335개(15.5%)과제는 우수, 330개(15.2%)과제는 다소 우수, 652개(30.1%)과제는 보통, 340개(15.7%)과제는 다소 미흡, 290개(13.4%)과제는 미흡, 126개(5.8%)과제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자체평가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법무부, 농촌진흥청 등 자체평가 운영이 우수한 10개 부처를 선정하여 포상했다.

5) 2012년

기관의 종합적이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자체평가를 주요 정책, 재정사업, 행정관리역량 3개 부문으로 구성하고, 행정관리역량 평가지표를 간소화하여 평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1) 주요 정책 부문

① 평가 개요

자체평가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후속조치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고, 평가결과가 조직관리와 인사운영에 적극 환류 될 수 있도록 기관별 환류 강화 방안을 자체평가 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했다.

② 평가 내용

평가대상 기관은 42개 중앙행정기관이고 평가대상과제는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주요 정책과제'이다. 2011년과 마찬가지로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관리과제 단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으나, 필요시 성과목표 단위로도 자체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성과목표 단위의 정책 평가결과는 상위 단위의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③ 평가 결과

주요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추진상황에 대한 중간점검을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도록 했다(각 부처에서는 중간점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요 정책과제에 대하여 2013년 1월에 최종 평가 실시).

(2) 재정사업 부문

각 부처에서는 재정사업 및 R&D사업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2013년 1~3월)하고, 기획재정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상위평가를 실시했다(2013년 4~6월).

(3) 행정관리역량 부문

① 평가 개요

행정관리역량은 자체평가 중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과 서비스 수준에 영향을 주는 조직·인사·정보화 등 관리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2011년 특정평가로 운영되던 행정관리역량은 2012년에 다시 자체평가로 전환되었다.

② 평가 내용

평가대상은 총 42개 기관으로 2012년도 12월말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조직·인사·정보화별 공통지표를 적용하여 평가할 계획이다. 자체평가로 다시 전환된 만큼 객관적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정량지표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구성하여 각 부처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지표를 4개 분야, 7개 측정기준, 19개 세부측정기준으로 단순화하여 각 부처의 평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각 부처에서는 행정관리역량에 대하여 2013년 1월에 최종 평가 실시).

2. 특정평가

가. 종합정리

평가단과 부처의 의사소통 기회를 확대하여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객관적 평가를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1) 특정평가 개념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국정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대상으로 정책성과, 국민만족도 등을 입체적·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특정평가는 국무총리에 의한 하향식 평가라는 점에서 중앙행정기관 스스로 평가하는 자체평가와 구별된다. 매년 정부업무평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을 통해 평가대상 부문 등이 확정된다.

2) 연도별 평가부문 변화

〈표 2-1-7〉 연도별 특정평가 부문 변동 현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평가 부문		핵심과제 및 녹색성장	핵심과제	핵심과제 서민생활 안정과제	핵심과제
			녹색성장	녹색성장	녹색성장
			일자리창출과제	일자리창출과제	일자리과제
			정책소통·홍보	정책소통·홍보	정책홍보
		국정관리역량 (정책관리역량)	정책관리역량	정책관리역량	정책관리역량
		규제개혁	규제개혁	규제개혁	규제개혁
	국민만족도	국민만족도	국민만족도	국민만족도	국민만족도

〈표 2-1-8〉 특정평가 부문별 개념

부 문	개 념
핵심과제	기관별 대표적 정책과제의 추진노력 및 성과를 점검·평가
서민생활안정과제	친서민 정책과제에 대한 추진노력, 성과 및 효과 등을 종합 평가
녹색성장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중앙부처 추진계획의 추진성과 등을 평가
일자리과제	일자리 대책의 추진노력 및 성과를 평가
정책홍보	각 중앙행정기관의 정책홍보 추진노력과 성과를 평가
정책관리역량	기관의 주요업무 추진 관련 필수적인 정책활동의 관리노력 및 성과를 평가
규제개혁	각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추진노력 및 성과에 대해 중점평가
국민만족도	부처의 주요 정책 및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를 각각 평가

3) 평가결과 활용

특정평가를 통해 기관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정부의 성과향상을 유도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을 차년도 업무계획 수립 등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4) 특정평가 추진 성과

전문가와 연구기관 등의 평가 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전문가 평가단과 부처의 의사소통 기회를 확대하여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각 평가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특정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정의 통합적 관리를 지원하였다.

핵심과제 등 정책부문 평가의 경우, 평가대상과제를 국정운영 기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제 등으로 신축적·전략적으로 설정함으로써 국정과제 달성을 뒷받침하였고, 평가 과정에서 업무특성·조직특성·규제 수 등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피평가 기관 그룹화, 모집단 차등 적용 등을 통해 기관별 형평성을 제고하였다. 객관적 평가를 위해 정성·정량지표를 상호보완 되도록 활용하여 지나치게 계량화된 평가는 지양하고, 객관적인 참고자료와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나. 연도별 평가 내용 및 결과

1) 2008년

- ‘창의와 실용’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는 성과향상 유도에 중점을 둔 평가를 시행했다.
- 실용성 강화, 평가 부문·지표의 합리적인 축소·조정으로 부처 부담 경감, 평가완료 시기 단축 등 평가 효율성을 확보했다.
- 새 정부 1년 동안 성과 결산, 미비점 보완의 계기가 됐다.

(1) 규제개혁

① 평가개요

규제개혁 평가는 2005년도 정부업무평가에 처음 도입하였으며, 2006년부터는 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부문에 포함하여 실시해 왔다. 2008년 규제개혁 평가는 새 정부 1년간 국정 최우선 과제의 하나인 규제개혁의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미비점은 향후 규제개혁 추진에 반영·보완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2007년과는 달리 평가항목 중 규제개혁 성과의 비중을 강화하였고 ‘규제개혁과제 발굴, 규제개혁과제 이행실적, 행정조사 정비실적과 규제개혁 효과’ 지표를 신설하는 등 평가지표를 대폭 개편하였다.

② 평가대상

40개 중앙행정기관 중 등록규제, 규제개혁과제나 신설·강화규제가 없는 8개 기관을 제외한 32개 중앙행정기관(부단위 18, 청단위 14)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2-1-9〉 2008년 규제개혁 평가대상기관

구분	기관명 (직제순)
부단위 (18개)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청단위 (14개)	국가보훈처, 국세청, 관세청, 병무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방위사업청

③ 평가방법

평가항목의 성격에 따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하되,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해 규제개혁위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규제개혁 평가단'을 통해 평가하였으며, 고객만족도와 규제영향분석 평가는 민간조사기관과 전문연구기관을 활용하였다. 평가항목에서 규제개혁과제 발굴, 신설·강화규제의 적절성, 규제개혁 이행실적과 효과, 고객만족도로 나누어 평가하고, 계획과 집행단계 보다는 산출과 결과단계에 비중을 두어 평가하였다. 구체적인 평가항목과 평가지표는 다음과 같다.

〈표 2-1-10〉 2008년 규제개혁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단계(배점)	평가항목(배점)	평가지표(배점)
계획(15)	1. 추진기반의 적실성(15)	1-1. 규제개혁 과제발굴의 적극성(15)
집행(20)	2. 시행의 적정성(20)	2-1. 신설·강화규제의 적절성(10)
		2-2. 규제영향분석의 적절성(10)
산출/결과 (65)	3. 규제개혁 성과(45)	3-1. 규제개혁과제 이행실적(15)
		3-2. 행정조사 정비실적(15)
		3-3. 규제개혁 효과(15)
	4. 규제개혁 만족도(20)	4-1. 규제개혁 고객만족도(20)

④ 평가결과

과거 정부에서 다루지 못했던 기업·주택·토지이용 관련 핵심정책성 규제를 포함하여 총 1,795건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고, 908건의 규제를 정비하는 성과를 달성(계획 1,249건 대비 73%)하였다. 또한, 행정조사 정비도 전체의 20% 수준으로 정비하고, 기업환경에 걸림돌이 되는 신설·강화규제는 가급적 억제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일조하였다. 국민의 생명·안전 등과 관련된 사회부문의 신설·강화규제는 규제의 품질제고와 실효성 확보에도 주력하였다. 규제개혁 만족도는 2007년(58.8점)에 비해 3.1점 상승한 61.9점이었으며, 규제개혁 종합점수도 66.9점으로 2007년(63.5점) 보다 3.4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규제개혁 이행을 위한 법률안 처리지연 등으로 규제개혁 효과가 충분히 가시화되지 못한 점, 일부 규제개혁 과제 중에서 금융위기 등 경기여건 변동과 이해관계집단의 반대 등

으로 추진이 중단되거나 지연된 점, 규제영향분석이나 규제일몰제,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등 규제의 합리화와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다소 미흡한 점 등은 개선·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기관별 평가결과, 부단위 기관이 평균 68.6점, 청단위 기관이 평균 64.7점으로 부단위 기관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단위에서는 금융위원회,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이, 청단위에서는 관세청, 산림청, 식약청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2-1-11〉 2008년 규제개혁 기관별 평가결과

등급	기관명(직제수)
우수(7)	금융위원회, 국방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관세청,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8)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농림수산식품부, 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기상청, 경찰청, 국세청, 문화재청, 병무청, 소방방재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미흡(7)	문화체육관광부, 여성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가보훈처, 방위사업청, 해양경찰청

(2) 국민만족도

① 평가개요

국민만족도 평가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정책과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직접 조사·평가함으로써, 민의에 입각한 정책 추진을 도모하고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2007년도의 '고객만족도'에서 '국민만족도'로 명칭이 바뀌었다.

② 평가대상

평가 대상기관은 3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평가 대상과제는 정책만족도의 경우, 2008년 성과관리시행계획에서 선정한 총 95개 전략목표(부단위 3개, 청단위 2개)를 대상으로 하였고, 민원만족도의 경우, 부처별 일반·인터넷 민원행정서비스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③ 평가방법

평가방식은 국민에 대한 직접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설문조사는 민간전문조사 기관에 의뢰해 실시함으로써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우선 정책만족도의 경우, 일반국민(4,960명)을 주된 대상으로 하되, 분야별로 관련 민간전문가(1,900명)나 내부고객(1,140명)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평가지표는 크게 항목만족도와 체감만족도로 구성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1-12〉 2008년 정책만족도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세부 설문내용)
항목만족도 (70%)	민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렴도)정책수립 · 집행과정에서 고객의 의견을 수렴한 정도 • (투명성)정책수립 · 집행과정의 공개를 통한 정책 협조노력
	적정성	• 전략목표 및 하위 정책수단 등 정책내용이 적절한 정도
	대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관성)정책환경의 변화를 극복하고 계획대로 집행된 정도 • (환류성)정책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을 시정 · 보완한 노력
	효과성	• 정책이 의도하는 성과(계량 및 비계량)가 나타난 정도
체감만족도 (30%)		• 해당정책 전반에 대한 직관적 · 총체적 만족도

한편 민원만족도의 경우, 일반민원과 인터넷 민원의 민원인 모집단을 확보한 후 무작위 표본추출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기관별로 250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총 9,7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평가지표는 주요 정책과 마찬가지로 항목만족도와 체감만족도로 구성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1-13〉 2008년 민원만족도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세부 설문내용)
항목만족도 (70%)	접근 · 편의성	(인터넷민원) • 인터넷 민원신청 웹페이지 접근 용이성 및 초기 안내의 명료성 • 인터넷 민원신청 서식, 입력해야 할 정보량, 절차의 간편성 등
		(일반민원) • 담당공무원과의 면담 · 통화의 용이성 및 안내의 적합성 • 일반 민원신청 서식, 구비서류의 양, 절차의 간편성 등
	신속 · 정확성	(인터넷민원) • 온라인시스템 상 업무처리의 신속성 등 민원서비스 처리시간 • 온라인시스템 상 처리내용 및 절차의 정확성 및 적실성
		(일반민원) •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 신속성 및 민원서비스 처리시간 • 담당공무원 민원처리의 정확성 및 능숙도

평가항목		평가지표(세부 설문내용)
국민만족도 (70%)	대응· 환류성	(인터넷민원) • 민원처리과정에 관해 제공되는 정보나 검색 가능성 • 불편사항들에 대한 문제제기나 건의에 대한 수용태도 (일반민원) • 담당공무원의 친절도 • 민원처리의 진행 및 처리결과에 대한 통보방식
	신뢰· 공정성	(인터넷 및 일반민원) • 민원처리결과에 대해 제시된 근거나 이유의 합리성 • 민원업무처리의 신뢰성·공정성
체감만족도 (30%)		(인터넷 및 일반민원) • 해당 민원서비스 전반에 대한 직관적·총체적 만족도 • 고객지향적 측면에서 본 민간기업 제공 유사서비스와의 비교

④ 평가결과

2008년 39개 중앙행정기관(95개 전략목표)의 주요 정책 만족도 평균점수(4.70점)는 7점 척도에서 ‘약간만족’(5점)에 비교적 근접한 점수로서 2007년(4.56점) 대비 0.14점 상승하였다. 이는 일반국민이 ‘의견수렴도와 투명성’, ‘정책내용의 적절성’, ‘정책효과성’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만족도가 상승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관별로는 19개 부단위 기관 종합점수(4.58점)는 ‘보통’(4점)과 ‘약간만족’(5점) 사이이며, 국방부가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통일부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20개 청의 단위 기관 종합점수(4.82점)는 ‘보통’(4점)과 ‘약간만족’(5점) 사이이며, 병무청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표 2-1-14〉 2008년 정책만족도 평가결과

(가나다순)

구분	기관명(직제순)
부단위 (19)	국방부,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국민권익위원회,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통일부
청단위 (19)	관세청, 병무청, 산림청, 특허청, 해양경찰청
	경찰청, 국가보훈처, 국세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법제처, 소방방재청, 조달청, 중소기업청, 통계청, 행복도시건설청
	대검찰청, 방위사업청, 식품의약품안전청

2008년 39개 중앙기관의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종합 만족도 평균점수(5.02점)는 7점 척도에서 '약간만족'을 조금 상회하는 점수로서 2007년(5.15점) 대비 0.13점 하락하였다. '신속·정확성', '신뢰·공정성' 등 대부분의 항목이 하락하여, 향후 행정서비스처리에 대한 높아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일처리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기관별로는 19개 부단위 기관 종합점수(5.03점)는 '약간만족'(5점)을 조금 상회하는 점수이며, 행정안전부가 가장 높은 만족도 수준을 보인 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20개 청의 단위 기관 종합점수(5.00점)는 '약간만족'(5점)에 해당하는 점수이며, 기상청이 가장 높은 만족도 수준을 보인 반면, 문화재청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표 2-1-15〉 2008년 민원만족도 평가결과

(가나다순)

구분	기관명 (직제순)
부단위 (19)	국방부, 법무부, 여성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외교통상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청단위 (20)	관세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해양경찰청
	국가보훈처, 국세청, 대검찰청, 방위사업청, 병무청, 산림청,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조달청, 통계청, 특허청, 행복도시건설청
	대검찰청, 문화재청, 법제처

2) 2009년

-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각종 평가제도를 신속적·전략적으로 운용했다.
- 핵심과제 및 녹색성장, 정책소통·홍보, 국정관리역량 평가부문을 신설했다.
- 2008년 대비 3개 부문 평가 내역 신설, 3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였다. 이 결과는 국무회의에 보고하여 하반기 정책개선에 활용했다.

(1) 핵심과제

① 평가 개요

2009년부터 각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정책과제 추진노력과 정책성과를 점검·평가하기 위해 ‘핵심과제 평가’ 부문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핵심과제 평가의 목적은 기관간 경쟁을 통해 정책 추진력을 확보하고 국정운영방향에 부합하는 국정성과 창출을 유도하는 한편, 국정통할 수단으로서 평가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2009년 핵심과제 평가방향은 지나치게 계량화된 평가를 지양하고, 정책의 과정과 성과를 정성적·질적으로 판단하는데 중점을 두되, 객관적인 데이터와 참고자료를 평가시 활용함으로써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였다.

평가는 각 부처에서 제출한 평가대상과제의 추진과정과 성과 등에 관한 자료를 기초로 상반기·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였는데, 평가시기별로 평가대상 기관, 평가대상과제 및 평가지표를 다소 다르게 설정되었다.

또한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업무평가위원과 민간전문가들로 ‘핵심과제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였으며, 평가결과는 기관별이 아닌 과제별로 ‘우수-보통-미흡’ 3단계로 등급화 하여 발표하였는데, 2009년 평가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이다.

② 평가 대상

평가대상 기관은 상반기에는 국무총리실을 포함하여 총 39개 기관이었으나, 평가주체로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하반기 평가에서는 국무총리실을 제외한 38개 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대상과제는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 서민생활 안정, 선진화 등 2009년 국정운영 기조와 부처업무보고 과제 등 부처 핵심기능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장관급 기관은 3개, 차관급 기관은 2개를 선정하여, 상반기에는 총 98개, 하반기에는 총 95개의 과제를 평가하였다.

〈표 2-1-16〉 2009년 하반기 핵심과제 평가대상 기관

부단위 (19개 기관 57개 과제)	경제분야 (7개 기관 21개 과제)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사회문화분야 (6개 기관 18개 과제)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외교안보·일반행정 분야 (6개 기관 18개 과제)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청단위 (19개 기관 38개 과제)	경제분야 (8개 기관 16개 과제)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일반행정 분야 (11개 기관 22개 과제)	법제처, 국가보훈처,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기상청, 문화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해양경찰청

③ 평가방법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무업무평가위원(10명), 대학교수·국책·민간연구기관 연구원 등 민간전문가로 ‘핵심과제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민간전문가는 상반기에는 장관급 기관 2명, 차관급 기관 1명으로 총 60명을 위촉하였으며, 하반기에 평가대상 과제당 1명씩 위촉하여 총 95명을 위촉하였다. 또한 정부업무평가단은 5개 분과(상반기에는 3개 분과)로 구분하여 정부업무평가위원이 분과위원장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평가지표는 정책형성-정책집행-정책성과의 각 정책단계별로 세부지표를 설정하였는데, 상반기에는 6개, 하반기에는 16개 세부지표를 설정·운영하였다. 정책단계별 배점에 있어서는 상반기에는 대부분의 정책이 추진과정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정책성과 부분보다 정책형성 및 집행부분 비중을 높게 설정하였다.

평가는 각 부처가 제출한 10월말 기준 과제별 추진실적자료를 토대로 정책단계별 평가지표에 따라 정성평가를 실시하였는데, 평가 시행 전에 각 분과별로 ‘부처 업무설명회’를 개최하여 민간전문가들의 담당과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평가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분과 내 과제들에 대해서는 분과 소속 민간전문가 전원이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평가항목과 평가지표는 아래와 같다.

〈표 2-1-17〉 2009년 상반기 핵심과제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단계(배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정책형성(10)	계획수립의 충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수렴의 적절성 • 정책내용의 타당성(관계기관간 협조 등)
정책집행(30)	추진과정의 충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일정에 따른 사업 추진 여부 및 당초 계획한 내용과 수준으로 추진되(었)는지 여부
	전략적 대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활한 정책추진을 위한 전략적 사고 - 기관간 협조, 전략적 소통 노력 등 - 여건·상황변화에 대응한 적기 대응 여부
정책성과(60)	성과 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목표(성과목표) 달성도 • 정책효과성

〈표 2-1-18〉 2009년 하반기 핵심과제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단계(배점)	평가항목	평가지표(배점)
정책형성(15)	1.정책목표의 적합성	1-1.정책목표의 명료성 (3) 1-2.상위 정책과의 연계성 (2)
	2.정책수단의 적정성	2-1.정책수단의 충실성 (2) 2-2.정책내용의 타당성 (3)
	3.계획수립의 적절성	3-1.형성과정의 민주성 (2) 3-2.형성과정의 협조성 (3)
정책집행(25)	4.추진과정의 합리성	4-1.자원투입의 적절성 (6) 4-2.가용자원의 경제성 (6)
	5.추진과정의 충실성	5-1.추진일정의 준수성 (7) 5-2.추진과정에서의 상황 대응성 (6)
정책성과(60)	6.성과측정 방법의 타당성	6-1.성과지표의 대표성 (8) 6-2.성과목표치의 적극성 (7)
	7.정책산출의 적실성	7-1.성과목표 달성도 (25) 7-2.정책서비스 전달의 정확성 (5)
	8.정책결과의 파급성	8-1.효과성 (10) 8-2.효율성 또는 형평성 (5)

④ 평가결과

기관별이 아닌 과제별로 평가하였으며, 상반기에는 3개 분과, 하반기에는 5개 분과로 나누어 ‘우수-보통-미흡’ 3단계로 등급화 하였다. 상반기 평가에서는 총 98개 과제 중 25개가 우수로, 22개가 상대적 미흡으로 평가되었고, 하반기에는 총 95개 과제 중 17개가 우수로, 15개가 미흡으로 평가되었다. 분야별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1-19〉 2009년 핵심과제 평가결과(부단위 경제분야)

등급	과제명(기관 직제순)
우수 (4)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기획재정부), 총력 수출지원 체제 가동(지식경제부)
	서민보호를 위한 반칙행위 감시 및 예방 강화(공정거래위원회)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금융위원회)
보통 (14)	소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각종 경기 진작대책 추진(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선진화(기획재정부), 식품산업 육성(농림수산식품부) 농업 경쟁력 제고(농림수산식품부), 실물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산업별 대응(지식경제부) 신성장동력 집중 육성 및 새로운 투자기회 창출(지식경제부)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 안정(국토해양부), 위기산업 지원과 경쟁력 강화(국토해양부)
	디지털 미디어 활성화 추진(방송통신위원회), 전자자원의 효율적 이용(방송통신위원회) 서민생활 안정 지원(방송통신위원회), 대기업 집단에 대한 규제완화(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공정거래위원회) 금융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금융위원회)
미흡 (3)	농·수협 개혁(농림수산식품부), 지역경제 활성화(국토해양부)
	기업자금지원 및 구조조정 강화(금융위원회)

부단위 경제분야에서는 7개 기관 21개 과제에 대한 평가결과, 글로벌 금융위기대응, 총력 수출지원 체제 가동, 서민보호를 위한 반칙행위 감시 및 예방 강화 등 4개 과제의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반면, 농·수협 개혁,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자금지원 및 구조조정 강화 등 3개 과제는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2-1-20〉 2009년 핵심과제 평가결과(부단위 사회문화분야)

등급	과제명(기관 직제순)
우수 (3)	기초원천 연구역량 강화(교육과학기술부), 문화향수 기회 확대(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 산업 육성(문화체육관광부)
보통 (11)	대학의 자율 및 책임확보(교육과학기술부), 생활속의 문화체육 활성화(문화체육관광부) 민생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 사회에 대응하는 출산·보육비용의 국가 책임성 강화(보건복지가족부) 노후 사회보장 체계의 종합적 접근과 재원의 안정적 수급(보건복지가족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먹거리 공급(환경부) 폐자원 에너지화를 통한 자원 순환 사회 구축(환경부) 노사간 자율협력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지원(노동부), 청년 취업 촉진 강화(노동부) 여성의 고용촉진 및 취업지원 시스템 강화(여성부) 아동·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여성부)
미흡 (4)	사교육비 절감(교육과학기술부), 생명력 넘치는 국토환경 보전과 생태체험 활성화(환경부) 비정규직 고용개선 및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노동부)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속의 여성정책 추진(여성부)

사회문화분야에서는 6개 기관 18개 과제를 평가한 결과, 기초원천 연구역량 강화, 문화향수 기회 확대 등 3개 과제의 성과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교육비 절감, 생명력 넘치는 국토환경 보전과 생태체험 활성화 등 4개 과제의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21〉 2009년 핵심과제 평가결과(부단위 외교안보·일반행정분야)

등급	과제명 (기관 직제순)
우수 (3)	경제살리기 외교 강화(외교통상부), 북한 대남위협 대응(국방부) 지방재정 조기집행(행정안전부)
보통 (13)	남북대화 추진 및 상생공영정책 공감대 강화(통일부)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협력 추진(통일부), 북한 이탈주민 관리 및 국내 정착 지원(통일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안정 추구(외교통상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외교통상부), 자유민주적 법질서 확립(법무부) 서민·약자를 위한 법적 지원 강화(법무부), 질서와 통합을 향한 외국인 정책 추진(법무부) 한미 군사동맹의 발전적 관리(국방부), 일자리 신규 창출(행정안전부) 시대에 부응하는 정부조직·인사 관리(행정안전부)
	권익보호 사각지대 해소로 경제위기 극복지원(국민권익위원회) 공직 부조리 근절을 통한 국정신뢰 증진(국민권익위원회)
미흡 (2)	국방개혁 조정·발전(국방부) 경제활력 저해요인 발굴 개선(국민권익위원회)

외교안보·일반행정분야에서는 6개 기관 18개 과제에 대한 평가결과, 경제살리기 외교 강화, 북한 대남위협 대응 등은 우수한 성과를 냈으나, 국방개혁 조정·발전 및 경제활력 저해요인 발굴 개선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22〉 2009년 핵심과제 평가결과(청단위 경제분야)

등급	과제명 (기관 직제순)
우수 (4)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대책 총력 추진(관세청) 수요자 맞춤형 조달서비스 제공(조달청), 창업활성화 지원(중소기업청) 글로벌 국제협력 강화(특허청)
보통 (10)	경제살리기·일자리 창출 지원 및 서민생활 안정 추진(국세청) 과세기반 확충 및 숨은 세원 발굴을 통한 재정수입 확보(국세청) 철저한 관세 국경 관리(관세청), 조달사업을 통한 중기지원(조달청) 통계정보 서비스의 강화(통계청) 열린연구·현장연구·실용연구 및 수요자 중심 보급체계 구축(농촌진흥청) 아시아 산림 녹화를 주도하는 녹색강국 구현(산림청), 산림자원의 순환이용 활성화(산림청)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애로 지원(중소기업청) 세계 최고수준의 심사서비스 제공(특허청)
미흡 (2)	경제살리기 통계 적극 개발 및 통계생산 방식의 선진화(통계청) 글로벌 농업 기술협력 네트워크 구축(농촌진흥청)

청단위 경제분야에 대해 8개 기관 16개 과제를 평가한 결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대책 및 수요자 맞춤형 조달서비스 제공 등 4개과제의 성과가 우수하였으며, 경제살리기 통계 개발 및 통계생산 방식 선진화, 글로벌 농업 기술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23〉 2009년 핵심과제 평가결과(청단위 일반행정 분야)

등급	과제명(기관 직제순)
우수 (3)	경제활성화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과감한 법제개선(법제처)
	생계형 침해범죄 근절대책(경찰청), 국민감동 수준의 해양안전 서비스 제공(해양경찰청)
보통 (15)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선도적 입법대응(법제처),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국가보훈처)
	대체복무제도 개선 및 복무관리 강화(병무청), 국방 R&D 능력 확충(방위사업청)
	선진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법질서 확립(경찰청)
	반복적 피해피해 및 고위험 대책 추진(소방방재청)
	소방119 구조·구급 서비스 고도화(소방방재청)
	국가기상 관측망의 확충 및 표준화(기상청), 국민이 신뢰하는 기상예보 서비스 제공(기상청)
	문화재 안전관리 체계 구축(문화재청), 고궁 관광 자원화(문화재청)
	안전하고 건강한 어린이 식·의약 환경 조성(식품의약품안전청)
	국민이 체감하는 식품안전관리 강화(식품의약품안전청)
	최적의 정주여건 조성(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빈틈없는 해양주권 확보 및 안보활동 강화(해양경찰청)	
미흡 (4)	보훈 의료서비스 확대(국가보훈처)
	병역의무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징병절차 개선(병무청)
	획득사업의 투명성·효율성 제고(방위사업청)
	차질 없는 건설사업 시행 및 자족기능 유지기반 조성(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단위 일반행정분야에서는 11개 기관 22개 과제를 평가한 결과, 경제 활성화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법제개선과 생계형 침해범죄 근절대책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반면, 보훈 의료서비스 확대, 병역의무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징병절차 개선 등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녹색성장

① 평가 개요

2009년은 녹색성장 평가를 처음 실시한 해로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달성을 위하여 관련 부처의 추진노력 및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정책의 추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② 평가대상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2009.7)’ 상 중점 추진과제인 22과제(18개 기관)를 평가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1기관 당 1과제를 원칙으로 하되 지식경제부 등 4개 부처는 2개 과제를 평가대상으로 하였다. 과제 성격에 따라 녹색생활, 기후변화·에너지, 신성장동력의 3개 분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평가대상 기관은 다음과 같다.

〈표 2-1-24〉 2009년 녹색성장 평가대상 기관

구분	기관명 (직제순)
부단위(13)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물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청단위(5)	소방방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기상청

③ 평가방법

정책 형성, 집행, 산출·결과 단계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세부 항목으로 분류하여 각각 점수를 배정하였다. 구체적인 평가항목과 지표는 다음과 같다.

〈표 2-1-25〉 2009년 녹색성장 평가 항목 및 평가지표

단계(배점)	평가항목	평가기준(배점)
정책형성 (30)	1. 정책목표의 적합성	1-1. 정책목표의 명료성(5)
	2. 정책내용의 타당성	2-1. 정책내용의 타당성(10)
	3. 계획수립의 적절성	3-1. 의견수렴의 충실성(5) 3-2.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절성(10)
정책집행 (30)	4. 추진과정의 합리성	4-1. 자원투입의 적절성(5) 4-2. 유관기관·정책과의 협조노력(5)
	5. 추진과정의 충실성	5-1. 추진일정의 준수성(10) 5-2. 정책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성(5)
	6. 정책확산 노력	6-1. 관련 교육, 대국민 소통·홍보, 녹색생활 확산 노력(5)
정책산출·결과 (40)	7. 성과 달성도	7-1. 성과목표 달성도(30)
		7-2. 정책효과성(10)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위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가 공동으로 민간 전문가 중심의 '녹색성장 평가단'(29명)을 구성하였다. 각 부처가 제출한 서면자료를 토대로 평가하되, 필요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정량·정성 평가를 병행하였다. 녹색성장 평가단이 일차적으로 평정한 결과를 국무총리실과 녹색성장기획단이 공동으로 확인·점검 후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과를 심의·의결하였다.

④ 평가결과

녹색생활 부문에서는 환경부의 '녹색생활 범국민 운동'이 우수한 과제로 평가되었다. 구체적으로 그린스타트, 탄소포인트제 등을 통해 녹색생활 실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녹색생활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녹색성장 선도 관광산업 육성 및 생태관광 활성화' 과제는 성공적 추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장치가 부족하여 미흡과제로 평가되었다.

기후변화·에너지 분야에서는 농업분야 녹색기술 개발 및 산업의 에너지 저소비구조를 전환하는 등 성과가 높이 평가되어 지식경제부의 '에너지저소비, 고효율 경제사회시스템 구축 및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농진청의 '기후변화 대응 녹색기술 개발 및 성장동력화'가 우수 과제로 선정되었다. 다만, 기상청의 '기후변화의 과학적 대응 역량 제고 및 신성장 동력 개발 지원' 과제는 한반도 기후변화감시 관련 적정한 목표체계 수립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신성장동력 분야에서는 중소기업형 유망 녹색기술 발굴과 중소기업 녹색 R&D 투자비중 확대를 통해 국내의 취약한 녹색 중소기업의 녹색성장 기반 강화한 점에서 중소기업청의 '녹색 중소 벤처기업 육성'이 우수과제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의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 금융위원회의 '녹색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녹색금융 활성화' 과제는 구체적 대책 미비, 정책 연계성 부족 등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3) 국정관리역량

① 평가개요

정책관리역량은 국정관리역량 평가(정책관리역량, 정책소통·홍보,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2009년에 신설되었다. 2009년 정책관리역량 평가는 2009년 부처업무보고 및 국정과제, 2008년 중점관리법안 및 2009년 입법계획 등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부처가 기울인 노력

과 성과를 관계역량·개혁역량·입법추진역량의 나누어 평가함으로써 국정성과 창출을 유도하였다

② 평가대상

정책관리역량 평가는 장관급 기관(19개) 및 차관급 기관(19개), 총 38개 기관을 대상으로 대내외적 지지확보 노력(대국회·시민단체 지지확보 및 부처간 협력도) 등을 평가하는 ‘관계역량’, 속도감 있는 정책추진·현장점검·새로운 현안문제 적극 대응 등 적극적 정책추진 여부를 평가하는 ‘개혁역량’, 2009년 입법추진계획 대비 국회제출법안 비율·하위법령 적기 마련 비율 등을 평가하는 ‘입법추진역량’을 평가대상으로 하였다.

③ 평가방법

부처에서 제출한 우수사례의 난이도와 성과정도 및 미흡사항을 바탕으로 정성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 평가단(총 11명)을 핵심과제 평가와 동일한 분과(I·II·III·IV·V)로 나누어 구성·운영하였다. 평가항목인 ‘관계역량’, ‘개혁역량’, ‘입법추진역량’ 중 개혁역량에 보다 비중을 두었고, 정책관리역량 평가시 착안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2-1-26〉 2009년 국정관리역량 평가 착안사항(예시)

평가항목	착안사항(예시)
개혁역량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계획보다 추진일정을 앞당겨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구체적 성과를 거둔 사례가 있는지 여부 • 기관장의 현장점검 등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의견수렴, 행정조치,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여 구체적인 성과를 거둔 사례가 있는지 여부 • 당초 계획하지 않았으나 새롭게 현안문제로 대두된 경우 또는 정책집행 과정 중 당초 의도하지 않거나 기대와 반대효과가 나타난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 •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 •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혁 등 공기업 선진화 방안 이행에 노력을 기울여 성과를 거둔 사례가 있는지 여부
입법추진역량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제·개정 실적 및 적시성(법제처에서 정량적으로 평가) - 2009년 입법추진계획 대비 국회제출 법안 비율 및 하위법령 적기마련 비율

④ 평가결과

관계역량에서는 대부분의 정책에 대해 전문가 의견수렴 및 유관단체·국회에 대한 지지 확보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반대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안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지 확보 노력이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에 치중되고, 비판적인 시민단체·언론 등에 대한 설득·지지 확보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개혁역량에서는 대부분의 기관이 비상경제상황에 대처하여 속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하였고, 새롭게 대두된 현안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정책의 효과성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혁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성원에게 개혁이 내재화되지 못해 부조리한 관행이 나타나고, 국가위기상황 등 미래 환경 변화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입법추진역량에서는 정부중점법안의 조속한 국회제출을 위한 관계기관의 적극적 노력에 힘입어 2009년 정부중점법안 55건 중 54건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으나, 빈번한 입법계획의 수정(추가, 철회 및 일정변경)으로 인해 정부입법계획의 신뢰성 및 예측가능성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평가결과 부단위는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환경부, 금융위원회가, 청단위는 관세청 소방방재청, 국가보훈처, 특허청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2-1-27〉 2009년 국정관리역량 기관별 평가결과

등급	기관명 (직제순)
우수 (8)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환경부, 금융위원회
	관세청, 소방방재청, 국가보훈처, 특허청
보통 (26)	교육과학기술부, 통일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고용노동부, 여성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기상청, 문화재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해양경찰청
미흡 (4)	국방부, 농림수산식품부
	법제처, 농촌진흥청

(4) 정책소통·홍보

① 평가개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정책홍보관리 평가'로 시행되었다가 2008년에는 폐지되었고 2009년부터 다시 '정책소통·홍보평가'로 신설, 특정평가부문에 포함하여 실시하였다.

2009년 정책소통·홍보평가의 목적은 국정운영의 기본방향을 반영한 중앙행정기관의 대내외 소통·홍보성과 측정과 정책홍보를 통한 추진력을 높이기 위함이었으며, 집행적이고 관리적인 홍보활동 위주의 기계적·정량적 평가를 지양하고 정책소통의 실질적인 효과를 중시하는 산출·결과 위주의 정성적 평가에 중점을 두어 평가하였다.

② 평가대상

평가대상은 39개 중앙행정기관으로 하되, 업무성격과 조직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평가하였다. 업무성격에 따라 19개 장관급 기관인 정책기관과 20개 차관급 기관인 집행기관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기관의 정원과 홍보담당 인원을 고려하여 그룹핑 하였다.

③ 평가방법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산·학·민간 홍보 및 정책전문가 중심으로 총39명의 '정책소통·홍보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하였다. 중앙행정기관이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거나 제출한 실적자료를 토대로 서면평가하고 필요시 현장조사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평가항목은 정책과 홍보의 연계성, 매체활용 홍보실적, 정책홍보의 품질, 정책소통 성과 등을 기준으로 9개의 평가지표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평가항목과 평가지표는 다음과 같다.

〈표 2-1-28〉 2009년 정책소통·홍보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단계(배점)	평가항목(배점)	평가지표(배점)
계획 (16)	1. 정책과 홍보연계(16)	1-1. 홍보협의체 운영 및 활용도(5)
		1-2. 부처간 및 대외홍보 협력 정도(11)
집행 (37±5)	2. 매체 활용홍보(22±5)	2-1. 온라인 홍보 활용도(17)
		2-2. 대언론 브리핑 충실도(5)
	2-3. 외신대상 홍보활동 수준(±5)	
3. 정책홍보품질(15)	3-1. 홍보콘텐츠 품질 및 활용도(15)	

단계(배점)	평가항목(배점)	평가지표(배점)
산출/결과 (47)	4. 정책소통성과(47)	4-1. 주요 정책 기획홍보 성과(30) 4-2. 정책기사 반영도(10) 4-3. 기관장 홍보활동 수준(7)

④ 평가결과

경제살리기, 일자리창출 및 친서민정책, 저탄소·녹색성장 등 주요 국정현안의 범정부적인 홍보협력 강화로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의 지지기반과 추진동력 확대하는 데 홍보 역점을 둔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각 부처에서는 소극적 언론활동 위주의 홍보에서 ‘정책형성 - 집행 - 사후홍보’의 전략적인 접근과 정책현장방문 등을 통한 활발한 소통·홍보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대변인 회의, 국정과제 전략협의회 등을 활용한 홍보상황 공유 및 홍보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모바일이나 정책블로그 등 새로운 홍보매체 발굴과 스토리텔링 기법, 입소문 마케팅 도입 등 홍보수단의 다양화로 국민과 언론대상 정책정보 서비스를 확대하는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 또한, 외신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국내외 선순환 홍보를 추진하고 정책 간행물 품질향상으로 매체 활용도를 높인 점, 주요 정책에 대한 기획홍보가 확산되고 기관장의 적극적인 홍보활동 등으로 위기관리 대응성이 향상된 점 등을 높이 평가하였다.

다만, 부처 간 협력홍보나 홍보효과 분석을 통한 환류, 정책특성별 차별화된 홍보대책 등은 다소 미흡하여 향후 개선 보완해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국가경제나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에 대해 부처간·당정간 정책협조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정책추진 이후의 홍보효과 분석을 통해 주요 정책의 이니셔티브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이슈관리가 필요한 정책이나 보다 많은 정보제공이 필요한 정책 등 정책의 특성에 따라 홍보수단별로 차별화된 대응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항목별로는 매체활용 홍보나 정책홍보 품질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었고, 주요 정책의 기획홍보 성과, 정책기사 반영도 등 정책소통 성과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기관별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1-29〉 2009년 정책소통·홍보 기관별 평가결과

등급	기관명(직제순)
우수(8)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국세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해양경찰청
보통(23)	교육과학기술부,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고용노동부, 여성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기상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미흡(8)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방송통신위원회
	법제처, 국가보훈처, 검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5) 규제개혁

① 평가개요

2009년 규제개혁 평가는 자율적, 적극적, 효과적 규제개혁을 유도하기 위해 각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추진노력과 성과를 측정함으로써 정책의 추동력을 확보하고 규제를 받는 수요자 입장에서 성과중심으로 실적을 평가하고 ‘몇 건을 개선했나’ 보다는 ‘얼마나 좋아졌느냐’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실시하였다.

② 평가대상

등록규제가 6개 이상인 30개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실적과 성과를 부단위(18개)와 청단위(12개)로 구분하여 평가하였고, 등록규제가 5개 이하인 10개 기관은 평가에서 제외하였다. 특히, 부단위와 청단위 내에서도 등록규제의 수를 기준으로 평가대상 기관을 그룹핑하여 평가의 신뢰성과 수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③ 평가방법

규제개혁 추진에 수요자 입장을 반영하고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 합동 규제개혁 평가단’(총 10명)을 구성하여 평가하였다. 평가지표의 특성에 따라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병행하고, 고객만족도와 규제영향분석의 충실성에 대한 평가는 전문조사(리서치기관) 및 연구기관(한국행정연구원)을 활용하였다. 평가지표에서 규제개혁 추진 역량, 홍보와 의견수렴의 적극성 등이 신설되고, 행정조사 정비실적은 삭제되었다. 구체적인 평가항목과 평가지표는 다음과 같다.

〈표 2-1-30〉 2009년 규제개혁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단계(배점)	평가항목(배점)	평가지표(배점)
계획 (15)	1. 추진기반의 적실성(15)	1-1. 규제개혁 추진역량(5) 1-2. 규제개혁 과제발굴의 적극성(10)
집행 (30)	2. 시행의 적정성(30)	2-1. 신설·강화 규제의 적절성(20) 2-2. 홍보와 의견수렴의 적극성(10)
산출/결과 (55)	3. 규제개혁 성과(35)	3-1. 규제개혁과제 이행실적(20) 3-2. 규제개혁 효과(15)
	4. 규제개혁 만족도(20)	4-1. 규제개혁만족도(20)

④ 평가결과

2009년은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미래 산업대비를 위한 규제개혁에 중점을 두고, 일자리 창출과 투자촉진을 위한 주택·토지·기업·서비스업·환경·노동관련 규제개혁의 범정부적 추진에 역량을 집중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2009년에 정비할 규제개혁과제 총 1,327개를 발굴하여 855개 과제를 완료(계획 800개 대비 106.9%)하였고, 경기회복 시까지 일정기간 규제를 유예·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제도’를 도입하여 창업·투자로 해소, 영업활동상의 부담경감, 중소기업 애로해소 등 280개 과제를 새로 발굴하는 한편, 신성장동력 분야 투자·창업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 등 미래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신성장동력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였다.

또한, 전 부처를 대상으로 미등록규제를 일제조사·등록(국토해양부 등 18개부처 2,011건)하고 불필요한 미등록규제는 정비함으로써 규제의 투명성과 개혁의 체감도를 제고하고, 모든 등록규제를 대상으로 일정주기로 규제내용을 재검토하는 규제일몰제를 확대도입하여 규제의 현실적합성과 타당성을 높인 점, 규제심사와 규제등록 등 효율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한 점 등은 큰 성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법률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이 지연되는 등 규제개혁 성과가 일부 미진하고 규제개혁 홍보와 의견수렴의 적극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투자환경 개선,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련법안 처리가 지연되었고, 일부 부처에서 규제개혁 홍보나 의견수렴이 형식적이거나 기관중심의 일방통행식 홍보를 실시한 점 등은 개선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평가항목별로는 규제개혁 추진기반의 적실성과 규제개혁 만족도는 높은 편이

나 신설·강화규제의 적절성, 홍보와 의견수렴 등 시행의 적정성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기관별로는 부단위 기관이 평균 67.7점, 청단위 기관이 평균 69.3점으로 청단위 기관이 다소 높게 평가되었다.

〈표 2-1-31〉 2009년 규제개혁 기관별 평가결과

등급	기관명 (직제순)
우수 (7)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관세청, 중소기업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 (16)	기획재정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소방방재청, 특허청, 경찰청, 국세청, 산림청, 문화재청
미흡 (7)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여성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보훈처, 기상청, 해양경찰청

(6) 국민만족도

① 평가개요

2009년 국민(정책·민원)만족도 평가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 민원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직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다만 2009년 하반기의 경우, 정책만족도는 업무유형별 비교분석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과제별·업무유형별로 평가하고, 민원만족도는 종전대로 부·청단위로 평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② 평가대상

평가 대상기관은 3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평가 대상과제는 정책만족도의 경우, 각 중앙행정기관별 핵심과제 95개(부단위 3개, 청단위 2개)를 대상으로 하였고, 민원만족도의 경우, 부처별 일반·인터넷 민원행정서비스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③ 평가방법

평가방식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민간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우선 정책만족도의 경우, 일반국민(3,900명)

을 주된 대상으로 하되, 분야별로 관련 민간전문가(1,710명)를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평가결과
 과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평가지표는 크게 항목만족도와 체감만족도로 구성되었
 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1-32〉 2009년 정책만족도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세부 설문내용)
항목 만족도 (70%)	민주성	• 정책수립 · 집행과정에서 고객의 의견수렴 및 공개와 소통을 통한 정책협조 노력 정도
	적정성	• 전략목표, 성과목표, 정책수단 등 정책의 구체적내용이 적정하게 설정된 정도
	대응성	• 정책추진 과정에서 정책환경의 변화를 극복하고 문제점을 시정 · 보완하기 위해 노력한 정도
	효과성	• 정책이 당초에 의도한 계량 · 비계량적 성과가 실제로 나타난 정도
체감만족도(30%)		• 해당 정책 전반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 · 총체적 만족도

한편 민원만족도의 경우, 일반민원과 인터넷 민원의 민원인 모집단을 확보한 후 무작위
 표본추출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각 기관별로 250명 이상의 표본을 추출하여 총
 12,961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평가지표는 정책만족도와 마찬가지로 항목만족도와 체감
 만족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는 아래 표와 같다.

〈표 2-1-33〉 2009년 민원만족도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세부 설문내용)
항목 만족도 (70%)	접근성	• (인터넷) 민원신청 시 인터넷 홈페이지 접근과 서식 입력이 쉽고 간편한 정도
	신속성	• (일반) 민원 담당공무원과의 면담 · 통화와 서식 작성이 쉽고 간편한 정도
	대응성	• (인터넷) 인터넷 민원시스템에서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쉽게 알 수 있는 정도
		• (일반) 민원 담당공무원이 친절하고 정중하게 민원인을 응대하는 정도
공정성		• (인터넷 · 일반) 민원처리 결과의 근거나 이유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도
체감만족도(30%)		• (인터넷 · 일반) 해당 민원서비스 전반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 · 총체적 만족도
* 민원난이도		• 본인 민원의 처리를 위해 해당기관이 겪을 것으로 예상 되는 어려움의 정도에 대한 민원인의 인식

④ 평가결과

2009년 39개 중앙행정기관(95개 핵심과제) 정책만족도 평균(60.97점)은 2008년(60.67점) 대비 0.3점 상승하였다. 기관의 정책만족도 평균은 59.81점으로 2008년(58.90점) 대비 0.91점 상승하였고, 기관은 62.07점으로 2008년(62.22점) 대비 0.15점 하락하였다.

과제별·업무유형별 평가결과를 보면, <부단위 경제 분야>에서는 7개 부단위 21개 과제 중 가장 높은 만족도를 얻은 과제는 지식경제부의 '실물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별 대응'(64.19점)이고,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54.62점) 과제가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구체적인 과제별 평가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2-1-34〉 2009년 정책만족도 평가결과(부단위 경제 분야)

등급	과제명 (직제순)
우수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물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산업별 대응(지식경제부) • 총력 수출지원 체제 가동(지식경제부) • 신성장 동력 집중 육성 및 새로운 투자기회 창출(지식경제부) • 서민생활의 안정 지원(방송통신위원회)
보통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기획재정부) • 소비투자 활성화를 통한 각종 경기 진작대책 추진(기획재정부) • 식품산업 육성(농림수산식품부) • 농업 경쟁력 제고(농림수산식품부) •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 안정(국토해양부) • 위기산업 지원과 경쟁력 강화(국토해양부) • 지역경제 활성화(국토해양부) • 디지털 미디어 활성화 추진(방송통신위원회) •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방송통신위원회) • 서민보호를 위한 반칙행위 감시 및 예방 강화(공정거래위원회) •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공정거래위원회) •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금융위원회) • 금융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금융위원회) • 기업자금지원 및 구조조정 강화(금융위원회)
미흡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선진화(기획재정부) • 농·수협 개혁(농림수산식품부) • 대기업 집단에 대한 규제완화(공정거래위원회)

<부단위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6개 부단위 18개 과제 중 환경부의 '폐자원 에너지화를 통한 자원순환사회 구축'(63.50점)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얻었고, 고용노동부의 '비정규직 고

용개선 및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55.37점)이 가장 낮은 만족도를 얻었다. 구체적인 과제별 평가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2-1-35〉 2009년 정책만족도 평가결과(부단위 사회문화 분야)

등급	과제명 (직제순)
우수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속의 문화체육 활성화(문화체육관광부) 폐자원 에너지화를 통한 자원순환 사회 구축(환경부) 생명력 넘치는 국토환경 보전과 생태체험 활성화(환경부) 여성의 고용촉진 및 취업지원 시스템 강화(여성부)
보통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향수 기회 확대-희망 대한민국 프로젝트 추진(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 산업 육성(문화체육관광부) 노후 사회보장 체계의 종합적 접근과 재원의 안정적 수급(보건복지가족부) 민생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보건복지가족부) 미래세대 투자를 위한 휴먼 뉴딜 추진(보건복지가족부)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먹는물 공급(환경부) 노사간 자율협력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지원(고용노동부) 청년 취업 촉진 강화(고용노동부) 아동·여성 안전 사회 만들기(여성부)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속의 여성정책 추진(여성부)
미흡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교육비 절감(교육과학기술부) 기초원천 연구역량 강화(교육과학기술부) 대학의 자율 및 책임 확보(교육과학기술부) 비정규직 고용개선 및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고용노동부)

〈부단위 외교안보·일반행정 분야〉에서는 6개 부단위 18개 과제 중 국방부의 '북한 대남위협 대응'(62.02점) 가장 높은 만족도를 얻었고, 행정안전부의 '서민생활 안정지원 및 일자리 신규 창출'(56.05점) 과제가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구체적인 과제별 평가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2-1-36〉 2009년 정책만족도 평가결과(부단위 외교안보·일반행정 분야)

등급	과제명 (직제순)
우수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이탈주민 관리 및 국내 정착 지원(통일부) 북한 대남위협 대응(국방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외교통상부) 한미 군사동맹의 발전적 관리(국방부)

등급	과제명 (직제순)
보통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대화 추진 및 상생공영정책 공감대 강화(통일부) •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협력 추진(통일부) • 경제살리기 외교 강화(외교통상부) •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안정 추구(외교통상부) • 서민·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적 지원 강화(법무부) • 질서와 통합을 향한 외국인 정책 추진(법무부) • 자유민주적 법질서 확립(법무부) • 국방개혁 조정·발전(국방부) • 권익보호 시각지대 해소로 경제위기 극복지원(국민권익위원회) • 공직 부조리 근절을 통한 국정신뢰 증진(국민권익위원회)
미흡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경제위기 조기극복(행정안전부) • 시대에 부응하는 정부조직·인사 관리(행정안전부) • 서민생활 안정지원 및 일자리 신규 창출(행정안전부) • 경제활력 저해요인 발굴 개선(국민권익위원회)

〈청단위 경제 분야〉에서는 8개 청단위 16개 과제 중 산림청의 ‘산림자원의 순환이용 활성화’(64.44점) 과제가 가장 높은 만족도를 얻었고, 국세청의 ‘경제살리기·일자리 창출 지원 및 서민생활 안정 추진’(58.72점) 과제가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구체적인 과제별 평가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2-1-37〉 2009년 정책만족도 평가결과(청단위 경제 분야)

등급	과제명 (직제순)
우수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자원의 순환이용 활성화(산림청) • 세계 최고수준의 심사서비스 제공(특허청) •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글로벌 국제협력 강화(특허청)
보통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기반 확충 및 숨은 세원 발굴을 통한 재정수입 확보(국세청) • 철저한 관세 국경 관리 강화로 사회안전 및 국민생활 보호(관세청)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대책 총력 추진(관세청)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조달서비스 제공(조달청) • 조달사업을 통한 중기지원(조달청) • 통계정보 서비스의 강화(통계청) • 글로벌 농업 기술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농촌진흥청) • 아시아 산림 녹화를 주도하는 녹색강국 구현(산림청) • 창업활성화 지원(중소기업청) •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애로 지원(중소기업청)
미흡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살리기·일자리 창출 지원 및 서민생활 안정 추진(국세청) • 경제살리기 통계 적극 개발 및 통계생산 방식의 선진화(통계청) • 열린연구·현장연구·실용연구 및 수요자 중심 생활공감 보급체계 구축(농촌진흥청)

〈청단위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12개 청단위 23개 과제 중 가장 높은 만족도를 얻은 과제는 소방방재청의 ‘소방 119 구조·구급 서비스 고도화’(67.80점)이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차질없는 건설사업 시행 및 자족기능 유치기반 조성’(54.91점)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구체적인 과제별 평가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2-1-38〉 2009년 정책만족도 평가결과(청단위 일반행정 분야)

등급	과제명 (직제순)
우수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훈 의료서비스 확대(국가보훈처) • 병역의무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징병절차 개선(병무청) • 소방119 구조·구급 서비스 고도화(소방방재청) • 국민이 신뢰하는 기상예보 서비스 제공(기상청) • 빈틈없는 해양주권 확보 및 안보활동 강화(해양경찰청) • 국민감동 수준의 해양안전 서비스 제공(해양경찰청)
보통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활성화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과감한 법제개선(법제처)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선도적 입법대응(법제처) •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국가보훈처) • 대체복무제도 개선 및 복무관리 강화(병무청) • 국방 R&D 능력 확충(방위사업청) • 생계형 침해범죄 근절대책(경찰청) • 선진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법질서 확립(경찰청) • 반복적 수해피해 및 고위험 대책 추진(소방방재청) • 국가기상 관측망의 확충 및 표준화(기상청) • 고공 관광 자원화(문화재청) • 어린이 대상 식품·의약품 안전 특별관리(식품의약품안전청) • 신속하고 철저한 식품안전사고 예방체계 구현(식품의약품안전청)
미흡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민주적 법질서 확립(대검찰청) • 획득사업의 투명성·효율성 제고(방위사업청) • 문화재 안전관리 체계 구축(문화재청) • 최적의 정주여건 조성-주변지역 계획적 관리 포함(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차질없는 건설사업 시행 및 자족기능 유치기반 조성(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09년 39개 중앙행정기관의 민원만족도 평균은 72.36점으로 2008년(67.03점) 대비 5.33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민원·인터넷민원만족도 동반 상승에 따른 것으로, 특히 일반민원의 상승폭(3.88점)에 비해 인터넷민원 상승폭(5.85점)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관별로 평가결과를 보면, 부단위 19개 기관 민원만족도 평균은 68.27점으로, 행정안전부가 80.29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여성부는 62.10점으로 부단위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구체적인 기관별 평가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2-1-39〉 2009년 민원만족도 평가결과(부단위)

등급	과제명 (직제수)
우수(4)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보통(11)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미흡(4)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부, 국토해양부

한편, 청단위 20개 기관 민원만족도 평균은 75.54점으로, 중소기업청이 90.43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국세청은 66.19점으로, 청단위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구체적인 기관별 평가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2-1-40〉 2009년 민원만족도 평가결과(청단위)

등급	과제명 (직제수)
우수(4)	기상청,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해양경찰청
보통(12)	국가보훈처,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산림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미흡(4)	법제처, 국세청, 대검찰청, 경찰청

3) 2010년

- 경제 활력 제고 및 선진화 개혁 가속화를 지원,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 기조를 뒷받침 했다.
- ‘일자리창출 과제’를 평가부문에 추가하였다. 상반기에는 2010년 업무계획 전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에는 주요 정책과제의 국정관리역량 등을 종합 평가했다. 또한 과제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했다.
- 2009년 대비 1개 부문 평가 내역 신설, 39개 중앙행정기관 대상으로 7개 부문에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용했다. 하반기 종합평가 결과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정부업무평가결과보고회’를 통해 발표했다. 기관별 등급화로 부처 간 경쟁을 유도하였다.

(1) 핵심과제

① 평가 개요

2010년 특정평가와 관련하여 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많은 부처에서 업무계획 점검과 특정평가의 중복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에서는 부처의 평가업무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평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상반기에는 2010년 업무계획 전 과제를 대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평가에 갈음하고, 하반기에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기로 결정하였다.

2010년 평가방식에 있어 2009년과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대상과제가 한 부처 내에서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과제의 중요도와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과제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함으로써 평가의 타당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둘째, 세부평가지표를 16개에서 8개로 크게 단순화하였다. 셋째, 평정에 있어 동일기관내 과제에 대해 소관 민간전문가들이 교차평가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넷째, 평가결과를 기관별로 등급화하였다.

② 평가 대상

38개 기관 95개 과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대상 기관은 장관급 3개 분야, 차관급 2개 분야, 총 5개 분과로 분류하였다. 평가대상과제는 각 부처 핵심기능과 서민생활 안정 등 국정운영 기초와 관련된 과제들을 중심으로 부처 업무보고의 핵심과제 또는 성과관리시행 계획상 성과목표 수준의 과제로 선정하였는데, 각 부처에서 제출한 핵심과제(3~5개)를 토대로 선정하되, 과제별로 업무범위 및 비중 등 가중치를 설정·반영하였다.

〈표 2-1-41〉 2010년 핵심과제 평가대상

구분	기관명 (직제순)
부 단위 (19개 기관 57개 과제)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청 단위 (19개 기관 38개 과제)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법제처, 국가보훈처,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기상청, 문화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해양경찰청

③ 평가방법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핵심과제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는데, 그 구성 및 운영방식은 2009년 하반기 평가시와 동일하다.

평가지표에 있어서는 2009년 하반기 평가 시와 비교할 때 큰 변화가 있었다. ‘정책형성-정책집행-정책성과’ 등 정책단계별로 나누고 단계별 배점은 동일하지만 평가항목(3개)과 세부평가지표(6개)를 크게 단순화하였다. 구체적인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는 아래와 같다.

〈표 2-1-42〉 2010년 핵심과제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단계(배점)	평가항목(배점)	평가지표(배점)
형성(15)	1. 계획수립의 적절성(15)	1-1. 정책수단의 적절성(8) 1-2. 의견수렴 및 관련기관 협의의 적절성(7)
집행(25)	2. 추진과정의 충실성(25)	2-1. 추진일정의 준수성(10) 2-2. 전략적 대응성(15)
성과(60)	3. 성과 달성 및 파급성(60)	3-1. 성과목표 달성도(35) 3-2. 정책효과성(25)

각 부처에서 제출한 10월말 기준 핵심과제별 추진실적자료를 토대로 전문가 평가단이 정책단계별 평가지표에 따라 정성·정량평가를 실시하였다. 특히, 계획 및 집행단계에 대해서는 전문가 평가결과와 함께 부처별 주요업무계획 과제에 대한 최근 3/4분기까지의 점검결과를 반영하였다.

또한 사전에 분과별로 민간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부처 업무설명회’를 개최하여 민간전문가들의 해당과제들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여 피평가기관들에게 소명기회를 제공하였다. 아울러 부처 내 핵심과제 범위와 비중 등 가중치를 고려하고, 해당부처 담당 민간전문가 전문가가 정량평가에 참여하는 등 평가결과의 공정성·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④ 평가결과

2010년 평가는 기관별로 등급화하면서도 정책단계별, 평가지표별로 평정점수와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기관별 평가결과는 장관급과 차관급 기관으로 나누어 ‘최우수-우수-보통-미흡’으로 등급화하였다.

분야별로는 경제성장률 등 가시적 성과가 뚜렷한 경제분야가 높은 평가를 받았고, 일반행

정 및 사회문화 분야는 무난한 평가를 받았으나, 국민적 우려가 집중되었던 국방 및 외교안보 분야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책단계별로는 모든 기관이 정책형성, 집행, 성과단계의 추진실적 등이 큰 편차 없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정책형성단계(부 74.6점, 청 77.7점)보다는 성과단계(부 78.9점, 청 79.1점)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다만, 일부기관에서는 정책형성단계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 설정 및 연계가 미흡하였고, 정책집행단계에서는 정책외건 변화에 대응하여 불필요한 논란 방지 등 전략적 대처 능력이 부족하였으며, 정책성과단계에서는 정량적인 정책목표는 상당부분 달성하였으나,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의 질적인 성과달성은 미흡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기관별 평가결과, 부단위 77.7점, 청단위 78.9점으로 청단위 기관이 다소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부단위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청단위에서는 특허청과 해양경찰청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표 2-1-43〉 2010년 핵심과제 기관별 평가결과

등급	기관명(직제순)
최우수(3)	기획재정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우수(9)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국세청, 통계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보통(23)	교육과학기술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관세청, 조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미흡(3)	국방부
	금융위원회, 기상청

(2) 일자리 창출 과제

① 평가 개요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일자리 대책의 추진 노력 및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개선·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0년부터 특정평가에 포함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② 평가대상

주요 일자리 대책을 실시하고 있는 10개 기관(부 9, 청 1)의 15개 과제 62개 세부과제를 대상으로 하였다.

〈표 2-1-44〉 2010년 일자리 창출 과제 평가대상기관

구분	기관명(직제순)
부단위(9)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
청단위(1)	중소기업청

③ 평가방법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해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일자리 대책 평가단'을 통해 평가하였으며, 정책만족도는 민간조사기관을 활용하였다. 평가항목에서 계획과 집행단계 보다는 성과단계에 비중을 두어 평가하되, 단기 과제와 장기 과제를 구분하여 배점을 설정하였다.

〈표 2-1-45〉 2010년 일자리 창출 과제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정책형성 (20, 단기) (40, 장기)	1. 정책목표의 적절성	1-1. 일자리창출 목표와의 부합·연계성 (5), (10) 1-2. 정책목표 설정의 적극성 (10), (20)
	2. 정책추진 기반의 확보	2-1. 자원 확보 및 배분의 적절성 (5), (10))
정책집행 (25, 단기) (35, 장기)	3. 추진과정의 적절성	3-1. 추진계획의 진척도 (15), (15) 3-2. 유관기관·정책과의 협조 노력 (5), (10)
	4.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성	4-1. 모니터링 및 대국민 소통·홍보 노력 (5), (10)
정책성과 (55, 단기) (25, 장기)	5. 목표달성도	5-1. 성과목표치의 달성도 (25), (10)
	6. 정책효과	6-1. 일자리 창출에의 파급효과·기여도 (20), (5)
	7. 정책만족도	7-1. 일자리 대책 정책 만족도 (10), (10)

④ 평가결과

다양한 재정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간병·장기요양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신설하였다. 또한, 실물경제 활성화로 성장을 통한 고

용창출의 선순환 기반을 복원하여 고용률 향상과 실업률 하락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일자리의 질적 측면에서의 보완이 숙제로 남아있고, 지속적인 규제완화, 제도개선 등을 통해 민간이 경쟁력을 확보하여 일자리 창출을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2-1-46〉 2010년 일자리 창출 과제 기관별 평가결과

등급	기관명(직제순)	과제명
최우수(1)	중소기업청	창업 및 취업연계 적극 지원
우 수(1)	지식경제부	산업의 일자리 창출력 확대
보 통(6)	기획재정부	고용창출 지원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 서비스산업 선진화
	행정안전부	정부차원 일자리 창출노력 강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서비스산업 선진화 노동취약계층 노동참여 통한 서민 일자리 창출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 활성화·내실화,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제고 구인·구직, 취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노동시장 수급구조 개선
	여성가족부	여성의 고용촉진 및 취업지원 강화
	금융위원회	고용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
미 흡(2)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시스템 선진화를 통한 실용형 인재육성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 규제완화

(3) 녹색성장

① 평가개요

2010년에는 2009년에 비해 녹색성장 정책추진 여건이 성숙된 만큼 성과중심의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적절히 병행하였다.

② 평가대상

평가대상 기관은 녹색성장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한 26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기관별 업무와 녹색성장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4개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평가기관 및 그룹은 다음과 같다

〈표 2-1-47〉 2010년 녹색성장 평가대상 기관

구분	그룹	기관명 (직제순)
부단위 (16)	1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2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청단위 (10)	3	소방방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기상청
	4	법제처, 통계청, 방위사업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평가대상 과제는 기관별로 1개의 대과제를 할당하되, 녹색성장 선도 부처(지식경제부, 환경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의 경우 각각 2개의 대과제를 할당하여, 총 30개 대과제로 구성하였다.

③ 평가방법

계획, 추진, 산출·결과 단계로 나누어 평가하였으며,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표 2-1-48〉 2010년 녹색성장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단계(배점)	평가항목(배점)	평가지표(배점)
계획 (20)	1. 계획수립의 적절성(20)	1-1. 정책목표의 명료성 (5) 1-2. 정책내용의 타당성 (5) 1-3.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절성(10)
추진 (30)	2. 추진과정의 적절성(25)	2-1. 추진과정의 효율성 (5) 2-2. 추진일정 준수 정도 (10) 2-3. 추진 과정상 협조노력 (10)
	3. 정책소통·확산노력(5)	3-1. 정책소통·교육·홍보 노력 (5)
산출/결과 (50)	4. 성과 달성도(50)	4-1. 성과목표 달성도 (40) 4-2. 정책 효과성 (10)

각 부처에서 10월말 기준으로 최종실적을 제출하고 민간전문가들이 그룹별로 평가지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였다. 그 후, 각 그룹별 분과위원장 주재로 그룹내 조정회의를 개최, 부처·과제별 비교를 통해 채점결과를 조정하는 한편, 민간평가위원들이 평가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였다. 작성된 초안에 대해 부처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평가보고서와 평가결과를 확정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녹색성장기획단의 공동 확인·점검을 거친 후,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하였다.

④ 평가결과

2010년에는 녹색성장 정책추진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녹색성장 특정평가를 통해 각 부처별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녹색성장 저변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 결과, 녹색성과와 연관성이 높은 부처에서는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는데,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형 유망 녹색기술 발굴·선정' 사례나, 농림수산물부의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 등의 사례를 들 수 있다.

평가대상 부처로 새로 선정되거나, 녹색성과와 연관성이 적은 일부 부처에서도 녹색성장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가 달성되었는데, 방위사업청의 '친환경·저에너지 국방기술개발',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분야 녹색성장 기반 마련' 등의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일부 평가대상 부처에서는 과제선정의 부적절,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적극성 부족 등이 개선 필요사항으로 지적되었는데, 부처의 기존 업무를 녹색성장으로 포장하여 평가과제로 제시한 'Green Wash' 사례가 발견되었고, 일부 부처는 중요한 녹색성장 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 달성이 용이한 평가과제를 제시하는 등 소극적 태도가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례도 있었다.

평가 항목별로 평가결과를 비교할 경우, 전반적으로 추진과정의 적절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계획수립의 적절성 및 성과 달성도에서 부처 간 편차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성과지표를 무의미한 정량지표나 소극적으로 제시한 기관, 성과의 질적 충실도가 미흡한 부처에 대해서는 낮은 평점이 부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4) 정책관리 역량

① 평가개요

2010년 정책관리 역량은 평가지표에 갈등관리·위기관리 역량 및 통계 선진화 기반조성 노력 등을 추가하면서 평가지표를 보다 구체화하였다. 또한 2010년 부처 업무보고·국정과

제, 2009년 중점관리법안 및 2010년 입법계획 등 부처의 전반적인 정책 활동을 포괄하되 핵심과제 등 타 평가부문과의 중복은 제외하도록 하였다.

② 평가대상

정책관리역량 평가는 장관급(19) 및 차관급(19) 기관, 총 38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책이슈 선제적 발굴·대응, 갈등관리와 위기관리 노력 및 성과 등 ‘정책문제 관리’, 이해관계자 지지 확보, 부처 간 협력도, 업무계획 이행관리, 통계 선진화 기반조성 노력 등 ‘정책과정 관리’, 대 국회 지지 확보 및 대응 노력, 법령 준비의 신속성 등 ‘정책성과 관리’를 평가대상으로 하였다.

③ 평가방법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민간전문가 평가단’을 구성, 핵심과제 부문 평가와 동일하게 5개 분야별로 분과를 나누어 각 부처에서 제출한 사례 및 실적자료를 토대로 평가 지표에 따라 주로 정성적으로 평가하되 정량평가를 병행하였다. 또한 각 분과별로 ‘부처업무 설명회’를 개최, 부처의 정책추진 역량에 대한 평가단의 이해도 제고 및 피평가기관의 소명 기회를 제공하였다. 평가항목 중 ‘정책과정 관리’에 보다 비중을 두어 평가하였는데, 구체적인 평가항목과 평가지표는 다음과 같다.

〈표 2-1-49〉 2010년 정책관리역량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구분(배점)	평가항목(배점)	평가지표(배점)
정책문제 관리 (30)	1. 이슈 대응(30)	1-1. 정책이슈 선제적 발굴·대응 정도(10) 1-2. 갈등관리 노력 및 성과(10) 1-3. 위기관리 노력(10)
	2. 조정·통합(15)	2-1. 정책 이해관계자 지지확보 활동의 적극성(10) 2-2. 부처 간 협력도(5)
정책과정 관리 (40)	3. 집행관리·지원 (25)	3-1. 통계 선진화 기반조성 노력(10) 3-2. 업무계획 이행·관리 노력(15) 3-3. 수시 현안과제 개선조치사항 이행·관리 노력(감점: -5~0)
	4. 입법성과(30)	4-1. 대 국회 지지 확보 및 대응 노력(5) 4-2. 법령 준비의 신속성(15) 4-3. 주요법안 처리 노력 및 성과(10)

④ 평가결과

정책문제에 대한 이슈 대응, 정책집행 관리·지원, 입법 노력 등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단위 기관은 조정·통합 능력보다는 이슈 대응 및 입법 성과 등이, 청단위 기관은 이슈 대응 능력 보다는 집행관리·지원 등이 각각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정책이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사전·사후 대응을 철저히 하고, 다양한 의견에 대한 조정·통합 능력의 제고로 정책의 추진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처별 통계 역량 및 주요업무과제 추진상황 관리와 중요 입법 등 쟁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외활동 강화가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 평가되었다.

기관별 평가결과, 정책관리역량 최우수기관은 고용노동부가 선정되었고, 부단위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가 청단위는 조달청·통계청·농촌진흥청·특허청·해양경찰청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2-1-50〉 2010년 정책관리역량 기관별 평가결과

등급	기관명 (직제순)
최우수 (1)	고용노동부
우수 (9)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조달청, 통계청, 농촌진흥청, 특허청, 해양경찰청
보통 (25)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국가보훈처, 국세청, 관세청, 병무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미흡 (3)	교육과학기술부
	방위사업청, 문화재청

(5) 정책소통·홍보

① 평가개요

중앙행정기관의 정책홍보 추진노력을 평가·환류함으로써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체감도를 제고하고, ‘국격제고, 친서민정책, G20 정상회의’ 등 범정부적 아젠다에 대한 충실한 홍보기획, 부처간 홍보협력 활성화, 대내외 홍보협의체 활용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였다. 또한, 변화된 홍보환경에 대응한 뉴미디어 홍보 활성화와 정책홍보 활동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과 노력을 유도하고자 관련 평가지표에 대한 배점을 상향조정하였다.

② 평가대상

2009년과 같이 3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하되, 기관규모와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 기관을 분류하였다. 기본적으로 업무특성에 따라 19개의 정책기관과 20개의 집행기관으로 구분하고, 지표에 따라 정원과 홍보담당인원 등 조직특성을 감안한 분류도 병행하였다.

③ 평가방법

공적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관련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정책홍보 평가단' (총25명)을 운영하였으며, 평가지표의 특성에 따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적절히 병행 활용하였다. 평가항목은 2009년과는 달리 '홍보기획 - 활동 - 성과' 등 3개 항목으로 단순화하고, 주요 정책 홍보계획의 충실성, 홍보콘텐츠 활용도 등 2개 평가지표를 신설하는 등 평가항목 · 지표 및 배점을 일부 개편하였다.

〈표 2-1-51〉 2010년 정책소통 · 홍보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기획 (20)	1. 정책홍보 기획(20)	1-1. 주요 정책 홍보계획의 충실성(10) 1-2. 범부처 홍보계획과의 연계(5) 1-3. 홍보협의체 활용도(5)
활동 (35)	2. 정책홍보 활동(35)	2-1. 뉴미디어 홍보 활용도(20) 2-2. 대언론 브리핑 충실도(5) 2-3. 외신대상 홍보활동 수준(5) 2-4. 홍보콘텐츠 활용도(5)
성과 (45)	3. 정책홍보 활동 성과(45)	3-1. 주요 정책 기획홍보 성과(25) 3-2. 정책기사 반영도(10) 3-3. 기관장 홍보활동 수준(10)

④ 평가결과

'대국민 정책소통 강화'라는 범정부 홍보기조 하에서 각 부처는 핵심 정책성과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정책홍보 활동을 실시하였다. 국격제고, 친서민정책, 저출산 대책 등 범정부적 아

젠다에 대한 부처 간 유기적 협력홍보 활동이 활성화되었고, 정부출범 2주년과 G20정상회의 등 주요계기를 활용한 범정부적 사전 홍보기획 및 다양한 홍보활동이 돋보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정책블로그의 민간포털 연계 활용이외에도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등 다양한 SNS를 정책홍보에 적극 적용하고, 스마트폰 확산에 발맞추어 선도적으로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과 모바일 앱 개발로 여론의 관심을 유도하고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였다. 반기별 정책홍보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을 통해 각 부처의 정책홍보 기획역량과 전문성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정책현장방문, 방송프로그램 출연, 개인 트위터 활용 등 기관장의 정책홍보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요 정책홍보 시 민관 홍보협의체를 적극 활용하여 홍보효과성을 높이려는 노력과 정책특성을 반영한 홍보콘텐츠 구성·활용노력 등은 전반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문으로 평가되었다. 홍보전략 수립부터 평가단계까지 민간전문가, 관련 민간단체, 유관기관 등과의 의견수렴과 협력홍보가 긴요하나 대체로 소극적이고 형식적으로 협의체를 운영하고, 일방적 정책정보 전달위주의 홍보책자 발간 등 공급자 중심의 홍보콘텐츠 제작·배포하고 있는 점 등은 향후 개선해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2-1-52〉 2010년 정책소통·홍보 기관별 평가결과

등급	기관명(직제순)
최우수(2)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우수(6)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국민권익위원회
	관세청, 소방방재청, 중소기업청
보통(23)	기획재정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가보훈처, 국세청, 조달청, 통계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미흡(8)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법제처, 대검찰청, 병무청, 기상청

(6) 규제개혁

① 평가 개요

2010년 규제개혁 평가는 ‘국민생활 불편 규제 정비노력, 규제개혁 성과 홍보, 2단계 규제일

물제 적용' 등 규제개혁 중점과제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양적 규제정비 실적 외에 질적인 규제개혁 노력과 복합적 규제개혁과제(전략과제)의 추진노력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였다. 전년도와는 달리 규제개혁 계획단계의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을 일부 상향조정하였다.

② 평가대상

등록규제가 5개 이하인 9개기관¹⁾을 제외한 31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2009년보다 1개 기관 증가)으로 하였으며,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부단위 기관 18개와 청단위 기관 13개를 등록 규제의 수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③ 평가방법

2009년과 같이,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 10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규제개혁 평가단'을 운영하였다. 평가지표의 특성에 따라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병행 하였으며, 규제개혁과제 발굴 등 정량적 항목은 평가산식에 따라 점수를 산출하고 규제개혁 효과, 규제심사지침 준수 등 정성적 항목은 규제개혁 평가단과 규제개혁실에서, 고객만족도와 규제영향분석의 충실도에 대한 평가는 전문연구기관을 활용하여 평가하였다. 구체적인 평가항목과 지표는 다음과 같다.

〈표 2-1-53〉 2010년 규제개혁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단계(배점)	평가항목(배점)	평가지표(배점)
계획 (20, +2)	1. 추진기반의 적실성(20, +2)	1-1. 규제개혁 추진역량(8) 1-2. 규제개혁 과제발굴의 적극성(12, +2)
집행 (30)	2. 시행의 적정성(30)	2-1. 신설·강화 규제의 적절성(20) 2-2. 홍보와 의견수렴의 적극성(10)
산출/결과 (50, +2)	3. 규제개혁 성과(30, +2)	3-1. 규제개혁과제 이행실적(15, +2) 3-2. 규제개혁 효과(15)
	4. 규제개혁 만족도(20)	4-1. 규제개혁만족도(20)

④ 평가결과

2010년 규제개혁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 미래성장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

1) 국무총리실, 법제처, 권익위, 검찰청, 조달청, 행복청, 통계청, 병무청, 방사청

진하였다. 관광·방송통신 등 서비스 산업, 국토·환경 관련 규제를 포함한 총 1,375개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여 10월말기준 837개의 과제를 완료하였다. 계획(969개) 대비 86.5%의 진척도를 나타냈으며, 중소기업 애로해소와 농산어촌 현장애로 개선 등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을 위한 114개 규제를 개선하였다. 또한, 정부·공공기관 등의 채용·승진상의 학력규제 28개 과제를 새로 발굴·개선하는 등 불합리한 진입규제도 정비하였다.

일몰적용 검토대상 규제 4,692건 중 1,044건(22.3%)에 대해 일몰을 설정하는 등 일정주기로 규제내용을 재검토하는 일몰제를 확대도입하여 규제의 타당성과 현실적합성을 제고하는 한편, 각 부처 자체규제 심사위원 지원기능 신설 등 규제정보화시스템을 고도화함으로써 신설·강화규제 심사의 투명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그러나 일부 부처는 규제개혁과제 발굴, 홍보 및 의견수렴 등이 소극적이고 자체규제개혁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사후 정책환경변화나 관련기관 협의 미흡 등으로 법령 개정이 지연되는 등 규제개혁 과제의 이행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지표별로는 계획단계의 '규제개혁과제 발굴의 적정성' 등이 양호한 편이나, 집행단계의 '규제개혁과제 홍보의 적극성', 산출·결과단계의 '규제개혁의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기관별로는 부단위 기관은 평균 66.4점, 청단위 기관은 평균 66.9점으로 근소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2-1-54〉 2010년 규제개혁 기관별 평가결과

등급	기관명(직제순)
최우수(2)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우수(5)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관세청, 산림청
보통(17)	교육과학기술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해양경찰청
미흡(7)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 국가보훈처, 농촌진흥청, 기상청

(7) 국민만족도

① 평가 개요

2010년 국민(정책·민원)만족도 평가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 민원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직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다만 전년도와 달라진 점은 정책만족도 조사를 연1회 실시하고(2009년에는 연2회 실시), 민원만족도 조사를 연2회 실시(2009년에는 연1회 실시)한다는 점이였다.

이것은 정책의 경우 통상 연말이 되어야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기 때문이고, 민원은 연중 수시로 접수되기 때문에 연2회 조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전년도 정책만족도의 경우 과제별·업무유형별로 평가를 실시하던 것을 종전과 같이 기관별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회귀하였다.

② 평가대상

평가대상기관은 3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평가대상과제는 정책 만족도의 경우, 각 중앙행정기관별 핵심과제 95개(부단위 3개, 청단위 2개)를 대상으로 하였고, 민원만족도의 경우, 부처별 일반·인터넷 민원행정서비스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③ 평가방법

평가방법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민간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우선 정책 만족도의 경우, 일반국민(3,900명)을 주된 대상으로 하되, 분야별로 관련 민간전문가(1,710명)를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평가지표는 크게 항목만족도와 체감만족도로 구성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1-55〉 2010년 정책만족도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세부 설문내용)
항목 만족도 (70%)	민주성	• 정책수립·집행과정에서 고객의 의견수렴 및 공개와 소통을 통한 정책협조 노력 정도
	적정성	• 전략목표, 성과목표, 정책수단 등 정책의 구체적내용이 적정하게 설정된 정도
	대응성	• 정책추진 과정에서 정책환경의 변화를 극복하고 문제점을 시정·보완하기 위해 노력한 정도
	효과성	• 정책이 당초에 의도한 계량·비계량적 성과가 실제로 나타난 정도
체감만족도(30%)		• 해당 정책 전반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총체적 만족도

한편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의 경우, 일반민원과 인터넷 민원의 민원인 모집단을 확보한 후 무작위 표본추출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기관별로 250명 이상의 표본을 추출하여 총 24,149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평가지표는 주요 정책과 마찬가지로 항목만족도와 체감만족도로 구성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1-56〉 2010년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세부 설문내용)
항목 만족도 (70%)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민원신청 시 인터넷 홈페이지 접근과 서식 입력이 쉽고 간편한 정도 • (일반) 민원 담당공무원과의 면담·통화와 서식 작성이 쉽고 간편한 정도
	신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일반) 민원 담당공무원이 관련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한 정도
항목 만족도 (70%)	대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인터넷 민원시스템에서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쉽게 알 수 있는 정도 • (일반) 민원 담당공무원이 친절하고 정중하게 민원인을 응대하는 정도
	공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일반) 민원처리 결과의 근거나 이유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도
체감만족도(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일반) 해당 민원서비스 전반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총체적 만족도
* 민원난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민원의 처리를 위해 해당기관이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려움의 정도에 대한 민원인의 인식

④ 평가결과

2010년 39개 중앙행정기관(95개 핵심과제) 정책만족도 평균은 59.92점으로 나타났는데, 부단위 기관의 정책만족도 평균은 59.40점이며, 청단위 기관은 60.39점이었다. 2009년까지 정책만족도의 상승세가 지속 되었으나, 2010년은 전년 대비 일반국민과 전문가 만족도가 소폭 하락함으로써 정책만족도 평균도 전년도(60.97점)에 비해 1.05점 하락하였다.

기관별로는 부단위 19개 기관 중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63.60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보건복지부는 56.60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구체적인 평가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2-1-57〉 2010년 정책만족도 평가결과(부단위)

등급	기관명(직제순)
상위(4)	행정안전부, 환경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보통(11)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하위(4)	법무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

한편 청단위 20개 기관 중에는 통계청이 68.65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방위사업청은 53.79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구체적인 평가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2-1-58〉 2010년 정책만족도 평가결과(청단위)

등급	기관명(직제순)
상위(4)	통계청, 소방방재청, 농촌진흥청, 해양경찰청
보통(12)	법제처, 국가보훈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병무청, 경찰청, 문화재청, 산림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상청
하위(4)	대검찰청, 방위사업청, 중소기업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10년 39개 중앙행정기관 민원만족도 평균은 74.43점으로, 전년도의 72.36점에 비해 2.07점 상승하였다. 민원종류별로는 일반민원과 인터넷민원 모두 동반 상승하였고, 특히 일반민원만족도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단위 기관의 민원만족도 평균은 70.39점이며, 청단위 기관은 78.17점이었다. 기관별로는 부단위 19개 기관 중에는 행정안전부가 84.08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금융위원회는 58.40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구체적인 평가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2-1-59〉 2010년 민원만족도 평가결과(부단위)

등급	기관명(직제순)
상위(4)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보통(11)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하위(4)	국방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한편 청단위 20개 기관 중에는 해양경찰청이 85.90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대검찰청은 59.69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구체적인 평가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2-1-60〉 2010년 민원만족도 평가결과(청단위)

등급	기관명(직제순)
상위(4)	관세청,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해양경찰청
보통(12)	국가보훈처,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산림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하위(4)	법제처, 국세청, 대검찰청, 문화재청

4) 2011년

-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정책평가로 국정운영을 뒷받침했다.
- 서민생활안정과제 부문을 신설했다. ‘나눔과 배려’, ‘공직기강 확립 노력’을 정책관리 역량 부문에 포함하였다. 또한 전자통합평가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상에서 평가를 활성화 하여 부담을 경감하고자 했다.
- 2010년 대비 1개 부문을 신설, 38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8개 부문에 대해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간전문가 평가단을 구성 운용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으로 38개 전 중앙행정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업무 평가 보고회’를 개최했다.

(1) 핵심과제

① 평가 개요

2010년 핵심과제 평가 종료 후 정책분석평가실 내부 및 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다수가 평가과제의 대표성과 정책단계별 배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즉, 평가대상과제를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목표 수준으로 선정함에 따라 부처업무 중 평가 대상에 포함되는 범위가 지나치게 좁고, 평가대상 실적을 성과가 현실화되지 않은 10월말 실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성과단계의 배점을 60점으로 설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정부업무 성과관리와 평가간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즉, 각 부처에서 연초에 작성하는 성과관리시행계획에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는데, 이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1년도에는 이러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핵심과제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였다.

2011년 평가방식에 있어 2010년과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대상과제의 범위가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목표 수준에서 전략목표 수준으로 대폭 확대되고 과제수도 증가하였다. 둘째, 정책단계별 배점에 큰 변화가 있었고 세부평가지표가 9개로 조정되었으며 정책만족도 조사결과를 새롭게 평가에 반영하게 되었다. 셋째, 평가대상 기관을 장관급·차관급으로 구분하지 않고 업무의 성격에 따라 5개 분과로 분류하였다. 넷째, 상반기에는 중간 점검 형태로 약식평가를 실시하였다.

② 평가대상

평가대상 기관은 38개로 2010년과 동일하나, 분과 구분에 있어서는 2010년과는 달리 장관급과 차관급을 구분하지 않고 업무성격에 따라 5개 분과(경제 I, 경제 II, 사회문화, 일반행정, 외교·통일·안보)로 분류하였다. 평가대상과제는 2010년에는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목표 수준의 과제로서 업무범위가 다소 좁은 과제로 선정함에 따라 과제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2011년에는 핵심과제별 포괄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각 부처의 핵심정책이 대부분 포함되도록 하였다. 즉, 각 부처의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전략목표 단위로 과제를 선정하되, 당해 전략목표 중 중요도가 낮은 성과목표는 배제하고 타 전략목표 중 연관성이 밀접한 성과목표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평가대상과제 선정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성과를 가시화하고 2011년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적 우선순위를 고려했다. 특히, 100대 국정과제와 관련된 과제, 부처별 연두업무보고 중 핵심과제, 국민관심도 및 파급효과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특정평가내 다른 평가부문(일자리 창출·서민생활안정·녹색성장 과제)과 중복되거나 각 부처의 기본적 기능 수행을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과제, 그리고 2010년 평가대상과제는 가급적 제외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정부업무평가위원회(국무총리실) 주도로 과제를 선정함으로써 각 부처 핵심정책의 누락을 방지하고 부처 간 과제 범위 및 난이도 등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011년 평가대상과제 수는 장관급 기관은 4개, 차관급 기관은 2개씩 선정하여 총 114개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였다.

③ 평가방법

평가의 객관성·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핵심과제 평가단'을 구성하였는데, 평가대상과제가 증가함에 따라 민간전문위원도 과제별로 1명씩 위촉하여 총113명(1명은 2개 과제 담당)으로 증가하였다.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평가단을 5개 분과로 나누고 각 분과는 부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다시 각 2개팀으로 구분·운영하였다.

2011년의 '핵심과제 평가단' 구성과 관련하여 특기할만한 것은 과제별 민간전문위원 외에 평가부문에 전문성이 있는 자로 '평가지원단'을 별도로 구성한 점이다. '평가지원단'은 각 팀별로 1명씩 배정하였는데, 그 목적은 정부업무평가위원의 업무를 보좌하여 평가전문가의 시각에서 과제별 전문위원들이 작성한 평가보고서를 검토하고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다. '평가

지원단' 운영은 그 시도 자체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고 할 수 있었으나, 1명이 제한된 시간 내에 3~5개 기관을 담당해야 하는 부담과 일부 위원의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못하였고 하반기 종합평가에서는 운영이 중단되었다.

평가단의 민간전문가 역할과 관련하여 특이한 점은 과제에 대한 평가 외에 이슈페이퍼를 작성토록 한 점이다. 그 목적은 실제 평가업무 수행 전에 담당과제와 관련된 이슈를 점검하고 평가보고서를 미리 작성해 봄으로써 과제에 대한 평가전문성을 제고하는데 있었다. 그러나 민간전문가들의 관심 미흡, 일부 과제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보고서 수준이 그리 높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해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평가지표는 2010년 평가 때와 비교하여 많은 변화가 있었다. 먼저 정책형성·집행·성과단계 등 정책단계별 배점기준은 '20:30:50'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10월말 기준 실적평가임을 감안하여 '정책성과' 배점을 전년보다 축소하고, 정책형성단계는 성과관리계획의 사전검토·조정절차를 감안하여 집행단계보다 낮게 배점하였다. 둘째, 세부평가지표를 2010년 6개에서 9개로 세분화하였다. 셋째,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용역을 통해 실시하는 정책만족도 조사 결과를 새롭게 평가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는 아래와 같다.

〈표 2-1-61〉 2011년 핵심과제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단계(배점)	평가항목(배점)	평가지표(배점)
정책형성 (20)	정책목표의 적절성(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목표의 구체성 및 적절성(2) •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및 성과지표의 대표성(4)
	정책수단의 적절성(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적 정책수단의 적절성(4) • 실행적 정책수단의 적절성(2)
	분석·의견 수렴 적절성(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분석과 대비책 마련의 충실성(4) • 의견수렴 적절성(4)
정책집행 (30)	추진일정 충실성(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일정 준수 여부(9)
	상황변화 대응성(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상황변화 대응의 적절성(12) • 홍보의 효과성(3)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성(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 구축 여부(6)
정책성과 (50)	정책목표 달성도(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시 설정한 정책·사업목표 달성도 (20) • 계획수립시 설정한 성과지표 달성도(5)
	정책 효과성(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추진으로 의도한 정책효과의 실제 발생 수준(15)
	정책 만족도(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만족도(조사결과)(10)

상반기 평가는 중간점검의 형태로 약식평가를 진행하였다. 각 부처에서 제출한 핵심과제별 5월말 기준 추진실적을 토대로 점검하였고, 특히 각 부처의 대표과제 1개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보고서를 작성토록 하였다(나머지과제 담당 민간전문가는 이슈페이퍼 작성으로 대체).

하반기에는 각 부처에서 제출한 핵심과제별 10월말 기준 추진실적자료를 토대로 전문가 평가단이 정책단계별 평가지표에 따라 정성·정량평가를 실시하였는데, 평가방식에 있어 2010년과 큰 차이는 없었다.

④ 평가결과

2011년 상반기 중간점검결과는 종합보고서와 분과별 보고서 형태로 작성되어 국무회의에 보고(2011년 8월 9일)되었다. 특이한 것은 종합보고서가 특정평가부문 중 서민생활 안정과제 점검결과와 2/4분기 업무계획 점검결과를 통합하여 '2011년 주요 정책과제 상반기 점검결과'라는 이름으로 작성·보고되었다는 점이다. 상반기 점검결과를 각 부처에 환류 하여 하반기 정책 추진에 활용하는 한편, 상반기 추진이 다소 부진·미흡했던 과제는 각 부처별로 보완·개선대책을 마련·추진토록 하였다.

하반기 종합평가는 장관급과 차관급 기관으로 나누어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등 4단계로 등급화 하였는데, 최우수는 2개, 우수는 10개, 보통은 20개, 미흡은 6개 기관으로 평가되었다.

평가결과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 9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고, 통화스왑(중국, 일본) 체결로 외환유동성을 확대하였으며, 취업자수 증가 등 고용시장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다.

둘째, 서민금융 지원 등 서민가계 안정화를 위한 복지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사회복지담당인력 확충 등 복지전달체계를 효율화하였다.

셋째,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하고, 보증 및 자금지원을 확대하였으며, 납품단가 조정체계 마련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넷째, 4대강 사업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지식재산 보호기반을 강화하였으며,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등 미래대비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투자를 확대하였다.

다섯째, 적극적인 정상외교로 에너지·자원을 확보하고, 한-EU, 한-미 FTA를 통해 경제영토를 확장하였으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등 국제위상을 제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 전·월세난, 가계부채, 비정규직문제 등으로 서민·중산층의 정책성과 체감도가 낮으며, 산사태 피해, 공공시설 내 석면함유물질 발견 등 안전관리 미흡과 정전사태로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국민 불안을 야기한 점, 의료, 교육 등 핵심 서비스산업 선진화, 금융감독체계, 사립대학 구조조정, 군 지휘구조 개편 등 개혁과제가 이해관계자의 반발로 추진 지연된 점 등은 개선보완이 필요한 미흡한 과제로 평가되었다.

〈표 2-1-62〉 2011년 핵심 과제 기관별 평가결과

구분	기관명(직제순)
최우수(2)	공정거래위원회
	산림청
우수(10)	농림수산식품부, 법무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기상청, 관세청, 병무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보통(20)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법제처, 국가보훈처, 조달청, 통계청, 소방방재청,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미흡(6)	교육과학기술부,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방위사업청, 문화재청

(2) 일자리 창출 과제

① 평가 개요

2010년에 이어 일자리 대책의 추진 노력 및 성과를 점검함으로써 정책추진 동력을 강화하고, 개선·보완책을 마련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② 평가 대상

기관별 2011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 관리과제 중 예산규모가 일정수준 이상 또는 청년층 대상 사업 등 주요 일자리 창출 관련 과제를 선정하여 11개 부처 45개 과제를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 2-1-63〉 2011년 일자리 창출 과제 평가대상기관

구분	기관명(직제순)
부단위(9)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청단위(2)	산림청, 중소기업청

③ 평가방법

정부업무평가위원 및 민간전문위원(14명) 등으로 '일자리 창출 과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분과별로 각 과제별 실적자료(10월말 기준)를 토대로 평가지표에 따라 정량·정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각 분과위원장이 참여하는 검토회의를 개최, 기관별 평가결과를 최종확정하였다. 평가지표는 정책형성(20점), 정책집행(25점), 정책성과(55점) 등으로 형성과 집행 부분보다 성과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를 진행하였다.

〈표 2-1-64〉 2011년 일자리 창출 과제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단계(배점)	평가항목(배점)	평가지표(배점)
정책형성 (20)	1. 정책목표의 적절성(15)	1-1. 일자리창출 목표와의 부합·연계성(5) 1-2. 정책목표 설정의 적극성(10)
	2. 정책추진 기반의 확보(5)	2-1. 자원 확보 및 배분의 적절성(5)
정책집행 (25)	3. 추진과정의 적절성(20)	3-1. 추진계획의 진척도(15) 3-2. 유관기관·정책과의 협조 노력(5)
	4.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성(5)	4-1. 모니터링 및 대국민 소통·홍보 노력(5)
정책성과 (45)	5. 목표달성도(25)	5-1. 성과목표치의 달성도(25)
	6. 정책효과(20)	6-1. 일자리 창출에의 파급효과·기여도(20)
정책만족도(10)		7-1. 일자리대책 정책만족도(10)

④ 평가결과

각 부처의 일자리 창출 정책 추진으로 인해 취업자 증가 및 실업률 지속하락의 성과가 있었으며, 특히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취약계층 참여비율을 설정하는 등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되었다. 또한, 열린고용 사회구현 방안, 비정규직 종합대책 등을 마련하여 고용시장 차별시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다만, 청년실업이 뚜렷이

개선되지 않았으며, 안정적이고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는 한계를 드러냈다. 정부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에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 사회서비스 일 자리의 임금은 전체 임금의 약 50%수준이며, 임시 일용직 비율이 전체 평균의 약 2배로 일자 리의 질적 수준이 낮은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기관별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1-65〉 2011년 일자리 창출 과제 기관별 평가결과

등급	기관명 (직제순)
우수 (3)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중소기업청
보통(6)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미흡 (2)	외교통상부, 산림청

(3) 서민생활 안정 과제

① 평가개요

서민생활안정 과제 평가는 정부의 핵심 국정운영기조인 서민생활안정 구현을 위해 중앙 행정기관의 주요 친서민정책에 대한 효과 등을 측정하기 위해 2011년 정부업무평가 특정평 가부문으로 신설되었다.

② 평가대상

39개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연두업무계획, 성과관리시행계획 등에서 핵심적인 서민생활 안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한 14개 중앙행정기관(부단위 13, 청단위 1)을 평가대상 기관으로 하였다. 평가대상 과제는 국가적 역점사업이나 서민생활과 직접 관련성이 큰 분야 등을 중심으로 서민층이 공감하는 정책으로써, 서민경제·보건복지·주거·교육문화 등 4개 분야 28개 과제를 선정하여 평가하였다.

〈표 2-1-66〉 2011년 일자리 창출 과제 평가대상기관

구분	기관명 (직제순)
부단위 (13)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청단위 (1)	중소기업청

③ 평가방법

정부업무평가위원(4명), 민간 전문위원(27명)으로 구성된 '서민생활안정 과제 평가단'을 운영하였으며, 정책추진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상반기에는 중간점검을, 하반기에 종합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지표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적절히 활용하고 서민층의 정책체감도와 직결된 정책성과 단계에 높은 비중을 두고 평가하였다. 특히, 전문조사기관을 활용하여 일반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서민생활안정 정책 만족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대폭 반영하였다.

〈표 2-1-67〉 2011년 서민생활안정과제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단계(배점)	평가항목(배점)	평가지표
정책형성 (15)	1. 계획수립의 충실성(15)	1-1. 상위 정책목표(서민생활 안정)와의 부합성(5) 1-2. 정책내용의 타당성 및 계획의 체계성(10)
정책집행 (25)	2. 추진과정의 적절성(25)	2-1. 추진일정의 준수성(5) 2-2. 유관 기관·정책과의 협조 노력(5) 2-3. 정책여건 및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성(10) 2-4. 대국민 소통·홍보노력(5)
정책성과 (45)	3. 성과달성 및 효과성(45)	3-1. 목표의 달성도(20) 3-2. 정책의 효과성(25)
정책만족도(15)		4-1. 서민생활안정 과제 설문조사 결과(15)

④ 평가결과

경기회복 흐름에도 물가와 전월세 상승,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서민의 경기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상황에서 생계비 부담완화 대책추진과 취약계층 대상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복지지출을 확대하고 서민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서민생활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서민우대금융 확대 등을 통한 서민층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영세 자영업자 경영개선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는 한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복지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또한, 보증자리주택 제도개선과 더불어 무주택자의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지원을 강화하여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을 통한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면서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에도 적극 노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서민생활안정 정책의 추진노력과 성과에도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효과가 크지 않

거나 일부 정책은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등록금과 통신요금, 각종 금융수수료 등의 경감대책에 대한 서민들의 체감도는 여전히 저조하고, 소상공인 점포개선과 신용보증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대상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부족하였으며, 전월세 안정대책과 저소득층 대상 문화바우처 사업은 당초 목적에 비해 정책효과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2-1-68〉 2011년 서민생활 안정 과제 기관별 평가결과

등급	기관명 (직제순)
우수 (2)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청
보통 (9)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미흡 (3)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방송통신위원회

(4) 녹색성장

① 평가 개요

2011년은 녹색성장 비전선포(2008.8.15)이후 4년차로 접어든 해였다. 국민들의 녹색성장 정책 체감도를 고취하고 녹색생활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정책효과성 평가에 역점을 두는 한편, 상반기 중간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를 평가에 반영했다. 또한, 부처별 녹색성장 정책의 소통·홍보·확산 노력을 평가에 적극 반영하였다.

② 평가대상

평가대상 기관은 24개 중앙행정기관으로 하였으며, 각 기관별 업무와 녹색성장의 연관성, 녹색성장 5개년 계획상 정책 추진과제의 중요성과 비중 등을 고려하여 3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평가하였다. 평가 기관 및 그룹은 다음과 같다.

〈표 2-1-59〉 2011년 녹색성장 과제 평가대상 기관

구분	그룹	기관명 (직제순)
부단위 (15)	1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2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청단위 (9)	3	조달청, 소방방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상청, 방위사업청, 통계청

평가대상 과제는 28개 대과제로, 기관별로 1개의 대과제 할당을 원칙으로 하되, 녹색성장 과 관련성이 높은 4개 주요부처(지식경제부, 환경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의 경우는 각각 2개의 대과제를 할당하였다.

③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에 대한 배점은 아래와 같으며, 국민적 체감도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정책효과성 배점을 전년도 10점에서 20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표 2-1-60〉 2011년 녹색성장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단계(배점)	평가항목(배점)	평가지표(배점)
계획 (20)	1. 계획수립의 적절성(20)	1-1. 정책목표의 명료성 (5) 1-2. 정책내용의 타당성 (5) 1-3.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절성(10)
추진 (30)	2. 추진과정의 적절성(25)	2-1. 추진과정의 효율성 (5) 2-2. 추진일정 준수 정도 (10) 2-3. 추진 과정상 협조노력 (10)
	3. 정책 소통·확산노력(5)	3-1. 정책 소통·교육·홍보 노력 (5)
산출/결과 (50)	4. 성과 달성도(50)	4-1. 성과목표 달성도 (30) 4-2. 정책 효과성 (20)

평가의 전문성·객관성을 위해 녹색성장 및 평가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전문평가단을 구성·운영하고,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반기 실적을 중간점검 하였다. 최종 평가는 그룹별로 부처 최종실적 설명회를 개최(11월초)하여 해당 그룹 소속 민간평가위원이 담당 과제별 추진실적에 대해 평점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각 그룹별 분과위원장 주재로 그룹 내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평점결과를 조정하는 한편, 민간평가위원들에게 담당과제에 대한 평가보고서 초안을 작성토록 하였다. 그 후, 평가보고서 초안에 대해 부처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해당 분과위원회 차원의 평가보고서와 평가결과를 확정(우수-보통-미흡)하도록 하였으며, 2010년과는 달리 분과위원장(3인)만으로 구성된 그룹 간 조정회의를 통해 우수·미흡기관 및 우수·미흡사례를 조정·선정하였다.

④ 평가결과

국무총리실, 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하여, 녹색성장 정책 추진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발표(2009. 11, 2020년 배출기준량 대비 30% 감축)의 후속조치로 부문별(업종별)·관리업체별 감축 목표를 설정·발표하였고, 배출권거래제 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녹색기술 R&D 투자를 확대(총 2조 7,412억 원으로, 2010년 2조 5,012억 원 대비 2,400억 원 증가)하고, 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녹색성장 핵심정책 이행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차원에서도 특히 온실가스 감축분야와 녹색생활분야 정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그린카드제도 도입, 고속버스 환승시스템 확대, 녹색 농업기술 개발, 녹색금융 활성화, '한 가정 탄소 1톤 줄이기 운동' 등 녹색성장 정책의 내실화에 기여한 사례도 있었다.

반면,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 그린스쿨 조성사업 등 일부 사업들은 주민 반발, 재원 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었고, 기온상승·강수량 증가 심화에 따른 국민건강 관리, 재해예방 등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관련 정책추진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편, 녹색마을 조성사업(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녹색길 조성사업(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산림청) 등 일부 사업의 경우, 각 부처가 유사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혼란 및 비효율을 초래함으로써 국회 및 언론으로부터 지적되는 사례가 있었다.

(5) 정책관리역량

① 평가개요

2011년 정책관리 역량은 국정운영 방향에 따라 '나눔과 배려', '공직기강 확립 노력', 조직·인사·정보화 관리 등의 '행정관리역량'을 추가함과 아울러 일부 부처에만 해당되어 결측치가 많았던 '갈등관리', '위기관리', '법령 준비', '주요법안 처리'는 제외하였다.

② 평가대상

38개 중앙행정기관을 평가 대상기관으로 하여 각 기관의 정책이슈 선제적 발굴·대응 정도 등의 '이슈 대응', 정책 이해관계자 지지 확보 활동의 적극성, 부처 간 협력도, 대 국회 지

지 확보 및 대응 노력의 '조정·통합', 통계 선진화 기반조성 노력, 업무계획 이행·관리 노력, 행정관리 효율화 노력의 '집행관리·지원', 자체감사·감찰활동 강화 노력,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노력, 반부패 분위기 및 의식제고 노력의 '공직기강 확립 노력'을 평가대상으로 하였다.

③ 평가방법

평가의 전문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민간전문가 평가단'(38명)을 구성하고 평가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핵심과제 평가와 동일하게 5개(경제 I·II, 사회문화, 일반행정, 통일외교안보) 평가 분과로 구분하여 운영하였다. 전문가 평가단은 각 부처에서 제출한 실적자료를 토대로 평가지표의 특성에 따라 정량·정성평가를 병행하였고, '부처업무 설명회' 개최를 통해 피평가기관이 소관업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평가항목 중 '집행관리·지원'에 가장 큰 비중을 두어 평가하였고, 구체적인 평가항목과 평가지표는 다음과 같다.

〈표 2-1-61〉 2011년 정책관리역량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평가항목(배점)	평가지표(배점)
1. 이슈 대응 (30)	1-1. 정책이슈 선제적 발굴·대응 정도 (10) 1-2. 나눔과 배려 관련 정책수행 노력 (20)
2. 조정·통합 (15)	2-1. 정책 이해관계자 지지확보 활동의 적극성 (5) 2-2. 부처 간 협력도 (5) 2-3. 대 국회 지지 확보 및 대응 노력 (5)
3. 집행관리·지원 (40)	3-1. 통계 선진화 기반조성 노력 (5) 3-2. 업무계획 이행·관리 노력 (5) 3-3. 행정관리 효율화 노력 (30)
4. 공직기강 확립 노력 (15)	4-1. 자체 감사·감찰활동 강화 노력 (8) 4-2.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노력 (4) 4-3. 반부패 분위기 및 의식제고 노력 (3)

④ 평가결과

무상급식 등 복지논쟁·대규모 정전사태·한미FTA 비준 등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일으키는 정책현안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가운데 정책과제 발굴의 현장성을 강화하고 국회

·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정책의 적시성·적합성을 제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범정부적 현안에 대한 관계부처 간 공동대응이 확산되고, 다양한 경로를 활용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에 대한 지지와 순응도 제고에 노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통계의 정책 활용도가 향상되고,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3%)이 달성되는 등 사회적 약자 배려와 공정사회 구현에 솔선하였다.

다만, 정치권 대립 등으로 국회의 원활한 협조를 얻기 어려워 주요법안 등이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적기 대처가 지연되거나 대중적·소극적 대응으로 문제가 확산되면서 국민 불신이 가중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또한 일부부처의 경우 온정주의적 처분관행이 지속되고 있고, 부패 소지가 있는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대한 인식도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평가결과 정책관리역량 최우수기관은 행정안전부와 병무청이 선정되었고, 고용노동부와 관세청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2-1-62〉 2011년 정책관리역량 기관별 평가결과

등급	기관명(직제순)
최우수(2)	행정안전부
	병무청
우수(8)	고용노동부, 법무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관세청, 국세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보통(18)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통일부, 국방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통계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기상청, 문화재청, 중소기업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해양경찰청
미흡(8)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법제처, 국가보훈처, 방위사업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6) 정책홍보

① 평가개요

공정사회, 공생발전, 친서민정책 등 국정 아젠다와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충실한 홍보계획 수립과 기관 간 협력홍보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였다. 전년도에 비해 평가항목 상 홍보기획 부문의 배점을 상향 조정하고, 주요 정책 공보대응 실적과 정책브랜드 홍보성과 지표를 신설하는 등 평가지표를 일부 조정하였다.

② 평가대상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3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업무특성에 따라 정책기관(19개 장관급)과 집행기관(20개 차관급)으로 나누고, 지표별로 정원과 홍보담당인원 등 조직특성을 반영하여 6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평가함으로써 평가의 형평성과 수용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③ 평가방법

예년과 같이,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총 31명의 '민관 합동 정책홍보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각 부처가 전자통합평가시스템에 등록·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정량·정성평가를 실시하되 필요시 근거자료 확인과 현장조사를 병행하는 한편, 부처별 정책홍보 추진성과에 대한 일반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국민 소통 활성화와 평가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였다. 평가항목은 '기획-활동-성과' 등 3개 항목으로 나누어 범정부적 홍보계획의 충실성 등 총 9개의 평가지표를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평가항목과 평가지표는 다음과 같다.

〈표 2-1-63〉 2011년 정책홍보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단계(배점)	평가항목(배점)	평가지표(배점)
기획(25)	1. 정책홍보 기획(25)	1-1. 범정부적 홍보계획의 충실성(15) 1-2. 범부처 홍보계획과의 연계(5)
활동(30±5)	2. 정책홍보 활동(30±5)	2-1. 뉴미디어 홍보 활용도(20) 2-2. 대언론 브리핑 충실도(5) 2-3. 외신대상 홍보활동 수준(5) 2-4. 주요 정책 공보대응 실적(±5)
성과(45)	3. 정책홍보 활동 성과(45)	3-1. 주요 정책 기획홍보 성과(25) 3-2. 정책브랜드 홍보성과(10) 3-3. 기관장 홍보활동 수준(10)

④ 평가결과

트위터, 페이스북 등 뉴미디어가 활성화되면서 대국민 정책정보 제공유형이 다양화되고, 정책이슈의 파급력이 증가하였다. 한미FTA, 4대강 등 범정부적 국정과제 및 다수부처 관련 정책이슈에 대응한 부처 간 협력홍보의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온라인대변인제도

활성화, 공직자 SNS 활용 가이드라인 도입 등 범정부적 온라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뉴미디어를 정책홍보에 적극 활용하는 등 미디어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한 점, 스토리텔링을 활용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춘 부처별 기획홍보를 통해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 인지도와 공감대를 한층 높인 점, 기관장의 정책현장 설명회와 트위터 등 SNS 활용을 통한 적극적인 소통 노력 등은 주요성파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일부 기관에서는 관계부처 간 사전협의나 조정절차 없이 단독보도를 추진하거나, 부처 간 발표내용이 서로 달라 정책의 신뢰성이 저하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개선해야 할 점도 있었다. 또한, 매체별 특성에 맞는 콘텐츠 생산이나 정책고객과의 쌍방향 소통 노력이 다소 부족하고, 보도자료 배포, 브리핑 등에 주로 의존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 홍보기법 활용이 미흡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표 2-1-64〉 2011년 정책홍보 기관별 평가결과

등급	기관명 (직제순)
최우수(2)	행정안전부
	중소기업청
우수(6)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경찰청, 산림청
보통(25)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미흡(6)	지식경제부, 환경부, 금융위원회
	법제처, 대검찰청, 방위사업청

(7) 규제개혁

① 평가개요

전년도와 같이 국민부담 완화와 편의제고를 위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추진노력과 성과를 평가하였으며, 특히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국민부담 경감 등을 위한 규제개혁 성과에 역점을 두었다. 또한, '규제개혁 성과홍보, 규제개혁과제 시스템 등록, 미등록 규제

정비'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기존 규제정비 외에 신설·강화규제 심사의 충실성 제고를 위해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의 충실성' 등의 배점을 확대하였다.

② 평가대상

2010년과 같이 등록규제가 6개 이상인 31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등록규제가 5개 이하인 기관(9개)은 제외하였다. 18개 부단위 기관과 13개 청단위 기관별로 등록규제수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평가함으로써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표 2-1-65〉 2010년 일자리 창출 과제 평가대상기관

구분	기 관 명
부단위(9)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
청단위(1)	중소기업청

③ 평가방법

전년도와 같이, 총 10명의 '민관합동 규제개혁 평가단'을 구성·운영함으로써 규제개혁 추진에 수요자의 입장을 반영하고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규제개혁과제 발굴 등은 정량적 평가를, 규제개혁 효과 등 정성적 평가는 민관합동 규제개혁 평가단에서, 고객만족도 등은 전문연구기관을 활용하여 평가하였다. 평가항목과 지표에서는 2010년과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으나, 평가배점은 일부 조정되었다. 구체적인 평가항목과 평가지표는 다음과 같다.

〈표 2-1-66〉 2011년 규제개혁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단계(배점)	평가항목(배점)	평가지표(배점)
계획 (15, +2)	1. 추진기반의 적실성(15, +2)	1-1. 규제개혁 추진역량(8)
		1-2. 규제개혁 과제발굴의 적극성(7)
집행 (35)	2. 시행의 적정성(35)	2-1. 신설·강화 규제의 적절성(23)
		2-2. 홍보와 의견수렴의 적극성(12)
산출/결과 (50, +3)	3. 규제개혁 성과(35, +3)	3-1. 규제개혁과제 이행실적(20)
		3-2. 규제개혁 효과(15)
	4. 규제개혁 만족도(15)	4-1. 규제개혁만족도(15)

④ 평가결과

미국·유럽의 재정위기와 경기침체, 물가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 기업경영상의 애로요인과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이를 해소·완화하기 위한 규제개선 요구가 증대하였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는 총 1,434개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여 928개 과제를 개선(계획 942건 대비 98.5% 완료)함으로써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과 공정사회 구현에 일조하였다. 국민생활 불편사항 일제개선, 건설산업 하도급 규제개선 등을 통해 규제로 인한 국민부담을 경감하고, 기업의 부담능력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토록 하는 규제적용 차등화 방안을 마련하여 규제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한 점, 신설·강화하고자 하는 규제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로 불합리한 규제형성을 억제하고 규제의 품질을 제고한 점,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수렴 활성화와 규제영향평가를 내실화하여 중소기업의 부담과 시장경제 왜곡을 최소화한 점 등은 주요성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일부 규제개혁과제는 법률개정 등 후속조치가 미진하여 규제개혁의 가시적 성과 도출에는 다소 미흡하고,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자의 협의미흡과 정책환경 변화 등으로 당초 계획에 비해 추진일정이 지연¹⁾된 점, 일부 부처에서는 자체규제개혁심사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은 개선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었다.

〈표 2-1-67〉 2011년 규제개혁 기관별 평가결과

등급	기관명(직제순)
최우수(2)	국토해양부
	관세청
우수(5)	환경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17)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미흡(7)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국가보훈처 국세청, 농촌진흥청

1) 10월 기준 완료대상 규제개혁 과제 942건 중 142건이 계획대비 지연

(8) 국민만족도

① 평가 개요

2011년 국민(정책·민원)만족도 평가는 2010년과 마찬가지로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직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다만 전년도와 달리 설문모집단 구성 시, 최일선 행정기관(2차 관서)을 추가하고, 반복·중복민원을 각 1건으로 처리하는 등 조사결과의 합리성과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개선이 이루어졌다.

② 평가 대상

평가 대상기관은 3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평가 대상과제는 정책만족도의 경우, 각 중앙행정기관별 핵심과제 114개(부단위 4개, 청단위 2개)를 대상으로 하였고, 민원만족도의 경우, 부처별 일반·인터넷 민원행정서비스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③ 평가 방법

평가방식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민간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우선 정책 만족도의 경우, 일반국민(4,800명)을 주된 대상으로 하되, 분야별로 관련 민간전문가(1,710명)를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평가지표는 크게 항목만족도와 체감만족도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1-68〉 2011년 정책만족도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세부 설문내용)
항목 만족도 (70%)	민주성	• 정책수립·집행과정에서 고객의 의견수렴 및 공개와 소통을 통한 정책협조 노력 정도
	적정성	• 전략목표, 성과목표, 정책수단 등 정책의 구체적내용이 적정하게 설정된 정도
	대응성	• 정책추진 과정에서 정책환경의 변화를 극복하고 문제점을 시정·보완하기 위해 노력한 정도
	효과성	• 정책이 당초에 의도한 계량·비계량적 성과가 실제로 나타난 정도
체감만족도(30%)		• 해당 정책 전반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총체적 만족도

한편 민원만족도의 경우, 일반민원과 인터넷 민원의 민원인 모집단을 확보한 후 무작위 표본추출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각 기관별로 250명 이상의 표본을 추출하여 총 25,3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평가지표는 주요 정책과 마찬가지로 항목만족도와 체감만족도로 구성되었는데, 세부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1-69〉 2011년 민원 만족도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세부 설문내용)
항목 만족도 (70%)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민원신청 시 인터넷 홈페이지 접근과 서식 입력이 쉽고 간편한 정도 • (일반) 민원 담당공무원과의 면담·통화와 서식 작성이 쉽고 간편한 정도
	신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일반) 민원 담당공무원이 관련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한 정도
	대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인터넷 민원시스템에서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쉽게 알 수 있는 정도 • (일반) 민원 담당공무원이 친절하고 정중하게 민원인을 응대하는 정도
	공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일반) 민원처리 결과의 근거나 이유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도
체감만족도(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일반) 해당 민원서비스 전반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총체적 만족도
* 민원난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민원의 처리를 위해 해당기관이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려움의 정도에 대한 민원인의 인식

④ 평가결과

2011년 39개 중앙행정기관(114개 핵심과제) 정책만족도 평균은 63.22점으로 나타났으며, 부단위 기관의 정책만족도 평균은 61.81점, 청단위 기관은 64.56점이었다. 2011년은 전년 대비 일반국민과 전문가 만족도가 모두 상승함으로써 정책만족도 평균도 전년도(59.92점)에 비해 3.3점 상승하였다.

기관별로 부단위 19개 기관 중에서는 여성가족부가 67.14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통일부는 58.05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구체적인 평가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2-1-70〉 2011년 정책만족도 평가결과(부단위)

등급	기관명(직제순)
상위(4)	지식경제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보통(11)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하위(4)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통일부, 국토해양부

한편 청단위 20개 기관 중에서는 기상청이 68.87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방위사업청은 59.24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구체적인 평가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2-1-71〉 2011년 정책만족도 평가결과(청단위)

등급	기관명 (직제순)
상위(4)	병무청, 농촌진흥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보통(12)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산림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하위(4)	법제처, 국가보훈처, 방위사업청, 중소기업청

2011년 39개 중앙행정기관 민원만족도 평균은 73.72점으로, 전년도의 74.43점에 비해 0.71점 하락하였다. 민원종류별로는 일반민원과 인터넷민원 모두 소폭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단위 기관의 민원만족도 평균은 68.84점이며, 청단위 기관은 77.68점이었다.

기관별로 부단위 19개 기관 중에서는 행정안전부가 82.55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금융위원회는 60.60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구체적인 평가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2-1-72〉 2011년 정책만족도 평가결과(부단위)

등급	기관명 (직제순)
상위(4)	통일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보통(11)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하위(4)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한편 청단위 20개 기관 중에서는 해양경찰청이 92.21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대검찰청은 64.95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구체적인 평가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2-1-73〉 2011년 정책만족도 평가결과(청단위)

등급	기관명 (직제순)
상위(4)	관세청, 병무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보통(12)	국세청, 조달청, 통계청, 방위사업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하위(4)	법제처, 국가보훈처, 대검찰청, 경찰청

5) 2012년

- 친서민·공생발전 등 주요 국정과제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전 부처가 행정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운영했다.
- 평가대상 기관이 41개로 늘었다. 서민생활안정과제를 핵심과제로 통합하여 평가부문을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상반기 평가를 강화, 미흡원인 등을 적기 개선토록 조치했다.

(1) 핵심과제

① 평가 개요

정책분석평가실에서는 2011년 평가가 종료됨과 동시에 부처 평가담당공무원 간담회 및 평가실 내부 담당관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핵심과제평가와 관련된 의견수렴에 착수하였다. 그 결과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을 보면, 일부 부처 평가과제의 기관대표성 미흡, 민간전문가 운영 내실화, 민간전문가와 평가실과의 소통 미흡, 업무설명회의 형식적 운영 등이다.

2012년에는 이러한 의견수렴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핵심과제평가 세부시행계획상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12년 평가방식에 있어 2011년과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평가대상 기관이 38개에서 40개로 늘어났다. 둘째, 부처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평가대상과제 수를 줄였다. 셋째, 2012년이 이명박 정부의 마무리 해라는 점을 감안하여 상반기평가를 강화하였다. 넷째, 민간전문가 수를 과제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였다. 다섯째, 민간전문가 선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운영 내실화방안을 마련하였다. 여섯째, 평가대상 기관의 업무설명회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였다.

② 평가 대상

평가대상 기관은 2011년에 정부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포함되면서 총 40개가 되었다.

평가대상과제는 부처의 평가부담 완화차원에서 총 98개를 선정하여 평가대상 기관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다. 장관급 기관은 3개, 차관급 기관은 2개로 하 되, 장관급 기관 중 기관규모나 업무범위 등을 고려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원자력안전위

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2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평가대상과제 선정기준에 있어서는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각 부처의 정책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는 핵심정책과제를 선정하되, 특히 100대 국정과제, 대통령 신년국정연설 및 부처별 업무보고 핵심실천과제를 우선 선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2010년에 평가과제 선정 시 특정평가내 다른 부문과제(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및 녹색성장)와 중복되는 과제는 제외하도록 하였는데, 일부 부처(국토해양부, 중소기업청 등)의 경우 부처 핵심정책이 핵심과제에서 제외됨에 따라 과제의 기관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2012년 과제선정 시에는 각 평가부문 간 중복을 허용하였다.

③ 평가방법

2012년에도 평가의 객관성·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핵심과제 평가단’을 구성하였고, 평가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평가단을 5개 분과로 나누고 각 분과는 부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다시 2개 팀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였다. 다만, 민간전문위원 위촉 및 활용과 관련하여 일부 변화가 있었다.

민간전문위원 위촉 및 활용과 관련하여 2011년 말 정책분석평가실 부처 담당관 대상 설문 조사결과 많은 의견이 제시되었다. 1개 과제에 대해 한 명의 전문가가 평가보고서 작성 및 평정을 담당함에 따라 평가보고서 내용이 제한되고 평정의 객관성·공정성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점, 일부 민간전문가의 경우 전문성 부족, 평가참여도 미흡 등으로 당초 기대했던 역할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보다 명확한 선정기준이 필요하다는 점, 민간전문가를 위촉해 놓고 한 차례의 오리엔테이션을 제외하고는 정책분석평가실 담당관과의 소통기회가 거의 없었고, 이로 인해 민간전문가들이 평가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는 제시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먼저 1개 과제에 대해 2명의 민간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하여 민간전문위원 수가 196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그리고 민간전문위원 위촉기준도 대폭 강화하였다. 즉, 대학교수, 국책·민간연구소 연구원, 법조인 및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적절히 안배, 적극적 참여가능성 확인, 부처 자체평가 위원으로 활동 중인 자는 제외, 기존 민간위원 중 평가를 통해 소극적 참여·보고서 품질 함량 미달 등 자격 미달 위원은 위촉대상에서 제외 등이다. 또한, 민간전문위원의 평가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오리엔테이션을 개최(2012. 6. 1)하는 한편, 정책분석평가실 과장 중

심으로 민간전문가와와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토록 하였다.

한편, 평가단 대상 부처 업무설명회와 관련하여 부처 평가담당공무원들로부터 설명회가 너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시간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기관 당 설명회 횟수를 상·하반기 2회로 늘이고 시간도 대폭 확대하여 평가단에게는 평가과제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부처에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였다.

2012년 평가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두 차례 실시하였으며, 특히 금년도는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해이고, 정부기관의 세종시 이전, 대선일정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반기 평가에 평가역량을 집중하였다. 상반기 평가는 6월 말 추진실적을 기준으로 평가단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과제별 평가방식으로 진행되었고, 하반기 종합평가는 10월말 추진실적을 기준으로 기관별 평가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평가지표는 2011년 평가 때와 비교하여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다만 상반기 평가에서는 평가시기상의 문제로 정책단계별로 배점 및 세부평가지표상의 변동이 있었다. 즉, 정책형성·집행·성과단계 등 정책단계별 배점기준을 '20:45:35'로 하여 정책집행단계의 배점을 정책성과단계보다 높게 설정하였다. 또한, 정책성과단계의 세부평가지표에서 정책만족도와 성과지표 달성도를 제외하고 정책집행단계의 세부평가지표 배점을 상향 조정하였다. 하반기 종합평가의 평가지표는 2011년과 동일하였다. 상·하반기 평가지표는 아래와 같다

〈표2-1-74〉 2012년 핵심과제 상반기 세부평가지표

단계(배점)	평가항목(배점)	평가지표(배점)
정책형성 (20)	정책목표의 적절성(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목표의 구체성 및 적절성(2) •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및 성과지표의 대표성(4)
	정책수단의 적절성(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수단의 적절성(6)
	분석·의견 수렴 적절성(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분석과 대비책 마련의 충실성(4) • 의견수렴 적절성(4)
정책집행 (45)	추진일정 충실성(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일정 준수 여부(15)
	상황변화 대응성(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상황변화 대응의 적절성(15) • 홍보의 효과성(5)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성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 구축 여부(10)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평가 제외
정책성과 (35)	정책목표 달성도(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시 설정한 정책·사업목표 달성도 (20)
	정책 효과성(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추진으로 의도한 정책효과의 실제 발생 수준(15)

〈표 2-1-75〉 2012년 핵심과제 하반기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단계 (배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배점)
정책형성 (20)	정책목표의 적절성(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목표의 구체성 및 적절성(2) •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및 성과지표의 대표성(4)
	정책수단의 적절성(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적 정책수단의 적절성(4)
	분석·의견 수렴 적절성(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분석과 대비책 마련의 충실성(4) • 의견수렴 적절성(4)
정책집행 (30)	추진일정 충실성(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일정 준수 여부(9)
	상황변화 대응성(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상황변화 대응의 적절성(12) • 홍보의 효과성(3)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성(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 구축 여부(6)
정책성과 (50)	정책목표 달성도(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시 설정한 정책·사업목표 달성도 (20) • 계획수립시 설정한 성과지표 달성도(5)
	정책 효과성(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추진으로 의도한 정책효과의 실제 발생 수준(15)
	정책 만족도(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만족도(조사결과)(10)

④ 평가결과

상반기 평가결과, 경제분야에서는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 적극적인 물가대응, 서민·취약 계층 보호, 중소기업 지원,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을 핵심과제로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창출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주요성과로는 경제분야에서는 유럽 재정위기 등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도 비상대응 체제를 통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FTA를 통해 경제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하였으며, 중소기업 지원 노력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문화분야에서는 복지·교육분야 제도개선으로 서민가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전달체계 효율화 및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 것이 우수한 성과로 평가받았다.

일반행정분야에서는 경제적 약자 및 취약계층 권익구제, 선제적 예방대책 추진으로 자연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의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되었다.

외교안보분야에서는 북한의 국지도발 억제 등 한반도 안보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강화하고 '2012 핵안보정상회의'를 성공적 개최하여 국격을 제고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

로 평가받았다.

다만, 112신고 대응, 다중이용업소 화재, 개인정보 유출,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 미흡 등 국민 불안을 야기한 사건·사고 등은 보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생활안전 보호에 주력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금융시스템 선진화, 군 지휘구조 개편, 통일재원 마련 등 국회의 입법지연과 관련된 과제들은 이해관계자 지지확보를 통해 하반기 중 개혁성과를 가시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98개 과제에 대해 3등급(우수, 정상 추진, 보완필요)으로 구분하여 평가한 결과, 장관급 기관은 60개 과제 중 우수과제 18개(30%), 정상추진과제 32개(53.3%), 보완 필요 과제가 10개(16.4%)로 평가되었고, 차관급 기관은 38개 과제 중 우수과제 11개(29%), 정상추진과제 23개(60.5%), 보완 필요과제가 4개(10.5%)로 평가되었다.

하반기 종합평가의 경우에도 장관급과 차관급 기관으로 나누어 최우수·우수·보통·미흡의 4단계로 등급화 하였는데, 최우수 2개·우수 9개·보통 24개·미흡 5개 기관으로 평가되었다. 평가결과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 중소기업 지원 및 서민·취약계층 보호, 미래성장 동력 확충 등을 중점 추진하여 가시적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물가·고용의 안정세 유지,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 및 FTA 성과 가시화, 재정건전성 등에 따른 국가신용등급이 상향되었다.

둘째, 불법사금융 척결대책 추진 및 연대보증제도 개선 등 서민·중소기업 지원 강화, 보육·교육·의료비 부담 경감, 범정부 복지정보연계시스템 구축 등 사회안전망 확충 및 지속가능성이 제고되었다.

셋째, 4대강 사업 마무리, 여수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및 신산업 창출기반 확충 등을 통한 미래 경쟁력을 제고하였다.

넷째, 런던 올림픽에서의 선전, 한류 확산 등 국가이미지 제고 및 외국인 관광객 1천만 시대 개막, 능력 중심의 열린 고용문화가 확산되었다.

다섯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UN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재진출 등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각 분야의 의미 있는 진전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제·고용·교육·안전관리·안보 분야에서 일부 아쉬운 측면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즉, 경기회복 지연에

다른 성장률 하락, 가계부채의 질적 취약성과 부동산 시장 위축 등이 향후 경제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청·장년층 고용대책과 대학구조개혁 관련 낮은 체감도, 유해물질 누출사고에 대한 체계적 대응 미흡, 원전·방사선 안전관리 및 성범죄 대응 체계의 실효성 강화와 전방 접적지역의 경계시스템·보고체계 등에 문제점이 노정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표 2-1-76〉 2012년 핵심과제 기관별 평가결과

등급	기관명 (직제순)
최우수(2)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우수(9)	외교통상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소방방재청, 관세청, 조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해양경찰청
보통(24)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통일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국가보훈처, 국세청, 통계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문화재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미흡(5)	국방부, 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농촌진흥청, 기상청

(2) 일자리 과제

① 평가개요

2012년 일자리 과제의 추진 노력 및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정책추진 동력을 강화하고, 개선·보완책을 마련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전년도 일자리 창출 과제 평가에서 지적된 부처 간 연계 노력에 가중치를 두어 부처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낮추기 위해 평가지표를 수정하였다.

② 평가대상

기관별 2012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관리과제 중 예산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일자리 관련 과제를 추출하여 11개 기관의 32개 과제를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 2-1-77〉 2012년 일자리 과제 평가대상기관

구 분	기관명(직제순)
장관급 기관(9)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차관급 기관(2)	산림청, 중소기업청

③ 평가방법

정부업무평가위원, 민간 전문위원, 정책분석평가실 담당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일자리 과제 평가단'을 구성하였다. 일자리 과제 평가의 효율성·타당성 제고를 위해 평가단을 4개 분과로 편성하였으며, 각 분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이 분과 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평가지표는 정책형성·집행·성과·만족도를 기준으로 '25:30:35:10'으로 설정하여 전년에 비해 추진·전달체계의 적절성과 집행과정에서 유관기관과 협조 노력 및 모니터링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였다. 구체적인 평가지표는 다음과 같다.

〈표 2-1-78〉 2012년 일자리 과제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단계(배점)	평가항목(배점)	평가지표(배점)
정책형성(25)	1. 정책설계의 적절성(15)	1-1. 목표의 타당성 및 목표치 설정의 적극성(10) 1-2.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의 적절성(5)
	2. 정책 추진기반의 확보(10)	2-1. 자원 배분 및 추진·전달체계의 적절성(10)
정책집행(30)	3. 추진과정의 적절성(30)	3-1. 추진계획의 진척도(12)
		3-2. 유관기관·정책과의 협조 노력(10)
		3-3. 모니터링 및 소통·홍보 노력(8)
정책성과(35)	4. 목표달성도(20)	4-1. 목표치 달성도(20)
	5. 정책효과(15)	5-1. 파급효과·기여도(15)
정책성과(35)	6. 목표달성도(20)	6-1. 해당과제 만족도(10)

④ 평가결과

상반기 평가결과 주요 일자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었으며, 상반기 중 취업자수가 2,500만 명을 돌파하고 6개월 연속 6천개 이상의 신설법인이 생성되는 등 창업 증가세도 지속되어 전반적인 고용상황이 개선되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확대 및 탈수급유인을 확대함으로써 일을 통한 자립기반을 확충하였다. 또한, 고교 직업

교육 강화, 차별요소 제거 등 범정부적 노력으로 공공·민간의 열린 고용이 확산되었다.

다만,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대비하여 고용연장 및 전직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현재 활용도가 낮은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 고용안정지원사업 지원 확대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 과제별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1-79〉 2012년 일자리 과제 상반기 과제별 평가결과

등급	과제명(기관 직제순)
우수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신규채용 확대 (기획재정부) • 고졸취업문화 정착 (교육과학기술부) •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생 취·창업 역량강화 (교육과학기술부)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 • 자활사업 (복지부) • 청년 취·창업 역량강화 (고용부) • 취약계층 취업성공 지원 (고용부)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고용부) • 지역일자리공시제 등 내실화 (고용부) • 고졸자 등 능력개발 취업지원 (고용부) • 청년창업활성화 (중소기업청)
정상추진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인턴사업 (교육과학기술부) • 해외봉사단 파견사업 (외교부) •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행정안전부) • 장애인·노인 일자리 지원 (복지부) •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및 인프라 조성 (복지부) •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 (고용부) • 글로벌 취업지원 (고용부) • 중소기업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 (고용부) • 개인의 능력개발 지원 (고용부) • 사회적 기업 육성 (고용부) • 여성·장애인 고용촉진 (고용부) • 장시간 근로개선 (고용부) • 경력단절여성 등 여성 취업지원 (여성가족부) • 산림분야 녹색 일자리 창출 (산림청) • 중소기업 재직자 교육연수 지원 (중소기업청)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교육 및 중소기업 취업연계 (중소기업청)
보완필요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전문인력 역량강화 (지식경제부) • 사회서비스 일자리 활성화 (복지부) • 장년층 고용연장 촉진 지원 (고용부) • 시간제 일자리 창출 (고용부) • 고용안정지원 (고용부)

하반기 종합평가 결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른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고용률과 취업자수 모두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2009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의 단계별 취·창업지원을 강화하여 청년창업이 증가하였으며, 고교 직업교육의 강화와 先취업-後진학을 지원함으로써 열린 고용 문화를 확산시켰다. 또한, 직접일자리 지원 중 73%를 취업계층에게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를 확대하여 취약계층 생활안정에도 기여하였다. 다만,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불안에 대비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지원 및 고용안정을 강화하고, 청년 체감 고용 개선과 장년층 고용연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와 고용안정 지원사업 활성화 등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노력도 개선·보완 필요 사항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1-80〉 2012년 일자리과제 기관별 평가결과

구 분	기관명 (직제순)
최우수(1)	중소기업청
우수(1)	교육과학기술부
보통(9)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산림청

(3) 녹색성장

① 평가 개요

2012년은 녹색성장 비전선포(2008.8.15) 이후 4년 성과를 마무리하고,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09~2013)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녹색성장 성과 및 국민적 체감도를 집중 점검·평가함으로써 정책추진 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을 평가의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전년도 평가방식을 개선하여 부처별이 아닌 정책분야별로 과제 추진실적을 평가함으로써 평가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평가과제에 대하여는 과제별로 중요도와 난이도를 고려한 가중치를 적용함으로써 평가과제 간 평가결과의 타당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또한, 상반기 중간점검을 실시하여 추진상황을 독려하고, 점검 결과를 최종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② 평가 대상

평가대상 기관은 녹색성장과의 업무상 연관성을 감안하여 녹색성장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한 24개 중앙행정기관으로 선정하였다.

〈표 2-1-81〉 2012년 녹색성장 과제 평가대상 기관

구분	기관명 (직제순)
부단위 (15개)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청단위 (9개)	조달청, 통계청, 방위사업청, 소방방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상청

③ 평가 방법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정책성과 달성도 평가에 역점을 두어 성과목표 달성도(30점) 및 정책 효과성(20점)에 높은 배점을 두었다.

〈표 2-1-82〉 2012년 녹색성장과제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단계 (배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배점)
계획 (20)	1. 계획수립의 적절성(20)	1-1. 정책목표의 명료성 (5) 1-2. 정책내용의 타당성 (5) 1-3.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절성(10)
추진 (20)	2. 추진과정의 적절성(25)	2-1. 추진과정의 효율성 (5) 2-2. 추진일정 준수 정도 (10) 2-3. 추진 과정상 협조노력 (10)
	3. 정책 소통 · 확산노력(5)	3-1. 정책 소통 · 교육 · 홍보 노력 (5)
산출/결과 (50)	4. 성과 달성도(50)	4-1. 성과목표 달성도 (30)
		4-2. 정책 효과성 (20)

2012년에는 평가방법을 개선하여 평가과제를 내용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녹색산업 · 기술, 녹색생활 실천, 적응 및 기타 등 4개 분야로 구분하였다. 이에 따라 민간 전문평가단도 분야별로 5개 분과(녹색산업 · 기술분야는 2개)로 구성하였다.

또한, 평가의 공정성 ·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과제 상호간 가중치를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평가과제별 최종점수는 민간평가단에서 부여한 점수에 과제별 가중치를 곱하여 계산하였으며, 가중치는 중요도 · 난이도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 간 차이는 0.025(2.5%p)로 하였다.

〈표 2-1-83〉 2012년 녹색성장과제 평가 등급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중요도	상	상	중	중	상	하	중	하	하	
난이도	상	중	상	중	하	상	하	중	하	
가중치	1.050	1.025		1.000			0.975		0.950	

기관별 종합점수는 과제 최종점수를 합산하여 과제수로 나눈 평균점수로 계산하였다. 우수·미흡사례는 개별과제의 평가결과에 따라 분과별로 2~3개 정도 선정하고, 우수·미흡기관은 기관별 종합점수를 토대로 분과위원장(5인)이 참석하는 조정회의를 거쳐 3~4개씩 선정하였다. 민간 전문평가단이 대상기관의 평가자료를 일차적으로 점검·분석·평정하고, 평가결과(안)를 작성하여 국무총리실에 제출한 후, 제출된 평가결과(안)를 토대로 민간 전문평가단에서 조정회의를 통해 우수·미흡 사례 선정 등 평가결과를 도출하였다. 최종 평가결과는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를 거친 후,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상정,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확정되었다.

④ 평가결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 및 시행령을 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고효율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린 ICT 기술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사업모형을 개발하고, 녹색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등을 통해 녹색산업·녹색기술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그린리더 양성, 건물에너지 통계 DB 구축 등을 통해 녹색생활화를 유도하고,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녹색기후기금(GCF) 송도 유치,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국제기구 출범, 녹색 ODA 확대 발표 등을 통해 녹색성장 선도 국가로 입지를 강화한 점 등이 주요 성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예상배출량 설정시 적정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이 지적되었다. 구체적인 녹색 일자리 창출방안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대책을 보완해야 하며, GGGI의 국회비준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84〉 2012년 녹색성장과제 기관별 평가결과

구 분	기관명 (직제순)
최우수(1)	방통위 (1위)
우수(6)	농식품부, 금융위
	식약청 (2위), 농진청, 산림청, 기상청
보통(14)	기재부, 교과부, 외교부, 국방부, 행안부, 지경부, 환경부, 여성부, 국토부
	조달청, 통계청, 방사청, 방재청, 중기청
미흡(2)	문화부, 복지부, 고용부

(4) 정책관리 역량

① 평가개요

2012년 정책관리역량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신설(국가과학기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라 평가대상 기관을 조정하였고, 2011년 평가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전문가·피평가기관 의견 수렴을 통해 평가대상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였다.

특히, 기존에 특정평가로 시행하였던 ‘행정관리효율화 노력’을 자체평가로 전환하여 기관의 자율적 평가역량 제고를 도모하였다.

② 평가대상

40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1개, 차관급 19개)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책이슈 대응 노력 등의 ‘정책이슈관리’, 부처 간 협력도·대 국회 지지 확보 및 대응 노력·이해관계자 지지 확보 및 대응 노력의 ‘정책 조정·통합관리’, 나눔과 배려 관련 정책수행 노력(장애인 고용·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공공구매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공직기강 확립 노력·통계 기반 정책관리 노력의 ‘특정시책 이행관리’, 업무계획 이행 관리 노력의 ‘주요 정책 집행관리’ 등이다.

③ 평가방법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관리역량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5개 분과(경제 I·경제 II·사회문화·일반행정·외교통일안보)로 나눠 운영하

었다. 전문가 평가단은 각 부처에서 제출한 실적자료를 토대로 평가지표의 특성에 따라 정량·정성평가를 병행하고, 피평가기관의 소명기회 제공 등을 위해 ‘부처업무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평가항목 중 ‘정책조정·통합 관리’에 가장 큰 비중을 두어 평가하였고, 구체적인 평가항목과 평가지표는 다음과 같다.

〈표 2-1-85〉 2012년 정책관리역량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배점)
1. 정책이슈관리 (15)	1. 정책이슈 대응 노력(15)
2. 정책조정·통합 관리 (40)	2-1. 부처 간 협력도(20) 2-2. 대 국회 지지 확보 및 대응 노력(10) 2-3. 이해관계자 지지 확보 및 대응 노력(10)
3. 특정정책 이행 관리 (35)	3-1. 나눔과 배려 관련 정책수행 노력(15) 3-2. 공직기강 확립 노력(15) 3-3. 통계기반 정책관리 노력(5)
4. 주요 정책 집행관리 (10)	4. 업무계획 이행·관리 노력(10)

④ 평가결과

전반적인 내수시장 위축과 경기침체로 국민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재난·재해, 성폭력, 학교폭력 등 부처간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대처해야 할 정책이슈 증가한 가운데 정책이슈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이에 적극 대응하는 등 국민눈높이에 맞는 정책관리로 정책효과성 제고를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열린고용 확산, 비정규직 차별시정, 하절기 전력 관리 등 제기되는 정책이슈들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 성폭력 및 학교폭력 대응, 주5일제 전면 실시 등 부처간 공동협력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및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비리발생 우려가 높은 분야에 대한 기획감찰 및 예년대비 집행률 개선 등을 통해 청렴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공직사회가 되기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확대 등으로 사회적 약자 배려와 공정사회 구현에 매진하였다.

다만, 일부 현안사안에 대해서는 부처협력 및 공동대응 미흡 등으로 효과성 있는 대책마련이 지연되었다. 특히 ‘구미 화학물질 누출사고’ 등 급박한 사고발생에 대해 부처간 협력 및 공

동대응 미흡하였고,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 및 장기요양보험제도 등의 경우 개선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대책마련이 지연되고 있어 효과적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한 것으로 평가 되었다.

〈표 2-1-86〉 2012년 정책관리역량 기관별 평가결과

구 분	기관명(직제순)
최우수 (2)	행안부
	해경청
우수 (10)	기재부, 외교부, 지경부복지부, 방통위
	병무청, 통계청, 산림청, 중기청, 식약청
보통 (22)	교과부, 통일부, 법무부, 문화부, 농식품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공정위, 금융위, 권익위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방사청, 경찰청, 방재청, 농진청, 특허청, 기상청, 행복청
미흡(6)	국방부, 국과위, 원안위
	법제처, 보훈처, 문화재청

(5) 규제개혁

① 평가 개요

과정 중심의 평가에서 성과 중심의 평가로 전환하기 위해 부처의 전체 규제개혁과제에 대한 ‘중합성과평가’와 부처가 제출한 규제개혁과제 중 파급효과가 큰 핵심규제에 대한 ‘중점과제 성과평가’로 이원화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부처별 등록규제수의 차이와 규제개혁의 가능성, 등록규제수를 기준으로 평가하기 곤란한 불가피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하게 되었다.

② 평가 대상

등록규제가 5개 이하인 9개 기관(국무총리실, 법제처, 권익위, 검찰청, 조달청, 행복청, 통계청, 병무청, 방사청)과 규제개혁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4개 부처(통일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농진청, 기상청)를 제외한 28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하였다.

중합성과평가의 경우 2012년 규제개혁 종합계획에 포함된 전체과제를, 중점과제 성과평가의 경우 부처의 대표적인 핵심규제와 관련된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표 2-1-87〉 2012년 규제개혁 평가대상기관

구 분	기관명 (직제순)
부단위 (17)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청단위 (11)	국가보훈처,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해양경찰청

③ 평가방법

예년과 마찬가지로,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규제개혁평가단’을 운영하고, 평가지표의 특성에 따라 정량·정성평가를 적절히 병행 활용한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 담당관이 부처제출 실적자료를 1차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규제개혁평가단이 평가결과(안)를 확정하여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상정·의결한다. 평가지표는 종합성과평가와 중점과제 성과평가로 나누어 구성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1-88〉 2012년 규제개혁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 종합성과평가(70%)

단계(배점)	평가항목(배점)	평가지표(배점)
계획(30, ±5)	1.계획수립의 적절성(30, ±5)	1-1. 규제개혁분야의 적절성(20)
		1-2. 규제개혁과제 발굴률(10) * 전략과제 발굴·검토·수용 기여도(±5)
집행(40, ±5)	2.규제개혁 추진역량(15)	2-1. 자체규개위 내실화 정도(10) 2-2. 규제개혁 교육실적(5)
	3.추진의 적극성(5)	3-1. 규제관련 국민 및 기업애로 제기사항 수용률(5)
	4.입법절차 준수의 적절성(5)	4-1. 입법(행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 첨부비율(2) 4-2. 규제영향분석서 내용의 충실성(3)
	5.홍보의 적극성(15, ±5)	5-1. 규제개혁과정에서의 홍보의 적극성(15)
규제개혁 성과(30, ±5)	6.규제개혁 이행실적(10, ±5)	6-1. 규제개혁과제 이행률(10) * 행정조사 정비실적(±5)
	7.규제개혁 효과성(20)	7-1. 규제개혁 고객불만족도 조사(20)

㉞ 중점과제 성과평가(30%)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계획(30, ±3)	1. 계획수립의 적절성 (30, ±3)	1-1. 과제선정의 적절성(30) * 목표설정의 적극성(±3)
규제개혁 성과(70)	2. 규제개혁 효과성(70)	2-1. 규제개혁 홍보(15) 2-2. 규제개혁 효과(35) 2-3. 규제개혁 고객만족도(20)

④ 평가결과

2012년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속에 내수시장 위축과 불투명한 경기전망으로 기업경영상의 애로 및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수요자·현장 중심의 과제 발굴 노력을 강화하여 체감도 높은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전체 발굴 과제 총 1,473건 중 2012년 9월 현재 완료대상 과제는 총 1,122건이며, 이중 946건을 이행 완료(이행률 84%)하여 기업활성화 지원, 국민 부담 완화에 규제개혁이 적극 기여하였다.

또한, 낙도·산간 등 취약지역이나 영세·중소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규제 완화·차등 적용으로 규제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였으며, 규제개혁 성과 홍보 강화, 국민·기업애로 제기사항의 수용률 제고 노력 등으로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고객 만족도도 '12년도 규제개혁 만족도는 69.4점으로 전년대비 2.2점 상승하였다. 기관별로는 보건복지부, 국세청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일부부처의 경우 등록 규제건수 대비 발굴 과제 건수가 10%에 미달하는 등 규제개혁 발굴 노력이 미흡하고,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및 규제영향분석 강화 필요성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89〉 2012년 규제개혁 기관별 평가결과

구 분	기관명 (직제순)
최우수(2)	농림수산식품부
	특허청
우수(5)	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관세청, 중소기업청
보통(16)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미흡(5)	국세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해양경찰청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문화재청

(6) 정책홍보

① 평가 개요

2012년은 그간 수행해온 정책과제의 실질적·가시적 성과가 본격적으로 발현되는 시기인 만큼, 정부 주요 국정과제 성과확산에 우선 목표를 두고 평가하되, 기획·협력, 소통활동 및 성과확산으로 범주화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전년에 비해 정책성과백서 등 정책기록 지표가 추가되고 평가배점을 일부 조정하였다.

② 평가 대상

2011년에 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2개 기관이 증가한 41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하되, 부처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관규모와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 기관을 분류하여 평가의 형평성과 수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③ 평가 방법

예년과 마찬가지로 홍보분야는 물론, 정치·사회·경제 등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정책홍보 평가단'을 운영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평가지표의 특성에 따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 활용하였다. 부처별 특성으로 특정 평가항목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일반적인 결측값 처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량평가는 7점 척도로, 정성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후 지표별 배점점수로 환산하였다. 구체적인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는 다음과 같다.

〈표 2-1-90〉 2012년 정책홍보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기획(10)	1. 정책홍보 기획·협력(10)	1-1. 주요 정책과제 홍보계획의 충실성(10)
활동(48)	2. 정책홍보 소통 활동(48)	2-1. 범정부적 협력 홍보 실적(5) 2-2. SNS 등 온라인 소통(20) 2-3. 정부매체 활용 실적(8) 2-4. 주요 정책 온/오프라인 오보대응(10) 2-5. 외신 대상 홍보활동 실적(5)
성과(42)	3. 정책홍보 성과 확산(42)	3-1. 주요 정책 기획홍보를 통한 우수사례 도출실적(20) 3-2. 정책브랜드에 대한 국민평가(5) 3-3. 정책성과백서 등 정책기록(7) 3-4. 기관장 홍보활동(10)

④ 평가결과

국민의 관심영역 확장, 뉴미디어의 등장 등으로 기존의 획일적인 홍보로는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매체별·세대별 눈높이에 맞춘 차별화된 홍보방식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기존의 SNS 홍보수단 외에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 및 모바일 웹을 정책홍보에 활용하여 환경변화에 대응한 적극적인 소통 활동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부처의 주요 정책에 대한 기획홍보 역량이 꾸준히 향상되고, 기관장 중심의 창의적·능동적 대국민 소통이 정책 인지도 제고에 기여를 하였다. 다만, 주요정책 및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민간 홍보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형화된 홍보기법을 지양하고 대내외 의견수렴 창구로 활용하는 등 정책별 특화된 콘텐츠 개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1-91〉 2012년 정책홍보 기관별 평가결과

구분	기관명(직제순)
최우수 (2)	고용노동부
	경찰청
우수 (12)	기지사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국민권익위원회
	산림청, 관세청, 통계청, 소방방재청,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보통 (23)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가보훈처, 국세청, 조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문화재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미흡(4)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처, 대검찰청

(7) 국민만족도

① 평가개요

2012년 국민(정책·민원)만족도 평가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 민원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직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전년도에 비해 개선된 점은, 민원난이도 측정 시 종전과 같이 민원인들이 직접 난이도를 부여하지 않고 사전

에 마련된 난이도 분류유형에 따라 민원 난이도를 측정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정책만족도 조사시 일반국민의 체감만족도 반영비율을 상향 조정(30% → 50%)하여 조사 집단 별 특성이 보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평가 대상

평가 대상기관은 41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평가 대상과제는 정책 만족도의 경우, 각 중앙행정기관별 핵심과제 98개(부단위 3개, 청단위 2개)를 대상으로 하였고, 민원만족도의 경우, 부처별 일반·인터넷 민원행정서비스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③ 평가 방법

평가방식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민간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우선 정책만족도의 경우, 일반국민을 주된 대상으로 하되, 분야별로 관련 민간전문가를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평가지표는 크게 항목만족도와 체감만족도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1-92〉 2012년 정책만족도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세부 설문내용)
항목 만족도 (70%)	민주성	• 정책수립·집행과정에서 고객의 의견수렴 및 공개와 소통을 통한 정책협조 노력 정도
	적정성	• 전략목표, 성과목표, 정책수단 등 정책의 구체적내용이 적정하게 설정된 정도
	대응성	• 정책추진 과정에서 정책환경의 변화를 극복하고 문제점을 시정·보완하기 위해 노력한 정도
	효과성	• 정책이 당초에 의도한 계량·비계량적 성과가 실제로 나타난 정도
체감만족도(30%)		• 해당 정책 전반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총체적 만족도

한편 민원만족도의 경우, 일반민원과 인터넷 민원의 민원인 모집단을 확보한 후 무작위 표본추출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각 기관별로 250명 이상의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하였다. 평가지표는 주요 정책과 마찬가지로 항목만족도와 체감만족도로 구성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1-93〉 2012년 민원 만족도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세부 설문내용)
항목 만족도 (70%)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민원신청 시 인터넷 홈페이지 접근과 서식 입력이 쉽고 간편한 정도 • (일반) 민원 담당공무원과의 면담·통화와 서식 작성이 쉽고 간편한 정도
	신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일반) 민원 담당공무원이 관련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한 정도
	대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인터넷 민원시스템에서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쉽게 알 수 있는 정도 • (일반) 민원 담당공무원이 친절하고 정중하게 민원인을 응대하는 정도
	공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일반) 민원처리 결과의 근거나 이유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도
체감만족도(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일반) 해당 민원서비스 전반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총체적 만족도
민원난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민원의 처리를 위해 해당기관이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려움의 정도에 대한 민원인의 인식

④ 평가결과

2012년 41개 중앙행정기관(98개 핵심과제) 정책만족도 평균은 64.23점으로 나타났는데, 부 단위 기관의 정책만족도 평균은 63.25점이며, 청 단위 기관은 65.26점이었다. 금년도는 전년 대비 일반국민과 전문가 만족도가 모두 상승함으로써 정책만족도 평균도 전년도(63.22점)에 비해 1.01점 상승하였다.

기관별로는 부 단위 21개 기관중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해 국민권익위원회, 여성가족부 등이 높은 정책만족도를 보였다. 청 단위 20개 기관중에서는 산림청을 비롯해 기상청, 병무청 등이 높은 정책만족도를 보였다. 구체적인 평가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2-1-94〉 2012년 정책만족도 평가결과

구 분	기관명 (직제순)
상위 (12)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병무청, 소방방재청, 산림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중·하위 (29)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가보훈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방위사업청, 대검찰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12년 40개 중앙행정기관 민원만족도 평균은 75.74점으로, 전년도에 비해 2.02점 상승하였다. 민원종류별로는 일반민원과 인터넷민원이 모두 상승하였다. 부 단위 기관의 민원만족도 평균은 72.21점이며, 청 단위 기관은 78.95점이었다.

기관별로는 부 단위 20개 기관중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부 등이 높은 민원만족도를 보였다. 청 단위 20개 기관중에서는 해양경찰청, 병무청 등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구체적인 평가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2-1-95〉 2012년 중앙행정기관 민원만족도

구 분	기관명 (직제순)
상위 (12)	통일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관세청, 병무청, 소방방재청, 중소기업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중·하위 (28)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물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법제처, 국가보훈처, 국세청, 조달청, 통계청, 대검찰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 정책현안과제 분석

가. 종합정리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다수부처 관련정책,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정책, 국가주요사업 등의 분석과제를 선정 분석하였다.
1998년 ‘특정과제 평가’라는 명칭으로 시작되었다.

1) 정책현안과제 분석 개념

정책현안과제 분석이란 다수부처 관련시책,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시책,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국가 주요사업 등에 대한 분석적 평가를 통해 유용한 정책정보를 생산하고 정책·제도개선을 도모하는 평가과정을 말한다.

정책현안과제 분석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2조 및 제20조에 근거한 특정평가의 한 유형이다. 평가주체 면에서 국무총리의 주관 하에 실시되므로, 중앙행정기관이 스스로 소관 정책을 평가하는 ‘자체평가’와 구분되며, 평가시기 면에서 연중 수시로 필요한 정책을 평가하게 되므로, 연중 계획된 절차에 따라 부문별로 실시되는 (협의의) ‘특정평가’와도 구분된다.

2) 연도별 변화

정책현안과제 분석은 ‘특정과제 평가’라는 명칭으로 1998년부터 실시되었다. 이후 ‘특정시책 평가’, ‘수시현안 평가’ 등의 명칭으로 실시되어 오다가 2011년부터는 현재와 같이 ‘정책현안과제 분석’ 또는 ‘정책현안 평가’로 지칭되고 있다. 명칭은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지만, 종래 기관평가의 틀을 벗어나 다수부처가 관련된 주요 시책을 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기본 목적은 같다. 다만, 2008년 이후 정책현안과제 분석·평가의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었는데, 그 이유는 최근 행정이 복잡·다기화 되면서 다수 부처가 관련되는 이른바 융합행정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기존의 정규적 평가로는 정책의 신속한 개선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3) 평가결과 활용

정책현안과제 분석결과 보고서에는 평가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

안이 제시되며, 개선방안은 일반적으로 관계부처와의 실무 협의를 거쳐 국가정책조정회의, 국무회의등에서 확정되었다. 확정된 개선방안은 소관 부처별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되며, 추진상황은 국무총리실에서 매년 주기적으로 사후 점검을 실시하였다.

과거에는 평가결과를 소관부처에 통보하거나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과제를 마무리하기도 하였으나, 평가결과의 적극적 활용과 개선방안의 이행력 담보를 위해 2009년 이후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적극 활용하였다.

4) 정책현안과제 분석 추진 성과

국정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수부처 관련 정책,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정책,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국가주요사업 등을 분석과제로 선정하였다.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지역적인 과제는 지양하여 구체적으로 분석범위를 특정하고, 정책수요자·일반국민의 입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하여 분석의 효과성을 제고하였다.

전문가 평가단 운영과 정책 현장점검을 통해 시의성 있는 문제분석 및 대안을 이끌어내었다. 현장점검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관련자료 확보, 현장점검단의 효율적 운영, 점검 대상의 적절한 선정 등을 통해 질 높은 현장점검을 확대함으로써 현장감 있는 보고서를 다수 산출하였다. 또한 주기적인 전문가 평가단 회의를 개최하여 문제점 인식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선정과제의 추진상황 파악과 중복방지 등을 위해 국무총리실 내 관련 부서 및 부처와의 협조체계도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시의성 있는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책현안과제 분석 결과는 국가정책조정회의, 국무회의 등을 통해 확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조치하였다.

나. 연도별 평가 내용 및 개선방향

1) 2008년

총 9개의 과제를 평가했다. 주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정책을 다룬 과제가 많았다.

‘방과후 학교’, ‘영어마을’ 등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던 정부 정책이 주된 대상이 되었다.

(1) 해양오염사고 관리체계

① 평가배경

글로벌 경제가 확대되면서 해상 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선박이 대형화 되면서 그에 따른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도 꾸준히 증가하였다. 특히 2007년 12월에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서해안 기름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방지조치, 초기대응, 복구 및 주민지원 등이 적절히 이행되었는지를 분석·평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② 문제점

첫째, 사고방지조치 및 예방시스템 운용분야를 살펴본 결과, 사고요인을 현장에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해상관제시스템이 미흡한 상황이었다. 무엇보다 현행 관제시스템은 향해 정보만 제공하는 소극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사고위험 인지 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중소형 선박의 경우 관제센터와 교신 주파수(VHF 16)를 맞추지 않거나, 관제사항을 청취하지 않고 운항하는 사례가 많아 관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둘째, 사고수습 및 방제활동분야를 분석한 결과, 사고 지휘체계가 명확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아 혼선을 초래하였으며 대규모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한 대응매뉴얼이 체계적으로 갖추어 있지 않았다.

셋째, 주민지원 및 피해보상 부분을 확인한 결과, 조기에 긴급 생계안정자금 지원을 결정하였으나, 지원금 증액요구, 지급기준 마련 등으로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금 배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③ 개선방향

첫째, 사고요인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항만 VTS(해상교통관제시스템)는 현행대로 항만청에서 운영하되, 유조선 등 위험선박 운항이 많은 연안지역의 VTS는 해양경찰청으로 이관토록 개선하였다. 이외에도 유조선 등 위험물 적재선박에 대해서는 VHF(초단파) 통신장비를 이중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둘째, 사고초기 현장지휘 시 혼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제대책본부의 방제업무 총괄

지휘권을 법률에 명시하고, 부처 간의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구분토록 하였다.

셋째, 대규모 해양유류 오염사고 시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생계지원 근거, 기준 등을 마련토록 하였다. 또한 피해지역 주민이 보상을 받기 전까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근로, 생태계 복원 사업 등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2) 장애인 생활시설 관리·운영 정책

① 평가배경

무의탁 장애인, 중증장애인 등 시설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생활시설에 수용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7년 12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장애인 생활시설은 314개소이며 입소자는 21,709명에 이른다.

그러나 장애인 생활시설 관련 정책이 장애인 복지개선 종합대책의 일부로만 추진되는 한계점과 함께, 생활시설 공급량 부족, 운영비리, 일부 인권침해 문제 등이 계속해서 발생됨에 따라 시설 공급확대, 예산 등 시설운영의 투명성 강화, 서비스 품질 제고 대책이 요구되었다. 또한,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사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지방재정부담 가중 및 지역 간 불균형 문제 등도 함께 제기됨에 따라 장애인 생활시설 관련 정책과 운영실태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부실운영을 방지하고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였다.

② 문제점

첫째, 장애인 생활시설과 관련한 문제점이다. 장애인 생활시설 대책의 장기 비전·전략 마련이 미흡하였다. 탈 시설화, 자립생활, 사회복귀 지원 등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비리 등 당시 사회적 관심도를 반영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 비전·전략이 없었기 때문에 양적인 공급에만 치중하게 되었다. 시설의 대규모화는 물론, 장애인 생활시설 내에 재활에 필요한 상담, 훈련, 교육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역작용도 낳았다.

둘째, 장애인 생활시설 관련 사업 추진이 적절하지 못했다. 예산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계획 대비 시설 확충 실적이 저조하였고, 개별 이용자의 생활시설 선택권이 배제되어 제공

되는 서비스의 정도와 내용을 고려하지 않는 입소자소 중심의 획일적인 보조금 지원 등이 문제였다.

셋째, '분권교부세'를 신설하여 장애인 시설 운영비 지원을 포함한 국고보조사업을 2005년부터 지방에 이양하였으나, 필요한 금액보다 적게 지원함에 따라 지방의 재정부족은 물론 사업추진에 지장이 생겼다.

넷째, 지속적인 공급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생활시설의 전체적인 공급량이 부족하였다. 심지어 보조금 횡령 등의 비리 사례가 적발되는 것처럼 서비스의 질적 관리가 미흡했다.

③ 개선방향

첫째,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개선을 위한 비전과 전략이 포함된 기본계획 수립 등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둘째, 장애인 생활시설의 지역사회 통합적 기능 강화를 들 수 있는데, 이를 위해 먼저 장애인 생활시설의 기능과 역할, 분류체계 개편 및 기존 대규모 시설의 소규모 시설 전환과 함께 개인 신고시설의 제도권 흡수를 제시하였다.

셋째,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조치로써 서비스 최소표준 기준 마련과 서비스 가정의 체계화, 시설 등록 및 등록 취소체계 도입, 시설 운영위원회 기능 활성화 등을 통한 서비스 표준화 및 서비스의 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넷째, 서비스 표준비용을 산출하고 이용자 부담방식도 적용하는 등 서비스 이용 합리화와 입소자 권리 보장 지침·서비스 제공자 윤리강령 제정은 물론 시설 음브즈만 제도 도입 등을 통한 이용자의 권리보장도 강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다시 전환하고 시설 평가제도를 개선하는 등 장애인 생활시설에 운영에 대한 국가관리를 강화토록 하였다.

(3) 재외동포 교류·협력사업 실태

① 평가배경

국가경쟁력 강화, 재외동포의 권익신장 등을 위해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내외 한인기업의 협력체계 구축과 경제 교류 활성화, 민족 정체성을 함양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관련사업 중복, 비체계

성 및 종합전략 부재 등으로 인해 사업의 효과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그간 추진해 온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 등 교류협력 사업의 문제점을 평가하고 미래지향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② 문제점

첫째, 동포 네트워크 교류협력 사업의 단계별·연도별 교류협력 로드맵과 중간목표를 제시한 체계적인 계획수립이나 통합적인 전략이 없고,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정책조정 기능이 미약하여 관계부처 간 유기적인 연계미흡과 사업 중복시행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외동포 네트워크는 특정분야에 편중되어 구축되었으며, 네트워크 간 횡적연계나 사후관리는 부실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차세대와 청소년 네트워크 구축과 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다소 미흡하였고, 세계한상대회 등 각종 오프라인 교류사업의 세부프로그램이나 사후관리가 부실하였다.

셋째, 재외동포들의 인터넷 이용 증가추세에 비해 이용환경이나 편의성이 매우 열악하였으며, 기 구축된 재외동포 포털의 콘텐츠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③ 개선방향

첫째, 재외동포 정책의 추진체계를 재정비하고 중장기 전략을 마련키로 하였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실질적인 조정권한을 부여하고, 재외동포 교류협력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한민족 네트워크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둘째,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적극 활용키로 하였다. 분야별·지역별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종합적인 통계DB 구축, 네트워크 간 연계강화 등 재외동포 지원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기로 하였다.

셋째, 국내 인터넷 접근 편의성을 높이고 포털사이트 구축과 콘텐츠 내실화를 통해 모국과 거주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온라인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뒷받침토록 하였다.

(2008년 8월, 정부업무평가 위원회)

(4) '방과후학교' 운영실태

① 평가배경

'방과후학교'는 학생·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여 운영하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학교 교육 활동이다. 2006년 이후 '방과후학교'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이 본격 시행되면서, 2007년 10월 기준 전국 초·중·고의 99.9%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정규 학교교육 과정을 보완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2008년 들어 운영권한을 중앙정부에서 교육청으로 이양함에 따라 교육현장에서는 사업 축소 우려가 지속 제기되는 한편, 형식적 운영, 사교육비 경감 효과 미흡 등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방과후학교' 운영실태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② 문제점

첫째, '방과후학교' 사업이 법적 근거 없이 지방 이양되어 사업축소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다.

둘째, 단위사업별로 재원이 상이하고 지원방식이 복잡하여 안정적인 예산확보와 효율적인 집행이 곤란하였고 세수감소 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었다.

셋째, 각 부처가 '방과후학교' 유사 프로그램을 중복 운영하여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교육·보육 시스템에 한계가 있었다.

넷째, 일부 학교의 경우 '방과후학교'를 정규 교육의 연장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시행하고 초등학생이 참여할 만한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미흡하였다.

③ 개선방향

첫째, 방과 후 학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근거법을 마련토록 하였다.

둘째, 예산의 목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집행 상황에 대해 확인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예산교부 시 반영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셋째, 유관업무 수행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례 협의체 또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넷째, 초등 보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외부 기관의 우수강사를 확보하는 등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5) 지자체 영어마을 조성 및 운영실태

① 평가배경

영어마을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실용영어능력 제고, 학교 영어교육 보완 등을 목적으로 2004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하여 2008년 5월 현재, 전국 18개 지자체에서 21개 영어마을을 설치·운영 중이다. 영어마을 프로그램 참여자의 교육만족도가 높고 영어학습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수도권 등 일부지역은 과잉투자가 우려되고 대규모 영어마을을 신규로 건설할 경우 관련 지자체의 지속적인 재정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지자체 영어마을 조성 및 운영 실태를 점검·평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② 문제점

첫째, 일부 지자체는 교육수요 및 적정규모 등에 대한 체계적 검토 없이 영어마을을 조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교육청 주관으로 추진되는 영어체험학습센터와 투자 중복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초기 조성비용이 많이 들고 인건비 등 교육원가에 비해 수강료는 낮은 수준이어서 재정적자가 나타나고 있었으며, 대규모 영어마을이 계속 건설될 경우 관련 지자체의 재정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셋째, 단기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지속적 어학능력 향상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권 지자체 위주로 영어마을이 조성되어 농어촌 및 중소도시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었다.

③ 개선방향

첫째,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영어마을과 관련하여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원어민 강사 관리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영어마을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영어마을의 재정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합동으로 연구·검토하기로 하였다.

둘째, 교육과학기술부는 영어체험교육시설의 중복 및 과잉투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어마을과 영어체험학습센터 조성 현황 및 계획, 교육수요 등을 종합 분석하여 지역별 영어

체험 교육시설 수급관련 예측자료를 작성·제공기로 하였다.

셋째, 이러한 예측결과에 따라 영어마을이 없고 사교육에서 소외된 농어촌 지역에 교육부 및 교육청 주관의 학교 영어체험학습센터 등을 중점 설치기로 하였다.

(2008년 9월, 국무회의)

(6) 케이블방송산업 실태

① 평가배경

케이블방송은 1995년 지상파 방송의 '난시청 해소'를 목적으로 도입되어 기술발전·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생활정보 등 다양한 방송서비스와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매체로 발전하였다. 또한, 2000년1월 통합·방송법·제정 이후 각종 신규매체 등장 에 따라 '규제완화'가 진전되고 매체 간 시장경쟁 심화와 집중화 현상이 나타났으며, 케이블 TV·위성방송 등 신규매체는 증가하는 등 케이블 방송 산업정책이 변화하였다. 최근 '방송통신 융합(Convergence)'이 가속화되고 미디어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면서, 공정경쟁 과 매체 간 균형발전을 통한 규제 및 제도개선을 위해 케이블 방송산업 실태를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② 문제점

첫째, 방송통신의 융합으로 규제체계의 전환이 요구되에도 종래의 '수직적 규제체계'가 유지됨에 따라 산업발전이 저해되고 국제경쟁력 저하를 초래하였다. 즉, '유사·동일 서비스에 상이한 규제' 적용으로 인한 규제형평성, 규제중복·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하였다.

둘째, 방통융합이라는 현실에 부응하는 규제체계 마련 및 적용에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융합형 서비스가 새로 나타날 때마다 개별 법률로 규율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지속되었다.

셋째, 엄격한 경영규제를 '가입자 기반의 시장점유율' 규제로 전환·완화하는 과정에서 이해집단 반발로 입법절차 지연, SO간 인수·합병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및 공정위간 중복규제, 케이블방송의 디지털 전환으로 주파수 대역이 부족해짐에 따라 의무제공 아날로그 채널의 단계적 축소 등 케이블방송 관련 규제 추진에 문제가 있었다.

③ 개선방향

첫째, 방송 및 통신분야를 망라하는 '수평적 규제체계'로의 전환방향을 조속히 확정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Action Plan)을 수립·추진토록 하였다.

둘째, 방송과 통신의 규제가치(공익성 vs. 산업성) 조화를 위한 새로운 규제패러다임 정립과 함께 '방송통신 통합법제' 제정을 추진토록 하였다.

셋째, 의무제공 채널 축소 등 채널 구성·편성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방송법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고 규제기관 간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이중규제를 개선토록 하였다.

(7) 친환경농식품 생산 및 유통 활성화 시책

① 평가배경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식품 이물질 발견, 학교급식에서의 식중독 발생 등을 계기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 관심과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친환경 농식품 육성 관련 주요 정책의 추진실태를 분석·평가하고 친환경 농식품의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과 유통·소비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 개선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② 문제점

첫째, 생산단계에서는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기준이 비현실적이어서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선정과정 및 추진기간 등 사업 추진방식이 다소 비합리적이었고, 친환경농산물 생산확대가 유기농법 적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곡류, 채소류 등에 집중되는 등 양적 확대에 치우쳐 질적 측면에서의 성과는 다소 미흡하였다.

둘째, 인증단계에서는 유기가공식품과 유기농산물 관리체계의 이원화로 정책적 연계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종류가 너무 많고 타 인증제도와 차별성이 확보되지 않아 소비자 인지도가 저조한 실정이었다.

셋째, 유통·소비단계에서는 유통망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지 않아 친환경농산물 판매확대에 어려움이 있었고, 유기가공식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산 유기농산물 가공판매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③ 개선방향

첫째,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를 단계별로 상향조정하고 지급시한을 5년까지 연장하는 등 직불금 지원을 강화하고, 광역친환경농업단지의 경우 사업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브랜드 개발·마케팅 등에도 예산 투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둘째, 인증단계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를 단순화하고 유기가공식품 표시제를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로 일원화하는 등 유기가공식품 인증체계를 개선토록 하였다.

셋째, 학교 급식 등 대규모 수요처 연계를 통해 친환경 농식품 소비를 활성화하고, 도매물류 기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다.

(2008년 11월, 정부업무평가위원회)

(8) 다문화가정 교육지원 정책

① 평가배경

여성결혼이민자, 외국인이주근로자 등 다문화가정 재학생자녀가 해마다 급증하여, 2008년 4월 현재 약 2만1천명에 달하고, 다수부처의 다문화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학교와 가정생활에서 부적응이 심화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부모·자녀의 효과적 교육지원을 통해 언어·문화·학습능력의 격차 해소하고 주류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사전대응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② 문제점

첫째, 대부분의 지원정책이 이주 1세대인 결혼이주여성의 기초 한국어교육 등에 편중되어 차세대인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을 마련할 전담부서가 없는 등 정책추진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한국어 및 문화 교육 관련 부처협의 및 정책조율 부족으로 복지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등이 한국어교육 등을 중복 운영하는 등 예산 효율성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셋째, 부처차원의 주도적 사업개발 노력이 부족하고, 관련 연구사업의 중복 및 전시성·일회성 프로그램도 다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③ 개선방향

첫째, 공교육과 연계하여 학생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도입하고 방과 후 학교 및 취학 전 아동 한글교육을 내실화하는 한편, 부모의 자녀 학습 지도능력 함양에 주력하기로 하였다.

둘째,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지자체를 중심으로 학교, 사회단체 등 지역사회의 적극적 활용 및 연계를 강화해 가기로 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정을 동화를 위한 시혜대상자로 보는 소극적 정책관점에서 탈피하고, 출신 모국어와 문화를 적극 활용해 미래의 국가인재자원으로 양성해 나가는 전향적 정책관점을 확산하기로 하였다.

셋째, 교육과학기술부, 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부처 간 관련업무 분장 및 추진체계를 명확히 하여 사업 중복과 예산낭비를 줄여 정책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하였다.

(9) 국제행사 유치 및 사후관리 현황

① 평가배경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는 국가의 대외이미지 제고, 경제적 파급효과 등 다양한 성과 창출이 가능함에 따라 주요 국제행사 유치·개최 건수가 1999년(505건)에 비해 2007년(1,028건)에 2배나 증가할 정도로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나 유치경쟁의 과열 및 유사행사 중복, 사업비 과다 및 방만 운영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었다.

그동안 정부는 행사 유치·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해 '국제행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국제행사에 대한 국가차원의 전략 등 관련 기관간 상호협력체계, 행사개최 이후 평가 등은 미흡한 상태로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② 문제점

첫째, 한국관광공사, KOTRA 등의 기관에서 국제행사 지원차원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통계 등을 관리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국제행사 관련 정보공유 및 조정 기관이 없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 개별 주관기관에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노력을 중복적으로 투입하는 비효율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둘째,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같은 대규모 국제스포츠 행사는 규모·파급효과, 국민적 관심도 등에 비추어 국가차원의 중요행사이면서도 공식 추진주체는 국가가 아닌 도시로 되어 있음에 따라 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사이에 의견상충이 발생하고, 복수의 지자체가 동일

· 유사한 국제스포츠 행사 유치를 위해 경쟁하는 사례가 빈발하였다.

셋째, 국제행사 시설물 건립·관리·운영에 국고 등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관리·활용실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관리체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③ 개선방향

첫째, 국제행사 관련 자료·정보 공유를 위한 국가차원의 중앙부처-관련기관간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둘째, 지자체간 과열경쟁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한 심사제도 보완 및 국제기구에 유치의향서 제출전 예비심사 절차를 강화하였다.

셋째, 시설물 건립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수익성과 공익성의 조화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2) 2009년

가장 활발하게 정책현안과제 평가가 실시되었으며(19건),

청년인턴, 대학생 창업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정부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평가가 다수를 이루었다.

(1) 중소기업 R&D 지원실태

① 평가배경

1998년부터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R&D 예산의 일정비율을 중소기업에 지원토록 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KOSBIR : Korea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를 통해 연간 약 1조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각 기관별로 제각기 추진되고 있고 국가차원의 전략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중소기업 R&D 지원실태를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② 문제점

첫째, 중소기업 R&D 지원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전략이 부재하고 각 기관 간 지원과제

중복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R&D 지원제도(KOSBIR)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점과 본 제도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청에서 기관별 기능에 대한 조정·연계 등을 하여야 하나 단순히 지원 계획 및 지원 실적을 집계하는데 그치고 있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둘째, 기관별로 R&D 성격·기능 등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권장지원비율이 정해져 실효적 계획 수립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중소기업 R&D 지원과제의 85.5%가 개발연구에 지원(2007년 기준)되고 있어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③ 개선방향

첫째, 범정부적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국가적 지원전략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강화하고 범정부적 중소기업 R&D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을 지원 금액 규모와 지원기간에 따라 중장기적 창조·선도형 기술개발 지원사업과 단기적 현장·생계형 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적합한 전략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둘째, R&D 예산에 대한 권장지원 비율을 '의무지원 비율'로 전환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당 지원금액도 상향하기로 하였다.

셋째, 중소기업 R&D 지원전략 수립 시 기초연구 비율 결정과 기초연구 강화방안을 포함하고, 첨단기술 중소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기초연구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기타, 지원과제 선정 전자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협약절차 및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도록 하였다.

(2009년 3월, 정무업무평가위원회)

(2) 향만현대화기금 실태

① 평가배경

향만현대화 기금은 향만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부산·인천항 등이 1996년 11월에 향만 노·사간 자율협약으로 5년간 200억 원을 조성키로 합의하였으며 기금의 재원은 부두운영회사의 부두임대료 10%와 향만하역요금의 1%로 주로 향만 사업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향만물동량 감소로 하역료 수입이 감소하고 있어 사업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 분석을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② 문제점

첫째, 노·사간 협약시 기금적립 종료시점을 협약서 등에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하역작업 인력이 이커미 상용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금을 적립하고 있었다.

둘째, 당초 기금의 사용목적을 ‘항만근로자 고용안정’으로 규정하였으나, 항만별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퇴직자에게는 생계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인력에게도 생산 장려금 또는 복지 지원금 등의 형태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③ 개선방향

첫째, 상용화된 항만의 경우 본래의 기금조성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기금조성을 중단하되, 노·사간에 이미 합의된 사항은 존중하여 일정기한 동안 유지토록 하였다.

둘째, 항만인력공급체계가 항운노조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항만은 향후 상용시 보상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적립할 필요가 있으나, 기금 조성 후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차단하기 위해 항만별 소요자금, 연간 조성액 등을 감안하여 조성 기한을 명확하게 명시토록 하였다.

셋째, 기금사용 용도 제한과 관련하여 당초 합의한 기금의 목적인 ‘항만근로자 고용안정’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한정하였으며 상용화된 근로자에 대해 지급하는 생산장려금은 고용안정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기금의 본래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폐지토록 개선하였다, 또한 비상용화 된 인력에 대해 지급하는 후생복지비는 오히려 상용화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폐지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적립된 기금의 잔액은 노·사간에 이미 합의된 사업에 한정하여 사용토록 하였으며, 추가 사용은 엄격하게 제한토록 개선하였다.

(3) 북한이탈주민 교육·취업지원 대책

① 평가배경

1990년대 중반 이후 식량부족 등 경제사정 악화로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이 급격히 증가하여 2008년 말 현재 15,057명에 도달하였다. 그동안 정부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응 교육,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에 비해 높은 실업률 등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범정부적인 체계적 종합대책과 함께 지자체·민간의 역할 강화, 취업지원 내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응방안 마련 필요성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대상 사회적응 교육,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였다.

② 문제점

첫째, 그동안 추진된 북한이탈주민 관련 대책은 현안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단기 보완 대책 수준으로 정책의 장기 비전·전략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대책 관련 협의·조정기구인 '북한 이탈주민 대책 협의회'를 통한 부처 간 협조 체계가 미흡하여 정책의 효과성이 저조하였다. 셋째, 초기 정착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인 하나원의 교육내용이 불충분하여 취업률 제고의 한계 우려가 있었다.

넷째,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주지에서 정착을 지원하는 지자체·민간 등 지역사회 정착지원 기능이 부족하였다. 다섯째, 일용근로자 비율 과다 등 취업의 질도 여전히 낮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③ 개선방향

첫째, 사회적응 교육, 취업 지원, 고용 촉진 등 관련 대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취업경로 확인 등 생애주기관리 추적시스템을 마련하였다.

둘째, '북한 이탈주민 대책 협의회'의 기능을 내실화하여 부처 간 업무 협력을 강화하였다.

셋째, 취업 준비도 제고를 위해 성별·연령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였다.

넷째, 북한이탈주민 밀집지역 중심으로 '지역적응센터' 30개소를 지정·운영하여 지역사회 초기 적응교육을 강화하고, '북한 이탈주민 지역 협의회'를 설치·운영하였다.

다섯째, 맞춤형 직업훈련과 취업 연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취업 및 고용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2009년 4월, 정부업무평가위원회)

(4) 의료기관평가제도 및 운영실태

① 평가배경

2004년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 평가제도가 도입되어 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 병원을 대상으로 하여 3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다. 동 제도는 평가를 통해 의료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준에 의거하여 훈련된 평가단이 현장방문을 통해 의료기관으로서의 기준 충족여부와 수준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와 같이, 질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체계를 제공을 목적으로 실시된 의료기관 평가제도는 의도한바 대로 진료와 운영체계 측면의 향상을 가져왔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성과도 있으나, 일부 병원이 과다 경쟁, 중복평가 등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동 제도의 목적과 기능을 재검토하고 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제2기 평가가 끝나는 2009년 중에 종합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했다.

② 문제점

첫째, 평균적인 고객만족도가 매년 같은 수치라는 점에서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공급형태에 큰 변화가 있다고는 볼 수 없으며, 매년 의료기관 평가결과가 공개되고 있으나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정보에 대한 신뢰도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가대상 기관도 대규모 의료기관에 한정되어 중소의료기관의 서비스 향상도모에는 별다른 영향을 못 미치고, 이들 대형 의료기관과의 중소의료기관간의 질적 수준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도 우려되었다.

둘째, 평가주체의 적절성 측면에서, 정부가 주관하는 평가임에 따라 관료주의로 인한 평가 형식화와 한정된 예산과 인력지원에 따른 평가단의 전문성 한계가 제기되었다. 평가내용에 있어서도 의료기관을 평가하는 지표 중 특히, 임상질 지표(폐렴, 예방적 항생제, 중환자실, 모성 및 신생아 부문의 14개)와 고객만족도 지표(예약 및 접수절차, 의사의 진료서비스, 검사 및 처방, 병원 내 환경, 전반적 평가의 23개)는 일부 지엽적인 내용을 측정하고 있으며 다소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시각이 팽배하였다.

셋째, 평가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되고는 있지만, 상시적이지 못하고 병원순위 중심으로 알려짐으로써 각종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학계와 의료계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의료기관평가 인증제도 논의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내지는 못했다.

③ 개선방향

첫째, 실효성 있는 의료기관평가를 위해, 현행 의료기관평가를 비롯하여 정부가 주관하

는 병원대상 각종 평가를 하나로 묶는 통합평가체계 구축과 의료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한 평가대상 확대, 의료기관평가위원회 근거 마련 및 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기준·지표의 개선과 함께 환자들이 수시로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온라인 수시조사시스템 개발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평가결과 측면에서도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결과를 공표해야하며 특히, 평가제도가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이고 의료 품질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결과활용 및 평가제도 보완방안을 마련토록 하였다. 즉 평가결과의 제공이라는 소극적인 역할을 넘어 열악한 병원들을 중심으로 품질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기제 개발이 중요하고 건강보험 등 각종 정부정책과 의료기관평가결과를 적절히 연계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포털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료기관 평가결과와 기타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알기 쉽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국가가 주관하는 각종 평가결과를 의료기관별로 알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이외에 주변 의료기관에 대한 다양하고 상세한 정보를 수록한다면 소비자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2009년 4월, 정부업무평가위원회)

(5) 위기청소년 보호·관리실태

① 평가배경

각종 비행과 가출 등으로 학업중단 상태에 있거나 범죄로 인해 보호관찰이나 교도소에 복역 중인 위기 청소년(만 9~19세) 보호를 위해 각 부처와 지자체 등에서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위기청소년 보호·관리정책이 정책수요자에 맞는 프로그램 부족과 부처별 정책 간 연계 부족 등으로 시너지 효과 반감 및 재원투자의 효율성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부처별로 추진 중인 위기 청소년 관련 정책의 적절성과 실효성 및 부처 간 연계성 등 정책전반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해 위기청소년 보호·관리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 수립이 필요하였다.

② 문제점

첫째,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인 단위학교 상담실 운영은 교사 상담능력 및 상담교원 운용 체계가 미흡하며 대안교육 특성화학교의 경우에는 일부 특성화학교가 설립취지와 다르게 운영됨에 따라 실효성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청은 위기청소년에 대한 초기 대응 및 관계기관과의 연계 대처를 좀 더 강화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보건복지가족부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사업을 통해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치료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사업대상이 포괄적이어서 고위취급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위기청소년별 지지자를 만들어주는 청소년 동반자사업과 위기청소년 발견시스템 운영사업(헬프콜! 1388)은 CYS-Net사업과 통합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점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셋째, 법무부와 관련해서 소년보호관찰사업은 보호관찰, 수강명령 등을 통해 대상자들의 인식개선 등 일부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는 있으나 청소년 연령 및 성별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이 다소 미흡했다. 소년원은 수용시설 과밀화에 따른 교정기능 저하가 우려되었고 특히, 저연령 청소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했다. 한편, 소년교도소로 천안교도소를 운영 중인 데, 소년의 욕구를 고려한 프로그램 부족과 함께,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충분한 기회제공이 없어 향후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③ 개선방향

첫째, 위기청소년과 관련한 종합적인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복지부 주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자체도 CYS-Net에 의무가입토록 하였다.

둘째, 학교상담 내실화를 위한 단계별·연차별 종합대책 수립과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교육기관 확대 및 위기청소년 상담·지도 활동에 퇴직교원 등 전문상담인력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셋째, 사회에서의 보호 강화를 위해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인터넷 포털 구축과 기존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연계하여 위기청소년을 통합관리 하도록 하였다.

넷째,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의 복귀 대책으로서 청소년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강화 및

소년원 시설 개선과 재소자 컨설팅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확대토록 조치하였다.

(2009년 5월, 국가정책조정회의)

(6) 여수세계박람회 추진실태

① 평가배경

세계적인 국제행사의 경우 통상 6~8년 전에 유치가 확정되나, 여수세계박람회는 개최 4년 전에 유치가 확정되어 준비기간이 촉박하며, 개최지인 여수지역은 도시 인프라가 미흡하고 국제행사의 경험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짧은 기간 내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서 여수시, 전라남도,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실태를 점검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였다.

② 문제점

첫째, 행정적인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타 국제행사 보다 준비기간이 촉박하고 종합적이고 상시적인 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었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행사에 대해 임의로 '엑스포'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외교적인 마찰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엑스포 명칭 사용 난립으로 인해 여수세계박람회의 위상과 인지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둘째, 박람회장 내 시설을 분석해 본 결과 경기침체로 인해 아쿠아리움, 콘도 건립 등 민자사업 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박람회장 외 기반시설 측면을 분석한 결과 여수공항과 박람회장을 연결하는 시내도로망 확충을 두고 국비지원 근거 논란 등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③ 개선방향

첫째, 행정적인 측면에서 국무총리실내에 가칭 '국제행사 정부지원점검단'(단장:국무차장)을 구성·운영하여 준비상황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점검·지원토록 하였으며, 여수세계박람회 종료 시까지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행사에 대해 '박람회, EXPO'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명칭 사용에 대한 기준을 강화토록 하였다.

둘째, 박람회장 내에 민자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당초 5,902억원 재정 지원사업 외

에 추가로 추후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4,846억원을 선투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다. 그리고 민자 유치를 위해 민·관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민간기업의 참여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였다. 이외에도 참여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혜택 등 범정부적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개선하였다.

셋째, 박람회장 외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여수박람회장을 연결하는 교통 체증구간에 대해서는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조기에 국비를 반영하여 도로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7)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운영실태

① 평가배경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하천유역 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이 목표 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해 허용된 오염물질 총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이다. 1998년 이래 환경부가 주요 하천의 과학적 수질관리를 위해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수계에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수요가 많은 자체단체의 경우 동 제도에 의해 할당되는 개발 허용량이 부족하여 지역개발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운영상의 일부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평가를 실시하게 되었다.

② 문제점

첫째, 목표수질은 자치단체별로 향후 발생하는 개발계획을 반영하여 산정하도록 되어있으나, 새로운 국책사업 및 지자체장의 변경 등으로 인한 개발 사업은 사전에 추정이 곤란하여 목표수질에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둘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산악지역 등 하수처리장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오염삭감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일부 현실과 괴리되는 문제점이 있었고, 도시기본계획 등과의 연계성도 부족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셋째, 재정·인력 등 정책수단과 관련하여, 수질오염총량 관리를 위한 재정지원 근거가 법령에 있음에도 제도의 의무 실시지역에 대한 국고지원이 미흡하였고, 공무원들의 기피 등으로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일선 지자체에서 효과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③ 개선방향

첫째, 목표수질 산정시보다 수질 악화를 불허하는 원칙(anti-degradation)은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목표수질이 수정 가능하도록 구체적 운영지침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둘째, 오염삭감시설의 설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오염삭감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도록 '오염삭감계획 수립 제외지역'을 설정하고, 장기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주기를 5년 이상으로 확대하여 도시계획의 총량지표(인구·토지 등)를 고려하도록 하였다.

셋째, 재정적·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수질오염 총량제 국고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의 담당 직위에 대한 전문 직위를 부여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전문성 확보방안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2009년 5월, 정부업무평가 위원회)

(8) 공공부문 인턴십 운영 개선방안

① 평가배경

2008년 금융위기로 시작된 세계경제 침체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켰고, 이로 인한 청년들의 실업문제가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부각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9년 1월부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2만 5천여명 규모의 인턴채용을 목표로 '공공부문 인턴십' 정책을 실시했다. 이 제도가 취업의 징검다리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인턴십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② 문제점

첫째, 저소득층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우대조치를 하도록 했지만, 자격요건을 갖춘 취약계층 출신의 지원자가 적어 실제 채용은 약 1%대 수준에 머물렀다. 저소득층 청년이 인턴으로 채용되면 가계소득이 증가하여 저소득층 요건에서 제외되는 제도상 허점이 취약계층의 인턴지원 기회를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둘째,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예산이나 관리자의 관심 부족으로 취업 준비를 위한 지도와 프로그램 운용이 미흡했다.

셋째, 일부기관은 채용된 인턴직원에게 단순 보조업무만 부여하거나 전공분야와 다른 분

야에 배치하여 인턴직원의 활용도를 떨어뜨리고 퇴직 후에 경력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하는 사례가 지적되었다.

③ 개선방향

첫째, 취약계층의 인턴채용률을 높이기 위해 채용인원의 30%는 취약계층 또는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배정하고, 인턴활동을 통해 발생된 소득으로 인해 가계소득이 저소득층을 벗어나더라도 일정기간은 의료비, 교육비 등의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각 기관에서 인턴제도를 내실 있게 운용하도록 하기 위해 ‘행정인턴 운영성과’를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셋째, 인턴으로서의 경험이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취업캠프, 영어면접 과정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인턴을 대상으로 1:1 멘토제를 실시하도록 했다.

넷째, 이와 더불어 우수인턴에게 기관장 추천서 등을 제공하여 인턴활동이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2009년 5월, 국가정책조정회의)

(9) 대학생 창업지원 실태

① 평가배경

국제경제위기로 심화되고 있는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문화관광부, 중소기업청, 서울시에서는 ‘대학생 창업지원정책’을 시행하였다. 제도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예정 신규 사업들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사전에 도출하여 향후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제도운영에 활용하기 위해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② 문제점

첫째, 대학생 창업동아리 지원사업은 창업에 대한 정보 접근성 및 관심 제고에는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공적인 실제 창업으로 연계되는 궁극적 정책효과는 미흡한 문제가 있었다.

둘째, 대학생 창업 강좌 지원은 정규교과로 개설되어 대학 내 창업 붐은 조성되었으나, 대학마다 강좌내용이 유사하고 분야별 특화가 부족한 문제점이 있었다.

셋째,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도 2009년도 신규 사업으로 창업 전 과정에 대한 일괄지원 방식을 택함으로써 성공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사업평가 및 환류과정에서 해당지역 지방중소기업청의 역할이 미흡한 점이 있었다.

넷째, 뉴미디어분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희망 청년 전문 인력 발굴을 위한 뉴미디어 창업스쿨 운영은 실제 창업으로의 연계를 위한 자금지원 부족과 관련 기관 간 협력부재로 사업간 연계성이 미흡한 문제점이 나타났다.

③ 개선방향

첫째, 동아리활동이 실제 창업으로 연계되도록 '선택과 집중' 원칙을 강화하여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총지원액을 현실화하도록 하였다.

둘째, 대학·지역·성별·전공·학년별 특성에 따라 창업성공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하여 수업내용을 질적으로 심화하고 기초·전문반 또는 초급·중급·고급 과정 등 수준별로 차등화 하여 강좌 전문성을 제고토록 하였다.

셋째, 현지사정에 밝은 지방중소기업청을 활용하여 사업성과 평가에 적극 활용하고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하였다.

넷째, 초기투자 규모가 비교적 큰 뉴미디어 창업아이템에 대하여 대학 및 연구기관의 장비를 무상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Time-sharing' 지원방식을 도입키로 하였다.

(2009년 6월, 고용 및 사회안전망 대책 TF)

(10) 학교 엘리트체육 운영실태

① 평가배경

우리나라는 국가주도의 엘리트 체육을 기반으로 스포츠 경쟁력을 확보하여 올림픽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나, 소수의 우수 선수들에게 체육 자원을 집중 배분하고 육성하는 효율성 위주의 시스템 상 문제점도 노출해왔다. 특히, 2009년 당시, 초·중·고 학생 선수들의 (성)폭력·학습기회 박탈문제와 체육·입시비리 등 학교 엘리트체육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운영 실태를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② 문제점

첫째, 훈련연습과정에서 학생들에 대한 (성)폭력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보호·관리가 미흡하였다.

둘째, 학기 중 대회 개최로 인한 학생 선수들의 수업결손이 심화되고 있었으나 학교의 개선노력은 미흡하였다.

셋째, 특별전형제도의 불합리한 운영으로 체육특기자 대학선발 과정의 공정성이 저해되고 있었으며, 일부 학부모 지원금 등을 학교회계에 편입시키지 않는 등 부조리도 있었다.

넷째,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자질관리도 미흡하고 근무조건이 열악하였다.

다섯째, 중도포기학생선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미비하였고 종목별·연령별 표준훈련기준시스템이 부재하였다.

③ 개선방향

첫째, (성)폭력 행위자를 퇴출하고 방과후 운동 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가입을 추진하는 등 예방대책을 강화키로 하였다.

둘째, 각종 경기대회를 주말, 공휴일, 방학 중에 개최토록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최저 학력제'를 도입하여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토록 하였다.

셋째, 팀성적과 개인성적을 구분 관리하여 체육 특기자의 대학선발 공정성을 제고하고 학부모 지원금 등을 학교회계에 편입토록 하는 '학교운동부 운영 투명화 지침'을 제정하여 학교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넷째, 경기지도자와 체육 2급 정교사 이상에서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선발하여 자질을 향상토록 하고 중도포기 학생선수에 대한 의무적 상담제도 도입 등 적응 프로그램을 마련키로 하였다.

(11) 사회서비스 일자리 및 사회적 기업 정책 개선방안

① 평가배경

잠재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 했다. 또한, 높은 품질의 사회서비스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국가재정에만 의존하는 방식을 탈피하여 시장 친화적으로 추진하

기 위해 2007년부터 '사회적 기업' 육성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일자리와 사회적 기업 관련 개별사업의 급속한 확대 속에 정책범주 설정, 총괄·조정, 성과분석, 사후관리 등 사업관리의 전반적 체계성 및 효율성이 저하되었다는 지적이 있어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② 문제점

첫째,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관련되어서는 사회적 일자리의 2가지 정책개념이 혼재되어 사업 중복 등 정책 추진에 있어 효율성이 저하된 점, 사회서비스 일자리 유형별 관리체계 및 정책조정 기능이 미약하고 사후관리가 형식화된 점, 정부재정의 투자효율이 낮은 '보호형' 일자리에 치중되어 있는 점, 보건복지부의 정책 총괄·조정 기능이 미약한 점 등이 문제점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는 지나치게 까다로운 인증요건으로 인해 신청을 제약하며, 사후관리가 미약하여 도덕적 해이 등이 발생하게 되고,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우선 구매 및 컨설팅 지원 등이 부족하며, 정부와 민간자원의 연계가 미약한 점 등이 있었다.

③ 개선방향

첫째,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관련되어서는 불필요한 혼선을 유발하는 '사회적 일자리'의 개념 폐기 및 '사회적 기업'의 조기 활성화에 정책자원 및 역량을 집중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유형화하여 유형별로 차별화된 정책목표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시장 자율형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비중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T/F를 내실화하여 자원배분 및 근로조건 형평성을 유지하였다.

둘째, 사회적 기업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기업 인증 요건을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사회적 기업 모태펀드를 적극 조성하여 재정지원 방식을 선진화하며, 프로보노 등 민간자원 연계활동 체계화를 꾀하였다.

(2009년 7월, 국가정책조정회의)

(12) 취약계층 직업훈련제도 개선방안

① 평가배경

취약계층 직업훈련사업은 취업준비자, 재직근로자 및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 중이다. 대상에 따라 훈련기관, 지원내용 및 방식 등이 상이하다. 취업준비자에 대해서는 폴리텍 대학 등 정부 소속 공공훈련기관에서 직접 실시, 제조업 기간산업 분야 위주의 산업인력으로 양성한다. 재직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정한 훈련과정을 사업주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 근로자 직무능력의 향상을 지원하며, 실업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훈련기관에 훈련물량을 배정(물량배정방식)하여 실업자, 미취업자 등의 재취업을 촉진하고 있다.

최근 경기악화로 인한 실업자 증가 및 취업난 가중에 따라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평가를 실시하게 되었다.

② 문제점

첫째, 실업자 대상 직업훈련이 정부주도의 공급자 중심 훈련프로그램으로 효과가 저해되는 점, 사업계획 수립지 지자체, 산업체 등과 연계·협조가 미흡한 점, 민간훈련기관들이 훈련물량을 보장받아 고품질의 훈련이 어려운 점, 훈련의 질을 감안하지 않는 경직적인 평가 체계로 인해 대학, 사업체 훈련기관 등 우수한 역량을 갖춘 기관의 참가가 부족한 점, 자활훈련 대상자에 특화된 훈련과정이 거의 없어 취업 의욕 제고와 취업률 향상이 어려운 점 등이 문제점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여성대상 직업훈련 사업에서는 여성 가장 실업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지 않아 사업효과가 반감되고, 관계 부처와 지자체간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훈련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점 등이 나타났다.

③ 개선방향

첫째, 훈련계획 수립 시 지자체 및 산업계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도입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하며, 자활훈련 활성화를 위해 취업 이후에도 종전의 혜택을 유지하는 등 직업 훈련 체계를 개선하도록 하였다.

둘째, 훈련과정에 대한 상담 및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수요자 및 현장위주 훈련과정 선정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며, 자활훈련 대상자에 특화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수요

자 중심 훈련과정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셋째, 여성대상 훈련에 기본경비 차별 폐지, 여성가장에게 가계보조금 등 제공, 여성 특화 훈련과정 제공 등 실효성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2009년 7월, 정부업무평가위원회)

(13)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개선방안

① 평가배경

1995년부터 잉여병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대체복무제도의 일환으로 종전 방위병제도를 폐지하고 공익근무요원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목적 수행이라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복무이탈과 그에 따른 전과자 양산 및 복무 장기화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손실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장기 복무중단 방지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 추진 필요성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실태에 대하여 분석·평가하였다.

② 문제점

첫째, 복무이탈 및 장기 복무중단으로 정상적인 사회복귀가 곤란하고, 복무기관의 업무 부담 가중 및 무단 이탈자 색출·검거를 위한 행정비용이 증가하고 있었다.

둘째, 복무 부적격자로 인하여 대다수 건전한 근무자에 악영향 및 대민업무 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복무기관의 관리체계 미흡 및 관심부족 등으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곤란하였다.

③ 개선방향

첫째, 공익근무자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 복무 부적합자에 대한 소집해제 제도를 신설하고, 복무 부적합자의 엄격한 심사를 위해 법조계, 의료계, 유관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익근무부적합자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였다.

둘째, 복무관리 및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형사처분 종료자의 신속한 재복무를 위한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완료하고 형사처분 종료사실 확인 및 통보

절차를 개선하였으며, 복무중단자의 복무관리 실태 확인·감독 등 2차 관리책임 부여, 복무지도관 교육과정 개설·시행 등 병무청의 복무관리 기능 확대 및 내실화를 기하였다. 또한, 복무관리 우수기관 및 담당자에 대한 포상제도 도입 등 인센티브 부여와 복무기관의 복무관리 실적을 중앙부처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반영토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2009년 7월, 국가정책조정회의)

(14) 일선학교 검정교과서 선정제도 개선방안

① 평가배경

교과서 검정제도란, 민간출판사가 교과서를 연구·개발한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검정을 받아 교과서 시장에 진입하는 제도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초·중·고 검정교과서 개발 및 선정을 추진하여, 검정교과서 시장 규모는 약 1,106억원, 검정교과서 참고서와 학습지 등을 포함할 경우 시장규모는 약 9,300억원에 달하는 상황이었다. 교과서 선정 자체는 발행사에 큰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나 수익성이 높은 참고서 또는 학습지 선정을 사실상 결정하는 요인이 되어 발행사들의 불법·과당 경쟁이 우려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② 문제점

첫째, 교과서 선정절차 및 방식이 학교에 따라 상이하였으며 교사, 학부모 등 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교육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다.

둘째, 일선학교의 검정교과서 평가·선정기간이 매년 여름방학(8월)중 1개월여의 단기간에 이루어져 충분한 검토가 어렵고 교과서 선정 심의 시 이해관계인의 제척 규정이 없어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었다.

셋째, 일선학교의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평가참고자료가 필요하나, 실제로는 공정성 시비 등을 우려하여 미제공되는 상황이었다.

넷째, 교과서 선정과 관련한 불공정행위의 개념, 유형, 처벌 등에 대한 근거법규가 없어 불공정행위를 적발하여도 처벌하기가 곤란하였다.

③ 개선방향

첫째, 교과서 선정 과정을 공개하고 교사, 학부모 등 참여를 확대하여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였다.

둘째, 검정교과서 평가·선정기간을 2개월 이상으로 확대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시 이해관계인 제척규정을 신설토록 하였다.

셋째, 일선학교의 교과서 선정 관련 평가 참고자료 제공을 활성화하였다.

넷째, 불법행위 유형을 명문화하고 상위 법률에 처벌 근거 규정을 마련토록 하였다.

(15) 재외공관 주재관 직위공모제 개선방안

① 평가배경

2006년 6월 도입된 ‘재외공관 주재관 직위공모제’의 운영과정에서 전문역량을 갖춘 인재선발에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FTA 체결 다각화 등 해외에서의 외교업무 수요가 증가하였으나 적기대응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재외공관 주재관 선발·운영·평가 등 제도운영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실태를 심층 분석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게 되었다.

② 문제점

첫째, 주재관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정부위원 중 외교부 외에는 인사·예산 담당부처의 국장급 공무원만 포함되어 있어 전문성 심사기능이 취약하고 민간위원의 전문성도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발심사위원회의 심사운영의 적절성과 투명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현행 주재관 임용대상자의 교육훈련이 주재관 직무수행 적합도를 제고하기에는 질적·양적으로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현지사정에 대한 체계적 사전학습이나 정보습득의 기회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제정세나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신속한 주재관 보강과 감축 등 정원조정 기능이 미흡하고, 주재관 직무역량과 성과에 미친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전반에 대한 효과성 평가노력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③ 개선방향

첫째, 현행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시 업무분야 관계부처 고위공무원을 추가 위촉하도록 하는 한편, 주재관 직위별 직무수행요건 명세서 작성 시 특정분야의 업무 전문성 외에 상황 판단능력, 조정·협상능력 등 통합적인 정책관리역량도 고려하도록 보완하였다.

둘째, 주재관 부임 전 교육을 외교일반 기본교육과 전문분야 직무교육으로 구분하여 총 교육 기간을 확대하되, 현행과 같이 상·하반기 연2회 정기교육을 실시토록 하였다. 또한, 각 부처에서도 직원들의 직무역량과 어학능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셋째, 현재 개별 주재관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실시하는 직위존속 여부, 직급 적정성 심의와는 별도로 정기 또는 수시로 업무분야별·재외공관별·지역별로 통합적 주재관 직위인단을 실시토록 하고, 외교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주재관 직위공모제 운영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제도를 보완·발전시키도록 하였다.

(2009년 8월, 국가정책조정회의)

(16) 서민생활 지원 대책 추진상황 점검·평가

① 평가배경

대내 경제여건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생활의 어려움은 지속되었다. 이에 정부는 서민금융, 영세상인, 보육·교육, 의료복지, 여성, 주거복지 등 6대 분야 27개 과제로 구성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2009년 7월에 마련하여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빠른 시일 내 실질적인 정책효과 창출을 위해 당초 발표된 6대 분야를 서민경제, 사회복지, 주거복지 3대 분야로 그룹핑하여 현장점검위주로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② 문제점

첫째, 27개 지원대책중 12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었으나 11개 과제는 집행과정상 '일부 보완 필요' 등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서민경제 분야에서는 '대·중소 유통업체간의 상생협력 및 대화의 장 마련' 등 영세상인의 지원정책은 노력에 비해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사회복지분야에서는 '보육시설 미이용 24개월 미만 아동에 대해 10만원 신규지원'

등 보육지원 관련 대책에서 지원대상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었다.

넷째, 주거복지분야의 경우 주거안정화는 대다수 서민의 절박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계층 지원에 한정되어 대다수 서민계층의 상대적 소외감을 초래하여 정부정책의 지원효과가 반감되고 있었다.

③ 개선방향

첫째, 대기업의 대형수퍼마켓(SSM) 진출계획 제공을 통해 갈등의 사전 예방을 도모하는 사전조사신청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허위자료 제출 또는 자료제출 거부 시 벌칙을 부과하는 이행강제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추진키로 했다.

둘째,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대상을 보육료 전액지원 기준인 소득하위 50% 수준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원아동 연령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셋째, 기초생활수급자가구 뿐만 아니라 영구임대아파트까지 옥내 급수관 개량사업비 지원을 확대토록 하고, 향후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이 함께 거주하는 연립주택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17) 경제자유구역 분석·평가

① 평가배경

전 세계적으로 과감한 규제완화·투자 유인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특구 경쟁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2003년부터 국가 전략사업으로 6개 경제자유구역(FEZ)을 지정, 규제완화 및 외자유치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그간 법령·제도 개선 등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전략의 중복, 지역개발사업으로의 변질 등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경제자유구역에 규제 완화의 시험대로서의 역할과, 외국인 투자의 선도적 역할 수행 등 본래의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분석·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② 문제점

첫째, 구역 지정 시 지리적 위치, 면적, 규모 등 지정요건 부재로 과대·과다 지정 및 부적

합 지역이 다수 포함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지정된 6개 구역 간 차별화가 미흡하였다.

둘째, 구역 개발·운영에 있어 사업기간, 토지이용계획 부문 등 개발, 실시계획의 잦은 변경으로 인해 사업 지연 및 당초 지정목적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었으며, 일부 지구의 경우 수익성이 좋은 주거, 상업용지로 개발하는 등 지역신도시 개발 사업으로 변질되기도 하였다.

셋째, 외국인 투자 유치 측면에서는 체계적인 외국인투자의 유치체계 부재로 각 경제자유구역청이 투자유치활동을 산발적으로 추진하여 중복·과당경쟁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이 병행 운영되고 있어 외국 투자유치에 대한 일관된 법 적용이 곤란해지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넷째, 외국인 생활여건 부문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상 설립되는 외국 교육기관의 설립자격 및 승인 절차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외국인학교에 비해 엄격하다는 모순점이 나타났다. 특별법에 외국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기본적 사항은 마련되어 있으나 추가적인 규제완화가 미흡하여 외국 의료기관의 유치에 애로사항이 있었다. 또한 외국인 주택분양실적이 저조하고 미분양세대를 내국인용으로 전환하여 투자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주택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다섯째, 추진체계 측면에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주요 정책, 제도개선 등 심의·조정 기능이 미흡하고, 제도적·구조적 문제로 인해 경제자유구역청의 지자체 연속화가 불가피하며 잦은 직원 교체 등으로 업무전문성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③ 개선방향

첫째, 경제자유구역의 신규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구역별 핵심사업 선정 및 부적합 지구를 정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둘째, 개발·실시계획 변경에 대한 엄격한 승인기준을 마련하여 지정목적 사업의 변질을 방지하고 사업별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주기적인 평가 및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패널티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셋째,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치 단계별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투자유치 체계를 정비하고, 구역 내 외국인투자지역 등 기존 투자유치 유사지역을

정비하였다.

넷째, 외국인 생활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외국 교육기관의 설립규제를 외국인학교 수준으로 완화하고, 외국 의료기관 설립 관련 각종 규제 완화를 위한 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구별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등 수요에 부합한 주거 공급정책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제자유구역 실무위원회를 신설하고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조직·인력을 보강하는 등 사업 추진체계를 정비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경제자유구역청을 지자체 산하에서 분리하여 독립기관으로의 전환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2009년 11월, 국가정책조정회의)

(18) 희망근로프로젝트 운영실태

① 평가배경

글로벌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하여 정부는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2009년 1조 7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였다. 2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대규모 예산투입에 걸맞은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추진과정에서의 일부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대한 점검·분석을 실시했다.

② 문제점

첫째, 재산이 과다한 사람이나 비경제활동 인구처럼 사업취지에 맞지 않는 부적격자가 상당수 참여하고 있었다.

둘째, 임금 대신 지급되는 상품권 비중이 누구에게나 전체 임금의 30%로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유통기한도 3개월 정도로 짧아서 노인, 자급자족 가족 등 생활비 지출이 적은 가구는 상품권 소비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었다.

셋째, 생산적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료비가 확보 되어야 하나 당시 지침 상으로는 재료비 비율이 전체 사업비의 25%에 불과했다. 또한, 생산적 사업을 이끌어줄 전문기술 인력의 임금이 정부노임단가 80%이내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어서 전문 인력들은 사업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사업초기에는 단순 취로성 사업 위주로

추진되어 2009년 7월부터 생산적 사업으로 전환을 시도하였으나, 총 12,005개 사업 중 생산적 사업은 14%수준에 머물렀다.

③ 개선방향

첫째, 2010년 이후에는 차상위계층·실업자, 휴·폐업 자영업자, 여성가장 등 저소득층 위주로 대상자를 선발하고, 소득과 재산의 상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했다.

둘째, 농어촌·도서지역 등 상품권 소비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일정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상품권 비중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재료비 비율을 25%이내에서 40%이내로 조정하고, 전문기술인력 임금을 정부노동임단가 80% 수준에서 100% 수준으로 상향하여 생산적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19) 농어촌 체험마을 조성 및 운영실태

① 평가배경

도시민의 여가 활용과 농가 소득창출을 위해 농림수산물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등 소관부처별로 다양한 형태의 체험마을 사업을 추진 중이나,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미흡 등으로 체험마을별 특성화가 부족하고, 소규모 분산투자로 인해 사업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동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였다.

② 문제점

첫째, 조성단계에서는 대상지역 선정이 지역안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소규모 체험마을의 전국적 난립으로 경쟁력 있는 체험마을 조성이 곤란하였으며, 조성계획에 대한 타당성 심사가 대부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체험마을의 조성주체, 체험·숙박시설의 소유권 및 운영·관리주체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 부재로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었다.

둘째, 시설이용단계에서는 체험프로그램의 마을별 특성화가 미흡하고, 체험마을 대부분이 자립기반을 갖추지 못해 시설 활용이 부진하거나 방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셋째, 사후관리단계에서는 체험마을별 사업성과 평가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고,

조성 완료 후 운영기반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지원이 소홀한 상황이었다.

③ 개선방향

첫째, 각 사업 주관부처별로 사업계획을 재검토·보완하도록 하고, 시군의 대표 브랜드를 육성하여 체험마을의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였다. 또한 체험마을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입지 여건 등 필수 고려사항을 명시하고, 경쟁우위 요소를 기반으로 중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타당성 검증을 강화하였다.

둘째, 조성이 완료된 마을에 대해 소관부처별로 수준진단을 실시한 후 향후 지원·관리 기준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체험·숙박 등 관련시설의 인증제를 도입하도록 하였다.

셋째, 수익금 배분 등 운영·관리와 관련 마을주민 간 내부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범부처적 공동지침을 마련·제공토록 하였으며, 체험마을 운영기반의 확립을 위해 사후관리를 지원토록 하였다.

(2009년 12월, 국가정책조정회의)

3) 2010년

총 8개의 과제를 평가했다. 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과제가 많았다.

‘한약재 관리’, ‘가축분뇨 처리’ 등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정책을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1) 서민생활 지원대책 종합 점검·평가

① 평가배경

정부는 대통령 3대 국정운영기조 및 국무총리 5대 핵심 Agenda인 「서민생활 지원대책」을 2009년 7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였다.

이에 대하여 총리실에서는 국민 신뢰 확보 및 정부정책 효과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대책 추진 초기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점검·평가를 실시하였다.

② 문제점

서민생활 지원대책 종합 점검은 “서민생활 지원대책 추진상황 중간 분석·평가”와 연결되는 과제로써 특별히 문제점이 있기보다는 중간평가지 개선·보완사항으로 저신용 근로자에 대출지원 확대, 대학생 학자금 대출 완화, 저소득층 주거복지 개선 등 21개 과제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③ 개선방향

서민생활 지원대책 종합점검 결과 향후 보다 나은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주요 개선사항 으로는 첫째, 서민경제 분야에서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미소금융 대출 창구의 지방창구 확대와 일반국민이 생활비 지원 사업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정책대상 및 내용에 대한 정확한 홍보와 제도금융권 이용이 곤란한 저신용 근로자에 대한 보증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둘째,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학자금 미상환자에 대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분할상환약정 시 초기 납입금 인하 등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불량자 양산방지 대책 검토와 보육시설 미 이용자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사업이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해 지원하는 보육료 지원사업과 비교하여 지원수준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양육지원을 위한 지원대상 연령·지원액 합리적으로 조정토록 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셋째, 주거복지 분야에서는 보금자리주택 지정에 따른 투기 발생 억제를 위해 보금자리주택 건설시 투기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고, 지역별 수요에 맞춘 분양·임대비율을 조정토록 하고,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옥내 급수관 개량사업 대상을 자가 소유주(기초생활수급자)에서 실거주자로 점진적으로 확대토록하고 또한, 단독주택 위주에서 저소득층이 밀집되고 노후화된 공동주택, 연립주택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토록 하였다.

(2) 한약재 생산·유통 관리실태

① 평가배경

국내 한방시장 규모는 2008년 기준 4조 5600억원이며 세계시장에서 약 2.6%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유통방식으로는 국내에서 생산된 약용작물은 산지수집상이나 도매상이 구매하여 제조업소, 도매업소를 거쳐 한약 규격품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의약품용으로 수입되

는 모든 한약재는 수입시마다 관능검사를 거친 후 유통된다.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농가의 소득기반 마련 및 참살이(well being)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등으로 한약재 및 한방산업의 체계적 육성 필요성이 증대하였다. 반면, 중금속 등 위해물질 검출, 원산지 위·변조 등 한약재의 유통과정 및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한약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이 요구되고 있었다. 이에, 국산 한약재의 생산 및 유통 전반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해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②문제점

첫째, 제1차 한의약육성 종합계획(2005~2010)이 계획대로 이행되지 못했고 한약 유통구조의 실질적인 개선도 미흡했으며 특구지정 등 한방산업 활성화를 위한 총괄·조정기능도 수행되지 않았다.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인증제도는 도입 초기이며, 까다로운 기록관리 의무로 인해 농가 참여도가 저조하였다.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해 수급조절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으며, 수급조절에 필요한 기초통계자료도 부실하였다.

둘째, 한약 규격화제도가 도입 목적에 반하여 운영되고 있었다. 이에 따른 제도의 악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였다. 한편, 중독우려 한약 지정 품목이 20개로 한정되어 있어 독성한약재 품목 관리의 사각지대가 상존하고 있었으며 독성 한약재에 대한 유통이력관리 등 관리지침이 부재하고 일반인이 농산물로 구매가 가능하여 중독사고 발생이 우려되었다.

③개선방향

첫째,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11~2015) 수립 시 해소방안들을 포함토록 했다. 한의약 관련 지역개발사업도 그 추진체계를 정비토록 하였다. 생산기반 확대 및 품질개선을 위해 국가차원의 품종개발 및 유기적인 종자보급 체계 구축, 한약재 계약재배 및 직거래 활성화, 국산 한약재 품질인증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 운영을 복지부에서 직접 담당토록 권고했으며 한약재 생산 및 소비 통계조사도 강화토록 하였다.

둘째, 최종 소비자에서 제조 등에 사용된 한약과 제약회사 제품 원료의 원산지 표시를 의

무화하고 주요 한약에 이력추적관리제도 실시 및 원산지 위·변조 우려가 큰 식용 수입 한약재의 유통이력신고제 도입 등을 통해 유통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중독우려 한약재 확대, 중독우려 한약에 대한 판매기록관리 의무화, 불량한약 회수를 평가제도 도입 및 제조이전 단계에서의 농산물로 판매 금지 등 독성·불량 한약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였다.

(2010년 3월, 국가정책 조정회의)

(3) 노인장기요양제도 개선방안

① 평가배경

점진적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어감에 따라,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과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2008년 7월부터 시행하여 수혜대상자와 요양 인프라의 증가, 수급자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 경감 등의 효과가 발생했다. 그러나 관련기관 간 협조 미흡과 요양기관의 불법·부당 비용 청구 및 요양보호사의 과다배출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어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② 문제점

첫째, 노인장기요양 수요 증가에 따라 재정부담이 커지고 요양기관의 불법·부당 비용 청구로 인한 재정누수가 발생하였다. 반면 요양기관의 부당 유인·알선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부재하였고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제도의 실효성도 미흡하였다.

둘째, 시설요양기관 내 응급·만성질환에 대한 효과적 대처가 곤란하였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교통 불편으로 재가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상황이었으나, 재가 요양기간의 진입장벽은 낮아 소규모·영세 기관이 난립해 있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요양시설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강화하고 기존 노인요양시설의 증·개축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지자체예산부족으로 기존 시설의 증·개축은 부진했고 증·개축 대상인 기존 시설은 노후 건물 공사에 따른 안정성 문제가 우려되었다.

셋째, ‘본인부담금’이 동일하여 우수시설 편중현상이 지속되었고 요양시설에 지급하는 ‘등급개선 장려금’의 실효성도 부족하였다. 그리고 요양보호사에 대한 일정한 자격요건이 없어 부적격자도 자격증을 쉽게 취득하여 요양 보호사의 자질저하가 초래되었으며 요양보

호사 과잉공급으로 인한 사회적 낭비도 유발되었다.

③ 개선방향

첫째, 재정부담 해소를 위해 요양서비스 수혜범위 및 수혜대상 확대시기를 수요 추계분석과 재정부담 능력을 검토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토록 하였다. 자녀유무 및 자녀 숫자와 연계한 보험료 차등 방안도 검토하고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감시시스템을 조기 도입하며 본인부담금 면제, 유인·알선행위 등 부당·편법 행위를 유형별로 구체화 하여 이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을 만들도록 했다.

둘째, 의료와 요양서비스의 효과적인 연계 강화를 위해 요양시설 내 제한적 원격의료를 허용하여 일부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요양시설 입소자의 입원·외박 허용기준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요양시설이 시설 및 서비스의 질 제고를 고려하여 시설·인력 기준의 탄력적 운용방안을 적용토록 했다. 즉, 인력기준은 강화된 규정(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유지하고 시설기준은 유예기간 내에 충족하도록 유도하되, 충족하지 못한 시설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을 적용하는 대신 수가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었다. 이어 본인부담금 차등화를 통한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해주고 등급개선장려금 조정을 통해 요양시설의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유도토록 했다.

셋째, 요양보호사 문제에 대해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연령기준, 결격사유, 최소사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과잉배출된 요양보호사를 다른 사업에서 활용 할 것을 제시했다.

(2010년 4월, 국가정책조정회의)

(4) 출산장려사업 실태

① 평가배경

우리나라 출산율(2009년 1.15명)은 최근 20여 년간 계속 하락하여 OECD국가(평균 1.6명) 중 최하위를 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출산문제 해결을 국정과제 및 국가핵심 아젠다로 선정하여 범정부 차원에서의 저출산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최근 저출산 대책과 관련하여 중앙·지자체간 역할분담이 미흡하고 예산의 비효율적인 사용과 국민 체감도 저조 등의 문제점이 지속되었다. 이에 그간 정부의 제1차 저출

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 추진상황 및 지자체 대책의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추진과정에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② 문제점

첫째, 양육을 돕기 위한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에 대한 관리가 매우 미흡하고 출산 장려를 위한 사업도 지자체 출산 장려금 등 일회성·전시성 사업이 경쟁적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보육·교육비 지원사업에 연계가 잘 되지 않아 중앙·광역·기초 지자체간 예산중복 등의 비효율이 발생했다.

둘째, 영유아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서 검진시간 부담 등을 이유로 검진요일 및 진료시간을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등의 영유아 검진제도 이용 불편 사례도 빈번했다. 또한 출산의 당사자인, 임신·출산·육아 기간 중 여성 근로자의 취업 촉진을 위해 장려금 제도가 도입(2007)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여성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원실적은 저조했다.

③ 개선방향

첫째, 출산가정 지원을 위해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의 보수교육 및 서비스 모니터링을 확인·점검하고 매년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시 이행실적을 반영하는 대안을 마련했고 지자체 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표준모델 개발을 관계부처에 제시했다.

둘째, 보육비용지원을 위해서는 보육·교육비 지원사업간 연계를 강화하고 중앙·광역·기초지자체간 보육비용 지원방식을 개선토록 했다. 또한 영유아 검진기관의 진료요일·시간제한 운영실태를 전면조사하여 개선하고 국가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민간 병·의원 참여를 확대시키는 등 육아와 관련된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토록 했다.

셋째, 실적이 저조한 출산여성 신규고용촉진장려금 활성화 방안, 특히 여성취업 전담기관 등 관련기관 협조를 통한 맞춤형 홍보강화와 임신·출산·육아기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특화된 취업지원 사업 마련을 강구토록 하고 지자체도 참여하는 범정부적인 총괄 추진체계 마련을 추진하도록 했다.

(2011년 5월, 국가정책조정회의)

(5)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운영실태

① 평가배경

외식문화의 확산과 농축수산물의 수입확대에 따라 우리 농축수산물의 국내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산지 표시제와 이력제를 도입하여 시행하였으며, 이러한 원산지 표시제도의 확산·정착 및 농축수산물의 안전과 유통질서의 질적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그 동안의 운영실태를 분석·평가하게 되었다.

② 문제점

첫째,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와 관련 식생활 변화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및 방법 변경이 미흡하였다. 또한 농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의 확대 시행이 다소 미흡하였으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단속 시 표시방법 위반업소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이 없어 행정 처분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다.

둘째, 농산물 이력제와 관련 쇠고기 이력제 전산신고 대상업체 및 적용품목에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었고, 이력제 시스템 간 연계·통합성 결여로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었으며, 돼지고기 등 주요 축산물 이력제 기반이 미비하였다.

셋째,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및 이력제 관련, 수산물 원산지 표시율이 매우 저조하였으며, 수산물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추진이 부진하였다.

넷째, 축산물 등급표시제 및 식품이력제 관련, 쇠고기의 등급표시가 불합리하여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었고, 식품이력제가 임의등록제로 운영되고 있어 운영실적이 저조하였다.

③ 개선방향

첫째, 농산물 원산지 표시품목을 반기 또는 연단위로 조사하여 적기에 관련 고시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소비자가 섭취하는 부분의 원산지가 정확히 표현될 수 있도록 국내산과 수입산 섞은 고기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개선토록 하였다.

둘째, 쇠고기 이력제 전산신고 대상업체를 연평균 종업원 5인 이상 업체까지로 확대하고, 돼지고기 이력제 표준안을 마련 시범시행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셋째, 수산물 원산지 표시율 제고 및 이력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수입

량, 국내산과의 가격차이 등으로 원산지 위반이 우려되는 수산물을 선정하여 연차별 의무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의무화를 추진토록 하였다.

넷째, 식육판매업자의 육질(량)등급 표시방법을 개선하고, 식품이력제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식품이력제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였다.

(2010년 6월, 국가정책조정회의)

(6) 가축분뇨 처리 및 지원실태

① 평가배경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국제협약(런던의정서, 2006.3.24)에 따라 2012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게 되어 환경부·농림수산식품부 등을 중심으로 가축분뇨 처리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그러나,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가축분뇨 처리대책 추진의 효율성, 적절성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였다.

② 문제점

첫째, 개별처리시설에 대한 현황관리가 미흡하고 낮은 가동률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이 미흡하였을 뿐 아니라, 개별농가의 가축분뇨 발생량 대비 시설 처리능력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었다.

둘째, 공공처리시설은 지자체장 관심도 등에 따라 지원 대상지역이 결정되고 있었으며, 처리비용이 저렴하여 자체처리 기피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었고, 자원화보다는 정화처리 위주의 운영으로 자원화 효과가 반감되는 상황이었다.

셋째, 공동자원화시설은 영세업체의 난립으로 인해 시설 완성도가 낮고 사후관리가 미흡한 등 축산농가의 피해 발생 사례가 있었고, 대량 해양배출 지역 등 필요지역 위주의 설치 지원이 미흡하였다.

넷째, 액비 저장 및 유통과 관련 불량 퇴·액비의 유통에 따른 작물 재배농가의 부정적인 식과 액비 이용관련 규제 등으로 유통활성화가 미흡하였다.

③ 개선방향

첫째, 개별처리시설 전수조사 등 관리를 강화하고, 해양배출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액비화 시설 등을 집중 지원하고, 지역단위 관리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둘째, 해양배출이 많은 지자체에 공공처리시설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처리비용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도록 하였다.

셋째, 공동자원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형태의 다양화를 유도하는 한편, 처리공법 재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우수 공법업체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넷째, 비료성분, 부숙도 등 품질관련 항목에서 일정수준 이상인 액비에만 액비 살포보조금을 지급하는 품질검사제를 도입하는 등 액비 품질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지자체별로 액비품질관리 전문가를 배치하여 고품질 액비 생산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였다.

(7)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① 평가배경

유통환경과 소비자 구매패턴 변화로 위기에 처한 전통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영세상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2년부터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을 추진했다. 2002년부터 2009년까지 9년간 2조 2,600여 억원을 투입하여 노후시설 개량, 편의시설 설치 등 일부 쇼핑환경이 개선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정책 추진이 전반적인 전통시장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이에 그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② 문제점

첫째, 전통시장 지원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명확한 비전과 목표 없이 연례적인 계획수립과 집행이 반복되고 있었고, 단기적이고 외형적인 시설 개선에 예산 지원이 집중되어 근본적인 개선 효과를 얻기 어려웠다. 예를 들어, 시설현대화 지원시장의 매출상승률에 비해 경영현대화 지원 시장의 매출상승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총 지원액의 90% 이상이 시설 개선에 투입되고 있었다.

둘째, 시장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고객편의시설 설치가 추진되고, 온누리 상품권 가맹시장과 취급은행이 적어 사용이 불편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셋째, 상인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시장도 시설개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거나, 적절한 효과분석 없이 예산을 지원하는 등 자구노력 평가와 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7월, 국가정책 조정회의)

③ 개선방향

첫째, 시설개선 중심에서 경영개선 중심으로 지원전략을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정책수요에 부합하는 긴요한 사업 중심으로 사업 전략을 재설계 하도록 했다.

둘째, 시장유형 분류를 세분화하여 수준별 맞춤형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온누리 상품권 사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가맹시장과 상품권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확대 했다.

셋째, 지원사업 대상 선정 시 배후상권과 고객 분석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와 상인의 자구노력 정도를 반영하고 투자대비 효과에 대한 사후관리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여, 예산지원액이 책임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2011년 1월, 국민경제대책회의)

4) 2011년

총 7개의 과제를 분석·평가하였는데, 지자체 경전철 조성사업, 농공단지, 장사제도, 물류시설 등 정책 사각지대에 있거나 잠재적 문제점이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을 도모한 점이 특징적이다.

(1) 지자체 경전철 조성사업 추진실태

① 평가배경

지하철·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이 투자 효율성 및 환경보전 측면에서 한계를 지니면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신교통수단으로 경전철이 '녹색 도시교통수단'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에 서울·부산·용인·천안 등 많은 지자체에서 지역개발 활성화 및 도시 간선 연계 교통수단으로 경전철 도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경전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실태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② 문제점

첫째, 1990년대 이후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타당성 조사가 소홀했다.

둘째,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사업 관리 능력이 부족한 것을 감안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간과하여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였다. 특히, 개통을 앞둔 용인, 부산-김해, 의정부 등에서는 막대한 재정 적자가 예상되는 등, 당초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정책효과 달성 부분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③ 개선방향

첫째, 개통이 임박한 단계인 용인, 부산 - 김해, 의정부 등 4개 노선에 대해서는 기존 대중교통체계와의 연계방안을 수립하여 신규 교통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추가로 인하할 수 있도록 협상노력을 강화토록 하였으며, 이와 함께 해당 지자체 책임 하에 지방재정부담을 완화를 할 수 있도록 자구 노력을 강화토록 하였다.

둘째, 이미 착공을 한 서울, 광명 등 6개 노선에 대해서는 고비용·저효율 사업방식을 개선하고 사업비 절감 노력 등 합리적인 재정분담 기준을 마련토록 하였다.

셋째, 사업추진 여부 검토 단계인 천안, 창원 등 91개 노선에 대해서는 사업타당성 조사 강화, BRT(간선급행버스체계) 등 기타 신교통시스템과의 철저한 비교 검토 후 시행여부를 결정토록 하였다.

넷째,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경전철사업과 관련하여 모호한 법령을 정비토록 하였으며, 최적의 신교통시스템(경전철·BRT 등) 도입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개선하였다.

(2011년 3월, 국가정책조정회의)

(2)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체계 개선

① 평가배경

농공단지는 농어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983년부터 농어촌 지역에

조성된 산업단지의 일종이다. 2010년 12월 현재 전국에 421개 단지가 운영·조성중이며, 그간 불리한 입지조건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산업기반 확충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그동안 농공단지는 다른 산업단지에 비해 단지조성비·세제 등에서 많은 국가적 지원을 받아 왔음에도 산업단지로서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으며, 최근의 농어촌지역 고령화 등 정책여건 변화에 따라 농공단지의 조성·운영실태를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② 문제점

첫째, 단지 조성 측면에서 각 지자체별로 국비 지원에 의존한 선심성·경쟁적 단지 조성으로 농공단지의 과다 공급이 우려되고 있음에도 '산업입지법' 등에 규정된 중장기적 관점의 공급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또한, 과다공급 방지를 위한 단지조성비 심사도 부실하게 이루어져, 미분양률 등 기준에 부적합한 지역에도 조성비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예산 낭비와 더불어 적정 단지 공급을 위한 제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둘째, 단지 운영·관리 측면에서 그간 농공단지 정책이 단지를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둔 반면, 기 조성된 단지에 대한 관리는 전반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노후 시설에 대한 개·보수 등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조성된 단지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었고, 조성 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이른바 부실단지가 상당수 존재함에도 단지 지정해제·부실기업 입주계약 해지 등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또한 농공단지의 가동률 등 통계자료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등 현황 관리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③ 개선방향

첫째, 농공단지의 무분별한 조성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특화 단지를 제외한 신규단지 조성 시 국비지원을 중단하고, 지역특화단지의 경우에도 지역특화업종 입주기업 비율 등 지정요건과 기 조성 단지의 분양률·가동률 등 조성비 지원기준을 대폭 강화하였다.

둘째, 지자체 합동평가·지역발전사업 평가에 반영하는 등 노후 단지에 대한 지자체의 상시적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조성 이후 분양률·가동률이 저조한 단지에 대해서는 지정해제 등 정비를 추진하며, 단지 운영 현황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등 기 조성된 단지들이 내실 있

게 운영되도록 하였다.

(2011년 7월, 국가정책조정회의)

(3) 장사제도 운영실태

① 평가배경

저출산·고령화, 핵가족화 등으로 장사문화는 급격히 변화되고 있으나 장사제도와 시설은 소비자 요구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다. 화장수요 증가에 비해 화장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장례식장 및 상조서비스의 불공정 관행은 서민들의 피해로 이어졌다. 이러한 현상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장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했다

② 문제점

첫째, 지역별로 장사시설 수급 편차가 심각한 실정이었으나, 각 지역의 장사시설 수급현황 등을 고려한 종합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었다. 택지개발과 묘지재정비 등으로 개장유골의 화장수요도 날로 증가하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대책도 부족하였다.

둘째, 자연친화적이고 위생적이어서 미래 지향적인 장사방법으로 자연장이 부각되고 있었으나, 자연장 조성에 필요한 면적기준과 설치가능 용도지역이 제한적이어서 자연장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바다에 뿌리는 산골(散骨)이 관행적으로 매년 1천 건 이상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일부 부처에서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셋째, 장례서비스에 과도한 요금이 적절히 단속되지 않고, 장례용품 규격화와 표준화가 부실하여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가중되고 있었다.

③ 개선방향

첫째, 각 지역의 사망자수, 장사방법 선호 추이, 장사시설 수급현황 등을 고려한 장사시설 수급에 대한 종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개장화장 이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개장유골을 현지에서 직접 화장할 수 있는 기준과 현지화장이 가능한 이동형 화장로 보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둘째, 자연친화적이고 비용부담이 적어 국민들이 선호하는 자연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연장지 조성면적과 구역기준을 완화하고 자연장 장려금 제도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산골에 대한 불법논란을 해소하고 민원 피해사례가 유발되지 않도록 ‘해양환경관리법’ 정비 등을 통해 해양장 불법 논란을 해결하기로 했다.

셋째, 장례서비스와 관련된 장례물품 강매, 추가부담 요구 등에 대처하기 위해 신문고제도와 장례용품 규격화와 표준화를 추진하고, 장례식장의 구체적인 서비스내역과 가격비교가 온라인상에서 확인이 용이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2011년 7월, 국가정책 조정회의)

(4)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실태

① 평가배경

기부식품 제공사업(food bank)이란 생산, 유통, 판매,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활용 가능한 식품을 기탁 받아 식품기부 사업자를 통해 결식아동, 독거노인, 재가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전달하는 사업으로 민간자원을 활용한 취약계층의 복지수요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관심이 증대되다가 2006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후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사업 시행 후 수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기부식품 제공사업과 타 복지서비스와의 중복가능성, 전달체계의 비효율 등으로 인해 이용자에 대한 공정한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으며 재정낭비의 가능성도 매우 큰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기부식품 제공사업의 정책대상자, 푸드뱅크에 대한 지원·관리체계를 점검, 분석하여 동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했다.

② 문제점

첫째, 10여 년 동안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주무관청의 관리부실이 주요인 중 하나였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나 전담부처차원의 전반적인 관리가 미흡했고 지자체의 관심 및 지원부족도 일선현장의 사업부실을 초래한 원인이 되었다.

둘째, 지역여건,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정책적으로 푸드마켓을 일률적

으로 전국에 확대 설치하는 과정에서 일부지역 푸드마켓의 경우 비효율과 예산낭비를 초래하였다. 또한 기초 푸드뱅크 관련 인프라 및 지원 미비로 인한 운영상 애로가 발생했다.

셋째, 푸드뱅크를 통한 기부식품의 상당규모가 이미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복지시설·단체 등으로 배분되고 있어 공정한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기부식품 대부분이 기초수급대상자에 지원되고 있어 기초수급지원과 더불어 중복적으로 수혜를 받는 문제가 발생했다. 기부식품 제공측면에서도 기업의 식품기부에 대한 유인기제가 부족했음은 물론, 기업을 포함해 식품기탁자에 대한 발굴이 미흡했다.

③ 개선방향

첫째, 효율적인 기부식품 제공사업 추진을 위해 우선,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토록 하였다. 즉, 사업 대상, 전달 및 지원체계, 점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재설계 방안을 마련하고 기부사업인력 관련 지자체 희망근로 및 공공근로 인력을 적극 지원토록 하는 등 지자체의 관심제고를 위한 다양한 유인책을 제시토록 했다.

둘째, 푸드마켓의 난립과 운영상 비효율 해소방안으로 2009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푸드마켓 신규 설치계획을 재정비 하고 난립하고 있는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간 통·폐합을 유도했다. 아울러 푸드마켓 설치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재검토 및 푸드마켓 설치지원예산을 이동식 푸드마켓에 대한 지원 등으로 변경토록 했다. 그리고 복지시설·단체 지원비중을 단계적으로 감소시켜 2015년까지 개인이용자 비중을 일정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며 기초수급자보다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선정 시 비수급자 우선선정 지침을 마련했다.

셋째, 식품기부 확대를 위해 우수기업 상훈 등 기업의 식품기부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만들고 푸드뱅크와 유사단체와의 협조 및 연계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총괄기관인 보건복지부는 물론 지자체의 주기적인 점검과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2011년 7월, 국가정책조정회의)

(5) 스포츠산업 육성·지원정책

① 평가배경

우리나라는 스포츠 4대 국제행사를 모두 유치한 스포츠 강국으로 스포츠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도와 참여율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 스포츠산업은 상대적으로 취약하였다.

따라서 2000년대 이후 정부는 성장잠재력이 높고 고용창출효과가 우수한 스포츠산업에 대한 육성대책을 마련하고 관련법(「스포츠산업진흥법」 등)을 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스포츠산업진흥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스포츠산업 중장기 계획이 전담부서 부재, 인력부족 및 부처 간 협력 미흡 등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있어, 정책의 추동력이 확보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② 문제점

첫째, 스포츠산업은 콘텐츠, 특허, 교육, 레저, 방송, 세제 등 다수의 부처와 관계된 범정부적인 과제이나, 부처 간 충분한 협의 없이 문화체육관광부 단독으로 추진하여 주요과제의 세부계획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스포츠산업진흥법에 의한 스포츠산업 육성 계획이 당초 계획과는 달리 진행이 매우 부진함에도 이를 적절히 관리하고 평가하여 차년도 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였다.

둘째, 대규모 경기장 건립을 위한 사전 심사과정에서 사후활용계획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아 대회이후에도 적자발생이 지속되는 스포츠시설관련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③ 개선방향

첫째,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재하여 관련부처 관계자로 구성된 범 정부차원의 스포츠산업 진흥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실성 있는 대책의 수립 및 시행이 가능토록 조치하였고, 스포츠산업 진흥계획의 수립, 사업 모니터링 및 사후평가 등을 적절히 추진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을 보강하도록 하였다.

둘째, 스포츠시설 건립 시 사후활용계획을 포함한 스포츠시설 건립기준을 마련하여 심사 시 활용하도록 하였고, 정부재원이 투입된 일정규모 이상의 경기장을 대상으로 매년 경기

장의 활용계획 수립 및 평가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2011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

(6) 기부금품 투명성 제고방안

① 평가배경

나눔·봉사 관련 미담사례와 각종 지원제도 마련 등으로 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단체의 기부금 유용사례와 불투명한 운영으로 인해 기부문화 확산을 저해하고 사회적 물의¹⁾를 일으키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에 기부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1년 3월부터 기부금 사용·관리 및 단체운영 실태를 점검·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② 문제점

첫째, 기부금대상단체의 관리주체가 주무관청, 지자체, 기획재정부 및 세무서 등으로 다원화되었다.

둘째, 기부금대상단체 중 일부는 기부금 사용 및 단체 운영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정보공개 대상이 제한적이고, 내용·기간이 불충분한 실정이었다.

셋째, 주무관청의 인력 부족 등으로 단체 운영 실태에 대해 실질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기부 정책 관련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③ 개선방향

첫째, 자산규모 10억원 이상 및 당해 년도 기부금 5억원 이상 기부금대상단체(종교법인 제외)의 사업계획·실적, 예·결산 자료(인건비내역 포함), 기부금 수입·사용내역, 과태료 부과내역 등을 단체 및 주무관청 홈페이지에 동시 공개하도록 했다.

둘째, 재정현황 위주로公示되던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공시시스템'에 단체의 공익성을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하였다.

셋째, 「국세 기본법」상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공개 기준을 합리화하여 기부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유용사례 발생(2009년 법인카드 유희주점 등 이용 3,300만원) 후 모금실적 감소 : 2,242억(희망2010캠페인) → 2,112억(희망2011캠페인)

넷째, 사문화되어 있는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법인(학술·장학·자선단체)의 회계감사 기준을 시행령에 마련하여 기부금대상단체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강화했다.

다섯째,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부금 관련 정책협의회’ 구성·운영하여 관련 법 제·개정 및 관리체계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2011년 11월, 국가정책조정회의)

(7) 물류시설 조성·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① 평가배경

경제성장, 교통망 확충 및 전자상거래 확산 등으로 물류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국가 전체적인 물류비도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가 물류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물류 기본계획과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물류관련법 제·개정, 물류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왔다. 그러나 그간 물류시설 조성 시 막대한 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물류 시설 수요와 공급간 괴리, 물류시설 간 중복개발, 비효율적인 시설운영 등으로 인해 당초 목적과 효과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물류시설의 조성과 운영을 중심으로 현장점검과 실태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② 문제점

첫째,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수립 시 부정확한 근거를 토대로 물류시설의 수요를 예측함으로써 물류시설 공급규모를 과다하게 산정하고,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시 물류수요(물동량)을 과다하게 예측하는 등 시설의 계획수립단계부터 제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둘째, 수요지와의 낮은 접근성, 간선도로와의 연계 미흡 등 불합리한 입지여건으로 물류시설의 활용도가 매우 낮고, 부처 간 유사 물류시설의 경쟁적 조성으로 물류시설 중복개발 방지시스템 부재 등으로 시설 중복투자 등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물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공급자 중심의 입지선정과 시설개발 위주의 정책추진으로 시설운영 측면의 활성화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으며, 물류 효율화를 위한 물류 공동화 사업도 매우 부실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1년 12월, 국가정책조정회의)

③ 개선방향

첫째, 신규 조성되는 물류시설(복합물류터미널, 물류단지 등)에 대해서는 공급과잉 우려 등을 감안하여 당분간 신규조성에 대한 국고지원을 엄격히 제한하고, 객관적이고 명확한 수요-공급 예측을 토대로 타당성 심사를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였다.

둘째, 물류시설 중복개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물류기본계획수립과 물류시설 조성 시 관계부처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물류정책위원회의 통합조정기능을 보다 강화키로 하였다.

셋째, 기 조성·운영 중인 물류시설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효과성 분석을 토대로 물류시설 활성화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물류시설의 사후 평가방안 및 물류공동화 사업 지원방안을 수립토록 하였다(2011.12).

5) 2012년

2012년에는 총 9개의 과제를 분석·평가하였다.

‘이륜자동차 제도’, ‘민간 응급이송체계’, ‘건강기능식품 관리실태’ 등 국민의 안전이나 건강 확보를 위한 과제가 많았다.

(1) 이륜자동차 관련제도 점검·분석

① 평가배경

이륜자동차는 적은 유지비용과 이동의 편의성 등으로 인해 소규모 화물운송 및 레저용으로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고, 2012년 1월 1일부터 그 동안 관리대상이 아니었던 50cc 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도 사고발생시 피해보상, 도난, 범죄이용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한 높은 치사율, 소음·배출가스로 인한 환경오염 및 높은 보험료로 인한 사용자 불편 등에 대한 대책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및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② 문제점

첫째, 이륜자동차 사용중단 및 폐기 차량에 대한 사용폐지신고 관리 부실로 실제 사용차

량 현황과악이 불가하여 과태료 처분, 보험가입 관리 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퀵서비스·배달 등 영업용의 보험료는 가정용 보험료에 비해 2배 이상 높고, 50cc 미만 차량에 대한 보험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자동차에 적용되고 있는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불합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배기량 125cc를 기준으로 초과는 '소형면허'로, 이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준이 차량의 중량, 성능, 기능 및 안전도 등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면허시험(기능, 필기)도 동일한 내용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③ 개선방향

첫째, 의무보험 장기 미가입 차량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사용폐지차량을 일제 정리토록 하였다.

둘째, 자동차보험 할인상품인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도록 하여 50cc미만 사용자 중 농어촌 고령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인하하고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다.

셋째, 배기량별 차량의 특성을 감안하여 면허체계를 개편하고, 면허시험도 차별적으로 실시토록 하였다.

(2012년 2월, 국가정책 조정회의)

(2)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실태

① 평가배경

신고포상금제도는 위·탈법행위를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그 신고자가 규정된 포상금을 받는 제도로서, 정부가 사회의 모든 영역을 규제하기 곤란해지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제도의 효율성으로 인해 각 행정기관이 제도를 경쟁적으로 도입하면서 현재 28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총 70개, 기초지자체를 포함한 각 지자체에서 총 901개의 신고포상금을 운영하고 있다(2012년 3월 기준). 그러나 제도의 도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도입 및 운영과정에 있어 운영성과평가 및 환류 부재 등 관리체계 미확립에 따른 효과성 미흡, 법적 근거 미비, 전문신고자의 활동에 따른 폐해 등 제도의 부작용이 나타나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② 문제점

첫째, 신고포상금제도에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흡하였다. 제도 운영에 대한 별도의 환류체계는 존재하지 않아 제도가 일단 도입되면 운영 실적이 없어도 관성적으로 존치하고 있었다. 또한, 일부 신고포상금 제도는 법적 근거 없이 내부지침 또는 기관장 지시 등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둘째, 현재 운영 중인 신고포상금 제도의 효과성이 저조하여 개선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등 일부 포상금 제도는 시민들의 참여는 활발하였으나,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와 반대로 부정부패 신고포상금 등 일부 포상금은 사회·문화적 여건, 환경변화로 인해 현실과 맞지 않아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낮았다.

셋째,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신고자들이 등장하여 신고포상금제도가 일부 신고자의 부업수단으로 활용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또한, 신고포상금을 수령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전문신고자 양성학원의 부실 서비스 제공 및 장비 강매 등으로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③ 개선방향

첫째, 신고포상금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중앙부처, 지자체는 매년 자체적으로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관련 예산 편성·심의 시 성과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근거규정이 법령에 없는 신고포상금의 경우, 중앙부처 소관은 법령에, 지자체 소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토록 하였다.

둘째, 제도 도입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되거나 상황변화로 인해 존치 필요성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만 확보하여 유지될 수 있는 제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도입되는 제도에 일몰제를 적용하였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 위반 신고 집중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셋째, 운영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신고자 양성학원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하기로 하였다. 전문신고자의 신고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요건을 강화하고, 포상금의 일정 비율(20% 이상)을 온누리상품권 등 현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전문신고자가 수입원으로 인지하고 반복적으로 수령하는 포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탈루하지 않도록 철저히 과세하여 공정과세 원칙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2012년 3월, 국가정책 조정회의)

(3) 연근해 수산자원 관리실태

① 평가배경

수산식량자원 확보 및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어업생산 비중이 높은 연근해 수산자원의 효과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해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연근해 수산자원의 증강을 위한 수산자원 조성 및 보호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70년대 이후 2010년까지 인공어초 투여 및 수산종묘 방류 등에 총 1조 2,548억여원의 정부 재정을 투자하여 연근해 수산자원량은 점진적으로 회복추세이나 아직은 60년대 자원량의 약 57%에 수준에 불과함에 따라 동 정책의 효과성 등에 대한 분석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② 문제점

첫째, 연근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1970년대 이후 9,441억원을 투자해 온 인공어초사업이 그동안 발주시스템 미확립 등으로 인한 부실공사 우려와 사후관리 미흡으로 인한 성과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둘째, 자원회복을 목표로 하는 TAC의 경우 대상어종 자원량의 증감을 제때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탄력성이 부족하고, 해마다 산란기가 변동함에도 불구하고 금어기가 고정되어 있어 산란기 중 보호받지 못하거나 산란기가 끝나 조업이 가능함에도 어민들이 조업을 하지 못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었다.

셋째, 적정 어선세력의 유지를 위한 어선감척 시 어획량이 많은 어선들의 감척기피로 인해 감척효과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넷째, 농림식품수산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이 각각 시행하고 있으나 사업방식이 유사함에 따라 중복 및 효과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③ 개선방향

연근해 수산자원 관리 개선을 위한 방향은 첫째, 인공어초의 제작 및 설치에 대한 표준품

셈을 신설하여 인공어초 발주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실시공 가능성을 완화하기로 하였고, 인공어초 사업방식을 개선하여 인공어초가 적지에 설치될 수 있도록 사전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설치된 이후에도 기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의무화 하였다.

둘째, TAC는 자연 자원량이 감소되는 등 변동성이 큰 어종은 자원 재평가를 통해 재조정하고, 필요할 경우 종묘 방류종 등을 신규 TAC 어종으로 선정하는 등 제도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토록 하였으며, 산란기에 따라 금어기를 매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어선감척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직권에 의한 어선감척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고, 넷째, 유사한 환경개선사업은 정보공유를 통해 중복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2012년 4월, 국가정책조정회의)

(4) 건강기능식품 관리실태

① 평가배경

최근 저출산·고령화 추세와 국민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는 3조2천억원(2010)으로 연평균 8.1% 성장하는 등 국내 건강식품 수요 및 관련산업이 크게 확대되는 추세이다.

그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정·시행(2004)을 통해 과학적 검증을 통해 건강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고, 건전한 유통 판매질서를 확립하는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건강식품의 효능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성행, 일부 관리기준 미비, 과도한 유통 판매규제와 부작용 관리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제도전반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② 문제점

첫째, 건강식품의 표시·광고에 있어서 기능성(건강기능식품)과 유용성(일반건강식품) 표시 구분이 모호하여 건강식품의 허위표시와 과대광고가 빈발하고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다. 또한, 일반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생산과 판매의 이중규제로 인해 업계의 부담이 가중되었다.

둘째, 건강기능식품의 과도한 판매시설 규제 때문에 영업장 판매보다는 방문·다단계 판매에 유리하고 영업장 판매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영업자 신고와 교육, 시설기준 등에서 일반식품보다 강한 규제를 받고 있었으며, 방문·다단계 판매 성행으로 인해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사례가 속출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셋째, 현행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 신고기관이 여러 곳으로 분산·운영되고 있고, 제품 표시면에 부작용 신고기관 연락처도 표기하고 있지 않는 등 부작용 관리체계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③ 개선방향

첫째, 현행 기능성과 유용성 표시와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였다. 건강기능식품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표현이 유사한 기능성과 유용성 표시의 구분을 없애는 한편(기능성으로 통합관리), 영업관리 등은 관련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둘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을 제고하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판매업신고, 판매자 교육 등 건강기능식품의 영업장 규제를 제품의 품목, 유형 및 매장규모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완화 또는 폐지토록 하였다.

셋째,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 보고체계를 개선하였다.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제품 표시면에 부작용 신고기관 연락처 표기를 강화하고, 복잡한 부작용 신고창구도 일원화하도록 하였다.

(2012년 4월, 국가정책조정회의)

(5) 민간 응급이송체계

① 평가배경

고령화와 생활여건 변화로 인한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및 산업재해와 교통사고 발생 등으로 응급의료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중 하나인 응급환자 이송은 119구급대에 의해 주로 현장에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공공 응급이송’과 주로 병원간 이송하는 ‘민간 응급이송’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위급한 상황에 처한 국민의 보호 일환으로 응급이송체계의 선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119구급대체계의 조직개편 등 공공부문 응급이송 체계는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그러나 민간 응급이송체계의 경우는 관심과 지원 부족 등으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처해있어 심도 깊은 분석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미련할 필요가 있었다.

② 문제점

첫째, 위급한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는 구체적인 규정과 방식을 통해 철저히 관리되어야 하는데, 실상 구급차 관리·감독 및 책임주체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했다. 의료기관 및 대한구조봉사회 구급차의 관리기능도 미흡하고 민간 응급이송체계와 119구급대와의 연계도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구급차에 탑재된 의료장비의 내용연수 기준도 없고 구급차 자체에 대한 차령 제한 규정도 없었다.

둘째, 이송요금 산정체계도 부실하여 불투명한 요금징수가 지속되고 있었다. 응급차의 구비기준에도 문제점이 많았는데, 우선 민간 응급이송업체가 특수구급차 10대당 응급구조사 및 운전사 각각 24명을 갖추도록 한 규정은 업체의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며 구비 의약품도 소독제 외는 의사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없는 등 구입경로가 극히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해보자는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서는 2011년에 우수한 민간 응급이송업체를 발굴·지원하는 인증시험사업을 추진코자 했으나, 계획대로 실행되지 못해 인증제도도 도입되지 못했다.

③ 개선방향

첫째, 각기 분산되어 있는 의료기관, 민간이송업체, 대한구조봉사회의 구급차 감독기관을 시·도 또는 시·군·구 중 1곳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관리토록 하고 의료기관 및 대한구조봉사회 구급차에 대한 '신고제도'를 신설하여 의료기관 및 대한구조봉사회의 구급차 구입·변경·폐차 시 감독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구급차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토록 했다.

둘째, 민간 응급이송 부문과 119구급대간의 역할조정을 통해 열악한 민간부문의 이송 부담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간 구체적인 이송지침 마련 및 민간이송업체가 환자 이송 시 소방방재청에 문의하여 이송에 필요할 정보를 얻을 있도록 하였다.

셋째, 노후화로 문제가 많았던 구급차에 대해서도 차령을 9년으로 제한하는 「구급차 차령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구급차에 의무적으로 비치하는 '의료장비에 대한 내용연한' 기준을 설정하게 하였다. 한편,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

이송요금 변경 안을 정기적으로 상정토록 추진하여 이송환자의 요금징수 투명화를 위한 제도 마련에 착수토록 하였다.

넷째, 과도한 인력기준과 의약품 구비기준을 개선토록 하였는데, 특히 구급차가 구비해야 할 필수 의약품 중 의사처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의사(응급의료기관의 의사를 지도 의사로 위촉)의 처방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이외에 우수업체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마련 등으로 이송업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2012년 5월, 국가정책조정회의)

(6)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실태 점검 · 평가

① 평가배경

2009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시행으로 그린푸드존을 지정하고 비만 유발이 우려되는 식품을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관리하는 등 선도적 정책들을 시행하여 왔다. 그러나 학교 주변의 저가식품에 대한 불신이 여전하고 주요 제도들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 제기되는 실정이었다. 특별법 시행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간의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였다.

② 문제점

첫째, 식품별 영양정보가 제품 후면에 작은 글씨로 표시되어 어린이들이 이를 인지하기 곤란하였다.

둘째, 학교주변에서 많이 판매되는 튀김, 어묵 등은 일관된 영양측정의 어려움으로 고열량·저영양 식품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영양측정 단위인 '1회 제공량'이 광범위하여 고열량·저영양 식품에서 제외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셋째, 우수한 품질의 제품에 인증마크를 부착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도'에 의거한 제품이 극히 저조한 등 품질향상 제도들이 부실 운영되고 있었다.

넷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학교주변 200m 이내로 획일적으로 지정되어 놀이공원, 학원 등 어린이 출입이 잦은 지역에 보호구역 지정이 불가하였다.

다섯째, 학교 등에서 식생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③ 개선방향

첫째, 어린이들이 영양정보를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어린이 기호식품에 비만등을 유발할 수 있는 영양성분의 함량을 색깔로 표시토록 하는 '신호등 표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하였다.

둘째, 조리식품 중 영양측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100개 이상의 체인점의 어묵, 튀김 등을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정 대상에 포함토록 하고 1회 제공량을 상향 조정하는 등 합리화하기로 하였다.

셋째,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도의 선행요건인 HACCP 요건을 완화하여 기준을 현실화하였다.

넷째, 학교 밖 200m 지역 외에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다섯째, 초·중등 교사대상 어린이 식생활 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2012년 5월, 국가정책조정회의)

(7)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실태 분석·평가

① 평가배경

정부에서는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을 금지함에 따라 사료·퇴비 등으로의 재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재활용 처리시설을 확충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정책을 모색하여 왔다. 그러나 제품 품질관리 미흡, 생산된 제품의 유통체계 미확립 등으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효과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등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② 문제점

첫째,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여 생산된 품질이 낮은 사료·퇴비의 경우 불량제품 유통에 따른 농가피해와 무단 매립·소각 등 부적정 처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둘째, 일정수준의 품질을 갖춘 사료·퇴비라 하더라도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유통과정상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셋째, 2013년부터 해양배출이 금지되는 음폐수에 대하여도 감량화 및 재활용 유도를 위

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였다.

③ 개선방향

첫째, 부실 재활용 업체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처리시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지자체에서 처리업체 선정 시 재활용성 평가를 의무화하도록 하였으며, 재활용 능력에 대한 평가비중을 강화하고 품질 평가기준을 신설토록 하였다. 제품의 품질제고를 위해 환경부의 ‘올바로 시스템’에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과정을 관리하고, 농림수산식품부·농촌진흥청·농협 등 품질관리 기관이 관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인 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배출단계에서 비닐 등 이물질이 최소화되도록 전용 비닐봉투를 이용한 배출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둘째,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제품에 대한 시장 차별이 없도록 가축분퇴비와 음식물쓰레기 퇴비 간 국고보조금 지원 차별을 개선하고 현장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순화된 용어(가칭 ‘식품재활용자원’)를 신설토록 하였다.

셋째, 재활용 등으로 음폐수 배출량이 적은 업체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재활용업체 선정 기준을 개선하고, 바이오가스화 등 재활용을 위한 시설 및 관련 R&D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2012년 6월, 국가정책조정회의)

(8) 부담금 운용실태 분석·평가

① 평가배경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고, 사회적 비용의 효율적 배분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각 부처별로 산재되어 운용되던 부담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담금 관리기본법」을 제정(2001.12월)하여 운용 중이나, 여전히 과다·중복되거나, 불합리한 부과기준을 갖는 부담금 등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어, 부담금 운용실태 전반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② 문제점

첫째, 다른 부담금에 비해 피납부자에게 과도한 부담(개발제한구역 부담금, 시설부담금)을 주거나 부과 목적이 기존 조세와 중복되는 부담금(재건축 부담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부담금 가산금 요율이 국세(3%)보다 높아 조정이 필요(과밀 부담금 등 18개)하고, 징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될 소지가 있는 것(해양환경개선 부담금) 등 관리 기준의 합리화가 필요한 부담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징수실적이 평균 징수율 보다 크게 낮아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담금(환경개선 부담금, 배출 부담금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넷째, 부담금과 유사한 구조를 갖는 준(準)부담금들 중 일부는 징수액이 변동요율로 정의되어 피규제자가 납부액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게 되어있고, 그 납부액 또한 타 부담금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된 것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③ 개선방향

첫째, 개발제한구역 부담금의 산정식 수정을 통해 징수액을 경감하고, 재건축 부담금은 장기적으로 조세와 통합하여 이중 부과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둘째, 부담금 가산금 요율을 국세 요율 이하로 조정하고, 해양환경개선 부담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 부담금이 징수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도록 하였다.

셋째, 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환경개선 부담금에 '운행거리 연동제', '부담금 경감 규정'을 도입하고, 배출 부담금의 산정식을 조정하여 피규제자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넷째, 준부담금의 변동요율을 고정요율로 전환하고, 납부액이 과도할 경우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이의제도'를 도입하여 피규제자를 보호하였다.

(9) 귀농귀촌 지원 실태 분석·평가

① 평가배경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전원생활을 통한 다양한 삶 추구, 교통발달 등으로 인해 귀농귀촌 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귀농귀촌은 사회적 편익을 창출하고 고령화 해소 등

농어촌 지역의 종합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베이비 붐 세대 은퇴 본격화와 함께, 귀농귀촌은 은퇴 등 결정 후 평균 2~3년 이내 실시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귀농귀촌 활성화는 시급한 준비가 필요한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이에 기존 귀농귀촌 지원 대책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분석을 통해 귀농귀촌인의 조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② 문제점

첫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귀농어업인 육성’이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귀농귀촌 사업의 법적근거 미흡에 따른 신규 사업 도입·확대와 지자체의 통합서비스 제공에 애로가 있고, 특히, 귀촌인은 사업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둘째, ‘귀농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용자’ 대상에서 퇴직예정자와 귀촌인이 제외되어있고, 도시지역 거주자와 달리, 도농복합지역 거주자는 귀농에 따른 농지구입 시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원마을조성사업’의 시행규모(20세대이상), ‘뉴타운조성사업’의 입주자격(55세 이하, 영농소득 1.5~3천만원) 제한으로 소규모 귀농, 귀촌인은 입주할 수 없게 되었고, 이주전 귀농귀촌을 준비할 수 있는 임시거주·체험공간 및 농어촌의 농지·빈집에 대한 정보 제공도 부족한 상태다.

넷째, 귀농귀촌 교육과정이 수요에 비해 적고, 교육기관도 서울·경기 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교육비 자부담률은 취약계층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다섯째, 농어촌 지역 일자리 정보 불충분 등으로 이주 초기 소득창출이 어려운 귀농귀촌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귀농귀촌 지원조례가 없는 지자체도 많고,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별로도 귀농귀촌인에 대한 정의가 상이하여 귀농귀촌인의 선택권 제한 소지가 있다. 또한 각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지원 사업도 부족한 상황이다.

(2012년 7월, 국가정책조정회의)

③ 개선방향

첫째,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법률」(가칭) 제정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귀촌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자체 전담팀·전담인력 지정으로 통합지원체제를 구축토록 하였다.

둘째, '귀농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용자' 사업기준을 완화하여 퇴직예정자와 귀촌인까지 자금용자를 확대하였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도농복합지역 거주자가 귀농하여 농지를 구입시 취득세(5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전원마을조성사업'의 시행규모를 10세대 이상으로 하고, '뉴타운조성사업'의 연령제한은 폐지 및 영농소득기준은 완화토록 했으며, 농어촌체험마을, 폐교 등을 임시거주나 체험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농어촌공사 등을 통해 빈집과 유휴농지 정보를 제공하고 위탁임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였다.

넷째, 교육과정 부족과 지역적 편중문제 완화를 위해 국립대 평생교육원에 귀농귀촌교육 과정을 개설토록 했으며 교육비 자부담도 취약계층별로 차등화하여 적용하도록 했다.

다섯째, 고용부의 워크넷, 새일찾기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귀농귀촌인에게 일자리 정보와 알선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였다.

여섯째, 귀농귀촌인에 대한 정의를 일관성 있게 하고, 귀농귀촌 조례 제정이 확산되도록 귀농귀촌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작성·보급하게 했으며, 포괄보조사업인 농산어촌 개발사업(농식품부)에 귀농귀촌 활성화 항목을 신설, 지자체 특성에 맞는 자율사업 실시를 유도하였다.

(2012년 11월, 국가정책조정회의)

제2절 지방자치단체 평가

1. 종합정리

1998년 실시한 ‘기관평가제’를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한 것이 효시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와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평가가 있다.

중앙행정기관에 의해 시행되는 평가는 크게 합동평가와 개별평가로 나뉜다.

합동평가는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가 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 시책 등을 평가한다. 개별평가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한 내용에 대해 평가한다.

가. 평가목적 및 배경

지방자치단체는 중앙행정기관과는 달리 지역주민들에게 일상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가 지역주민들에게 얼마나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제공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는 정책의 성과가 지역주민에게 미친 효과를 파악하고 이를 다시 환류시킴으로써 정부정책의 질을 제고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시켜 나가는데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국가 주요시책 등의 추진성과를 분석·평가함으로써 국정의 통합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주요 업무를 스스로 평가하여 개선·보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인 정책결정 지원과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평가는 1998년부터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기관평가제’를 광역자치단체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1999년 ‘시범평가’, 2000년 ‘종합평가’를 실시하였으나, 당시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기에 논란이 있었다. 이후 2001년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시행되면서부터 법적 근거를 갖추고 평가를 실시하게 되었고, 2006년부터는 현행의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 새로 제정되어 이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다.

나. 평가 종류

지방자치단체평가는 평가주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평가와 지방자치단체 자체 평가로 구분된다.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평가는 행정안전부 주관 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하는 합동평가와 업무의 특성·평가시기 불일치 등으로 합동평가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이 직접 실시하는 개별평가로 구분 실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기관의 정책 등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표 2-2-1〉 지방자치단체 평가 종류

구 분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평가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합동평가	개별평가	
평가주체	관계 중앙행정기관 합동 (행정안전부 주관)	해당 중앙행정기관	각 지방자치단체
평가 대상기관	광역자치단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평가 대상업무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 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	합동평가와 동일. 다만, 업무의 특성·평가시기 불일치 등으로 합동평가가 어려운 경우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수행하고 있는 사업 전반
평가 방법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부업무 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합동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평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평가대상·방법 등) 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이 평가	지자체 스스로 '정부업무 평가 시행계획' 및 '지자체 자체평가 운영지침(행안부)'에 따라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적으로 평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과 국가 주요시책 등을 대상으로 업무 추진내용과 집행성과 등을 점검·분석하고 평정하는 정책평가이다. 합동평가는 국정 운영의 통합성과 효율성, 책임성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행정개혁의 추진으로 경영의 논리와 관리기법이 행정에 도입되고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자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성과평가, 권한위임에 따른 최소한의 책임성 확보수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2001년부터 개별평가의 지속적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업무 부담이 과중됨에 따라 중앙부처의 각종 개별평가를 통합한 합동평가 제도를 신설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평가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하였다. 법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2001년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2001. 5.1 시행)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고, 2006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위임사무 등의 지방자치단체 평가는 합동평가를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개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2-2-2〉 지방자치단체 평가 현황(2008년 2월)

구분	평가부처(연간)	평가건수(연간)	건당 준비(수감)기간	건당 동원인력
광역(평균)	16개 부처	75건	30일 (3일)	45명
기초(평균)	10개 부처	35건	30일 (3일)	15명
시(부산)	11개 부처	53건	30일 (3일)	40~50명
도(전북)	22개 부처	97건	30일 (3일)	40~50명
시(전주)	7개 부처	35건	30일 (3일)	10~20명
구(동래)	9개 부처	31건	30일 (3일)	10~20명
군(서천)	13개 부처	39건	30일 (3일)	10~20명

실제로 2008년 중앙부처(20개 부처)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개별평가계획은 54개 시책에 이르러 합동평가(59개 시책)와 거의 비슷한 규모였다. 이들 평가대상을 살펴보면 상호 유사·중복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평가시기·방법·결과 등은 모두 상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부담은 물론,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갖추기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개선’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게 되었고, ‘지방자치단체 통합평가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확정 후, 시범평가를 거쳐 2009년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최초의 통합 합동평가를 실시하게 되었다.

반면, 개별평가는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평가대상 기관으로 하고, 평가대상업무는 국가위임사무·국고보조사업 등으로 합동평가와 동일하나 업무의 특성·평가시기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개별평가를 인정하고 있다.

〈표 2-2-3〉 개별평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예시)

-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경우
- 기초자치단체에 한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 전문·기술적 점검 등 평가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한편,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모두 포함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 등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한 사업 전반에 대하여 스스로 자체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자체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평가 절차 및 방법

1)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평가

(1) 평가절차

① 합동평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21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국정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있어 합동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합동평가의 경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하여 합동평가의 대상, 시기, 방법 등이 포함된 ‘합동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가를 실시한다.

〈표 2-2-4〉 합동평가 실시계획 포함 내용

- 합동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에 관한 사항
- 합동평가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 합동평가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합동평가대상의 선정 및 평가지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 합동평가결과의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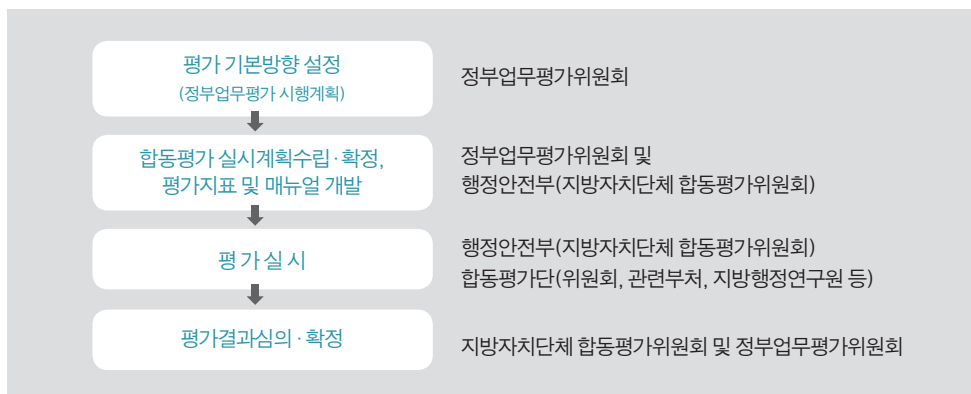
② 개별평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 제5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하여 업무의 특성·평가시기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이를 평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개별평가를 인정하고 있다. 개별평가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확정된 평가대상과제를 대상으로 해당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게 된다.

(2) 평가방법

합동평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및 ‘합동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개별평가의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이 직접 평가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추진 노력과 추진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당해 시책의 계획, 집행, 산출/결과, 결과활용 등 정책추진 단계별 성과를 평가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개발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표 2-2-5〉 합동평가 흐름도



지방자치단체의 합동평가 및 개별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제출하도록 하여 객관성·공정성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평가결과를 정책개선과 함께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등과 연계하여 환류기능을 강화하고, 평가계획 수립 시 평가결과의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방안 및 평가 우수기관 등에 대한 인

센티브 제공 등 구체적인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마련된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에 따라 평가의 기본방향, 평가대상 및 방법,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당해 기관의 정책 등을 평가한다.

〈표 2-2-6〉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계획 포함 내용

- 기관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 자체평가 기본방향·대상·방법
-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

자체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3이상이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기반의 구축 및 자체평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자체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거나 행정서비스 개선에 활용하고 부진사업 등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정책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라. 평가결과 활용

합동 평가결과는 중앙부처 및 시·도에 통보하고, 언론 및 내고장알리미(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www.laiis.go.kr)·국민운동단체·주부모니터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으며, 합동평가결과보고서 및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여 관련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하고 있다. 종합적인 평가결과를 토대로 향후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추진상황을 파악하여 관리하는 등 사후관리에 조치를 하고 있다.

또한, 평가결과 공유 확산을 위한 ‘컨퍼런스’를 매년 하반기에 개최하여 평가결과가 우

수한 시책을 타 자치단체에 보급·확산하고 있다. 분야별로 합동평가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재정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를 지원함으로써 국정시책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심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합동평가를 위하여 노력한 지방자치단체 유공공직자를 선정하여 훈·포장,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합동평가 결과가 부진한 시책 등에 대해 원인 분석과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대상 개별평가에 대해서는 평가계획 수립 시에 평가 결과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환류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평가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 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후속 조치사항 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성과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마. 지방자치단체 평가 추진 성과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시로 부처별·시책별로 다원화되어 있던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통합하고 고도화된 평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고 국정의 통합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아울러, 평가의 투명성·공정성·신뢰성을 강화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용성을 높였다. 구체적인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 단위에서 국정의 통합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였다. 전국적 추동력 확보가 필요한 국정 주요시책을 집중 관리하였고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의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현장기반의 생생한 데이터를 축적·관리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방법이 합동평가로 개선되기 이전에는 중앙부처별로 개별평가가 연중 이루어 졌으나, 통합 합동평가가 실시된 이후에는 평가 일정이 단축되었고, 평가횟수 및 평가시책도 축소되어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부담이 완화되었으며 국가예산도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셋째, 수요자 중심의 평가 확대 노력으로 평가의 객관성을 높였다. 평가시책별 행정수혜 주민 고객체감도 조사를 확대 실시하였고, 재정자립도 및 보정지수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표를 개발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간의 유·불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량적 계량지표에 대한 보완차원에서 정성지표를 도입·확대하였다.

넷째, VPS(Virtual Policy Studio,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를 활용한 On-Line 평가시

시스템 구축·운영으로 평가의 시스템화 및 투명성을 확보하였다. 기존의 서면평가 대신에 VPS를 활용한 On-Line 공개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시책 선정, 지표개발, 실적검증, 보고서 작성 및 평가결과 환류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시스템화하여 평가의 투명성을 높였으며, 관계 기관 간 상호토론 및 의견수렴, 정보공유 및 학습을 상시화 하였다.

〈표 2-2-7〉 VPS 온라인 평가체계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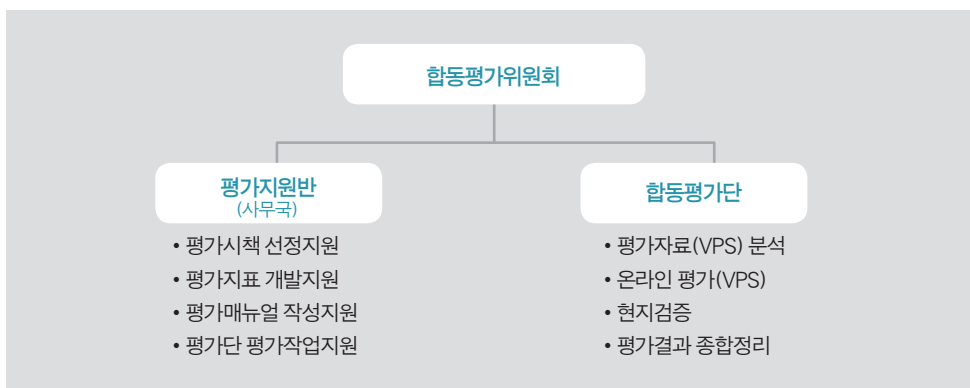


다섯째, 평가 전 과정에 관련기관의 참여를 확대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평가지표 개발 단계에서부터 중앙부처·지표개발T/F위원 워크숍,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지표개발 T/F위원 합동워크숍 등에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및 민간전문가들을 참여시키고 있다. 또한, 평가운형을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열람 및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이의신청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검증 확인 후 패널티 부여 여부를 결정하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평가단 ‘합동실적검증’을 통하여 VPS의 실적 증빙자료 중 주요 평가지표에 대해 증빙자료 출력 후, 전수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평가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연도별 이의신청이 2011년에는 2008년에 대비하여 55.4%로 대폭 감소하여 합동평가 운영이 보다 고도화되고 있다.

여섯째, 평가의 전 과정별 검증체계를 구축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수용성을 제고하였다. 평가준비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Test-VPS’를 개발·보급하고,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설명회’를 실시하는 한편, 평가 운영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평가위원 ‘합동 실적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각 부처

에서 추천한 평가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에서 자치단체가 입력한 실적에 대하여 평균 5차례의 교차검증 평가가 이루어졌다. 또한, 합동평가단 내에 '평가총괄T/F'를 별도로 구성·운영하여 합동평가단의 평가검증상황 전반에 대해 적합여부 등을 검증하는 과정을 두어 평가 오류가 없도록 하였다.

〈표 2-2-8〉 합동 평가업무 운영체계



일곱째, 평가관련 인력·예산 절감 및 자치단체의 평가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할 수 있었다. 자치단체에 대한 각종 평가가 통합평가로 일원화됨에 따라 중앙부처의 평가관련 인력과 예산을 대폭 절감(연평균 43억원 → 7억원 추산)할 수 있었다. 또한, 시·도 평균 96개(통합평가 + 개별평가)에 이르는 평가가 1개로 통합됨으로써 피평가 기간·비용 등 평가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었다.

〈표 2-2-9〉 예산절감 및 업무부담 완화(2008년 전후 비교 추산치)

〈중앙〉 예산절감 : 연평균 43억원 ⇒ 7억원
- 지표개발 및 평가실시 용역비 23억원 ⇒ 3억원
- 개별평가 일반운영비(평가수당 등) 20억원 ⇒ 4억원
〈지방〉 시도 평균 96개 평가 ⇒ 1개 통합평가

마지막으로, 평가의 예측가능성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하였다. 평가지표 및 평가일정·평가방법 등이 통일되고 평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지방자치단체

에서 추진 중인 국가 주요시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 관리가 가능해졌고, 전국적으로 수준을 비교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벤치마킹을 통해 지방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

2. 평가내용 및 결과

가. 총론

2009년 평가부터 중앙부처의 개별평가까지 통합하여 본격적으로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매년 3월부터 6월까지 VPS(Virtual Policy Studio,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를 통한 온라인 공개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 시기의 정례화, 평가 단위의 통일을 통하여 평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평가시책 및 대상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모든 시·도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공통평가와 일부 시·도를 대상으로 시책별로 추진되는 부분평가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표 2-2-10〉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시현황(2001년이후)

구분	2001년 (2001실적)	2002년 (2002)	2004년 (2003)	2005년 (2004)	2006년 (2005)	2007년 (2006)	2008년 (2007)	2009년 (2008)	2010년 (2009)	2011년 (2010)
평가시책 (참여부처)	62개시책 (12개부처)	69개 (13개)	30개 (10개)	53개 (14개)	42개 (12개)	46개 (14개)	46개 (15개)	74개 (20개)	38개 (17개)	40개 (24개)
평가 방법	서류평가 + 현장평가	서류평가 *현장평가 미실시	VPS실적입력+ 현장 서류평가				VPS실적평가+ 기관방문 검증평가(이의신청)			
평가 결과	분야별 최우수, 우수 기관		시책별 가,나,다 등급	분야별 가,나,다 등급						
재정 인센티브 (억원)	81억원	-	99.94	99.5	45	90	346	347	315	350 (계획)

2008년에는 상반기 합동평가와 함께 하반기에 통합평가를 추가로 실시하였으며, 2008년 하반기 통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는 합동평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고, 5개 시도에 대한 예비조사와 워크숍 등을 거쳐 시책별 지표개발을 완료하였으며 합동평가단 구성·운

영 및 세부평가일정 등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따라서 2008년 하반기 통합평가는 2008년 10월 1일부터 11월 25일까지 국무총리실이 승인한 중앙부처의 개별평가를 합쳐서 행정안전부에서 합동평가(5개 부처, 3개 분야, 8개 시책)를 실시하였고, 일부 시책의 경우 각 부처에서 개별평가 후 합동평가 점수와 연계(3개 부처, 3개 분야, 5개 시책)하는 등 통합평가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섬기는 분야’ 일반과제)로 ‘부처별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행정안전부 중심의 부처 검증 온라인공개 합동평가’로 제도 개선한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최초의 합동평가는 2009년에 실시되었다. 2009년(2008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평가 대상시책에 대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확정 등의 과정을 거쳐 합동평가 실시 계획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후 2009년 3월 25일부터 7월 30일까지 20개 부처, 9개 분야, 74개 시책, 455개 세부지표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평가대상은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의 주요시책 등으로 16개 시도를 시부와 도부로 구분하여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 산하의 독립된 합동평가단이 실적평가(On-Line), 현지검증 등 직접평가를 수행하였고, 평가시책별 행정수혜 주민에 대한 고객체감도 조사를 병행하였다.

2010년(2009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평가 대상시책에 대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확정 및 합동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의결 과정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후, 2010년 3월 8일부터 6월 29일까지 17개 부처, 8개 분야, 38개 시책, 322개 세부지표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한편, 경제살리기 평가는 1개 분야, 12개 시책, 38개 지표에 대해 2009년 12월에 별도로 시행하였다. 평가는 시·도에서 입력한 VPS 자료를 기초로 분야별 평가단이 실적입력자료 확인, 중앙부처 통계자료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였고, 현지검증은 시·도에서 제출한 실적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에 한하여 현지를 방문하여 전수검증을 실시하였다. 고객체감도 조사는 중점과제분야 4개 시책(지역녹색성장, 규제개혁 및 지방분권 정착,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 법질서 확립)을 선정하여 해당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수혜 체감도를 전문조사기관에서 전화설문조사로 실시하였다.

2011년(2010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합동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후 2011년 4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24개 부처, 9개 분야, 40개 시책, 313개 세부지표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온라인 실적평가와 현지검증은 전년도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고객체감도 조사는 중점과제분야 4개 시책(규제개혁, 법질서 확립, 저출산정책 성과, 일자리 창출)을 선정하여 행정서비스 수혜 국민에 대한 전화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반영하였다.

2012년(2011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2012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후 2012년 3월 5일부터 7월 27일까지 24개 부처, 9개 분야, 38개 시책, 282개 세부지표에 대하여 합동평가를 실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대상 개별평가에 대해서는 2008년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별도의 개별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09년에 취약계층과 영세 상인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 2010년에는 국정 핵심과제인 '지역일자리 창출사업'과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사항에 대해 자치단체에 대한 관심과 추진 의지를 높이기 위해 개별평가를 실시하였다. 2011년과 2012년에는 국정 현안과제 중의 하나인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지방 물가 안정관리'에 대해 개별 평가를 실시하였다.

나. 연도별 평가 내용 및 결과

1) 2008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 등의 추진상황을 평가·환류 함으로써 국정의 통합성과 효율성 확보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대상 각종 평가를 통합·운영하여 중앙부처 평가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부담을 완화하였다.

(1) 합동평가

① 합동평가 대상 시책 선정

2008년 상반기에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국정시책에 대한 합동평가는 15부처, 9개 분야, 46시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 산하 합동평가단에서 실적평가(On-

Line), 현지검증 등을 수행하였다. 동 평가는 실용정부에서 합동평가 방식을 전면 개편하여 합동평가 최초로 VPS 활용 On-Line 방식 평가(paperless), 독립된 평가단에서 총 5회에 걸쳐 교차 평가를 하였다. 또한, 자치단체 간 균형유지를 위한 점수부여방식 및 지표의 고도화를 실현하였다.

② 평가지표 개발

9개 분야 46개 주요 국정시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2007년도 추진성과를 평가한 결과, 대부분의 시책들이 일선행정에 까지 차질 없이 전파되어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추진성과와 비교해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실용정부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VPS 온라인 평가와 평가방식의 획기적 개선 등으로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이 강화된 것이 작용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③ 평가실시 및 보고

분야별로 평가결과를 보면, 안전관리·일반행정·지역개발 분야는 우수하였고, 지역경제·보건복지·여성복지·환경관리 분야는 보통이며, 문화관광 분야는 미흡하였다.

2008년 하반기에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5개 부처, 3개 분야, 8개 시책에 대하여 실시하였는데, VPS를 활용하여 On-Line 공개방식 평가(paperless)를 독립된 평가단에서 총 4회에 걸쳐 교차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3개 분야 8시책 대부분이 일선행정에 까지 차질 없이 전파되어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지역경제·개발이 우수하고, 일반행정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왔다. 사회복지 분야는 시부가, 지역경제·개발 분야는 도부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 분야의 자치단체 보건사업에 대한 주민 체감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매우 만족'한 수준이었다.

2) 2009년

부처별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통합하여 2009년부터

합동평가를 실시하도록 평가제도를 개선하였다.

합동평가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대상 각종 평가를 통합 운영하여 중앙부처 평가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평가 업무부담을 완화하였다.

(1) 합동평가

① 합동평가 대상 시책 선정

2009년에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20개 부처, 9개 분야, 74개 시책(세부지표 455개)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 산하 합동평가단에서 실적평가(On-Line), 현지검증 등을 수행하였다.

② 평가지표 개발

부처별 개별평가를 통합한 최초의 합동평가로서 국정 주요시책의 평가 일원화로 지방자치단체별 국정참여도 측정이 가능하게 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부담도 완화되었다. 시·도제출 평가자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 평가단이 참여하는 단계별 검증체계 구축으로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였다.

③ 평가 실시 및 보고

실용정부 국정과제('섬기는 분야' 일반과제)로 추진한 '부처별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행정안전부 중심의 부처합동 온라인공개 합동평가'로 제도를 개선한 이후 처음으로 9개 분야 74개 시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2008년도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대부분의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국정의 통합성과 정책의 효율성이 확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성과를 보면, 안전관리, 중점과제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반면, 문화관광, 사회복지 등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왔다.

(2) 개별평가

① 개별평가 대상시책 선정

2008년에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가 시범 실시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부처의 개별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2009년에는 지방자치단체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사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② 평가방법

전국 시도 및 시군구를 대상으로 희망근로사업 추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별도 평가기준에 의거 자체 평가 과정을 거친 후 종합평가를 실시하였다. 시도의 경우 시군구를 평가하여 실적이 우수한 시군구를 행정안전부에 추천하였으며, 행정안전부에서는 시도에 대한 평가와 시도에서 추천된 시군구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였다. 상반기에는 사업기획 및 시행관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하반기 평가에는 정책성과에 주안점을 두었다.

③ 평가결과 및 평가결과 활용

각계각층의 높은 관심 속에서 희망근로사업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전체 사업의 80%가 생산적인 사업에 투자되었으며, 지역특화 및 주민숙원 사업 등에 적절히 배분, 추진하였다. 이 중 대표적인 친서민 사업으로 ‘저소득층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으나, 사업규모가 큰 서울, 경기 및 기타 광역시 등은 비수도권 광역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적을 보여 도심 지역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10년 사업 추진 시에는 도심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수요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을 적절히 배분하였다. 이외에도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쓰레기 줍기 등 단순 취로사업은 폐지하고 주민 편익증대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였다.

3) 2010년

평가과정의 객관성·공정성 확보 및 현장중심의 평가개선 노력으로 평가결과의 수용성을 제고하였다.

(1) 합동평가

① 합동평가 대상 시책 선정

2010년에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17개 부처, 8개 분야, 38개 시책, 148개 지표(세부지표 322개)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 산하 합동평가단(130명)에서 실적평가(On-Line), 현지검증 등을 수행하였다.

② 평가지표 개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부처의 개별평가를 행정안전부 중심의 부처합동 온라인공개 합동평가'로 제도 개선한 이후 2번째로 8개 분야 38개 시책에 대한 2010년도 정부합동평가를 실시하였다. 대부분의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국정의 통합성과 정책의 효율성이 확보되어 지방단위에서 정상 추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가 제출한 평가자료에 대해 평가단계별 실적검증을 확대하고, 고객체감도 조사대상 확대, 자치단체 순회방문 평가설명회, 'test-VPS(연습용 합동평가시스템)' 자치단체 보급 등 현장중심의 평가개선 노력으로 평가결과의 수용성이 높아졌다.

③ 평가 실시 및 보고

추진성과를 종합해 보면, 8개 분야 평가점수 평균은 70.08점으로 중점과제, 일반행정이 상대적으로 우수하였고, 환경·산림·문화, 지역경제·개발 등은 미흡하였다.

(2) 개별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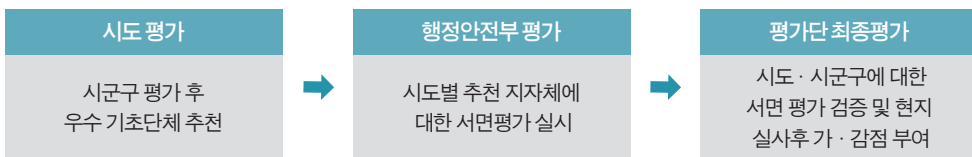
① 개별평가 대상시책 선정

국정 핵심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사업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개별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서민 체감경기를 개선하고 조속한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사업에 대한 개별 평가를 실시하였다.

② 평가방법

'지역일자리 창출사업'의 경우 평가 기준표에 의거 시도 자체평가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 사업 평가단'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표 2-2-11〉 평가방법 흐름도



상반기 평가에는 생산적 희망근로 여부를 중점 평가하고, 하반기 최종평가에는 공동체 일자리 조성,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 특수시책 성과에 중점을 두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실적 평가의 경우 자체평가단을 구성하였으며, 행정안전부 비상경제상황실장을 단장으로 팀장급 이상 간부로 구성하여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평가하였다.

③ 평가결과 및 평가결과 활용

‘지역일자리 창출사업’은 9월부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Post-희망근로사업을 본격 추진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였다. 그 결과 주요 성과로는 지역일자리사업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대국민 참여분 위기를 확산하였다. 그러나 일자리 지원체계가 중앙부처 사업별로 복잡하여 복지시스템과의 연계가 미흡했으며 초기에 비해 추진동력이 다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4) 2011년

행정수혜 주민 체감도 조사 및 지방자치단체 노력도 측정 산식설계 등

현장중심의 평가지표 확대로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중빙실적 합동검증 강화로 평가결과의 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였다.

(1) 합동평가

① 합동평가대상 시책 선정

2011년에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24개 부처, 9개 분야, 40개 시책, 110개 지표(세부지표 313개)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 산하 합동평가단에서 실적평가(On-Line), 현지검증 등을 수행하였다.

② 평가지표 개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3년차로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부담을 대폭 완화하였다. 2009년에는 455개 지표였으나 해마다 감소하여 2011년에는 313개로 줄어들었다. 또한, 시도 제출 평가자료에 대한 검증강화로 평가결과의 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단, 지방

자치단체, 중앙부처 합동 실적검증을 확대 실시하였으며, 현장중심의 평가개선 노력으로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시켰다. 자치단체에 대한 중앙부처의 개별평가를 행정안전부 중심의 부처합동 온라인공개 합동평가로 제도 개선한 이후 3번째로 9개 분야 40개 시책에 대한 2011년 정부합동평가를 실시했다. 대부분의 시책들이 일선행정에 까지 차질 없이 전파되어, 국정의 통합성과 정책의 효율성이 확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평가 실시 및 보고

추진성과를 종합해 보면, 9개 분야 평가점수 평균은 72.94점으로 지역개발, 환경산림이 우수하고, 사회복지, 문화관광 등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중점과제분야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 고객체감도 조사결과, 전반적으로 미흡하였고, 시책 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 개별평가

① 개별평가 대상시책 선정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물가안정 대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물가 안정 관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전년도에 이어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대해 평가하였다

② 평가 방법

'지방물가 안정관리'의 경우 객관적인 자료와 외부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물가안정 관리실적을 평가하되 시군구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시도와 구분하여 시군구간 평가를 실시하였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경우 전산 실적자료(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위주로 평가를 하여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필요시 현지검증을 수행하였다.

③ 평가결과 및 평가결과 활용

'지방물가 안정관리'의 경우 평가지표 설계 시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지방공공요금 관련 배점 비중을 높게 설정하였다. 개인서비스요금 안정 관련 지표는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높은 점수를 취득했으나, 관련 실적이 미흡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아 평가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 평가결과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전체 5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급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기를 부여하였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는 2010년 6월 30일 기준으로 목표액 81.2조원 대비, 79.6조원을 집행하여 97.3% 달성하였다. 246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299억원(3월 90억원, 6월 209억원)을 교부하여 적극적인 조기집행을 유도함은 물론 조속한 경기 회복에 기여하였다

5) 2012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정 주요시책 등의 추진상황을 평가·한류함으로써 국정의 통합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였다.

평가대상 시책(지표)의 최소화 및 평가일정 단축조정으로 지방자치단체 평가부담을 완화하였다.

(1) 합동평가

① 합동평가 대상 시책 선정

2012년에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24개 부처, 9개 분야, 38개 시책, 106개 지표(세부지표 282개)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 산하 합동평가단에서 실적 평가(On-Line), 현지검증, 우수사례 정성평가 등을 수행하였다.

② 평가지표 개발

2012년 합동평가는 평가운영 순기를 단축하고 평가지표를 최소화하여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다. 아울러 평가과정의 공정성 확보와 평가결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 평가단이 함께 참여하는 실적검증 기간을 확대하였고, 증빙자료 ‘표준매뉴얼’ 발간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적 입력 전에 평가실적 통계자료를 확인·수정하는 기간을 신설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수용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지표, 행정 수혜 주민 고객체감도 조사와 정성평가의 지속 추진으로 합동평가 지표개발부터 운영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였다. 한편, 2012년 합동평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추진 노력도에 대한 정성평가를 위해 '지역특화 분야' 평가를 신설하여 시범운영하였다.

③ 평가 실시 및 보고

2012년 9월에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결과를 공개하였으며, 이어 11월에 평가결과 '종합보고서', '우수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제도개선 요구사항은 관련 중앙부처에 통보하여 자체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조치할 계획이며 시·도별 개선사항은 시·도 자체계획을 수립, 개선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2) 개별평가

① 개별평가대상시책 선정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물가안정 대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물가 안정관리'와 서민 체감경기를 개선하고 조속한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② 평가방법

'지방물가 안정관리'의 경우 전년도와 달리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지방공공요금 관리 배점비중을 지난해 40%에서 2012년에는 50%로 확대하였다. 또한 물가상승률 지표에 주요 서민생활물가 대상 품목을 중점 관리하기 위하여 지난해 자장면, 칼국수, 김밥, 세탁료,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등 13종에서 2012년에는 시내 버스료, 전철료, 택시료, 상수도료, 하수도료 등 20종으로 늘렸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경우 통계자료 및 서면체출자료 등으로 평가하되, 필요시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방재정 집행률을 계량화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불만을 최소화 하였다. 또한 평가 보조 지표로 정책적 가중치, 예산액 규모, 광역·기초 협력도, 특별가점 등을 마련하여 평가 지표체계를 보완하였다.

③ 평가결과 및 평가결과 활용

‘지방물가 안정관리’의 경우 2012년 12월 중에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특별교부세 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우수사례 발표대회 및 사례집 발간·배포 등을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경우 최우수, 우수, 장려로 구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특별교부세를 지급할 계획이며 3월과 6월 평가결과에 따라 총 2회에 걸쳐 지급하며 잠정적으로 300억원 정도를 재정인센티브로 지급할 계획이다.

제3절 공공기관 평가

1. 종합정리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는 외부기관이 실시한다.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부진기관을 개선시키는 데 활용하고 있다. 평가대상 공공기관은 총 626개에 달한다.

가. 개념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07.4 시행) 등 7개 법률에 의한 평가(개별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평가)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지정 공공기관 평가)로 구분된다. 공공기관의 평가는 공공기관의 특수성·전문성을 고려하고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외부의 기관이 평가를 실시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개별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평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한 공공기관의 평가로 간주되며, 지정 공공기관 평가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한다. 공공기관평가를 실시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미리 그 평가계획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제출된 평가계획을 검토한 후 개선방안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각 개별 법률 등에 의거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던 공공기관 평가도 평가의 중복 방지 등 통합평가방향과 조화를 위해 「정부업무평가 기본법」(2006.4.1시행)에 처음으로 포함되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한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계획을 검토하게 되었다.

나. 평가대상

1) 개별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평가

개별 법률에 의한 평가대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운용, 「과학기술 기본법」에 의한 연구회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학기술분

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등 총 9개 분야 562개 공공기관이다.

〈표 2-3-1〉 개별 법률에 의한 평가대상 공공기관(2012년 기준)

근거법률	평가대상	대표적 유형	평가주체
공공기관의운영에 관한법률(제48조)	공기업(27개)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기획재정부 장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준정부기관(82개)	예금보험공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등	
국가재정법(제82조)	기금(60개)	고용보험기금, 공무원연금기금 등	기획재정부 장관 (기금정책심의회)
과학기술기본법(제32조 제2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법률(제28조)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7개)	한국과학기술원 등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방위사업청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1개)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청장
	과학기술분야 연구회(2개)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장관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24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등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법률(제28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23개)	산업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등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지방공기업법(제78조)	지방공기업(326개)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공사 등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공기업경영 평가위원회)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제10조 제3항 제4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16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산발전연구원 등	지방자치단체장

2) 지정 공공기관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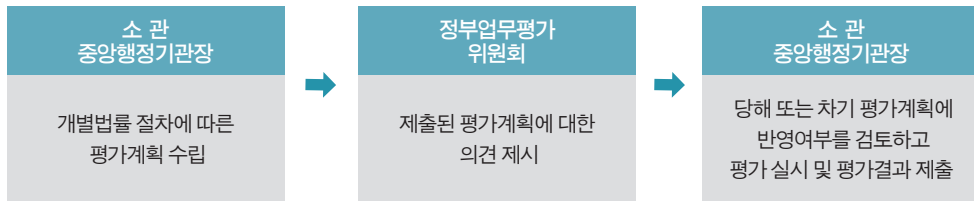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평가 대상은 개별 법률에 의한 평가 대상이 아닌 공공기관 중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공공기관이다.

다. 평가 절차

1) 개별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평가

공공기관 평가 실시기관은 개별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제출된 평가계획에 대해 통합평가체계와의 부합 여부 등을 검토하여 의견제시를 한다. 평가 실시기관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검토의견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당해 또는 차기년도 평가계획에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공공기관 평가 실시기관은 개별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즉시 제출한다.

〈표 2-3-2〉 개별 법률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평가절차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평가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의 계약에 따른 계약 이행 실적, 경영 목표 수립에 따른 경영실적 등을 평가하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동법 제48조).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기관에 경영실적 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동법 시행령 제27조), 경영실적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경영실적 평가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28조).

평가기준과 방법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의결한 경영실적 평가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편람을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작성한다(동법 시행령 제27조).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6월 20일까지 평가를 마치고, 그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및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2) 「국가재정법」에 의한 자금운용평가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 중 3분의 1이상의 기금에 대하여 그 운용실태를 조사·평가하며, 3년마다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전체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동법 제82조). 평가 시에는 기금의 사업성과 및 여유자금 운용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동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금운용실태의 조사·평가와 기금 제도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기금 운용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동법 제 82조 제 2항).

2008년부터 평가 대상을 사업운용과 자산운용 부문으로 나누어서 평가를 시행하였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및 국회에 제출한다.

(3)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평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연구회(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등)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에 대하여 평가를 시행한다(「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 제2항). 평가의 내용은 기관의 임무 및 장기 발전목표의 전략성, 연구 및 사업수행의 전문성, 기관 운영의 효율성, 연구 및 사업수행 결과의 우수성, 그 밖에 위원회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다만, 각 연구회 및 각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한다(「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

과학기술분야 관련 연구회(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등)는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과 경영 내용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동법 제28조). 연구회가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과 경영 내용을 평가할 때에는 동법 제25조에 따른 기획평가위원회 또는 관련 분야

를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20조).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 실적 및 경영 평가의 내용은 각 연구회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연구회는 동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소관 연구기관의 평가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감독관청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21조).

교육과학기술부장은 기초기술연구회 및 그 소관 연구기관의 감독관청이 되고, 지식경제부장은 산업기술연구회 및 그 소관 연구기관의 감독관청이 된다(동법 제29조 제1항). 연구회는 평가 결과를 감독관청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청의 장은 제출된 평가 결과를 총괄하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및 국회에 제출한다(동법 제28조).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

경제·인문사회 연구회는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실적과 경영내용을 평가한다. 경제·인문사회 연구회는 이사회 의결을 거친 평가기준에 따라 기획평가위원회 또는 관련분야를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 평가를 실시한다(동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4월 30일까지 국무총리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국무총리는 평가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국회소관 상임위에 보고한다(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8조).

(6)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평가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경영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78조).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경영지도법인, 경영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등을 경영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경영평가 내용은 경영목표의 달성도,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하며(동법 제78조 제2

항), 지방공기업 경영실적평가기준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고, 지방공기업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2월 말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동법 시행령 제68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11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평가결과를 확정·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 대표자는 경영평가결과 시정을 요하거나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예산의 우선지원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규정 제13조).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결과를 지체 없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2조 제6항).

(7)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평가

특별시·광역시 및 도지사(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대학·경영평가전문기관 등을 평가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에 대한 평가기준은 경영목표의 달성도, 연구결과의 활용성, 업무의 능률성, 예산관리의 적정성 등을 포함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경영평가 표준안을 마련한다(동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8조).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마련한 경영평가표준안을 참작하여 지방연구원 경영평가위원회를 통하여 경영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설정하여 평가한다(동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영평가표준안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경영평가결과 제출을 요청 할 수 있고(동법 시행령 제9조), 시·도지사는 평가결과에 따라 출연연구원에 대한 인사·예산 및 보수체계와의 연계, 경영개선합리화 등을 위한 경영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1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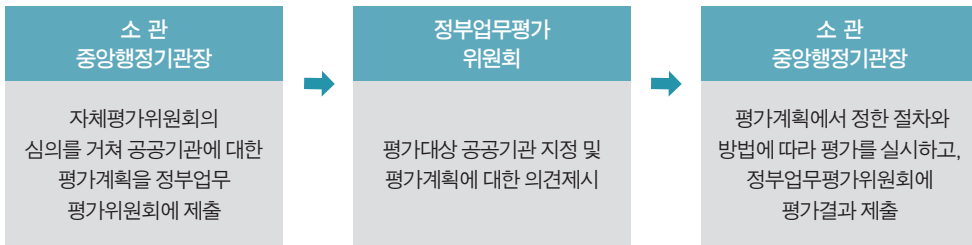
행정안전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경영평가결과를 지체 없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2조 제6항).

2) 지정 공공기관 평가

개별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평가 외에 소관 공공기관에 대해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실시 3개월 이전까지 정부업무

평가위원회에 제출하게 되며(동법 시행령 제19조),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제출된 평가계획에 대해 통합평가체계와의 부합 여부 등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중앙행정기관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즉시 제출하게 된다.

〈표 2-3-3〉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공공기관 평가절차



라. 평가결과 활용

평가결과에 대해 공공기관에 설명회를 실시하고, 평가담당자에 대한 평가 관련 교육을 시행한다. 또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부진기관에 대해서 자문을 실시하여 평가제도 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차년도 평가계획 및 제도 운영 등에 반영하고, 공공기관 및 기관장의 보수·인사·예산 등에도 연계하고 있다.

2. 연도별 평가결과

가. 총 론

매년 평가단의 구성·운영(평가위원 선임기준, 평가위원 선임절차), 평가과정, 평가절차, 평가방법(평가지표 및 배점),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개선시켜 평가에 반영하였다. 또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 및 검토의견 등을 반영하여 개선했다. 예컨대 첫 번째로는 2010년 검토 시 지적했던 '평가결과 제출시기(「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2조 6항)' 관련 사항이 반영되어 2011년부터는 지체 없이 제출되고 있다. 또한 평가결과와 관대화 경향을 완화하도록 하고, 기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변경하는 등 평가방법을 개선하였다.

나. 2008년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회 및 산하 정부출연(연)평가에서는 한국과학재단이 한국연구재단으로 바뀜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직할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평가의 경우는 상당수 지자체가 해당 자치단체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을 평가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평가의 객관성 확보가 다소 미흡하여 적격성을 갖춘 기관에의 의뢰를 통한 경영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였다.

1)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평가

(1) 평가대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공기업(24개 기관)과 준정부기관(76개 기관)에 대해서 평가하였다.

(2) 평가방법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교수·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에서 실시하였다. 평가절차는 '평가편람 시행(2007년말) → 기관별 사업 및 경영(2008년) → 평가단 구성(2009년 3월, 단장 등 139명) → 평가실시(2009년 3월~6월) → 공운위 의결을 거쳐 평가결과 확정(2009년 6월)' 등으로 실시되었다.

(3) 평가결과 및 평가결과 활용

공기업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등 인력·조직개편과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 경영효율화 수준은 제고하였지만, 환율, 금융위기 등 경기침체로 대부분 B, C 등급으로 보통 수준의 결과를 나타냈다.

〈표 2-3-4〉 2008년도 공기업 기관별 평가결과

SOC 유형 (14개)		서비스·진흥·제조 유형 (10개)	
기관명	평가등급	기관명	평가등급
한국수자원공사	A	한국광물자원공사	A
한국전력공사	A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B
한국도로공사	B	한국감정원	B
한국지역난방공사	B	한국관광공사	B
한국철도공사	B	한국마사회	B
한국토지공사	B	한국조폐공사	B
대한주택공사	C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C
부산항만공사	C	한국산재의료원	C
인천국제공항공사	C	대한석탄공사	D
인천항만공사	C	한국방송광고공사	D
한국가스공사	C		
한국공항공사	C		
한국석유공사	C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D		

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중소형기관을 제외한 준정부기관(51개)의 평가결과 분포는 A등급 13.7%, B~C등급 68.6%, D등급 15.7%, E등급 2%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형기관(25개)의 평가결과 분포는 A등급 32%, B~C등급 48%, D등급 20%로 상대적으로 A등급이 많이 나타났다.

〈표 2-3-5〉 2008년도 준정부기관 기관별 평가결과

검사·검증 유형 (6개)

기관명	평가등급
대한지적공사	B
한국가스안전공사	B
한국전기안전공사	B
교통안전공단	C
한국산업기술시험원	D
한국전파진흥원	D

문화·국민생활 유형 (9개)

기관명	평가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A
국민건강보험공단	A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B
국제방송교류재단	C
도로교통공단	C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C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C
국립공원관리공단	D
한국정보문화진흥원	D

산업진흥1 유형 (10개)

기관명	평가등급
한국농어촌공사	A
농수산물유통공사	B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B
에너지관리공단	B
한국산업단지공단	C
한국예탁결제원	C
한국전력거래소	C
한국철도시설공단	C
한국환경자원공사	C
환경관리공단	C

산업진흥2 유형 (6개)

기관명	평가등급
한국광해관리공단	B
한국교육학술정보원	B
한국보건산업진흥원	C
한국정보사회진흥원	C
한국디자인진흥원	D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D

교육훈련·연구지원 유형 (6개)

기관명	평가등급
한국산업인력공단	A
한국과학재단	B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B
한국학술진흥재단	B
한국산업기술평가원	C
한국세라믹기술원	D

연기금융운용 유형 (14개)

기관명	평가등급
근로복지공단	A
기술보증기금	A
신용보증기금	A
공무원연금관리공단	B
국민연금공단	B
국민체육진흥공단	B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B
예금보험공사	B
한국수출보험공사	B
한국자산관리공사	B
한국주택금융공사	B
정보통신연구진흥원	C
한국문화예술위원회	D
영화진흥위원회	E

중소형기관 유형 (25개)

기관명	평가등급
독립기념관	A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A
한국과학창의재단	A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A
한국산업기술재단	A
한국소방산업기술원	A
한국정보보호진흥원	A
한국환경기술진흥원	A
선박안전기술공단	B
한국고용정보원	B
한국소비자원	B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B
한국시설안전공단	B

기관명	평가등급
한국우편물류지원단	B
한국인터넷진흥원	B
한국청소년수련원	B
한국해양수산연수원	B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C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C
한국원자력문화재단	C
축산물등급판정소	D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D
한국석유관리원	D
한국우편사업지원단	D
한국청소년상담원	D

2008년도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한도 내에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였고, D등급(개선필요) 이하 기관에 대해 2009년 경상경비등을 삭감하였다.

2) 기금운용평가

(1) 평가대상

사업운영부문은 29개 기금(약 11.4조원)으로 부처별로 매년 전 재정사업 중 1/3을 재정사업자율평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이 중 기금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실시하였다.

자산운용부문은 36개 기금으로 총 60개 기금 중 경영평가 대상 14개 기금(매년 평가)과 나머지 기금(격년 평가)의 1/2인 22개 기금에 대해 실시하였다.

계정성기금 4개(공공자금관리기금, 외국환평형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는 평가에서 제외되었다.

(2) 평가방법

사업운영부문은 재정사업자율평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별 성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였고, 소관부처를 기준으로 경제, 사회, 행정 분야로 구분하여 계획-집행-성과의 사업단계별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평가하였다.

자산운용부문은 자산운용의 계획과 집행(비계량평가), 성과(계량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였으며, 비계량평가(만점 60점)는 평가지표별 체크리스트를 통해 4등급에 맞도록 절대평가를 실시하였고, 지표(6개)에는 운용정책의 적정성, 관리활동의 효율성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계량평가(만점 40점)는 평가 대상기금 전체에 대해 9등급에 맞도록 상대평가를 실시하였고, 지표(4개)에는 장·단기수익률, 적정유동성, 운용기관 집중도 등이 포함되었다.

(3) 평가결과 및 평가결과 활용

사업운영평가의 경우 평가결과 사업별 평가점수 평균은 64.3로서 전년(62.3)보다 다소 상승하였다.

등급별로 보면 '매우우수' 또는 '우수' 사업이 2.4%(2개), '미흡' 또는 '매우미흡' 사업이 24.1%(20개)에 해당하였다.

단계별로는 집행단계와 성과단계 점수가 계획단계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으며, 분야별로

는 행정(71.9점), 경제(66.1점), 사회(63.1점) 분야 순이었다.

자산운용평가의 경우는 자산운용의 전문성이 높은 대형기금의 점수가 높고 소형기금이 낮은 편이었고, 기금 성격별로는 자산운용 경험이 축적된 연금성 및 금융성기금의 점수가 높고 사업성기금이 낮은 편이었다.

사업운영평가 결과를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전년대비 예산 10% 이상 삭감하였고, 자산운용평가 결과에서 운용자산 규모에 따른 기금 분류별로 하위 1/3 기금은 기금운영비 0.5%p 삭감, 상위 1/3 기금은 0.5%p 증액하였다. 또한,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금은 담당자 표창 및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3)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회 및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

(1) 평가대상

「과학기술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직할 출연(연) 9개 기관 중 고등과학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대해 평가하였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기획재정부 평가로 인해 미포함 되었다. 또한 한국과학재단은 한국연구재단으로 바뀜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직할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기초기술연구회는 소관 13개 출연연구기관의 2008년도 경영성과와 연구·사업성과 점검을 하였다.

(2) 평가방법

책임경영(50%)은 기관 비전 및 운영전략, 과학문화 확산 및 창달, 기관 내·외부 평가결과 활용 및 개선, 고객만족 노력에 대해서 평가하였고, 자율경영(50%)은 우수인력 확충 및 글로벌 연구집단 육성, 학연산 협력체계 구축·활성화, 성과 관리·활용 등에 대해서 평가하였다.

(3) 평가결과 및 평가결과 활용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3-6〉 2008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평가결과

우수(3개)	보통(3개)	미흡(2개)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자력통제기술원 연합대학원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고등과학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13개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연구·사업성과, 경영성과, 국가적 우수성과 창출여부 등을 고려하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4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였다.

기초기술연구회에 대한 발전방향 기획 및 정책, 조직운영, 소관기관 지원 및 육성, 소관기관 평가체계 등에 대한 평가결과 우수등급으로 평가되었다. 평가결과는 기관 경상비 조정, 기관장 성과 연봉 차등 및 우수기관 표창 등에 활용되었다.

4) 지식경제부 소관 연구회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

(1) 평가대상

2008년도는 기관평가제도가 3년 주기 평가로 개편된 이후 종합평가를 처음 실시하는 시기로, 연구·사업성과, 경영성과 및 종합성과를 평가하였다.

(2) 평가방법

연구·사업성과 평가는 성과목표의 산출지표(Output)의 달성도와 효과지표(Outcome)의 달성도 및 우수성을 60:40 비율로 평가하였으며, 경영성과 평가는 책임경영과 자율경영의 2개 부문에서 지표별 우수성(60%)과 전년대비 향상도(40%)를 평가하였다. 또한 종합성과 평가는 경영성과(20%), 연구·사업성과(60%), 기타 연구역량 평가(20%)를 적용하여 기관별로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 점수를 부여하는 평가를 실시하였다.

(3) 평가결과 및 평가결과 활용

연구·사업부문(60%), 경영부문(20%), 기타연구역량(20%) 평가점수 합계로 도출된 평가결과 상위 30% 이내 우수기관을 선정하였다. 우수기관은 기계(연), 에너지(연), 전자통신(연), 화학(연) 등 이었다. 연구·사업성과인 경우 평가결과 중 '미흡' 평가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조정(전년대비 사업비 10% 삭감)으로 활용했고, 경영성과의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중 경상경비 지급율에 반영(평가등급에 따라 차년도 경상경비±2% 범위내)하는 것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종합성과의 경우는 우수기관은 정부출연예산 편성 시 주요사업비 인센티브 제공 및 평가점수에 따라 기관장 성과연봉 차등화 및 연임에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다.

5) 방위사업청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

(1) 평가대상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에 의거하여 국방과학연구소의 2008년도 실적에 대해 평가하였다.

(2) 평가방법

평가단에서 국과연에서 제출한 성과보고서에 대한 서면평가 및 질의·응답에 의한 토론 평가 실시 후 현장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하였고, 평가단 평가결과에 대해 국과연에서 제출한 소명의견 검토 후 최종 평가결과를 작성하였다.

(3) 평가결과 및 평가결과 활용

국방과학연구소는 3대 경영방침과 9대 전략을 설정하고 2008년도에 당해 성과목표들을 달성함으로써 기관경영성과가 전반적으로 우수하였다. 다만, 국제협력 세부전략 로드맵 작성과 함께 산·학·연과의 공동연구 등을 통한 협력강화가 필요하고, 군을 포함한 다양한 고객을 분류하고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는 정례적 시스템의 구축에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

(1) 평가대상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 평가하였다.

(2) 평가방법

연구기관 평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실시하고, 5개 분야로 분과하여 연구성

과 지표분과는 '국가정책 기여도'를 평가하고, 연구관리 지표분과는 '연구과제 선정의 적정성'을, '연구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연구협력의 활성화 정도'를, 경영관리 지표분과는 혁신, 조직, 인사, 예산 등 '경영분야'를, 연구보고서 우수성 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과제의 우수성'을, 기관장 리더십 평가위원회는 '기관장의 리더십 및 경영역량'을 각각 평가하였다. 또한,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담분과위원회'와 '총괄반'을 구성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했다.

(3) 평가결과 및 평가결과 활용

〈표 2-3-7〉 2008년도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결과

기관명	2008년도 평가결과					2007년도 평가결과	
	연구성과지표 (600점)	연구관리지표 (150점)	경영관리지표 (250점)	총계 (1,000점)		총계 (1,000점)	
	평가점수	평가점수	평가점수	평가점수	순위	평가점수	순위
국 토	551.69	125.88	215.32	892.89	1	860.63	4
교 통	549.45	129.58	203.34	882.37	2	852.70	7
정보통신	526.05	137.62	214.99	878.66	3	869.70	3
에너지	526.60	129.94	217.24	873.77	4	855.61	6
법 제	539.36	131.58	194.08	865.02	5	911.70	1
보건사회	526.09	122.08	216.15	864.19	6	847.70	10
산 업	508.56	133.00	209.71	851.27	7	848.74	9
형사정책	531.11	126.12	190.47	847.70	8	804.24	19
조 세	537.19	124.22	186.02	847.42	9	779.62	23
과학기술	514.09	126.92	203.24	844.25	10	787.73	22
해양수산	524.95	115.28	201.44	841.67	11	814.68	18
농촌경제	521.78	123.28	195.39	840.45	12	857.39	5
대외경제	514.21	123.16	200.61	837.97	13	829.66	12
KDI	521.36	119.82	185.84	827.01	14	851.03	8
환 경	529.33	116.60	180.04	825.97	15	841.01	11
교 육	517.06	123.82	183.09	823.97	16	817.89	15
직업능력	507.17	121.58	193.26	822.02	17	827.73	13

기관명	2008년도 평가결과					2007년도 평가결과	
	연구성과지표 (600점)	연구관리지표 (150점)	경영관리지표 (250점)	총계 (1,000점)		총계 (1,000점)	
	평가점수	평가점수	평가점수	평가점수	순위	평가점수	순위
청 소 년	522.86	115.00	183.20	821.06	18	815.38	17
여성정책	520.37	119.16	179.64	819.17	19	816.33	16
행 정	508.13	117.46	186.20	811.79	20	825.25	14
교육과정	502.97	120.10	182.37	805.45	21	787.97	21
노 동	515.21	114.46	154.54	784.21	22	879.39	2
통 일	492.45	105.34	173.72	771.51	23	792.73	20
23개기관 평균	522.09	122.70	193.47	838.25	-	833.69	-
건 축	507.89	116.20	180.62	804.71	-	-	-
육 아	513.49	114.00	164.73	792.22	-	810.87	-
25개기관 평균	521.18	122.09	191.81	835.07	-	832.74	-

‘2008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는 연구기관에 통보하여 새로운 발전방향 모색에 활용토록 함으로써, 국책연구원으로서의 건전한 발전을 추구하고 나가도록 하였다. 동시에 평가결과 성적이 우수한 기관은 표창 및 연구 인센티브 지급 등을 통해 기관 발전 및 연구의 생산성 향상을 촉진토록 하고, 성적이 미흡한 기관은 기관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능력향상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였다.

7) 지방공기업 평가

(1) 평가대상

총 213개 공기업(2008년도 평가 190개 공기업)에 대해 평가가 진행되었고, 그 중 행정안전부 주관 평가가 50개(지하철 7, 도시개발공사 16, 시설관리공단 5, 환경시설공단 5, 기타공사·공단 9, 상수도 1, 하수도 7)였고, 시도 주관 평가(시·군·구 공기업)가 163개(시설관리공단 62, 기타공사·공단 16, 상수도 59, 하수도 26)에 해당하였다.

(2) 평가방법

평가운영·절차 개선을 통하여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공기업을 전면적으로 평

가하였고, 평가주체 다원화에 따른 경영평가의 객관성·공정성 확보 장치를 마련했으며, 시도 주관 평가결과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였다. 또한 평가지표는 대분류를 경영과정에 따른 3개 지표체계로 개편하고 '공기업정책 준수' 지표에 내수 진작을 위한 추진실적 평가 강화하는 등 여러 가지 변화를 주었다.

(3) 평가결과 및 평가결과 활용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50개 공기업의 경우에는 광역단위 50개 공기업의 평균 점수는 85.00점으로 보통 수준을 나타내었고, 전년 대비 평균 점수가 크게 악화된 유형은 도시개발공사(89.09점 → 83.36점)와 기타공사(90.47점 → 84.37점)였다. 공사·공단, 상수도는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나, 하수도사업은 평균점수가 79.91점으로 지속적인 경영개선 노력이 필요하였다.

시도에서 주관한 163개 공기업의 경우에는 기초단위 163개 공기업의 평균 점수는 84.34점으로 광역단위 공기업(85.00점)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시설관리공단 62개는 평균점수 86.73점으로 전년대비 87.81보다 1.08점 하향되었으나, 서울(24개 기관, 평균 83.79점)을 제외한 8개 시도 38개 기관은 대부분 85점 이상이였다. 기타공사공단 16개는 평균점수 84.37점으로 전년도 84.20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평가결과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기관성과급 지급 시 활용(직영기업 제외)되고 우수공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미흡기관에 대한 경영진단 및 평가제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등으로 활용되었다.

8)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평가

(1) 평가대상

평가 대상은 17개 지방출연연구원(시도연구원 15, 여성정책개발원 2)이었고, 평가 주체는 시·도지사(경영평가 위탁기관 지정)였다.

(2) 평가방법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가표준안을 참작하여 시·도별 자체평가를 실시하였고, 경영분야(37점), 연구분야(50점), 고객만족도분야(13점)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평가방식은 서면

평가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서면평가의 미비점 보완을 위하여, 필요시 현장 확인점검 병행하였다.

(3) 평가결과 및 평가결과 활용

전체 지자체출연연구원 경영평가결과 평균적으로 작년대비 1.40%(1.23점) 향상된 89.34점(우수)으로 평가되었다.

〈표 2-3-8〉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평가결과

구분	S등급(10개)	A등급(6개)	B등급(1개)	C등급
연구원	충남, 충남(여), 제주, 강원,대전, 경남,충북, 대구경북,전북,전남	인천, 경북(여) 경기, 울산, 부산, 광주	서울	-

※ S:90점 이상, A:89점~80점, B:79점~70점, C:70점미만

분야별 평가결과를 비교해 보면 경영분야 평균 32.73, 연구분야 평균 45.90, 고객만족도 분야 평균 10.70으로 경영분야가 작년대비 더 미흡한 반면 연구분야, 고객만족도분야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를 받았다.

다. 2009년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회 및 산하 정부출연(연)의 경우 책임경영의 평가지표로써 R&D사업 보안관리를 신설하였다.**
- **지방공기업 평가의 경우 정량지표로써 2008년 평가 시에는 전년대비 개선실적을 100% 활용하였지만, 2009년 실적 평가 시에는 절대수준(60%) + 개선실적(40%)을 분할하여 활용하였다.**

1)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평가

(1) 평가대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공기업(23개 기관)과 준정부기관(73개 기관)에 대해서 평가하였다.

(2) 평가방법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교수·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에서 실시하였다.

평가절차는 ① 평가편람 시행(2008년도말) → ② 기관별 사업 및 경영(2009년) → ③ 평가단 구성(2010년 2월, 단장 등 130명) → ④ 평가실시(2010년 3~6월) → 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평가결과 확정(2010년 6월 20일 까지) 등으로 이루어졌다.

(3) 평가결과 및 평가결과 활용

공기업 SOC 유형은 전체 13개 기관 중 7개 기관이 A등급 이상을 확보하여 전반적으로 경영 성과 우수하였고, 공기업 서비스·진흥·제조 유형은 10개 기관 평균 득점률이 타 기관유형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이고, 3개 기관이 D등급을 받았다.

공기업 전체적으로 비계량적 활동 중에서는 고객만족경영 노력이 가장 우수하고, 노사관계 합리성도 전년도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고, 계량실적(경영성과)의 경우 SOC 유형은 전년보다 다소 개선되었으나, 서비스·진흥·제조 유형은 다소 하락하였다.

〈표 2-3-9〉 2009년도 공기업 기관별 평가등급

SOC유형 (13개)		서비스·진흥·제조유형 (10개)	
기관명	평가등급	기관명	평가등급
한국전력공사	S	한국관광공사	A
인천국제공항공사	A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B
한국공항공사	A	한국감정원	B
한국도로공사	A	한국광물자원공사	B
한국석유공사	A	한국마사회	B
한국수자원공사	A	한국방송광고공사	B
한국토지주택공사	A	한국조폐공사	B
한국가스공사	B	대한석탄공사	D
한국지역난방공사	B	대한주택보증	D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B	한국산재의료원	D
한국철도공사	C		
부산항만공사	D		
인천항만공사	D		

* 등급내 기관 열거 순서는 가나다순

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중소형기관을 제외한 준정부기관(33개)의 평가결과 분포가 A등급 30.3%, B~C등급 60.6%, D등급 9.1%, S와 E등급 기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소형기관(40개)의 평가결과 분포는 A등급 12.5%, B~C등급 75.0%, D등급 10.0%, E등급 2.5%, S등급 기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10〉 2009년도 준정부기관 기관별 평가결과

검사·검증 유형 (4개)

기관명	평가등급
교통안전공단	A
대한지적공사	B
한국전기안전공사	C
한국가스안전공사	D

문화·국민생활 유형 (8개)

기관명	평가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B
국립공원관리공단	B
국민건강보험공단	B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B
한국산업인력공단	B
한국장애인고용공단	B
도로교통공단	C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C

산업진흥 유형 (6개)

기관명	평가등급
농수산물유통공사	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A
한국농어촌공사	A
한국철도시설공단	A
한국거래소	B
한국환경공단	C

연기금운용 유형 (15개)

기관명	평가등급
근로복지공단	A
기술보증기금	A
신용보증기금	A
한국자산관리공사	A
한국주택금융공사	A
국민연금공단	B
국민체육진흥공단	B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B
예금보험공사	B
중소기업진흥공단	B
한국수출보험공사	B
공무원연금공단	C
영화진흥위원회	C
한국문화예술위원회	D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D

* 등급내 열거 순서는 가나다순

중소형기관 유형 (25개)

기관명	평가등급	기관명	평가등급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A	한국인터넷진흥원	B
한국고용정보원	A	한국전력거래소	B
한국과학창의재단	A	한국정보화진흥원	B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A	한국콘텐츠진흥원	B
한국석유관리원	A	한국해양수산연수원	B
독립기념관	B	한국환경산업기술원	B
선박안전기술공단	B	국제방송교류재단	C
정보통신산업진흥원	B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C
축산물품질평가원	B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C
한국광해관리공단	B	한국디자인진흥원	C
한국교육학술정보원	B	한국보건산업진흥원	C
한국산업기술시험원	B	한국소방산업기술원	C
한국산업기술진흥원	B	한국소비자원	C
한국세라믹기술원	B	한국시설안전공단	C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B	한국연구재단	C
한국예탁결제원	B	에너지관리공단	D
한국우편물류지원단	B	한국산업단지공단	D
한국우편사업지원단	B	한국청소년상담원	D
한국원자력문화재단	B	한국청소년수련원	D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B	한국전파진흥원	E

*등급내 기관 열거 순서는 가나다순

평가결과는 성과급 차등 지급, D등급 이하 기관의 2011년 경상경비예산 감액 등으로 활용하였다.

2) 기금운용평가

(1) 평가대상

사업운영부문은 37개 기금 132개(약 21조원) 사업으로서 부처별로 매년 전체 재정사업의 1/3씩 실시하고 있는 재정사업자율평가 대상사업 중 기금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평가하였다. 자산운용부문은 35개 기금으로서 총 63개 기금 중 경영평가 대상 기금(15개)은 매년 평가하고, 그 이외의 기금(48개)은 격년제로 평가(20개 기금)하였으며, 계정성기금 4개(공공자금관리기금, 외국환평형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는 평가에 제외되었다.

(2) 평가방법

사업운영부문은 재정사업자율평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별 성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였고, 소관부처를 기준으로 경제, 사회, 행정 분야로 구분하여 '계획-집행-성과'의 사업 단계별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평가하였다.

자산운용부문은 자산운용의 계획과 집행부문은 비계량평가로, 성과부문은 계량평가로 하여 그 결과를 합산하였다.

비계량평가(60점)는 자산운용정책, 의사결정체계, 위험관리, 성과관리 등 평가지표(6개 지표, 21개 세부지표)별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등급을 부여(절대평가)하였고, 계량평가(40점)는 장·단기수익률, 운용기관 집중도 등 평가지표(4개 지표, 9개 세부지표)별로 전체 기금의 실적을 크기에 따라 9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평가(상대평가)하였다.

(3) 평가결과 및 평가결과 활용

사업운영평가결과, 사업별 평가점수 평균은 60.6점으로 전년(64.3)보다 하락하였고, 자체평가 관대화 경향 방지를 위한 패널티 제외 시 62.1점을 기록하였다.

등급별로 보면 '매우우수' 또는 '우수' 사업이 3.0%(4개), '미흡' 또는 '매우미흡' 사업이 31.8%(42개)에 해당하였고, 전년과 비교 시 보통 등급은 감소(73.5 → 65.2%)하였고, 미흡이하 등급은 증가(24.1 → 31.8%), 우수 이상 등급은 전년과 유사(2.4 → 3.0%)하였다.

자산운용평가결과는 자산운용의 전문성이 높은 대형기금의 점수가 높고 소형기금이 낮은 편이었으며, 기금 성격별로는 자산운용 경험이 축적된 연금성 및 금융성기금의 점수가

높고 사업성기금이 낮은 편이었다.

사업운영 평가결과는 자금운용계획 수립 시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전년대비 사업비 10% 이상 삭감하는 등으로 활용하였으며, 자산운용평가는 자산규모에 따른 분류별로 하위 1/3의 기금은 다음 연도 자금운영비 0.5%p 삭감, 상위 1/3의 기금은 자금운영비 0.5%p 증액하였고, 경영평가 대상기관은 경영평가 점수에 2% 반영하고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금은 담당자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으로 활용되었다.

3)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회 및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

(1) 평가대상

전년도 평가와 마찬가지로 「과학기술 기본법」 제32조 및 「연구개발성과 평가법」 제8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직할 출연연구기관 9개 기관 중 8개 기관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였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기획재정부 평가로 인해 미포함 되었다. 또한, 기초기술연구회는 소관 13개 출연연구기관의 2009년 경영성과 점검을 실시하였다.

(2) 평가방법

책임경영(50%)은 기관비전 및 운영전략(기관장리더십 포함), 내·외부 평가결과 활용, 고객만족경영, R&D사업 보안관리(신설) 등에 대해, 자율경영(50%)부분은 글로벌 연구 집단 육성, 학연산 협력체계 및 성과 관리·활용, 예산관리 및 집행, 기관자율제시지표(신설) 등에 대해 평가하였다.

(3) 평가결과 및 평가결과 활용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3-11〉 2009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평가결과

우수(2개 기관)	보통(4개 기관)	미흡(2개 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고등과학원

또한, 기초기술연구회의 평가결과는 '평가등급 배분원칙'에 따라 '우수' 3개 기관, '보통' 6개 기관, '미흡' 3개 기관이 선정되었다. 결과는 아래표와 같다.

〈표 2-3-12〉 2009년도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결과

우수(3개)	보통(6개)	미흡(3개)
과기(연), 원자력(연), 해양(연)	과기정보(연), 극지(연), 생명(연), 표준(연), 항우(연), 핵융합(연)	기초(연), 천문(연), 한의학(연)

평가결과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기관 경상비 조정, 기관장 성과 연봉 차등 및 우수기관 표창 등에 활용되었다.

4) 지식경제부 소관 연구회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

(1) 평가대상

연구회 소속 13개 연구기관의 2009년도 전반적 경영활동 및 그 성과에 대해 평가하였다.

(2) 평가방법

평가는 2개 부문, 6개 항목, 10개 평가지표(100점 만점)로 진행되었다.

지표별 평가점수 부여방법은 평가지표별 우수성(50%)과 전년대비 향상도(50%)를 5등급으로 절대평가(점수 = 가중치×지표배점)하였다.

〈표 2-3-13〉 2009년도 지식경제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급표

평가등급	AA(매우우수)	A(우수)	B(보통)	C(미흡)	D(매우미흡)
가중치	1.0	0.9	0.8	0.7	0.6

종합평가등급은 평가결과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우수(25%, 3개 기관), 보통(50%, 7개 기관), 미흡(25%, 3개 기관)으로 부여하였다.

(3) 평가결과 및 평가결과 활용

〈표 2-3-14〉 2009년도 지식경제부 소관 연구회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결과

평가등급	해당기관(가나다순)
우수	기계, 지질자원, 철도기술
보통	국가보안기술, 생산기술, 식품, 에너지기술, 전기, 전자통신, 화학
미흡	건설기술, 안전성평가, 재료

평가결과는 정부출연금 경상경비 조정(차년도 경상경비 범위내), 기관장 성과연봉 조정(평가등급에 따라 연봉 차등화) 및 연임에 참고하였으며, 기관의 발전방향 및 중기전략계획 수정·보완, 기능조정 및 대표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홍보 등으로 활용되었다.

5) 방위사업청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

(1) 평가대상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에 의거하여 2009년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해 평가하였다.

(2) 평가방법

평가항목은 책임경영(40%)과 자율경영(60%) 분야로 구성된 평가지표(12개)별 경영성과 보고서에 대한 평가하였다.

평가 과정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제출한 성과보고서에 대한 서면평가 및 질의·응답에 의한 토론평가를 실시 후, 현장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하였고, 기관평가단 평가결과에 대해 국과연에서 제출한 소명의견 검토 후 최종 평가결과를 작성하였다.

(3) 평가결과 및 평가결과 활용

국방과학연구소 경영성과 평가결과는 당해 평가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연구협력 네트워크 구축 미흡, 고객에 대한 권위적 형태 상존, 재무상태 및 자금수지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 되었다.

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

(1) 평가대상

전년도와는 다르게 4개 부설기관이 추가되어 총 소관 27개 연구기관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 졌다. 또한, 연구기관 평가와 기관장 리더십 평가가 분리되어 실시되었다.

〈표 2-3-15〉 2009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평가대상 연구기관

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1. 한국교통연구원	21. 한국행정연구원
2. 국토연구원	12. 한국노동연구원	2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4. 산업연구원	14. 한국법제연구원	
5. 에너지경제연구원	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설기관
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7. 통일연구원	17. 한국조세연구원	농촌정보문화센터
8. 한국개발연구원	18.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육아정책연구소
9. 한국교육개발원	1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1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기관장 리더십 평가 제외 기관(2009. 12. 31. 현재 기관장 공석 및 취임 6개월 미만) : 3개 연구기관(한국교육개발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및 2개 부설기관(건축도시공간연구소, 농촌정보문화센터)

(2) 평가방법

평가는 연구기관 평가와 하반기 기관장 리더십 평가를 통합하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실시하였고, 연구성과분야는 '국가정책 기여도' 평가, 경영관리분야(Ⅰ)는 경영 목표, 조직·인사, 예산 등 '경영관리분야' 평가, 경영관리분야(Ⅱ)는 상시 점검·평가 등 '경영관리분야' 평가, 연구보고서 우수성 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과제의 우수성 평가 등으로 실시되었다.

기관장 리더십 분야는 '주요현안과제'를 제외한 '기관장 리더십 분야'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상시 점검·평가항목' 평가위원의 경우, 연구기관 평가와 하반기 기관장 리더십 평가가 동시에 실시되었다.

(3) 평가결과 및 평가결과 활용

〈표 2-3-16〉 2009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결과

(정관순)

구분	연구기관 평가		하반기 기관장 리더십 평가	
	활용 등급기준	기관명	활용 등급기준	기관명
매우 우수	2개 기관	에너지, 교통	90점 이상	0개 기관
우수	5개 기관	과학, 국토, 농촌, 법제, 조세	80점 이상 ~ 90점 미만	8개 기관 과학, 국토, 대외, 산업, 에너지, 교통, 농촌, 조세
보통	9개 기관	대외, 산업, 정보, 통일, 교육, 여성, 해양, 행정, 환경 *부설(건축)	60점 이상 ~ 80점 미만	9개 기관 정보, 교육평가, 법제, 보건, 여성, 직능원, 해양, 형사, 환경 *부설(KDI대학원, 육아)
미흡	5개 기관	KDI, 교육평가, 보건, 청소년, 형사	50점 이상 ~ 60점 미만	3개 기관 통일, KD, 청소년
매우 미흡	2개 기관	노동, 직능원 *부설(KDI대학원, 농촌정보, 육아)	50점 미만	0개 기관

※ 기관장 리더십 평가 제외 기관(2009. 12. 31. 현재 기관장 공석 및 취임 6개월 미만) : 3개 연구기관(한국교육개발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및 2개 부설기관(건축도시공간연구소, 농촌정보문화센터)

연구기관 결과는 연구기관 평가지표에 반영(2점/100점),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출연금 연구사업비 차등 지원(±2%), 매우우수 및 우수기관에 각 순위 간 총액기준 3% 격차로 차등 배정(882백만원) 및 2개 기관(매우우수기관)에 국무총리 표창수여 등으로 활용하였다.

기관장 리더십 결과는 하반기 기관장 리더십 평가점수를 연구기관 평가에 반영(20점), 하반기 기관장 평가결과에 따라 차기년도 상반기 원장 성과연봉 차등 지급 및 기관장 리더십 평가결과 2회 연속 '매우미흡'으로 평가받은 기관장의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 가능하도록 활용하였다.

7) 지방공기업 평가

(1) 평가대상

총 211개 지방공기업(2008년 평가 : 213개)에 대해서 진행하였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평가는 50개(지하철 7, 도시개발공사 15, 시설관리공단 5, 환경시설공단 5, 기타공사 9, 기타공단 2, 상수도 7)였고, 시도에서 주관한 평가(시·군·구 공기업)는 161개(시설관리공단 64, 기타공사 13, 상수도 44, 하수도 40)였다.

(2) 평가방법

평가지표에서 '영업수지비율'배점을 상향 조정했고, 고객만족 점수를 하향(공사·공단: 15점→10점) 조정했다. 또한 '정량지표'평가 시 절대수준과 개선실적을 분할하여 평가하였다.

(3) 평가결과 및 평가결과 활용

행정안전부 주관 평가결과는 50개 기업의 평균 점수는 85.37점(2008년도 85점)으로 보통수준을 나타내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평균 점수가 하향된 유형은 지하철공사(87.67점→85.04점), 시설관리공단(88.41점→87.00점), 환경시설공단(90.40점→88.65점), 기타공사(86.57점→86.08점), 기타공단(88.51→87.34점)이며, 점수하향 원인은 영업수지비율 반영점수 확대 등 평가지표의 변경이 원인이었다.

시도 주관 평가결과는 2009년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결과 기초단위 161개 공기업의 평균은 79.19점(2008년도 84.34점)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평가 공기업(85.37점)보다 6.17점 낮은 수준이었다. 시설관리공단은 평균 84.99점으로 전년 대비 86.83점보다 1.84점 하락하였고, 기타공사는 평균 85.56점으로 전년도 84.10점보다 1.46점 상승하였다.

또한 결과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기관성과급 지급 시 활용(직영기업 제외)되고 우수공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미흡기관에 대한 경영진단 및 평가제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등으로 활용되었다.

8)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평가

(1) 평가대상

평가 대상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17개 지방출연연구원(시도연구원 15, 여성정책개발원 2)이었고, 평가 주체는 시·도지사(경영평가 위탁기관 지정)였다.

(2) 평가방법

평가는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가표준안을 참작하여 시·도별 자체평가를 실시하였고, 경영분야(37점), 연구분야(50점), 고객만족도분야(13점)로 구분되었다. 평가방식은 서면평가 위주로 평가(필요 시, 현장 확인점검 병행)되었으며, 서면평가의 미비점 보완을 위하여 필요시 현장 확인점검을 병행하였다.

(3) 평가결과 및 평가결과 활용

전체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경영평가결과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89.19점(2008년 89.34점)으로 평가 되었다.

〈표 2-3-17〉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평가결과

구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계	8	9	0.8	0.7
연구원	충남, 충남(여), 대전, 강원, 제주, 전남, 대구, 경북, 경남	전북, 부산, 경북(여), 광주, 충북, 울산, 경기, 인천, 서울	-	-

※ S: 90점이상, A: 89점~80점, B: 79점~70점, C: 70점미만

분야별 평가결과를 비교해 보면 '경영분야 평균 32.87, 연구분야 평균 45.29, 고객만족도분야 평균 11.03'로 연구분야는 작년대비 0.6점이 미흡한 반면, 고객만족도분야는 0.4점 높은 점수를 받았다.

라. 2010년

- 지식경제부 소관 연구회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에서는 피평가기관 및 평가단의 평가자료 접근 및 활용의 용이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기술연구정보서비스 내의 'E-기관평가시스템'이 도입되었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의 경우 기관장 리더십 평가가 제외된 기관(2010. 12. 31. 현재 기관장 공석 및 취임 6개월 미만)은 한국노동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등 이었다.
- 지방공기업 평가의 경우 선진화 조치에 따라 신설·통합공기업(11개)은 2011년 경영평가를 면제하고, 별도의 경영컨설팅을 실시하였다.

1)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평가

(1) 평가대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공기업(21개 기관)과 준정부기관(79개 기관)에 대해서 평가하였다.

(2) 평가방법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교수·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에서 실시하였으며, 평가절차는 ‘평가편람 확정(2009년말) → 기관별 사업 및 경영(2010년) → 평가단 구성(2011년 2월, 단장 등 168명) → 평가실시(2011년 3~6월)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평가결과 확정(2011년 6월)’ 등으로 이루어졌다.

(3) 평가결과 및 평가결과 활용

평가결과는 경기회복, 주요사업의 성과향상 등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이 개선되어 평가결과가 상향되었으며, 전년에 비해 B등급 이상 상위등급 기관은 증가(+1개)하고, D등급 이하 하위등급 기관은 감소(△5개)하였다. 평가결과는 우수기관의 경우는 자율권 확대 연장, 기관장 연임건의, 직원 성과급 1등급 범위 내에서 가산하였고, 보통기관은 자율권 확대를 1년 연장하되, 자율경영계획서를 재점검하였으며, 부진기관의 경우에는 자율권 회수, 기관장 자진사퇴, 직원 성과급 1등급 범위 내에서 삭감하는 등으로 활용되었다.

〈표 2-3-18〉 2010년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평가결과

등급	공기업(21개)	준정부기관(79개)	중소형기관(45개)
S(-)			
A (25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7개)	농수산물유통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5개)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3개)

등급	공기업(21개)	준정부기관(79개)	중소형기관(45개)
B (43개)	<p>대한주택보증(주),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관광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8개)</p>	<p>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통안전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거래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14개)</p>	<p>국제방송교류재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선박안전기술공단, 에너지관리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우편물류지원단, 한국우편사업지원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21개)</p>
C (24개)	<p>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5개)</p>	<p>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대한지적공사, 도로교통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환경공단(12개)</p>	<p>한국고용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7개)</p>
D (8개)	<p>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개)</p>	<p>영화진흥위원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3개)</p>	<p>독립기념관, (재)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4개)</p>
E (-)			

* 등급내 기관 열거 순서는 가나다순

2) 기금운용평가

(1) 평가대상

사업운영부문은 29개 기금 93개(약 25조원) 사업으로, 부처별로 매년 전체 재정사업의 1/3씩 실시하고 있는 재정사업자율평가 대상사업 중 기금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평가하였다.

자산운용부문은 37개 기금(운용자산 약 342조원)에 대한 것으로 총 63개 기금 중 경영평가 대상 기금(17개)은 매년 평가하고, 계정성 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 외국환평형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격년제로 평가(20개 기금)하였다.

(2) 평가방법

사업운영부문은 재정사업자율평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별 성과를 중점 평가하였다. 또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소관부처를 기준으로 경제, 사회, 행정 분야로 구분하여 '계획-관리-성과-환류'의 사업단계별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평가하였다.

자산운용부문은 자산운용의 계획과 집행부문은 비계량평가로, 성과부문은 계량평가로 하여 그 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였다.

비계량평가(60점)는 자산운용정책, 의사결정체계, 위험관리, 성과관리 등 평가지표(6개 지표, 21개 세부지표)별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등급을 부여(절대평가)했으며, 계량평가(40점)는 장·단기수익률, 적정유동성 등 평가지표(4개 지표, 9개 세부지표)별로 전체 기금의 실적을 9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평가(상대평가)하였다.

(3) 평가결과 및 평가결과 활용

사업운영평가결과의 사업별 평가점수 평균은 60.6점으로 전년도 동일하였다. 등급별로 보면 '매우우수' 또는 '우수' 사업이 3.2%(3개), '미흡' 또는 '매우미흡' 사업이 28.0%(26개)를 차지하였고, 전년도와 비교 시, 보통 등급은 증가(65.2→68.8%), 미흡이하 등급은 감소(31.8→28.0%), 우수이상 등급은 전년도 유사(3.0→3.2%)하였다. 이는 성과지표와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평가점수 상승 등으로 이와 연계된 성과단계의 점수가 상승(48.0→50.6점)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단계별로는 성과단계 점수가 계획단계에 비해 낮은 수준 분야별로는 점수차이가 크지는 않으나, 경제(63.1), 행정(61.0), 사회(59.3) 분야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분야가 타 분야보다 집행관리 등이 어려운 보조사업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자산운용평가결과는 기금 규모별로는 자산운용의 규모가 큰 대형기금의 점수가 높고 소형기금이 낮은 편이었으며, 기금 성격별로는 자산운용 경험이 축적된 연금성 및 금융성기금의 점수가 높고 사업성기금이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사업운영 평가결과에서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전년대비 10% 이상 사업비를 삭감하였다.

자산운용 평가결과에서는 자산규모에 따른 분류별로 하위 1/3의 기금은 다음 연도 기금 운영비 0.5%p 삭감, 상위 1/3의 기금은 기금운영비 0.5%p 증액하는 등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경영평가 점수에 2% 반영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금은 담당자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으로 활용하였다.

3)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회 및 산하 출연연구기관 평가

(1) 평가대상

전년도 평가와 마찬가지로 「과학기술 기본법」 제32조 및 「연구개발성과 평가법」 제8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직할 출연연구기관 9개 기관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13개 출연연구기관의 2010년 경영성과 점검을 통해 성과향상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 기관의 발전방향 제시하였다.

(2) 평가방법

경영성과는 책임과 자율의 2개 부문 12개 공통지표로써, 연구·사업성과는 기관에서 자율 설정·제시한 성과목표·지표로써, 기타 역량은 전략성과 우수성의 2개 항목 5개 공통지표로써 평가를 진행하였다.

(3) 평가결과 및 평가결과 활용

〈표 2-3-19〉 2010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평가결과

우수(2개 기관)	보통(5개 기관)	미흡(2개 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광주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고등과학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평가등급 배분원칙'에 의거 우수 2개, 보통 5개, 미흡 2개 기관 선정

또한, 기초기술연구회의 평가결과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평가등급 배분원칙'에 따라 우수 3개 기관, 보통 6개 기관, 미흡 3개 기관 선정(수리연은 등급유예)하였다. 결과는 아래표와 같다.

〈표 2-3-20〉 2010년도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결과

우수(3개 기관)	보통(6개 기관)	미흡(3개 기관)
과기(연), 표준(연), 해양(연)	과기정보(연), 기초(연), 생명(연), 원자력(연), 천문(연), 핵융합(연)	극지(연), 한의학(연), 항공우주(연)

평가결과는 전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게 경상경비 조정, 연구원 인센티브 지급, 기관장 성과 연봉 차등 및 우수기관 표창수여 등으로 활용되었다.

4) 지식경제부 소관 연구회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

(1) 평가대상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13개 연구기관(3개 부설기관 포함)에 대해서 평가하였다.

(2) 평가방법

평가지표별로 성과의 우수성과 전년대비 향상도를 평가(5:5의 비율)하였고, 지표는 책임경영(기관비전 및 전략수립 30, 모니터링 활성화 노력 및 실적 18)과 자율경영(인적자원 관리 10, 글로벌 수준의 연구 기관 육성 7, 연구·사업 관리 25, 예산 및 재무관리 10)로 구성되었다. 평가는 피평가기관이 작성·제출한 '2010년 경영성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서면

및 대면평가에 대해 실시되었다.

또한, 피평가기관 및 평가단의 평가자료의 접근 및 활용의 용이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 기술연구정보서비스(IRIS: Industrial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내의 'E-기관평가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3) 평가결과 및 평가결과 활용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영성과 평가는 최근 3년간 경영평가 평균점수가 지속적으로 상승(2008년 81.86점, 2009년 82.56점, 2010년 83.63점)했는데 반해, 제도·규정이나 시스템 등의 외형적 토대 마련에 지나치게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운영 면에서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표 2-3-21〉 2010년도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결과

(가나다순)

우수	보통	미흡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재료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평가결과는 차년도 출연금 경상경비 조정(최종 평가등급에 따라 $\pm 2\%$ 범위 내), 기관장 성과연봉 조정(최종 평가등급에 따라 연봉 차등화), 정부포상 실시 및 연임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다.

5) 방위사업청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

(1) 평가대상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에 의거하여 2010년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해 평가하였다.

(2) 평가방법

국방과학연구소의 평가 방법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제출한 성과 보고서에 대한 서면평가 및 질의·응답에 의한 토론평가를 실시 후, 현장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하였고, 기관평가단 평가결과에 대해 국과연에서 제출한 소명의견 검토 후 최종 평가 결과를 작성하였다.

(3) 평가결과 및 평가결과 활용

무기체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산·학·연의 저변 확대가 제약을 받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군의 소요시기, 요구성능 등이 충족되는 무기체계를 개발하여 국가 방위에 기여하였다.

기관임무와 비전을 연계한 경영목표, 전략, 전략핵심과제의 도출 프로세스가 체계적이고 합리적이며, 국방과학기술 선진화 계획 등 최근의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한 점이 우수하다고 평가되었다. 다만, '미션 - 비전 - 경영목표 - 전략 - 전략핵심과제'를 연계할 성과그에 대한 동인이 미흡하고, 연구소가 보유한 유·무형자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며, 비전 및 전략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가시화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

(1) 평가대상

전년도 평가와 마찬가지로 소관 23개 연구기관 및 4개 부설기관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였다. 기관장 리더십 평가의 경우는 제외 기관(2010. 12. 31. 기준 기관장 공석 및 취임 6개월 미만)이 한국노동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등이었다.

(2) 평가방법

연구기관 평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실시(총 53인)하였고, 연구성과분야는 '국가정책 기여도' 평가, 연구관리분야는 '연구사업 관리의 적정성', '연구사업 성과확산 체계의 적정성' 평가, 경영관리분야는 '조직 및 인사관리의 적정성', '예산관리의 적정성' 및 '모니터링 활성화 노력' 평가, 연구보고서 우수성 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과제의 우수성 평가 등을 실시하였다.

기관장 리더십 분야 평가는 '경영목표 실천계획 수립·달성정도', '정부정책 지원 정도' 및 '상시 점검·평가항목 이행실적' 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담분과위원회'와 '총괄반'을 구성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였다.

(3) 평가결과 및 평가결과 활용

〈표 2-3-22〉 2010년도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평가결과

(정관순)

구분	연구기관 평가		허반기관장 리더십 평가		
	활용 등급기준	기관명	활용 등급기준	기관명	
매우우수	2개기관	교통, 환경	90점 이상	0개기관	-
우수	5개기관	과학, 교육, 법제 여성, 형사	80점 이상 ~ 90점 미만	4개기관	산업, 에너지, 보건, 환경
보통	9개기관	대외, 에너지, 정보 농촌, 보건, 조세 직업, 해양, 행정 *부실(KDI대학원)	70점 이상 ~ 80점 미만	12개기관	과학, 국토, 대외, KDI 교육, 교육평가 교통, 농촌, 법제 여성, 조세, 행정 *부실(농촌정보, 육아)
미흡	5개기관	국토, 산업, KDI 교육평가, 청소년 *부실(건축, 농촌정보, 육아)	60점 이상 ~ 70점 미만	3개기관	정보, 통일, 직업 *부실(건축)
매우미흡	2개기관	통일, 노동	60점 미만	1개기관	청소년

※ 기관장 리더십 평가 제외 기관(2010. 12. 31. 기준 기관장 공석 및 취임 6개월 미만) : 3개 연구기관(한국노동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평가결과는 연구기관 평가인 경우에는 전년도 평가결과 개선노력정도 차기년도 평가 시 반영(3점/100점), 경상비 인센티브 차등 지급 등으로 활용한다. 또한 기관장 리더십 평가인 경우에는 2회 연속 '매우미흡'으로 평가받으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 가능하고, 기관장 리더십 평가점수를 연구기관 평가에 반영(2점/100점) 등으로 활용한다.

7) 지방공기업 평가

(1) 평가대상

총 216개 지방공기업(2010년 : 211개)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고, 행정안전부 주관

평가는 58개(도시철도 7, 도시개발공사 15, 시설관리공단 5, 환경시설공단 5, 기타공사 9, 기타공단 2, 상수도 8, 하수도 7)였으며, 시·도 주관 평가(시·군·구 공기업)는 158개(시설관리공단 63, 기타공사 10, 상수도 58, 하수도 27)였다.

(2) 평가방법

평가지표는 3개 지표(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로 나누었고,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철도·시설관리 등 8개 유형으로 구분했으며, 세부평가지표는 평가 유형별로 각 공기업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였다.

또한, 경영평가 등급을 3단계(우수, 보통, 미흡)에서 5단계(가~마)로 세분화하여 공기업별 경영수준에 대한 변별력을 제고하여 책임경영을 유도하였다.

(3) 평가결과 및 평가결과 활용

행정안전부 주관 평가결과 58개 공기업의 평균 점수는 85.30점(2009년도 50개 85.37점)으로 '나'등급에 해당하는 수준을 나타내었다. 시·도 주관 평가의 경우에는 2010년도 경영평가결과 기초단위 158개 공기업의 평균은 81.01점(2009년도 79.19점)으로 광역단위 공기업(85.30점)보다 4.29점 낮은 수준이었다. 세부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은 평균 85.87점으로 전년도 84.99점에 비해 0.88점 상승, 기타공사는 평균 84.93점으로 전년도 85.56점보다 0.63점 하락하였고, 상수도사업은 평균 79.47점으로 전년도 74.28점보다 5.19점 상승하였다. 평가결과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기관성과급 지급 시 활용(직영기업 제외)되고 우수공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미흡기관에 대한 경영진단 및 평가제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등으로 활용되었다.

8)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평가

(1) 평가대상

평가 대상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17개 지방출연연구원(시도연구원 15, 여성정책개발원 2)이었고, 평가 주체는 시·도지사(경영평가 위탁기관 지정)였다.

(2) 평가방법

평가는 전년도 평가와 마찬가지로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가표준안을 참작, 시·도별 자체 평가를 실시하였고, 경영분야(37점), 연구분야(50점), 고객만족도분야(13점)로 구분되었다. 평가방식은 서면평가 위주로 평가(필요 시, 현장 확인점검 병행)되었으며, 서면평가의 미비점 보완을 위하여, 필요시 현장 확인점검을 병행하였다.

(3) 평가결과 및 평가결과 활용

전체 지자체출연연구원 경영평가결과 작년보다 1.1점 낮은 88.08점(2009년 89.19점)으로 평가되었다.

〈표 2-3-23〉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평가결과

구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계	10	5	2	
연구원	충남, 충북, 강원, 대전, 충남(여), 경남, 경남(여), 제주, 부산, 전남	광주, 울산, 대구경북, 전북, 경기	서울, 인천	-

※ S: 90점이상, A: 89점~80점, B: 79점~70점, C: 70점미만

분야별 평가결과는 ‘경영분야 평균 32.52, 연구분야 평균 44.81, 고객만족도분야 평균 10.74’로 2009년 실적 평가결과 보다 0.2~0.4점 낮은 점수를 받았다.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보면, 경영분야는 충남, 경북(여), 경남, 강원 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충북, 서울, 인천은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고, 연구분야는 충남, 충북, 대전, 경남,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경기, 서울, 인천은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한 고객만족도분야는 충북, 강원, 대구 경북 이 높게 나타났으며, 경남, 전북, 인천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결과를 보였다.

마. 2011년

- 기획재정부는 기금의 전체적인 현황파악 등 격년제 평가방식 보원을 위하여
여유자금 1조원 이상 기금을 매년 평가하여 평가대상을 확대하였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의 경우 연구기관 평가대상 중
농촌정보문화센터가 빠져서 총 26개 기관으로 변경되었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기관장 리더십 평가 제외 기관은 2011. 12. 31. 기준
취임 9개월 미만 및 기관장 공석인 11개 연구기관(과학, 정보, 통일, 교통, 노동, 농촌,
법제, 여성, 조세, 직능원, 환경) 및 1개 부설기관(육아)이었다.

1)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평가

(1) 평가대상

기관 경영실적은 109개 기관(공기업 27개, 준정부기관 92개)에 대해 실시하였고, 기관장 경영계획서 이행실적은 76개 기관장(공기업/준정부기관 68개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타공공기관의 신규임명 및 유임 기관 8개)에 대해 실시하였다.

또한 기관장 자율경영계획서 이행실적은 6개 기관장(인천국제공항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산업은행)에 대해 실시하였고, 상임감사/감사위원 직무수행실적은 59개 기관의 상임감사/감사위원에 대해 실시하는 등 총 4개 부문으로 진행되었다.

(2) 평가방법

기관 경영실적은 리더십/책임경영, 경영효율, 주요사업에 대해, 기관장 경영계획서 이행실적은 리더십, 경영효율, 주요사업에 대해, 기관장 자율경영계획서 이행실적은 고유성과 과제, 공통과제에 대해, 상임감사/감사위원 직무수행실적은 감사활동의 적정성 및 직무성과 등에 대해서 평가할 예정이다.

(3) 평가결과 및 평가결과 활용

우수기관 표창 및 부진기관 경고, 임직원의 성과급 차등지급, 차년도 예산편성시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2) 기금운용 평가

(1) 평가대상

사업운영부문은 30개 기금의 121개 사업(약 19조원)으로서 대해 부처별로 매년 전체 재정사업의 1/3씩 실시하고 있는 재정사업자율평가 대상사업중 기금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평가하였으며, 자산운용부문은 43개 기금(여유자금 약 389조원)에 대해 평가하였다.

(2) 평가방법

사업운영부문의 경우 재정사업자율평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별 성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소관부처를 기준으로 경제, 사회, 행정 분야로 구분하고 '계획 - 관리 - 성과·환류'의 사업단계별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평가하였다.

자산운용부문의 경우는 자산운용의 계획과 집행부문은 비계량평가로, 성과부문은 계량평가로 하여 그 결과를 합산하였다.

(3) 평가결과 및 평가결과 활용

사업운영평가결과 사업별 평가점수 평균은 전년보다 상승(60.6 → 63.4점)했다. 등급별로 보면 '매우우수' 또는 '우수' 사업이 3.3%(4개), '미흡' 또는 '매우미흡' 사업이 22.3%(27개)에 달했다.

〈표 2-3-24〉 2011년도 기금 자산운영평가 사업별 평가점수 평균

	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사업수 (비중)	121 (100.0)	0 (0.0)	4 (3.3)	90 (74.4)	15 (12.4)	12 (9.9)

자산운용평가결과는 평균점수 및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6등급 상대평가로 이루어졌다.

〈표 2-3-25〉 2011년도 기금 자산운용평가 사업별 평가점수 평균

전체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아주 미흡
43개	6	6	10	7	6	8

사업운영 평가결과는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사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전년대비 사업비 10% 이상을 삭감한다.

자산운용 평가결과는 대형, 중형, 소형의 자산규모별로 각각 하위 1/3의 기금은 다음 연도 기금운영비 0.5%p 삭감, 상위 1/3의 기금은 기금운영비 0.5%p 증액을 원칙으로 한다.

3)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회 및 산하 정부 출연연구기관 평가

(1) 평가대상

「과학기술 기본법」 제32조 및 「연구개발성과 평가법」 제8조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 직할 출연(연) 기관 6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였다. 전년도와는 달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으로 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평가에서 제외 되었다.

또한, 기초기술연구회는 소관 13개 출연연구기관의 2011년 경영성과와 직전 3개년(2009년~2011년) 간의 연구·사업성과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다.

(2) 평가방법

평가방법은 기관장 리더십 및 책임경영 3개(보안관리 포함), 경영효율 3개, 자율지표 2~4개 등 총 8~10개 지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점수 합계에 따라 절대평가 방식으로 우수, 보통, 미흡의 등급을 부여하였고, 평가단은 대형분과(1개), 중소형분과(1개)로 구성·운영 하였다.

(3) 평가결과 및 평가결과 활용

〈표 2-3-26〉 2011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결과

우수(1개)	보통(5개)	미흡
광주과학기술원	고등과학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없음

〈표 2-3-27〉 2011년도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결과

우수(7개)	보통(6개)
과기(연), 과기정보(연), 기초(연), 생명(연), 원자력(연), 표준(연), 핵융합(연)	극지(연), 수리(연), 천문(연), 한의학(연), 항공우주(연), 해양(연)

평가결과는 기관장 성과연봉 차등, 연구원 인센티브 지급률 차등, 출연금 경상비 조정, 우수기관 및 직원 포상 등에 활용되었다.

4) 지식경제부 소관 연구회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

(1) 평가대상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14개 출연연구기관의 2011년도 경영성과와 산업기술연구회의 2011년도 경영성과에 대해 평가할 예정이다.

(2) 평가방법

산업기술 연구회가 외부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리더십 및 경영목표 달성도, 우수인력 확충 및 육성 등을 평가하고, '연구회'평가는 한국행정학회를 평가 주관기관으로 하되, 지식경제부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리더십 및 발전전략, 사업성과 등을 최종평가 할 예정이다.

5) 방위사업청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

(1) 평가대상

방위사업청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경영성과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하였다.

(2) 평가방법

국방과학연구소의 경우는 공통지표(80%)와 자율지표(20%) 분야로 구성된 평가지표(9개)별 경영성과 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고, 국방기술품질원의 경우는 공통지표(50%)와 자율지표(50%) 분야로 구성된 평가지표(18개)별 경영성과 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3) 평가결과

국방과학연구소는 평가 등급(점수)이 보통(87.0점)으로 나왔으며, 총평으로는 국과연 경영성과 평가는 전년 대비 중요하고 의미 있는 새로운 일의 시도 및 그 달성도를 보통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국방기술품질원의 경우는 보통(89.7점)의 평가등급을 받고 총평으로서는 기품원의 리더십 및 책임경영 부문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으나, 기품원 실정에 맞는 사회적 기여 방안 강구 필요하다고 평가되었다.

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

(1) 평가대상

연구기관 평가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23개 연구기관, 2개 부설기관 및 KDI국제정책대학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또한, 기관장 리더십 평가는 소관 12개 연구기관장, 1개 부설기관장 및 1개 대학원장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2) 평가방법

2011년에 대한 평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실시(총 54인으로 구성) '국가정책 기여도' 평가인 연구성과분야는 연구기관에서 추천을 받은 정부부처 공무원(422인)이 서면 평가를 실시하고, 외부전문가(26인)가 집체평가로 실시하되, 기관 특성별로 4개 분야(경제정책, 자원인프라, 인적자원, 공공정책)로 분리하여 전문영역에 해당하는 기관만 평가한다.

또한, 연구성과분야 외에 2011년 연구기관 평가는 '연구사업 관리', '연구사업 성과확산 체계'를 평가하는 연구관리분야,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예산 관리', '노사관계 선진화', '모니터링 활성화', '주요현안과제 이행실적' 등을 평가하는 경영관리분야, 평가대상과제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연구보고서 우수성 평가위원회로 실시된다.

기관장 리더십 분야는 '경영목표 실천계획 수립·달성정도', '국가정책 지원노력', '윤리 경영' 등을 평가한다. 연구기관 및 기관장 리더십 평가는 공정성, 객관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괄반'과 '분야별 전담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3) 평가결과 및 평가결과 활용

〈표 2-3-28〉 2011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결과

(연구회 정관 순)

구분	연구기관 평가결과		기관장 리더십 평가결과	
	활용등급	기관명	활용등급	기관명
연구기관	매우우수	2개 기관	2개 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90점 이상 -
	우수	5개 기관	5개 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7개 기관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보통	9개 기관	9개 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5개 기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미흡	5개 기관	2개 기관 국토연구원 통일연구원	60점 이상 ~ 70점 미만
	매우미흡	2개 기관	1개 기관 KDI국제정책대학원	-
부설기관	우수	-	2개 기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	70점 이상 ~ 80점 미만
	보통	-	2개 기관 KDI국제정책대학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개 기관

* 부설기관의 평가등급은 연구기관 평가결과 평점에 준용하여 평가등급 부여

평가결과는 연구기관 평가인 경우에는 전년도 평가에 대한 개선노력정도를 차기년도 평가 시 반영(20점/1,000점), 기관 평가점수를 기관장 리더십 평가점수에 반영(15점/100점) 및 경상비 인센티브 차등 지급(매우우수·우수별 각 순위 간 3% 격차) 등으로 활용한다. 또한 기관장 리더십 평가인 경우에는 '매우미흡'으로 평가받으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 가능하고, 차기년도 기관장 성과연봉 차등 적용(50~2000만원) 등으로 활용한다.

7) 지방공기업 평가

(1) 평가대상

행정안전부 주관(광역공기업) 47개(공사 27, 공단 12, 상수도 8)기업과 시도 주관(기초공기업) 173개(공사 18, 공단 64, 상수도 47, 하수도 44)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2) 평가방법

평가는 리더십/전략(10~12점)에 대한 정성평가, 경영시스템(28~30점)에 대한 정성평가(경영효율화+주요사업활동), 경영성과(58~62점)에 대한 정량평가(주요사업성과+경영효율성과+정책준수+고객만족성과) 등으로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8)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평가

(1) 평가대상

17개 지방출연연구원(시도연구원 15, 여성정책개발원 2)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2) 평가방법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가표준안을 참작, 시·도별로 자체평가 실시 예정이며, 경영분야(37점), 연구분야(50점), 고객만족도분야(13점)로 구분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바. 2012년

2012년 평가계획은 2013년도 초에 확정될 예정이고, 그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진 후 2013년 5월 이후부터 각 평가소관 기관별로 평가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제3장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 실적

성과관리는 성과평가의 상위개념이다.

성과평가는 성과관리를 잘 할 수 있기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정부업무가 '계획-집행-점검-평가-환류'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되도록 돕는 것이 성과관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제1절 정부업무 성과관리 체계

1. 기본개념	276
2. 정부업무 성과관리의 목적 및 기본원칙	277
가. 정부업무 성과관리의 목적	277
나. 정부업무 성과관리의 기본원칙	279
3. 정부업무 성과관리 추진체계	279
가. 계획 수립	281
나. 집행·점검	281
다. 평가	281
라. 평가결과와 환류	282
4.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성과	282

제2절 정부업무 성과관리 연도별 주요내용

1. 2008년	
가. 전년 대비 주요 변경 사항	283
나. 성과관리계획 수립	283
다. 성과관리시행계획 이행상황 자체점검	286
라. 성과관리 운영실태 점검	286
2. 2009년	
가. 전년 대비 주요 변경 사항	289
나. 성과관리계획 수립	290
다. 성과관리시행계획 이행상황 자체점검	292
라. 성과관리 운영실태 점검	292
3. 2010년	
가. 전년 대비 주요 변경 사항	294
나. 성과관리계획 수립	295
다. 성과관리시행계획 이행상황 자체점검	297
라. 성과관리 운영실태 점검	297
4. 2011년	
가. 전년 대비 주요 변경 사항	300
나. 성과관리계획 수립	300
다. 성과관리시행계획 이행상황 자체점검	302
라. 성과관리 운영실태 점검	302
5. 2012년	
가. 전년 대비 주요 변경 사항	304
나. 성과관리계획 수립	305
다. 성과관리시행계획 이행상황 자체점검	306

제3장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 실적

제1절 정부업무 성과관리 체계

1. 기본개념

성과관리는 성과평가의 상위개념이다. 기관이 임무 달성을 위해 '계획-집행·점검-평가-환류'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성과관리는 한 집단 및 개인의 성과를 관리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성과는 '결과' 중심의 성과를 말하며, 집단은 하나의 공동체로서 일반적으로 조직이라 할 수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부서, 부처/기관, 정부, 그리고 국가 등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관리라 함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인적자산', '일하는 방식', '제도' 등에 관한 관리를 포함하며, 기능적 차원에서 기획, 예산결정, 집행, 평가, 환류, PR(Public Relations) 등도 포함한다.

공공부문의 성과관리는 민간부문의 성과관리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공공성이라는 가치가 강조되고, 일하는 방식에서 민주성이 전제되며, 국민에 대한 책무성 강화를 위한 제반 절차가 요구되는 등 공공부문만의 특수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민간부문의 성과관리와 다소 차이가 있다.

성과관리를 성과평가와 동일 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과평가는 성과관리의 한 부분으로서, 성과관리를 잘 할 수 있기 위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동일

한 개념은 아니다. 즉, 성과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잘 하고 있는가’ 또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측정/평가가 필요하고 이에 해당되는 것이 성과평가라 할 수 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는 성과관리를 “정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성과관리란 각 기관이 그 임무 달성을 위해 전략적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업무를 추진한 후, 조직의 역량과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개선이나 자원배분, 개인의 성과보상에 반영함으로써 조직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성과관리는 정부업무 추진의 효율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계획-집행-점검-평가-환류’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2. 정부업무 성과관리의 목적 및 기본원칙

정책의 최종 고객인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성과관리의 목적이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는 성과관리에 네 가지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있다.

가. 정부업무 성과관리의 목적

정부업무 성과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 확보를 통해 정책 등의 품질을 제고시킴으로써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 등의 최종 고객인 국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국민책무성 강화

정부업무 성과관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국민에 대한 책무성 강화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성과는 국민의 입장에서 규정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국민을 위한 성과가 되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는 정책추진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정책추진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의 평가를 받음으로써 국민에 대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성과관리라 할 수 있다.

(2) 미래지향적 관리

성과관리가 하나의 성공적인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 및 각 기관의 성과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기여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는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설정하여 제대로 실행해야 한다. 성과관리제도는 이러한 각 과정을 지원하는 관리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즉, 성과관리제도는 지속적 성과향상을 위한 미래지향적 제도이다.

(3) 체계적 업무 개선

성과관리는 업무개선을 위한 내부관리제도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미래지향적 관리’는 체계적인 업무개선이 계속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성과관리의 핵심은 성과가 높은 이유와 낮은 이유를 파악하여, 가장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내는 데 있다. 즉, 성과의 고저에 따른 상벌보다는 성과고저의 원인파악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지식이 축적될 때 장기적으로 조직역량은 향상되고 업무개선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4) 조직구성원 역량 강화

성과관리는 성과의 고저에 따라 조직구성원을 보상·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가 낮은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여 향후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는 보직을 조정하여 각 개인이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관리 철학은 장기적으로 조직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5)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형성

성과관리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성과중심의 조직문화가 장기적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이는 아직까지도 근절되지 않은 관행이라 할 수 있는 정실주의, 연공서열, 연고주의 등을 완화하고 조직관리의 핵심을 성과에 두는 것이다.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는 조직구성원의 사기를 앙양하고 인사관리 및 보수체계를 합리화하며, 상관에 대한 충성을 국민에 대한 충성으로 변화시키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나. 정부업무 성과관리의 기본원칙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르면 정부업무에 대한 성과관리는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첫째, ‘통합 성과관리 체계’의 구축(제1조)이다. 즉, 부분적·단편적 성과관리 방식을 개선하여 기관의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기관·부서·개인의 성과관리가 연계된 통합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최대한의 자율성 부여와 엄격한 책무성 확보(제4조)이다. 즉, 정책 등의 계획 수립과 집행에 대하여는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업무의 성과와 정책품질, 국민 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이다. 특히, 계획 수립 시 관련기관, 이해관계인 및 조직 구성원들과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설정에 관한 의견조율 등 충분한 합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셋째, 목표와 전략에 입각한 사업계획과 업무관리(제5조, 제6조)이다. 즉, 효율적 성과관리를 위해 임무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이에 근거한 구체적인 전략과 목표를 사전에 설정하여야 한다.

넷째, 평가결과를 정책개선 및 자원배분에 환류(제28조~제30조)해야 한다. 즉, 제시된 목표와 달성도에 대한 평가결과를 정책개선, 인사·조직·재정 등에 환류하는 등 성과와 보상 등을 구체적으로 연계해야 한다.

3. 정부업무 성과관리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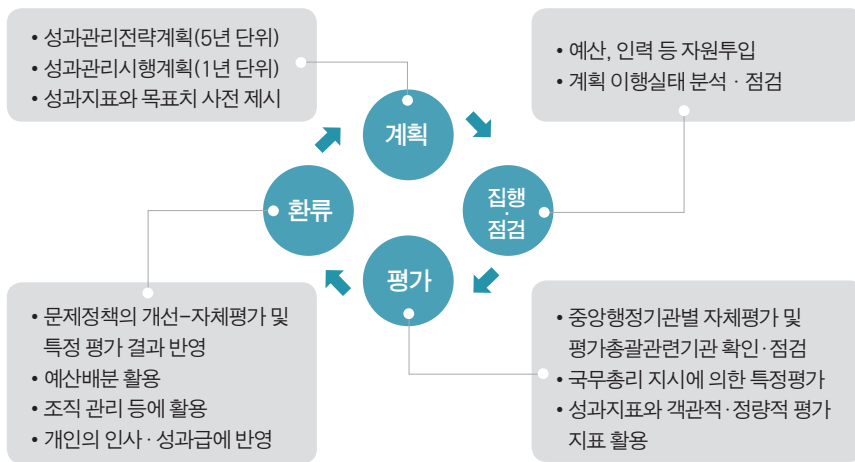
‘계획 수립 - 집행 - 점검 - 평가 - 환류’의 추진체계로 구성된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각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상황 점검결과와 자체 평가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로 제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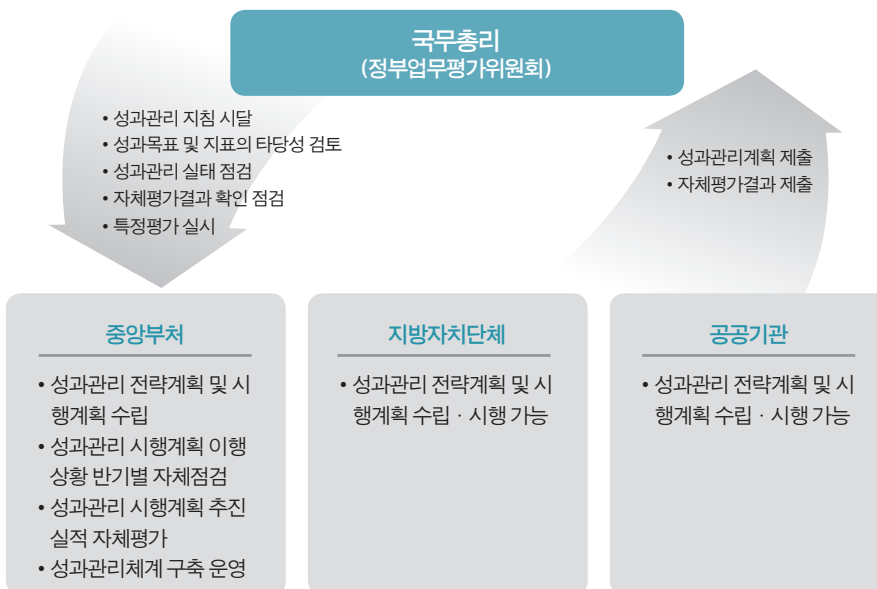
정부업무 성과관리는 ‘성과관리계획 수립-집행·점검-평가-환류’ 체계로 구성된다. 정부 각 기관은 기관의 임무와 목표, 구체적 실행수단을 포함한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목표와 지표를 사전에 제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추진한 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과정에 환류하는 과정으로 성과관리를 구체화하여 운영한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거하여 각 기관은, 기관별 목표를 구체화하는 '성과관리 전략계획'과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정책집행을 통하여 사전에 계획된 정책목표를 실현하고 연말에는 제시된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였는지를 기관 자율적으로 평가한다. 평가결과는 정책개선, 예산, 조직, 인사, 보수 등에 환류하는 구조를 기본으로 한다.

〈표 3-1-1〉 정부업무 성과관리체계도



〈표 3-1-2〉 정부업무 성과관리 추진체계도



가. 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은 5년 단위의 '성과관리 전략계획'과 1년 단위의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성과관리 전략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기관을 포함한 당해 기관의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5년 단위의 중·장기계획으로서, 최초 수립 이후 최소 3년 마다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성과관리 전략 계획에서는 기관의 임무·전략목표 등을 설정하고 동 계획과 관련이 있는 법령에 의한 중·장기 계획을 포함할 수 있고, 「국가재정법」에 의한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성과관리 전략계획의 실행계획인 '성과관리 시행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성과관리 전략계획'에 기초하여 당해 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으로서, 당해 연도의 성과목표·관리과제·성과지표 및 재정부문의 과거 3년간 성과결과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국무총리 소속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목표체계와 성과지표의 적절성을 검토·조정하는 등 성과관리계획 수립을 지원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 계획 수립 시에 국정과제, 부처 업무계획, 대통령지시사항 등과 긴밀히 연계해야 하며, 계획 수립 후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에 준하여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나. 집행·점검

중앙행정기관은 주어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과제의 추진과정과 실적 등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국무총리실은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에 대한 운영실태 확인·점검을 통해 정부 내 성과관리 발전을 지원·유도할 수 있다.

다. 평가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연말실적을 기준으로 다음해 1~3월 기간 중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관리과제와 과제별 성과지표는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의 대상과제 및 성과지표로 활용된다.

국무총리는 정부 내에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시책, 다수부처 관련시책, 현안시책 등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라. 평가결과의 환류

기관차원에서는 정책개선 또는 예산편성에 반영하거나 조직관리에 활용하고, 개인차원에서는 개인성과 및 인사와 연계하거나 성과급 지급에 반영이 가능하다. 특히, 예산과의 연계측면에서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10% 이상 예산을 삭감하거나 폐지하고, 성과가 미흡하지는 않으나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사업은 증액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4.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성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는 정부업무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 향상을 위해 각 부처로 하여금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기획, 평가, 보고 등 부처 업무 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관리수단으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활용하고 있으며,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부처의 우선순위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주기적으로 성과관리 시행계획상 관리과제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연간 추진실적에 대해 부처 스스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인사·예산·정책반영 등 환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자율적인 성과관리 역량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국무총리실에서는 성과관리계획 수립 지침 제공 및 전문가에 의한 성과관리계획 검토 등을 통해 각 부처의 성과관리계획이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성과관리의 타당성 제고를 위해 관리과제 및 성과지표 등의 수정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각 부처의 성과관리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정부기관의 성과관리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성과관리 제도개선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제2절 정부업무 성과관리 연도별 주요내용

1. 2008년

계획수립시기를 예산일정에 맞춰 운영하고, 성과의 개선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목표를 정확히 설정했다.

또, 성과목표별 성과지표를 반드시 제시하도록 했다.

가. 전년 대비 주요 변경 사항

첫째, 2007년도의 경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 2006년도 4월에 시행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성과관리계획 수립지침 시달 및 계획 수립일정이 하반기로 늦춰지게 되었으나, 2008년에는 성과관리와 예산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획 수립 시기를 예산일정에 맞춰 운영하였다. 특히, 성과관리체계의 일원화를 위해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한 ‘성과관리시행계획’과 「국가재정법」에 의한 ‘성과계획서’를 통합·운영하게 되었다.

둘째, ‘임무 - 비전 - 전략목표 - 성과목표-관리과제’ 간의 논리적 연관관계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고, 목표 설정 시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을 지양하도록 하였다. 각각의 목표들이 임무달성에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계획기간 동안 성과의 개선여부 또는 성취수준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도록 하였다.

셋째, 성과측정의 객관성과 정확성 확보를 위해 목표치 설정근거를 명확히 하고 성과목표별 성과지표를 반드시 제시하도록 하였다. 성과지표별로 목표치 설정근거를 상세히 제시하고 성과지표 개발 및 연구노력, 통계인프라 확충, 성과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법 등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성과정보의 다각적 분석을 위해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외에도 성과목표의 성과를 종합적·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별 성과지표를 반드시 제시하도록 하였다.

나. 성과관리계획 수립

2008년에는 성과관리계획 수립 시기를 예산순기에 맞춰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성과관리 계획 수립지침을 2007년 3월에 시달하였으며,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사전검토 및 국회 예

산심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된 각 부처별 성과관리시행계획은 2008년 1월에 제출되었다.

〈표 3-2-1〉 2008년 성과관리계획 수립 관련 주요일정

- 성과관리계획 작성 지침 각 부처 시달 : 2007년 3월
- 각 부처별 성과관리계획(안) 제출 : 2007년 7월
- 부처 제출 계획(안)에 대한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사전검토 : 2007년 7월 18일~8월 30일
 - * R&D는 과기부에서 검토 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별도 보고(2007년 12월 21일)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각 부처 계획(안) 보완 : 2007년 10월 9일~12월 7일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사전검토의견 부처별 반영 현황 제출 : 2007년 12월 7일
- 국회 예산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부처 계획 확정 · 제출 : 2008년 1월 11일
- 2008년 성과관리시행계획을 기초로 각 부처 연도업무계획 수립 · 보고 : 2008년 2월 5일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기관에는 정부업무평가의 대상이 되는 48개 중앙행정기관 모두가 포함되었다. 성과관리계획에는 당해기관이 임무달성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전반적인 업무를 포괄하되, 평가 및 개인 성과관리와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주요정책과제·재정성과·인사·조직·정보화 등 자체평가부문을 고려하여 작성하도록 하였다.

각 부처에서 수립한 성과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목표 체계의 타당성, 성과지표의 적절성 등을 사전 검토 하고, 부처에서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성과관리계획(안)을 수정·보완한 후, 연말 국회 예산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계획을 확정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8개 기관에서 262개의 전략목표, 970개의 성과목표, 4,229개의 관리과제, 6,992개의 성과지표를 확정하였고, 기관 평균 전략목표 5.5개, 성과목표 20.2개, 관리과제 88.2개, 성과지표 145.7개를 설정하였다.

관리과제는 주요정책과제 부문이 2,271개(53.7%)로 가장 많았고, 재정성과 부문(R&D 180개, HRD 52개 포함)이 1,403개(33.2%), 정보화부문이 358개(8.5%)였다.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유형별로는 산출·결과지표가 6,257개(89.3%), 정량지표는 5,409개(77.4%)였다.

〈표 3-2-2〉 2008년 성과관리계획 수립 현황

(단위:개, 괄호안:%)

전략 목표	성과 목표	관리과제 현황		성과지표						
		부문	관리과제	합계	지표성격				정량지표	정성지표
					투입	과정	산출	결과		
262	970	주요정책	2,271 (53.7)	3,385 (100)	61 (1.8)	401 (11.8)	1,721 (50.8)	1,202 (35.6)	2,492 (73.6)	893 (26.4)
		재정성과	1,403 (33.2)	2,666 (100)	54 (2.0)	151 (5.7)	1,067 (40.0)	1,394 (52.3)	2,224 (83.4)	442 (16.6)
		R&D	180 (4.3)	498 (100)	7 (1.4)	21 (4.2)	280 (56.2)	190 (38.2)	475 (95.4)	23 (4.6)
		HRD	52 (1.2)	88 (100)	0 (0.0)	1 (1.1)	29 (33.0)	58 (65.9)	66 (75.0)	22 (25)
		정보화	358 (8.5)	707 (100)	2 (0.3)	53 (7.5)	360 (50.9)	292 (41.3)	524 (74.1)	183 (25.9)
		인사	108 (2.5)	133 (100)	3 (2.3)	9 (6.8)	56 (42.1)	65 (48.9)	87 (65.4)	46 (34.6)
		조직	89 (2.1)	101 (100)	3 (3.0)	8 (7.9)	55 (54.5)	35 (34.6)	82 (81.2)	19 (18.8)
		합계	4,229 (100)	6,992 (100)	123 (1.8)	622 (8.9)	3,259 (46.6)	2,988 (42.7)	5,409 (77.4)	1,583 (22.6)

* 주요정책과 HRD에 중복된 12개 관리과제는 이중 집계됨

〈표 3-2-3〉 2008년 기관평균 관리과제 및 성과지표 현황

(단위:개)

구분	계	주요정책과제	재정성과	정보화	인사	조직
기관평균 관리과제	88.2	47.3	29.2	7.5	2.3	1.9
기관평균 성과지표	145.7	70.5	55.5	14.7	2.8	2.1

2007년 성과관리계획 수립결과와 비교할 때 특기할 만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성과 관리 전략계획은 매 3년마다 수정·보완토록 하고 있으나, 2008년에는 중·장기적 방향성 강화, 전략·성과목표의 구체화·명확화, 정책상황 반영 등을 이유로 48개 전 부처가 전략 계획을 수정·보완하였다. 전략목표는 소폭 감소(2개)하였으며, 성과목표는 다소 큰 폭으로 감소(33개)하였다. 성과관리시행계획은 전략계획보다 조정 폭이 컸으며, 특히 관리과제 수가 2007년 4,749개에서 2008년 4,229개로 대폭 감소하였다. 2007년 48개 기관이

제시한 총 4,749개 관리과제 중 930개(19.6%)를 삭제하고, 531개를 추가하였으며, 500개(10.5%) 과제를 수정·보완하였다. 주요 조정사유는 사업 완료·예산 상황 등 정책 추진 여건 반영, 유사·중복과제 통·폐합, 일상적인 지원업무 등 불필요한 과제 정비, 신규 발굴 과제 반영 등이다.

〈표 3-2-4〉 2007년 대비 조정 내역

(단위:개)

구분	2007년 계획	수정반영 소계	추가	수정·보완	삭제
전략목표	268 (48개 기관)	33 (21개 기관)	2	27	4
성과목표	1,022 (48개 기관)	322 (44개 기관)	85	119	118
관리과제	4,749 (48개 기관)	1,961 (48개 기관)	531	500	930

다. 성과관리시행계획 이행상황 자체점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6조제4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에서는 2008년도 자체평가 대상 과제(주요정책·일반재정·R&D·인사·조직·정보화)에 대해 관리과제별 계획대비 추진사항, 목표달성도 등 '2008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상반기 이행상황 점검을 7월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독려하였다. 점검방법은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라. 성과관리 운영실태 점검

국무총리실에서는 중앙부처의 성과관리 수준을 진단하고 정부 내 성과중심 문화 정착을 위해 2008년 11월 40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08년 성과관리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분석평가실 내에 성과관리 전문가를 포함한 '성과관리 실태점검·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류 점검 및 현지 점검을 병행 실시하였다. 점검항목은 성과관리제도 운영, 성과관리계획, 성과관리 점검·평가 및 환류 등 4개 분야 10개 항목을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성과관리실태에 대한 종합 분석을 위해 전문가 및 평가담당관을 대상으로 총 8개 설문

항목에 대한 설문평가를 병행하였다. 구체적인 점검항목 및 배점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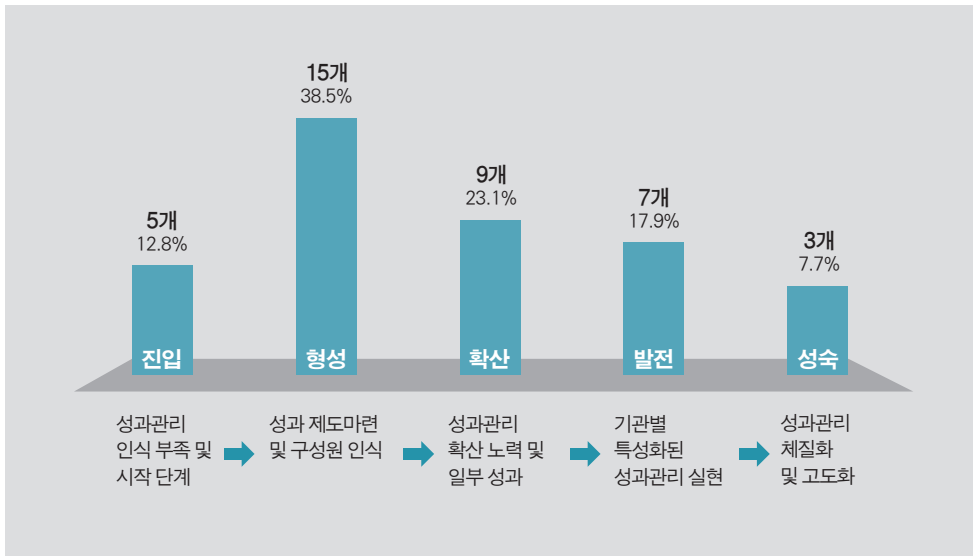
〈표 3-2-5〉 2008년 성과관리 운영실태 점검항목 및 배점

구분	점검 항목	점검 지표	배점
성과관리제도 운영 (28)	성과관리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관리 관련 규정 운영 등 내실화 노력 성과지표 개선 노력 	8
	성과관리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관리 체계 확산 노력 성과관리 관련 홍보 성과관리 교육 	10
	성과관리 리더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장의 성과관리 의지와 노력 성과관리 담당조직 및 담당자 격려 등 	10
성과관리계획 (40)	계획의 체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무·비전, 전략목표 등 목표체계의 타당성 관리과제 선정의 적절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지표의 정책대표성 및 목표치 적합성 성과목표별 성과지표의 적절성 기관대표지표, 국제평가지수 활용도 	15
	계획수립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 구성항목의 충실성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권고사항 반영정도 	13
성과관리 점검·평가 및 환류 (20)	점검·평가의 충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관리계획 이행상황 점검의 충실성 개선방안 마련 등 후속조치 이행 성과향상 및 국민책임성 확보 	10
	환류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결과 환류의 적절성 평가와 성과관리의 연계 노력 	10
종합 (12)	종합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관리에 관한 정성적 종합평가 	8
	우수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처 성과관리 우수사례 	4
합 계			100

각 부처의 성과관리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토대로 성과관리 수준을 '진입 → 형성 → 확산 → 발전 → 성숙'의 5단계로 진단하였는데, 중앙부처에 대한 통합성과관리제도를 도입(2007년)한지 얼마 되지 않은 관계로 대부분 부처가 초기단계인 형성 또는 확산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 업무와 지방소속기관이 많은 청 단위 기관에서는 성과관리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반면, 정책부서인 부단위 기관은 성과관리 수준이 대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각 기관별 성과관리에 대한 관심 및 수용도 수준에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해양경찰청·관세청 등의 경우 성과관리 문화가 성숙되어 기관 내 체질화단계

에 들어섰고 일부 부처의 경우 정부조직 통폐합에 따른 체제 미정비로 성과관리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6〉 2008년 각 부처 성과관리 수준 현황



※ 우수기관(발전 및 성숙단계) : 국민권익위원회, 환경부, 경찰청, 관세청, 국세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통계청, 특허청, 해양경찰청

점검항목별로는, 성과관리 관련 제도 마련 등 역량 강화 부문과 성과관리계획의 목표체 계성 분야는 양호한 반면, 성과관리 교육·홍보 등 성과관리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 분야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결과 시사점으로, 아직까지 대부분의 정부기관의 성과관리 수준이 초기단계인 만큼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 및 각 기관별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점검결과에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난 성과관리 문화확산 노력과 성과지표의 적절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성과관리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도 제고가 필수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밖에 여러 부처가 관련된 정책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 기관별 대표 성과지표 개발 및 관리, 공정하고 합리적인 성과 평가 및 환류체계 마련, 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에서 운영 중인 유사한 성과관리제도간 연계·통합 등이 과제로 제시되었다.

점검결과는 2008년 12월 19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되었고, 해양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성과관리 운영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표창 수여 및 포상금을 지급 하였다.

2. 2009년

인사·조직 부문을 계획 수립 범위에서 제외하고, 성과목표별 성과지표를 설정했다.

성과관리계획 작성항목을 간소화하고 회계·기금별 성과계획을 추가했다.

또한, 효율성 지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도록 했다.

가. 전년 대비 주요 변경 사항

첫째, 인사·조직 부문을 성과관리계획 수립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정부업무평가제도 개선(2008.5)으로 인사·조직 부문이 정보화수준·재정 운용·정보공개 등과 함께 기관역량 항목으로 통합되고, 별도의 목표와 과제체계로 운영할 실익도 적어 동 부문을 폐지하였다.

둘째, 성과목표별 성과지표를 설정하도록 하였다. 성과목표 수준에서 의도한 성과를 통합적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과제별 성과지표와 구별되는 별개의 성과목표별 성과지표를 의무적으로 설정하되, 가급적 기관대표 성과지표를 적극 활용토록 하였다.

셋째, 성과관리계획 작성항목을 간소화하였다. 성과관리전략계획 중 ‘환류 등 관련계획’을 구성항목에서 제외하고 성과관리시행계획의 구성항목인 ‘세부 추진계획’과 ‘과제별 설명자료’를 통합하여 작성하도록 하였다.

넷째, 회계·기금별 성과계획을 추가하였다. 즉, 「국가재정법」(제8조)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 주체의 성과계획서 제출 의무 규정에 따라 회계·기금별 성과계획을 추가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효율성 지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도록 하였다. 즉, 사업의 효율성 분석을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정사업(R&D, 정보화 포함) 부문 관리과제의 성과지표로 1개 이상의 효율성 지표를 제시토록 하였다.

2009년 성과관리에서 특이한 점은 성과관리계획 수립지침 시달시 계획 수립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여 함께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2-7〉 2009년 성과관리계획 수립 관련 가이드라인

- 실천 가능하고 구체적인 '액션 플랜' 중심의 계획 수립으로 가시적 성과목표 달성을 지향할 것
- 성과관리전략계획(2008~2012)은 가급적 3년 주기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할 것
- 성과지표의 정책대표성, 목표수준의 적정화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할 것
- '환류 등 관련계획'에 정부업무 평가결과의 성과급 반영 강화 방침(2008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2008.5)을 고려하여 반영비율을 상향조정토록 하고, 직급별 반영비율과 반영방법을 상세히 제시할 것
- 2009회계연도부터 정부의 예산요구서 국회 제출시 성과관리시행계획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계획과 예산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국가재정법」 제34조)할 것

나. 성과관리계획 수립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 일정을 고려하여 2009년 성과관리계획 수립지침은 전년보다 늦은 2008년 5월 부처에 시달하였고, 연두업무보고와 국회 예산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된 각 부처별 성과관리계획은 2009년 3월에 제출되었다.

〈표 3-2-8〉 2009년 성과관리계획 수립 관련 주요일정

- 성과관리계획 작성 지침 각 부처 시달 : 2008년 5월
- 각 부처별 성과관리계획(안) 제출 : 2008년 6월
- 각 부처 계획(안)에 대한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사전 검토 : 2008년 7월~8월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심의·의결(2008년 9월 19일)
- 각 부처 계획(안) 보완 후 국회 제출 : 2008년 10월
- 2009년 성과관리시행계획 최종본 작성지침 시달 : 2009년 1월
- 업무보고·국회 예산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시행계획 확정·제출 : 2009년 3월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단행된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2009년도 성과관리계획수립 대상 기관은 전년 보다 8개 기관이 감소한 40개 중앙행정기관이 되었다. 성과관리계획에는 당해기관이 임무달성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전반적인 업무를 포괄하며, 주요정책과제·재정성과·정보화부문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였다.

각 부처에서 수립한 성과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사전 검토를 하고, 부처에서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성과관리계획(안)을 수정·보완한 후, 대통령 연두업무보고와 국회 예산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계획을 확

정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0개 기관에서 총 198개의 전략목표, 711개의 성과목표, 3,619개의 관리과제, 6,316개의 성과지표를 확정하였다. 기관 평균 전략목표 5.0개, 성과목표 17.8개, 관리과제 90.5개, 성과지표 157.9개를 설정하였다.

관리과제의 성격별로는 주요정책과제가 1,958개(54.1%), 재정사업(R&D, 정보화 포함)은 1,661개(45.9%)로 주요정책과제의 비중이 더 컸다.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유형별로는 산출·결과지표가 5,613개(88.8%), 정량지표는 4,913개(77.8%)였다.

〈표 3-2-9〉 2009년 성과관리계획 수립 현황

(단위: 개, 괄호안: %)

전략 목표	성과 목표	관리과제 현황		성과지표								
		부 분	관 리 과 제 수	합 계	지표성격					정 량 지 표	정 성 지 표	
					투 입	과 정	산 출	결 과	효 율 성			
198	711	주요정책과제	1,958	2,928	52	250	1,647	971	8	2,123	805	
		재정 성과	일반 재정	1,233	2,323	67	82	974	1,080	120	1,879	444
			R&D	173	570	4	6	391	121	48	540	30
			정보화	255	495	7	24	230	199	35	371	124
		합계	3,619	6,316	130	362	3,242	2,371	211	4,913	1403	

2008년 계획과 비교하면,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모두 전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2009년 계획부터 기관역량과 관련된 인사·조직 부문이 계획에서 제외되고, 유사 목표·과제의 통·폐합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2-10〉 2008·2009년 연도별 계획 현황 비교

(단위: 개)

구 분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전 체	기 관 평 균	전 체	기 관 평 균	전 체	기 관 평 균	전 체	기 관 평 균
2009년 (40개기관)	198	5.0	711	17.8	3,619	90.5	6,316	157.9
2008년 (48개기관)	262	5.5	970	20.2	4,229	88.2	6,992	145.7

다. 성과관리시행계획 이행상황 자체점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6조제4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에서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2009년 자체평가 대상 과제(주요정책·일반재정·R&D·인사·조직·정보화)에 대해 관리과제별 계획대비 추진사항, 목표달성도 등 ‘2009년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상반기 이행상황 점검을 7월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독려하였다. 점검방법은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라. 성과관리 운영실태 점검

2009년에도 정부기관의 성과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성과관리 제도개선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2009년 9월 40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09년 성과관리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분석평가실 내에 성과관리 전문가가 포함된 ‘성과관리 수준진단 TF’를 구성하고 서류 점검 및 현지 실태점검을 병행 실시하였다. 점검항목은 전년도와 유사하나, 성과관리 제도 운영 및 점검·환류 단계의 비중을 강화하였다. 2009년에는 각 부처의 성과관리 수준을 5단계로 진단하는 이외에도 전년도와 비교하는 수준 향상 정도 진단도 병행하였다. 구체적인 점검항목 및 배점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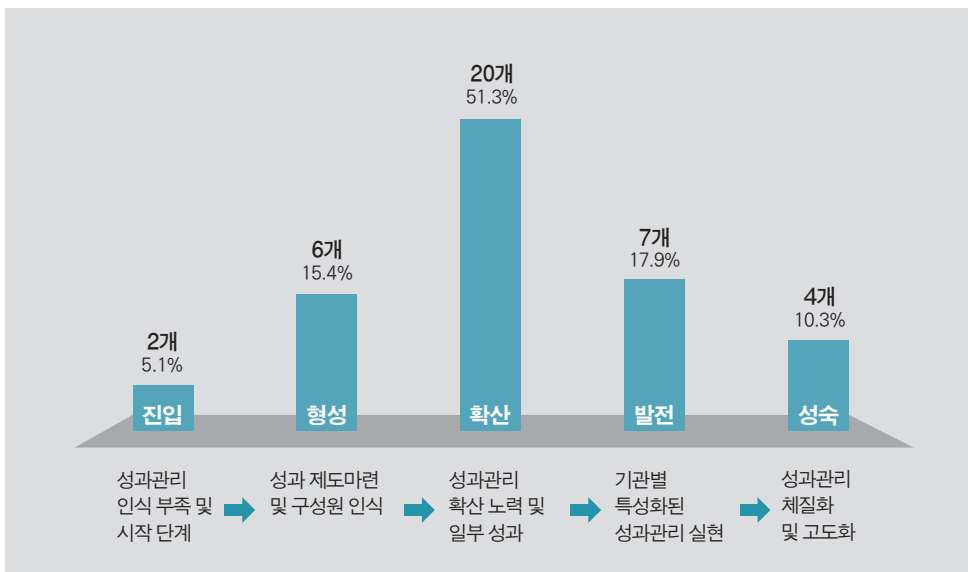
〈표 3-2-11〉 2009년 성과관리 운영실태 점검항목 및 배점

구분	점검 항목	착안 사항	배점
성과관리 제도 운영 (39)	성과관리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관리 내부규정 운영 등 내실화 노력 성과지표 개선 노력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개선 우수사례 	17
	성과관리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관리 체계 확산 노력 성과관리 교육 	10
	성과관리 리더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장의 성과관리 의지와 노력 성과관리 조직 및 지원현황 	12
성과관리계획 (23)	계획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무·비전, 전략목표 등 목표체계의 타당성 계획수립과정의 적절성 e-ipses 활용도 	15
	성과지표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목표별 성과지표의 타당성 성과목표별 성과지표의 적절성 	8

구분	점검 항목	착안 사항	배점
성과관리 점검 · 평가 및 환류 (25)	점검 · 평가의 충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관리계획 이행상황 점검의 충실성 성과향상 및 국민책임성 확보 	10
	환류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결과 환류의 적절성 평가결과 성과급 반영 여부 	15
종합 (13)	종합평정 및 우수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관리에 관한 정성적 종합평가 (향상도 포함) 부처 성과관리 우수사례 	13
합 계			100

점검결과, 중앙행정기관의 평균적인 성과관리 수준은 확산 단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집행 업무가 대부분인 청단위 기관의 성과관리 제도 운영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반면, 정책부서인 부단위 기관은 성과관리 수준이 대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성과관리에 대한 관심과 수용도 수준에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었다. 환경부·관세청 등의 경우 성과관리 문화가 성숙되어 체질화 단계에 이른 반면, 기획재정부·여성부 등 일부 부처의 경우 성과관리에 대한 인식 및 관심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12〉 2009년 각 부처 성과관리 수준 현황(39개 기관)



※ 우수기관(발전 및 성숙 단계) : 환경부, 법무부, 관세청, 특허청, 해양경찰청, 농촌진흥청, 통계청, 경찰청, 기상청, 문화재청, 산림청

2008년 수준진단 결과와 비교하면, 중앙부처의 평균적인 성과관리 수준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2년여에 걸쳐 성과창출을 위한 조직통합과 시스템 정비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성과관리 수준이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부단위 기관의 상승폭이 청단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점검항목별로 보면, 성과관리계획의 목표 체계성 등 계획의 적절성부문과 성과지표의 적절성 분야는 우수한 반면, 성과관리 교육 등 성과관리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부문과 점검·평가의 충실성 분야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점검결과는 12월초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되었고, 환경부·법무부 등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표창 수여(장·차관급) 및 포상금을 지급(장·차관급)하였다.

3. 2010년

성과관리시행계획과 성과계획을 분리했다. 성과관리 전략계획 수립 3년이 경과함에 따라 성과관리 전략계획을 수정·보완하였다.

대표적인 성과목표별 성과지표를 의무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관리과제별로 대응하는 예산사업을 명시하도록 하고, 사업별 설정현황을 첨부토록 했다.

R&D 성과지표를 관리과제별로 3~5개씩 설정하도록 하고, 재정사업 부문 관리과제의 성과지표로 1개 이상의 효율성 지표를 제시하도록 했다.

가. 전년 대비 주요 변경 사항

첫째, 성과관리시행계획과 성과계획서를 분리하게 됨(2009.5)에 따라 성과관리시행계획 작성시기를 변경하게 되었다. 즉 전년도 자체평가 결과, 당해 연도 연두업무계획 및 재정사업 성과계획서와 확정된 예산 등을 반영하여 당해 연도 2월말까지 최종계획을 수립토록 함으로써 잦은 계획 수정에 따른 업무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다.

둘째, 성과관리 전략계획 수립 3년이 경과함에 따라 그간의 국정목표, 국가재정운용계획,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다른 법령에 의한 '중·장기 계획'의 변경 등을 반영하여 성과관리 전략계획을 수정·보완토록 하였다.

셋째, 국민에 대한 책무성 확보 차원에서 관리과제별 성과지표와 구별되는 기관전체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성과목표별 성과지표를 의무적으로 설정하도록 하였다.

넷째, 성과관리시행계획상 관리과제와 예산사업간 연계 강화를 위해 각 관리과제별로 대응하는 예산사업을 명시토록 하고, 예산사업별 관리과제 설정현황을 첨부토록 하여 예산사업의 누락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증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성과관리시행계획상 R&D 성과지표는 관리과제별로 3~5개씩 설정하도록 하여 R&D 성과평가지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여섯째, 사업의 효율성 분석을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정사업 부문 관리과제의 성과지표로 1개 이상의 효율성 지표를 제시하도록 하였다.

나. 성과관리계획 수립

2010년부터는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성과계획서를 분리하여 작성하고 성과관리계획 작성시 성과계획을 활용토록 하게 됨에 따라, 성과관리계획 수립시점은 전년보다 늦어진 2010년 1월에 부처에 통보되었다.

2010년의 경우에는 성과계획서와 분리하여 작성하는 첫해이니만큼 각 부처에서 제출한 성과관리계획(안)에 대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2010년 연도업무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목표체계 등 계획전반의 논리적 연계성, 구성의 타당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2010년 계획수립상 특이사항은 2010년 자체평가지부터 과·팀 단위별로 1개 이상의 과제를 자체평가토록 하였으나, 부처별로 정책과제가 누락된 과·팀이 있어 평가결과가 개인 성과로 연계되기에 어려움을 고려하여 기존 성과관리계획에 대한 보완을 추가로 실시한 점이다.

즉 각 부처의 2010년 성과관리시행계획에 과·팀(TF 포함) 단위별로 1개 이상의 과제가 포함되도록 추가 보완토록 하였으며, 이 때 대상 과·팀 단위의 기준은 성과계약제 적용 여부로 판단하도록 하였다.

〈표3-2-13〉 2010년 성과관리계획 수립 관련 주요일정

- 성과관리계획 작성 지침 각 부처 시달 : 2010.1월
- 각 부처별 성과관리계획(안) 제출 : 2010.1.31
- 각 부처 계획(안)에 대한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사전 검토 : 2010.2월
-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부처별 계획 수정·보완 및 확정 : 2010.3~4월
- 성과관리계획 보완 지침 시달 : 2010.5월
- 부처별 성과관리계획 보완 제출 : 2010.5월

성과관리계획 수립 대상기관은 전년도와 같은 40개 중앙행정기관으로 각 부처에서 수립한 성과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부처에서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성과관리계획(안)을 수정·보완하여 최종 계획을 확정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0개 기관에서 200개의 전략목표, 669개의 성과목표, 3,622개의 관리과제, 6,798개의 관리과제 성과지표를 확정하였다.

기관 평균 전략목표 5.0개, 성과목표 16.7개, 관리과제 90.5개, 관리과제 성과지표 169.9개를 설정하였다.

〈표3-2-14〉 2010년 성과관리계획 수립 현황

(단위:개, 괄호안:%)

전략 목표	성과 목표	부 문	관 리 과 제 수	성 과 지 표								
				합 계	지 표 성 격					정 량 지 표	정 성 지 표	
					투 입	과 정	산 출	결 과	효 율 성			
200	669	주요정책	1,753	2,984	69	179	1,689	1,049	15	2,279	705	
		재 정 성 과	일반재정	1,457	2,709	141	199	910	1,340	117	2,162	547
			R&D	194	679	12	17	254	351	50	635	44
			정보화	218	426	5	20	161	225	16	314	112
		합 계	3,622	6,798 (100)	227 (3.3)	415 (6.1)	3,014 (44.3)	2,965 (43.6)	198 (2.9)	5,390 (79.3)	1,408	

2009년 계획과 비교하면, 전략목표·성과목표·관리과제 수준은 유사하며, 관리과제별 성과지표는 다소 증가하였다.

〈표 3-2-15〉 2009·2010년 연도별 계획 현황 비교

(단위:개)

구분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관리과제)	
	전체	기관평균	전체	기관평균	전체	기관평균	전체	기관평균
2010년	200	5.0	669	16.7	3,622	90.5	6,798	169.9
2009년	198	5.0	711	17.8	3,619	90.5	6,316	157.9

다. 성과관리시행계획 이행상황 자체점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6조 제4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에서는 2010년 자체평가 대상 과제에 대해 관리과제별 계획대비 추진사항, 목표달성도 등 ‘2010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상반기 이행상황 점검을 7월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독려하였다. 점검방법은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라. 성과관리 운영실태 점검

총 40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10년 성과관리 운영실태 및 계획수립·환류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였다. 이를 위해 성과관리 전문가 등을 포함한 성과관리 진단 TF를 구성하여 서면검토 및 현지실태 조사를 병행 실시하였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4개 분야 10개 항목을 중심으로 성과관리 수준을 점검하였으며, 정성적 측면에서의 종합평가를 위해 각 부처 자체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설문평가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점검항목 및 배점은 아래와 같다.

〈표 3-2-16〉 2010년 성과관리 실태점검 점검항목 및 배점

구분	점검 항목	점검 지표	배점
성과관리 역량 (27)	성과관리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관리 체계 확산 노력(토론회, 홍보 등) 성과관리 관련 교육 	7
	성과관리 제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관리 내부규정 운영 등 내실화 노력 성과지표 개선 노력 부처 성과관리 우수사례 	12
	성과관리 리더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장의 성과관리 의지와 노력 성과관리 조직 및 지원현황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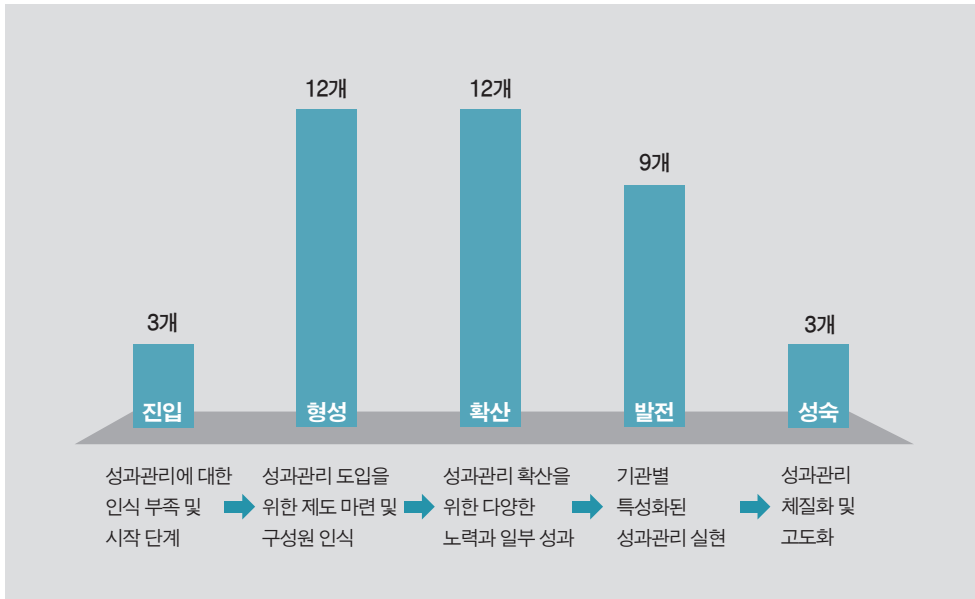
구분	점검 항목	점검 지표	배점
성과관리 계획 (40)	계획의 체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무·비전, 전략목표 등 목표체계 타당성 관리과제 선정의 적절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지표의 정책대표성 및 목표치 적합성 기관대표지표의 설정 및 관리 노력 성과지표의 적절성 확보 노력 	15
	계획수립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 구성항목의 충실성 계획수립과정의 적절성 확보 노력 	13
점검평가 및 환류 (25)	점검·평가의 충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관리계획 이행상황 점검의 충실성 개선방안 마련 등 후속조치 이행 	10
	환류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결과 환류의 적절성 평가결과의 개인성과급 반영 각종 성과관리제도간 연계 노력 	15
설문 및 우수사례 (8)	전문가설문	성과관리에 관한 정성적 종합평가: 설문	4
	성과우수사례	성과향상 및 대국민책임성 확보 우수 사례	4
합 계			100

점검결과, 대부분 부처의 성과관리 수준은 형성 또는 확산단계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집행 업무와 소속기관이 많은 청단위 기관에서 성과관리가 상대적으로 우수하고, 정책부서인 부단위 기관의 성과관리 수준은 대체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각 기관별 성과관리에 대한 관심과 수용도 수준의 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특허청·관세청 등의 경우 성과관리 문화가 성숙되어 체질화 단계에 있었고,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법제처 등 일부 부처의 경우 정책과제 업무 특성상 성과관리 적용의 어려움 및 인식 부족 등으로 성과관리 초기단계인 진입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점검항목별로는 성과관리 관련 제도 마련 등 역량 강화부문과 성과평가결과를 통한 성과급 반영 등 환류부분은 양호한 반면, 성과관리계획의 체계성, 성과지표 적절성 분야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직까지 정부 내 성과관리 정착이 일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 및 각 기관별 노력 강화가 필요하고, 특히 성과관리계획수립 및 성과지표 적절성 확보 노력이 필수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3-2-17〉 2010년 각 부처 성과관리 수준 현황



2009년 수준진단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성과관리 문화, 성과관리 리더십, 점검평가의 충실성, 환류의 적절성 분야는 성과관리 인식 확산 및 각 기관의 성과관리 노력 강화에 따라 매년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과관리계획 분야의 경우 계획의 구체성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 분야의 향상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고, 다른 항목에 비해서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성과관리계획 자체의 수준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밖에도 여러 부처가 관련된 정책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 기관별 대표 성과지표 개발 및 관리, 지속적인 성과지표 개선 노력 강화, 유사한 성과관리제도간 연계·통합 강화, 특히 부서장 및 기관장의 성과관리 향상을 위한 관심 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결과는 2010년도 12월 17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되었으며, 우수기관에 대한 별도의 표창 및 포상은 실시되지 않았다.

4. 2011년

제시된 과제들을 기관별 성과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관리과제부문을 통합했다.

관리과제 추진계획 작성 시 수혜자 및 이해관계 집단, 기대 효과,

예산사업 내역을 제시하도록 했다. 관리과제별 성과와 구분되는 통합적 성과의 파악을 위해

대표성이 있는 주요 성과지표를 활용하도록 했다.

가. 전년 대비 주요 변경 사항

첫째, 100대 국정과제, 부처업무계획, 대통령 지시사항 등에서 제시된 과제들을 기관별 성과관리계획에 반드시 반영토록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성과관리계획의 성과목표별 관리과제와 100대 국정과제, 부처업무계획, 대통령 지시사항 간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제시토록 하였다.

둘째, 주요정책과 재정사업(일반재정·R&D·정보화)으로 구분되어 있던 관리과제 부문을 통합하여, 성과목표별 관리과제는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정책·사업을 망라하여 작성토록 하였다. 즉, 관리과제는 예산·비예산 정책·사업을 포괄하며, 예산 수반 정책·사업은 관련 예산 내역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관리과제는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성과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토록 하였다.

셋째,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작성 시 정책·사업의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기대효과, 관련 예산사업 내역을 제시토록 하였다.

넷째, 성과목표별 성과지표의 대표성을 제고하고 활용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성과목표별로 제시하는 성과지표의 경우 관리과제별 성과와 구분되는 통합적 성과의 파악을 위해 대표성을 제고토록 하였으며, 기관별 '정책기조와 정책성과' 분석 시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중 대표성이 있는 주요 성과지표를 활용토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했던 관리과제별 성과지표의 설정 여부를 부처 업무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였다.

나. 성과관리계획 수립

〈표 3-2-18〉 2011년 성과관리계획 수립 관련 주요일정

- 성과관리계획 수립 지침 각 부처 시달 : 2011년 1월
- 각 부처별 성과관리 시행계획(안) 제출 : 2011년 2월
- 각 부처 성과관리 시행계획(안)에 대한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사전검토 : 2011년 2월
-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심의·의결(2011년 4월19일)
- 성과관리 시행계획 확정 : 2011년 4월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대상 기관은 전년과 동일한 40개 기관이었다. 각 부처에서 수립한 성과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사전 검토를 하고, 부처에서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성과관리계획(안)을 수정·보완한 후 최종적으로 계획을 확정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0개 기관에서 197개의 전략목표, 645개의 성과목표, 2,161개의 관리과제, 4,554개의 성과지표를 제시하였다.

기관 평균 전략목표 5개, 성과목표 16개, 관리과제 54개, 관리과제 성과지표 92.6개를 설정하였다. 성과지표 유형별로는 산출·결과지표가 4,124개(90.8%), 정량지표는 3,325개(73.2%)였다.

〈표 3-2-19〉 2011년 성과관리계획 수립 현황

(단위:개, 괄호안:%)

전략 목표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성과지표						
			소계	지표성격				정량 지표	정성 지표
				투입	과정	산출	결과		
197	성과 목표	645	840	7 (0.8)	29 (3.5)	264 (31.4)	540 (64.3)	601 (71.5)	239 (28.5)
	관리 과제	2,161	3,704	65 (1.8)	311 (8.4)	1,663 (44.9)	1,657 (44.7)	2,724 (73.5)	980 (26.5)

2010년 계획과 비교하면, 전략목표는 유사한 수준이나, 성과목표는 상당폭 감소하였고 관리과제와 관리과제별 성과지표는 대폭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1년부터 주요정책과 재정사업(일반재정·R&D·정보화)을 통합하여 관리과제를 구성한 것이 주원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2-20〉 2010·2011년 연도별 계획 현황 비교

(단위:개)

구분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관리과제)	
	전체	기관평균	전체	기관평균	전체	기관평균	전체	기관평균
2011년	197	4.9	645	16.1	2,161	54.0	3,704	92.6
2010년	196	4.9	713	17.8	1,981	49.5	2,967	74.2

다. 성과관리시행계획 이행상황 자체점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6조제4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에서는 2011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상 관리과제에 대해 관리과제별 계획대비 추진사항, 개선·보완 필요사항 등 '2011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상반기 이행상황 점검을 7월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독려하였다. 점검방법은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라. 성과관리 운영실태 점검

2010년까지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성과관리 수준진단을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과 별개로 시행하여 왔으나, 점검대상의 유사성으로 인해 중복점검으로 인한 기관 업무부담이 과중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2011년 부터는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과 통합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점검시기도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시기에 맞춰, 익년도 초에 실시되었다. 점검대상은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대상기관인 40개 중앙행정기관으로 하고 서면 점검과 현지점검을 병행하여 3개 항목 10개 지표를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하였다.

〈표 3-2-21〉 2011년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실태점검 점검항목 및 지표

점검항목	점검지표(10)	배점
계획의 적절성 (25)	• 성과관리 계획의 체계성	5
	•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계획 수립의 적절성	5
	• 지표 구성의 적절성	15

평가항목	평가지표(10)	배점
운영의 내실성 (30)	•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의 충실성	10
	• 평가결과 분석의 적절성	10
	• 기관역량 제고 노력도	5
	• 평가관리시스템(e-IPSES) 활용도	5
자체평가결과의 객관성 및 환류의 적절성 (45)	• 평가결과의 신뢰성 (Sample 조사)	20
	• 평가결과의 관대화	10
	• 평가결과 환류의 적절성	15
합 계		100

점검결과, 각 부처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운영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집행업무와 지방소속기관이 많은 청단위 기관이 상대적으로 양호(65.6점)한 반면, 정책 부서인 부단위 기관은 청단위에 비해 다소 소극적으로 운영(59.0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수기관의 경우 '기관장 관심도' 점수가 우수하여 기관장의 관심과 지원이 성과관리·자체평가 운영 수준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법무부·병무청·농진청 등 10개 기관은 평가항목 전반에서 균형 있게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특히 환경부·농진청 등은 매년 운영수준이 우수하여 성과관리가 정착단계에 이르렀고, 법무부·보건복지부 등은 운영 수준이 매년 향상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반면, 일부 기관은 기관장 관심 부족·조직신설에 따른 체제 미정비 등으로 인해 운영수준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22〉 2011년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실태점검 결과 우수 기관

※ 직제순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매우우수(3)	법무부	병무청, 농촌진흥청
우수(7)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관세청, 특허청, 해양경찰청

점검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되었으며,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표창 수여(장·차관급 상위 각 4개 기관) 및 포상금이 지급(장관급 5개, 차관급 5개)되었다.

5. 2012년

'성과관리 통합 운영지침'을 만들어 매년 초에 시달하도록 하였다.

성과관리계획 수립 대상기관이 42개로 늘어났다. 또, 재정사업 관련 성과지표를 추가했다.

통합적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도록 했고,

성과관리 운영실태 확인·점검과 자체평가 운영실태 확인·점검을 통합하였다.

가. 전년 대비 주요 변경 사항

첫째, 성과관리 과정별 지침(계획)을 통합하여 기존에 계획 수립·수정, 이행상황 자체점검, 운영실태 확인·점검 등 성과관리 과정별로 시기에 따라 각각 작성·시달되던 지침(계획)¹⁾을 '성과관리 운영지침'으로 통합하여 매년 초에 시달하도록 하고, 필요시 과정별 세부 시행계획을 별도 시행토록 하였다.

둘째, 2011년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성과관리계획 수립대상기관이 40개 기관에서 42개 기관으로 늘어났다.

셋째, 2011년과 마찬가지로 관리과제는 예산·비예산 정책(사업)을 포괄하여 작성하되, 성과계획서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예산사업' 항목을 '관련재정사업' 항목으로 변경하고, 성과관리시행계획상 관리과제와 연관성이 있는 성과계획서상 재정사업(관리과제)을 모두 포함토록 하였다. 또한, 성과계획서상 재정사업과 관련된 성과지표를 성과관리시행계획에서 공통지표로 사용토록 함으로써 재정사업 자율평가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평가 중복성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표 3-2-23〉 2011·2012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상 관리과제 비교

2011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상 관리과제	2012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상 관리과제
구분없이 통합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내용, 추진계획 • 관련예산사업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구분없이 통합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내용, 추진계획 • 관련 재정사업 (1-1-일반재정①)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재정사업과 관련된 성과지표도 추가

1) 성과관리계획 수립 지침(1월), 상반기 이행상황 자체점검 지침(6월), 성과관리계획 수정 지침(9월), 성과관리 운영실태 확인·점검계획(익년도 1월)

넷째, 성과목표별로 제시하는 성과지표는 하위 관리과제 성과와 구분되면서 관리과제 전체를 포괄하고 통합적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대표성 있는 것으로 설정토록 하고, 기관별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정책기조와 정책성과' 분석 시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중 대표성이 있는 주요 성과지표를 활용토록 하였다.

다섯째,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정은 기관의 업무부담을 감안하여 9월로 앞당겨 조기에 완료토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성과관리 운영실태 확인·점검(2010년 성과관리 수준진단)과 자체평가 운영실태 확인·점검을 통합하여 실시함으로써, 별도 실시에 따른 기관 부담을 완화하고 실태점검의 효과성을 제고토록 하였다.

나. 성과관리계획 수립

2012년에는 성과관리계획 수립지침을 '성과관리 운영지침'으로 통합하여 2012년 1월에 부처에 시달하였다.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대상기관은 전년보다 2개가 늘어난(국가과학기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42개 중앙행정기관으로 예년과 마찬가지로 검찰청은 법무부에 포함하여 작성하였다.

〈표 3-2-24〉 2012년 성과관리계획 수립 관련 주요일정

- 성과관리계획 수립 지침 시달 : 2012년 1월
- 각 부처별 성과관리 시행계획(안) 제출 : 2012년 2월
- 성과관리 시행계획(안) 사전검토 : 2012년 2월 27일 ~3월 16일
※ 정평위원, 평가실내 소관부처 국장·과장·담당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분과별 협의·조정 : 2012년 3월 12일~16일
- 국무총리실 사전검토 결과를 반영한 2012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각 부처 성과관리계획 보완 및 확정·제출 : 2012년 4월

42개 기관에서 전략목표 200개, 성과목표 630개, 관리과제 2,106개를 확정하였다. 기관 평균 전략목표 4.8개, 성과목표 15개, 관리과제 50.1개, 성과지표 110.3개를 설정하였다. 성과지표 유형별로는 산출·결과 지표가 4,173개(90.1%), 정량지표는 3,683개(79.5%)였다.

〈표 3-2-25〉 2012년 성과관리계획 총괄 현황

(단위: 개, 괄호안: %)

전략 목표	구 분		성과지표						
			소계	지표성격				정량 지표	정성 지표
				투입	과정	산출	결과		
200	성과 목표	630	929	17 (1.8)	71 (7.6)	355 (38.2)	486 (52.3)	735 (79.1)	194 (20.9)
	관리 과제	2,106	3,702	54 (1.5)	316 (8.5)	1,779 (48.1)	1,553 (42.0)	2,948 (79.6)	754 (20.4)

2011년 계획대비 전략목표는 유사한 수준이나, 성과목표·관리과제·관리과제별 성과지표는 다소 감소하였다.

〈표 3-2-26〉 2011·2012연도별 계획 현황 비교

(단위: 개)

구 분	부처수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관리과제)	
		전 체	기관평균	전 체	기관평균	전 체	기관평균	전 체	기관평균
2012년	42	200	4.8	630	15.0	2,106	50.1	3,702	88.1
2011년	40	197	4.9	645	16.1	2,161	54.0	3,704	92.6

다. 성과관리시행계획 이행상황 자체점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6조제4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에서는 2012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상 관리과제에 대해 관리과제별 계획대비 추진사항, 개선·보완 필요사항등 ‘2012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상반기 이행상황 점검을 7월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독려하였다. 점검방법은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제4장

향후 발전방향

더욱 심층적인 분석과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통합적·효율적인 국정관리를 지원하는 등,
정부업무 평가의 발전을 지향해야 한다.
성과평가와 성과관리를 연계하여
단순한 평가결과만 산출하는 것이 아닌 성과의 원인분석 및
업무개선 방안 등을 도출해야 한다.
또한 제도를 보완하여 성과관리 환류체계를 확립시켜야 한다.

제1절	정부업무 평가 발전방향	
	1. 중앙행정기관 평가	310
	2. 지방자치단체 평가	311
	3. 공공기관 평가	313
제2절	정부업무 성과관리 발전방향	316

제4장 향후 발전방향

제1절 정부업무 평가 발전방향

1. 중앙행정기관 평가

- 통합적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종합적 평가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특정평가의 중복 및 평가 필요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 개별부처 차원의 평가를 통합하고 간소화해야 한다.
- 평가의 사전 예방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 자체평가 조직의 내실을 단단히 하여 자율적 평가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1) 범정부적 국정과제에 대한 심층 분석·평가 시스템 구축

단일 정책·사업에 연관되는 다수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통합적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종합적 평가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특정평가·연두업무계획과제 점검·국정과제 점검 등 중앙행정기관 주요 업무에 대한 점검·평가제도를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통합할 필요가 있다.

2) 특정평가 제도 개선으로 통합적·효율적 국정관리 지원

특정평가 부분 간 중복 및 평가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특정평가부문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국무총리의 통합적·효율적 국정관리 지원을 뒷받침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정평가 결과의 부처 환류 및 활용도를 제고하여 '집행-평가-환류' 등 정책평가 기능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

3) 개별평가 통합·연계를 통한 통합적 정부업무평가제도 확립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근거하지 않은 평가를 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3조 제1항)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평가 신설 시 사전검토 절차 마련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요정책에 대한 개별부처 차원의 평가를 통하하고 간소화 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 중 정부업무평가에 통합되어 있지 않은 개별평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4) 정책현안 분석 활성화로 시의성 있는 평가정보 제공

잠재적·구조적 정책현안을 선정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현안 분석을 활성화하여 평가의 사전예방적 기능할 강화할 필요가 있다.

5) 자체평가 운영 내실화를 통하여 효율성·책임성 제고

자체평가위원회 등 자체평가 조직 운영을 내실화하여 자율적 평가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자체평가 부분(주요정책, 재정사업, 행정관리역량) 및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절차, 평가결과 활용 등을 보완하여 자체평가제도 효율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자체평가 지표개발 및 활용, 자체평가 결과의 실효성 및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2. 지방자치단체 평가

- 평가일몰제 적용 등, 평가지표 및 평가대상을 최소화해야 한다.
- 수요자 중심의 평가 확대한다.
- 기간을 명확히 하여 평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기능을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
- ‘열린 합동평가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 평가업무의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가. 합동평가

1) 평가지표 및 평가대상을 최소화

목적 달성에 있었거나 관행적 평가시책은 평가일몰제를 적용하고, 유사·중복지표는 통합하여 현재의 평가세부지표를 250개 내외까지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고, 평가의 신뢰성·객관성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용성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만, 신규 행정수요 등 긴급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해야 할 사업에 대한 시책은 새로 추가하여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2) 수요자 중심의 평가를 확대

행정 수혜 주민을 대상으로 한 고객체감도 조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를 측정할 수 있는 정성평가를 확대하고, 재정자립도, 보정지수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야 한다.

3) 평가순기를 명확히 구분·확정

평가지표 개발 및 실시기간이 겹치지 않도록 기간을 명확히 구분·확정하여 평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노력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4) 평가에 대한 환류기능 강화

평가지표별 우수사례집 및 평가결과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우수사례 공유 확산을 위한 '컨퍼런스' 등의 개최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2011년 이후 실시되고 있는 '맞춤형 행정 컨설팅'을 보다 발전시켜 평가결과에 대한 정밀진단과 함께 처방 제시 등의 평가 환류기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5) 중앙행정기관 합동평가 협의회 등 활성화

현재 운영 중인 '중앙행정기관 합동평가 협의회',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협의회' 등을 적극 활용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생생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현장과 소통하는 '열린 합동평가 제도'로 고도화하여야 한다.

또한, 평가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연구 협의체 및 조직이 필요하다. 평가범위·방법 등에 대하여 법적·제도적으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발전방안을 연구할 수 있는 ‘평가제도 연구학회’, ‘평가제도 연구포럼’ 등의 전문연구협의체가 바로 그것이다.

6) 평가업무 전문가 양성

현재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평가관련 전문가 확보가 어렵고, 평가업무 담당자들의 잦은 인사교체 등으로 인하여 평가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평가관련 전문교육과정 개설, 평가수당 신설 등 장·단기적인 평가업무 전문가 양성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개별평가

각 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산발적으로 실시되는 개별 평가에 대해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실태를 분석하고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확인점검 및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대상 개별평가에 대해 평가시기, 평가방법, 평가 항목 및 지표, 평가결과 환류, 평가 근거,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미포함 사유 등을 분석할 계획이며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와 중복여부, 합동 평가와 연계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의한 지방자치단체 개별 평가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한 국무총리실의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평가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3. 공공기관 평가

- **평가단 선임 및 운영과정의 객관성·공정성이 제고한다. 또한 효율적인 구성과 운영을 해야 할 것이다. 평가위원의 선정기준도 공정하게 만들어야 한다.**
- **연구기관의 평가 부담을 경감시키고, 중복적인 평가를 통합해야 한다.**
- **평가완료 후, 평가결과를 바로 제출하여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하도록 한다. 또한 평가결과 환류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가. 평가단 구성 및 운영

1) 평가단 선임 및 운영과정의 객관성·공정성 제고

최소한 평가 당해 연도에 대하여, 연구기관(피평가기관) 연구보고서 등 외부참여자에 대한 점검을 통해, 연구보고서 참여자가 평가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2) 평가단의 효율적인 구성·운영 강화

현행과 같은 형식적인 재위촉률 유지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측면에서 30% 수준의 유지를 통해 평가업무의 일관성·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평가위원 선정기준 확립 및 평가단 관리 강화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피평가기관 의견수렴 등을 통한 평가위원 사후평가제 실시 등 평가위원 풀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 평가과정 및 평가절차

1) 연구기관의 평가부담 경감

창의적인 정책대안과 중장기적 비전제시, 정책지원 등 연구기관 본연의 역할과 고유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현행 평가종류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통해 개선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

2) 평가내용의 중복성 해소를 통한 평가의 효율성 제고

평가내용의 중복성 등이 지적되는 국가정책 지원 항목에 대하여, 연구기관 평가와 기관장 리더십 평가 부분의 통합 등 검토가 요구된다.

다.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평가기준 및 평가내용 등의 단순화를 위해 피평가기관 부담경감 및 효율성 제고차원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핵심내용 중심으로 평가내용 및 제출자료 등을 간소화한다.

라. 평가결과 사후관리

1) 평가계획 및 평가결과의 조기 제출

평가결과의 경우, 관련 규정(「정부출연법」 및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취지에 부합되도록 평가를 완료한 후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 차년도 평가계획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할 수 있도록 한다.

2) 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한 연구성과 평가절차의 합리성 강화

‘연구보고서 우수성 평가’결과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평가대상 보고서별 평가결과 환류를 합리적으로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제2절 정부업무 성과관리 발전방향

국무총리실을 최상위로 하여 관련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가능하도록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미래의 성과 향상을 촉진할 수 있는 관리제도로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성과관리에 제도적 기반을 보완해 성과관리 환류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1) 통합적 성과관리 강화

성과평가와 성과관리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성과평가과정에서 단순히 평가결과만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에 대한 원인분석 및 업무개선 방안 등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의 정부업무 성과관리제도는 총괄기관 및 평가의 초점 등이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 차원에서의 평가·관리가 어려운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바, 국무총리실이 최상위 정부업무 평가기관으로서 통합시스템을 제시하고 관련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운영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아울러 국정과제, 다부처사업 등과 같은 범부처 정책과제의 경우 현행 성과관리 체계상에서는 국정과제를 부처 단위로 성과관리시행계획에 포함하고 있어, 국정과제 전반에 대한 정부차원의 포괄적 성과관리계획이 부재한 실정이므로 범정부 차원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2) 미래지향적 성과관리 기능 강화

성과관리가 성과평가에 치우쳐 있어 전년도 실적에 따른 보상·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성과평가 또한 업무개선을 위한 인과관계 분석 등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앞으로의 정부업무 성과관리는 미래의 성과 향상을 촉진할 수 있는 관리제도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과정보의 활용에 있어서도 과거의 성과에 따른 처벌·보상 위주에서 벗어나 조직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참고자료로 삼는 미래지향적인 관리체제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3) 성과관리 환류체계 확립

현행 성과관리체계상 성과 평가 결과를 성과관리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평가결과에 대한 적극적인 환류를 통한 정부 사업성과의 향상 도모라는 취지에 부합되지 않은 점이 나타나고 있는 바, 제도적 기반 보완을 통한 성과관리 환류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특별기고 부록

특별기고

정부업무평가제도 운영성과 허만형(중앙대 교수)	320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성과와 향후 과제 정윤수(명지대 교수, 제4기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장)	330

부록

1-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340
1-2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354
2-1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362
2-2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개최 일지(2008년~2012년)	364
3 전자통합평가시스템 구축·활용	388

특별기고

정부업무평가제도 운영성과

허만형(중앙대 교수)

1. 서론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이론적 뿌리는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MPN)과 자체평가적 조직운영 철학(Wildavsky, 1972)에 이어져 있다. 신공공관리론은 공공부문 행정관리도 민간부문에서처럼 성과 및 고객만족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Behn, 2003)하며, 결과지향의 정부개혁을 주문해 왔다(공병천, 2008). 자체평가적 조직철학은 공공부문의 조직도 스스로 성과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그 역량이 강화된다는 입장에서 있다.

정부업무평가제도는 정부 부처가 수행하는 정부업무를 성과에 입각하여 평가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되어 공공분야에 미친 영향이 크다. 중앙정부의 부처뿐만 아니라,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서도 자체평가 방식의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정부업무평가는 법제도로 그 틀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국정운영 철학을 달리하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실시되고 있다.

정부업무평가제도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서 명시되어 있듯이 제도 도입 당시부터 세 가지 지향점을 가지고 있었다. 정부업무평가의 틀 아래에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개별 평가를 통합함으로써 부처의 평가 부담을 줄이며, 자체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부처의 평가역량을 제고하고, 평가와 성과관리가 연계되도록 운영하겠다는 지향점이었다. 이 평가제도의 목적은 이 세 가지 지향점을 기반으로 하여 국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운영성과를 자체평가, 특정평가, 그리고 성과관리의 영역으로 나누어 위에서 제시된 세 가지 지향점과 목적 달성 수준을 중심으로 분석한 후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운영성과 분석방법으로는 국무총리실 정책분석평가실 담당관의 운영성과에 대한 의견을 기초로 하는 담론분석, 기존 연구 결과로서 설문 분석 결과의 종합화, 그리고 정부업무평가제도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내용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2. 운영성과 분석방법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운영성과 분석은 <표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세 가지 방법을 활용하였다. 먼저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운영기관이면서 평가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총리실의 평가담당관의 제도운영 성과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여 분석함으로써 어떤 영역에서 어느 정도의 운영성과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즉 정책분석평가실 담당관이 생각하는 제도운영 성과를 취합한 후 그 답변내용 포함되어 있는 운영성과 관련 텍스트의 의미를 파악한 후 텍스트 상호간 관계중심의 관점에서 분석(intertextual analysis)하는 담론분석(Fairclough, 1995)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리하였다.

둘째, 담론분석에서 찾아낸 운영성과 항목을 배열한 후 각 항목을 대상으로 설문분석을 실시한 기존 연구가 있는지를 찾아낸 후 그 결과를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운영성과를 다시 한번 정리하였다. 이 글에 활용된 기존 연구논문은 특정평가에 관한 실증연구 논문(강영철, 2010), 자체평가에 관한 연구논문(송건섭, 2010), 그리고 정부업무평가 제도운영에 관한 논문(허만형·라휘문·차용진, 2010) 등 세 편이었다. 이 방식의 분석을 통하여 해당 성과항목에서의 목표달성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할 수 있었다.

끝으로 정부업무평가의 성과는 정부조직과 그 조직에서 근무하는 인력의 성과관리에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에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하는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며, 이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외부의 시각에서 바라본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분석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언론 보도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보도기사 수집은 네이버(Naver)와 다음(Daum)에서 실시하였으며 수집기간은 2011년 6월부터 2012년 5월까지 1년간으로 하였다.

〈표 1〉 운영성과 분석방법

분석	분석방법	자료수집
운영성과 내용분석	단순 담론분석	국무총리실 정책분석평가실담당관 의견수집
운영성과 설문분석	설문조사 결과 재구성	운영성과에 대한 설문조사
운영성과 관련 언론보도 분석	언론 보도자료 내용분석	11년6월~ 12년5월 보도내용

3. 운영성과 분석 결과

1) 운영성과에 관한 내용분석

운영성과에 관한 의견조사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담론분석 결과 5개 영역에서 운영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의 역량, 정책과제관리, 평가제도, 성과관리, 그리고 개인의 역량제고와 같은 영역이었다. 이 5개 영역 중에서 대부분의 성과영역이 부처의 역량과 관계되는 항목으로 연결되는 성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운영으로 정부 부처의 역량 제고가 가장 큰 성과였음을 시사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자체 평가는 조직구성원으로서 개인의 역량이 강화되는 방향으로의 그 성과가 나타난다는 인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의 역량 제고 다음으로는 평가제도 발전, 정책과제관리 및 성과관리 발전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업무평가제도는 그 운영성과로서 평가제도의 발전에 기여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정책과제관리 및 성과관리의 발전에도 기여하여 왔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업무평가제도 운영성과로서 조직구성원 개인의 역량 제고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정도로 관심권에서 벗어나 있었다.

중복되는 영역을 파악함으로써 운영성과 5개 영역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처의 역량과 관계되는 항목의 중복성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부처의 역량은 정책과제관리, 평가제도 및 성과관리에 관련된 대부분의 항목과 연결되어 있었다. 따라서 부처의 역량은 평가제도, 정책과제관리 역량 및 성과관리의 발전을 통하여 강화되어 왔으며, 이것이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최대의 운영성과라고 말할 수 있는 결과였다.

정부업무평가제도는 평가제도 발전에도 기여해왔다.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양대 축을 이루는 자체평가와 특정평가 모두 제 위치에서 평가제도 발전의 축을 담당하고 있었다. 담론 분석 결과 정부업무평가제도는 통합실시로 부처 평가부담 완화시켰으며, 자체평가로 부처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과관리의 정착에도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정책현안평가 강화로 정책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를 하였으며,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정책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기여한 것 또한 운영성과 중 하나로 제시할 수 있었다. 끝으로 특정평가를 통하여 국정운영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하고, 부처의 업무추진력 및 성과제고에 기여한 점도 운영성과의 하나로 제시할 수 있었다.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운영성과는 또한 성과관리제도의 발전에서도 찾을 수 있었다. 담론 분석결과 정부업무평가제도는 성과목표의 명확화, 정부 및 부처의 성과제고의 유도, 그리고 성과관리 정착에 기여한 점이 그 운영성과로 파악되었다. 이 항목 모두 성과관리 및 정부부처의 역량과 연결되어 있어서 정부업무평가는 평가결과를 도출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과관리에 연계된다는 점 또한 진지하게 인식되고 있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정부업무평가제도가 성과관리와의 연계장치가 한 때 우려(허만형, 2006)되기도 했으나 제도운영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는 자연스럽게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운영성과라고 말할 수 있다.

정부업무평가제도는 정책과제관리의 활성화라는 운영성과도 있었으며, 구체적으로는 정책과제 발굴 및 정책 사각지대의 적극 해소, 대국민 소통 제고 및 갈등 사항 사전 조정, 사전 문제해결 기능 강화 및 정책 사후관리 강화에 기여한 점이 운영성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개인역량 강화 영역에서는 조직 구성원 개개인에게 자기성찰의 기회를 제공한 점을 그 운영성과로 제시할 수 있었지만 다른 영역에 비해 그 운영성과가 크게 인식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운영성과 영역과 항목

운영성과 영역	성과항목	중복되는 영역
부처역량	성과목표 명확화	성과관리
	부처의 성과제고	성과관리
	성과관리제도 정착	성과관리
	업무역량의 집중도 향상	-
	정책과제 발굴	정책과제관리
	갈등사항 사전 조정	정책과제관리
	정책의 사전문제해결 기능 강화	정책과제관리
	조치 및 개선사항에 관한 사후관리 강화	정책과제관리
	대국민소통 제고	정책과제관리
	국정운영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	평가제도
	평가부담 경감	평가제도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	평가제도
	업무추진력 제고	평가제도
	부처의 성과제고	평가제도
평가제도	통합실시로 부처 평가부담 완화	부처역량
	자체평가로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	부처역량
	자체평가로 성과관리 정착	성과관리
	정책현안평가 강화로 정책 사각지대 해소	정책과제관리
	정책현안평가로 사전문제해결 기능 강화	정책과제관리/부처역량
	특정평가로 국정운영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	부처역량
	특정평가로 부처의 업무추진력	부처역량
	특정평가로 부처의 성과제고	부처역량/성과관리
정책과제관리	정책과제 발굴	부처역량
	정책 사각지대의 적극 해소	평가제도
	정책현안평가협의회 활성화	-
	대국민 소통 제고	부처역량
	갈등사항 사전 조정	부처역량
	분석 활성화로 정책의 사전문제해결 기능 강화	부처역량
	조치 및 개선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부처역량
성과관리	성과목표의 명확화	부처역량
	성과관리제도의 정착에 기여	부처역량/평가제도
	정부 부처의 성과 제고 유도	부처역량/평가제도
개인의 역량	자기성찰 기회 제공	-

2) 설문분석 결과에 대한 재구성

정부업무평가제도 도입성과 분석 결과(허만형·라휘문·차용진, 2010)를 <표 3>과 같이 재정리를 하였다. 설문조사에서 5점 척도로 그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제도도입 목적, 자체평가의 성과, 특정평가의 성과, 성과관리 연계 성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보면 대체로 긍정적이었지만 일부 문항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도 있었다. 제도도입의 목적이라는 관점에서 국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 제고에 기여하였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 국정운영의 책임성 강화에는 운영성과(3.36)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지만 국정운영의 능률성(2.96)과 효과성(3.07)의 관점에서 보면 보통 수준에 머물렀음을 알 수 있었다.

자체평가의 운영성과에 관해서는 부처의 평가영략 강화(3.49)와 환류에 용이(3.18)하다는 관점에서는 긍정적이었지만 통합평가 방식의 운영으로 평가업무의 부담이 줄어들었는지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지 않았다. 이 항목과 관련 다른 연구(송건섭, 2007)에서도 유사한 분석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이 연구에서의 특이사항은 장기적으로는 그 평가부담이 경감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었다. 또한 사전평가와 집행과정 평가에 관한 한 제도운영기관으로서 국무총리실은 그 필요성을 어느 정도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행정안전부나 기획재정부 등 평가총괄관련기관은 여기에 대해 그 필요성 수준이 높지 않았다.

특정평가에 관한 한 운영성과는 모두 긍정적이었다. 통합적 국정관리에 도움(3.36)이 될 뿐만 아니라, 정책의 흐름을 읽을 수 있어 어느 곳에서 정책의 병목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가능하도록 하는 운영성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인식(3.40)하고 있었다. 특정평가만을 대상으로 그 운영성과를 분석한 연구(강영철, 2010)에서도 그 결과는 긍정적이었다. 특정평가는 활용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항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으며, 국정에 필요한 정치적 현안과제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 운영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자체평가결과를 기반으로 성과관리가 가능하다는 운영성과에 대해서도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었다. 성과관리제도 도입의 성과(3.13)보다는 평가결과를 성과관리에 활용함으로써 운영성과(3.62)가 나타났음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자체평가 관련 다른 연구(송건섭, 2007)에서는 자체평가결과의 활용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었으며,

자체평가 도입으로 인하여 성과관련 역량 수준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같은 인식을 하고 있었다.

정부업무평가제도 운영성과에 관하여 제도운영기관 및 평가총괄관련기관으로서 국무총리실, 평가총괄관련기관으로서의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그리고 피평가기관으로 나누어 비교분석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국무총리실과 피평가기관은 대체로 운영성과에 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반면에 평가총괄관련기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 대체로 회의적이었으며 세 가지 항목 즉, 국정운영의 책임성 향상, 자체평가 역량 강화, 그리고 평가결과의 성과관리에의 활용이라는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었다.

〈표 3〉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성과에 대한 분석 결과

성과 관리	설문문항	전체	국무총리실	평가총괄관련기관	피평가기관	F	sig.
제도 도입 목적	국정운영의 능률성 향상	2.96	3.38	2.48	3.08	11.460	.000
	국정운영의 효과성 향상	3.07	3.50	2.54	3.23	13.454	.000
	국정운영의 책임성 향상	3.36	3.81	3.08	3.39	5.351	.006
자체 평가	자체평가 도입의 성과	3.27	3.38	2.90	3.42	6.103	.003
	자체평가역량 강화에 기여	3.49	3.96	3.00	3.62	12.810	.000
	평가업무 부담의 완화	2.85	3.35	2.78	2.76	3.926	.021
	자체평가결과의 환류 용이	3.18	3.23	2.98	3.25	1.559	.213
특정 평가	통합적 국정관리에 도움	3.36	4.23	2.83	3.41	21.628	.000
	정책 흐름의 판단에 도움	3.40	4.08	2.96	3.45	16.189	.000
성과 관리	성과관리제도 도입의 성과	3.13	3.38	2.76	3.25	6.286	.002
	평가결과 성과관리 활용	3.62	3.58	3.19	3.84	10.043	.000

자료: 허만형 · 라휘문 · 차용진(2010)

3) 운영성과에 관한 언론보도내용 분석

정부업무평가 관련 언론의 보도내용을 분석한 결과 시기적으로 집중되어 있었고, 보도 내용도 부분적이어서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운영성과를 일반국민에 소개하는 기능이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 1년간 보도된 총 65건의 기사 중에서 48건이 12월과 1월에 집중되어 있었고, 정부업무에 대한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정책과 관련된 보도보다는 행사 중심의 보도가 대부분이었다.

정부업무평가의 운영성과가 정책에 투영되어 정책분석에서부터 시작하여 평가, 나아가 성과관리와 연계되고 있다는 점과 평가를 통하여 정부성과가 높아지고 있으며 정책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있다는 점을 일반국민이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예컨대,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운영 결과 어떤 분야가 정책사각지대로 파악되었으며, 이 평가결과가 어떻게 활용되어 문제가 해결되었는지와 같은 보도는 뉴스의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적 관심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보도내용을 찾기가 매우 어려웠다.

행사관련 기사는 전체 65건 중 50건에 이르렀다. 정부업무평가결과보고회는 운영성과를 집중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자체평가 설명회나 책자발간과 같은 행사관련 기사도 제도소개와 관련하여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아쉬운 점은 보고회를 통하여 서민생활 대책의 국민체감 미흡처럼 정책평가 관련 내용이 보도되어 어떤 분야의 정책은 성과가 높았고, 어떤 분야의 정책의 그 성과가 낮았는지를 일반국민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또 다른 아쉬운 점은 정부업무평가제도는 기관평가 방식의 평가제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고회 관련 보도내용 대부분은 어떤 기관이 우수하고, 어떤 기관이 미흡했는지를 알리는 기사였다.

보도된 내용 중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기사는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금 용처 관련 내용이었다.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운영성과의 한 축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부처마다 포상금의 용처도 달라 기관에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행정안전부나 산림청처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나 장학지원과 같은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처럼 조직 구성원의 사기양양에도 활용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표 4〉 정부업무평가 제도운영 관련기사 내용 및 회수

보도내용	2011년							2012년				
	06	07	08	09	10	11	12	01	02	03	04	05
정부업무평가결과보고							28					
평가위원과 만찬 관련							3					
정부업무평가유공자 포상												4
평가위원 위촉장 수여								8				
방재청 자체평가위 개최			1									
연천군 평가대비 책자발간		4										
보훈처 자체평가위 설명회												
행정안전부의 포상금 기부								9		1		
여성가족부의 포상금 기부										1		
공정위의 포상금 콘도구매										1		
산림청 포상금으로 장학회										1		
국세청 평가결과에 촉각					1							
평가위원의 사외이사 선임		1										
합계	0	5	1	0	1	0	31	17	0	4	0	6

4. 결론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운영성과는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났지만 정부부처의 역량이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부처의 역량은 평가제도, 정책과제관리 및 성과관리의 발전을 통하여 강화되어 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자체평가는 성과관리 정착에 기여하였으며, 특정평가는 국정운영의 책임성 제고에 기여한 점도 의미 있는 운영성과였다.

일부 항목에서는 기대한 운영성고가 아직 잘 나타나지 않고 있는 아쉬움도 있었다. 통합 평가 방식의 운영으로 피평가기관인 각 부처의 평가업무를 경감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피평가기관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통합평가의 효과로서 평가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는 연구결과(송건섭, 2007)가 있어 향후 이 분야의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업무평가는 자체평가의 관점에서 보면 각 부처가 수행하는 주요 정책, 재정사업, 그리고 행정관리역량으로 그 범위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결과는 국민적 관심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결과가 언론에 보도되어 국민과 소통되는 기회가 많지 않았다. 녹색성장, 일자리 창출과 같은 특정평가의 내용도 국민적 관심대상일 수밖에 없지만 이 평가결과 역시 일반국민과의 소통의 기회가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정부업무평가결과의 대국민 소통이 향후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영철. (2010). 관리수단으로서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역할 및 한계: 정부업무평가제도 내 특정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9(3), 209-230.
- 공병천. (2008). 통합성과관리체계 하에서의 성과관리와 평가에 관한 소고: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7(1), 55-79.
- 송건섭. (2007). 정부업무평가제도하의 자체평가 역량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1(1), 57-79.
- 허만형. (2006). 성과관리와 정책평가의 연계관계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44(4), 485-506.
- 허만형 · 라휘문 · 차용진. 공무원 인식조사를 통한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연구, 10(3), 479-504.
- Behn, Robert, (2003). Why Measure Performance? Different Purposes Require Different Measure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3(5), 586-606.
- Fairclough, Norman (1995). Media Discourse. London: Edward Arnold.
- Wildavsky, Aaron. (1972). The Self-Evaluating Organiz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2(5), 509-520.

특별기고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성과와 향후 과제

정운수(명지대 교수, 제4기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장)

‘사람은 기대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평가받는 대로 움직인다.’ 세계적인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커가 평가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모두가 평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평가결과에 많은 관심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성과 활용성은 크게 높지 않았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원인으로 평가에 따른 과중한 업무부담과 평가비용, 평가결과의 적극적인 활용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2006년에 기존 법을 폐지하고 새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는 중복평가를 지양하고, 성과관리 중심의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에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평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담았다.

여기서는 3기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위원회의 운영성과 및 향후 역할과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임무를 간략히 살펴본 후 운영성과를 두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하나는 위원회가 직접적으로 평가의 주체가 되어 수행한 특정평가와 관련한 운영성과이며, 다른 하나는 정부업무평가의 효과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 심의 내실화 성과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향후 역할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1.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임무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은 정부업무평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9조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임무를 규정하고 있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총괄 심의·의결기구이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정부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
- 국가 차원의 중장기 평가기반의 구축
-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 정부업무평가의 기획·조정·총괄에 관한 사항
- 정부업무평가제도와 관련된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등

이와 같이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정부업무평가의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의 성패가 정부업무평가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2006년에 임명된 1기와 2008년에 임명된 2기, 2010년에 임명된 3기를 거쳐, 현재는 2012년 10월에 임명된 4기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1기와 2기 위원회가 새롭게 도입된 제도를 정착시키고 활용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3기 위원회는 정부업무평가의 내실을 다지고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였다고 생각된다.

정부업무평가는 크게 지방자치단체 평가, 공공기관 평가, 중앙행정기관 평가로 구분된다. 지방자치단체 평가와 공공기관 평가의 경우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담당기관으로부터 평가계획과 평가결과를 보고받고 심사·의결한다. 중앙행정기관 평가는 자체평가와 특정평가로 크게 구분된다. 자체평가는 말 그대로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성과관리시행계획의 관리과제들에 대한 성과달성도 등을 스스로 평가한다. 특정평가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시행하는 것으로 국무총리가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핵심과제, 규제개혁, 국민만족도 등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다.

2.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운영성과

가. 특정평가와 관련한 운영성과

특정평가는 평가의 준비단계에서부터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며, 평가의 시행 및 평가결과의 환류단계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특정평가의 체계적인 수행과 기대한 성과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였다.

1) 평가단 구성 및 운영의 내실화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특정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위해 정부업무평가위원, 과제별 민간전문위원, 평가실 담당관이 공동 참여하는 「핵심과제평가단」을 구성하였다. 핵심과제별로는 2인의 민간전문위원을 선정하여 평가업무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핵심과제 평가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핵심과제평가단」을 5개 분과로 편성하고(경제Ⅰ, 경제Ⅱ, 사회문화, 일반행정, 외교·통일·안보), 각 분과 소속 정부업무평가위원이 공동분과위원장 역할을 수행하였다. 각 분과는 분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업무내용의 유사성에 따라 2개 팀으로 구분하였다. 핵심과제평가단의 구성과 역할은 <표 1>과 같다.

<표 1> 핵심과제 평가단의 구성과 역할

구분	역할
정부업무평가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전문위원의 과제별 평가보고서 총괄 검토• 담당분과별 평가보고서 및 평정결과 검토·조정
민간전문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당과제별 추진상황 상시 모니터링 및 분석• 담당과제별 평가보고서 작성 및 평정 실시* 평가보고서 작성
정책분석평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부처의 과제별 추진실적 등 평가자료 수집·배포• 과제별 평가보고서 보완• 분과별 평가보고서(안) 및 종합보고서(안) 작성

평가단 중 민간전문가들은 담당 과제의 추진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평가보고서 작성과 평가결과 평정 등 핵심과제평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의 평가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자긍심은 평가보고서 작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들은 유선으로 위촉사실을 통보받고 평가업무를 수행하는데 그쳤을 뿐, 공식적인 위촉식이거나 임명장 전달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2011년 5월에 운영세칙 개정을 통해 민간전문가에 대한 평가전문위원 위촉 및 위촉장 수여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민간전문가 전체를 대상으로 특정평가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할 때 위촉장 수여식도 함께 거행하였다.

2) 부처 업무설명회의 내실화

부처 업무설명회는 특정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서 민간전문가의 질문과 부처 업무담당자들의 답변으로 진행된다. 민간전문가들은 부처업무설명회를 통해 각 부처가 수행한 과제의 실적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며, 부처 업무담당자들은 각 부처들이 수행한 과제별 추진 실적을 설명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

민간전문가는 부처에서 제출한 추진실적을 기초로 하여 해당 과제를 평가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질문을 작성하게 된다. 이 질문은 미리 부처에 보내어 답변을 준비하게 하거나, 업무설명회 때 부처로부터 답변을 받게 된다. 부처 업무담당자는 업무설명회에서 질문에 충분히 답변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부처 업무설명회의 내실화는 평가보고서의 객관성을 높였을 뿐 아니라 평가결과에 대한 부처의 수용성을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3) 평가결과의 환류 강화

모든 평가가 그러하듯이 정부업무평가도 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해 정부업무의 개선이 이루어질 때 그 소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정책분석평가실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평가결과의 환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째, 평가보고서의 품질이 확보되어야 하며, 둘째 평가결과를 부처에서 의미있게 받아들여야 한다.

평가보고서의 품질은 민간전문가의 전문성과 노력에 많이 좌우되지만, 동시에 민간전문가가 제출한 평가보고서를 숙독하고 평가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도 중요

한 역할을 한다. 정책분석평가실은 평가보고서에 대한 내부검토회의(실장/국장 주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연중 정책자료와 언론보도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2011년에 실시된 특정평가부터는 밤늦도록 진행된 정책분석평가실의 헌신적인 평가보고서 숙독과 보완노력 덕분에 평가보고서를 각 부처에 환류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2011년에는 민간평가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지원단'을 구성하여 과제별 민간전문가가 작성한 평가보고서를 별도로 검토하고 보완하는 노력도 시도하였다.

또한 정부업무평가결과에 대한 부처의 관심을 높이는 노력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10년 12월에는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업무평가위원, 분야별 최우수 부처 기관장(7명), 국무총리실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보고회가 개최되었다. 2011년 12월에는 이를 좀 더 확대하여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업무평가위원, 평가대상 38개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업무평가결과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각 부처의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관심을 크게 높였으며, 평가결과의 환류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4) 현장점검 활성화 및 내실화

3기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대표적인 성과로 현장점검 활성화 및 내실화를 들 수 있다. 현장점검은 주요 정책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 파악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부처와의 소통을 강화하는데도 기여하였다고 판단된다. 현장점검이 기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장점검의 목적을 구체화하고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점검은 2011년에 3번 실시되었으며, 2012년에는 연초에 1년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9월까지 4번 실시되었다. 정책분석평가실에서는 현장점검을 희망하는 부처의 수요를 먼저 파악하고 정부업무평가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연간 현장점검 일정계획을 마련하였다. 방문현장과 관련된 정책·사업 추진현황 및 주요쟁점 등에 관한 자료를 취합해 현장점검 전에 참여 위원에게 송부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현장점검은 위원회의 평가업무 수행과 평가의 타당성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

나.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심의 내실화 성과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뿐아니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되는 정부업무평가를 기획·조정·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되는 안전에 대한 내실있는 심의와 검토의견의 반영여부는 정부업무평가의 원활한 시행과 정부업무의 성과를 관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기에서는 3기 정평위에서 시행한 위원회 심의 내실화 노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안전의 사전보고 및 협의 활성화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회의시간은 상정된 안전들을 내실있게 심의하고 검토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 사전보고 및 검토를 활성화시켰다. 정책분석평가실의 소관 국·과장은 회의 전에 별도의 일정을 마련하여 안전의 주요 내용 및 쟁점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심의방향을 협의하였다. 특히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성과관리 운영지침»,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계획」 등 주요 안전에 대해서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심의 전에 위원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안전의 주요 내용 및 주요 쟁점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심의방향에 대한 사전 조율을 위한 것이었다.

다른 행정기관이나 다른 부서 상정안전에 대해서는 정책분석평가실 차원의 검토의견을 마련하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시 보고함으로써 심의와 토론을 활성화시켰다. 그리고 재정사업평가(기획재정부), 공공기관평가(기획재정부 등), 지방자치단체평가(행정안전부 등) 관련 계획 및 결과 등에 대해서는 정책분석평가실 차원의 검토의견을 작성하고 위원회 시 업무 소관 과장이 보고하였다. 이와 함께 필요한 경우 정부업무평가위원·민간전문가·정책분석평가실 담당관 등으로 안전 사전검토 T/F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연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일정을 연초에 확정하여 부처에 통보함으로써 안전 준비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처에서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개최일 일주일 전(위원회 개최 전주 금요일)까지 상정 안전을 정책분석평가실에 제출토록 하여 위원들에게 송부함으로써 사전 검토를 내실화하였다.

2) 안전 토론 내실화와 심의결과의 모니터링 강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안전이 상정될 때부터 관련 기관의 국장이 참석하여 부처의 책임 있는 입장과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을 거쳐 회의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안전 토론의 내실화에도 도움이 되지만 심의결과가 부처의 평가업무에 반

영되도록 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는 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각 부처의 담당국장이 보고토록 조치하였다. 그 결과 2012년 3월 이후에는 부득이한 3명을 제외하고는 부처 안전보고를 국장이 시행하였다(60%). 이는 2011년 국장보고 비율이 25% 남짓인 것에 비해 획기적으로 향상된 수치이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심의결과와 검토의견이 관련 기관의 정부업무평가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조치도 취하였다. 정책분석평가실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부처에 통보하고 조치계획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또한 조치계획이 제대로 시행되는지를 주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안건의 토론 내실화를 통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함께 부처의 업무평가를 개선하고 정부업무평가의 성과를 제고한 대표적인 사례로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부문 자체평가를 들 수 있다. 2010년 후반부터 담당국장과 과장이 함께 위원회에 참석하여 재정사업부문 자체 평가시행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안)을 위원회에 보고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위원회의 검토 의견 및 토론결과를 국가재정사업 자체평가에 잘 반영한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다.

3) 정책현안분석과제 참여 및 심의

정책현안분석과제는 종래 기관평가의 틀을 벗어나 다수부처가 관련된 주요 시책을 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과제이다. 이 과제의 목적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시책과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국가 주요사업 등에 대해 분석적 평가 및 사후관리를 통해 유용한 정책 정보를 생산하고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있다. 이와 함께 잠재적·구조적 정책현안을 선정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평가의 사전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는 목적도 갖고 있다. 정책현안분석과제는 정책분석평가실의 담당자들과 함께 정부업무평가위원들이 참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위원회 보고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와 토론을 통해 분석의 깊이를 더하는데 기여하였다. 일부 정책현안분석과제의 경우 학문적으로 중요한 정책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으로 고려하여 관련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과제담당자들이 위원들과 함께 논문으로 발표하기도 하였다.

3.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향후 역할과 과제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1기, 2기, 3기를 거치면서 위원들의 헌신과 정책분석평실의 체계적인 지원노력으로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정착과 확산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누군가 평가는 진화한다고 하였다. 앞으로도 정부업무평가는 평가생태계의 변화에 따라 발전적으로 진화해나가야 한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은 통합적인 성과관리체계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해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켜나가는 것으로 진화의 방향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향후 역할과 과제를 몇 가지 생각해본다.

첫째, 통합적 평가의 실시라는 관점에서 볼 때 공공부문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평가업무들에 대한 종합적인 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상정되어 논의되는 평가업무들 외에도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서 정의한 평가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평가업무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 지향하는 통합적 평가의 목적은 평가시기를 일원화하고, 평가대상을 조정하며 나아가 평가지표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평가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그림은 공공부문에서 통합적 평가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주된 임무 중 하나인 정부업무평가의 기획·조정·총괄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둘째, 정부업무평가와 성과관리의 연결고리를 좀 더 명확히 하는 작업이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성과관리와 특정평가를 연계하고자 시도가 많이 있었으며 그 결과 피평가기관의 중복적인 업무 부담을 많이 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측정과 성과관리가 정부업무평가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책분석 및 평가 전문가 집단들과의 주기적인 교류 및 포럼 구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체평가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자체평가는 기관 스스로가 소관정책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기관의 조직역량을 키우고 학습을 통해 직원들의 평가역량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 미국의 정책학자 월다브스키는 자체평가의 성패는 자체 평가에 대한 조직 리더의 후원과 재정적 지원 그리고 성과에 대한 정보가 외부의 검정에 노출되어 있는 정도에 달려있다고 하였다. 현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체평가는 기관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월다브스키가 제시한 성공요인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성공요인들을 염두에 두고 자체평가를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자체평가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맡겨진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고충이나 개선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이들과의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부처의 평가담당자 및 자체평가위원회와의 간담회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업무가 수행되고 있는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부처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이 제도의 성과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에 달려있다. 그동안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성과는 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늘 국가적 사명감을 이양한 위원장의 화합적 리더십, 그리고 위원회와 정책분석평가실의 긴밀한 협력관계라는 삼박자가 잘 이루어졌기에 가능하였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과 협력이 잘 유지되어야 할 것이며, 지난 50년 동안의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경험과 발전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국제사회에 알리고 전수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1-1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시행 2010.1.25] [법률 제9966호, 2010.1.2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가”라 함은 일정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부업무평가”라 함은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대상 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정책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
- 가. 중앙행정기관(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보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나. 지방자치단체
- 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 라. 공공기관
3. “자체평가”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특정평가”라 함은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재평가”라 함은 이미 실시된 평가의 결과·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그 평가를 실시한 기관 외의 기관이 다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성과관리”라 함은 정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7.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 나.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산하기관
-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단
- 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
- 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
- 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 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

제3조(통합적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구축)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근거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평가대상 기관의 정책등에 대하여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평가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이 경우 통합실시되는 평가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무의 특성·평가시기 등으로 인하여 평가의 통합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미리 협의하여 별도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성과관리의 원칙)

- ① 성과관리는 정책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 ② 성과관리는 정부업무의 성과·정책품질 및 국민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제5조(성과관리전략계획)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을 포함한 당해 기관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이하 "성과관리전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이와 관련이 있는 다른 법령에 의한 중·장기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당해 기관의 임무·전략목표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최소한 3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국가재정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 기초하여 성과관리전략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성과관리시행계획)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기초하여 당해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성과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성과관리시행계획에는 당해 기관의 임무·전략목표, 당해연도의 성과목표·성과지표 및 재정부문에 관한 과거 3년간의 성과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정량적(定量的)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 ⑤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 실태 및 그 결과가 자체평가 및 특정평가에 반영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 기초하여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장 정부업무평가제도

제7조(정부업무평가의 원칙)

- ① 정부업무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그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② 정부업무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③ 정부업무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정책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하여야 한다.

제8조(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의 수립)

- ① 국무총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업무의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한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이하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최소한 3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정부업무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3. 정부업무평가와 관련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각종 평가제도와 평가방법 등의 실효성 확보에 관한 사항
5. 평가관련 인력의 전문성·독립성 확보에 관한 사항
6.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통합평가체계(이하 “전자통합평가체계”라 한다)의 구축·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평가관련 예산·조직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평가업무의 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

③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전년도 평가결과를 고려하고 평가대상 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3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대상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의 정책등에 대한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의 기본방향
2. 당해연도의 정책등에 대한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3. 당해연도의 정책등에 대한 특정평가에 관한 사항
4. 당해연도의 정책등에 대한 공공기관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당해연도의 정책등에 관한 정부업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국무총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 및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임무)

① 정부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국가 차원의 중장기 평가기반의 구축·운영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2.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 및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정부업무평가의 기획·조정·총괄에 관한 사항
4. 정부업무평가제도와 관련된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5. 정부업무평가결과의 활용 및 평가제도간 연계방안에 관한 사항
6. 정부업무평가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7. 평가관련 기관 간 협조 및 평가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8. 특정평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자체평가제도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10. 자체평가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11. 자체평가결과의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12.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재평가에 관한 사항
13. 평가제도 운영실태의 점검에 관한 사항
14. 새로운 평가제도의 도입에 관한 사항
15.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
16. 그 밖에 위원장이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3항제2호의 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1.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국무총리실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 가. 평가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나. 1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 다. 그 밖에 평가 또는 행정에 관하여 가목 또는 나목의 자와 동등한 정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무총리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위원은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 ⑧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⑨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중 자체평가 및 특정평가에 관한 안건을 미리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⑩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평가총괄관련기관)

- ①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의 부문별 총괄 관련 중앙행정기관(이하 “평가총괄관련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문별 자체평가결과의 확인·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총괄관련기관의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확인·점검에 민간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③ 평가총괄관련기관은 소관 부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1. 평가제도의 운영·개선, 평가지침 및 평가지표의 작성
 - 2. 자체평가결과의 확인·점검, 재평가의 실시 여부
 - 3. 그 밖에 자체평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평가대상 기관과의 협조) 국무총리는 평가대상 기관에 대하여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 및 정부업무평가지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전자통합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

- ①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통합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각 기관 및 단체가 이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전자통합평가체계는 평가과정, 평가결과 및 환류과정의 통합적인 정보관리 및 평가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국무총리는 전자통합평가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④ 전자통합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정부업무평가의 종류 및 절차

제14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계획의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당해 정책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주요 정책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4.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5. 자체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체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제16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의 절차)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연도의 주요 정책등에 대한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4월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에 자체평가계획의 보완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정책등의 추진실적을 기준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3월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자체평가결과에 대한 재평가)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결과를 확인·점검 후 평가의 객관성·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소관 정책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15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기반의 구축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
-

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19조(특정평가에 관한 사항)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특정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 특정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특정평가의 대상에 관한 사항
3. 특정평가의 방법에 관한 사항
4. 특정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특정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제20조(특정평가의 절차)

- ① 국무총리는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주요 현안시책, 혁신관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부문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② 국무총리는 특정평가를 시행하기 전에 평가방법·평가기준·평가지표 등을 마련하여 특정평가의 대상기관에 통지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③ 국무총리는 특정평가를 위하여 특정평가의 대상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평가업무 수행자로 하여금 특정평가 대상기관을 방문하여 평가에 관한 자료를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 ④ 국무총리는 특정평가결과에 대하여 위원회가 의결한 때에는 이를 특정평가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특정평가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국가위임사무등에 대한 평가)

- ①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시책 등(이하 이 조에서 “국가위임사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이하 “합동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를 합동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

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동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동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하에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위임사무등에 대하여 업무의 특성·평가시기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이를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평가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국가위임사무등의 평가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①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이하 “공공기관평가”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특수성·전문성을 고려하고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외부의 기관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법률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공공기관평가로 본다. <개정 2010.1.25>

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2.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3. 「국가재정법」 제82조에 따른 평가
 4.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5.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8.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

의한 평가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은 미리 그 평가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⑥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평가를 실시한 기관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정부업무평가기반 구축의 지원

제23조(정부업무평가기반 구축의 지원)

- ① 정부는 평가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예산 등을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의 제도적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평가방법과 평가지표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평가와 관련된 기관에 대한 지원방안 및 평가에 관한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4조(평가예산)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등의 평가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포함하여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정책등의 평가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평가비용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5조(평가제도 운영실태의 확인·점검)

국무총리는 평가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방안의 강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장 평가결과의 활용

제26조(평가결과의 공개)

국무총리·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전자통합평가체계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27조(평가결과의 보고)

- ① 국무총리는 매년 각종 평가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거나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정책등에 대한 자체평가결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을 말한다)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평가결과의 예산·인사 등에의 연계·반영)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조직·예산·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반영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시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평가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다음 연도 예산편성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9조(평가결과에 따른 자체 시정조치 및 감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정책등에 문제점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정책등의 집행중단·축소 등 자체 시정조치를 하거나 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사례로 인정되는 소속 부서·기관 또는 공무원에게 포상, 성과급 지급, 인사상 우대 등의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정부업무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1조(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대한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 중 규모 및 업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성과관리 및 평가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소속기관에 대하여는 스스로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그 밖의 행정기관의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평가대상 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의 예에 따라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① 국무총리는 특정평가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국무총리·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업무의 일부를 평가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0조제3항·제10항, 제11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20조제3항 또는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관련 위원회의 위원과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확인·점검에 참여하는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및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는 그 평가업무에 관하여는 「형법」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1-2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0.5.5]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5.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범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보좌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대통령 소속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2. 국무총리 소속기관 :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제3조(공공기관에 속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법 제2조제7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라 함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동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동법 별표 제1호 및 제8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제외한다) 중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통합 실시되는 평가의 범위)

법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라 통합 실시되는 평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3, 2009.8.21>

1.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자체 성과의 평가
2.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8조에 따른 교육인적자원개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3.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5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교육훈련에 대한 평가
4. 삭제 <2010.5.4>
5.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실적 분석 및 점검
6.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2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평가
7. 「행정규제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규제개혁실태 등에 대한 평가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
9.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른 개방형직위의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평가
10.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의2에 따른 정부행정조직의 운영에 대한 분석·평가
- 10의2. 「국가재정법」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정사업 자율평가
11. 그 밖에 위원회가 평가의 통합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평가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평가

제5조(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의 평가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법 제8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업무의 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부업무평가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평가의 연차적 통합 또는 연계방안에 관한 사항
2. 정부업무평가결과와 조직·예산·인사 및 보수체계 등과의 연계 방안에 관한 사항

제6조(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 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평가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력 등 업무에 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8.7.3>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08.7.3>

제7조 삭제 <2008.7.3>

제8조(평가총괄관련기관)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의 부문별 총괄 관련 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7.3>

1. 주요 정책부문 : 국무총리실
2. 재정사업부문 : 기획재정부
3. 기관역량부문 : 행정안전부
4. 삭제 <2008.7.3>
5. 삭제 <2008.7.3>

제9조(전자통합평가체계 관리·운영의 위탁에 따른 지원)

국무총리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전자통합평가체계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지행계획을 기초로 하여 자체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사업·업무 등(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을 스스로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정책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그 기관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필수적 정책등
 2. 그 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등
 3. 자체평가결과와 조직·예산·인사 및 보수체계 등과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등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하나의 정책등이 여러 부문에 중첩되는 경우에는 평가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느 하나의 부문으로 분류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1조(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자체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자체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 ③ 자체평가위원회의 위원은 평가 또는 소관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한 것 외에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2조(자체평가의 절차 등)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능한 한 계량화된 평가지표에 의한 측정을 통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자체평가의 효율적 운영과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공통되는 평가방법·평가기준 및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제시할 수 있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공통의 평가방법·평가기준 및 평가지표 외에 그 기

관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등에 대하여 다른 평가 주관기관에 의한 평가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자체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재평가의 실시)

국무총리는 법 제17조에 따른 재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를 요구하거나 평가업무 수행자로 하여금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에 관한 자료를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특정평가의 대상부문)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부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부문을 말한다.

1. 각 중앙행정기관이 공통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시책으로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문
2.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국가의 주요사업으로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부문
3. 기관 또는 정책등의 추진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부문
4. 그 밖에 특정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부문

제15조(특정평가의 절차 등)

- ① 국무총리는 특정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금 연구·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② 국무총리는 특정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전문가,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위원회가 특정평가에 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6조(국가의 주요시책 등)

법 제21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시책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말한다.

1. 국가적인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시책
2.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시책

제17조(합동평가의 실시 등)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가위임사무등에 대하여 합동평가(이하 “합동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이하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합동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합동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평가실시 3월 이전에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 제1항에 따른 합동평가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합동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에 관한 사항
 2. 합동평가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3. 합동평가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합동평가대상의 선정 및 평가지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5. 합동평가결과의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6. 관계중앙행정기관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합동평가와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의견 등

제18조(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①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의 민간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 ③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1. 행정안전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또는 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

2. 합동평가에 참여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또는 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추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

④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위원(공무원인 위원을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9조(중앙행정기관의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소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0조(수당 등)

평가 관련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그 밖에 이해관계인·참고인 및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 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국무총리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의 혁신관리에 대한 특정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혁신관리에 대한 특정평가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혁신관리에 대한 평가대상·평가방법·평가기준 및 평가지표 등(이하 이 조에서 “평가지표등”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혁신관리에 대한 평가지표등이 다른 특정평가 부문의 평가지표등과의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평가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해당전문연구기관의 운영 및 연구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1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가. 제1기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

이름	소속	직위	임기	
정용덕<위원장>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2006. 6. 16	2007. 4. 15
장지인<위원장>	중앙대 경영대학	교수	2007. 7. 4	2008. 8. 31
이근식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2006. 6. 16	2007. 3. 6
조현연	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	2006. 6. 16	2007. 4. 15
김희경	상명대 금융보험학부	교수	2006. 6. 16	2008. 6. 15
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2006. 6. 16	2008. 6. 15
성태제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	2006. 6. 16	2008. 6. 15
윤정로	KAIST 사회학과	교수	2006. 6. 16	2008. 6. 15
이윤식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	2006. 6. 16	2008. 6. 15
홍장표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	2006. 6. 16	2008. 6. 15
서은경	전북대 반도체과학기술학과	교수	2006. 8. 1	2007. 8. 20
전성빈	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2007. 7. 6	2008. 8. 31
이병택	전남대 신소재공학부	교수	2007. 7. 6	2008. 8. 31
김선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2007.10.19	2008. 8. 31

나. 제2기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

이름	소속	직위	임기	
김현구<위원장>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교수	2008. 9. 1	2010. 8. 31
강근복	충남대 행정학과	교수	2008. 9. 1	2010. 8. 31
김성희	KAIST 정보미디어경영대학원	교수	2008. 9. 1	2010. 8. 31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2008. 9. 1	2010. 8. 31
박은숙	그리스도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2008. 9. 1	2010. 8. 31
안세영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2008. 9. 1	2010. 8. 31
오세정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	2008. 9. 1	2010. 8. 31
이만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2008. 9. 1	2010. 8. 31
이성우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2008. 9. 1	2010. 8. 31
정기오	한국교원대 교육정책대학원	교수	2008. 9. 1	2010. 8. 31
최병일	전주대 법경찰행정학부	교수	2008. 9. 1	2010. 8. 31

다. 제3기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

이름	소속	직위	임기	
강근복<위원장>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2010.10.1	2012.9.30
이성우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2010.10.1	2012.9.30
정윤수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2010.10.1	2012.9.30
정민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부회장	2010.10.1	2012.9.30
차은영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2010.10.1	2012.9.30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0.10.1	2012.9.30
남성희	대구보건대	총장	2010.10.1	2012.9.30
김성근	서울대 화학부	교수	2010.10.1	2012.9.30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10.10.1	2012.9.30
김인철	한국외대	부총장	2010.10.1	2011.10.4
박미석	숙명여대 가족자원경영학과	교수	2012. 1. 4	2012.9.30
이은국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2010.10.1	2012.9.30

라. 제4기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

이름	소속	직위	위촉일
정윤수<위원장>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2012.10.1
권기현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2012.10.1
엄재호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2012.10.1
정민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부회장	2012.10.1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2.10.1
남성희	대구보건대	총장	2012.10.1
차은영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2012.10.1
김성근	서울대 화학부	교수	2012.10.1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12.10.1
박미석	숙명여대 가족자원경영학과	교수	2012. 1. 4
이은국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2012.10.1

2-2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개최 일지 (2008년~2012년)

가. 2008년 ~ 2012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08년	12	12	0
2009년	15	15	0
2010년	10	9	1
2011년	16	15	1
2012년	10	10	0

나. 위원회 개최 상세내역(2008.1.1~2012.3.31)

1) 회의개최일: 2008.1.15

(출석: V, 서면:)

구 분	내 용
참석자	총 8명 참석 장지인(민간), 김선희(민간), 김희경(민간), 박광국(민간), 성태제(민간), 이윤식(민간), 전성빈(민간), 홍장표(민간)
회의 안건	① 2007년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평가계획 의결 ② 2007년도 정부업무평가 중간 점검 추진계획(안) 보고 ③ 2007년도 하반기 특정과제 이행상황 점검계획 보고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의결 및 접수

2) 회의개최일 : 2008. 1. 25 (출석 : √ , 서면 :)

구분	내용
참석자	총 8명 참석 장지인(민간), 김선희(민간), 김희경(민간), 윤정로(민간), 성태제(민간), 이병택(민간), 전성빈(민간), 홍장표(민간)
회의안건	① 참여정부 주요 정책과제 평가결과 수정 의결 ②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평가결과 보고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 수정 의결 및 접수

3) 회의개최일 : 2008. 2. 15 (출석 : √ , 서면 :)

구분	내용
참석자	총 9명 참석 장지인(민간), 김선희(민간), 김희경(민간), 박광국(민간), 성태제(민간), 윤정로(민간), 이윤식(민간), 전성빈(민간), 홍장표(민간)
회의안건	① 2007년도 정부업무 평가결과(안) 의결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의결 및 접수

4) 회의개최일 : 2008. 3. 7 (출석 : √ , 서면 :)

구분	내용
참석자	총 6명 참석 장지인(민간), 김희경(민간), 박광국(민간), 이윤식(민간), 전성빈(민간), 홍장표(민간)
회의안건	① 200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가계획(국무총리실 검토결과 별도보고) 수정의결 ② 2008년도 성과관리계획 수립결과 보고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 수정의결 및 접수

5) 회의개최일 : 2008. 3. 28 (출석 : √ , 서면 :)

구분	내용
참석자	총 8명 참석 장지인(민간), 김선희(민간), 김희경(민간), 윤정로(민간), 성태제(민간), 이윤식(민간), 전성빈(민간), 이병택(민간)
회의안건	① 2007년도 정부업무평가 추진현황 및 마무리계획(안) 의결 ② 2007년도 재정(R&D포함)·정보화부문 확인점검계획(안) 의결 ③ 2008년도 성과관리 전략·시행계획 수정지침(안) 의결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의결

6) 회의개최일 : 2008. 4. 22

(출석 : √ , 서면 :)

구분	내용
참석자	총 9명 참석 장지인(민간), 조중표(민간), 박광국(민간), 성태제(민간), 윤정로(민간), 이병택(민간), 이윤식(민간), 전성빈(민간), 홍장표(민간)
회의안건	① 2008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안) 의결
회의결과요약	안건 원안의결 및 접수

7) 회의개최일 : 2008. 5. 7

(출석 : √ , 서면 :)

구분	내용
참석자	총 7명 참석 장지인(민간), 김선희(민간), 김희경(민간), 박광국(민간), 성태제(민간), 이윤식(민간), 전성빈(민간)
회의안건	① 2009년도 성과관리계획 수립지침(안) 수정의결 ② 2007년도 지방공기업 평가계획(안) 수의결 ③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평가계획(안) 의결
회의결과요약	안건 원안 수정의결 및 의결

8) 회의개최일 : 2008. 6. 13

(출석 : √ , 서면 :)

구분	내용
참석자	총 10명 참석 장지인(민간), 김선희(민간), 김희경(민간), 박광국(민간), 성태제(민간), 윤정로(민간), 이병택(민간), 이윤식(민간), 전성빈(민간), 홍장표(민간)
회의안건	① 2007년도 법적의무 권장사항 평가결과(안) 의결 ② 2007년도 고객만족도 평가결과(안) 의결 ③ 2007년도 정보화부문 확인점검결과(안) 수정의결 ④ 2007년도 일반재정 부문 확인점검 결과(안) 의결 ⑤ 2008년도 자체평가 세부시행계획(안) 의결 ⑥ 2008년도 특정평가 세부지침(안) 수정의결 ⑦ 2008년도 성과관리계획 수정사항 검토결과(안) 의결 ⑧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계획(안) 의결 ⑨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결과 보고 ⑩ 2007년도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결과 보고 ⑪ 2007년도 기금운용 평가결과 보고
회의결과요약	안건 원안의결, 수정의결 및 접수

9) 회의개최일 : 2008. 9. 19

(출석 : √, 서면 :)

구분	내용
참석자	총 9명 참석 김현구(민간), 강근복(민간), 김성희(민간), 김태우(민간), 박은숙(민간), 안세영(민간), 이만우(민간), 이성우(민간), 최병일(민간)
회의안건	① 2007년도 재정성과 확인점검 결과(안) 의결 ② 2009년도 성과관리계획 검토결과(안) 의결 ③ 2008년도 하반기 특정과제 분석평가 추진계획(안) 의결 ④ 2007년도 일반재정부문 확인점검 결과(안) 보고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의결 및 접수

10) 회의개최일 : 2008. 11. 19

(출석 : √, 서면 :)

구분	내용
참석자	총 8명 참석 김현구(민간), 강근복(민간), 김성희(민간), 박은숙(민간), 정기오(민간), 이만우(민간), 이성우(민간), 최병일(민간)
회의안건	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개정 추진계획안 재상정 ②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2008년도 성과관리계획 수정 추진계획안 수정 의결 ③ 2008년도 상반기 특정과제 분석결과안 의결 ④ 2008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계획안 의결 ⑤ 특정과제 개선조치사항 이행상황 2008년도 상반기 점검 결과 보고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의결 및 수정 의결, 접수, 재상정

11) 회의개최일 : 2008. 12. 5

(출석 : √, 서면 :)

구분	내용
참석자	총 8명 참석 김현구(민간), 김성희(민간), 김태우(민간), 박은숙(민간), 안세영(민간), 정기오(민간), 이성우(민간), 최병일(민간)
회의안건	① 2008년도 정부업무평가 기관역량부문 확인·점검 계획안 의결 ② 2007년도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평가결과 보고 ③ 2007년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평가결과 제출 ④ 2007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회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결과 제출 ⑤ 2007년도 지식경제부 소관 연구회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결과 제출 ⑥ 2007년도 방위사업청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결과 제출 ⑦ 2007년도 지방공기업 평가결과 제출 ⑧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평가실시계획 제출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의결 및 접수

12) 회의개최일 : 2008. 12. 19

(출석 : √ , 서면 :)

구분	내용
참석자	총 7명 참석 김현구(민간), 강근복(민간), 오세정(민간), 정기오(민간), 이만우(민간), 이성우(민간), 최병일(민간)
회의안건	① 정부업무평가 포상금 집행계획안 의결 ② 2008년도 주용정책부문 자체평가 등급기준안 의결 ③ 2008년도 자체평가 실태점검 추진계획안 의결 ④ 2008년도 성과관리 추진실태 점검결과 보고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의결 및 접수

13) 회의개최일 : 2009. 1. 16

(출석 : √ , 서면 :)

구분	내용
참석자	총 8명 참석 김현구(민간), 강근복(민간), 김성희(민간), 김태우(민간), 박은숙(민간), 안세영(민간), 이성우(민간), 오세정(민간)
회의안건	① 2008년도 기금운영 평가계획안 의결 ② 2008년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계획안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의결 ③ 2008년도 하반기 특정과제 분석·평가결과안(수질오염총량제 운영실태 평가) 의결 ④ 재정사업부문 평가제도 개선방안 보고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의결 및 접수

14) 회의개최일 : 2009. 2. 13

(출석 : √ , 서면 :)

구분	내용
참석자	총 8명 참석 김현구(민간), 강근복(민간), 김성희(민간), 박은숙(민간), 안세영(민간), 이만우(민간), 이성우(민간), 최병일(민간)
회의안건	① 2008년도 하반기 특정과제 분석·평가결과안(위기청소년 보호·관리 추진실태 평가) 의결 ② 경제살리기 관련, 2009년도 특정과제 분석 추진계획안 의결 ③ 경제살리기 중심, 2009년도 자치단체 합동평가 추진계획안 의결 ④ 2008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실시계획 제출 ⑤ 2008년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계획(방사청, 교육과학기술부) 제출 ⑥ 2008년도 자체평가 실태점검 매뉴얼 보고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의결 및 접수

15) 회의개최일 : 2009. 2. 20

(출석 : √, 서면 :)

구분	내용
참석자	총 8명 참석 김현구(민간), 강근복(민간), 김성희(민간), 김태우(민간), 박은숙(민간), 안세영(민간), 이만우(민간), 이성우(민간)
회의안건	① 2009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안 재상정
회의결과 요약	안건 재상정

16) 회의개최일 : 2009. 2. 27

(출석 : √, 서면 :)

구분	내용
참석자	총 7명 참석 김현구(민간), 강근복(민간), 김성희(민간), 오세정(민간), 이만우(민간), 이성우(민간), 최병일(민간)
회의안건	① 2008년도 재정사업부문 확인점검·계획안 의결 ② 2008년도 규제개혁 평가결과안 의결 ③ 2008년도 국민만족도 평가결과안 의결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의결

17) 회의개최일 : 2009. 3. 20

(출석 : √, 서면 :)

구분	내용
참석자	총 8명 참석 김현구(민간), 강근복(민간), 김태우(민간), 박은숙(민간), 오세정(민간), 이만우(민간), 이성우(민간), 정기오(민간)
회의안건	① 2009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안 수정의결 ②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수정의결 ③ 2009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결과 보고 ④ 2008년도 하반기 특정과제 분석·평가결과안(중소기업 R&D 지원실태) 보고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 수정의결 및 접수

18) 회의개최일 : 2009. 4. 10

(출석 : √ , 서면 :)

구분	내용
참석자	총 8명 참석 김현구(민간), 강근복(민간), 김성희(민간), 김태우(민간), 오세정(민간), 이만우(민간), 안세영(민간), 최병일(민간)
회의안건	① 2008년도 기관역량부문 확인점검결과안 의결 ②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경영평가 실시계획 제출 ③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경영평가결과 보고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의결 및 접수

19) 회의개최일 : 2009. 5. 1

(출석 : √ , 서면 :)

구분	내용
참석자	총 8명 참석 김현구(민간), 강근복(민간), 김태우(민간), 안세영(민간), 이만우(민간), 이성우(민간), 김성희(민간), 정기오(민간)
회의안건	① 2009년도 상반기 특정평가 추진계획 보고 ② 2008년도 현안과제 분석결과(의료기관 평가제도 및 운영실태) 보고 ③ 2008년도 현안과제 분석결과(북한이탈주민 교육·취업지원대책) 보고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접수

20) 회의개최일 : 2009. 5. 29

(출석 : √ , 서면 :)

구분	내용
참석자	총 8명 참석 김현구(민간), 강근복(민간), 김태우(민간), 박은숙(민간), 최병일(민간), 이만우(민간), 이성우(민간), 정기오(민간)
회의안건	① 성과관리제도 운영방안 의결 ② 2010년도 재정사업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보고 ③ 2009년도 경제살리기 분야 1분기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결과 보고 ④ 2008년도 하반기 특정과제 분석·평가결과안(중소기업 R&D 지원실태) 보고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의결 및 접수

21) 회의개최일 : 2009. 6. 5

(출석 : √, 서면 :)

구분	내용
참석자	총 7명 참석 김현구(민간), 김태우(민간), 박은숙(민간), 오세정(민간), 이만우(민간), 이성우(민간), 정기오(민간)
회의안건	① 2009년도 상반기 핵심과제 평가결과 보고 ② 2009년도 상반기 정책관리역량 평가결과 보고 ③ 2009년도 상반기 녹색성장 평가결과 보고 ④ 2009년도 상반기 정책만족도 평가결과 보고 ⑤ 2009년도 상반기 규제개혁 평가결과 보고 ⑥ 2009년도 상반기 기관별 핵심과제 평가결과 보고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접수

22) 회의개최일 : 2009. 7. 3

(출석 : √, 서면 :)

구분	내용
참석자	총 8명 참석 김현구(민간), 강근복(민간), 김태우(민간), 박은숙(민간), 오세정(민간), 최병일(민간), 김성희(민간), 정기오(민간)
회의안건	① 2008년도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결과 의결 ② 2008년도 재정사업부문 확인점검결과안 의결 ③ 희망근로프로젝트 지방자치단체 추진실적 평가계획안 의결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의결

23) 회의개최일 : 2009. 7. 10

(출석 : √, 서면 :)

구분	내용
참석자	총 9명 참석 김현구(민간), 강근복(민간), 김태우(민간), 박은숙(민간), 안세영(민간), 이만우(민간), 이성우(민간), 정기오(민간), 최병일(민간))
회의안건	①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대상시책 선정안 수정의결 ② 2009년도 상반기 특정평가결과안 보고 ③ 취약계층 직업훈련제도 개선방안 보고 ④ 사회서비스일자리 및 사회적기업 정책 개선방안 보고
회의결과 요약	안건 수정의결 및 접수

24) 회의개최일 : 2009. 8. 28

(출석 : √ , 서면 :)

구분	내용
참석자	총 9명 참석 김현구(민간), 강근복(민간), 김성희(민간), 안세영(민간), 박은숙(민간), 오세정(민간), 이만우(민간), 이성우(민간), 최병일(민간)
회의 안건	①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결과 보고 ② 2009년도 상반기 경제살리기 합동평가결과 보고 ③ 2009년도 상반기 특정평가 포상금 집행 계획 보고 ④ 2009년도 하반기 정부업무평가 추진 계획 보고 ⑤ 희망근로 프로젝트 지방자치단체 중간평가결과 제출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접수

25) 회의개최일 : 2009. 9. 18

(출석 : √ , 서면 :)

구분	내용
참석자	총 8명 참석 김현구(민간), 강근복(민간), 김태우(민간), 박은숙(민간), 오세정(민간), 최병일(민간), 이성우(민간), 정기오(민간)
회의 안건	① 2009년도 하반기 특정평가 추진계획 의결 ② 200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가결과 제출 ③ 200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가계획 제출 ④ 2008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결과 제출 ⑤ 2009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계획 제출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의결 및 접수

26) 회의개최일 : 2009. 12. 4

(출석 : √ , 서면 :)

구분	내용
참석자	총 14명 참석 정운찬(당연직), 윤증현(당연직), 이달곤(당연직), 권태신(당연직), 김현구(민간), 강근복(민간), 김성희(민간), 김태우(민간), 박은숙(민간), 오세정(민간), 이만우(민간), 최병일(민간), 이성우(민간), 정기오(민간)
회의 안건	① 2009년도 정부업무평가결과 보고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접수수

27) 회의개최일 : 2009. 12. 29

(출석 : √, 서면 :)

구분	내용
참석자	총 9명 참석 김현구(민간), 강근복(민간), 김성희(민간), 김태우(민간), 박은숙(민간), 오세정(민간), 최병일(민간), 안세영(민간), 이만우(민간)
회의안건	① 2009년도 희망근로프로젝트 최종평가결과(안) 제출 ② 2008년도 지방공기업 평가결과(안) 제출 ③ 2008년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교육과학기술부) 평가결과(안) 제출 ④ 2008년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방사청) 평가결과(안) 제출 ⑤ 2009년도 경제살리기 2대분야 자치단체 합동평가결과(안) ⑥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시계획(안) 의결 ⑦ 2009년도 자체평가 실태점검 추진계획(안) 의결 ⑧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안)(2010~2012) 의결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의결 및 접수

28) 회의개최일 : 2010. 2. 11

(출석 : √, 서면 :)

구분	내용
참석자	총 11명 참석 김현구(민간), 강근복(민간), 김성희(민간), 김태우(민간), 박은숙(민간), 안세영(민간), 오세정(민간), 이만우(민간), 최병일(민간), 이성우(민간), 정기오(민간)
회의안건	① 2008년도 기금운용 평가결과 제출 ② 2009년도 기금 평가계획 제출 ③ 2008년도 지식경제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출연연 평가결과 제출 ④ 2009년도 지식경제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출연연 평가계획 제출 ⑤ 2010년도 성과관리계획 검토계획 보고 ⑥ 2010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안) 의결 ⑦ 2010년도 정부업무평가 포상금 지급계획(안) 의결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의결 및 접수

29) 회의개최일 : 2010. 3. 19

(출석 : √, 서면 :)

구분	내용
참석자	총 8명 참석 김현구(민간), 강근복(민간), 박은숙(민간), 오세정(민간), 이만우(민간), 최병일(민간), 이성우(민간), 정기오(민간)
회의안건	①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회 및 출연연 평가계획 제출 ② 지역일자리 창출사업 자치단체 추진실적 평가계획(안) 제출 ③ 2010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평가계획 제출 ④ 2010년 성과관리시행계획 사전검토 결과(안) 보고 ⑤ 2011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기본계획 의결 ⑥ 2009년 재정사업부문 확인·점검 계획(안) 의결 ⑦ 2009년 자체평가 실태점검 결과(안) 의결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의결 및 접수

30) 회의개최일 : 2010. 4. 16

(출석 : √, 서면 :)

구분	내용
참석자	총 9명 참석 김현구(민간), 강근복(민간), 김태우(민간), 박은숙(민간), 안세영(민간), 이만우(민간), 최병일(민간), 이성우(민간), 정기오(민간)
회의안건	① 2010년 지방공기업 평가계획 제출 ② 2008년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평가결과 제출 ③ 2009년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평가계획 제출 ④ 2009년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결과(주요 정책부문) 보고 ⑤ 행정관리역량 평가부문 조정 검토(안) ⑥ 2009년도 중앙행정기관 '행정관리역량' 실태점검 결과(안) 의결 ⑦ 2010년도 특정평가 핵심과제 선정(안) 의결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의결 및 접수

31) 회의개최일 : 2010. 6. 3

(출석 : √, 서면 :)

구분	내용
참석자	총 9명 참석 김현구(민간), 김성희(민간), 김태우(민간), 박은숙(민간), 안세영(민간), 오세정(민간), 이만우(민간), 이성우(민간), 정기오(민간)
회의안건	① 2010년도 특정평가 핵심과제 선정(안) 의결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의결

32) 회의개최일 : 2010. 7. 9

(출석 : √, 서면 :)

구분	내용
참석자	총 9명 참석 김현구(민간), 강근복(민간), 김성희(민간), 김태우(민간), 박은숙(민간), 안세영(민간), 오세정(민간), 이만우(민간), 이성우(민간)
회의안건	① 2009년도 재정사업부문 확인·점검 결과(안) 의결 ② 2010년도 성과관리시해예회 보완 결과 보고 ③ 2010년도 업무계획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 평가계획(안) 보고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의결 및 접수

33) 회의개최일 : 2010. 10. 15

(출석 : √, 서면 :)

구분	내용
참석자	총 10명 참석 강근복(민간), 이성우(민간), 정윤수(민간), 정민근(민간), 남성희(민간), 김성근(민간), 김경민(민간), 이봉주(민간), 이은국(민간), 차은영(민간)
회의안건	① 2010년 특정평가 추진계획(안) 의결 ② 2011년(2010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시계획(안) 의결 ③ 2010년(2009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결과 보고 ④ 2010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결과 제출 ⑤ 2009년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제출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의결 및 접수

34) 회의개최일 : 2010. 10. 29

(출석 : √, 서면 :)

구분	내용
참석자	총 10명 참석 강근복(민간), 이성우(민간), 정윤수(민간), 정민근(민간), 남성희(민간), 김성근(민간), 김경민(민간), 김인철(민간), 이은국(민간), 차은영(민간)
회의안건	① 2010년 국무총리실 자체평가계획 조정(안) 의결 ② 2010년 정부업무평가 포상금 지급계획 변경(안) 의결 ③ 2010년 수시현안 이행점검 결과(안) 보고 ④ 2010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정지침(안) 보고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의결 및 접수

35) 회의개최일 : 2010. 11. 26

(출석 : √ , 서면 :)

구분	내용
참석자	총 10명 참석 강근복(민간), 이성우(민간), 정윤수(민간), 정민근(민간), 남성희(민간), 김인철(민간), 김경민(민간), 이봉주(민간), 이은국(민간), 차은영(민간)
회의안건	① 2010년도 정부업무평가결과(안) 의결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의결

36) 회의개최일 : 2010. 12. 10

(출석 : √ , 서면 :)

구분	내용
참석자	총 8명 참석 강근복(민간), 정윤수(민간), 정민근(민간), 남성희(민간), 김경민(민간), 이은국(민간), 차은영(민간), 김인철(민간)
회의안건	① 2010년 정부업무평가 포상금 지급계획(안) 의결 ② 2010년 성과관리시행계획 수정(안) 검토결과 보고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의결 및 접수

37) 회의개최일 : 2010. 12. 17

(출석 : , 서면 : √)

구분	내용
참석자	총 10명 참석 강근복(민간), 이성우(민간), 정윤수(민간), 정민근(민간), 남성희(민간), 김인철(민간), 김경민(민간), 이봉주(민간), 이은국(민간), 차은영(민간)
회의안건	① 2010년도 성과관리 수준진단 결과 보고 ② 2010년(2009년도 실적) 공공기관 평가결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제출 ③ 2010년(2009년도 실적) 공공기관 평가결과(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및 기초기술연구회) 제출 ④ 2010년도(2009년도 실적) 공공기관 평가(산업기술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제출 ⑤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지역일자리사업 평가결과 제출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접수

38) 회의개최일 : 2011. 1. 7

(출석 : √ , 서면 :)

구분	내용
참석자	총 9명 참석 강근복(민간), 정윤수(민간), 정민근(민간), 남성희(민간), 김경민(민간), 이은국(민간), 차은영(민간), 김인철(민간), 이봉주(민간)
회의안건	① 2011년 정부업무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지침 의결 ② 2010년 자체평가(재정사업부문) 시행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변경(안) 조건부의결 ③ 2011년(2010년 실적) 공공기관 평가계획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제출 ④ 2011년(2010년 실적) 공공기관 평가계획(공기업, 준정부기관) 제출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및 접수

39) 회의개최일 : 2011. 1. 12

(출석 : √ , 서면 :)

구분	내용
참석자	총 9명 참석 강근복(민간), 정윤수(민간), 정민근(민간), 남성희(민간), 김경민(민간), 이은국(민간), 차은영(민간), 김인철(민간), 이봉주(민간)
회의안건	① 2011년 정부업무평가제도 시행계획(안) 의결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의결

40) 회의개최일 : 2011. 1. 21

(출석 : √ , 서면 :)

구분	내용
참석자	총 10명 참석 강근복(민간), 정윤수(민간), 정민근(민간), 남성희(민간), 김경민(민간), 이은국(민간), 차은영(민간), 김인철(민간), 이봉주(민간), 이성우(민간)
회의안건	① 2010년 자체평가 실태점검 실시계획(안) 의결 ② 2010년(2009년 실적) 공공기관 평가결과(기금) 제출 ③ 2010년(2009년 실적) 공공기관 평가결과(지방공기업) 제출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의결 및 접수

41) 회의개최일 : 2011. 2. 25

(출석 : √, 서면 :)

구분	내용
참석자	총 10명 참석 강근복(민간), 정윤수(민간), 정민근(민간), 남성희(민간), 이성우(민간), 이은국(민간), 차은영(민간), 김인철(민간), 이봉주(민간), 김성근(민간)
회의안건	① 2011년(2010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평가기간 조정(안) 의결 ② 2010년 정부업무평가 재정사업부문 확인·점검 제도 개선 및 계획안 의결 ③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평가지표 개발 시 중앙부처 의견수렴 확대계획(안) 보고 ④ 평가결과 부진 지방자치단체 '행정컨설팅' 추진계획(안) 보고 ⑤ 2011년(2010년 실적) 공공기관 평가계획 (지식경제부 소관 13개 정부출연연 및 산업기술연구원) 제출 ⑥ 2011년(2010년 실적) 공공기관 평가계획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22개 정부출연연 및 기초기술연구회) 제출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의결 및 접수

42) 회의개최일 : 2011. 3. 18

(출석 : √, 서면 :)

구분	내용
참석자	총 9명 참석 강근복(민간), 정윤수(민간), 정민근(민간), 남성희(민간), 이성우(민간), 이은국(민간), 차은영(민간), 김성근(민간), 김경민(민간)
회의안건	① 2010년(2009년 실적) 공공기관 평가결과 제출 ② 2011년(2010년 실적) 공공기관 평가계획 제출 ③ 2010년(2009년 실적) 공공기관 평가결과(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제출 ④ 2011년도 핵심과제평가 추진방향 보고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접수

43) 회의개최일 : 2011. 4. 1

(출석 : √, 서면 :)

구분	내용
참석자	총 9명 참석 강근복(민간), 정윤수(민간), 이봉주(민간), 남성희(민간), 이성우(민간), 이은국(민간), 차은영(민간), 김성근(민간), 김인철(민간)
회의안건	① 2010년 재정사업부문 자체평가 점검계획(안) 의결 ② 2010년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결과(안)(주요 정책부문, 행정관리역량부문) 의결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의결

44) 회의개최일 : 2011. 4. 15

(출석 : √, 서면 :)

구분	내용
참석자	총 8명 참석 강근복(민간), 정민근(민간), 이성우(민간), 이은국(민간), 차은영(민간), 김인철(민간), 이봉주(민간), 김경민(민간)
회의안건	① 2011년(2010년 실적) 기금 평가계획(안) 제출 ② 2011년(2010년 실적) 공공기관 평가계획(17개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제출 ③ 지방재정 건전성 관련지표 합동평가 반영 검토 보고 ④ 2011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평가 실시계획(안) 의결 ⑤ 2011년 자체평가 세부시행계획(안) 의결 ⑥ 2011년 특정평가 세부시행계획(안) 의결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의결 및 접수

45) 회의개최일 : 2011. 5. 13

(출석 : √, 서면 :)

구분	내용
참석자	총 8명 참석 강근복(민간), 정민근(민간), 김성근(민간), 이은국(민간), 차은영(민간), 김인철(민간), 이봉주(민간), 정윤수(민간)
회의안건	① 2011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계획(안) 의결 ②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 '프로젝트 경영(PM)' 반영 건의 ③ 2011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결과 보고 ④ 2011년 핵심과제 평가 매뉴얼 보고 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의결 ⑥ 정부업무평가 민간전문가 위촉장 수여계획(안) 보고 ⑦ 정책현안과제 보고 -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실태 분석 결과 ⑧ 정부업무평가위원 현장점검 계획(안) 보고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의결 및 접수

46) 회의개최일 : 2011. 6. 10

(출석 : √, 서면 :)

구분	내용
참석자	총 8명 참석 강근복(민간), 정민근(민간), 김경민(민간), 남성희(민간), 이성우(민간), 이은국(민간), 정윤수(민간), 김인철(민간)
회의안건	① 2011년 정책현안과제 이행상황 점검계획(안) 보고 ② 정책현안과제 추진현황 보고 ③ 2011년 핵심과제평가 이슈선정 결과 보고 ④ 정책현안 분석과제 중간 보고 - '장사정책 운영실태 점검·분석' ⑤ 정부업무평가위원 현장점검 계획 보고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접수

47) 회의개최일 : 2011. 7. 22

(출석 : √ , 서면 :)

구분	내용
참석자	총 7명 참석 강근복(민간), 정민근(민간), 이은국(민간), 정윤수(민간), 김인철(민간), 차은영(민간), 이봉주(민간)
회의안건	① 2011년(2010년 실적) 공공기관 평가 계획(지방공기업) 제출 ② 2010년 재정사업부문 확인점검 결과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의결 및 접수

48) 회의개최일 : 2011. 8. 5

(출석 : √ , 서면 :)

구분	내용
참석자	총 9명 참석 강근복(민간), 정민근(민간), 김성근(민간), 이은국(민간), 차은영(민간), 남성희(민간), 이봉주(민간), 정윤수(민간), 이성우(민간)
회의안건	① 2010년 R&D 사업 확인 · 점검 결과 의결 ② 정부업무 성과관리제도 발전방안 연구용역계획 보고 ③ 정책현안과제분석 - 기부금품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품 투명성 제고방안 보고 ④ 정책현안과제분석 - 대안교육 제도 운영실태 분석 결과(안) 보고 ⑤ 정책현안과제분석 - 스포츠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 분석 · 평가결과(안) 보고 ⑥ 정부업무평가위원 기상정책 현장점검계획 보고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의결 및 접수

49) 회의개최일 : 2011. 9. 2

(출석 : √ , 서면 :)

구분	내용
참석자	총 8명 참석 강근복(민간), 정윤수(민간), 김경민(민간), 이은국(민간), 차은영(민간), 이봉주(민간), 정윤수(민간), 이성우(민간)
회의안건	① 2011년 핵심과제 · 일자리창출과제 이슈선정 결과 보고 ② 정책현안과제분석 - 이륜자동차 제도 분석 보고 ③ 2011년 특정평가 '정책관리역량' 세부시행계획 변경(안) 의결 ④ 3기 정부업무평가위원회 1년간 운영현황 보고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의결 및 접수

50) 회의개최일 : 2011. 9. 30

(출석 : √, 서면 :)

구분	내용
참석자	총 11명 참석 강근복(민간), 김경민(민간), 정민근(민간), 김성근(민간), 이은국(민간), 차은영(민간), 남성희(민간), 이봉주(민간), 정윤수(민간), 이성우(민간), 김인철(민간)
회의안건	① 2011년(2010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시 결과 보고 ② 2011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정지침(안) 보고 ③ 2011년 포상금 지급계획 의결 ④ 2011년 특정평가 추진일정 보고 ⑤ 정부업무평가위원 수산자원정책 및 신재생에너지정책 현장점검 계획(안)보고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의결 및 접수

51) 회의개최일 : 2011. 10. 28

(출석 : , 서면 : √)

구분	내용
참석자	총 9명 참석 강근복(민간), 정민근(민간), 김성근(민간), 이은국(민간), 차은영(민간), 남성희(민간), 이봉주(민간), 정윤수(민간), 이성우(민간)
회의안건	① '11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정(안) 검토 결과 보고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접수

52) 회의개최일 : 2011. 11. 11

(출석 : √, 서면 :)

구분	내용
참석자	총 8명 참석 강근복(민간), 정민근(민간), 이은국(민간), 차은영(민간), 남성희(민간), 이봉주(민간), 정윤수(민간), 이성우(민간)
회의안건	① 2011년(2010년 실적) 공기업 · 준정부기관 평가결과 제출 ② 2011년(2010년 실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 출연(연) 평가결과 제출 ③ 2011년 정책현안과제분석 이행상황 점검 결과 보고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접수

53) 회의개최일: 2011. 12. 2

(출석: √, 서면:)

구분	내용
참석자	총 9명 참석 강근복(민간), 김경민(민간), 정민근(민간), 이은국(민간), 차은영(민간), 남성희(민간), 이봉주(민간), 정윤수(민간), 이성우(민간)
회의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2012년(2011년 실적) 공공기관 평가 계획(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 제출 ② 2011년(2010년 실적) 공공기관 평가결과 (지식경제부 소관 정부출연(연) 및 산업기술연구회) 제출 ③ 2011년(2010년 실적) 공공기관 평가결과(방사청 소관 국방과학연구소) 제출 ④ 2011년(2010년 실적) 공공기관 평가결과(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정부출연(연) 및 기초기술연구회) 제출 ⑤ 2011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결과 제출 ⑥ 2012년(2011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시계획(안) 의결 ⑦ 2011년 정부업무평가 보고회 개최 계획(안) 보고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의결 및 접수

54) 회의개최일: 2012. 1. 13

(출석: √, 서면:)

구분	내용
참석자	총 8명 참석 강근복(민간), 이성우(민간), 정윤수(민간), 정민근(민간), 차은영(민간), 이봉주(민간), 이은국(민간), 박미석(민간)
회의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2011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계획(안) 의결 ② 2011년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실태점검 실시계획(안) 의결 ③ 2012년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안) 의결 ④ 2012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안) 의결 ⑤ 2012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 보고 ⑥ 2011년(2010년도 실적)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결과 제출 ⑦ 2011년(2010년도 실적) 지방공기업 평가결과 제출 ⑧ 2011년도(2010년도 실적)기금 평가결과 및 2012년(2011년도 실적) 기금 평가계획(안) 제출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의결 및 접수

55) 회의개최일 : 2012. 2. 17

(출석 : √, 서면 :)

구분	내용
참석자	총 11명 참석 강근복(민간), 이성우(민간), 정윤수(민간), 정민근(민간), 차은영(민간), 이봉주(민간), 남성희(민간), 김성근(민간), 김경민(민간), 이은국(민간), 박미석(민간)
회의안건	① 2012년(2011년 실적) 공기업-중정부기관 평가계획(안) 제출 ② 2012년(2011년 실적) 교육과학기술부소관 정부출연연 평가계획(안) 제출 ③ 2012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계획(안) 의결 ④ 2012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실적 평가계획(안) 의결 ⑤ 2012년(2011년 실적) 지방공기업 평가계획(안) 제출 ⑥ 2012년 성과관리계획 검토 계획(안) 보고 ⑦ 신고포상금 분석결과 보고 ⑧ 2012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현장점검 추진계획(안) 보고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의결 및 접수

56) 회의개최일 : 2012. 3. 9

(출석 : √, 서면 :)

구분	내용
참석자	총 11명 참석 강근복(민간), 이성우(민간), 정윤수(민간), 정민근(민간), 차은영(민간), 이봉주(민간), 남성희(민간), 김성근(민간), 김경민(민간), 이은국(민간), 박미석(민간)
회의안건	① 2012년 지방재정 조기집행실적 평가계획(안) 제출 ② 2012년(2011년 실적) 방위사업청 소관 정부출연연 평가계획(안) 제출 ③ 2012년 일자리과제평가 세부시행계획(안) 의결 ④ 2012년 핵심과제평가 대상과제 선정계획(안) 보고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의결 및 접수

57) 회의개최일 : 2012. 3. 23

(출석 : √, 서면 :)

구분	내용
참석자	총 11명 참석 강근복(민간), 이성우(민간), 정윤수(민간), 정민근(민간), 차은영(민간), 이봉주(민간), 남성희(민간), 이은국(민간), 박미석(민간)
회의안건	①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2011년(2010년 실적) 평가결과 및 2012년(2011년 실적) 평가계획(안) 제출 ② 2011년도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운영실태점검 결과(안) 의결 ③ 2012년 특정평가 세부시행계획(안) 의결 ④ 2012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4월 현장점검계획(안) 보고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의결 및 접수

58) 회의개최일: 2012. 4. 13

(출석: √, 서면:)

구분	내용
참석자	총 9명 참석 강근복(민간), 김경민(민간), 이성우(민간), 정윤수(민간), 정민근(민간), 이은국(민간), 이봉주(민간), 차은영(민간), 박미석(민간)
회의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2012년(11년 실적) 공공기관 평가계획(안)-지식경제부 산하산업기술연구회 및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14개 정부출연연 ② 2011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확인점검계획(안) ③ 2011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확인점검계획(안) ④ 정책현안분석-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실태분석평가결과(안) ⑤ 2012년 핵심과제평가 민간전문가 선정계획(안) ⑥ 2012년 정책관리역량 민간전문가 선정계획(안) ⑦ 정부업무평가백서 발간계획(안)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의결 및 접수

59) 회의개최일: 2012. 5. 11

(출석: √, 서면:)

구분	내용
참석자	총 9명 참석 강근복(민간), 이성우(민간), 정윤수(민간), 정민근(민간), 차은영(민간), 남성희(민간), 김성근(민간), 박미석(민간), 이은국(민간)
회의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보조사업 운용 평가 방안(안) ② 2012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계획(안) ③ 2012년(2011년 실적)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결과(안) ④ 2012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결과(안) ⑤ 2012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5월 현장점검계획(안) ⑥ 2011년 정부업무평가 유공 포상 대상자 선정 결과(안)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의결 및 접수

60) 회의개최일 : 2012. 6. 8

(출석 : √ , 서면 :)

구분	내용
참석자	총 9명 참석 강근복(민간), 이성우(민간), 정윤수(민간), 정민근(민간), 남성희(민간), 김성근(민간), 김경민(민간), 박미석(민간), 이은국(민간)
회의안건	① 2011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확인점검 결과(안) ② 2012년(2011년 실적) 기금운용 평가결과(안) ③ 2012년(2011년 실적)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공공기관 평가결과(안) ④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안건 심의 유형 재분류(안) - 수정접수 ⑤ 2012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6월 현장점검계획(안)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의결 및 접수, 수정접수

61) 회의개최일 : 2012. 7. 25

(출석 : √ , 서면 :)

구분	내용
참석자	총 10명 참석 강근복(민간), 이성우(민간), 정윤수(민간), 정민근(민간), 차은영(민간), 이봉주(민간), 남성희(민간), 김경민(민간), 박미석(민간), 이은국(민간)
회의안건	① 2012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결과 ② 2012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결과 ③ 2012년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결과 ④ 2012년 방위사업청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결과 ⑤ 2012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결과 ⑥ 2012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9월 현장점검계획 ⑦ 2012년 상반기 정부업무평가결과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의결 및 접수, 수정접수

62) 회의개최일 : 2012. 9. 14

(출석 : √ , 서면 :)

구분	내용
참석자	총 9명 참석 강근복(민간), 이성우(민간), 정윤수(민간), 정민근(민간), 차은영(민간), 남성희(민간), 김경민(민간), 박미석(민간), 이은국(민간)
회의안건	① 정책관리역량평가 세부시행계획 변경(안) ② 국민만족도평가 세부시행계획 변경(안) ③ 2012년 특정평가 추진일정 ④ 2011년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결과 ⑤ 2012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결과 ⑥ 2012년 지방자치단체 조기집행 실적평가결과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의결 및 접수, 수정접수

63) 회의개최일 : 2012. 10. 12

(출석 : √ , 서면 :)

구분	내용
참석자	총 10명 참석 정윤수(민간), 영재호(민간), 권기현(민간), 김성근(민간), 이봉주(민간), 정민근(민간), 차은영(민간), 남성희(민간), 김경민(민간), 박미석(민간), 이은국(민간)
회의안건	① 2012년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결과 ② 2012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정(안) 검토결과
회의결과 요약	보류, 원안접수

3

전자통합평가시스템 구축·활용

가. 전자통합평가시스템의 개념 및 법적 근거

1) 개념

전자통합평가시스템은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실시되던 정부업무평가를 온라인으로 실시(평가업무시스템)하고 2007년부터 도입된 성과관리시행계획 등 성과관리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성과관리시스템)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평가업무시스템을 통해서는 다양한 평가부문별로 평가지표에 따른 실적입력과 평정이 이루어진다.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해서는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당해연도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입력하고,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진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게 된다.

2) 법적 근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시행(2006.4)에 따라 정책·사업·업무에 대한 평가과정,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평가결과를 업무의 개선, 개인의 인사, 예산, 조직 등에 반영하는 등 정부업무 평가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통합평가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게 되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3조(전자통합평가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①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통합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각 기관 및 단체가 이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전자통합평가체계는 평가과정, 평가결과 및 환류과정의 통합적인 정보관리 및 평가관련 기관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국무총리는 전자통합평가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④ 전자통합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나. 추진경과

전자통합평가시스템은 평가결과에 대한 온라인 공유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국가평가인프라구축을 행정개혁과제로 선정(2003.7)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국무조정실에 평가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세부추진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고, 국무조정실은 ‘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행정연구원)을 실시하여 정보시스템 구축방안을 최초로 마련(2004.6)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평가인프라구축추진단을 구성하여 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정부업무평가의 온라인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전자통합평가시스템 구축 기본계획을 마련(2004.12)하고, 2005년 1차 정보화사업을 통해 전자통합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을 수립(2005.6~10)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국무조정실에서는 2006년 2차 정보화사업을 통해 정부업무평가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업무시스템과 평가관련 안내, 커뮤니티 기능 등을 제공하는 평가업무 포털을 개발하였고, 2007년부터 시행하는 성과관리제도를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성과관리 ISP 수립 및 성과관리시스템의 프로토타입(Proto-Type)을 구축하였다.

2006년 12월 2차 정보화사업 완료 이후 사용자교육과 시범운영을 거쳐 2007년 2월부터 동 시스템을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2007년~2011년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2007년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하였다. 또한, 2006년 인사부문 평가 중 일부지표에 대해서 평가업무시스템을 통해 자체평가 및 확인·점검을 실시하였다. 본격적인 활용은 2007년 자체평가계획의 등록 및 검토 전 과정을 평가업무시스템을 통해서 수행

함으로써 시작되었고, 2009년까지 전자통합평가 정보화 1단계 사업기간으로 제도변경사항 및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고도화사업을 추진하였다.

1단계 사업기간동안 연도별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2007년에는 기 구축한 시스템을 변화된 제도, 지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등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고도화 하였으며, 온-나라시스템·정부기능분류시스템 등 유관시스템과 연계하여 업무효율성 제고에 노력하였다. 2008년에는 R&D평가시스템(NTIS)과 연계하였고, 상시 자가학습이 가능하도록 온라인교육 콘텐츠를 마련하고 위원회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업무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2009년에는 각 부처 성과관리시스템 연계 구축을 위한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핵심과제 및 녹색성장 특정평가 부문을 추가 하는 등 제도변경사항을 반영하였다.

2010년부터는 전자통합평가 정보화 2단계로 부처 자체 성과관리를 지원하는 것을 중점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다. 2단계 연도별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2010년에는 2009년에 수립된 부처 성과관리 연계구축 전략에 따라 부처 자체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사용자 맞춤형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다. 2011년에는 부처 특성에 맞게 성과관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자체성과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였으며, 유관시스템과의 연계기능을 개선하고 제도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등 성과관리 및 평가업무를 지원하였다.

2012년에는 전자통합평가시스템을 통해 특정평가 부문별로 부처 실적등록을 지원하였다. 또한 제도변경사항을 적시에 반영하고 부처 자체성과관리시스템 확대 보급, 보고서 기능 향상 등 기능개선을 위해 고도화 사업을 추진 하였다.

다. 전자통합평가시스템의 구성 및 주요기능

1) 성과관리시스템

성과관리시스템은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주요 기능으로는 중앙행정기관의 임무, 비전, 일반현황 등 전략계획 개요, 전략목표, 성과목표, 환류 등 관련계획을 입력 및 조회할 수 있으며, 당해연도의 정책추진방향, 일반현황, 관리과제,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별 상세내용을 입력 및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주요 정책, 재정사업, 행정관리역량 등 자체평가 부문의 평가대상 관리과제에 대해 반기별 추진계획대비 추진실적을 자체점검 할 수 있는 기능과 평가총괄관련기관의 이행상황 확인·점검이 가능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표1〉 성과관리시스템 주요 기능

구분	메뉴	주요기능
성과관리 전략계획	전략계획개요	임무, 비전, 일반현황 등 전략계획의 개요 등록
	목표체계	전략목표, 성과목표를 등록
	전략목표	전략목표에 대한 상세내용을 등록
	성과목표	성과목표에 대한 상세내용을 등록
	성과지표	성과목표에 대한 성과지표 등록 및 관리
	전략계획 조회	시스템에 입력한 전략계획 내용을 조회
성과관리 시행계획	시행계획개요	당해년도 정책추진방향, 일반현황 등 개요 등록
	목표체계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등록
	성과목표	성과목표의 상세내용을 등록
	과제별 설명자료	관리과제별 상세내용을 등록
	성과지표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및 성과지표 상세내용 등록 및 이력관리
	환경변화에 따른 수정	환경변화에 따른 수정단계에서 시행계획 수정 등록
	시행계획 조회	시스템에 입력한 시행계획 내용을 조회
	자체점검	시행계획 추진계획대비 추진실적 자체점검
	분석보고서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자체점검,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보고서 출력
업무계획	과제등록	업무계획과제 및 분기별 추진계획 등록
	실적등록	분기별 추진계획에 대한 실적등록
	과제점검	분기별 실적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

2) 평가업무시스템

평가업무시스템은 오프라인으로 실시되던 정부업무평가를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평가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주요 기능으로는 자체평가와 특정평가의 진행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평가현황관리 기능,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계획 작성 및 검토, 자체평가시행, 평가총괄관련기관의 확인·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특정평가의 경우 핵심과제, 일자리과제, 녹색성장과제, 정책관리역량, 규제개혁, 정책홍보, 국민만족도, 분야에 대해 온라인평가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구현하였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및 특정평가결과, 등을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조회 및 출력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표 2〉 평가업무시스템 주요 기능

구분	메뉴	주요 기능
자체평가	평가현황	자체평가 및 특정평가 진행현황 조회
	자체평가계획관리	자체평가계획 입력, 조회 및 수정 평가총괄기관의 자체평가계획 검토 기능
	자체평가시행	평가지표별 평가근거자료 입력 자체평가위원의 자체평가 시행
	확인·점검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확인·점검 기능
	재평가	재평가 대상과제에 대해 재평가 실시
	개선사항	자체평가 확인·점검결과 지적된 개선사항 모니터링 기능
	평가위원관리	부처별 자체평가위원 관리
특정평가	핵심과제	중앙행정기관에서 평가지표별 실적을 입력하고, 이를 근거로 온라인 평가 실시
	일자리과제	
	녹색성장과제	
	정책관리역량	
	정책홍보	규제정보화시스템으로부터 평가결과 연계
	규제개혁	
	국민만족도	

3) 평가업무 포털

평가업무 포털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관리, 사용자관리, 평가업무시스템과 성과관리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한 로그인, 공지사항, 평가제도 및 시스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자와의 커뮤니티 기능 등을 지원한다.

4) 유관시스템 연계 기능

성과관리계획상 관리과제, 추진계획대비 추진실적 및 근거자료와 평가대상과제에 대한 평가지표별 실적 및 근거자료 입력 시 현재 중앙행정기관에 도입된 온-나라시스템, 정부기능분류시스템에 동일한 자료의 중복입력을 방지하고 업무효율성과 시스템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스템 간 연계를 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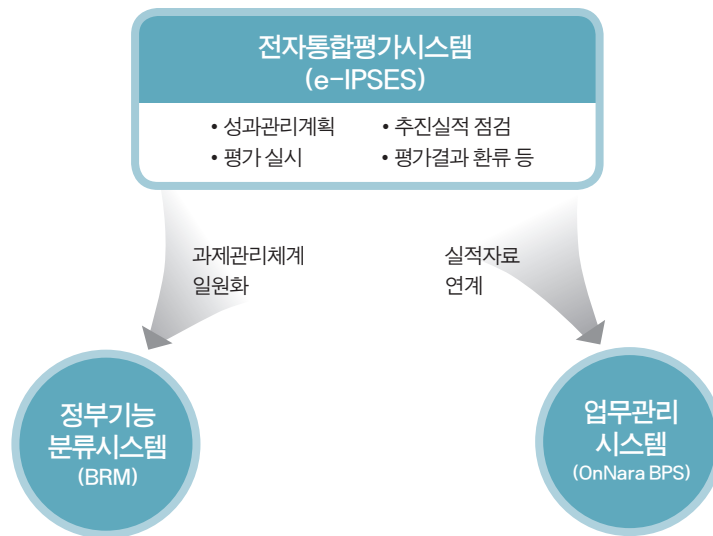
또한, 규제정보화시스템과 연계하여 규제개혁부문에 대한 평가결과를 전송받고 있으며,

국무총리실 내부 포털과 단일로그인 기능을 구축하여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관리과제 목록을 전송하고 문서카드를 실적으로 등록하는 연계과정은 다음과 같다.

- ① 중앙행정기관 담당자는 전자통합평가시스템의 성과관리시스템에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시행계획을 입력한다.
- ② 전자통합평가시스템의 성과관리시스템에 입력된 관리과제명을 정부기능분류시스템에 전송한다.
- ③ 정부기능분류시스템은 관리과제별 단위과제를 매핑하여 온-나라시스템에 전송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 담당자는 온-나라시스템에서 관리과제별 문서관리카드를 활용하여 실적 및 근거자료를 축적한다. 전자통합평가시스템의 성과관리시스템, 평가업무지원시스템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 ⑤ 중앙행정기관 담당자는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대비 실적 및 평가지표별 실적에 해당하는 온-나라 시스템의 문서관리카드를 전자통합평가시스템과 연계하여 제시한다.

〈표3〉 시스템 간 연계체계



라. 전자통합평가시스템의 운영 효과

1) 평가업무의 효율성 향상

전자통합평가시스템을 통해 제반 평가업무를 온라인화하고 평가자료를 지식정보로 구축하여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정부업무평가가 가능해졌다. 또한, 정보시스템을 통해 평가 지표별 실적과 근거자료를 보고 평가를 하게 됨으로써 평가업무를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평가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평가절차별로 평정의 근거자료, 검토의견 등이 DB로 구축되어 관리되는 등 평가처리 전 과정을 기록·관리함으로써 평가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

3) 성과관리 기반 강화

기존의 부문별로 분산·운영되던 단편적 성과관리 방식이 성과관리계획을 기반으로 개선되어 주요 정책, 재정, 조직, 인사, 정보화 등 기관의 업무전반이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해 통합된 형태로 관리되어 체계적인 성과관리 및 환류를 통해 정부업무 추진의 결과를 부서 및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인프라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4) 평가 및 성과관리 관련 자료작성 부담 경감

시스템 이용이 활성화되고, 유관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평소에 작성한 업무실적을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제출하고 평가받을 수 있게 되며, 동일한 자료를 중복 작성할 필요성이 감소하는 등 평가관련 자료작성 및 제출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2008~2012년 특정평가결과 보고서

2008년 특정평가결과 보고서

규제개혁 평가결과

I. 평가개요	398
II. 평가결과 총평	399
III. 단계별 평가결과	400
IV. 평가성과 및 반성	404
V. 향후 개선·보완 필요사항	404

국민만족도 평가결과

I. 국민만족도 평가개요	404
II. 주요정책 만족도 평가결과	406
III.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평가결과	410
IV. 향후 계획	413

2009년 특정평가결과 보고서

I. 평가개요	414
II. 부문별 평가 결과	414
III. 향후 계획	453

2010년 특정평가결과 보고서

I. 평가개요	454
II. 부문별 평가 결과	455
III. 향후 계획	491

2011년 특정평가결과 보고서

I. 평가개요	492
II. 부문별 평가 결과	493
III. 향후 추진계획	539

2012년 특정평가결과 보고서

I. 평가개요	540
II. 부문별 평가결과	541
III. 향후 추진계획	587

2008년 특정평가 결과 보고서

규제개혁 평가결과

I. 평가개요

□ 평가 목적

- 새 정부 1년 동안 국정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추진한 규제개혁 원년의 성과를 결산하고 향후 규제개혁 추진에 반영
- 항목별 우수·미비점을 부처별로 비교함으로써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계기로 활용

□ 평가 방향

- 규제를 받는 수요자 입장에서 성과중심으로 실적을 평가
 - 규제개혁 추진에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평가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규제개혁 평가단」을 구성·운영
- '몇 건 개선했나' 보다 '얼마나 좋아졌느냐'로 평가의 잣대 전환
 - 평가항목 중 규제개혁 성과의 비중을 강화하고, 일반국민, 전문가 등 규제개혁 수요자 대상 만족도 조사

□ 평가대상 기관

- 40개 중앙행정기관 중 등록규제, 규제개혁과제나 신설·강화규제가 없는 8개 기관을 제외한 32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
 - ※ 제외 : 총리실, 법제처, 권익위원회, 검찰청, 조달청, 행복도시건설청, 통계청, 농진청

구분	기관명
부·처단위(18개)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청단위(14개)	국가보훈처, 국세청, 관세청, 병무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방위사업청

□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 (평가방법)항목의 성격에 따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
 - 규제개혁 과제 발굴율, 이행율, 행정조사 정비율 등 정량적 항목은 평가 산식에 의거 점수 산출
 - 규제개혁 효과, 과제 발굴의 적절성 등 정성적 항목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규제개혁평가단에 의한 평가 실시
 - 고객만족도 및 규제영향분석의 충실성에 대한 평가는 전문연구기관(리서치 기관, 한국행정연구원)을 활용
- (평가항목)규제개혁 과제발굴, 신설·강화 규제의 적절성, 이행실적과 효과, 고객만족도로 크게 나누어 평가
 - 계획과 집행보다는 산출과 결과 측면에 많은 비중

〈평가항목과 배점〉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배점)	측정기준
계획(15)	1. 추진기반의 적실성(15)	1-1. 규제개혁 과제발굴의 적극성(15)	○규제개혁과제 발굴율(10) ○과제발굴의 적절성 및 적극성(5)
집행(20)	2. 시행의 적정성(20)	2-1. 신설·강화 규제의 적절성(10)	○규개위 개선권고율(6) ○규제지침준수정도(4)
		2-2. 규제영향분석의 적절성(10)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의 충실성(5) ○규제개혁과정에서 의견수렴 정도(5)
산출/결과(65)	3. 규제개혁 성과(45)	3-1. 규제개혁과제 이행실적(15)	○규제개혁과제 이행율(10) ○규제개혁과제 이행의 충실성(5)
		3-2. 행정조사 정비실적(15)	○행정조사 정비율(10) ○행정조사 운영내실화 노력도(5)
		3-3. 규제개혁 효과(15)	○규제개혁효과(15)
	4. 규제개혁 만족도(20)	4-1. 규제개혁 고객만족도(20)	○수요자·전문가그룹 만족도(20)

II. 평가결과 총평

- '08년 규제개혁은 경제살리기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을 바탕으로 규제개혁에 높은 국정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기존 규제를 획기적으로 정비
 - 과거 정부에서 다루지 못했던 기업·주택·토지이용 관련 핵심 정책성 규제를 포함하여 총 1,795건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
 - 등록규제의 34% 수준이며, 특히 하반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과제 발굴
 - 법령 뿐 아니라 관련되는 예산, IT 기술, 제도 등 근본적 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908건의 규제를 정비(계획 1,249건 대비 73%)
 - 국회 계류된 95개 규제개혁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완료된 규제개혁과제는 1,202건
 - '0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행정조사 정비도 전체 행정조사의 20% 수준을 정비함으로써 기업 부담 감축에 일조
 - 기업 환경에 걸림돌이 되는 신설·강화 규제는 가급적 억제하고, 국민의 생명·안전 등과 관련된 사회 부문의 신설·강화 규제는 규제의 품질 제고와 실효성 확보에 주력
 - ⇒ 규제개혁 만족도가 61.9점으로 '07년 조사결과(58.8점) 대비 3.1점 상승하였으며, 규제개혁 종합점수도 66.9점으로 '07년(63.5점) 보다 3.4점 상승
- 다만, 규제개혁 이행을 위한 법률안의 처리지연 등으로 규제개혁 효과가 충분히 가시화되지 못한 측면
 - 금융위기 등 여건변동과 이해관계집단 반대 등으로 추진이 중단되거나 지연된 규제개혁 과제들도 일부 존재
 - 또한, 규제영향분석, 규제 일몰제,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등 규제의 합리화와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
- 기관별로는 부 단위 기관은 평균 68.6점, 청 단위 기관은 평균 64.7점으로 부 단위 기관이 다소 높게 나타남
 - 부 단위에서는 금융위원회,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이 우수하고, 청 단위에서는 관세청,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이 우수

〈기관별 평가(종합)〉

(가나다 순)

구분	부 단위	청 단위
우수	금융위원회, 국방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관세청,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농림수산식품부, 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기상청, 경찰청, 국세청, 문화재청, 병무청, 소방방재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미흡	문화체육관광부, 여성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Ⅲ. 단계별 평가결과

- 평가단계별로는 계획과 집행단계인 규제개혁 과제발굴의 적극성, 신설·강화 규제의 적절성은 양호한 반면,
 - 규제개혁과제 이행실적과 효과 등 산출·결과 부분은 상대적으로 아직 낮은 것으로 평가

〈정책단계별 평가결과〉

* 각 세부항목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구분	계획	집행	산출·결과
평가항목	추진기반의 적실성	시행의 적정성	규제개혁 성과, 만족도
평가지표	과제발굴의 적극성 1개	신설·강화규제의 적절성 등 2개	규제개혁과제 이행실적 등 4개
'08년도 평가결과	84.4점	74.7점	59.6점
'07년도 평가결과	67.3점	63.2점	62.6점

1 계획단계

- 계획단계의 평가결과는 평균 84.4점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핵심 정책성 규제개혁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한 것으로 평가
- 추진기반의 적실성 : 규제개혁과제발굴의 적극성
 - 경제계·지자체 건의, 국민의견 수렴, 현장확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총 1,795건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
 - 기업환경 개선과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경제계의 건의를 대폭 수용(경제단체 건의과제가 전체의 37%인 673건을 차지)
 - 국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의 해소와 개선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한 과제 발굴에 주력(자치단체 건의과제는 전체의 9%인 162건을 차지)
 - 개혁과제 발굴은 일회성이 아니라 경제단체, 지자체 등으로 부터 건의를 받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과제 수가 누적적으로 증가
 - * '08.4월 : 815개 → 6월 : 1,115개(300개 ↑) → 9월 : 1,583개(468개 ↑) → 12월 : 1,795개(212개 ↑)

주요 사례

- 현장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기 위해 「역지사지 현장기동대」 등을 구성하고, 민간전문가와 지자체 현장근무자로 규제개혁워킹그룹을 구성, 4월 이후 140여개 과제를 추가 발굴(보건복지가족부)
- 민원민발 규제 개선, 자치단체의 인허가 권한 확대 추진 (국토해양부)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건축물 높이 일률적 규제 폐지
 - 특별시장·광역시장이 도시기본계획을 국토부 장관 승인 없이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계획권 지정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
- 등록규제수가 많지 않음에도 여권 발급기관 확대·분산, 여권대행사무 기관 증설 등 국민생활 편의를 위한 과제를 적극 발굴(외교통상부)
- 기업환경정책협의회 구성 및 Hot-Line 구축으로 기업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개혁 과제 발굴(환경부)
- 민관 합동 식약규제합리화위원회, 식약규제합리화포럼을 통해 과제 발굴과 이행실적 점검(식품의약품안전청)

- 핵심 정책성 과제를 포함함은 물론, 행정규제기본법상 등록 대상이 아닌 규제에 대한 개혁과제까지도 폭 넓게 발굴
 - 대기업 집단 규제의 합리적 개편, 수도권 규제 합리화, 한계농지의 소유 및 거래제한 폐지, 주택건설 규제 합리화 등
 -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신규 펀드 설정시 준법감시인 확인서 첨부무 폐지 등 금융 분야의 비법규적 규제 폐지 등
 - 다만, 일부에서 실적이 치중된 나머지 건수 위주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는 경우도 발생
 - 발굴과제를 모두 완료하였으나 과제의 범위가 협소하고 과제별 파급효과가 낮은 경우
- 상당수의 부처가 규제완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하여 보완책을 함께 마련·시행 중

주요 사례

- 금융규제 완화에 상응하여 사후적인 금융감독과 소비자 보호관련 규제의 강화·정비도 함께 추진(금융위)
- 상수원 상류지역 공장입지 규제 적정성 연구 등 전문 연구용역 수행, 시범사업 실시 및 운영지침 배포 등을 통한 집행력 확보(환경부)
- 소비자 안전 기준은 높이고 절차적 규제를 폐지하며, 규제개혁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자율규제와 사후관리 강화(식약청)

2 집행단계

□ 집행단계의 평가결과는 평균 74.7점으로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비교적 적절하게 규제가 신설·강화된 것으로 평가

□ 신설·강화규제의 적절성

- 새로운 산업의 시장질서 확립 및 국민의 생명, 건강, 환경 보호 등을 위해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하여 엄정한 규제 심사를 이행
 - 규제개혁위원회는 935건의 신설·강화 규제에 대하여 심사하였으며, 239건의 중요규제 중 122건(51%)에 대해 철회·개선 권고
 -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이 강조됨에 따라 경제 분야의 신설·강화 규제가 사회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적었고, 신설되는 경우에도 철회 권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

〈신설·강화 규제심사 결과〉

단위 : 규제 수

구분	등록 규제수	심사규제수			심사결과		
		비중요규제	중요규제	계	철회	개선권고	계
합계	5,190	696	239	935	18	104	122
경제	2,975	320	94	414	12	47	59
사회	2,215	376	145	521	6	57	63

- 각 부처는 규제개혁위원회 권고 이행 및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절차적인 요건은 대체로 준수하고 있는 반면,
 - 자체 규제가 개선·철회·부대권고 없이 서면심의를 의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일부 노정
 - 네거티브 규제방식, 일몰제 설정, 우회적 규제신설에 대한 대응 등 규제의 합리화와 품질제고를 위한 노력은 전반적으로 부진
 - 부처 당 네거티브 방식 규제적용은 평균 1.5개, 일몰제 설정은 평균 0.67개, 의원입법을 통한 우회적 규제신설 대응 평균 0.6회

주요 사례

- 네거티브 규제방식 적용 : 수질보전을 위해 지정된 수변구역에서의 제한행위를 한정(폐수배출시설, 가축분뇨시설, 식품접객업등) (환경부)
- 일몰제 적용 :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 제정시 장외파생상품 업무를 위한 영업용 순자본 비율 유지 요건에 대해 3년간의 존속기한 설정(금융위원회)

□ 규제영향분석의 적절성

- 규제영향분석은 전반적으로는 '07년에 비해 다소 향상되었으나 비용·편익분석 등은 중요규제의 경우에도 아직 미흡한 측면
 - '08년 전 부처 규제영향분석 평균점수는 61.6점(100점 기준)으로 '07년 평균점수 57.2에 비해 4.4점 상승
 - 규제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부분은 상대적으로 충실히 작성되고 있으나 비용·편익분석 등 그 외 항목은 형식적으로 작성되는 경우도 다수
 - 집행단속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발생하는 규제집행력 약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행상 예상 문제점'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필요
 - 규제 일몰제 적용을 강화하기 위하여 '규제존속기한' 설정항목에 대해서도 보다 엄격히 심사할 필요

주요 사례

-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기본요건 및 특허기간 갱신 등과 관련, 외부 전문가에게 비용·편익분석을 의뢰하여 분석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규제와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관세청)
-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중개업자의 주택거래 신고 등과 관련, 비용·편익분석 및 이해관계자 협의를 충실히 수행(국토해양부)

3 산출/결과 단계

□ 산출/결과 단계 평가결과는 평균 59.6점으로 규제개혁 과제 관련 주요 법률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등에 기인하여 규제개혁의 효과가 가시화 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

□ 규제개혁과제 이행실적과 효과

- 연내 완료대상 1,249건 중 908건(73%)을 완료하였으며, 기업환경 개선과 국민생활 분야의 핵심적인 과제들을 고루 추진

주요 사례

주요 과제	조치 사항	주요 성과
1] 기업환경 개선		
•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 (국토해양부, 중점)	• 산업단지 특례법 제정(6.5)	• 산업단지 지정 인허가절차 및 기간 간소화(2~4년→6개월)
•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국방부, 중점)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공포 시행(9.22)	• 국민재산권 관련 불편 완화 • 민간인 통제선을 군사경계선으로부터 15→10km로 축소 등
• 농업진흥지역 해제절차 간소화 (농림수산식품부)	• 농지법 시행령 개정(6.5)	• 택지·산업단지 개발사업 기간 단축 • 농업진흥지역 해제 소요기간 약 30일 단축(60→30일)
•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 규제개선 (환경부, 중점)	• 고시 개정(12.4)	•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은 상수원 상류 입지규제 완화
•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조정 (공정위, 중점)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6.25)	• 대규모 기업집단 대폭 축소 및 기업결합 신고에 대한 부담경감
• 금융투자업 인가 등록단위 세분화 및 자본금 요건 완화 (금융위)	•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 제정(7.29)	• 인가, 등록단위가 세분화 되고 자본금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진입이 확대
• 외국인 투자 이행조건 규제완화 (지식경제부)	• 외국인 투자지역 운영지침 개정(7.23)	• 외국인 투자 촉진
•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환자소개, 알선, 유인 허용 (보건복지가족부)	•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09.1.8)	• 해외환자유치 활성화
• 공장설립과 건축허가절차의 통합 (국토해양부)	•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08.12.11)	• 공장설립절차 간소화
2] 국민생활 편의 제고		
• 주택전세보증금 우선변제 금액 상향조정 (법무부)	• 주택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8월)	• 임대차 제도개선으로 서민생활 안정 도모
• 양한방 협진체계 구축 (보건복지가족부)	•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09.1.8)	•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방송 통신 경쟁 촉진 (방송통신위원회, 중점)	• 「인가역무 결합판매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심사 기준 및 절차」개정(5.26) •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 기준 고시」 개정(6.4)	• 가격 할인폭이 큰 결합상품 출시로 통신비용 10~20% 절감 효과 • 이용자의 사업자 선택권 제고 및 가계통신비 인하 유도
• 병역의무 해당자 출국절차 간소화 (법무부, 병무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7.3)	• 병역의무자 6만여명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약 30분/1명)
• 민원구비서류 감축 (행정안전부, 중점)	• 공동이용시스템 구축 완료(8.31)	• 제출서류 약 2억9천만통 감축시 약 1조8천억원 절감
• 여행자 휴대품 통관시 세금 사후납부 제도 확대(관세청)	• 여행자 휴대품 세금 사후납부제도 확대운영 방안 수립 시행(7.29)	• 여행자 휴대품 통관시간 건당 10분 단축, 일반여행자 부담 등 2억원 절감

- 다만, 규제개혁 과제 관련 주요 법률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여 규제개혁의 효과가 가시화 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
 - 기업 투자환경 개선과 국민생활 편의 제고를 위한 주요과제의 이행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계류 중
 - * △공정거래법(출생제 폐지, 동영명령제 도입), △은행법, 금융투자회사법(금산분리 완화) 등 95개 법률안이 국회 계류 중('09.1.13기준)
 - 또한, 금융위기, 이해관계집단 반대 등 여건변동으로 중단되거나 연내 미완료된 과제들도 일부 존재(180여건, 1.4%)
 - * 금융위기로 자산유동화에 대한 감독필요성이 제기되어 자산유동화법 개정 중단, 이해관계집단 반대로 슈퍼 등 약국의 판매가능 의약품확대 중단

□ 행정조사 정비실적

- 행정조사 기본법에 의거하여 '0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행정조사 정비는 전체 행정조사의 20% 수준을 정비하는 등 양호한 실적
 - 415건의 행정조사 중 80건(19%)의 행정조사를 정비하고, 다수의 관련 개별규정 등을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한 원칙에 부합하도록 정비
 - 산업·제조업 분야 통계조사 등 14건의 행정조사를 통합·폐지하고, 보훈대상자 고용현황 조사서 감축 등 40건의 조사기준을 완화

〈정비유형별 행정조사〉

유형	건수	사례
통합·폐지	14건	산업·제조업 분야 통계조사,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초과부담금 대상시설 점검 등
기준완화	40건	보훈대상자 고용현황 조사서 작성 감축
공동조사	8건	비임상(동물) 시험기관 실태 합동조사
자율관리체제 전환	18건	해양오염 방지시설 점검을 자율점검 보고서로 대체

- 다만, 기업들에게 상대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제 분야의 핵심적인 행정조사의 정비가 다소 미흡
 - 식품 안전(쇠고기문제, 멜라민 파동 등)에 대한 사회적 문제 제기로 동 분야의 행정조사 정비 추진에도 일부 한계
 -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일부 부처의 경우 행정조사 운영계획에 일부 조사가 누락

□ 규제개혁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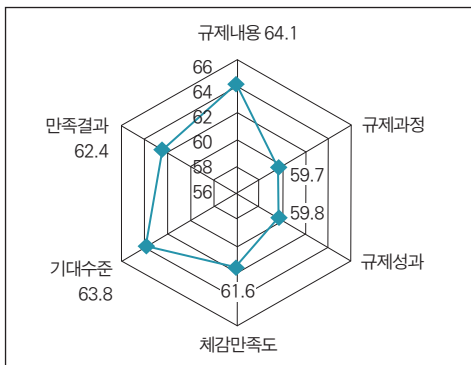
- '08년도 규제개혁 종합만족도는 61.9점으로 '보통'(50점)을 상회하여 '약간만족'(66.67점)에 접근한 수준
 - '07년 조사결과(58.8점) 대비 3.1점 상승하였으며, 특히 일반국민의 만족도가 크게 상승(4.7점 상승)
- 대상별로는 전문가의 만족도가 63점으로 일반국민(59.5), 내부고객(60.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

〈조사대상별 연도별 만족도 조사결과〉

구분	일반인				전문가				내부고객			종합			
	'06년	'07년	'08년	증감	'06년	'07년	'08년	증감	'07년	'08년	증감	'06년	'07년	'08년	증감
전체	58.2	54.8	59.5	▲4.7	67.7	63.0	66.3	▲3.3	-	60.7	-	62.7	58.8	61.9	▲3.1

- 항목별로는 규제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규제개혁에 대한 기대수준과 민원제기 감소 등 만족 결과도 높게 평가
- 다만, 기관간 업무협조, 의견 수렴, 정책집행 신속성 등 규제과정에 대한 만족도(59.7점)와 규제성과 만족도(59.8점)는 상대적으로 저조

〈항목별 만족도 조사결과〉



구분	점수
규제내용(내용 합리성, 실효성)	64.1
규제과정(의견수렴정도 등)	59.7
규제성과(양적 질적 성과만족도)	59.8
체감만족도(절대상대체감만족도)	61.6
규제개혁 기대수준(부처별)	63.8
규제개혁 만족결과(민원제기감소)	62.4
평균	61.9

IV. 평가 성과 및 반성

〈평가 성과〉

- 기계적 건수 등 실적 보다는 성과 위주의 평가 실시
 - 평가항목 중 규제개혁 성과의 비중을 강화하고, 법령 정비실적 보다는 이로 인한 실질적 성과를 평가
- 각 부처가 새로운 규제개혁방향을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유도
 - 규제개혁과제의 적극적 발굴을 유도하고, 네거티브 규제방식 적용, 일몰제 적용정도 등 규제 합리화에 대해서도 평가
- 규제개혁 평가에 수요자의 시각을 최대한 반영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경제단체 등 민간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규제개혁 평가단」을 구성·평가를 실시
 -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 항목을 점수에 반영(20점)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유도

〈평가 반성〉

- 부처의 여건에 따른 차이가 미 반영
 - 규제 수가 많은 기관들과 규제의 수가 거의 없는 기관들(예: 외교통상부등) 간에 동일한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를 실시
 - 규제 수가 적은 기관의 경우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기 어렵고, 특히 파급효과가 큰 중점관리과제의 발굴은 더욱 어려운 실정
- 결속치가 많은 항목으로 인한 점수 왜곡
 - 금년에 새로 평가항목으로 들어간 행정조사는 전체 배점은 총 15점으로 큰 편이나, 32개 기관 중 15개 기관만이 해당되어 전체 점수를 왜곡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

V. 향후 개선·보완 필요사항

- 평가결과의 활용
 - 우수한 점은 각 부처가 상호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평가결과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규제개혁의 성과와 신실·강화 규제의 품질제고 노력 강화
 - 각 부처가 차질없이 규제개혁 과제를 완료하고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 점검을 실시
 - 새 정부 규제개혁방향 등을 반영하여 개정('08.12월)된 규제영향분석이 충실히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규제심사 시 일몰제, 집행상 예상문제점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실시
 -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포상 시 평가결과를 최대한 반영
- 평가방법상 미비점 보완
 - 행정조사는 결속치가 많아 전체 점수를 왜곡시킬 수 있으므로 별도 항목으로 하기 보다는 정비를 추진한 기관에 대한 가점항목으로 전환
 - '규제개혁 이행율' 항목 중 중점관리과제의 이행부분도 별도 배점을 두기 보다는 중점과제 이행 부처에 대한 가점으로 전환
 - 일부 부처에만 적용되는 중점관리과제 이행을 배점이 일반과제 이행을 배점과 지나치게 큰 차이가 있어 중점과제를 발굴하기 어렵지만 충실하게 일반과제를 이행한 부처에 원천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개선
 - * 30대 중점관리과제 이행율 : 50%, 부처자체 중점관리과제 이행율 : 30%, 일반과제 이행율 : 20%

국민만족도 평가결과

I. 국민만족도 평가 개요

- 평가목적
 - 정부 정책의 최종적 고객인 국민이 직접 평가한 만족도 결과를 반영·활용하여 민의에 입각한 정책 추진을 도모
 - 전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통해 대국민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유도

□ 평가대상 기관(39개)

구분	기관명
부단위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19개)
청단위	법제처, 국가보훈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대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기상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행복도시건설청, 해양경찰청(20개)

- 40개 중앙행정기관 중 대민업무나 고유정책·사업이 적은 국무총리실 제외
- 주요정책 만족도조사 경우, 대검찰청은 법무부 검찰국 소관과제 평가로 같음하되 평가결과는 기관별 보고서에 포함

□ 조사표본 및 평가대상 과제

- 주요정책 만족도

조사 대상자	모집단	표본	평가대상기간
일반국민	전국의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제주도 및 도서지방 제외)	총 4,960명 (16개 책형×310명)	'08.1.1~9.30
전문가	기관별 ① 자체평가위원, ② 정책고객(PCRMDB)중 교수·연구원, ③ 자문위원, ④ 관련분야 전공 교수와 학회·연구단체 종사자	총 1,900명 (38개 기관×50명)	
내부고객	평가대상 정책의 기획/수립/집행과정에 참여한 협조부처 및 기관의 공무원(관계부처, 소속기관, 산하단체 등)	총 1,140명 (38개 기관×30명)	

- 16개 책형은 총 95개 전략목표를 산업경제·사회문화·국가관리 세 분야로 무작위 혼합(1개 책형은 5~6개)하여 한 응답자의 반응이 특정분야에 치우치지 않도록 함
- 평가결과의 조기환류를 위하여 평가대상기간은 정책설명문 및 모집단 작성(10월), 설문조사 및 결과보고서 작성(11~12월) 등 추진기간을 감안하여 설정
 - 평가대상 과제는 '08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에서 총 95개 전략목표(부단위 3개, 청단위 2개)를 선정
 - 일반국민은 전략목표에 대해, 전문가는 전략목표 하위의 성과목표에 대해, 내부고객은 기관의 정책수행 일반에 대해 설문

-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구분	모집단	표본	평가대상기간
일반민원	중앙행정기관 분청 및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민원접수대장에 기록된 민원인(방문·서신·전화)	일반민원 및 인터넷민원 모집단 구성 비율에 비례하여 각 기관별로 250명 표본을 추출하여 총 9,750명 대상으로 조사	'08.1.1~9.30
인터넷민원	국민신문고, 중앙행정기관 분청 및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신청한 민원인		

□ 평가방법 및 항목

- 설문조사는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민간 전문조사기관에 위탁 추진
 - 각 설문항목에 대하여 7점 리커트 기술(記述)척도(descriptive scale)에 따라 응답토록 조사 설계

〈7점 리커트 기술척도〉

'매우 불만'	'불만'	'약간 불만'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평가항목

- 주요정책 만족도

평가항목		평가지표(세부 설문내용)
항목만족도 (70%)	민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렴도)정책수립·집행과정에서 고객의 의견을 수렴한 정도 • (투명성)정책수립·집행과정의 공개를 통한 정책 협조노력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목표 및 하위 정책수단 등 정책내용이 적절한 정도
	대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관성)정책환경의 변화를 극복하고 계획대로 집행된 정도 • (환류성)정책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을 시정·보완한 노력
	효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이 의도하는 성과(계량 및 비계량)가 나타난 정도
체감만족도(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정책 전반에 대한 직관적·총체적 만족도

-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평가항목		평가지표(세부 설문내용)	
항목만족도 (70%)	접근·편의성	(인터넷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민원신청 웹페이지 접근 용이성 및 초기 안내의 명료성 • 인터넷 민원신청 서식, 입력해야 할 정보량, 절차의 간편성 등
		(일반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공무원과의 면담·통화의 용이성 및 안내의 적합성 • 일반 민원신청 서식, 구비서류의 양, 절차의 간편성 등
	신속·정확성	(인터넷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시스템 상 업무처리의 신속성 등 민원서비스 처리시간 • 온라인시스템 상 처리내용 및 절차의 정확성 및
		(일반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 신속성 및 민원서비스 처리시간 • 담당공무원 민원처리의 정확성 및 능숙도
	대응·환류성	(인터넷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처리과정에 관해 제공되는 정보나 검색 가능성 • 불편사항들에 대한 문제제기나 건의에 대한 수용태도
		(일반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공무원의 친절도 • 민원처리의 진행 및 처리결과에 대한 통보방식
	신뢰·공정성	(인터넷 및 일반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처리결과에 대해 제시된 근거나 이유의 합리성 • 민원업무처리의 신뢰성·공정성
	체감만족도(30%)		(인터넷 및 일반민원)

○ 종합만족도 산정방법

- 주요정책 만족도

- ① 기관별로 일반국민과 전문가 각각에 대해 항목만족도와 체감만족도를 70%, 30%의 가중치로 만족도 평균을 산출
 - ② 기관별로 일반국민과 전문가의 만족도 평균을 각각 70%, 30%의 가중치로 하여 평균값 도출
 - ③ 위에서 도출된 일반국민·전문가 평균을 90%, 내부고객의 평균을 10%로 가중치를 두어 기관별 종합만족도 점수를 산출
- 단, 법제처, 조달청, 통계청 등 지원기능이 강한 기관은 내부고객의 비중 20%

-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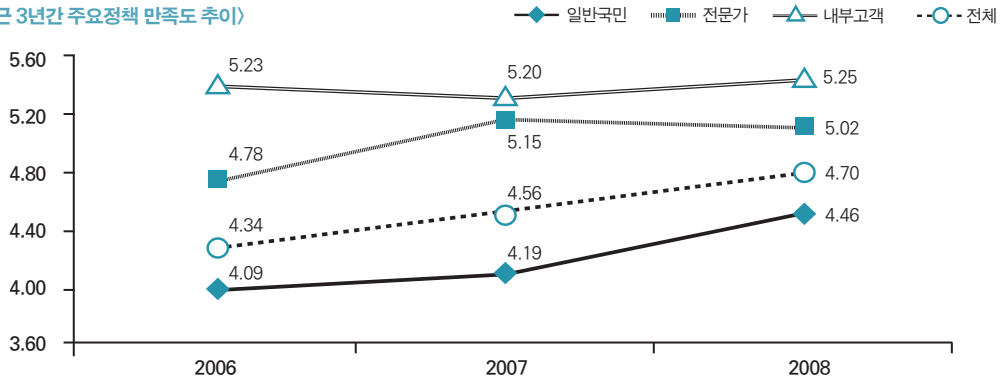
- ① 기관별로 인터넷민원과 일반민원 각각에 대해 항목만족도와 체감만족도를 70%, 30%의 가중치로 만족도 원점수를 산출
- ② 고충·고질민원 등 부처간 소관민원의 상대적 난이도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기관별 민원난이도를 계수화하여 원점수에 반영
- ③ 신청민원의 수용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만족도 편차의 형평성 문제 완화를 위해 기관별 비수용민원 보정 점수를 부여
- ④ 난이도와 비수용민원 보정점수가 반영된 인터넷민원과 일반민원 점수를 양 집단의 모집단 구성비에 따라 가중 합산하여 기관별 민원행정서비스 종합 만족도를 산출

II. 주요정책 만족도 평가결과

1. 평가결과 종합

- 2008년도 39개 중앙행정기관(95개 전략목표)의 주요정책 만족도 평균점수(4.70점)는 7점 척도에서 '약간만족'(5점)에 비교적 근접한 점수로서 2007년(4.56점) 대비 0.14점 상승
 - 부단위 기관 평균점수는 4.58점으로 2007년(4.52점) 대비 0.06점 상승, / 청단위 기관 평균점수는 4.82점으로 2007년(4.62점) 대비 0.27점 상승
 - 이는 일반국민이 '의견수렴도와 투명성', '정책내용의 적절성', '정책효과성'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만족도가 상승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 한편, 2007년에 비해 전문가 만족도 점수는 다소 하락하였으나, 일반국민과 내부고객의 만족도 점수 상승에 힘입어 최근 3년간 종합만족도는 계속 상승 추세(4.34점 → 4.56점 → 4.70점)
 - 일반국민은 4.46점으로 2007년(4.19점) 대비 0.27점 상승, 전문가는 5.02점으로 2007년(5.15점) 대비 0.13점 하락, 내부고객은 5.25점으로 2007년(5.20점) 대비 0.05점 상승

(최근 3년간 주요정책 만족도 추이)



2. 항목별 평가결과

- 39개 기관의 항목별 만족도에서 조사대상 집단 모두 정책 내용의 '적정성'에 대하여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 (일반국민 4.71점, 전문가 5.24점, 내부고객 5.40점)
 - 전반적으로 전략목표와 하위 정책수단이 비교적 적정하게 구비된 것으로 조사대상자들이 인지하는 것으로 분석

- 반면, 조사대상 집단 모두 '대응성' 항목을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일반국민 4.38점, 전문가 4.93점, 내부고객 5.10점)
- 향후, 급변하는 정책환경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추진 상 문제점을 적극 시정·보완하는 노력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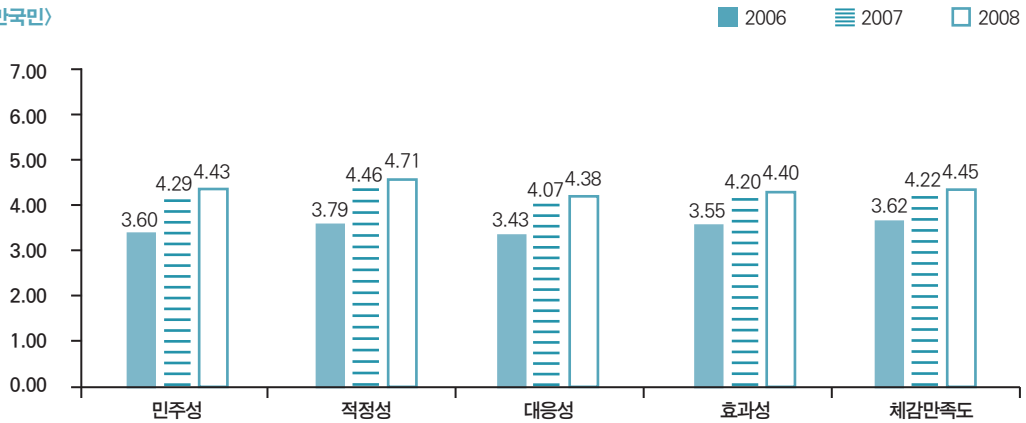
〈평가 항목별 만족도〉

평가항목			평가내용	만족도		
				일반국민	전문가	내부고객
항목 만족도	민주성	의견 수렴도	정책 수립·집행과정에서 고객의 의견을 수렴한 정도	4.43	5.02	5.30
		투명성	정책 수립·추진과정의 공개를 통한 정책 협조노력			
	적정성		전략목표 및 하위 정책수단 등 정책내용이 적절한 정도	4.71	5.24	5.40
	대응성	일관성	정책환경의 변화를 극복하고 계획대로 집행된 정도	4.38	4.93	5.10
		환류성	정책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을 시정·보완한 노력			
	효과성		정책이 의도하는 성과가 나타난 정도	4.40	4.95	5.20
체감만족도(30%)			해당정책 전반에 대한 직관적·총체적 만족도	4.45	4.99	5.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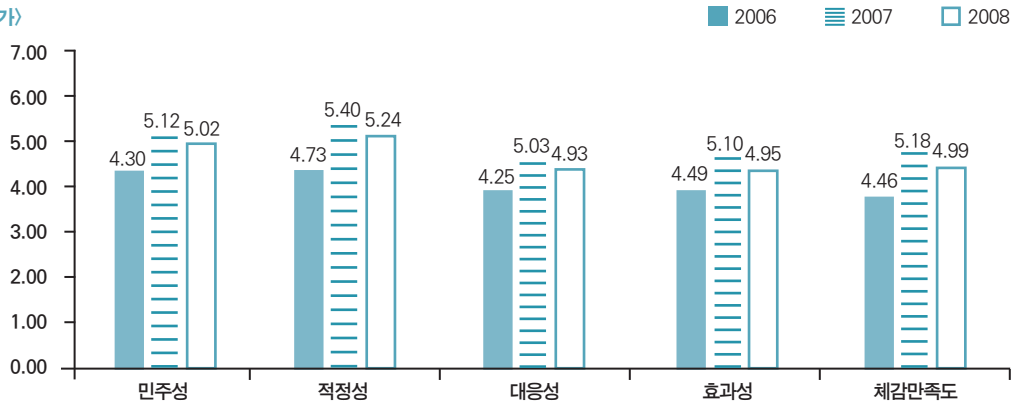
※ 최근 3년간 만족도 항목별 변화 추이는 일반국민은 점차 상승, 전문가는 '07년 상승했다가 '08년에는 다소하락, 내부고객은 완만한 상승 추세

- 다만 일반국민의 정책인지도가 점차 하락하고 있어 기관별 정책소통 및 홍보 강화 노력 필요('07년 56%→'08년 48% : △8%)

〈일반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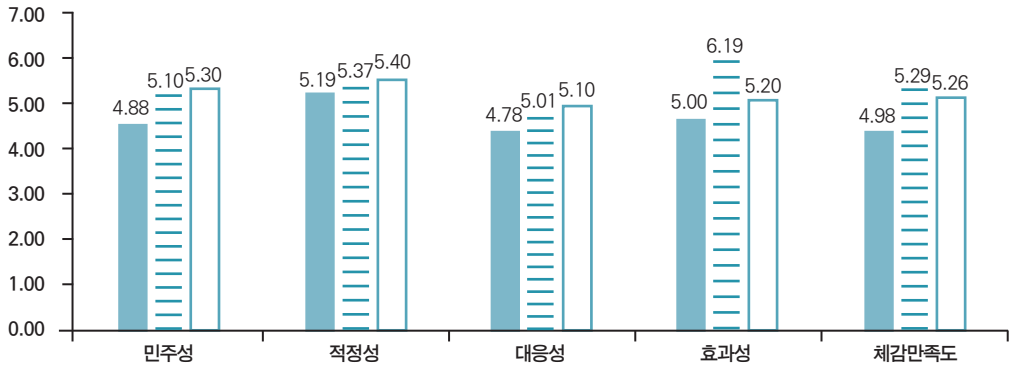


〈전문가〉



〈내부고객〉

■ 2006 ▨ 2007 □ 2008



3. 기관별 평가결과

□ 부 단위 기관

- 19개 부단위 기관 종합점수(4.58점)는 ‘보통’(4점)과 ‘약간만족’(5점) 사이이며, 국방부가 ‘약간만족’에 가까운 4.77점 (일반국민 4.61점, 전문가 5.23점, 내부고객 4.60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임
 - “선진 국방환경 구현”(4.93점) 관련 병영생활관 신축 등 병영환경 개선, “미래지향적 핵심방위역량 강화”(4.73점) 관련 「국방개혁 2020」의 발전적 보완,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4.72점) 관련 한·미군사동맹의 재확인 등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분석
 - 국방개혁 2020 : 합참기능 강화 등 전력의 협동성 강화, 3군 균형발전, 군사단 통폐합 등을 통한 기동력 강화 등
- 반면, 통일부는 ‘보통’ 수준을 약간 넘는 4.28점(일반국민 4.18점, 전문가 4.18점, 내부고객 5.16점)이나, 부단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임
 - “호혜적 인도협력 추진”(4.28점) 관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대북정책 추진기반 확충”(4.19점) 관련 국민 의견수렴, “상생의 교류협력 확대”(4.07점) 관련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북한의 긍정적 변화 유도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분석

〈주요정책만족도 부 단위 기관 조사결과〉

(가나다순)

상위	중위	하위
국방부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노동부 여성부 지식경제부
5개(25%)	11개(60%)	3개(15%)

□ 청 단위 기관

- 20개 청단위 기관 종합점수(4.82점)는 ‘보통’(4점)과 ‘약간만족’(5점) 사이이며, 병무청은 ‘약간만족’을 넘어 5.12점 (일반국민 4.66점, 전문가 5.89점, 내부고객 5.90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임
 - “임무부와 절차/제도개선으로 병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5.09점) 관련 입영일자·부대 등의 본인 선택, “공정·정확한 병역처분으로 병역의무 형평성 제고”(4.97점) 관련 징병검사 정밀성 강화 등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분석

- 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보통' 수준을 다소 넘는 4.42점(일반국민 4.15점, 전문가 4.92점, 내부고객 4.82점)이나, 청단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임
 - "안전과 산업경쟁력이 선순환하는 선진의약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 (4.42점) 관련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국제기준과 동등수준의 선도적 의료기기 안전관리 체계 구축" (4.33점) 관련 의료기기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국민신뢰 확보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분석

〈주요정책만족도 청 단위 기관 조사결과〉

(가나다순)

상위	중위	하위
관세청 병무청 산림청 특허청 해양경찰청	경찰청 국세청 농촌진흥청 법제처 조달청 통계청	국가보훈처 기상청 문화재청 소방방재청 중소기업청 행복도시건설청
5개 (25%)	12개 (60%)	3개 (15%)

Ⅲ.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평가결과

1. 평가결과 종합

- 2008년도 39개 중앙기관의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종합 만족도 평균점수(5.02점)는 7점 척도에서 '약간만족'을 조금 상회하는 점수로서 2007년(5.15점) 대비 0.13점 하락
 - '신속·정확성', '신뢰·공정성' 등 대부분의 항목이 하락하여 향후 행정서비스처리에 대한 높아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일처리의 필요성 부각
- 최근 3년간 변화 추이는 '07년에 약간 상승했다가 '08년에 소폭 하락('06 4.95 → '07 5.15 → '08 5.02)
 - 이는 인터넷민원 만족도는 상승한데 반해, 일반민원 만족도 하락폭이 더 큰 것에 주로 기인
 - 민원종류별로는 일반민원 만족도가 5.16점으로 2007년(5.28점) 대비 0.12점 하락, 인터넷민원 만족도는 4.94점으로 2007년(4.90점) 대비 0.04점 상승
 - 다만, 2007년 이후 '약간만족' 수준인 5점대를 지속적으로 달성하고 있어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

2. 항목별 평가결과

□ 일반민원

- 만족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대응·환류성'(5.29점)이고, '접근·편의성'(5.22점), '신속·정확성'(5.17점), '신뢰·공정성'(5.07점)의 순
 - 담당공무원 친절도, 처리상황 통지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
- 다만, '신뢰·공정성' 항목 중 '처리결과 근거 및 이유의 합리성'(4.93점)은 문항별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5점대에 못 미치는 등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저조
 - 향후 처리결과 통보 시 합리적 근거에 따라 보다 구체적으로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
 - '중요도'는 설문조사 결과 도출된 평가항목 간 상대적 가중치를 의미하며, 체감만족도에 대한 각 문항별 상관계수의 상대적 비중이 근거하여 사후적으로 도출

〈일반민원 문항별 만족도와 중요도〉

문항		중요도	만족도
항목 만족도 (70%)	〈접근·편의성〉		5.22
	면담·통화 용이성 및 안내 적합성	12.0	5.39
	민원신청 서식 및 절차의 간편성	11.2	5.15
	〈신속·정확성〉		5.17
	업무처리 신속성 및 처리시간	12.4	5.18
	민원처리 정확성 및 능숙도	13.2	5.17
	〈대응·환류성〉		5.29
	담당공무원의 친절도	11.9	5.57
	민원 진행 및 처리결과 통보방식	12.9	5.18
	〈신뢰·공정성〉		5.07
	처리결과 근거 및 이유의 합리성	13.2	4.93
	업무처리의 신뢰성·공정성	13.1	5.22
	체감만족도(30%)		5.13

□ 인터넷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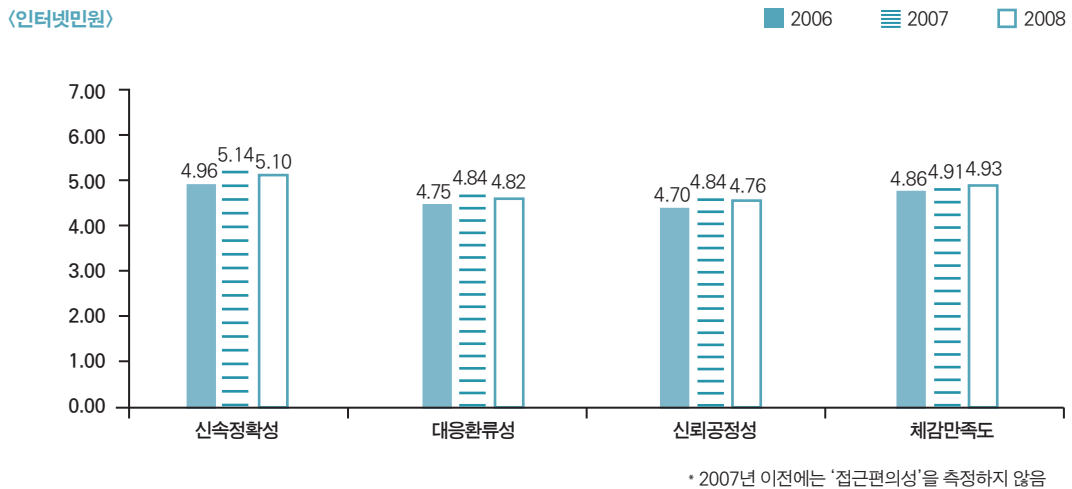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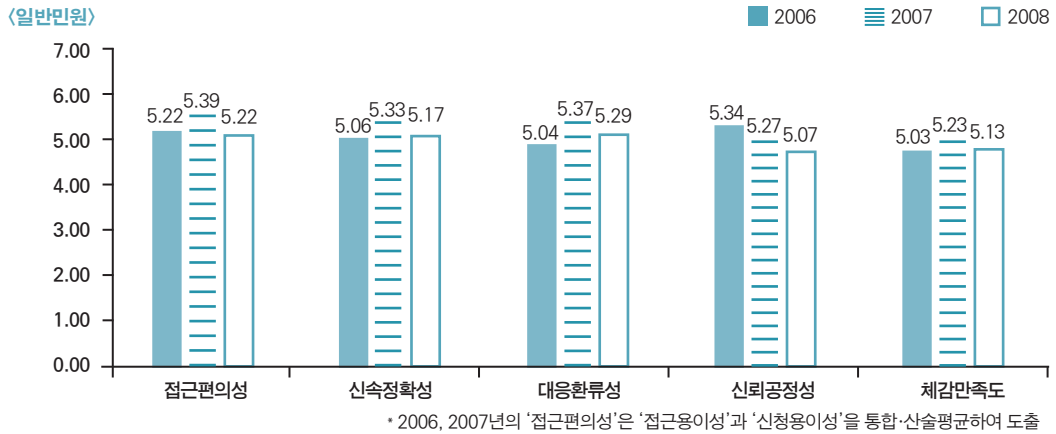
- 만족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접근·편의성'(5.24점)이고, '신속·정확성'(5.10점), '대응·환류성'(4.82점), '신뢰·공정성'(4.76점)의 순
- 온라인상에서의 민원신청 접근이 용이하고, 절차가 간편해진 것으로 판단
- 다만, 문항별 중요도가 가장 높은 '신뢰·공정성' 항목 중 '처리결과 근거 및 이유의 합리성'(4.61점)이 일반민원과 동일하게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저조
- 담당자와의 대면상담이 없는 점을 고려, 인터넷민원에서도 처리결과에 대한 구체적 이유 적시 등 국민의 신뢰성·수용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필요

〈인터넷민원 문항별 만족도와 중요도〉

문항		중요도	만족도
항목 만족도 (70%)	〈접근·편의성〉		5.24
	접근 용이성 및 초기 안내 명료성	9.9	5.27
	민원신청 서식 및 절차의 간편성	10.1	5.20
	〈신속·정확성〉		5.10
	업무처리 신속성 및 처리시간	11.4	5.11
	처리내용 및 절차의 정확성	12.7	5.08
	〈대응·환류성〉		4.82
	제공 정보 및 검색 가능성	11.5	4.88
	문제제기 및 건의 수용태도	14.2	4.74
	〈신뢰·공정성〉		4.76
	처리결과 근거 및 이유의 합리성	14.9	4.61
	업무처리의 신뢰성·공정성	15.3	4.90
	체감만족도(30%)		4.93

* '중요도'는 설문조사 결과 도출된 평가항목 간 상대적 가중치를 의미하며, 체감만족도에 대한 각 문항별 상관계수의 상대적 비중을 근거하여 사후 적으로 도출

※ 최근 3년간 만족도 항목별 변화 추이는 일반민원, 인터넷민원 모두 '07년 상승했다가 '08년에는 소폭하락 추세



3. 기관별 평가결과

□ 부 단위 기관

- 19개 부단위 기관 종합점수(5.03점)는 '약간만족'(5점)을 조금 상회하는 점수이며, 행정안전부가 '만족'(6점)에 가까운 5.53점(일반민원 5.43점, 인터넷민원 5.54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 수준
 - 일반민원의 '담당공무원의 친절도'(5.93점)와 인터넷민원의 '민원신청 서식 및 절차의 간편성'(5.74점) 만족도가 높은 점수를 받아 전체 만족도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
-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보통'수준을 다소 넘는 4.35점(일반민원 4.47점, 인터넷민원 4.28점)이나, 부단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임
 - '신뢰·공정성' 항목의 '처리결과 근거 및 이유의 합리성'에서 일반민원(3.55점)과 인터넷민원(3.45점) 모두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어 저조한 결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

〈민원서비스만족도 부 단위 기관 조사결과〉

(가나다순)

상위	중위		하위
국방부, 법무부 여성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금융위원회 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6개(25%)	9개(60%)		4개(15%)

□ 청 단위 기관

- 20개 청단위 기관 종합점수(5.00점)는 '약간만족'(5점)에 해당하는 점수이며, 기상청이 '만족'(6점)에 가까운 5.92점(일반민원 6.13점, 인터넷민원 5.66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 수준
 - 기상청의 경우, 주요정책에서는 잦은 오보 등으로 인해 '보통' 등급 기관 중 비교적 낮은 만족도를 얻었으나,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는 우수한 것으로 추정
 - 특히, 일반민원의 '민원처리 정확성 및 능숙도'(6.65점)와 인터넷민원의 '업무처리 신속성 및 처리시간'(5.92점) 만족도가 높은 점수를 받아 전체 만족도 상승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
- 반면, 문화재청은 종합점수 '약간만족'(5점)에 가까운 4.66점(일반민원 5.17점, 인터넷민원 4.65점)이나, 만족도가 청단위에서 상대적으로 저조
 - 특히 일반민원의 '업무처리 신속성 및 처리시간'(4.18점)과 인터넷민원의 '처리결과 근거 및 이유의 합리성'(3.90점)이 낮게 평가 되어 전체 만족도가 저조한 것으로 분석

〈민원서비스만족도 청 단위 기관 조사결과〉

(가나다순)

상위	중위		하위
관세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해양경찰청	국가보훈처 대검찰청 병무청 소방방재청 조달청 특허청	국세청 방위사업청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통계청 행복도시건설청	경찰청 문화재청 법제처
5개 (25%)	12개 (60%)		3개 (15%)

IV. 향후 계획

- 2008년도 주요정책 및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만족도 평가결과를 전 중앙행정기관에 시달하고, 우수기관 포상
 - 만족도 하위기관은 상세 '조사결과 보고서'에 적시된 내용에 따라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조치
 - 특히, 향후 비중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인터넷민원에 대한 만족도를 일반민원과 마찬가지로 5점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도록 각 부처에 적극 독려
- 국무총리실은 부처의 개선대책 및 활동에 대하여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컨설팅 지속 제공
 - ※ '07년도 평가결과, 만족도가 낮은 기관(주요정책 7개, 민원행정서비스 7개)에 대해 개선방안을 수립·추진토록 하였으며, 필요 시 '08년도 평가결과 개선조치사항에 대해 추진실태를 확인·점검할 예정
- 향후, 주요정책 인지도 제고(일반국민), 설문조사 방식 및 항목 개선, 부처간 형평성 확보 문제 등의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2009년도 만족도 조사지침에 반영 예정

2009년 특정평가 결과 보고서

I. 평가개요

- **평가 목적**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정책을 평가함으로써 국정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정성과 창출을 유도
- **평가대상기관 : 38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19, 차관급 19)**
 - 장관급(19) : 15개 부, 4위원회(방송통신위·공정거래위·금융위·국민권익위) / 차관급(19) : 2개 처(법제처·보훈처), 17개 청
- **평가 부문**
 - 정책과제 : 핵심과제, 녹색성장
 - 국정관리역량 : 정책관리역량, 정책소통·홍보, 규제개혁
 - 국민만족도 : 정책만족도, 민원만족도
- **평가 방법**
 - 정부업무평가위원·전문가평가단이 정책과정(형성-집행-성과)별 평가지표에 따라 부처가 제출한 실적자료(10월말 기준)를 토대로 평가
 - 평가단 구성(민간전문가 기준) : 핵심과제 95명·녹색성장 25명·정책관리역량 11명·정책소통·홍보 29명·규제개혁 7명 등 총 167명
 - 부처 업무설명회 개최 및 전문가 상호 검증을 통한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제고
 - 만족도 평가의 경우 설문조사 실시
 - 정책과제(핵심과제, 녹색성장, 정책만족도)의 경우, 과제 성격에 따라 분과를 나누어 과제별 등급화(우수·보통·미흡)
 - 국정관리역량(정책관리역량, 소통·홍보, 규제개혁) 및 민원만족도의 경우, 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기관별 등급화

II. 부문별 평가 결과

1. 핵심과제

1) 핵심과제 부문 평가개요

- **기본 방향**
 -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국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제고
 - 경제살리기, 서민생활 안정, 선진화 등 국정운영 기조와 밀접한 연관과제 중심
- **평가대상 기관(38개)·과제(95개) 분류 (5개 분야)**

부단위 (19개 기관57개 과제)	경제분야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7)
	사회문화분야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부(6)
	외교안보·일반행정 분야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6)

청 단위 (19개 기관 38개 과제)	경제 분야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8)
	일반행정 분야	법제처, 국가보훈처,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기상청, 문화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해양경찰청(11)

* 과제수는 부단위 기관은 3개, 청단위 기관은 2개씩 선정

□ 평가 방법

- 분과별로 민간 전문가평가단(95명, 과제당 1명)을 구성·운영
 - 정부업무평가위원은 분과장 역할 수행
- 각 부처의 실적자료(10월말 기준)를 토대로 전문가 평가단이 평가지표에 따라 정성평가
 - 실적자료 취합 이후 분과별로 '부처 업무설명회'를 개최하여 전문가들의 분과내 모든 과제들에 대한 이해도 제고
- 분과내 과제들에 대해 분과 담당 전문가 전원이 평가에 참여, 평가결과의 공정성·객관성 제고

□ 평가지표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지표의 성격
정책형성(15)	1. 정책목표의 적합성	1-1. 정책목표의 명료성(3) 1-2. 상위 정책과의 연계성(2)	투입지표 과정지표
	2. 정책수단의 적정성	2-1. 정책수단의 충실성(2) 2-2. 정책내용의 타당성(3)	
	3. 계획수립의 적절성	3-1. 형성과정의 민주성(2) 3-2. 형성과정의 협조성(3)	
정책집행(25)	4. 추진과정의 합리성	4-1. 자원투입의 적절성(6) 4-2. 가용자원의 경제성(6)	투입·과정·산출·결과 지표
	5. 추진과정의 충실성	5-1. 추진일정의 준수성(7) 5-2. 추진과정에서의 상황 대응성(6)	
정책성과(60)	6. 성과측정 방법의 타당성	6-1. 성과지표의 대표성(8) 6-2. 성과목표치의 적극성(7)	산출지표 결과지표
	7. 정책산출의 적실성	7-1. 성과목표 달성도(25) 7-2. 정책서비스 전달의 정확성(5)	
	8. 정책결과의 파급성	8-1. 효과성(10) 8-2. 효율성 또는 형평성(5)	

2 핵심과제 부문 평가결과

부단위 경제 분야

○ 7개 기관 21개 과제 중 우수 4, 보통 14, 미흡 3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평가결과	과제명<기관 직제순>
우수(4)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기획재정부)
	총력 수출지원 체제 가동(지식경제부)
	서민보호를 위한 반칙행위 감시 및 예방 강화(공정거래위원회)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금융위원회)
보통(14)	소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각종 경기 진작대책 추진(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선진화(기획재정부)
	식품산업 육성(농림수산식품부)
	농업 경쟁력 제고(농림수산식품부)
	실물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산업별 대응(지식경제부)
	신성장동력 집중 육성 및 새로운 투자기회 창출(지식경제부)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 안정(국토해양부)
	위기산업 지원과 경쟁력 강화(국토해양부)
	디지털 미디어 활성화 추진(방송통신위원회)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방송통신위원회)
	서민생활 안정 지원(방송통신위원회)
	대기업 집단에 대한 규제완화(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공정거래위원회)
	금융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금융위원회)
미흡(3)	농·수협 개혁(농림수산식품부)
	지역경제 활성화(국토해양부)
	기업자금지원 및 구조조정 강화(금융위원회)

잘된점

-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속도감 있게 효과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경기 급락 진정
- 예산 조기집행·추경 편성 등 적극적 재정정책 기조를 통해 3/4분기 GDP가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등 경기가 빠르게 개선

· 최근 분기별 경제성장률(%)

구분	분기	2008년		2009년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전분기대비		0.2	-5.1	0.1	2.6	2.9
전년 동기 대비		3.0	-3.4	-4.3	-2.2	0.4

** '09.3/4분기 (+)성장(전년 동기 대비)은 OECD회원국중 유일

- 중소기업 대출 및 보증규모 확대로 기업금융애로를 완화하고 금융위기의 실물경제 전이를 효과적으로 차단
 - 중소기업 자금사정 전망지수(BS) : ('09.1) 56 → ('09.12) 91
- G-20 의장국 역할을 수행하면서 적극적 국제공조를 통해 최악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기여
 - 제2차 런던정상회의 및 제3차 피츠버그정상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제안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반영
 - 런던정상회의(4.2)에서는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극복 경험을 토대로 부실자산 관리에 관한 'Korea's Proposal'을 제출하여 공동원칙에 반영
 - 피츠버그 정상회의(9.24~25)에서는 '출구전략' 국제공조 필요성과 원칙에 관한 이슈페이퍼를 제안하여 거시경제정책의 국제공조를 견인
- 채권시장안정펀드, 은행자본확충펀드, 구조조정기금 등 시장안정 자금을 신속히 조성·운영하여 금융시스템을 안정화
 - 금융위기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자금을 투입하여 급격한 투자심리 위축을 방지하고 금리의 하향안정 및 증시회복에 기여
 - 주가 : (2008년말) 1,124.5 → (2009년 10월말) 1,580.7
 - 회사채를 중심으로 한 직접 금융시장의 호조로 금융권 자금증가기능이 회복되고 외화유동성 여건도 크게 개선
 - 회사채 AAA급 신용스프레드 : 346bp(08.12.5) → 80bp(09.11.27)
 - 차환율(외화 차입/만기도래) : ('08.10)54.5% → ('09.10)141.3%
-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도 사상 최대 무역흑자를 시현하는 등 산업별 위기대응 노력을 통해 주요 품목의 도약 기틀 마련
 - 수출보험·보증 지원 확대,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차별화된 시장진출 전략 추진 등 정책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
 - '09.1~10월 무역흑자 346억불(수출 2,947억불(19.5%감소), 수입 2,601억불(31.5%감소))
 - 자동차 산업의 경우 내수 활성화를 위한 조치들(세제감면, 하이브리드카 시장 창출 지원, 부품산업 기술혁신 등)을 통해 위기 극복에 기여하였고 세계 시장점유율도 확대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부처별로 적절한 수단들을 발굴*하여 실행하는 등 일정 성과를 시현
 - 8개 부처 27개 세부정책을 '서민생활 지원종합대책('09.6.30)'으로 발표하고 신속하게 집행하여 짧은 시간 내에 상당한 성과
 - 서민생활 밀접 분야의 불공정행위 중점 감시를 통해 가격 인하 등을 유도하여 서민경제 보호에 기여
 -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노력들이 정책으로 가시화되어 사용자들의 호응을 이끌어 냄

미흡한 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사용중이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발전 성과가 다소 부족
 - 특성화된 지역발전, 지방산업기반 확충(국가산단 신규지정, 노후산단 재개발), 노후도심 재생, 지속적 규제완화 등
 - 현재는 '구역지정 등'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시기로, 가시적인 성과는 각종 개발이 본격화되는 향후 2~3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
 - 또한 수도권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개선으로 수도권내 기업투자 활성화는 기여하였으나, 수도권 소재 기업들의 비수도권 이전 등 비수도권의 기업투자 활성화 유인의 상대적인 위축 우려
- 수협 경영환경개선 사업의 성과 미흡
 - 수협법 개정은 사전준비가 다소 늦게 시작되었고, 국회 법률심의절차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부족하여 농협법에 비하여 개혁 지체
 - '09. 4. 30 국회에 제출된 수협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계류중
 - 수협중앙회는 경영수지 악화에도 불구하고 적자사업장 폐쇄 등 근본적 경영환경 개선사업 추진 미흡
- 선제적인 구조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음으로써 정책의지에 대한 불신감이 제기
 - 채권단 중심의 자율적 구조조정 등의 제약으로 직접적인 개입에 한계가 있어 경제내의 불확실성 제거라는 긴급한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개선·보완 사항

- 위기대응 정책기조는 당분간 유지하되 국내의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한 경기 대응능력을 보다 강화
 - 주요 선진국들과 보조를 맞추면서 출구전략 등의 정책수단을 논의하되, 본격적인 위기 극복 국면에서 활용할 수단에 대한 사전준비 철저
 - 시장에 불필요한 신호가 전달되지 않도록 정책결정 핵심 주체간의 의견조율 강화
- 경제위기 이후의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구조조정 노력 필요
 - 구조조정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시장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분석, 명확한 입장 제시를 통해 시장의 일치된 기대 형성 필요
 - 지방도시의 미분양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유의하여 건설업체의 구조조정과 더불어 부동산 PF대출 부실화에도 지속적으로 대응
- 장기적인 수출 역량 확보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 필요
 - 단기적 지원 정책들의 한계 및 부작용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
 - 수출금융 확대에 따른 관리·감독 강화 등
 - 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성장 동력을 육성함과 동시에 전략적인 해외 마케팅 인프라도 병행하여 강화할 필요
-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성과 제시
 -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관련 정책수단 간 연계를 강화하여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
 - 사업단계 별로 국민들이 각 사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목표 제시와 구체적인 정책수단의 강조 필요
- 장기적 관점에서의 부동산 정책 추진 및 정책간 조율 강화
 - 신도시 및 지방주택공급, 도심재건축·재개발사업 등 기존의 주택정책과 보금자리 주택 등 새로 개발된 정책들이 상승효과를 낼 수 있도록 거시적인 관점에서 효과 분석 및 정책 추진
- 공공기관 선진화 관련 추진동력 유지 필요
 - 개혁 추진의 피로감이 나타날 가능성에 사전적으로 대비함으로써 추진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필요
 - 공공기관 노사 문화는 상당 수준 개선되었으나, 민영화는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
 - 내년도에는 공공기관 선진화에 대한 정량적 추진실적 외에 질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정교한 모니터링이 요구되는 시점
- 농·수협법 개정을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 노력 필요
 - 본격적으로 논의중인 '신·경분리 관련 농협법 개정'과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수협법 개정'을 위한 협조 방안 강구
 - 이해 당사자의 이해도 제고 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 및 국민 공감대 형성에 보다 많은 노력 필요
- 각종 서민생활 지원 정책들의 실질적 성과 제고 필요
 - 정책간의 연계 강화를 통해 정책 수혜자의 체감도를 상승시킬 수 있도록 노력
 - 이를 위해 집행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평가 등 주기적인 환류과정을 통해 기존 정책들의 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필요

부단위 사회문화분야

- 6개 기관 18개 과제 중 우수 3, 보통 11, 미흡 4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부

평가결과	과제명(기관 직제순)
우수 (3)	기초원천 연구역량 강화(교육과학기술부)
	문화향수 기회 확대(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 산업 육성(문화체육관광부)

평가결과	과제명<기관 직제순>
보통(11)	대학의 자율 및 책임확보(교육과학기술부)
	생활속의 문화체육 활성화(문화체육관광부)
	민생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 사회에 대응하는 출산·보육비용의 국가 책임성 강화(보건복지가족부)
	노후 사회보장 체계의 종합적 접근과 재원의 안정적 수급(보건복지가족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먹는다 공급(환경부)
	폐자원 에너지화를 통한 자원 순환 사회 구축(환경부)
	노시간 자율협력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지원(노동부)
	청년 취업 촉진 강화(노동부)
	여성의 고용촉진 및 취업지원 시스템 강화(여성부)
아동·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여성부)	
미흡(4)	사교육비 절감(교육과학기술부)
	생명력 넘치는 국토환경 보전과 생태체험 활성화(환경부)
	비정규직 고용개선 및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노동부)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속의 여성정책 추진(여성부)

잘된 점

- 긴급지원 대상, 기준, 종류 등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가구별 특성에 맞는 지원을 하는 등 위기가구를 지원
 - 긴급지원 실적이 20천건('08.9) → 53천건('09.9)으로 전년대비 2.6배 증가, 생계지원 실적은 2.4천건('08.9) → 22천건('09.9)으로 9.3배 증가

<긴급복지 지원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08. 1~9월		'09. 1~9월		증감율(%)	
	전체(a)	생계지원(b)	전체(a)	생계지원(b)	전체(a)	생계지원(b)
지원건수	20,404	2,378	53,000	22,042	2.6배(↑)	9.3배(↑)
지원금액	25,679	1,590	48,438	13,971	0.9배(↑)	7.8배(↑)

- 휴·폐업, 실직자 생계지원을 위해 6,659건에 33억원 투입
- 여성직업교육훈련 기관의 종합적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기능 강화를 통하여 여성의 취업지원 기반 구축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72개소)을 통한 여성들의 취업지원 강화(총 42,488명을 취업으로 연계)
 - 여성 직업 교육훈련기관을 상담·정보·취업 및 복지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기능 강화
 - 여성인력개발센터 뿐 아니라 기존 여성회관, 여성발전센터 등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 직업교육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여성 취업지원기반을 구축
- 기초연구 투자확대를 통한 창의적 연구환경 조성으로 기초·원천 연구역량을 강화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종합계획」국과위 심의·확정('09.1)을 통한 기초과학연구원 설립 준비 추진체계에 마련
 - 기초·원천연구 투자확대 정책에 따라 '10년 기초연구비는 전년대비 4,347억원(17.5%) 증가한 2조 9,246억원('09년 2조 4,899억원) 확보 추진

- **소외지역 문화순회사업 실시 및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통한 문화향유권 신장**
 - 소외지역 계층에 우수 공연예술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양극화에 대한 해소에 기여
 - 공연실적 : 134개 단체 1,004회 공연 162천명 수혜, 목표 1,262회 대비 80% 달성('09.10월말)
 - 소외아동·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기회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약체결('09.3)을 통하여 예술강사(3,483명) 파견, 문화예술교실 운영(37회 18천명) 등 지원
- **중국내 주요 저작물 침해 사례에 대해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해외진출 콘텐츠 저작권 보호의 가시적 성과 시현**
 - 중국 당국간 저작권 보호 협력 관계 유지 및 양국간 민-관, 민-민 네트워크 구축(한-중간 저작권 보호협력 MOU 체결, 09.10)
 - 중국내 확산이 우려되는 불법복제 건에 대해 조기 대응함으로써 국산 콘텐츠 저작권 보호기능 제고
 - 영화 '해운대' 불법동영상 유통 시 6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증거보전 조치 및 불법사실을 공증, 경고장 발송('09.9)
- **폐자원 에너지화 촉진을 위한 법령 개정 및 제도정비를 통한 추진체계 확립**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비성형 고휘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기준, 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신설
 - '가연성폐기물 전처리 시설(고형연료제조 시설)설치·운영지침' 마련
 - 하수슬러지를 화력발전소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
-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를 도출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
 - 노사간 자율협력을 통한 일자리나누기 실천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집결하는 결정적 기제로 작용
 -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함으로써 선진국 및 국제기구 등에서도 우리나라의 일자리 나누기를 모범 사례로 평가
 - 월스트리트저널(3월), 인터네셔널헤럴드트리뷴·월드뱅크·IMF(6월) 등
 - 지역노사민정 협의체를 통해 지역단위의 위기극복 실천 노력 확산
 - * 16개 광역자치단체에 1,739백만원, 부산시 등 26개 기초자치단체에 1,449백만원 등 42개 자치단체에 총 3,188백만원 지원

미흡한 점

- **'비정규직법 개정안' 국회표류로 비정규직사태 해결에 차질 우려**
 - 노사정간, 여야간 합의도출 미흡으로 국회에서 비정규직법 개정이 무산되고,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지원 관련법령 개정이 무산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반영분(1,185억원) 미집행
 - 경제활동인구통계예안 의존함으로써 법 시행의 정확한 효과예측을 못한 채 입법추진
- **생물다양성 확보전략의 종합적 정책이행 방안 마련 미흡**
 -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한 총체적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11개 관계부처(환경부주관) 합동으로 '국가생물다양성전략및 이행계획'('09.6)을 마련하였으나, 실제 이행과정에서 관계부처 간 협조체계 구축 등 이행방안 마련 미흡
-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대국민 사회적 인식확산 미흡 및 홍보 부족으로 사업 추진 성과 저조**
 - 여성친화도시 시범사업을 지자체 협약체결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나 관계기관 및 관계자의 미협조로 협약체결실적이 거의 없어 정책의 추진력 미흡(협약 체결실적 230개 지자체 중 1개(익산시))
 - 여성친화도시
 - ☞ 지역의 모든 정책과 예산의 수립·집행의 과정 등에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남녀에게 모두 고루 돌아가도록 해 일상생활에서 성별의 차이가 없도록 하는 도시
- **학원비 안정화 방안의 한계 및 사교육 없는 학교의 성과 제고 방안 부재**
 - 학원비 안정화 정책은 민간규제 정책으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최소한의 단기적 대책으로 장기적 대책까지 규제중심 정책으로 일관하는 것은 문제
 - 신고포상금제 도입, 학원지도·단속 등 규제중심의 학원비 안정화 방안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으나, 중·장기대책으로 수강료 징수 규제 및 신고포상금제 법제화 등 규제 일변도의 목표 설정은 무리
 - '사교육 없는 학교'의 정책 내용이 모호하고, 성과 제고를 위한 노력의 방안도 소극적인 방안
 - '사교육 없는 학교' 정책을 어떤 내용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프로그램의 구체성이 없어, 정책의 타당성 및 적절성을 판단하기 곤란
 - 성과 제고를 위한 방안도 시범학교 운영 및 우수사례 확산 등 소극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문제

개선·보완 사항

- 비정규직법 개정안 및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과 실천방안 수립 필요
 - 노사정간 및 여야간 합의를 도출하여 국민의 관심사인 비정규직법을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 경주
 - 기간제 고용기간 합리화 외에도 비정규직과 관련된 많은 과제가 있으며,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
 - 차별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고용률 제고를 위한 양질의 파트타임 일자리 확대방안, 사내 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방안 등
 - 비정규직 근로자가 보다 나은 일자리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고용지원대책을 수립하고, 각 과제별 실천방안을 조속히 모색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
- 생물다양성 확보전략의 범부처간 협력추진체계 구축 필요
 - 국가 차원의 11개 부처 합동 ‘생물다양성 확보계획’은 마련되었으므로 향후 동 계획의 효율적인 실행이 확보될 수 있도록 범부처간 협력추진체계를 구축·운영할 필요
- ‘여성친화도시’ 필요성의 대국민홍보 및 효과성 교육 강화
 - 관련 지자체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운용을 내실화하여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해 대국민 교육·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성과를 제고할 필요
- ‘학원비 안정화’ 및 ‘사교육 없는 학교’ 정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발굴 필요
 -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적 분위기 조성과 민관협력 모델 구축, 학원 스스로 학원비를 조정하는 자율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성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 검토
 - 사교육 없는 학교의 운영 방법과 프로그램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공교육의 사교육 흡수 내지 대체효과를 엄밀하게 검증하는 체계 마련 필요
 - 현재 사교육 없는 학교의 정책수단만 제시되어 있고, 운영방법과 프로그램 내용의 채택은 시범학교에 맡겨져 있는 상태로 학교현장의 혼란 가중 우려

부단위 외교안보·일반행정 분야

- 6개 기관 18개 과제 중 우수 3, 보통 13, 미흡 2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평가결과	과제명<기관 직제순>
우수(3)	경제살리기 외교 강화(외교통상부)
	북한 대남위협 대응(국방부)
	지방재정 조기집행(행정안전부)
보통(13)	남북대화 추진 및 상생공영정책 공감대 강화(통일부)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협력 추진(통일부)
	북한 이탈주민 관리 및 국내정착 지원(통일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안정 추구(외교통상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외교통상부)
자유민주적 법질서 확립(법무부)	

평가결과	과제명(기관 직제순)
보통(13)	서민·약자를 위한 법적 지원 강화(법무부)
	질서와 통합을 향한 외국인 정책 추진(법무부)
	한미 군사동맹의 발전적 관리(국방부)
	일자리 신규 창출(행정안전부)
	시대에 부응하는 정부조직·인사 관리(행정안전부)
	권익보호 사각지대 해소로 경제위기 극복지원(국민권익위원회)
	공직 부조리 근절을 통한 국정신뢰 증진(국민권익위원회)
미흡(2)	국방개혁 조정·발전(국방부)
	경제활력 저해요인 발굴 개선(국민권익위원회)

잘된 점

- 금융위기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는 적극적 외교전략 전개
 - G-20 외교 노력 강화를 통해 2010년 11월 G-20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기로 합의하는 등 외교적 영향력 확대
 - 주요 세계경제이슈를 논의하는 핵심적인 글로벌 거버넌스로서 G-20 정상회의가 제도화될 수 있는 기틀 마련
 - G-20 워싱턴 정상회의 시 우리 대통령 주도의 무역장벽금지(Standstill)에 관한 합의 도출로 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
 - 글로벌 FTA 네트워크 구축 진전으로 해외시장 확대에 기여
 -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등 4건의 FTA가 발효되었고, 미국, 인도와의 FTA 서명 완료, EU와의 FTA 타결(가서평) 등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진전
- 지방재정 조기 집행을 통한 신속 대응으로 경제위기 극복 지원
 - 국가정책과 공조하여 지방재정의 조기 집행 계획을 수립('08.12)하고 조기 집행 촉진을 위한 법령·제도 개선 등 신속한 대응
 - 지자체 의견수렴 후 계약법시행령 개정 등 28건의 법령·제도 개선
 - 중앙 및 지방에 비상대책전담기구를 설치하여 두려한 결과, 상반기 재정조기 집행 목표(60%, 110조) 초과 달성(117.5조원 집행)
 - OECD 국가 중 한국이 2분기 경제성장률(2.3%) 1위 달성
- 북한의 위협에 대해 적시·적절 대응
 - 북한 총참모부 위협성명, 장거리 로켓 발사, 2차 핵실험 등 긴장조성에 적절 대응,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
 - 대청해전 시 적절 대응으로 북방한계선(NLL) 수호 의지 과시
 - 한·미 정상 간 채택한「동맹미래비전」에서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지'를 명문화하는 등 한·미 동맹의 공고화로 안보태세 강화
-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 및 농가를 위한 법적 지원 강화
 - 경제적 능력이 없는 소액 벌금 미납자의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체 집행하는 제도를 도입
 -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정·공포(3월), 시행(9월)
 - 한·미 FTA, 쇠고기 수입재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축산농가 지원을 위한 부동산등기제도 개선
 -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제정('09.10월)으로 기존 축사 3천여 동 및 신축 중이거나 향후 신축 예정인 1만여 동의 축사 등기가 가능해짐에 따라 금융권 담보 활용 가능
- 남북 상생공영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보
 - “원칙건지-유연한 대처”의 입장아래 원칙과 일관성을 중시하는 대북정책으로 북한 태도 변화 유도
 - 개성공단 발전 3대원칙, 이산가족, 인도적 지원 등 대북원칙 일관 추진
 - 개성공단 억류근로자 석방(8.13), 판문점 직통전화 재개(8.27), 연안호 귀환(8.29), 이산가족 상봉(9.26~10.1), 개성공단 임금합의(9.16) 등
 - 정부의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미흡한 점

- 국방개혁 2020 관련 목표, 방향, 현실성 등에 대한 국민 공감대 미흡
 - 국방개혁 범위가 국방부의 통상적인 일반정책과 상당부분 중복
 - 총 소요예산과 예산 현실과의 괴리 발생 및 문민화 추진 지연
 - 국민의 시각에서 국방개혁을 점검·확인하는 기능 미흡
- 경제활력 저해요인 개선 관련 권익위의 시정권고 불수용율 개선 미흡
 -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시정권고사항을 각 기관에 통보하고 있으나, 시정권고의 수용성 부족 또는 해당기관의 이행시기 지연 등으로 각 기관의 불수용율 개선 미흡
 - 불수용율 : 3.4%(’05) → 7.6%(’06) → 11.1%(’07) → 14.3%(’08) → 20.1%(’09.9)
- 북한 이탈주민 정책 관련 수혜자 및 지자체 참여 미흡
 - 교육·취업·복지지원 등 각종 정책이 '탈북주민을 위한 정책' 위주이며, '탈북주민과 함께 하는 정책' 개발은 아직 미흡
 - 북한이탈주민 정책은 다수 부처 관련사안으로 관계부처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으나, 탈북주민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의 관심과 참여가 미온적
 -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통일부 차관(위원장), 기재부·외교부·행안부 등 19개 부처 고위공무원으로 구성(심의기구)
- 행정인턴제도 운영상 취약계층 배려 부족
 - 일반적인 공무원 채용보다 단기 일자리 사업인 행정인턴의 경우, 취약계층의 채용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 추진실적 미흡
 - 행안부 : 행정인턴 선발인원 총 98명 중 9명(9%)을 취약계층(장애인, 저소득층, 취업보호대상자)에서 선발('09.10월말 현재)

개선·보완 사항

- 국민이 공감하는 국방개혁의 목표, 방향, 현실성 등 재검토
 - 국방개혁의 범위를 핵심과제 위주로 명확히 설정하고, 정부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효율적 국방개혁 예산 편성 강구
 - 법령에 규정된 대로 문민화 조속 추진 및 3군간 균형발전을 고려한 국방개혁 수정·보완 필요
 - 국민의 시각에서 국방개혁 전반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구축 필요
 - '10년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1단계 평가시점'임을 고려, 신속 검토
- 경제활력 관련 권익위의 시정권고 실효성 제고 노력 강화
 -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안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는 기관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과년도 불수용율 개선을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 마련·추진
 - 권익위의 기능 활성화 등과 연계하여 대책 마련
- 북한 이탈주민 정책수립 시 수혜자 및 지자체 참여 활성화
 - 정책 수혜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 과제 개발 및 사전 연구와 조사를 근거로 정책 및 사업목표 설정이 필요
 - 지역적응센터 전국적 운영(30곳) 등을 계기로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행정인턴 대상자 선발 시 취약계층 고려 확대 필요
 - 저소득층을 포함하여 장애인, 취업보호대상자 등 취약계층의 우선 선발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실질적으로 취업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필요
 - 아울러, 청년실업은 경제위기 이후에도 지속될 우려가 크므로 행정인턴제의 중장기적 운영방안 검토 필요
 - 금년도 인턴운영에 대한 평가(노동연구원 주관) 후 내년도 사업추진에 반영
- 통합 부처의 조직문화 융합 및 여성공직자 확대 고려 제도개선 필요
 - 역대정부 최초로 실시한 조직융합관리 프로그램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장·차관 주재 부내 회의 시 부서 간 장벽을 넘는 현안논의, 교차인사 및 인사배치기준 사전 예고제 강화 등 필요
 - 여성공무원 증가에 따른 장기적인 공무원 구조의 변화를 예측하여 채용, 승진, 보직 등 관련 제도 지속적 개선 필요
 - '08년 공채 여성합격률 : 행정고시(행정·공안) 51.2%, 외무고시 65.7%

□ 개성공단 관련 장기 비전 마련 필요

- 우리의 전반적 대북경협정책에 비추어 개성공단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에 대한 종합적 비전¹ 마련과 함께 그에 따른 구체적 정책수단을 강구할 필요
 - 개성공단 관련, 다음 단계의 사업에 착수할지, 아니면 현 수준에서 보다 효율적인 관리에 노력할지를 결정

□ 교정시설 내 수형자 자살 예방대책 강화

- '05년 이후 교정시설 내에서 매년 16~17명의 자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09년도 9명)
 - 교정시설 내에서 '05년 이후 현재까지 총 72명의 자살자 발생
 - 초범(41.7%)과 교정시설 수용 1년 이내(63.9%) 자살 비율이 높음
- 교정시설 입소자에 대한 심리검사, 정신의학적 검사 등 과학적 판단기준에 따라 분류 및 관리·감독 강화
 - 아울러, 수형자에 대한 종교인 및 전문가 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자살 예방활동 강화

부단위 외교안보·일반행정 분야

- 8개 기관 16개 과제 중 우수 4, 보통 10, 미흡 2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통계청

평가결과	과제명<기관 직제순>
우수(4)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대책 총력 추진(관세청)
	수요자 맞춤형 조달서비스 제공(조달청)
	창업활성화 지원(중소기업청)
	글로벌 국제협력 강화(특허청)
보통(10)	경제살리기·일자리 창출 지원 및 서민생활 안정 추진(국세청)
	과세기반 확충 및 숨은 세원 발굴을 통한 재정수입 확보(국세청)
	철저한 관세 국경 관리(관세청)
	조달사업을 통한 중기지원(조달청)
	통계정보 서비스의 강화(통계청)
	열린연구·현장연구·실용연구 및 수요자 중심 보급체계 구축(농촌진흥청)
	아시아 산림 녹화를 주도하는 녹색강국 구현(산림청)
	산림자원의 순환이용 활성화(산림청)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애로 지원(중소기업청)
	세계 최고수준의 심사서비스 제공(특허청)
미흡(2)	경제살리기 통계 적극 개발 및 통계생산 방식의 선진화(통계청)
	글로벌 농업 기술협력 네트워크 구축(농촌진흥청)

잘된 점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관세행정서비스 지원 노력 강화**
 - 환율 피해업체 등을 대상으로 세금 납기연장·분할 납부 허용, 잠자는 관세환급금 찾아주기 등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 수출기업 납기연장·분할납부 세액(2조1,765억원), 환급금 찾아주기(810억원)
 - 수출기업의 원활한 해외통관을 지원하는 종합우수인증업체(AEO) 제도시행 및 보세공장 이용 업종 확대로 수출활성화 지원
 - 보세공장 이용 확대(연 1,523억원 절감), 일괄통관심사제 도입, 항공화물RFID 도입(연 1,415억원 절감), AEO제도 본격시행(85개업체, 연 1천억원 절감)
 - FTA 특혜세율을 활용한 주요산업별 FTA 수익모델 개발 제공,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업체지정 등 수출지원 강화
 - 한·아세안 FTA 수출 활용비율 : 0.7('07년) → 1.4('08년) → 5.3('09년)
- **IP5 체제 구축을 통한 지식재산권 분야 선도국 입지 강화**
 - 기존 IP3(미, 일, 유럽) 체제로 운영되던 것을 IP5 체제로 전환시켜 국제사회 지적권 현안의 중재자로서의 위상 강화
 - IP5간 출원서식 통일화로 연간 130억원 절감 가능하며, 특허심사하이웨이 실시로 우리 기업이 미국 등 주요국에서의 특허획득에 걸리는 시간 20개월 이상 단축
 - 최빈·개도국 대상 생존형 최적기술, 지적권 인프라 등을 지원하여 세계 중심국가의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에 실질적 기여
 - APEC에 1차 1브랜드 제안 사업 채택('09.7)으로 APEC 기금 8만8천불 확보
 - 특허넷을 EDCF차관 사업으로 인도네시아에 보급 추진(IT수출효과 480억원 규모)
 - 지식재산 선진국 위상에 부합하는 지적권 존중문화와 사회시스템 구축 및 중국 등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지적권 보호 기반 마련
 - 지적권 단속실적('09.10말 현재) : 2,462건(온프라인 : 2,332건, 온라인 : 130건)
- **맞춤형 조달서비스 제공을 통해 예산절감 및 행정효율성 증대**
 - 수요기관에 다양한 물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조달업체의 판로개척 기회 제공 등을 위한 종합쇼핑몰 등록 품목 수 지속 증가
 - 종합쇼핑몰 등록 : 31.8만 품목(전년대비 33.6% 증가, 종합만족도 5.4%상승)
 - 전문성활용, 예산절감, 행정소요기간 단축 등을 위한 맞춤형 구매서비스 제공을 IT 및 전문용역 분야로 서비스 제공 확대
 - 맞춤형 서비스 실적 : 맞춤형 건수(818건) / 협상계약 건수(2,401건)
 - 공공기관의 IT, 용역, 시설공사 등 복잡·다양한 조달 수요기관에 조달분야 전문인력 지원으로 국가 행정효율성 증대에 기여
 - 공사발주 업무상 부실요인 최소화로 예산 절감(61건, 약1,957억원)
- **창업절차 간소화, 신규 창업원 발굴 등 선진국수준의 창업 활성화**
 - 상법, 공증인법 등의 개정 추진으로 창업비용 절감 및 창업기간 단축 등 창업절차 간소화를 통한 창업환경의 획기적 개선
 - 창업비용 : 44만원, 창업기간단축 : 17일('08년) → 14일('09년)
 - 세계은행 발표 창업환경 순위 73단계 상승 : 126위('08년) → 53위('09년)
 - 아이디어 상업화, 실험실 창업 촉진 및 기업가정신 확산 등의 정책추진을 통하여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기술창업 활성화
 - 창업법인수 : 42,176개(전년대비 10.6% 증가)
 - 창업환경 개선, 창업예산 확충, 신규창업원 발굴·지원 등에 의한 직접 고용효과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
 - 고용창출(1.2만명) : 창업자급(4,833명), BI(2,827명), 예비창업자 육성(3,617명)

미흡한 점

- **농업기술협력 분야의 정책수단 및 고부가가치 창출 기술개발 미흡**
 - 농업기술협력력을 통하여 국가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 개발 및 유관기관과의 종합적인 협력방안 미흡
 - 유전자원의 확보에는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확보된 유전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창출 기술개발 및 사업화 방안 마련은 다소 미흡
- **성과지표의 질적 측면 보완 및 행정자료 통합시스템 내실화 부족**
 - 통계 개발과 관련된 성과지표가 해당사업의 진행여부로 설정되어 있어 질적 측면에서 성과달성 노력과 관련된 성과지표는 부족
 - 시·군·구 GRDP 작성 지원에서 질적 지표인 통계의 품질이 성과지표에 없음
 - 체계적인 통계개발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진행되는 행정자료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 중장기 계획과제의 연도별 목표제시 등 내실화 필요

개선·보완 사항

-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농업기술분야 중장기 전략 수립 필요
 - 농업기술협력 분야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 방안을 마련하여 전략적으로 추진 할 필요
 - 수요자가 요구하는 유용한 유전자원을 적극 확보하고 개도국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농업기술 해외 공여의 확대 필요
- 정책수단의 부정적 효과 발생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등은 고용창출 및 유지를 위한 목표 달성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는 만큼 다양한 정책수단을 개발하여 보완할 필요
-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 노력 강화
 - 중소기업 판로지원이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사전평가를 통한 경쟁과 사후평가를 통한 부실기업 퇴출방안 마련 필요
 - 정부의 조달구매 시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확대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유도할 필요

청단위 일반행정 분야

- 11개 기관 22개 과제 중 우수 3, 보통 15, 미흡 4

법제처, 국가보훈처,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기상청, 문화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해양경찰청

평가결과	과제명<기관 직제순>
우수(3)	경제활성화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과감한 법제개선(법제처)
	생계형 침해범죄 근절대책(경찰청)
	국민감동 수준의 해양안전 서비스 제공(해양경찰청)
보통(15)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선도적 입법대응(법제처)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국가보훈처)
	대체복무제도 개선 및 복무관리 강화(병무청)
	국방 R&D 능력 확충(방위사업청)
	선진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법질서 확립(경찰청)
	반복적 피해피해 및 고위험 대책 추진(소방방재청)
	소방119 구조·구급 서비스 고도화(소방방재청)
	국가기상 관측망의 확충 및 표준화(기상청)
	국민이 신뢰하는 기상예보 서비스 제공(기상청)
	문화재 안전관리 체계 구축(문화재청)
	고궁 관광 자원화(문화재청)
	안전하고 건강한 어린이 식·의약 환경 조성(식품의약품안전청)
	국민이 체감하는 식품안전관리 강화(식품의약품안전청)
	최적의 정주여건 조성(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빈틈없는 해양주권 확보 및 안보활동 강화(해양경찰청)

평가결과	과제명<기관 직제순>
미흡(4)	보훈 의료서비스 확대(국가보훈처)
	병역의무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징병절차 개선(병무청)
	획득사업의 투명성·효율성 제고(방위사업청)
	차질 없는 건설사업 시행 및 자족기능 유지기반 조성(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잘된 점

- **생계침해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경제질서 확립 및 민생안정 유지**
 - 「생계침해범죄 대책 추진단」을 편성하고 생계침해 범죄 및 피해 회복이 어려운 불법사금융, 전화금융사기 등을 집중단속하여 서민의 삶과 경제를 위협하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
 - 생계침해 범죄검거 실적 : '09년 상반기 53,847명(목표치 34,640명, 목표대비 155%달성), 하반기 27,376명(목표치 23,329명, 목표대비117% 달성) 검거
 - 불법사금융, 전화금융, 인터넷사기, 인터넷 도박을 집중단속하여 '09. 10. 31 현재 79,969명 검거(연간 목표대비 188% 달성)
-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해상안전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생명 보호**
 - 도서지역 등 의료 사각지대에 함정과 병원을 연계한 원격응급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 복지부와 업무협약서 체결(7.12) 및 '낙도 방문 및 현장점검'(5회)을 통해 함정과 122 응급전화를 연계한 해양 응급의료시스템 구축 추진(총278척, '09년 11척 완료)
 - 세계 최초 해수욕장 안전망 국제표준화 기구(ISO) 인증획득(5.19) 및 민간급류 순찰대 지정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한 레저활동을 위한 기반조성
 - 해수욕장 사망사고 '08년 18명 → '09년 9명
 - 내린천, 남한강 등 급류 레저객 구조현황 : '08년 20회 159명 → '09년 109회 541명
- **국민생활의 편의 배려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민 불편 법령 개선**
 - 국민생활과 기업·영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법령의 지속적인 정비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법제 개선 추진
 -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를 통해 3,112건의 개선의견을 수렴하여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지 않은 입양자에 대한 지원확대' 등 주요개선과제에 대한 내부법령안 합동심사회 개최
 - '먼저세 미납자 먼저취소 제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최소개발 면적기준 완화' 등 불편법령 총 54건을 개폐, 국무회의 보고(6.23)
 -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 합리화 방안('09.3월) 및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09.8월) 마련
 -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 합리화 방안 : 영업정지기간 또는 업체의 규모나 매출액 등 형평성을 고려하여 차등화

미흡한 점

- **자족기능 유지성과 미흡 및 도시성격과 관련된 논란 지속**
 -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자족기능 유지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성과가 미흡
 - '09년 추진목표로 자족기능 유지전략 수립과 산업·대학·병원 등 유치를 제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성과는 투자유치종합계획(안) 마련 및 KAIST등 4건의 MOU체결에 불과
 - 정책형성·결정과과정에서 국민적 합의 부족으로 도시의 성격과 유치기능 및 전략에 대한 논란 지속
- **획득사업 폐쇄적 운영 및 투명성 확보수단의 다양성 부족**
 - 방위사업 추진과정의 투명성이 다소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획득사업의 공개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 상시감사, 절차준수, 의례적인 청렴교육 등 제한적 수단에 의해 투명성을 확보하려 함
- **불법적인 병역면탈 사례에 대한 예방대책 마련 미흡**
 - 최근 병역면탈 관련, 병무청 공무원의 위·탈법 사항이 적발된 경우는 없지만 환자 바뀌치기, 고위적 어깨탈구 수술 등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병역면탈 수법 사례에 대한 예방대책 및 제도보완 노력이 미흡
 - 최근 어깨탈구 병역비리 사례('09.7월, 혐의자 203명)

- **보훈중앙병원의 경쟁력 확보 대안제시 부족 및 보건의료서비스 확대에 따른 부작용 상존**
 - 3차 진료기능을 갖춘 보훈중앙병원 건립(신축 600, 리모델링 800 병상)을 추진하여 보훈의료 서비스 제고를 위한 토대는 마련되고 있으나, 의료기관간 경쟁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안제시가 부족
 - 보훈 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민간의료기관 위탁진료시 과잉진료 및 서비스 남용의 문제 소지가 상존
- **고궁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수요자 요구반영 노력 미흡**
 - 고궁을 세계적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학계·연구자 등 관계전문가의 의견은 수렴하였으나 국내·외 관광객 등 관광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이 미흡

개선·보완 사항

-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발전방안 조속 마련 및 외부 여건변화를 고려한 국민합의 도출 필요**
 -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장기적 비전을 설정하고 단계적 전략을 수립하여 기업·대학·연구소 유치 등 자족기능을 확보할수 있는 방안 조속 추진 필요
 - 도시의 성격과 유치기능 및 전략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조속히 도출하여 대국민 설득과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추진의 정당성과 추동력을 확보할 필요
- **획득사업 투명성·효율성 제고**
 - 획득사업 추진과정의 투명성 향상 및 비리근절을 위해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관련부서 및 감시기관간 정보공유가 필요하며 전문가 양성을 통해 획득업무의 전문성 제고 필요
- **병역면탈에 대한 예방대책 마련 및 제도보완**
 - 병역비리 신고자 포상 강화, 모호한 징병검사 기준 개선 등을 통해 병역면탈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고, 병역 면제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프로그램 개발 필요
- **보훈병원 경쟁력 강화 및 의료서비스 확대에 따른 부작용 방지대책 추진**
 - 보훈중앙병원의 경우, 민간의료기관과 경쟁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안 마련 필요
 - 민간의료기관 위탁진료 등 의료서비스 확대에 따른 과잉진료 및 서비스남용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 강화 등 대책마련 필요
- **관광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고궁의 관광자원화 추진**
 - 관광 수요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관람객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고, 이를 반영한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스토리 텔링 등 역사와 이야기가 공존하는 관광 콘텐츠 개발 필요

2. 녹색성장

1] 녹색성장 부문 평가개요

- **기본 방향**
 - 저탄소 녹색성장의 효율적·체계적인 달성을 위하여 관련 부처의 추진노력 및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정책 추동력을 확보
- **평가 대상기관·과제**
 -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09.7) 상 중점 추진중인 22개 과제(18개 기관)를 대상으로 평가
 - 17기관 1과제 원칙, 지경부 등 4개 기관은 2개 과제 평가

구분	기관명
부단위(13)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노동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청단위(5)	기상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소방방재청, 중소기업청

- 22개 과제를 과제 성격에 따라 3개 분야로 나누어 평가
- 녹색생활·기후변화·에너지·신성장 동력

□ 평가지표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정책형성(30)	1. 정책목표의 적합성	1-1. 정책목표의 명료성(5)
	2. 정책내용의 타당성	2-1. 정책내용의 타당성(10)
	3. 계획수립의 적절성	3-1. 의견수렴의 충실성(5) 3-2.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절성(10)
정책집행(30)	4. 추진과정의 합리성	4-1. 자원투입의 적절성(5) 4-2. 유관기관·정책과의 협조노력(5)
	5. 추진과정의 충실성	5-1. 추진일정의 준수성(10) 5-2. 정책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성(5)
	6. 정책확산 노력	6-1. 관련 교육, 대국민 소통·홍보, 녹색생활 확산 노력(5)
정책산출·결과(40)	7. 성과 달성도	7-1. 성과목표 달성도(30) 7-2. 정책효과성(10)

*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7월에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핵심과제 부문보다 '정책형성' 단계 배점 비율을 상향 조정

2 녹색성장 부문 평가결과

녹색생활분과

- 「녹색성장 5개년계획」의 3대 전략 중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와 관련된 5개 과제(5개 부처)로 구성
- '녹색생활 범국민 운동' 1개 과제가 '우수' 평가를 받은 반면, '녹색성장 선도 관광산업 육성 및 생태관광 활성화' 1개 과제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

평가결과	과제명(기관 직제순)
우수(1)	녹색생활 범국민 운동(환경부)
보통(3)	녹색성장 국제 협력 강화 및 국가브랜드 제고(외교통상부)
	녹색성장 지원 및 생활기반 조성(행정안전부)
	녹색 국토·교통의 조성(국토해양부)
미흡(1)	녹색성장 선도 관광산업 육성 및 생태관광 활성화(문화체육관광부)

잘된점

- 녹색생활 실천 인센티브제도 등을 통해 자발적 참여 유도
 - 그린스타트, 탄소성적표지제, 탄소포인트제 등을 통해 녹색생활 실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녹색생활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
 - 녹색생활의 자율적 실천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 기구인 그린스타트 지역네트워크를 205개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실천 프로그램을 추진
 -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탄소성적표지인증 69건, 지자체 탄소포인트제 참여율 72% 달성)
- 그린카 4대강국 진입기반 조성 및 친환경 운전실천 확산
 - 연간 14,000대의 그린카 보급 등을 통해 그린카 4대강국 진입을 위한 시장기반을 조성하고, 친환경운전 100만인 서명운동 등을 통해 수송부문 녹색생활 실천을 확산

-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참여로 국제협력 기반 조성**
 - IRENA 사무국 소재지 선정위 의장국 활동 수행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분야 국제 협력을 제고하고 우리 전문가의 IRENA 사무국 진출 기반 조성
 - IRENA 제2차 준비위원회 부의장직 수임, IRENA 설립규정 국내비준 절차 진행, IRENA 사무국 채용·파견 희망자 17명 면접 추진 등
- **건축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의 중장기 국가 목표 설정을 위한 “녹색 도시·건축물 활성화 방안” 마련**
 - ‘20년까지 건축분야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대비 31% 감축 목표 수립
 - 약 6,300만 TCO2(이산화탄소환산톤)의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79억불의 에너지 수입비용 절감목표 설정

미흡한 점

- **문화가 흐르는 4대강사업의 유관부처 연계추진 미흡**
 - 문화부에서 시행하고자하는 26개 세부추진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담보할 수 있는 명확한 제도적·정책적 장치가 불투명
 - 4대강이 갖고 있는 특화된 지역별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한국형 명품 생태관광모델개발의 일환으로 사업내용이 구성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실적이 미비
- **‘국가 DB구축’의 녹색성장 연계 노력 미흡**
 - ‘국가 DB구축’ 과제는 ‘99년 이후부터 추진되어 온 정부사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녹색성장전략’과의 연계를 위한 실천계획이 미흡
- **건축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기술개발이 뒷받침 되어야 하나 현재 각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추진**
 - 중복투자 문제, 개발된 기술의 활용도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
- **해양에너지 개발사업의 분산관리로 민간자본 유치 등 효율성 저해**
 - 조력, 조류, 파력 등 해양에너지 개발사업은 지경부(전력), 국토부(시공), 기재부(민투법) 등에 소관 업무가 분산되어 있어 민간 자본 유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 발굴 및 사업추진의 효율성 저해
- **개도국의 녹색사업 ODA의 사업간 유기적 연계 부족**
 - 경제성 우선의 기획재정부, 대외관계 위주의 외교통상부 등 ODA추진 관련 정부부처간 조율과정 실적이 미흡하고 사업간 유기적 연계 부족
 -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사업의 예산집행 실적 저조(‘09년 사업예산 400억원중 49억원만 집행)

개선·보완 사항

- **지역별 생태자원의 특색을 살린 특화전략 마련 필요**
 - 생태관광활성화 성공요인은 관광자원의 차별화에 있으므로 향후 한국적 차별성이 우수한 생태관광자원 개발과 지역별 과도한 경쟁과 중복성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대책마련이 필요
- **‘국가 DB구축’ 실천계획 보완 필요**
 - ‘99년 이후 지속된 ‘지식정보 디지털화’만으로 구성되지 않도록 ‘녹색성장전략’ 정책성과와 연계된 새로운 실천항목을 추가하고 기존 실천항목을 보완
- **녹색건축 기술개발을 위한 총괄 조정 역할 필요**
 - 국토부, 환경부, 지경부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녹색건축 분야의 기술개발현황을 특정부처에서 총괄 취합하고 범 정부적인 발전방안의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

기후변화·에너지분과

- **‘녹색성장 5개년계획’의 3대전략 중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과 관련된 7개 과제(7개 부처)로 구성**
- **‘기후변화 대응 녹색기술 개발 및 성장동력화’ 등 2개 과제는 ‘우수’ 평가를 받은 반면, ‘기후변화의 과학적 대응 역량 제고 및 신성장 동력 개발 지원’ 1개 과제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

평가결과	과제명(기관 직제순)
우수(2)	에너지저소비, 고효율 경제사회시스템 구축 및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지식경제부)
	기후변화 대응 녹색기술 개발 및 성장동력화(농촌진흥청)
보통(4)	녹색 핵심기술 개발(교육과학기술부)
	농수축산분야 온실가스 저감 및 친환경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농림수산식품부)
	기후변화 대비 재해관리 강화(소방방재청)
	탄소흡수 및 녹색강국 인프라 강화(산림청)
미흡(1)	기후변화의 과학적 대응 역량 제고 및 신성장 동력 개발 지원(기상청)

잘된 점

- **농업분야 녹색기술 개발·보급으로 온난화 기후변화에 대응한 열대 및 아열대 작물개발, 산업화 연계 등 블루오션 창출**
 - 아열대 작물 5종(아티초크등) 개발로 농산물 부가가치 20% 향상, 바이오 연료작물 품종개발 보급으로 연간 수입대체 및 CO2 절감 효과(74억원) 예상
- **산업의 에너지 저소비 구조 전환 및 녹색경영 추진을 통해 기업의 저탄소 고효율 경영역량 강화**
 - 에너지 절약시설투자 용자 지원, 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 등
- **산림분야 온실가스 통계체계 기반 조성**
 - 산림분야 주종 수종 흡수계수 개발(6수종) 및 온실가스 흡수량 산정 등을 통한 온실가스 통계체계 기반 조성으로 산림탄소배출권(탄소흡수량 36백만CO2) 확보
 - IPCC에서는 온실가스 통계 오차가 9% 이상 차이이면 산림탄소배출권 불인정
- **수요자 중심 녹색기술의 개발체계 구축을 통한 실효성 제고**
 - 농업인·소비자·정책부서 등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관 중심의 연구체제에서 "수요자중심의 연구개발 시스템"으로 전환
- **친환경 농업의 산업기반 마련**
 - 친환경농업의 적극적 육성으로 친환경농산물을 틈새시장에서 주류시장으로 진입시키는 등 가시적 성과 시현
 - 친환경농업은 매년 70% 정도의 지속적인 성장, 전체농업에서 11%를 차지
 - 관련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으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확대(20개소), 마을단위 친환경농업지구조성 확대(902개소) 등
-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방재업무의 국제적 위상 강화**
 - UN 방재연수원 및 UN ISDR 동북아시아사무소 개소, 개도국의 관련 종사자에 대한 시범교육 시행 등을 통해 방재분야 교육·훈련의 국제적 위상 강화

미흡한 점

- **한반도 기후변화감시 관련 적절한 성과목표 수립 및 관리 미흡**
 - 기상관측시설 인프라 구축에 편중된 성과목표 관리로 기후변화감시자료의 품질관리 등 신뢰도 제고를 위한 노력 부족
 - 관측자료의 품질과 신뢰도를 분석 관리할수 있는 성과지표 설정 필요
- **기상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상산업 육성 지원책 미흡**
 - 기상산업진흥법 제정(09.6)으로 기상산업 육성의 기반은 조성되었으나, 기상장비 초기개발 투자비용 과다발생으로 기상사업자 참여 유도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책은 미흡
 - '09.10월현재, 기상사업자는 총 17개사로 그중 4개사는 휴업중. '10년 R&D 예산에 미반영되어 기상사업자 육성 및 지원이 저조할 것으로 판단

□ **녹색기술의 실용화 및 기술확산을 위한 협력기반 구축 미흡**

- 녹색기술의 실용화 및 기술확산은 관련부처(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농림수산업부·환경부 등)와의 협력(예산지원·기술교류 등)을 기반으로 할 때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나, 각 부처가 고유 업무만을 강조하여 관련부처와의 협력시스템 작동이 부족

개선·보완 사항

□ **한반도 기후변화 감시관련, 기상측정 자료의 신뢰도 제고방안 마련 필요**

- 중장기 및 연도별 성과목표치가 포함된 기상측정 자료의 신뢰도 제고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할 필요

□ **국가적 차원의 다양한 기상산업 육성 지원책 마련 필요**

- '97년부터 민간예보사업제도를 도입시행했음에도 현재까지 기상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상산업 육성은 여전히 미진한 상태임을 감안, 국가적 차원의 세제 및 예산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

□ **친환경농업의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량 근거 제시 필요**

- 친환경농업은 안전한 농산물 생산 측면도 중요하나, 친환경농법 확산을 통해 화학비료를 절감하는 경우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근거자료 확보 필요
 - * 수도작 농가들에게 건담직파와 간단관개 등을 유도할 수 있는 저탄소직불제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필요

□ **녹색기술 실용화를 위한 부처간 협력체계 정비 필요**

- 녹색기술 우수연구실적을 실용화하기 위한 부처간 역할분담 필요
- 예산배분의 선택과 집중으로 녹색개발 기술의 사업화 및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필요

신성장동력분과

□ 「'녹색성장 5개년계획」의 3대 전략 중 '신성장동력 창출'과 관련된 10개 과제(10개 부처)로 구성

□ '녹색 중소·벤처기업 육성' 1개 과제가 '우수' 평가를 받은 반면,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 등 2개 과제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

평가결과	과제명<기관 직제순>
우수(1)	녹색 중소·벤처기업 육성(중소기업청)
보통(7)	국내 녹색투자 활성화 기반 조성 및 개도국 지원(기획재정부)
	녹색 인재양성 확대(교육과학기술부)
	주력산업의 녹색 전환 및 그린에너지산업 육성(지식경제부)
	그린헬스케어 산업의 신성장동력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보건복지가족부)
	4대강 등 전국하천 건강성 회복 추진(환경부)
	녹색일자리 창출 및 녹색 인재 양성(노동부)
	방송통신 녹색성장 추진(방송통신위원회)
미흡(2)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국토해양부)
	녹색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녹색금융 활성화(금융위원회)

잘된 점

□ **중소기업형 유망 녹색기술 발굴과 중소기업 녹색 R&D 투자비중 확대를 통해 국내의 취약한 녹색 중소기업의 녹색성장 기반 강화**

- * 중소기업형 유망 녹색기술 8개 분야, 50개 품목, 117개 기술선정('09.9월)
- * 녹색 R&D 투자비중 확대('09년 10% → '13년 20%)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5개년 계획에 반영

-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을 위한 환경적 측면의 기반 마련
 - 4대강 수질개선 종합정책 수립 및 4대강 공사 중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관리방안을 제시
 - 수질오염사고 방제매뉴얼 마련('09.8), 수질오염 통합방제센터 출범('09.10)
- 도심 건천 및 복개하천의 녹색생활공간 재창조 기반마련
 - 하천 기능을 상실한 도심 건천 및 복개하천을 건강한 하천으로 복원하는 “청계천+20 프로젝트” 수립
- 생태산업단지 추진을 통한 주력산업의 녹색화 촉진 기반 조성
 - 생태산업단지 구축 시범사업('05.10 ~ '10.5) 등을 통해 산업집적지의 자원순환모델 제시 등 주력산업의 녹색화 집적효과를 촉진시킬 수 있는 기반 조성
- 그린IT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투자로 표준역량 강화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신규서비스 시장 창출이 가능한 그린IT 전략분야 표준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 제고와 미래 신산업 육성

미흡한 점

- 수자원관리부문에서 녹색성장 5개년계획에서 제시된 목표를 달성하는데 구체적 연계성이 부족
 -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은 2006년에 제시된 것으로 추가적인 정책개발 노력이 미흡
- 정책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금융기관의 녹색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유도 대책 등 미비
 - 산은, 기은 및 신보, 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의 직접적인 금융지원 사례만 나타나 있어 민간 금융기관의 자금지원 유도 기능이 부재
- 녹색산업에 대한 명확한 범위설정을 위해 녹색인증제 및 기업 확인제가 조속히 마련되어 실시될 필요
 - 현재 산은, 기은 등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한 녹색산업에 대해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
- 외국인환자 유치의 경우, 의료산업화에 대한 전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고, 국가별로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이 부족
 - 의료법 시행이후 국가적 브랜드 개발, 대표홈페이지 구축, 전략국가 홍보전략 등의 사전 준비 미흡

개선·보완 사항

- 수자원 관리 관련, 녹색성장 5개년 계획과의 연계성 확보 필요
 - 녹색성장이 달성하고자 하는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기술을 통한 국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제시 할 필요
 - 또한, 장단기 수자원 관리방안 혹은 취약성 평가 등을 통한 조기 기후변화 대응체제 구축 등이 제시 될 필요
-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 유도 필요
 -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조성한 펀드를 통해 보증기관에 특별출연하여 보증우대 등 혜택을 제공하고 무분별한 보증지원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도록 유도 할 필요
- 녹색인증제, 기업 확인제 본격 실시 및 녹색금융에 대한 통계기준 마련 필요
 - 민간 금융기관의 녹색금융 활동현황을 관리하기 위해 녹색 인증제 및 확인제와 연계된 녹색금융 통계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
- 녹색금융상품의 수요기반 확대를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필요
 - 현 홍보활동은 주로 해당 정책금융기관에 치중하고 있어 녹색금융상품의 수요자인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녹색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
- 외국인 환자 유치관련, 체계적인 마케팅·홍보 전략 수립을 통해 한국의료에 대한 국제 인지도 제고 필요
 - 국가 브랜드 개발, 한국의료 대표홈페이지 구축, 우수기술(상품) 개발 및 전략국가별 홍보전략 수립 등 추진 필요

3. 정책관리역량

1 정책관리역량 부문 평가개요

□ **평가목적**

- 정부정책 추진을 위해 부처가 기울인 노력과 성과를 관계역량·개혁역량·입법추진역량으로 평가함으로써 국정성과 창출 유도

□ **평가대상**

- 장관급 기관(19) : 부(15) 및 장관급 기관*(4)
 -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 차관급 기관(19) : 외청(17, 검찰청 제외) 및 차관급 기관*(2)
 - 법제처, 국가보훈처

□ **평가분야**

- 관계역량 : 일반국민·국회·전문가 등에 대한 의사소통 및 지지확보, 부처간 이견 조정, 범정부적 과제 적극 대처 노력 등
- 개혁역량 :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 현장점검, 새로운 현안문제 적극 대응, 불합리한 관행 개혁, 일하는 방식 개선 등
- 입법추진역량 : '09년 입법추진계획 대비 국회제출법안 비율, 하위법령 적기마련 비율 등

□ **평가방법**

- 핵심과제 평가와 동일하게 5대 분과*로 나누어, 총 11명(분과별 2~3명)으로 전문가 평가단** 구성
 - 분과 분류기준은 핵심과제와 동일
 - ** 분과(7개 기관 2명), Ⅱ분과(6개 기관 2명), Ⅲ분과(6개 기관 2명), Ⅳ분과(8개 기관 2명), Ⅴ분과(11개 기관 3명)
- 부처에서 제출한 우수사례의 난이도와 성과정도 및 미흡사항을 바탕으로 전문가 평가단이 정성적으로 평가
- 전문가 평가단의 해당과제 전문가가 작성한 평가보고서에 대해 교차 검증을 하고, 담당 정평위원 주제 조정분과에서 최종 결정

2 정책관리역량 부문 평가결과

<기관별 평가결과>

평가결과	기관명<직제순>
우수(8)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환경부, 금융위원회
	관세청, 소방방재청, 국가보훈처, 특허청
보통(26)	교육과학기술부, 통일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기상청, 문화재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해양경찰청
미흡(2)	국방부, 농림수산식품부
	법제처, 농촌진흥청

관계역량

잘된 점

- 대부분의 정책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수렴 및 유관단체·국회에 대한 지지확보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반대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안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
 - 4대강 살리기 관련 법안처리와 비전 공유를 위해 당정협의회(9회), 간담회·토론회(27건), 방송출연(2회), 인터뷰(33건), 강연(13건)하고, 산하기관 및 턴키 참여업체(16개) 등과 워크숍(09.11) 개최
 - 서민생활안정 관련 법령개정을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금융재산 기준 완화를 위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시행(2.6) 및 교육지원 신설, 지원기간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복지지원법·시행령'의 개정·시행(5.28)

- 주요현안정책에 대해 부처간 정책융합을 통해 부처간 이견을 해소하고, 법정부처 현안과제에 적극 대응하여 정책의 효과성과 일관성을 제고
 - 범부처적 국가 R&D 효율성 향상을 위해, 특허청·교과부·지경부 등 14개 R&D주관부처 및 15개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협력하여 '99~'07년 국가 R&D 특허 성과 데이터 31,438건을 정비('09.2~8월)
 - 녹색성장 정책 관련 그린캠퍼스운동 전개(교과부·환경부), 녹색생활실천 확산 협약(지경부 등 10개부처) 등 온실가스 줄이기 범국민실천운동을 공동 추진

미흡한 점

- 지지확보 노력이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에 치중되고, 비판적인 시민단체·언론 등에 대한 설득·지지확보 노력은 미흡
 - 다수가 정책대상 집단인 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당정협의, 대국회 설득, 대교협·교총·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을 상대로 한 협력·지지확보 노력은 많이 나타났으나, 관련 시민단체·이해당사자 등에 대한 의사소통은 미흡하고, 부처의 주도적·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
- 일부정책은 부처·지자체·당정간 사전조율 및 연계체계 미흡으로 정책혼선을 야기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 저하 초래
 - 비정규직법 개정 추진에 있어 기업·근로자·국회·노동계 등 관련 당사자와의 사전 조율과 대응이 부족하여 다양한 형태의 마찰과 사회적 혼란이 야기됨

개혁역량

잘된 점

- 대부분의 기관이 비상경제상황에 대처하여 속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하였고, 현장점검을 통한 애로사항 청취 및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의 실행력을 제고
 - 예산조기집행, 추경편성, 세제개편 등 속도감 있는 확대 재정정책 등을 통해 KOSPI 지수 상승 [1,113('08.10말)→1,206('09.3말)→1,580('09.11초)]
 -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 이후 '09.5~9월 자동차 내수는 전년동기대비 30.3%증가(총 61.7만대 중 34.6%(21.3만대)가 노후차 교체)
- 새롭게 대두된 현안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전략적인 노력으로 불합리한 관행 타파와 일하는 방식 개선을 추진
 - 적극적으로 꾸준한 외교노력으로 G20 정상회의(2010.11월) 및 제4차 원조효과고위급회의(2011년) 국내 개최에 성공
 -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형슈퍼마켓(SSM: Super SuperMarket) 진출제한 관련 국회 지정위 소상공인정책토론회·간담회 등을 거쳐 긍정 여론을 조성하고, '중소소매업 유통체계 혁신방안'을 대통령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의 보고(10.1)를 거쳐 마련

미흡한 점

- 일부 주요현안정책 해결에서 선제적 대응보다 사후적 처방에 의존하고, 단기적이고 소극적인 대처는 비판
 - 참여한 이해관계와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노력의 부족으로 지자체 통합의 타율성 논란이 여전하고, 공무원노조와 관련하여 선제적·적극적 대처가 미흡
- 개혁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성원에게 개혁이 내재화되지 못해 부조리한 관행이 나타나고, 국가위기상황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한 대비가 부족
 - 병역비리, 무기획득 관련 국방비리 등 각종 비리가 여전히 나타나고, 개성공단문제 등 국가위기상황 관련 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부족

입법추진역량

잘된 점

- 정부중점법안의 조속한 국회 제출을 위한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09년 정부중점법안 55건 중 정책변경으로 재입안 추진 중인 1건을 제외한 54건이 국회에 제출됨
 - 당초 63건에서 지난 6월 국회에서 3건, 9월 국회에서 1건이 통과되고, 정책변경(세제개편 2건, 노조관계법 2건)으로 4건이 제외되어 현재 잔여 법안은 55건

미흡한 점

- 빈번한 입법계획의 수정(추가, 철회 및 일정변경)으로 인해 정부입법계획의 신뢰성 및 예측가능성이 저하됨
 - 국방부는 당초 13건의 입법계획을 제출하였으나 3건의 법률안을 추가하고 10건을 철회하였고, 국가보훈처는 당초 15건의 입법계획을 제출하였으나 1건의 법률안을 추가하고 11건을 철회
- 2008년 18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 계류 중인 정부제출 법률안은 총 447건인데, 그 중 6개월 이상 장기 계류 중인 법률안이 309건(11.15 기준)으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상황

3 개선·보완 사항

-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지확보 노력에서 나아가, 정책별 비판적인 이해관계자 설득·지지확보 및 홍보·소통을 강화하고, 기관 간 정책 연계 강화로 정책혼선을 극복할 필요
 - 정부정책과 관련된 전문적인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취지를 국민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함으로써 정책의 안정화 도모
- 문제가 외부에 노출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단기적 처방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 정책의 효과성과 집행력을 높일 필요
 - 다양한 국가 위기 시나리오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을 내실화 할 필요
- 각종 비리문제와 부조리한 관행의 타파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유인설계를 통해 개혁의지를 구성원에게 내재화시키고, 엄격한 내부감사시스템을 적용하여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
 - 각종 비리문제 등이 외부로부터 제기되기 전에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관리를 하고, 내부직원에 대한 엄격한 성과평가와 이를 반영한 인사교류, 엄중한 내부감사시스템을 적용
- 입법수요 및 입법 장애요인을 충분히 확인·검토하여 입법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정부입법계획이 준수되도록 하고, 국회에 장기 계류 중인 법률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당정협의·의원간담회·정책설명회 등 집중적 노력 필요

4. 정책소통·홍보

1 정책소통·홍보 부문 평가개요

- 기본 방향
 - 국정운영 기본방향을 반영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대내외 소통·홍보 노력, 홍보를 통한 정책추진력 제고 등을 중점 평가
 - 집행적·관리적 홍보활동 위주의 기계적이고 정량적인 평가를 지양하고, 정책소통의 실질적 효과를 중시하는 산출·결과 위주의 정성적 평가에 중점
- 평가대상 기관 : 39개 중앙행정기관
 - 부처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관규모 및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피평가 기관을 그룹핑함으로써 평가의 형평성·수용성 확보
 - 39개 중앙행정기관을 업무특성(정책기관 : 19개 장관급 기관, 집행기관 : 20개 차관급 기관) 및 조직특성(정원 및 홍보담당인원) 등의 기준에 따라 그룹핑
- 평가체계 및 평가지표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계획(16)	1. 정책과 홍보연계(16)	1-1. 홍보협의체 운영 및 활용도(5) 1-2. 부처간 및 대외홍보 협력 정도(11)
집행(37±5)	2. 매체 활용홍보(22±5)	2-1. 온라인 홍보 활용도(17) 2-2. 대언론 브리핑 충실도(5)
		2-3. 외신대상 홍보활동 수준(±5)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집행(37±5)	3. 정책홍보품질(15)	3-1. 홍보콘텐츠 품질 및 활용도(15)
산출/결과(47)	4. 정책소통성과(47)	4-1. 주요정책 기획홍보 성과(30) 4-2. 정책기사 반영도(10) 4-3. 기관장 홍보활동 수준(7)

□ 평가 방법

- 평가의 공정성·객관성을 위해 산·학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정책소통·홍보 평가단」을 구성·운영(총 39명)
 - 홍보분야와 경제, 사회, 행정 등 정책전문가로 구성
- 각 부처가 e-PR 시스템에 등록하거나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평가하되 필요시 현장조사 병행

2 정책소통·홍보 부문 평가결과

총평

- '09년도 정책소통·홍보의 기본방향을 '경제회생, 민생안정, 미래준비' 등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 및 체감만족도 향상을 통한 정책 지지기반 및 추진동력 확대에 두고 추진
 - 대통령, 국무총리 등 최고위 국정주체가 적극적 정책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다수 부처에서 효과적 소통·홍보의 필요성 인식 및 홍보역량이 점차 향상
 -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 및 친서민정책, 저탄소·녹색성장 등 주요 국정 현안의 범정부적 홍보협력 강화로 일관성 있는 메시지 전달
- 소극적 언론활동 위주 홍보에서 정책형성-집행-사후 홍보의 전략적 접근 확대, 정책 현장 방문 등 활발한 소통·홍보활동 전개
 - 부처대변인 회의(격주 1회), 국정과제 전략협의회(주1회) 등을 활용하여 홍보상황 공유 및 홍보전략 마련
 - 모바일 활용, 정책블로그 운영 등 새로운 홍보매체 발굴과 스토리텔링 기법, 입소문 마케팅 도입 등 홍보수단의 다양화로 국민과 언론대상 정책정보 서비스 확대
 - 외신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 제공으로 국내외 선순환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정책간행물 품질 향상으로 매체 활용도가 제고
 - 주요정책에 대한 기획홍보가 확산되고 기관장의 적극적인 홍보활동 등으로 위기관리 대응성이 향상
- 그러나, 부처간 협력홍보, 홍보효과 분석을 통한 환류, 정책 특성별 차별화 홍보대책 등은 아직 부족하여 향후 개선해야 할 것으로 평가
 -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에 대해 부처간·당정간 정책협조체계를 보다 공고히 확립할 필요
 - 정책 추진 이후의 홍보효과 분석을 통해 주요 정책 이니셔티브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
 - 이슈관리가 필요한 정책, 보다 많은 정보 제공이 필요한 정책 등 정책 특성에 따른 홍보 수단별 차별화 대응
- 평가항목별로 비교해 보면, 매체활용 홍보 및 정책홍보 품질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주요정책 기획홍보 성과, 정책기사 반영도 등 정책소통 성과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기관별 평가결과〉

평가결과	기관명(직제순)
우수(8)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국세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해양경찰청
보통(23)	교육과학기술부,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물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기상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미흡(8)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방송통신위원회
	법제처, 국가보훈처, 검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단계별 평가결과

계획단계

□ 홍보협의체 운영 및 활용도

- 우수부처는 홍보전략회의 운영, 민간 홍보전문가 위촉 등을 통해 정책 형성단계부터 홍보전략을 적극 수립(공정위, 권익위, 노동부)
 - 각 실국별 주요정책에 대한 월간 홍보계획 수립, 홍보업체 및 민간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홍보 주간회의를 내실있게 운영(노동부)
 - 신규매체 및 다양한 홍보기법 활용 등 정부 정책 홍보의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
- 미흡부처는 홍보협의체를 보도자료 배포를 위한 협의창구 등 소극적으로 운영(외교부, 지경부, 방통위)
 - 홍보를 일방적으로 알리는 기능으로 활용하고 소통이 부족하여 홍보가 관행적인 방법으로 반복되는 경향
- 정책기관이 정책건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홍보협의체 운영실적은 집행기관보다 저조

<홍보협의체 운영실적>

기관별	정책건수	협의체 운영실적	정책건수 대비 협의체 운영실적(평균)
계(39)	726	1,615	2.2
정책기관(19)	437	617	1.4
집행기관(20)	289	998	3.5

- 정책부서와 홍보부서간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에 중점을 두고 전략적 홍보를 추진할 필요

□ 부처간 및 대외홍보 협력 정도

- 우수부처는 부처 내·외부 협력홍보를 위해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홍보네트워크에 포함시키는 등의 노력(환경부, 금융위, 국토부)
 - 국가 IR 차원에서 해외홍보협의회를 가동하여 해외 언론 관점에서 문제 이슈를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가 신뢰 향상에 기여(금융위)
 - 주요정책에 대해 부처-공기업간 공조체제를 통한 체계적인 홍보로 정책홍보 효과 배가
- 미흡부처는 부처간 홍보협력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분산적인 홍보로 홍보효과 미비(통일부, 여성부, 법무부)
 - 부처-공기업간 전략적인 홍보협의체 부재 및 역할분담 모호, 공기업을 단순한 홍보 보조수단으로 활용 등 미흡사례 발생

집행단계

□ 온라인 홍보 활용도

- 우수부처는 민간포털과 연계한 블로그를 적극 활용하고 다양한 매체와 정보전달 방법을 활용하여 홍보(복지부, 권익위, 여성부)
 - 건강에 대한 큰 주제를 기반으로 실생활과 밀접한 콘텐츠를 기획, 많은 공감을 얻고 있으며,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블로그내 댓글 등이 활성화되어 있음(보건복지가족부 블로그 "따스아리")

<대표블로그 운영실적>

구분	총계	월 평균	
		부처 전체	1개 부처
대표블로그 방문자 수	15,408,779명(7~10월)	3,852,195명	98,774.2명
대표블로그 게시물 수	29,977건(1~10월)	29,977건	69.2건

- 미흡부처는 블로그 활용이 형식적이고 기존 자료를 단순 재가공하는 수준의 온라인 홍보(금융위, 통일부, 외교부)
- 원활한 콘텐츠 수급과 네티즌 관계 강화를 위해 블로그 기자단을 활용하고 있으나, 블로그 기자단의 콘텐츠 작성능력의 수준차가 있어 정확한 가이드라인과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

□ 대언론 브리핑 충실도

- 우수부처는 e-브리핑시스템을 이용한 실시간 및 녹화방송 등을 적극 활용하여 대언론 브리핑 충실도를 제고 (통일부, 외교부, 노동부)
 - e브리핑시스템 등재실적 : 총 7,695건(부처 평균 197건)
 - 실시간(1,929건), 녹화(1,864건), 공개자료(1,950건), 비공개브리핑(1,952건)
- 미흡부처는 기자실 복원으로 취재기자가 상주하고 있어 e-브리핑의 필요성 인식이 부족하나, 후속 홍보 효과를 위해서는 시스템의 적극 활용이 필요(여성부, 방통위, 금융위)
- 브리핑 충실도에 관한 기자 만족도 조사결과 각 부처의 취재지원 노력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온라인 매체에 대한 취재지원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기자 만족도 조사 결과 : 브리핑 충실도 62.4점, 브리핑 적시성 58.8점, 자료제공 노력 61.6점(리서치 & 리서치, 기자 600명 대상 전화 설문)
 - 특히, 상주기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비공개 브리핑은 온라인 취재기자의 정보접근을 제한하고 있어, e-브리핑을 통한 실시간 브리핑을 활성화 할 필요

□ 외신대상 홍보활동 수준

- 우수부처는 국가경제 및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주는 외신홍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으로 외신대상 설명회, 텔레컨퍼런스 등을 활용해 적극적·선제적 홍보를 추진(기재부, 금융위, 통일부)
 - 지속적으로 한국정부를 폄하하는 발언을 해 왔던 WSJ 한국지국장에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을 통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냈으며, 이후 WSJ 논조변화를 유도(기획재정부)
- 미흡부처는 사전 정책정보 제공 등 적극적 예방 홍보보다 사후 해명에 그쳐 제대로 정책을 알리지 못하는 경향(지경부, 환경부, 교과부)
 - 외신이 관심을 갖고 홍보할 수 있는 소재를 발굴하려는 노력이 미흡하며, 국내언론 위주의 정보제공이나 브리핑 등 관행 지속

□ 홍보콘텐츠 품질 및 활용도

- 우수부처는 주요 정책발표·현안 발생시 정책포털을 활용하여 웹툰이나 삽화 등을 이용한 홍보를 적극 추진(기재부, 복지부, 문화부)
 - 신종플루 등 재난 상황에 장관의 특별기고 등을 통해 시의성 있게 대응하였으며, 적절한 Q&A를 덧붙임으로써 정책 홍보 효과 배가(보건복지가족부)
 - 적절한 홍보 아이템 선정, 홍보대상 눈높이에 맞는 재미있는 내용 구성 등을 통해 홍보품질을 향상
- 미흡부처는 단순한 텍스트 위주 등 공급자 중심의 홍보로 홍보효과 반감(공정위, 금융위, 지경부)
 - 자화 자찬식 일방적 홍보 및 지나친 비주얼 사용 등으로 오히려 홍보품질을 저하시키는 사례도 일부 발생

산출 결과 단계

□ 주요정책 기획홍보 성과

- 우수부처는 정책홍보 우수사례 발표대회(년 2회)를 계기로 스토리텔링 등 다양한 홍보기법을 적극 활용하고 단계적·체계적 정책홍보 추진(행안부, 환경부, 금융위)
 - 정책 입안 초기부터 정책과 홍보의 결합을 통해 정책효과 제고
- 미흡부처는 홍보 소재 발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며 관행적인 홍보기법 활용 등 전략적 홍보 부족(방통위, 공정위, 여성부)

□ 정책기사 반영도

- 우수부처는 정책의 메시지 구성이 효과적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달력 등이 우수하여 언론에 반영비율이 높음(공정위, 국토부, 복지부)
 - 정책에 대한 메시지 전달 구성이 탁월하며, 기사의 충실도·기사량·핵심 메시지 반영 등에서 성과(공정거래위원회)
- 미흡부처는 새로운 정책기사를 개발하기보다는 매년 해오던 행사를 정책기사로 내보내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보도 자료도 1회성에 그치는 경향(외교부, 법무부, 금융위)
- 미디어 선택 및 다양한 활용, 적절한 배분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거의 모든 부처에서 보이는 현상으로 향후 개선이 필요

□ 기관장 홍보활동 수준

- 우수부처는 장·차관 등 기관장이 사전 홍보 계획 수립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처의 정책을 적극 홍보(여성부, 지경부, 환경부)
 - 보도자료 등 홍보수단의 적시 활용, 언론 등과의 접촉기회 확대,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으로 정책추진력을 제고
- 미흡부처는 현안발생시 단기 대응에 그치는 경향이 있으며 홍보수단도 창의성, 효과성 측면에서 미흡(국방부, 통일부, 금융위)
- 정책기관과 집행기관간의 특성에 따른 홍보력 차이와 언론의 관심도 차이 등 기관간에 구조적 차이가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이슈개발, 창의적인 홍보 마케팅 전략 수립, 기관장의 지속적인 관심 등이 필요

③ 개선·보완 사항

-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전략적인 맞춤형 소통·홍보 강화
 -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 및 친서민정책, 저탄소·녹색성장 등 주요 국정에 대해 일반국민·언론·전문가·외신, 정책지지층·비판 집단 등 대상 특성에 따른 전략적 맞춤형 홍보 강화
 - 정책추진 단계별로 홍보키워드 설정 및 브랜드 이미지 전략 등 정책소통·홍보 전략을 사전에 수립·시행
 - 정책 추진 이후 홍보효과에 대한 평가·환류를 강화하여 효과적인 소통·홍보를 추진, 국정성과에 대한 지지 확산
- 부처간·당정간 공고한 정책협조체계 구축
 -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에 대해 관련부처 및 당정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율된 하나의 목소리(One-voice)로 대처하여 정책에 대한 국민과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
 - 현재 주로 정책형성 단계에만 운영되고 있는 홍보협의체를 정책형성-집행-사후 등 각 단계별 운영으로 전환할 필요
- 홍보채널의 다양화 및 홍보소재 발굴노력 강화
 - 정례 브리핑 등을 활성화하여 주기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인터넷, 블로그 등 온라인·뉴미디어를 적극 활용한 홍보 추진
 - 해당 부처 정책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지지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활동을 홍보소재로 개발하는 적극성 필요
- 정책홍보 우수사례 공유 체계화로 정책홍보 품질 제고 추진
 - 우수 민간 홍보기법 도입, 홍보가이드북 사례 발굴 등 우수 홍보사례 확산을 통해 정책홍보 역량 강화

5. 규제개혁

① 규제개혁 부문 평가개요

- 기본 방향
 - 자율적, 적극적, 효과적인 규제개혁(Regulatory Reform)을 유도하기 위해 각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추진노력 및 성과에 대해 평가함으로써 정책 추동력을 확보
 - 규제를 받는 수요자 입장에서 성과중심으로 실적을 평가하고, '몇 건 개선했나'보다 '얼마나 좋아졌느냐'에 평가 중점
- 평가대상 기관 : 등록규제가 6개 이상인 30개 중앙행정기관
 - 등록규제가 6개 이상인 30개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실적과 성과를 부 단위(18개)와 청 단위(12개)로 구분하여 평가
 - 등록규제가 5개 이하인 10개 기관(국무총리실,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검찰청, 조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통계청, 농촌진흥청, 병무청, 방위사업청)은 평가에서 제외
 - 부단위와 청단위 내에서도 등록규제의 수를 기준으로 평가대상기관을 그룹핑하여 평가의 신뢰성·수용성 제고

구분	기관명	
부단위 기관(18)	I 그룹 : 5개 부처(등록규제수 100개미만)	국방부, 여성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II 그룹 : 7개 부처(등록규제수 100개이상~400개미만)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III 그룹 : 6개 부처(등록규제수 400개이상)	노동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청단위 기관(12)	I 그룹 : 6개 부처 (등록규제수 35개이하)	기상청, 국세청, 특허청, 국가보훈처, 문화재청, 관세청
	II 그룹 : 6개 부처 (등록규제수 36개이상)	중소기업청, 해양경찰청, 산림청, 식약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계획(15)	1. 추진기반의 적실성(15)	1-1. 규제개혁 추진역량(5) 1-2. 규제개혁 과제발굴의 적극성(10)
집행(30)	2. 시행의 적정성(30)	2-1. 신실·강화 규제의 적절성(20) 2-2. 홍보와 의견수렴의 적극성(10)
산출/결과(55)	3. 규제개혁 성과(35)	3-1. 규제개혁과제 이행실적(20) 3-2. 규제개혁 효과(15)
	4. 규제개혁 만족도(20)	4-1. 규제개혁만족도(20)

□ 평가방법

- 규제개혁추진에 수요자의 입장을 반영하고, 평가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관합동 규제개혁 평가단」을 구성·운영(총 10명)
- 평가지표의 특성에 따라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병행하였으며 고객만족도 및 규제영향분석의 충실성에 대한 평가는 전문연구기관(리서치 기관, 한국행정연구원)을 활용

2 규제개혁 부문 평가결과

총평

- '09년의 규제개혁의 방향은 경제위기의 조기극복과 미래산업대비를 위한 규제개혁에 중점을 두어 추진
 - 일자리 창출과 투자촉진을 위한 주택·토지·기업·서비스업·환경·노동 관련 규제개혁의 범정부적 추진에 역량 결집
 - '09년에 정비할 규제개혁과제 총 1,327개 과제를 발굴하여 '09.10월말 기준으로 855개 과제를 완료(계획 800개 대비 106.9%)
 - 경기 회복시까지 일정기간 규제를 유예·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09.5월)
 - 창업·투자애로해소, 영업활동상 부담경감, 중소기업 어려움해소 등 280개 과제 발굴
 - 신성장동력 분야 투자·창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 등 미래성장기반구축을 위한 신성장동력 규제개혁을 추진('09.11월)
 - 방송통신융합, 글로벌 헬스, 바이오/의료기기, 신재생에너지, MICE·관광 등 175개 규제개혁과제 발굴
- 미등록 규제정비와 일몰제 확대 적용 등 규제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여 실효성있는 규제개혁의 기반구축
 - 전 부처 「미등록 규제」를 일제 조사·등록하고, 불필요한 미등록 규제는 정비함으로써 규제의 투명성과 개혁의 체감도 제고
 - 국토해양부 등 18개 부·처·청의 법령상 미등록 규제 2,011건 발굴·등록('09.3~10) 및 나머지 15개 부·처·청의 법령상 미등록규제 발굴·등록 추진('09.8~12)
 - 모든 등록규제를 대상으로 일정주기로 규제내용을 재검토하는 일몰제를 확대도입하여 규제의 현실적합성 제고
 - 1단계로 경제적 규제(2,184건) 대상으로 558건 일몰 설정
 - 규제심사, 규제 등록 등 효율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정보화시스템 구축('09.8월)
- 신실·강화 규제에 대한 심사강화로 불필요한 규제 사전 차단
 - 이해관계자 의견청취를 강화하고 중소기업 부담 및 시장경제왜곡을 최소화하는 규제대안 검토
- 그러나, 법률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이 지연되는 등 규제개혁 성과가 일부 미진하고 규제개혁 홍보와 의견수렴의 적극성이 부족
 - 기업 투자환경 개선,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계류중임에 따라, 규제개혁 후속조치 추진이 지연
 - 일부 부처에서 홍보 및 의견수렴이 형식적으로 추진되거나 기관중심의 일방통행식 홍보를 진행
- 평가항목별로 비교해 보면, 규제개혁 추진기반의 적실성과 규제개혁만족도는 높은 편이나
 - 신실·강화규제의 적절성, 홍보와 의견수렴 등 시행의 적정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기관별로는 부 단위 기관은 평균 67.7점, 청 단위 기관은 평균 69.3점으로 청 단위 기관이 다소 높게 나타남.

〈기관별 평가결과〉

평가결과	기관명(직제순)
우수(7)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관세청, 중소기업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16)	기획재정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소방방재청, 특허청, 경찰청, 국세청, 산림청, 문화재청
미흡(7)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여성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보훈처, 기상청, 해양경찰청

단계별 평가결과

계획단계

- **규제개혁 추진역량과 규제개혁 과제발굴의 적극성**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해 '09년에 정비할 1,327개 과제를 발굴
 - 규제개혁과제 발굴은 당초 계획에서 경제단체, 지자체 등으로부터 건의를 받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과제수가 누적적으로 증가
 - '09.1월 : 1,002개 → 6월 : 1,167개(165개↑) → 10월 1,327개(160개↑)
 - 상당수의 부처가 규제개혁과제 발굴과정에서 국책연구기관 등 외부전문기관의 자문을 통해 규제 완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보완책을 함께 마련·시행 중
 - 한탄강 유역 주요 수질오염원인 한센촌 지역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합리화를 위해 전문 연구용역 및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환경부)
 - 경제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 총 280건 과제를 선정
 - 창업·투자 애로요인 해소(91건), 영업활동상 부담경감(159건), 중소기업·서민어려움 해소(30건) 등 3개 분야에 중점
- **기관별로는 기업활성화를 위해 입지·환경규제개선 등 다양한 과제를 발굴한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를 비롯하여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교육과학기술부, 금융위원회, 외교통상부, 기상청, 국가보훈처 등은 규제개혁 과제발굴 등이 상대적으로 미흡

집행단계

- **신설·강화규제의 적절성**
 - 불합리한 규제 형성을 사전에 통제하기 위해 신설·강화규제 심사를 엄격히 시행
 - 규제개혁위원회는 787건의 신설·강화 규제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145건의 중요규제 중 94건(64.8%)에 대해 철회·개선 권고('09.10월말 기준)
 -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이 강조되고 상위법개정이 늦어짐에 따라 '08년(935건)에 비해 신설·강화규제 심사수가 감소

주요 심사 사례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국토해양부)
 -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단위(ℓ)당 부과금액을 880원→350원으로 조정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교육과학기술부)
 - 검정도서의 가격을 교과부장관이 정하는 가격상한액 범위 내에서 발행자가 결정하도록 한 것에서 가격상한액의 범위를 삭제

- '09년부터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청취와 규제대안분석이 강화되어 규제의 적절성 및 대안검토는 충실히 작성
- 다만, 비용편익분석이 형식적으로 작성되는 경우도 다수이며, 집행·단속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발생하는 규제집행력 약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상 예상 문제점'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필요

□ **홍보와 의견수렴의 적극성**

- 각 부처에서는 주요 규제개혁정책 발표 및 법령 입안단계에서부터 보도자료 배포 및 브리핑 등을 통해 적극 홍보
- 기관장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의지표명을 위해 장·차관 등 고위간부들이 강연·인터뷰·현장방문시 규제개혁과제에 대해 적극홍보
- Blog·UCC 제작 등 온라인 매체를 적극 활용하고, 일반국민·전문가집단·해외 오피니언 리더 등 특정고객집단에 맞는 홍보 전략 추진

주요 심사 사례

- 민간합동의 "한국금융바로알리기 지원단"을 구성, 애널리스트·해외주요언론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실무적 홍보(금융위원회)
- 고객을 정책니즈에 따라 재분류(다출원기업, 특허분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하여 집단별로 맞춤형 규제개혁 홍보전략 구사(특허청)

- 다만, 일부 부처에서는 홍보 및 의견수렴이 형식적으로 추진되거나 언론매체 및 국민과의 상호소통보다 기관중심의 일방적인 홍보를 진행하여 홍보효과 반감

□ **기관별로는 계량적인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지역주민 의견수렴절차를 마련한 국방부를 비롯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특허청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해양경찰청 등은 신설·강화규제의 적절성 등이 상대적으로 미흡

산출·결과 단계

① **규제개혁 성과**

□ **규제개혁과제 이행실적과 효과**

- 완료계획 800건('09.10월말 기준) 대비, 855건(조기완료 118건 포함)을 완료
- 855개 완료과제 중, 일자리창출 등 경제활성화 과제 387개, 서민취약계층 및 국민불편 해소과제 256개, 중소기업 부담경감 과제가 212개임

주요 사례

주요 과제	조치 사항	주요 성과
① 일자리창출 등 경제활성화 과제		
주택전매제한 완화(국토해양부)	주택법시행령 개정('09.3)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주택전매제한기간을 완화*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85㎡이하 7→5년, 85㎡초과 5→3년
산업단지내 환경규제개선(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09.6)	산업단지 조성시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의무 폐지 및 매립시설 공동사용 허용
근로자 일자리안정(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09.4)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을 상향조정하고 지원요건을 완화

주요 과제	조치 사항	주요 성과
② 시민계층 및 국민불편 해소과제		
경유자동차 검사 일원화(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09.3)	특정경유자동차 검사를 종합검사로 일원화 *연간 34억원(대당 5,000여원) 검사비용 절감
성폭력피해자 보호(여성부)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개정('09.6)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 (6개월 → 9~24개월)
기초노령연금 절차간소화 (보건복지가족부)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09.5)	기초노령연금관련 신고처리절차를 간소화* *미지급연금 지급청구(14~7일), 이의신청 (30~60~7일)등에 대해 처리기간 단축
③ 중소기업 부담경감 과제		
중소기업 창업활성화(중소기업청)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09.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진입장벽 완화(보유 전문인력 3명 → 2명, 납입자본금 70억원 → 50억원)
소규모공장 환경성평가 부담완화 (환경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09.6)	사전환경성검토서를 간소하게 작성할 수 있는 공장의 대상규모를 확대(1만㎡ → 3만㎡미만)

- 다만, 기업 투자환경 개선과 금융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해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계류중임에 따라, 후속조치 추진이 상당 지연되는 문제점
 - 또한, 경제여건변화, 이해관계집단 반대 등 여건변동으로 중단되거나 미완료된 과제들도 일부 존재
 - 중소기업은행의 유가증권보유한도 제한완화(경제여건으로 추진중단)
 - 시설대여업자 자동차단기대여업 제한 완화(신용카드업계 · 렌탈협회 이견 대립)
- **기준규제 일몰제 적용과 미등록규제 정비**
 - 일몰주기 도래시 규제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재검토형 일몰제」를 도입하여 '09년에는 경제적 규제에 대해 1단계 추진 완료
 - 일정주기(원칙3년)로 변화된 상황에 맞게 규제내용을 재검토·재설계
 - 경제적 규제에 대한 일몰제 적용 검토결과, 28개 부처 총 2,184건 중 558건(26%)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
 - 부처별로는 기준규제 중 20~30% 수준으로 일몰을 설정, 관세청·중기청·환경부는 규제의 절반 이상을 일몰제 적용
 - 일몰규제건수는 국토부(152건), 금융위(114건), 농식품부(46건) 등
 - 미등록규제 정비추진계획을 수립('09.2)하여, 규제수가 많은 국토해양부, 농식품부 등 18개 부·처·청 법령상 미등록규제 정비 완료('09.3~8)
 - 총 12,486건을 검토한 결과, 미등록규제는 2,011건이며 모든 부처가 규제정보화시스템에 등록작업 완료('09.10)
 - 기관별로는 국토해양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중소기업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관세청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교육과학기술부, 여성부, 국가보훈처, 기상청 등은 규제개혁과제 이행실적과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미흡

② 규제개혁만족도

- '09년도 규제개혁 만족도는 64.4점으로 어느 정도 만족한 수준*
 - 보통(50점)과 약간만족(66.67점)사이
 - '08년 조사결과(61.9점) 대비 2.5점 상승하였으며 특히 일반국민의 만족도가 크게 상승(3.4점 상승).
 - 대상별로는 전문가의 만족도가 66.5점으로 일반국민(62.9점), 내부고객(63.6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항목별로는 규제의 내용에 대한 만족도(67.0점)가 높게 나온 반면,
 - 기간간 업무협조, 의견 수렴, 정책집행 신속성 등 규제과정에 대한 만족도(62.5점)와 규제성과 만족도(63.1점)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기관별로는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관세청, 해양경찰청, 경찰청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통일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은 상대적으로 미흡

3 개선·보완 사항

〈조사대상별 연도별 만족도 조사결과〉

구분	일반인				전문가				내부고객			종합			
	'07	'08	'09	증감	'07	'08	'09	증감	'08	'09	증감	'07	'08	'09	증감
전체	54.8	59.5	62.9	↑3.4	63.0	66.3	66.5	↑0.2	60.7	63.6	↑2.9	58.8	61.9	64.4	↑2.5

· 내부고객은 '08년부터 처음 실시, 증감은 '08년 대비

-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 지속 추진
 - 완전한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규제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위기극복 이후를 대비한 규제환경 조성을 추진할 필요
 - 경제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규제개혁과 더불어 미래성장기반확충을 위한 선제적인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 경제단체, 지자체, 주한 외국상의 등으로부터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는 등 파급효과가 큰 양질의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
- 규제개혁의 실효성과 체감도 제고
 - 현장방문·점검 등을 통해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 등 집행 현장의 규제개혁 강화
 - 규제개혁의 성과에 대한 체계적·효과적 홍보와 홍보 채널의 다양화 방안 마련
- “품질 높은 규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 강화
 - 일몰제 적용, 미등록규제 정비, 규제정보화시스템 기능개선 등 규제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
 - 규제개혁을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규제개혁 교육 강화, 규제개혁 수범사례 확산 추진

6. 정책 및 민원만족도

1 국민만족도(정책·민원) 부문 평가개요

- 평가목적
 - 정부 정책의 최종적 고객인 국민이 직접 평가한 만족도 결과를 반영·활용하여 민원에 입각한 정책 추진 도모
 - 전 중앙행정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민원행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 통해 대국민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유도
- 평가대상 기관(39개)

구분	기관명
부단위 기관(19)	경제 분야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7)
	사회문화 분야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부(6)
	외교안보·일반행정 분야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6)
청단위 기관(20)	경제 분야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8)
	일반행정 분야 법제처, 국가보훈처, 대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기상청, 문화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해양경찰청(12)

□ 조사표본 및 평가대상 과제

○ 정책만족도

조사 대상자	모집단	표 본	평가대상기간
일반국민	전국의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제주도 및 도서지방 제외)	총 3,900명 (13개 책형×300명)	'09.1.1~'10.31
전문가	기관별 ① 자체평가위원, ② 정책고객(PCRMDB)중 교수·연구원, ③ 자문위원, ④ 관련분야 전공 교수와 학회·연구단체 종사자	총 1,710명 (38개 기관×45명)	

-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선정된 핵심과제 95개(부단위 3, 청단위 2)에 대해 일반국민과 전문가를 동일하게 조사

○ 민원만족도

조사 대상자	모집단	표 본	평가대상기간
일반민원	중앙행정기관 본청 및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민원접수대장에 기록된 민원인(방문·서신·전화)	일반민원 및 인터넷민원 모집단 구성 비율에 비례하여 각 기관별로 표본(250명 이상)을 추출하여 총 12,961명 대상으로 조사	'09.1.1~'10.31
인터넷민원	국민신문고, 중앙행정기관 본청 및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신청한 민원인		

* 평가결과의 조기환류를 위하여 평가대상기간은 모집단 작성(10월초), 설문조사 및 결과보고서 작성(10월 중순~11월말) 등 추진기간을 감안하여 설정

□ 평가방법

○ 설문조사는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한국행정연구원(민간 전문조사기관)에 위탁 추진

- 각 설문항목에 대하여 응답자의 만족도를 11점 리커트 척도에 따라 응답케 하고, 결과를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

0	1	2	3	4	5	6	7	8	9	10
<----- 불만족 ----->----- 만족 ----->										

※ '09년 하반기 경우, 정책만족도는 업무유형별 비교분석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과제별, 업무유형별로 집중 분석하고, 민원 만족도는 종전대로 부·청단위로 비교분석

2] 정책만족도 평가 결과

총평

□ 2009년도 39개 중앙행정기관(95개 핵심과제) 정책만족도 평균(60.97점)은 2008년(60.67점) 대비 0.3점 상승하였고, 2007년(57.98점) 대비 2.99점 상승

○ 부 단위 기관의 정책만족도 평균은 59.81점으로 2008년(58.90점) 대비 0.91점 상승하였고, 청 단위 기관은 62.07점으로 2008년(62.22점) 대비 0.15점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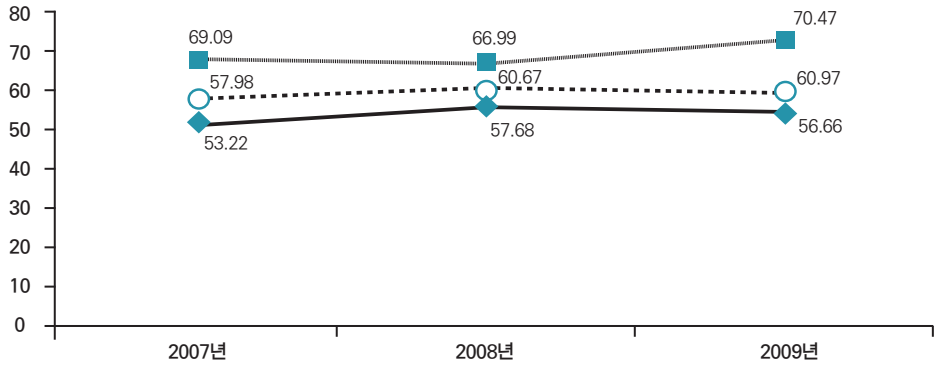
• 청 단위 기관의 정책만족도 수준이 부 단위 기관에 비해 2.26점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2008년에 비해 일반국민 만족도는 다소 하락하였으나, 전문가 만족도 상승에 힘입어 최근 3년간 정책만족도는 계속 상승 추세(57.98('07) → 60.67('08) → 60.97('09))

• 일반국민은 56.66점으로 2008년(57.68점) 대비 1.02점 하락, 전문가는 70.47점으로 2008년(66.99점) 대비 3.48점 상승

〈최근 3년간 정책만족도 추이〉

◆ 일반국민 ■ 전문가 ○ 전체



과제별·업무유형별 평가 결과

부단위 경제 분야

- 7개 부단위 21개 과제 중 가장 높은 만족도를 얻은 과제는 지식경제부의 '실물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별 대응'으로 64.19점이며, - 이어서 지식경제부의 '총력 수출지원 체제 가동'(63.93점)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서민생활의 안정 지원'(61.65점) 과제가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였음
 - 자동차 내수판매 '09.5~9월 전년대비 30.3% 증가, 무역수지(1~9월) 320억불 흑자 달성, 저소득층 전화요금감면 수혜자 증가('08.10 15만명 → '09.9 80만명)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
- 반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인 과제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과제로 54.62점이고
 - 다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집단에 대한 규제완화'(56.26점)와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수협 개혁'(56.73점) 과제가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음
 - 공공기관 인력감축, 기관통합, 민영화, 중복기능 조정, 경제활성화 위한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대기업 규제 완화, 농협 지배구조 개편 등이

〈과제별 평가결과(부단위 경제)〉

순위	핵심과제명(부처 직제순)
우수(4)	실물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산업별 대응(지식경제부)
	총력 수출지원 체제 가동(지식경제부)
	신성장 동력 집중 육성 및 새로운 투자기회 창출(지식경제부)
	서민생활의 안정 지원(방송통신위원회)
보통(14)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기획재정부)
	소비투자 활성화를 통한 각종 경기 진작대책 추진(기획재정부)
	식품산업 육성(농림수산식품부)
	농업 경쟁력 제고(농림수산식품부)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 안정(국토해양부)
	위기산업 지원과 경쟁력 강화(국토해양부)

순위	핵심과제명<부처 직제순>
보통(14)	지역경제 활성화(국토해양부)
	디지털 미디어 활성화 추진(방송통신위원회)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방송통신위원회)
	서민보호를 위한 반칙행위 감시 및 예방 강화(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공정거래위원회)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금융위원회)
	금융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금융위원회)
	기업자금지원 및 구조조정 강화(금융위원회)
미흡(3)	공공기관 선진화(기획재정부)
	농·수협 개혁(농림수산식품부)
	대기업 집단에 대한 규제완화(공정거래위원회)

부단위 사회문화 분야

다소 미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

- 6개 부단위 18개 과제 중 가장 높은 만족도를 얻은 과제는 환경부의 '폐자원 에너지화를 통한 자원순환사회 구축'으로 63.50점이고 - 이어서 여성부의 '여성의 고용촉진 및 취업지원 시스템 강화'(63.41점), 환경부의 '생명력 넘치는 국토환경 보전과 생태체험 활성화'(63.04점) 과제가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였음
 - 폐자원 에너지화 예산투자 대폭 증가(39억원('08) → 496억원('09)), 여성새로일하기센터 22개소 추가 등 여성 일자리 제공 활성화, DMZ 등 우수 자연환경보전 대책 강구 등이 양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
- 반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인 과제는 노동부의 '비정규직 고용개선 및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으로 55.37점이고 - 다음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의 자율 및 책임 확보'(56.65점), '기초원천 연구역량 강화'(57.69점) 과제가 비교적 낮은 만족도를 보였음
 - 노사정간 협의 미흡으로 비정규직법 개정 지연, 입학사정관제 신분안정 불안 및 경력일천 등 대학자율화 미흡, 연구원체계의 질적 수준

<과제별 평가결과(부단위 사회문화)>

순위	핵심과제명<부처 직제순>
우수(4)	생활속의 문화체육 활성화(문화체육관광부)
	폐자원 에너지화를 통한 자원순환 사회 구축(환경부)
	생명력 넘치는 국토환경 보전과 생태체험 활성화(환경부)
	여성의 고용촉진 및 취업지원 시스템 강화(여성부)
보통(10)	문화향수 기회 확대-희망 대한민국 프로젝트 추진(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 산업 육성(문화체육관광부)
	노후 사회보장 체계의 종합적 접근과 재원의 안정적 수급(보건복지가족부)
	민생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보건복지가족부)
	미래세대 투자를 위한 휴먼 뉴딜 추진(보건복지가족부)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먹는물 공급(환경부)

순위	핵심과제명<부처 직제순>
보통(10)	노시간 자율협력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지원(노동부)
	청년 취업 촉진 강화(노동부)
	아동·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여성부)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속의 여성정책 추진(여성부)
미흡(4)	사교육비 절감(교육과학기술부)
	기초원천 연구역량 강화(교육과학기술부)
	대학의 자율 및 책임 확보(교육과학기술부)
	비정규직 고용개선 및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노동부)

부단위 외교안보·일반행정 분야

- 제고 노력 미진 판단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
- 6개 부단위 18개 과제 중 가장 높은 만족도를 얻은 과제는 국방부의 '북한 대남위협 대응'으로 62.02점이고
 - 이어서 외교통상부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60.90점), 국방부의 '한미 군사동맹의 발전적 관리'(60.83점) 과제가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였음
 - 한미 공조하 전방위 군사대비태세 확립,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확대 등이 양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
- 반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인 과제는 행정안전부의 '서민생활 안정지원 및 일자리 신규 창출'로 56.05점이고
 - 다음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제활력 저해요인 발굴 개선'(56.68점), 행정안전부의 '시대에 부응하는 정부조직·인사관리'(56.73점) 과제가 비교적 낮은 만족도를 보였음
 -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등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 경제살리기 위한 각종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 개선, 불필요한 조직·인력 감축 등이 미흡하다고

<과제별 평가결과(부단위 외교안보·일반행정)>

순위	핵심과제명<부처 직제순>
우수(4)	북한 이탈주민 관리 및 국내 정착 지원(통일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외교통상부)
	북한 대남위협 대응(국방부)
	한미 군사동맹의 발전적 관리(국방부)
보통(10)	남북대화 추진 및 상생공영정책 공감대 강화(통일부)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협력 추진(통일부)
	경제살리기 외교 강화(외교통상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안정 추구(외교통상부)
	서민·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적 지원 강화(법무부)
	질서와 통합을 향한 외국인 정책 추진(법무부)
	자유민주적 법질서 확립(법무부)
	국방개혁 조정·발전(국방부)
	권익보호 사각지대 해소로 경제위기 극복지원(국민권익위원회)
	공직 부조리 근절을 통한 국정신뢰 증진(국민권익위원회)

순위	핵심과제명<부처 직제순>
미흡(4)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경제위기 조기극복(행정안전부)
	시대에 부응하는 정부조직·인사 관리(행정안전부)
	서민생활 안정지원 및 일자리 신규 창출(행정안전부)
	경제활력 저해요인 발굴 개선(국민권익위원회)

청단위 경제 분야

판단한 것으로 분석

- 8개 청 단위 16개 과제 중 가장 높은 만족도를 얻은 과제는 산림청의 '산림자원의 순환이용 활성화'로 64.44점이며
 - 이어서 특허청의 '세계 최고수준의 심사서비스 제공'(64.34점),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글로벌 국제협력 강화'(64.34점) 과제가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였음
 - 숭가꾸기로 일자리 63천개 창출(연인원 15천여명), 심사역량 국제화로 국제조사 의뢰 증가(11,653건('08)→13,012건('09)) 등이 양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
- 반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인 과제는 국세청의 '경제살리기·일자리 창출 지원 및 서민생활 안정 추진'으로 58.72점이고
 - 다음으로 통계청의 '경제살리기 통계 적극 개발 및 통계생산방식의 선진화'(59.21점), 농촌진흥청의 '열린·현장·실용연구 및 수요자 중심 생활공감보급체계 구축'(59.95점) 과제가 비교적 낮은 만족도를 보였음
 - 일자리 창출기업 세무조사 부담 경감, 경제 관련 통계 적극 개발, 농업인 눈높이에 맞춘 기술개발 보급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

<과제별 평가결과(청단위 경제)>

순위	핵심과제명<부처 직제순>
우수(3)	산림자원의 순환이용 활성화(산림청)
	세계 최고수준의 심사서비스 제공(특허청)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글로벌 국제협력 강화(특허청)
보통(10)	과세기반 확충 및 숨은 세원 발굴을 통한 재정수입 확보(국세청)
	철저한 관세 국경 관리 강화로 사회안전 및 국민생활 보호(관세청)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대책 총력 추진(관세청)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조달서비스 제공(조달청)
	조달사업을 통한 중기지원(조달청)
	통계정보 서비스의 강화(통계청)
	글로벌 농업 기술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농촌진흥청)
	아시아 산림 녹화를 주도하는 녹색강국 구현(산림청)
	창업활성화 지원(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애로 지원(중소기업청)
미흡(3)	경제살리기·일자리 창출 지원 및 서민생활 안정 추진(국세청)
	경제살리기 통계 적극 개발 및 통계생산 방식의 선진화(통계청)
	열린연구·현장연구·실용연구 및 수요자 중심 생활공감 보급체계 구축(농촌진흥청)

청단위 일반행정 분야

- 12개 청 단위 23개 과제 중 가장 높은 만족도를 얻은 과제는 소방방재청의 '소방 119 구조·구급 서비스 고도화'로 67.80점이고 - 이어서 해양경찰청의 '빈틈없는 해양주권 확보 및 안보활동 강화' (66.08점), '국민감동 수준의 해양안전 서비스 제공' (65.36점) 과제가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음
 - 중환자용 구급차 도입 등 구조·구급장비 현대화, 독도·이어도에 대한 주변국의 분쟁시도에 단호히 대응, 생계형 조업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 등이 양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
- 반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인 과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차질없는 건설사업 시행 및 자족기능 유치기반 조성'으로 54.91점이고
 - 다음으로 같은 청의 '최적의 정주여건 조성'(54.97점), 대검찰청의 '자유민주적 법질서 확립'(58.19점) 과제가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음
 - 세종시 계획 수정 및 친환경 녹색도시 건설, 사이버 범죄 및 부패사범 집중단속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

<과제별 평가결과(청단위 일반행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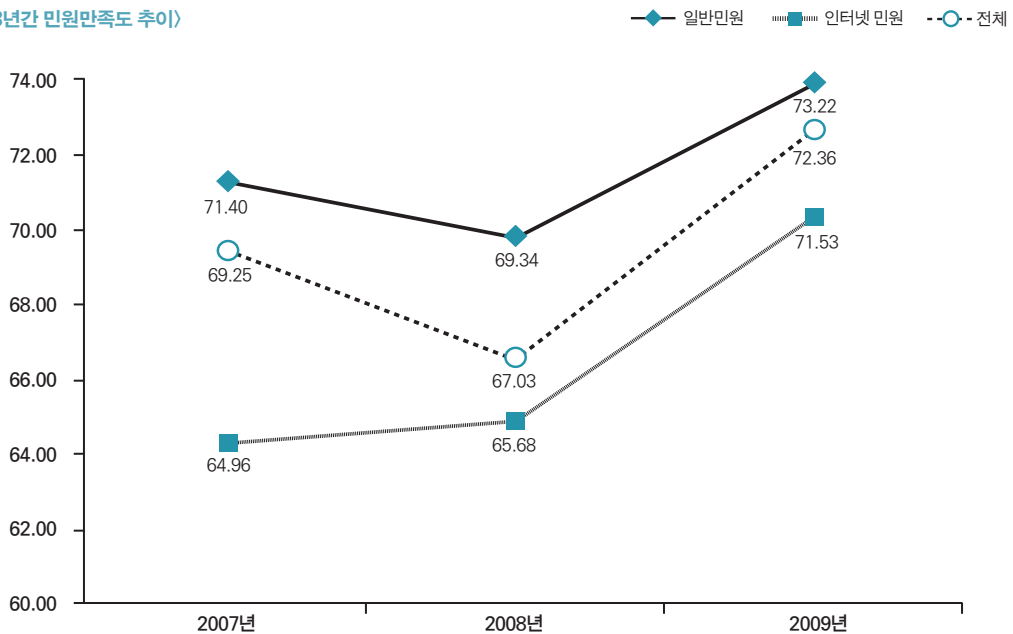
순위	핵심과제명<부처 직제순>
우수(6)	보훈 의료서비스 확대(국가보훈처)
	병역의무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징병절차 개선(병무청)
	소방 119 구조·구급 서비스 고도화(소방방재청)
	국민이 신뢰하는 기상예보 서비스 제공(기상청)
	빈틈없는 해양주권 확보 및 안보활동 강화(해양경찰청)
	국민감동 수준의 해양안전 서비스 제공(해양경찰청)
보통(12)	경제활성화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과감한 법제개선(법제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선도적 입법대응(법제처)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국가보훈처)
	대체복무제도 개선 및 복무관리 강화(병무청)
	국방 R&D 능력 확충(방위사업청)
	생계형 침해범죄 근절대책(경찰청)
	선진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법질서 확립(경찰청)
	반복적 수해피해 및 고위험 대책 추진(소방방재청)
	국가기상 관측망의 확충 및 표준화(기상청)
	고궁 관광 자원화(문화재청)
	어린이 대상 식품·의약품 안전 특별관리(식품의약품안전청)
	신속하고 철저한 식품안전사고 예방체계 구현(식품의약품안전청)
미흡(5)	자유민주적 법질서 확립(대검찰청)
	획득사업의 투명성·효율성 제고(방위사업청)
	문화재 안전관리 체계 구축(문화재청)
	최적의 정주여건 조성-주변지역 계획적 관리 포함(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질없는 건설사업 시행 및 자족기능 유치기반 조성(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③ 국민만족도(정책·민원) 부문 평가개요

총평

- 2009년도 39개 중앙행정기관 민원만족도 평균은 72.36점으로 2008년(67.03점) 대비 5.33점 상승하였고, 2007년(69.25점) 대비 3.11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3년간 변화 추이는 2008년 소폭 하락에 이어, 2009년에는 상승하는 추세(69.25('07) → 67.03('08) → 72.36('09))
 - 이는 일반민원·인터넷민원 만족도 동반 상승에 따른 것으로 특히, 인터넷민원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분석
 - 민원종류별로는 일반민원 만족도가 73.22점으로 2008년(69.34점) 대비 3.88점 상승, 인터넷민원 만족도는 71.53점으로 2008년(65.68점) 대비 5.85점 상승

〈최근 3년간 민원만족도 추이〉



기관별 평가 결과

부단위 기관

- 부 단위 19개 기관 민원만족도 평균은 68.27점으로 나타남
 - 행정안전부가 80.29점(일반민원 71.59점, 인터넷민원 81.01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임
 - 일반민원에 비해 인터넷민원 항목 점수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인터넷민원의 '신속성'(82.25점), '대응성'(82.13점) 항목 등이 평균보다 높아 전체 만족도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
 - 반면, 여성부는 62.10점(일반민원 72.98점, 인터넷민원 61.38점)으로, 부단위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임
 - 일반민원 '대응성'(66.25)과 인터넷민원 '신속성'(61.15점), '공정성'(54.08점) 등의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어 저조한 결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

<민원만족도 부 단위 기관 평가결과>

평가결과	기관명<직제순>
우수(4)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보통(11)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미흡(4)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부, 국토해양부

청단위 기관

- 청 단위 20개 기관 민원만족도 평균은 75.54점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청이 90.43점(일반민원 90.44점, 인터넷민원 90.42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임
 - 일반민원의 '공정성'(89.10점), 인터넷민원의 '공정성'(89.87점), '신속성'(89.74) 항목 등이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아 전체 만족도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
 - 반면, 국세청은 66.19점(일반민원 72.97점, 인터넷민원 64.23점)으로, 청 단위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임
 - 일반민원 '대응성'(72.03점)과 인터넷민원 '공정성'(57.71점), '대응성'(62.61점) 등의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어 저조한 결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

<민원만족도 부 단위 기관 평가결과>

평가결과	기관명<직제순>
우수(4)	기상청,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해양경찰청
보통(12)	국가보훈처,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산림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행복도시건설청
미흡(4)	법제처, 국세청, 대검찰청, 경찰청

Ⅲ. 향후 계획

- **평가결과 환류, 개선조치**
 - 평가결과 종합 및 각 과제별·기관별 평가보고서를 환류시켜 2010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는 등 정책 개선에 활용토록 조치
 - 2010년도 업무보고 분기별 점검시 평가결과 반영 여부를 함께 점검
 - 우수사례는 각 부처에서 상호 학습 및 벤치마킹하고
 - 미흡사례에 대해서는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추진
 - 미흡사례 중 심층 분석이 필요한 과제는 총리실에서 수시 현안과제로 선정, 개선 대안 마련
- **평가방법 발전 방안 마련**
 - 이번 평가과정·결과에 대한 평가주체·피평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도 평가제도 개선에 반영
 - 정책 부문의 경우 '과제' 중심 평가의 확대방안 및 분과 세분화 방안 등 연구
 - 평가지표 구체화 방안 및 결과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통계기법 활용 등에 대한 방안 모색

2010년 특정평가 결과 보고서

I. 평가개요

□ 평가 목적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주요정책 및 관리역량을 평가함으로써 국정운영의 책임성 제고 및 국정성과 창출 유도
 - 근거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조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

□ 평가대상기관 : 38개 중앙행정기관 (총리실·대검찰청 제외)

- 장관급(19) : 15개 부, 4위원회(방송통신위·공정거래위·금융위·국민권익위)
- 차관급(19) : 2개 처(법제처·보훈처), 17개 청
- ※ 평가부문별 특성에 따라 평가대상기관은 다소 상이함

□ 평가 부문 : 7개

- ① 핵심과제 : 주요 정책과제들에 대한 추진노력 및 성과 등을 평가
- ② 일자리 창출 : 기관별 소관 일자리 대책의 추진노력 및 성과 등을 평가
 - "2010년 정부의 첫 번째 국정과제는 경제를 살리는 것이며, 그 핵심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 ('10.1.4,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
- ③ 녹색성장 : 녹색성장 5개년 계획상 주요 녹색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
- ④ 정책관리역량 : 주요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책관리 노력 등을 평가
- ⑤ 정책홍보 : 범정부적 아젠다에 대한 정책홍보 추진노력 및 성과 등을 평가
- ⑥ 규제개혁 : 규제개혁 추진 노력 및 성과 등을 평가
- ⑦ 정책·민원만족도 : 주요정책 및 민원서비스에 대한 국민만족도를 평가

□ 평가 방법

- 평가부문별로 「전문가평가단」이 정책과정(형성-집행-성과)별 평가지표에 따라 부처가 제출한 실적자료(10월말 기준)를 토대로 평가
 - 평가단 구성 (민간전문가 기준)
 - ▲핵심과제 95명 ▲일자리 창출 15명 ▲녹색성장 30명 ▲정책관리역량 38명 ▲정책홍보 15명 ▲규제개혁 7명 등 총 200명
 - 국민만족도 평가의 경우 설문조사 실시
- 부처 업무설명회(핵심과제, 정책관리역량 등)를 개최하여 전문가평가단의 평가대상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피평가기관의 소명 기회 제공
- 평가방식은 전문가평가단이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병행 실시하고,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참여하는 검토회의를 거쳐 확정
 - 정책 관련 4개 부문(핵심과제, 일자리 창출, 녹색성장, 정책만족도)에 대해서는 정책과제별 범위 및 비중 등을 고려한 가중치를 부여
- 전문가 상호 검증(핵심과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제고에 주력
- 평가결과를 평가부문별로 평가대상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관별 등급화(최우수·우수·보통·미흡)
 -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으로 구분하여 평정
 - 핵심과제·일자리 창출·녹색성장·정책만족도 부문의 경우, 정책과제의 성격에 따라 분과 또는 분야를 나누어 과제별 등급화도 병행

II. 부문별 평가 결과

1. 핵심과제

1 핵심과제 부문 평가개요

- 평가 목적
 -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정책과제들에 대한 추진노력 및 성과 평가를 통해 정책 추동력을 확보하고 국정성과 창출 유도
- 평가 방향
 - 서민생활 안정, 교육개혁, 선진화 등 금년도 국정운영 기조와 밀접한 연관과제들의 추진과정과 성과 등을 정성적·질적으로 평가 하는데 중점
 - 핵심과제별로 정책단계에 따른 평정을 하되, 성과단계에 비중(60%)을 두어 성과달성도 및 정책효과성을 중점적으로 평가
 - 계획수립(15%) 및 집행단계(25%)에 대해서는 전문가 평가결과와 함께 부처별 주요업무계획 과제에 대한 최근 3/4분기까지의 점검결과를 반영
- 평가 대상 : 38개 기관, 95개 과제 (5대 분야)

부 단위 (19개 기관 57개 과제)	① 경제 분야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7)
	② 사회문화 분야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6)
	③ 외교안보·일반행정 분야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6)
청 단위 (19개 기관 38개 과제)	④ 경제 분야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8)
	⑤ 일반행정 분야	법제처, 국가보훈처,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기상청, 문화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해양경찰청 (11)

* 평가대상 과제 수는 부단위기관은 3개, 청단위 기관은 2개씩 선정

- 평가 방법
 - 분야별로 5개 평가 분과로 구분, 분과별 민간 전문가평가단(95명, 과제당 1명)을 구성·운영
 - 5개 분과에 정부업무평가위원이 2명씩 참여, 공동분과위원장 역할 수행
 - 전문가평가단이 각 부처의 실적자료(10월말 기준)를 토대로 평가지표에 따라 정량·정성평가 병행 실시
 - 분과별로 '부처 업무설명회'를 개최하여 민간 전문가들의 해당 과제들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피평가기관의 소명 기회 제공
 - 부처 내 핵심과제들의 범위 및 비중 등 가중치를 고려하고, 해당부처 담당 민간전문가 전원이 정량평가에 참여하는 등 평가결과의 공정성·객관성을 제고
 - 분과별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각 분과위원장이 참여하는 검토회의를 개최, 부단위·청단위 핵심과제 평가결과를 최종 확정

□ 평가지표

정책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 점
정책형성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정책수단의 적절성 (8)	15
		1-2. 의견수렴 및 관련기관 협의의적절성 (7)	
정책집행	2. 추진과정의 충실성	2-1. 추진일정의 준수성 (10)	25
		2-2. 전략적 대응성 (15)	
정책성과	3. 성과 달성 및 파급성	3-1. 성과목표 달성도 (35)	60
		3-2. 정책효과성 (25)	

총평

- ◆ 대부분의 기관에서 소관별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정책단계별로 집중 관리를 하여 정책성과를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음
 - 경제성장률 등 가시적 성과가 뚜렷한 경제 분야가 높은 평가를 받았고, 일반 행정 및 사회문화 분야는 무난한 평가를 받았으나,
 - 국민적 우려가 집중되었던 국방 및 외교안보 분야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음
- ⇒ 정책성과의 수준 향상과 국민의 정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해 지속적인 국정성과 유도

2] 핵심과제 부문 평가결과

- 정책추진 단계별 평가결과를 보면,
 - 부·청 단위 기관 모두 정책형성, 집행, 성과단계의 추진실적 등이 큰 편차 없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정책형성단계(부 74.6점, 청 77.7점) 보다는 성과단계(부 78.9점, 청 79.1점)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었음
 - 다만, 정책추진 단계별로 일부 기관들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 (정책형성)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 설정 및 연계가 미흡(국방부·기상청 등) 하였고,
 - (정책집행) 정책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불필요한 논란 방지 등 전략적 대처 능력이 부족(외교부·산림청 등) 하였으며,
 - (정책성과) 정량적인 정책목표는 상당부분 달성하였으나,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의 질적인 성과달성에는 미흡(금융위 등) 하였음
- 세부 평가지표별 평가결과를 보면,
 - 부 단위 경우, 전략적 대응성(74.4점), 정책수단의 적절성(73.9점) 보다는 성과 달성도(80.5점), 추진일정의 준수성(80.4점) 등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청 단위 경우, 전략적 대응성(75.1점), 정책 효과성(74.8점) 보다는 추진일정의 준수성(84.7점), 성과 달성도(82.3점) 등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정책단계	평가지표	평정결과			
		부단위	청단위	종합	
정책형성	정책수단의 적절성	73.9점	76.3점	75.1점	
	의견수렴 및 관련기관 협의의 적절성	75.4점	79.2점	77.3점	
정책집행	추진일정의 준수성	80.4점	84.7점	82.6점	
	전략적 대응성	74.4점	75.1점	74.8점	
정책성과	성과목표 달성도	80.5점	82.3점	81.4점	
	정책 효과성	76.5점	74.7점	75.6점	

- 38개 기관의 핵심과제(95개)들에 대한 평가지표별 평가결과를 토대로 과제별 업무 가치치 등을 반영한 종합적인 기관별 평가결과를 보면,
 - 기획재정부·특허청·해양경찰청 등이 전반적으로 우수한 실적을 보임
 - 기관 전체 평균은 78.3점 (부 단위 77.7점, 청 단위 78.9점)

평가결과	기관명(직제순)
최우수 (3)	기획재정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우수 (9)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국세청, 통계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보통 (23)	교육과학기술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관세청, 조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미흡 (3)	국방부, 금융위원회
	기상청

정책단계별 평가결과

정책형성단계

정책형성단계의 평가지표 중 '의견수렴 및 관련기관 협의의 적절성'이 '정책수단의 적절성'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됨

□ 정책수단의 적절성

○ 정책수단에 있어 대부분 관련제도, 인력, 예산 등을 고려하여 핵심과제의 궁극적인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원들을 적합하게 마련

◆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 과제」(기획재정부)

⇒ 국가재정운용계획('10~'14)을 통해 재정건전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세입기반 확대, 세출 구조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 등의 정책수단을 적극 활용, 재정건전성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

◆ 「청년고용 촉진 과제」(고용노동부)

⇒ 대학이상 학력자가 전체 청년 실업자의 2/3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청년실업문제를 선제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대학에 산학연계 취업지원 전문인력인 취업지원관제 도입·운영

◆ 「인구주택총조사 등 대규모 통계조사의 효율적 실시 과제」(통계청)

⇒ 매주기(5년) 마다 50%이상 증가하는 조사비용 절감 및 국민응답부담 경감을 위해 인터넷 조사확대 및 행정자료 활용 등 정책수단 동원

○ 다만, 일부과제의 경우 적극적인 목표 설정 및 정책목표와 연계성 있는 정책수단 마련이 미흡

- 「천안함사태 등 북한 대남위협 대비 과제」(국방부)의 경우, 정책수단 지표로 일상적 업무범위에 속한 연합위기조치 연습률, 위기관리 연습실시율 등을 설정
- 「산림자원 육성 및 활용 과제」(산림청)의 경우, 산림녹화 사업 이후 산림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목표 설정 및 정책수단 부족

□ 의견수렴 및 관련기관 협의의 적절성

○ 정책 수립·추진 시 관계자 간담회·설명회, 관련기관(부처·당정 간 등) 협의는 전반적으로 충실하게 이행

◆ 「정보화를 통한 행정서비스 선진화 실현 과제」(행정안전부)

⇒ 대상과제 선정을 위해 중앙·지방 268개 민원처리 부서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 추진

◆ 「지식재산 창출 보호 기반 강화로 일류지식 재산 보유기업 육성 과제」(특허청)

⇒ 「한국공과대학장 협의회」내에 「대학발명특허교육 추진단」을 구성, 의견수렴을 거쳐 대학특허교육의 확대 및 전문성 제고방안을 검토하고, 업종 분야별 대표기업(104개)으로 한국지식재산협의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의견교환 등 정보공유 네트워크 구축

◆ 「납세자 편의제고를 위한 고품질의 납세 서비스 제공 과제」(국세청)

⇒ '09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자 2,357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10.1~2월)하여, 개선의견을 수렴하는 등 정책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충실히 노력

○ 그러나, 일부과제는 다양한 정책대상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수렴 및 설득방안 강구 등이 다소 부족

- 「문화 불균형 해소를 위한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과제」(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서울·경기지역 단체중심으로 선정(68.9%)되어 지역 문화예술 단체의 활용 및 긴밀한 연계협력이 미흡
- 「최적의 정주 여건 조성 및 예정지역 주민 재정착 지원 과제」(행복청)의 경우, 생활기반을 상실한 이주예정지역 주민들의 장기적 소득창출 지원은 미흡 - 특히, 외교·안보분야의 경우 업무특성상 보안이 요구되지만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일반국민과의 소통 노력 등은 부족
- 「국방 외교·협력의 외연 확대 과제」(국방부)의 경우, 의견수렴이 정부내에서만 이루어지고 국내 학회, 민간전문가, 단체 등과의 의견수렴 과정은 부족

정책집행단계

정책집행단계의 평가지표 중 '추진일정의 준수성'이 '전략적 대응성'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됨

□ 추진일정의 준수성

◆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과제」(지식경제부)

- ⇒ 전세계적인 전기차산업 육성 움직임에 대응하여 2011년 전기차 상용차 출사가 가능토록 자동차업계를 독려, 적기에 세계적 수준의 전 기차인 BlueOn을 개발해 시범 출시하고 G20정상회의에도 투입해 시연
 - 대·중소협력과 R&D 혁신을 통해 양산시기를 당초 '13년에서 '11년으로 앞당겨 '10.9월 시범차량을 출시

◆ 「원천적 화재저감 대책과 화재와의 전쟁으로 국민생명 보호 과제」(소방방재청)

- ⇒ 「화재와의 전쟁」신포(3.6) 이후 화재피해 줄이기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최근 3년 평균 화재 사망자 대비 40.7%(9월말 현재)를 감소시 켜으며,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는 상반기 중에 16개 시도 조례 제정을 완료하고 포상금은 추경 등을 통 해 확보(3억 9천만원)

- 다만, 극히 일부과제에서만 당초 계획한 세부 일정이 지연되고 있거나 대외 협력 부족 및 정책여건 미성숙 등으로 과제의 실질 적인 진척이 저조
 - 「방송통신서비스의 경쟁 촉진 과제」(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통신요금 국제비교기준 마련(당초 9월)이 통신사업자 등 다양한 의견 조정 및 분석기간 필요로 지연
 - 「차질없는 건설사업 시행 과제」(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경우, 개발계획 변경 및 U-city 1단계 구축사업 추진 등이 세종시 발전안 국회부결로 일정 지연
 - 「첨단 우주기술 자립화 추진 과제」(교육과학기술부)의 경우, 한국형 발사체(KSLV-2) 개발계획 수립('08년) 후 나로호 2차 발사가 실패한 현재 여전히 시스템 요구조건 설계단계에 머무르며 핵심기술개발 진척 저조

□ 전략적 대응성

- 정책추진 과정에서 당초 정책방향 및 집행과정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혼란을 최소화하고 정부 입장의 체계적인 전달은 대체로 양호

◆ 「청년고용 촉진 과제」(고용노동부)

- ⇒ 청년·중소기업 일자리 TF(고용부, 지경부, 교과부, 중기청) 구성·운영을 통해 청년 구직자·중소기업간 정보 mismatch 해소 등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 고용안전정보망(워크넷)을 통한 청년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3.3% 증가

◆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과제」(행정안전부)

- ⇒ 적기에 지역 현장점검을 거쳐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한도를 상향하는 등 정책방향에 따른 전략적 대응

◆ 「해양안전서비스 제공 과제」(해양경찰청)

- ⇒ 기상악화로 인한 국제여객선 사고 발생 등 안전관리 문제점이 지적되어 운항통제기준 신설(해상교통안전법 제10조), 항해조건 위반시 단속 대책 등의 개선책 마련

◆ 「시민질서 선진화 및 사회안전 확보 과제」(경찰청)

- ⇒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등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

- 그러나,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해 적기에 효과적인 대응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체계 구축 과제」(통일부)의 경우, 천안함 사태 이후 적기에 정책대상인 입주기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노력 부족으로 입주기업들의 불안·동요 초래
 -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과제」(여성가족부)의 경우,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 사전예방을 위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법사위, '10.4월)이 부처간 이견으로 지연 중에 관련사건·사고가 빈발하면서 정책효과 반감
 - 「공정한 징병검사 및 우수자원 적정 총원 과제」(병무청)의 경우, 지도총·연예인 등의 병역면탈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적발은 43% 수준에 머무는 등 예방시스템 구축·활용에 있어 부진

정책성과단계

정책성과단계의 평가지표 중 '성과 달성도'가 '정책 효과성'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됨

□ 성과 달성도

○ 성과목표 달성도는 다른 평가지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수하고, 대체적으로 핵심과제들의 정량적인 성과목표들은 달성

- ◆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 과제」(기획재정부)
 - ⇒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으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금년 연간 성장률은 6% 수준에 이를 전망 (연두 업무보고 당시 전망치 : 5%)
 - GDP성장률(전년동기비, %) : (09.3Q)1.0 (4Q)6.0 (10.1Q)8.1 (2Q)7.2 (3Q)4.5
- ◆ 「산업안전보건 관리 체계 개선 과제」(고용노동부)
 - ⇒ '10.8월 재해통계기준 집중관리사업장 91,838개소에서 5,394명의 재해가 발생, 재해율은 0.77%로 전년 동기 재해율 1.02% 대비 24.1%(0.25%p) 감소
 - 재해감소율 목표치(15%감소) 대비 160% 달성
- ◆ 「지식재산 창출·보호 기반 강화로 일류지식재산 보유기업 육성 과제」(특허청)
 - ⇒ 국가 R&D 사업에 대한 특허기술동향조사로 국가 R&D 예산 2,250억원 절감 효과
 - 특허 동향조사 인용률 전년대비 11% 증가: 25.3%(‘09) → 27.98%(‘10)

- 다만, 일부과제들의 경우 핵심과제의 기본방향과 정책목표 대비 질적인 성과달성 수준은 다소 미흡
 - 「안전한 사이버 세상 구현 과제」(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인터넷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한 주민등록 대체수단인 i-pin 발급건수가 전체 발급가능 인원의 1.5%에 불과하는 등 이용은 극히 저조
 - 「첨단 우주기술 자립화 추진 과제」(교육과학기술부)의 경우, 나로호 2차 발사 후의 현재 기술자립도는 50%에 불과하고, 우주 핵심·원천기술 관련 특허출원 대비 등록(64건 중 등록 7건) 저조 및 핵심부품 국산화를 위한 산업체 전문인력 확보가 전무한 상태
 - 「최첨단 무기·기술개발 및 수출지원 확대 과제」(방위사업청)의 경우, K 전자·장갑차·고속함 등에서 사고와 결함이 잇따라 발생

□ 정책 효과성

○ 핵심과제 추진을 통해 당초 의도한 정책효과가 상당부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 「대외공여 확대와 대외개방 정책의 지속적 추진 과제」(기획재정부)
 - ⇒ G20 서울정상회의는 긴급한 위기상황에서 위기 이후의 시대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시기에 非G7,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개최, '09년부터 논의키로 한 모든 의제에 걸쳐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
- ◆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정착 과제」(고용노동부)
 - ⇒ '97년 관련 조항을 노조법에 규정후 13년간 유예되어 온 전임자·복수노조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근로자의 단결권 보장을 강화하면서도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
- ◆ 「자연자원 보전 강화로 자연생태계의 가치창출 과제」(환경부)
 - ⇒ 국립공원 생태관광 만족도 조사결과, 생태관광 참여자 95% 만족,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개선 응답 96.8% 등 정책효과가 긍정적

- 그러나, 일부과제의 경우 국민이 신뢰하고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정책 파급효과는 부족
 - 「선진 기상예보 서비스 구현 과제」(기상청)의 경우, 우리 지형의 특수성을 고려한 위험기상 예측모델을 개발하지 못하고 슈퍼컴퓨터에만 지나치게 의존하여 서울지역 폭설('10.1.4) 및 수도권외 국지성 폭우('10.9.21) 오보 등 기상이변에 시의성 있게 대처하지 못하는 등 국민의 불편·불만 증폭
 - 「금융제도 선진화 과제」(금융위원회)의 경우, 최근 가계부채 대비 가계 부채가 규모와 증가 속도 측면에서 높은 실정이며,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정책효과는 저조
 - 「법질서 확립 및 부패방지 과제」(법무부) 경우, 불법폭력 집회·시위 감소 등 성과에도 불구하고 스폰서 검사 논란으로 국민신뢰 저하 초래
 - 「녹색기술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과제」(조달청)의 경우, 우수 조달업체 중 6.3%만이 해외시장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어 가시적 정책효과는 미미

③ 개선·보완 사항

□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 마련 및 조직 내외의 소통 활성화

- 각 부처 추진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해 관련 제도·인력·예산 등을 고려한 사전효과성 분석 등 정책수단별 비교검토 강화
 - 평가대상인 핵심과제는 기관의 대표업무 위주로 선정 필요
- 정책형성 및 추진 시 갈등요인을 예방하고, 국민적 지지도를 확보하기 위해 조직 내외의 의견수렴을 통한 소통 활성화 및 정책 의제 설정시 유관기관간 공조체제 확립

□ 치밀한 추진일정 관리 및 전략적 대응 노력 강화

- 일선현장에서의 정책집행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당초 추진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 기반 조성
 - '10년 3/4분기 업무점검 결과(총리실) 720개 과제 중 97개 과제(13.5%)는 업무보고 시 제시한 일정 계획 등에 비추어 추진이 지연
- 정책추진 여건의 상시모니터링과 대국회 지지 및 협력활동 강화 등을 통해 중대한 정책여건 변화, 예상하지 못한 문제 발생 등에 대처하는 역량 증진 노력에 집중
 -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현안정책 분석 이행상황 점검결과(총리실) 총 29개 과제 287개 개선조치사항 중 27개(9.4%)는 추진이 미흡

□ 정책성과의 질적 수준 향상 및 국민의 정책 체감도 제고

- 계획대비 실적위주의 계량적인 목표수준 달성 뿐만 아니라 성과달성의 질적수준을 파악하고, 목표달성 부진 과제에 대한 점검 체계 확립
- 정책 수요자 만족도 조사, 언론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정책의 실질적 파급효과 분석을 통한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추진 방안 강구
 - 국민의 입장에서 핵심과제가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평가지표 설계 등 개선

[참고] 기관별 핵심과제 목록

1 장관급 기관 : 19개

부처명	핵심과제명
기획재정부	①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
	② 재정건전성 관리강화
	③ 대외공여 확대와 대외개방 정책의 지속적 추진
교육과학기술부	① 교원의 전문성 제고
	② 대학 교육역량 강화
	③ 첨단 우주기술 자립화 추진
통일부	①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국내 정착 지원
	② 개성공단단의 안정적 운영체계 구축
	③ 체계적인 통일교육 등 통일 역량강화
외교통상부	①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위상 및 품격 제고
	② 정상외교 지평 확대 및 글로벌 네트워크 확충
	③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안정 추구
법무부	① 국민안전 확보 및 서민·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② 법질서 확립 및 부패방지
	③ 개방과 조화의 외국인 정책 추진
법무부	① 천안함 사태 등 북한 대남위협 대비(한·미공조, 비대칭 대비태세 등 포함)
	② 국방 외교·협력의 외연 확대
	③ 군 복무여건 및 복지증진
행정안전부	① 정보화를 통한 행정서비스 선진화 실현
	② 성과창출형 정부시스템 구축
	③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① 콘텐츠 산업 성장기반 강화
	② 문화 불균형 해소를 통한 문화 복지 강화
	③ 관광서비스 기반 선진화 및 외래관광객 전략적 유치

부처명	핵심과제명
농림수산식품부	① 한식 세계화 및 농식품 수출 확대
	② 농식품 안전성 강화
	③ 수산업 재도약 기반 구축
지식경제부	①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② 신성장동력 확충 및 R&D 혁신
	③ G20,+30억 신흥시장 선점을 위한 수출지원 체제 강화
보건복지부	①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효율성 제고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② 보건의료산업의 신성장 동력 육성
	③ 지속발전을 위한 출산장려 추진
환경부	① 유기성 폐자원 감량·에너지화로 저탄소 자원 순환사회 정착
	② 선진적인 환경성 질향예방·관리·구제체계 확립
	③ 자연자원 보전을 강화하여 자연 생태계의 가치 창출
고용노동부	①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정착
	② 청년고용 촉진
	③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개선
여성가족부	① 아동·여성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②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③ 가족친화적 직장 및 사회환경 조성
국토해양부	① 4대강 살리기와 물 문제 해결
	②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구현
	③ 체계적 국토관리기반 구축
방송통신위원회	①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기반 구축
	② 통신서비스의 경쟁 촉진
	③ 안전한 사이버 세상 구현
공정거래위원회	① 경쟁질서 확립
	②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보호
	③ 책임 있는 소비자 활동 진작
금융위원회	① 금융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② 금융제도 선진화
	③ 금융 글로벌화의 지속적 추진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국민권익위원회	① 친서민 현장 중심의 국민고충 해결
	② 청렴국가 건설을 위한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
	③ 소통과 시스템 개선을 통한 국민권익 보호

2 차관급 기관 : 19개

부처명	핵심과제명
법제처	① 선진법제 마련
	②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법령 알리기
국가보훈처	① 보훈체계 선진화 및 10년 주기 보훈사업을 통한 국민화합과 국격제고
	② 보훈대상자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
국세청	① 과세기반 확충과 세법질서 확립을 통한 재정수입 확보
	②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한 고품질의 납세서비스 제공
관세청	①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세행정 총력지원
	② 민생침해 수입물품 및 국제범죄 단속 강화
조달청	① 품질중심의 조달서비스 혁신
	② 녹색기술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통계청	① 인구주택 총조사 등 대규모 통계조사의 효율적 실시
	② 통계정보서비스 선진화
병무청	① 공정한 징병검사 및 우수자원 적정 총원으로 군전력 강화에 기여
	② 공익근무요원제도 합리적 운영
방위사업청	① 획득업무 선진화를 위한 국방계약체계 개선
	② 최첨단 무기·기술 개발 및 수출지원 확대
경찰청	① 시민질서 선진화 및 사회안전 확보
	② 범죄로부터 안전한 국민생활 보장
소방방재청	① 원천적 화재저감 대책과 화재와의 전쟁으로 국민생명 보호
	② 재난전조정보 수집·관리를 통한 위험예측 및 해소
문화재청	① 문화유산의 가치 활용 강화
	② 문화재 행정의 선진화
농촌진흥청	① 미래준비를 위한 현장중심 녹색성장 기술개발·보급
	② 녹색비전 실현을 위한 품목별 국제경쟁력 제고
산림청	① 산림재해 최소화 및 산림복지 서비스 증진
	② 품격있고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 및 활용
중소기업청	① 1인 창조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②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통한 경영안정지원
특허청	① 지식재산 창출·보호 기반 강화로 일류 지식재산 보유기업 육성
	② 지식재산강국 실현을 위한 고품질 심사서비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청	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식의약 안전 강화
	② 의약품, 의료기기 관련 신성장 산업 발전 지원
기상청	① 선진 기상예보서비스 구현
	②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기상산업 육성
해양경찰청	① 해양안전 서비스 제공
	② 해양환경 보호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① 차질 없는 건설사업 시행
	② 최적의 정주 여건 조성 및 예정지역 주민 재정착 지원

2. 일자리 창출과제

1] 일자리 창출과제 부문 평가개요

□ 기본 방향

- 일자리대책의 추진노력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범정부적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지원하고 효율성을 제고
 - “2010년 정부의 첫 번째 국정과제는 경제를 살리는 것이며, 그 핵심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 (2010.1.4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

□ 평가대상 기관·과제

- 평가대상 기관 : 주요 일자리대책 소관 10개 부처청
 -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 평가대상 과제 : 15개 과제
 -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1.21)에 보고된 79개 일자리 과제 중 평가가 필요한 62개 세부과제를 4개 분야*, 15개 과제로 구분
 - 정부 일자리사업, 사회서비스·복지 일자리 제공, 노동시장 효율화, 실물경제 활성화

□ 평가 방법

- 4대 분야에 대해 과제수를 고려하여 3대분과*로 구분, 분과별로 민간 전문가평가단(15명, 과제당 1명)을 구성·운영
 - 분과별로 정부업무평가위원이 1명씩 참여, 분과위원장 역할 수행
 - 3대 분과 : 정부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복지 분과(Ⅰ), 노동시장 효율화 분과(Ⅱ), 실물경제 활성화 분과(Ⅲ)
- 전문가 평가단이 각 부처의 실적자료(10월말 기준) 및 현장 실사, 점검결과를 토대로 평가지표에 따라 정량적·정성적 평가 병행 실시
- 정책단계별로 차등적으로 배점을 부여하되, 과제별 특성에 따라 장·단기 과제로 구분하여 평가 실시

□ 평가지표

정책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정책형성 (20, 단기) (40, 장기)	1. 정책목표의 적절성	1-1. 일자리창출 목표와의 부합·연계성 (5), (10) 1-2. 정책목표 설정의 적극성 (10), (20)
	2. 정책추진 기반의 확보	2-1. 자원 확보 및 배분의 적절성 (5), (10)
정책집행 (25, 단기) (35, 장기)	3. 추진과정의 적절성	3-1. 추진계획의 진척도 (15), (15) 3-2. 유관기관·정책과의 협조 노력 (5), (10)
	4. 환경변화에 대응성	4-1. 모니터링 및 대국민 소통·홍보 노력 (5), (10)
정책성과 (55, 단기) (25, 장기)	5. 목표달성도	5-1. 성과목표치의 달성도 (25), (10)
	6. 정책효과	6-1. 일자리 창출에의 파급효과·기여도 (20), (5)
	7. 정책만족도	7-1. 일자리대책 정책만족도 (10), (10)

* 단기과제(첫번째 괄호)와 장기과제(두번째 괄호)의 배점 차등 적용

2] 일자리 창출과제 부문 평가결과

총평

-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대책에 대해 종합 평가한 결과, 해당부처 모두 역량을 집중하여 소관 과제를 시행
 -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고, 고용 유발효과가 높은 사회서비스·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 다양한 재정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마련하였고, 간병·장기요양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신설
 -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구조 개선 및 노동시장 효율성 제고
 - 구인·구직 중계 및 산업 맞춤형 실용형 인재 육성을 추진하였고, 유연근로제, 임금피크제 도입 등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 실물경제 활성화로 성장을 통한 고용창출의 선순환 기반을 복원
 - 기업환경개선,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 제도개선과 규제완화,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지원 등을 통해 산업의 일자리 창출력 강화

- '10.1월이후 10월까지 예년에 비해 취업자수가 대폭 증가(90만여명→130만여명)하고 고용률이 높아진 반면, 실업률은 하락하는 등 고용상황이 호전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됨

구분	취업자수	고용률	실업률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10.1월	22,865천명	56.6%	5.0%	9,712천명	4,860천명	1,725천명
10월	24,172천명	59.4%	3.3%	10,280천명	5,089천명	1,809천명
증감	1,307천명	2.8%	△1.7%	568천명	229천명	84천명

- 다만, 양질의 일자리 확보 등 질적 측면에서의 보완이 숙제로 남아 있고,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보다 민간부문이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견인하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

- 청년층 취업자수가 연초 대비 177천명 감소하는 등 심화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 해소에 고용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필요
 - 15세~29세 취업자수 : ('10.1월) 3,991천명 → (10월) 3,814천명
- 상용직뿐만 아니라 임시·일용직도 증가하는 등 고용시장 양극화가 우려되므로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10.1월부터 10월 사이에 임시직 및 일용직이 각각 229천명, 84천명씩 증가
- 직접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관련 없는 경우까지 실적에 포함하거나, 일부 직종은 실적에 중복계상 되는 등 고용통계의 오류가능성 잠재
 -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으나 10년 이상 활동해온 성폭력상담사를 신규 실적으로 등재하거나, 동일한 일용직 근로자를 일자리 소개서비스마다 실적에 포함

- 일자리 대책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정책만족도 조사결과 '약간 만족' 수준인 평균 63.2점을 기록

- 보통(50점) 보다 높은 수준이며, '10년 총리실에서 각 부처의 주요정책에 대해 동일한 척도로 조사한 '정책만족도' 평균 59.9점 보다 높게 나옴

- 앞으로, 경제성장 및 취약계층 지원효과가 높은 일자리를 제외하고는 정부의 역할을 줄여나가기
 - 지속적인 규제완화, 제도개선 등을 통해 민간이 경쟁력을 확보하여 일자리 창출을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할 필요
 - 내년에는 세계경제 둔화에 따른 성장을 저하 등으로 올해와 같은 성과 창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상응한 고용전략 마련 필요
- OECD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올해 6.2%에서 내년 4.3%로 하락 전망

- 기관별 평가결과

- 10개 기관의 15개 과제별 평가결과에 업무 가중치, 정책만족도 등을 반영하여 종합한 결과, 중소기업청·지식경제부 등이 우수한 실적을 보임

평가결과	기관명<직제순>	과제명
최우수 (1)	중소기업청	창업 및 취업연계 적극 지원
우수 (1)	지식경제부	산업의 일자리 창출력 확대
보통 (6)	기획재정부	고용창출 지원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
		서비스산업 선진화
	행정안전부	정부차원 일자리 창출노력 강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서비스산업 선진화
		노동취약계층 노동참여 통한 서민 일자리 창출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 활성화·내실화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제고
		구인·구직, 취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노동시장 수급구조 개선		
여성가족부	여성의 고용촉진 및 취업지원 강화	
금융위원회	고용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	
미흡 (2)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시스템 선진화를 통한 실용형 인재육성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 규제완화

정책단계별 평가 결과

- 10개 기관 15개 과제를 평가한 결과, 종합평균 76.2점을 기록
 - 정책단계별로는 정책형성단계(78.4점)와 집행단계(77.7점)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성과단계(76.8점)는 다소 저조한 편임
 - 일자리대책 정책만족도는 정책형성부터 성과까지 전 단계를 평가한 것이므로 종합평균에는 포함하였으나, 성과단계 평균에서는 구분
 - 세부 평가지표별로는 일자리창출 목표와의 부합·연계성(80.6점), 추진계획의 진척도(79.5점), 일자리창출에의 파급효과·기여도(78.7점) 등이 우수한 반면,
 - 목표달성도(74.9점), 모니터링 및 대국민 소통·홍보노력(75.1점) 등은 상대적으로 미흡
 - 일자리대책 정책만족도는 63.2점으로 '약간 만족' 수준임(50점이 보통)
- 정책단계 및 평가지표별 평정결과

정책단계	평가지표	평정결과	
정책형성	일자리창출 목표와의 부합·연계성	80.6점	78.4점
	정책목표 설정의 적극성	78.4점	
	자원 확보 및 배분의 적절성	76.1점	
정책집행	추진계획의 진척도	79.5점	77.7점
	유관기관·정책과의 협조 노력	78.5점	
	모니터링 및 대국민 소통·홍보 노력	75.1점	
정책성과	성과목표치의 달성도	74.9점	76.8점
	일자리 창출에의 파급효과·기여도	78.7점	
	일자리대책 정책만족도	63.2점	63.2점

정책형성단계

정책형성단계의 평가지표 중 '일자리창출 목표와의 부합·연계성'이 '정책목표 설정의 적극성'이나 '자원 확보 및 배분의 적절성'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됨

- 일자리창출 목표와의 부합·연계성
 - 대부분이 일자리 창출효과 분석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절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 연구용역을 통해 창업기업의 고용창출효과를 분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들의 창업활동·환경 등을 비교분석하여 정책과제를 도출(중기청)
 - 일부는 정책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 부족으로 사업효과가 저하되거나, 일자리 창출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을 포함하는 사례 발생
 -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 및 자활근로사업 설계시 사업참여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통합급여 방식에 의해 사업참여로 받은 급여를 삭감하여 수급비를 받도록 함에 따라 참여 기피 초래(복지부)
- 정책목표 설정의 적극성
 - 대부분이 정책수단들을 수립함에 있어 목표치를 전년 보다 상향하거나, 추진일정을 적극적으로 설정
 - 해외원자 유치 활성화 사업의 경우 목표치를 전년 보다 60% 높게 설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쟁국인 홍콩, 태국 등 보다 높게 설정(복지부)
 - 일부 과제는 정책목표치를 소극적으로 설정하거나, 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인 등의 반발에 따라 목표치와 정책수단이 후퇴
 - 중저가 숙박시설 융자지원 개선과제의 경우, 관광호텔 객실 증가에 대한 관광기금 기여도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최근 3년간 평균 목표치 61.5% 보다 낮은 47.1%를 목표로 설정(문화부)
 - 경영부실 사립대학 구조조정을 위해 30개의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을 발표하였으나, 목표치가 당초 계획했던 50개에서 줄었고, 학자금 대출제한이라는 간접적인 수단을 적용함에 따라 정책수단이 약화(교과부)
- 자원 확보 및 배분의 적절성
 - 전담인력을 확보하거나 조직을 신설하는 등 안정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적절히 배분하였으나
 - 244개 전 지자체에 전담기구 및 일자리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일부 지자체는 경총, 노총 등 지역 경제단체 등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로 교부금 500억원을 확보(행안부)

- 확보된 예산 및 구축된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 등 전반적인 평가가 다른 지표부문에 비해 저조한 편임
 - 민간중개기관의 중개 장려를 위한 취업성공수수료가 민간기관의 자체 소개 수수료 보다 소액(15만원)이고 요건(6개월 근무)이 엄격하여 참여 저조(고용부)
 - 구인·구직 DB를 구축한 Work-net의 정보를 민간중개기관이나 여성새일센터의 경우 해당 기관 입력정보 외에는 이용할 수 없어 폭넓은 활용에 한계(고용부)

정책집행단계

정책집행단계의 평가지표 중 '추진계획의 진척도' 및 '유관기관-정책과의 협조 노력'이 '모니터링 및 대국민 소통·홍보 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됨

- **추진계획의 진척도**
 - 주기적인 점검 등을 통해 일정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예산의 차질없는 집행을 추진하는 등 진척 상황이 전반적으로 양호
 - 현장방문과 TF운영 등 지속적인 부처간 협의를 통해 유사·중복된 재정지원사업을 계획된 기간안에 대폭 통·폐합(202개→134개)하고, '11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 완료(고용부)
 - 국회제출 이후 입법추진 지연, 관계부처와의 미합의 및 이해관계자의 반대 등으로 추진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
 - 경영부실 사립대학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립학교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09.12월 국회제출)'이 아직까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음(교과부)
- **유관기관-정책과의 협조 노력**
 - 대체로 관련 TF, 회의체를 활발히 운영하는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정책과도 긴밀히 연계
 - 산업단지의 산학협력기반 강화를 위해 지경부와 교과부간에 TF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었음 뿐만 아니라, 국토부, 중기청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지경부)
 - 다만, 일부 과제에서 관계부처간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처간 칸막이가 존재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부와 여가부가 공동지침을 마련·시행하고 있으나, 관련 예산 및 업무처리절차를 이원화하여 운영함에 따라 효율성 저하(고용부, 여가부)
 - 전문자격사시장 선진화 방안을 당초 '09년에 마련할 계획이었다가 금년으로 미뤄진바 있으나, 직역간 이해관계 등에 따른 부처협의 부진, 이익단체의 반발 등으로 계속 지연(기재부)
- **모니터링 및 대국민 소통·홍보 노력**
 - 언론홍보 및 인터넷, 박람회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고, 토론회 및 워크숍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
 - 사회서비스 선진화 추진과 관련, 언론홍보 외에 사회서비스 산업박람회(6월)를 개최하는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복지부)
 - 일부에서 정책운영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이 충실하지 않아 제도운영에 따른 효과가 떨어지는 등 다른 지표부문에 비해 미흡
 - 취업을 위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가 월빙, 취미생활

정책성과단계

정책성과단계의 평가지표 중 '일자리 창출에의 파급효과·기여도'에 비해 '성과목표치의 달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으며, '일자리대책 정책만족도'는 '약간 만족' 수준임

- **성과목표치의 달성도**
 - 다른 지표에 비해 저조한 것은 일부 과제의 추진지연 외에도, 시기 미도래 등으로 달성도를 측정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 **일자리 창출에의 파급효과·기여도**
 - 취업자수가 연초 대비 1,307천명 증가하고 고용율이 56.6%에서 59.4%로 상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업률이 5.0%에서 3.3%로 하락하는 등 각 부처의 일자리 대책이 전반적으로 고용상황 개선에 기여
 - 부품·소재 무역수지는 3분기까지 571억불 흑자를 기록함에 따라, 제조업 취업자수가 연초 3,924천명에서 10월 4,098천명으로 174천명 증가(지경부)

- 다만, 청년실업의 해소 및 좋은 일자리 확충 등 질적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됨
 - 청년 취업자수가 연초 대비 177천명 감소하였고, 전체 취업자 중 상용직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시직 및 일용직도 각각 229천명, 84천명 증가

□ **일자리대책 정책만족도**

- 외부 전문가관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만족도 조사결과 '약간 만족' 수준(63.2점)임
 - 일반국민, 정책고객, 전문가 등 총 2,100명 대상, 11점 척도 적용
- 조사대상 중 일반국민(57.2점)의 만족도가 전문가(67.1점)나 정책고객(67.3점) 보다 낮은 것은 정부의 일자리 대책에 대한 일반국민의 기대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홍보노력이 필요함을 시사

3] 개선 · 보완 사항

- '노동취약계층 노동참여를 통한 서민일자리 창출' 과제 중 취약계층 대상사업의 급여지급방식을 참여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
 - 장애인 행정도우미 및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기초생활대상자인 경우 사업 참여로 받는 급여로 인해 기초생활수급비가 삭감되지 않고 실질적인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교육시스템 선진화를 통한 실용형 인재육성' 과제 중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경영부실 사립대학 구조조정 노력 강화
 - 정원 감축 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방안을 강구하되, 학자금 대출 제한의 경우 시행과정에서 재학생 피해 최소화 방안 강구
 - 학교법인 해산시 남은 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09.12 국회제출)의 조속한 개정 노력 필요
- '서비스산업 선진화' 과제 중 전문자격사시장 선진화 방안의 조속한 마련 추진
 - 자격사 인원확대 등 중요 쟁점사항들이 포함된 부처 합의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해관계인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설득 등을 통해 전문자격사시장 선진화방안을 확정할 필요
- '관광산업 규제완화' 과제 중 관광투자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관광단지 개발에 대한 지원 강화
 - 관광단지 개발시 적용되는 임대료 감면율(국유지 20%, 공유지 30%)을 혁신도시 등 타 개발사업(80~100%)에 준하여 확대 하는 방안 검토 필요

3. 녹색성장 과제

1] 녹색성장 과제 부문 평가개요

- **기본 방향**
 - 지난해와 달리 금년도는 녹색성장 정책추진 여건이 성숙된 만큼 성과중심 평가 실시
 -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고 유용한 평가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적절히 병행하여 평가
- **평가대상 기관 : 26개 중앙행정기관**
 - 녹색성장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한 26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 기관별 업무와 녹색성장의 연관성, 녹색성장 5개년 계획상 정책 추진과제의 중요성과 비중 등을 고려하여 4개 그룹으로 분류

구분	기관명	그룹
부단위 (16)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1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2
청단위 (10)	소방방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기상청	3
	법제처, 통계청, 방위사업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4

- **평가대상 과제 : 30개 대과제 (88개 세부과제)**
 - 대과제 1개당 4개 이내의 세부과제로 구성하고, 세부과제는 기관별 녹색성장 5개년계획의 단위과제와 주요 녹색사업 중 선정

- 기관별로 1개의 대과제를 할당하되, 녹색성장과 관련성이 높은 4개 주요부처(지경부, 환경부, 교과부, 국토부)의 경우 2개의 대과제 할당

□ 평가체계 및 평가지표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비고
계획 (20)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정책목표의 명료성 (5) 1-2. 정책내용의 타당성 (5) 1-3.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절성 (10)	20	정성/정량
추진 (30)	2. 추진과정의 적절성	2-1. 추진과정의 효율성 (5) 2-2. 추진일정 준수 정도 (10) 2-3. 추진 과정상 협조노력 (10)	25	정성/정량
	3. 정책 소통·확산노력	3-1. 정책 소통·교육·홍보 노력 (5)	5	정성/정량
산출/결과 (50)	4. 성과 달성도	4-1. 성과목표 달성도 (40) 4-2. 정책 효과성 (10)	50	정성/정량

□ 평가 방법

- 평가의 전문성·객관성을 위해 녹색성장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녹색성장 평가단」을 구성·운영 (총 30명)
- 최종 평가는 기관별로 전자통합평가시스템(e-PSES)에 등록된 서면자료 및 별도 제출한 추가 소명자료를 토대로 그룹별 검토회의(2회)와 전체 검토회의(그룹별 위원장 참석)를 거쳐 실시

2] 녹색성장 과제 부문 평가결과

총평

- 금년에는 녹색성장 정책추진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각 기관별로 가시적인 성과·도출과 녹색성장 저변 확대에 주력
 - 녹색성장과 연관성이 높은 기관에서는 구체적인 성과·도출
 - 중소기업형 유망 녹색기술 발굴·선정(중기청),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 등(농식품부)
 - 평가대상기관으로 새로 선정되거나, 녹색성장과 연관성이 적은 일부 기관에서도 녹색성장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달성
 - 친환경·저에너지 국방기술개발(방사청), 관광분야 녹색성장 기반 마련(문체부)
- 그러나, 일부 평가대상 기관에서는 과제선정의 부적절,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적극성 부족 등이 개선 필요사항으로 지적
 - 기관의 기존 업무를 녹색성장으로 포장하여 평가과제로 제시한 'Green Wash' 사례 발견
 - 일부 기관은 중요한 녹색성장 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달성이 용이한 평가과제를 제시한 소극적 태도가 문제점으로 지적
- 평가 항목별로 비교시 추진과정의 적절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계획수립의 적절성 및 성과·달성도에서 기관간 편차 발생
 - 특히, 성과지표를 무의미한 정량지표나 소극적으로 제시한 기관, 성과의 질적 충실도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 낮은 평점 부여
- 기관별 평가결과

평가결과	기관명<직제순>	그룹
최우수 (1)	중소기업청	3
우수 (4)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1
	문화체육관광부	2
	방위사업청	4
보통 (17)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1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방송통신위원회	2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	3
	법제처, 통계청, 특허청,	4

평가결과	기관명(직제순)	그룹
미흡 (4)	금융위원회	1
	여성가족부	2
	소방방재청	3
	식품의약품안전청	4

그룹별 평가결과

1 그룹

• 총론

- 녹색성장과 연관성이 높은 8개 부단위 기관을 그룹핑하여 평가
 - '저탄소 생산 및 구매촉진을 통한 녹색성장 기반확대' 과제를 추진한 농림수산식품부와 '환경과 생명의 4대강 살리기, 녹색생활 Me First 운동 전개' 과제를 추진한 환경부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
 - 반면, '녹색경제기반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 과제를 추진한 금융위원회가 '미흡 기관'으로 지적

• 주요 성과

- 주력 산업의 녹색화 추진
 - 그린카 개발 및 보급 전략을 수립하여 양산시기 단축을 도모하고, 대중소기업 협력을 토대로 R&D를 혁신하여 '10.8월에 차량 출시
 - 전기차 시범차 개발에 대·중·소 44개 기업이 합작하여 부품 국산화 성공
- 저탄소 농업생산기반 확대
 -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분석을 실시하고 적절한 맞춤형 비료 지원체제로 전환하여 화학비료 사용량과 비용을 크게 절감
 - 화학비료 사용량: '09년 1,130천톤 → '10년 1,030천톤, 8.8% 감축
 - 화학비료 구입비용: '09년 9,315억원 → '10년 6,509억원, 30.1% 절감
 - 농업시설·장비의 열효율 기준을 설정하여 저효율 제품에 대한 국고보조를 중단하고, 지열·목재펠릿을 이용한 에너지 절감 시설 보급을 확대하여 농가의 난방비용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
 - '10년 에너지절감시설보급 713ha, 온실가스 122.7천tCO₂ 감축
- 하천 유역 수질개선과 수질규제 기준 강화
 - 하천 오염원 관리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한 비점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강화
 - '10년 상반기에만 오염물질 117톤 저감(연간 목표 200톤)
 - 수질오염사고 예방·방제를 위한 수질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노력 지속
 - 4대강 수질통합관리센터 출범('10.8.25)·운영 중

• 미흡한 점

- 친환경주택에 대한 금융지원의 실효성 미흡
 - 주택건설 기준 규정이 개정되어 친환경주택 건설이 의무화된 상황에서 친환경주택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기대되는 정책효과 분석 미흡
 - '09.10월부터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시 친환경주택으로 건설토록 의무화
 - 담보주택에 대한 친환경 인증시 금리우대 조치도 투기지역 및 담보가액 6억원 초과 주택에만 해당되어 정책 수혜범위 제한적
 - 투기지역(0.1%), 담보가액 6억원 초과 주택(0.1%)에 부과되는 부가금리 면제
 - 에너지 등급별로 차등 지원방안을 수립하는 등 세밀한 시책 강구
- 지자체의 녹색 경쟁력 증진 활동 미흡
 - 시민 녹색생활 실천에 따른 인센티브 수립, 지자체 녹색위 운영관련 조례 제정 등에 있어 지자체별 녹색위 활동이 저조한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점검·지원 강화

□ 대중교통 활성화 기반 구축 미흡

- 대중교통 전용지구 시범사업은 시범설계의 확대구축 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고, 일부 지자체는 지자체장 교체로 인해 사업 중단 또는 취소가 불가피한 실정인만큼, 적극적 해결 노력이 미흡

2 그룹

• 총론

□ 1그룹에 비해 녹색성장과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8개 부단위 기관을 그룹핑하여 평가

- '녹색생활 문화'를 통한 녹색성장 실현' 과제를 추진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
- '범국민적 녹색생활 실천 주도' 과제를 추진한 여성가족부는 '미흡 기관'으로 지적

• 주요 성과

□ 관광분야 녹색성장 기반 구축

- 지자체별로 특성화된 생태관광 모델을 개발토록 지원하고 녹색관광사업 인증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관광분야의 녹색산업 기반조성 - 지자체의 녹색관광상품개발과 홍보마케팅을 지원하고, "한국생태관광협회" 등 민간단체 설립을 적극 지원하여 민간참여 유도

□ 병영생활의 녹색화 구현

- 병영생활의 녹색화로 공공분야의 최대 에너지 소비처인 국방 분야의 에너지 소비 대폭 절감
 - '10년 8월말 기준 에너지 절약 580억원(유류 433억, 전기 53억, 가스 21억, 물 73억)
 - 월평균 에너지 절감액 : 72.5억원 ('09년 63억원 대비 15% 향상)

□ 녹색성장 전략의 국제화 적극 추진

- 개도국 녹색성장 모델 전파 및 녹색성장 협력사업 지원을 위해 국내에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 설립
 - 현재 GGGI를 국제기구로 확대·발전시키는 작업 진행 중

• 미흡한 점

□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 미흡

- 녹색생활 실천확산의 경우 타 부처의 녹색생활 실천 프로그램과의 일회성 연계 홍보 활동에 그치는 등 체계적인 연계 전략 추진 미흡
 - 또한, 녹색생활 실천에 중요한 개별 가정의 녹색소비 행동을 단계적으로 분석하고,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려는 노력 부족
- ⇒ **일방적·형식적인 홍보활동보다는 참여 주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는 쌍방향 네트워크 체계 강화***
 - 예) 지경부의 탄소캐쉬백, 환경부의 탄소마일리지 및 그린마일리지캠페인 등과 연계하여 이들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여성·시민단체 차원의 지원체계를 수립함으로써 건전한 녹색생활 정착에 기여 가능
- 가정 단위의 녹색소비활동을 구매-소비-폐기의 3가지 단계로 구분하고 해외단체의 성공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세부전략 수립

□ 방송통신분야의 해외시장 개척활동에 대한 성과 분석 미흡

- 지상파 DMB와 WiBro, IPTV등을 해외시장에 확산시키기 위해 로드쇼·쇼케이스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였으나, 정책효과 분석이 미흡한 만큼 성과분석을 강화하여 정책효과를 성과지표로 제시

□ 녹색성장과 연관성이 낮은 평가과제 제시

- 녹색성장 5개년계획과 중앙추진계획에 보다 중요한 녹색성장 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뷰티산업 경쟁력 강화 등 녹색성장과 관련이 적은 과제를 평가대상 과제로 제시
 -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영향 모니터링 및 전염병 예방·관리능력 강화 등

3 그룹

• 총론

□ 녹색성장과 연관성이 높은 사업을 수행하는 5개 청단위 기관을 그룹핑하여 평가

- '녹색전문 중소·벤처기업 육성' 과제를 추진한 중소기업청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
- '기후변화 대비 재해관리 강화' 과제를 추진한 소방방재청이 '미흡 기관'으로 지적

• 주요 성과

- **녹색 벤처·중소기업 중점 육성**
 - 핵심 녹색부품·소재 분야의 녹색전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녹색 창업에서 금융, 인력, R&D, 해외진출까지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 제8차 녹색취외 보고대회에서 '녹색 중소기업 창업·성장 지원방안' 수립·발표('10.7), '녹색 전문기업 해외진출 지원전략' 수립('10.9)
- **중소기업형 유망 녹색기술 발굴 지원**
 - 200개 중소기업형 유망 녹색기술을 발굴·선정하여 중소기업에 적합한 기술로드맵을 매년 수립하고 관련 R&D 지원 강화
 - 수입의존도가 높고 단기상용화가 가능한 부품·소재분야 위주로 9대 분야 41개 품목 200개 유망기술 선정('10.10), 녹색 R&D 지원과제를 197개 → 350개로 확대
- **탄소흡수원인 산림 조성·관리,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확대**
 - 국내 나무심기·숲가꾸기로 탄소흡수 등 공익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한편, 해외조림을 통해 목재자원·탄소흡수원·바이오에너지원 확보
 - 조림 19천ha, 숲가꾸기 23만ha, 해외조림 6천ha
 - 산림 바이오매스의 활용을 위해 숲가꾸기 산물 수집부터 활용까지 일관시스템을 구축하고, 목재펠릿 산업화를 적극 추진
 - 일관시스템(25개소), 목재펠릿 제조시설 8개소, 펠릿보일러 3,400대 보급
- **농업기술분야 국제협력 강화**
 -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를 운영하면서 우수 농업기술을 보급함은 물론, 해외에 진출한 농산업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전문가 양성 촉진
 - 해외농업인재 양성을 위한 해외인턴 파견(120명) 및 09년 인턴 취업대상자중 83.3% 취업, 해외진출 농산업체 현지 기술이전(베트남 : 5개 회사, 파라과이 : 3개회사, 우즈벡 : 2개회사) 기회 제공

• 미흡한 점

- **방재시장 개척의 구체적인 성과 미흡**
 - 국제회의(UNISDR) 유치 등을 통한 홍보와 방재산업전 개최 등 하드웨어적 접근만으로는 고용창출 등 구체적인 성과가 미흡한만큼, 시스템 고도화 등 소프트웨어적 접근을 병행하여 시장창출 조기화
- **기후변화 예측능력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접근 미흡**
 - 기후변화 예측 제고를 위해 지구시스템 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나, 예측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모델의 정확성 검증을 병행
 - 현재 추진 중인 독자적인 지구시스템모델은 다른 나라에서 개발한 모형의 모듈을 결합해서 만드는 것으로 모듈간 피드백이 불균형하여 많은 오차가 수반할 수 있어, 현업에 적용하기까지는 많은 검증 필요
- **기후변화에 따른 기존 재배작물 생산량 확보방안 미흡**
 - 기후변화 적응능력이 약한 농작물의 안정적인 생산량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이 미흡한만큼, 농촌경제연구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맞춤형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
 - 평균기온 2℃상승 시 벼추 등 고랭지 채소 재배면적이 89% 감소할 것으로 예상

4 그룹

• 총론

- **녹색성장 관련성은 적으나, 금년부터 녹색성장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관련시책을 추진하는 5개의 청단위 기관을 그룹핑하여 평가**
 - '국방녹색기술개발' 과제를 추진한 방위사업청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
 - '기후변화 대응 안전관리 강화 및 건강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지원' 과제를 추진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미흡 기관'으로 지적

• 주요 성과

- **친환경 국방녹색기술 확보**
 - 페탄약·폐추진기관 등을 분해하여 에너지 물질(화약 및 추진제)을 폐기·회수하고, 회수한 에너지 물질은 산업용 또는 군수용 물질로 변환하는 기술 및 공정 개발
 - 연간 약 300억원의 페탄약 자원 재활용 및 페탄약 처리시 발생하는 환경오염 방지
- **최빈·개도국에 녹색기술을 전파하여 국격 제고**
 - 최빈·개도국에 녹색기술을 보급하고 브랜드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해당국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 한편, 국제기구(WIPO, APEC)를 우리의 녹색기술 전파에 동참시켜 국격 제고에 기여
 - 아프리카 차드 : 땀감용 사탕수수 숯 개발, 몽골 : 휴대용 운동기 개발지원

• **미흡한 점**

□ **식품안전관리사업의 목표설정 및 성과지표 미흡**

- 중·장기 식품안전관리 사업의 연차별 목표 중 일부분에 불과한 성과지표(위해인자 예측모델 1건)만을 제시하여 대표성이 부족하며, 녹색성장과 직접 관련되는 추가적인 성과지표 제시 필요

3 개선·보완 사항

□ **평가과제 선정의 적절성 제고**

- 평가대상기관이 반드시 추진해야 할 대표성 있는 녹색성장 정책이평가과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전문가 평가단을 조기에 구성하여 과제 선정단계부터 평가 위원 검토 병행
 - 평가위원이 담당기관의 녹색성장 중앙추진계획상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책과제는 해당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평가대상 과제로 포함시키는 방안 고려
- 평가지침 수립시 녹색성장과의 연관성 및 중요도가 높은 과제를 선정한 기관이 우수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객관화된 기준 마련

□ **적극적인 성과지표 선정 유도**

- 평가대상기관의 성과지표가 '건 수'와 같은 단순 정량지표나 소극적인 목표치가 제시되지 못하도록 각 기관에 사전 권고

□ **과제의 특성에 맞는 평가기준 개발**

- 범 정부적으로 추진되는 녹색성장의 경우 다수 기관이 협력하여 추진해야 할 정책이 많은 상황
 - 평가과제가 여러 기관이 함께 추진할 공동 과제인 경우, 관련기관들이 성과 및 문제점을 공유할 수 있도록 기준 신설
-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주요 과제의 경우, 반드시 연차별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단년도 성과를 인정하는 기준 마련

□ **중간점검 강화**

- 평가위원과 공동으로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조사 병행

별첨 중앙행정기관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평가 결과

1. 평가개요

- 평가대상기관 : 38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19개, 차관급 19개)

평가항목	주요내용	비중(%)	비고
친환경상품 구매비율	당해연도 친환경상품 구매율을 평가	90	정량
전년대비 친환경상품 구매비율 증가정도	친환경상품 구매율의 전년대비 증가정도를 평가	10	정량

※ 모든 실적자료는 조달청을 통한 구매를 기준으로 산정(1~10월까지 실적)

○ 평가방법

- 세부 평가지표에 따라 각 기관의 조달청을 통한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자료를 토대로(10월말 기준) 정량적으로 평가

2. 평가결과

- '10년도 친환경상품 구매비율, '09년 대비 증가율 등에 대해 최종평가 결과 평점 90점 이상인 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 환경부 등 7개 기관
 - 반면, 통계청, 기상청 등 8개 기관은 평점 40점 미만

<종합평가 현황>

구분(평점)	기관명	기관수
탁월(90점 이상)	당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부, 국가보훈처, 환경부	7
우수(80~90점 미만)	산림청, 국세청, 고용노동부	3

구분(평점)	기관명	기관수
보통(60~80점 미만)	법무부, 병무청, 조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금융위원회, 법제처, 관세청,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13
미흡(40~60점 미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방부, 해양경찰청, 보건복지가족부, 농림수산식품부, 중소기업청, 소방방재청	7
저조(40점 미만)	외교통상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특허청,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통계청, 기상청	8

〈붙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평가결과 (순위별)

순위	기관명	구매비율		평가점		
		'09년도	'10년도	구매비율	증가정도	합산
	평균	43.1	45.5	-		
1	공정거래위원회	77.6	90.4	90.0	10.0	100.0
2	국민권익위원회	48.4	95.3	90.0	10.0	100.0
3	여성가족부	80.9	91.1	90.0	10.0	100.0
4	방송통신위원회	81.6	95.2	90.0	10.0	100.0
5	기획재정부	58.7	86.7	86.7	10.0	96.7
6	국가보훈처	23.7	86.4	86.4	10.0	96.4
7	환경부	68.9	86.2	86.2	10.0	96.2
8	산림청	29.3	73.3	73.3	10.0	83.3
9	국세청	72.1	76.5	76.5	4.4	80.9
10	고용노동부	84.6	80.2	80.2	0.0	80.2
11	법무부	60.4	69.1	69.1	8.7	77.8
12	병무청	58.3	66.6	66.6	8.2	74.8
13	조달청	74.1	72.9	72.9	0.0	72.9
14	식품의약품안전청	78.0	72.5	72.5	0.0	72.5
15	금융위원회	85.8	70.1	70.1	0.0	70.1
16	법제처	85.7	69.0	69.0	0.0	69.0
17	관세청	44.9	58.4	58.4	10.0	68.4
18	문화체육관광부	35.6	57.5	57.5	10.0	67.5
19	통일부	62.5	63.0	63.0	0.4	63.4
20	문화재청	46.1	54.6	54.6	8.4	63.0
21	농촌진흥청	42.4	53.0	53.0	10.0	63.0
22	방위사업청	16.4	51.7	51.7	10.0	61.7
23	경찰청	33.7	50.1	50.1	10.0	60.1
2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4.5	49.2	49.2	10.0	59.2
25	국방부	50.9	53.8	53.8	2.9	56.7
26	해양경찰청	35.5	42.6	42.6	7.1	49.7
27	보건복지가족부	24.2	38.1	38.1	10.0	48.1
28	농림수산식품부	35.5	39.2	39.2	3.7	42.9
29	중소기업청	92.8	42.6	42.6	0.0	42.6
30	소방방재청	44.8	42.2	42.2	0.0	42.2
31	외교통상부	58.9	38.0	38.0	0.0	38.0
32	교육과학기술부	40.9	36.4	36.4	0.0	36.4
33	지식경제부	69.2	33.0	33.0	0.0	33.0
34	특허청	48.7	30.7	30.7	0.0	30.7
35	국토해양부	19.2	23.4	23.4	4.2	27.6
36	행정안전부	30.9	26.9	26.9	0.0	26.9
37	통계청	71.9	19.2	19.2	0.0	19.2
38	기상청	33.3	15.9	15.9	0.0	15.9

4. 정책관리역량

1 정책관리역량 부문 평가개요

□ 평가 목적

- 각 부처 주요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 활동의 관리 노력 및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국정성과 창출 유도
 - '10년 부처 업무보고·국정과제, '09년 중점관리법안 및 '10년 입법계획 등 부처의 전반적인 정책활동을 포괄하되, 핵심과제 등 타 평가부문과 중복은 제외

□ 평가 방향

- 정책 문제 및 이슈 대응, 정책과정에서 조정·통합 및 집행관리, 정책 활동을 통한 입법성과 등을 정성적으로 평가
 - 특히,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 부처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평가

□ 평가 대상

- 장관급 기관(19) : 부(15) 및 장관급 기관*(4)
 -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 차관급 기관(19) : 외청(17, 검찰청 제외) 및 차관급 기관*(2)
 - 법제처, 국가보훈처

□ 평가 분야

- 정책문제 관리 : 이슈 대응
 - 정책이슈 선제적 발굴·대응 정도, 갈등관리와 위기관리 노력 및 성과 등
- 정책과정 관리 : 조정·통합, 집행관리·지원
 - (조정·통합) 이해관계자 지지확보 활동의 적극성, 부처 간 협력도 등
 - 대 언론관계 사항은 정책소통·홍보 평가부문에서 반영
 - (집행관리·지원) 업무계획 이행·관리, 통계 선진화 기반조성 노력 등
 - 수시 현안과제 개선조치사항 이행·관리 노력도 고려
- 정책성과 관리 : 입법성과 등
 - 대 국회 지지 확보 및 대응 노력, 법령 준비의 신속성, 주요법안 처리 노력 및 성과 등

□ 평가 방법

- 핵심과제 부문 평가와 동일하게 분야별로 5개 평가 분과로 구분, 분과별 민간 전문가평가단(38명, 부처 당 1명)을 구성·운영
- 전문가평가단이 각 부처에서 제출한 사례 및 실적자료(10월말 기준)를 토대로 평가지표에 따라 주로 정성적으로 평가하되 정량 평가를 병행
 - 분과별로 '부처 업무설명회'를 개최하여 민간 전문가들의 해당 부처의 정책추진 역량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피평가기관의 소명 기회 제공
-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각 분과위원장이 참여하는 검토회의를 개최, 부단위·청단위 정책관리역량 평가결과를 최종 확정

□ 평가지표

정책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정책문제 관리	1. 이슈 대응	1-1. 정책이슈 선제적 발굴·대응 정도
		1-2. 갈등관리 노력 및 성과
		1-3. 위기관리 노력
정책과정 관리	2. 조정·통합	2-1. 정책 이해관계자 지지확보 활동의 적극성
		2-2. 부처 간 협력도
	3. 집행관리·지원	3-1. 통계 선진화 기반조성 노력
		3-2. 업무계획 이행·관리 노력
		3-3. 수시 현안과제 개선조치사항 이행·관리 노력

정책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정책성과 관리	4. 입법성과	4-1. 대 국회 지지 확보 및 대응 노력
		4-2. 법령 준비의 신속성
		4-3. 주요법안 처리 노력 및 성과

2 정책관리역량 부문 평가결과

총평

□ 기관별 평가결과

- 정책문제에 대한 이슈 대응, 정책집행 관리·지원, 입법 노력 등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부 단위 기관의 경우, 조정·통합 능력 보다는 이슈 대응 및 입법성과 등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청 단위 기관의 경우, 이슈 대응 능력 보다는 집행관리·지원 등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평가항목별 평정결과를 종합한 결과,
 -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이 전반적으로 우수한 실적을 보인 반면, 교육과학기술부, 방위사업청 등은 상대적으로 미흡

평가결과	기관명<직제순>
최우수 (1)	고용노동부
우수 (9)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조달청, 통계청, 농촌진흥청, 특허청, 해양경찰청
보통 (25)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국가보훈처, 국세청, 관세청, 병무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미흡 (2)	교육과학기술부
	방위사업청, 문화재청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이슈 대응

□ 정책이슈 선제적 발굴·대응

- 주요 현안 이슈를 사전에 규명하고, 외부(이해관계자, 국회,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이슈들에 대해 적극 대응하여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해 노력
 - 일자리 사업 중복·누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 통폐합을 실시하여 사업효율화 선도(고용노동부) : 유사·중복 사업을 통합(202개→134개), 2011년 예산안에 일자리사업 효율화 계획 반영(6·8월) 등
- 그러나, 일부 부처는 정책현안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 보다 사후적 처방에 의존하고, 단기적·소극적인 대처로 정책 효과성이 저하
 - 천안함 사태 등 해상안보 환경변화에 따른 선제적인 무기체계 개선, 무기체계의 성능결함이나 군수물자 조달관리 부실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선제적이기보다는 사후 처방적인 상황 (방위사업청)

□ 갈등관리 노력

- 갈등관리교육, 갈등영향분석 등은 우수한 사례가 도출되는 등 갈등관리업무 초기에 비해 발전되고 있는 상황
 - 업무특성을 고려한 기관 자체교육 프로그램 활용(국방부, 지경부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안 모색(보훈처, 산림청 등) 등
 - '07년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정

- 기관별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은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나,
 - 시안별 갈등조정협의회는 갈등의 '완화'에 기여(국방부 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갈등관리 종합대책 수립, 갈등관리 매뉴얼 구축·활용 등 기관의 갈등관리업무를 체계화시키는 노력은 미흡

□ 위기관리 노력

- 평소 위기관리업무 담당부처의 위기관리 실태가 상대적으로 우수
- 세부 측정사항별 평가결과, 위기관리매뉴얼 운용 및 교육·훈련 등은 각 부처가 단순 일과성 업무로 추진하는 등 다소 미흡
 - 위험분석 및 취약점 점검은 대부분의 부처가 인식이 부재하여, 취약시기별·시설별 안전점검을 단순 추진하는 수준

조정·통합

□ 정책 이해관계자 지지확보 활동의 적극성

- 대부분 정책 추진시 공청회,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
 - 특히 심사관이 일반적으로 특허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기존방식과는 달리 심사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여 행정신뢰성을 확보 (특허청)
- 그러나, 일부 부처와 정책의 경우 직접적 이해관계자에 지지확보 활동이 치중되고, 비판적인 시민단체·언론 등에 대한 설득 노력은 미흡
 - 국방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민간부문과 협력체계 구축 노력이 부족 (방위사업청)

□ 부처 간 협력도

- 정책 추진시 관련부처와 협력하고 공동 대응하는 등 기관 간 의견교류는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
 -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농어촌 만들기 사업 공동 추진(5.6 MOU 체결), 고용노동부와 농어촌 지역 사회서비스 확충 MOU 체결(10.26) 등 부처 간 전문성을 접목시켜 정책의 시너지효과 제고 (농림수산식품부)
- 다만, 일부 정책의 경우 관련부처 간 협의과정에서 부처 이기주의로 인한 해결책 마련 지연 등으로 정책대응 실기 및 갈등 유발
 - 아동성폭력범죄가 증가 추세에 있으나 체계적 대응을 위한 관련부처간 협력 노력은 부족 (교육과학기술부)

집행관리·지원

□ 통계 선진화 기반조성 노력

- 전체적으로 각 기관에서는 통계활용도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
 - 통계포털 구축·운영, 중장기 통계발전계획 추진, 통계 개선·개발, 통계협의체 운영 등
- 그러나, 통계 작성 및 활용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기본적인 통계인프라(전담조직, 전문인력, 통계관리규정 등)가 구축되지 않은 경우가 다수

□ 주요 업무계획 과제 이행·관리 노력

- 각 부처의 '10년도 업무계획 과제(1,010개)에 대한 상반기 이행·관리실태 점검결과('10.7.27, 국무회의 보고),
 - 당초 추진계획 대비 지연·부진과제 수는 총 94개로 이중 부처의 귀책사유가 원인인 과제는 63개(부처 당 평균 약 1.67개)로 나타남
 - 원인별 : 계획수립 등 관련절차 지연 26개,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협의 지연 37개
 - 대외환경·추진여건 변화에 따른 지연, 법률 국회통과 지연 등은 부처 귀책사유에서 제외
- 소관 업무계획 과제 수에 비례하여 지연비율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대체적으로 연초부터 집중적인 이행·관리 노력은 다소 부족

□ 수시 현안과제 개선 조치사항 이행·관리 노력

- 이행·관리상황 점검결과, 전반적으로 분석과제별 개선방향의 취지에 따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07년 이후부터 '10년 상반기까지 추진된 총 29개 과제 287개 개선조치사항 중 260개(90.6%)는 완료 또는 정상추진 중이며, 27개는 추진이 미흡(9.4%)
- 특히,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개선」(병무청) 등 5개 과제는 정책의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한 추가 개선대책 마련 등 이행·관리가 우수
 -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주요 개선내용) 행정관서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 및 보상심의위원회 근거규정(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의2, 공익근무요원의 병역처분 변경) 마련

입법 성과

□ 대 국회 지지 확보 및 대응

- 입법, 예산 및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부처가 대 국회 설명 등 노력을 경주

- 그동안 지연되었던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을 위한 입법안이 국회 설득작업을 통해 통과되어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10.6월) 및 '11년도 사업예산 확보(고용노동부)
- 일부 부처 및 정책의 경우, 쟁점사항 및 장기간 표류 법안 등의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국회 공감대 형성 노력이 다소 부족
- 여야 간 첨예한 대립으로 국회에서 장기간 계류 중인 주요법안(교원평가제도, 서울대법인화, 과학비즈니스벨트 등)에 대한 대국회 지지확보 노력 미흡(교과부)

□ **법령 준비·처리 노력**

- '09년에 비해 정부입법계획 대비 지연 법안이 감소하는 등 입법추진 실적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10년도 정부입법계획 339건(11.20. 국회제출 기준) 중 307건 국회 제출 · 37건 지연
 - '09년도의 경우 335건 계획, 277건 국회 제출, 58건 지연
- 그러나, 빈번한 입법계획 수정(추가, 철회 및 일정변경)으로 신뢰성 및 예측가능성이 저하되고, 장기 계류 중인 법률안의 국회 통과도 저조
 - 금년 1월 정부입법계획 수립시 총 468건이었으나 68건 추가, 92건 철회
 - '10.11.20 기준, '08년 이후 6개월 이상 장기 계류 중인 법률안이 291건
- 정부 중점법안 총 58건 중 국회 처리는 39%인 23건(19건 통과, 4건 부결·폐기)이며, 계류 34건, 제출 예정 1건인 상황('10.10월말 기준)
 - 기관별로는 소관 중점법안이 최대 4개까지 통과되었으나, 일부 부처(교과부, 국토부 등)는 처리실적이 저조

3 개선·보완 사항

- **정책이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사전·사후 대응 철저**
 - 사회적 현안정책에 대하여 시기별·단계별 전망 및 분석을 강화하는 등 정책이슈를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정책효과성 제고 필요
 - 갈등현안별 종합대책 수립 철저 및 위기관리 관련 매뉴얼 정비·운영 등 기관장 책임 하에 내실화 방안 마련 필요
- **다양한 의견에 대한 조정·통합능력을 제고하여 정책의 추동력 확보**
 - 정책 추진시 비판적인 이해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설득 노력을 강화하고, 정책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소통방안 마련 필요
 -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정책 수립단계에서 부터 기관 간 정책 연계를 강화하여 정책혼선 최소화 필요
- **부처별 통계 역량 강화 및 주요업무과제 추진상황 관리 철저**
 - 소관 통계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중장기 통계발전계획 수립·이행 등 통계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주요 업무계획 과제들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기관장이 관심을 갖고 정책추진 현황을 주기적으로 자체 점검하는 등 체계적인 일정관리 강화
 - 수시 현안분석과제의 추진이 미흡한 과제별 개선조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처 스스로 원인 분석 등을 통해 조속히 대책안 마련·시행
- **중요 입법 등 쟁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외활동 적극 추진**
 - 입법 관련 대국회 지지 및 협력 활동 노력 강화 및 다양화
 - 의원 및 보좌진·상임위(수석)전문위원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정책설명회, 관련정책 해외동향 자료집 작성 및 배포, 주요 현안관련 정책토론회 등
 - 기관별로 법률안 처리 우선순위 설정 및 내년도 중점법안은 연말까지 조기 선정하는 등 정부 중점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노력

5. 정책홍보

1 정책홍보 부문 평가개요

- **기본 방향**
 - 중앙행정기관의 정책홍보 추진노력을 평가·환류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체감도 제고
 - 「국격 제고」, 「친서민 정책」, 「G20 정상회의」등 범정부적 아젠다에 대한 충실한 홍보기획, 부처간 홍보협력 활성화, 대내·외 홍보협의체 활용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
 - 변화된 홍보 환경에 대응한 뉴미디어 홍보 활성화 및 정책홍보 활동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과 노력을 유도하고자 관련 평가지표에 대한 배점을 상향 조정

□ 평가대상기관 : 39개 중앙행정기관

- 기관규모 및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기관을 분류함으로써 평가의 형평성·수용성 제고
 - 기본적으로 업무특성에 따라 '정책기관(19개)과 집행기관(20개)'으로 구분하되, 지표에 따라 조직특성(정원 및 홍보담당인원)에 따른 분류 병행
 - 정원(70% 반영)과 홍보담당 인원(30% 반영)에 의해 6개 그룹으로 분류

구분	기관명
정책기관 (19개 장관급)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업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집행기관 (20개 차관급)	법제처, 국가보훈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평가지표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기획 (20)	1. 정책홍보 기획(20)	1-1. 주요정책 홍보계획의 충실성(10)
		1-2. 범부처 홍보계획과의 연계(5)
		1-3. 홍보협의체 활용도(5)
활동 (35)	2. 정책홍보 활동(35)	2-1. 뉴미디어 홍보 활용도(20)
		2-2. 대안론 브리핑 충실도(5)
		2-3. 외신대상 홍보활동 수준(5)
		2-4. 홍보콘텐츠 활용도(5)
성과 (45)	3. 정책홍보 활동 성과(45)	3-1. 주요정책 기획홍보 성과(25)
		3-2. 정책기사 반영도(10)
		3-3. 기관장 홍보활동 수준(10)

□ 평가 방법

-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관련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정책홍보 평가단(총 25명)」을 구성·운영
 - 홍보분야 외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별 전문가 확대 구성
- 각 부처가 e-IPSES 시스템에 등록하거나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평가하되 필요시 근거자료 확인 및 현장조사를 병행
- 평가지표의 특성에 따라 정량·정성 평가를 적절히 병행 활용

2 정책홍보 부문 평가결과

총평

- '대국민 정책소통 강화'라는 범정부 홍보기조 하에서 각 부처는 핵심 정책성과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정책홍보 활동을 전개
 - 특히, △국격 제고 △친서민 정책 △저출산 대책 등 범정부 아젠다에 대한 부처간 유기적인 협력홍보 활동이 활성화
 - △정부 출범 2주년 △G20 정상회의 등 주요 계기를 활용한 범정부적 사전 홍보기획 및 다양한 홍보활동이 돋보임
- 뉴미디어 홍보의 경우 블로그 등 기존 홍보수단 이외에 SNS 활용, 모바일 앱 개발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적극적 소통활동을 강화
 - 정책블로그의 민간포털 연계 활용 이외에도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등 다양한 SNS를 정책홍보에 적극 적용
 - 스마트폰 확산에 발맞춰 선도적으로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 및 모바일 웹 개발로 여론의 관심 유도 및 홍보효과 제고에 노력

- 주요 정책에 대한 각 부처의 기획홍보 역량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으며, 기관장 중심의 창의적·능동적 대국민 소통을 통해 정책 소구력 제고에 기여
 - 반기별 정책홍보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을 통해 각 부처의 정책홍보 기획역량과 전문성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평가
 - 정책현장 방문, 방송 프로그램 출연, 개인 트위터 활용 등 기관장의 정책홍보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활성화 추세
- 그러나 주요 정책 홍보 추진시 민간 홍보협업체를 적극 활용하여 홍보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노력과 정책 특성을 감안한 홍보 콘텐츠 구성 및 활용 노력은 전반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
 - 홍보전략 수립부터 평가단계까지 민간전문가, 관련 민간단체, 유관기관 등과의 의견수렴 및 협력홍보가 긴요하나 대체로 소극적·형식적으로 협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내실화가 필요함
 - 일방적 정책정보 전달 위주의 홍보책자 발간 등 공급자 중심의 홍보콘텐츠 제작·배포는 향후 개선해야 할 점으로 평가

□ 기관별 평가결과

평가결과	기관명(직제순)
최우수 (2)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우수 (6)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국민권익위원회
	관세청, 소방방재청, 중소기업청
보통 (23)	기획재정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가보훈처, 국세청, 조달청, 통계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미흡 (8)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법제처, 대검찰청, 병무청, 기상청

단계별 평가결과

기획 단계

- 주요정책 홍보계획의 충실성
 - 주요정책 홍보계획 수립시 상황분석과 단계별 홍보프로그램을 충실하게 구성하고, '국격 제고' 등 범정부 아젠다에 대한 홍보 협력 등을 적극 추진 (우수 : 국토부, 공정위 등)
 - '상조업 소비자 피해 예방' 홍보 : 문제점 분석이 구체적이고, 홍보목표와 연계된 구체 홍보프로그램 아이디어도 창의적(공정위)
 - 정책 홍보목표와 전략간 연계성이 구체화되지 못하고, 범정부적 홍보기획 과정에서 부처간 협력이나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한 사례도 있음 (미흡 : 방통위, 문화부 등)
 - 'T20 관광장관회의'의 경우 구체적 상황분석이 부족하고, 정책 타겟별 전략과 프로그램이 구체화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평가(문화부)
- 범부처 홍보계획과의 연계
 - 주요정책 발표일정 조정·공유 등을 위한 월간홍보계획 수립시, 주요 발표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등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작성함으로써 범부처 홍보계획과 연계되도록 적극 협조(우수 : 복지부, 환경부, 산림청, 방재청 등)
 - 일부 부처는 월간홍보계획에서 주요 발표사항이 누락되는 사례가 많았고, 세부 홍보계획이 구체화되지 못해 범부처 홍보계획과 연계되는데 한계 (미흡 : 국방부, 지경부, 대검찰청, 병무청, 보훈처 등)
 - '여성 ROTC 선발계획' 등 주요 관심 이슈에 대한 보도계획을 누락하였고, '한국군 특전부대 UAE 파견' 등 쟁점 이슈에 대한 사전 조율이 미흡(국방부)
- 홍보협업체 활용도
 - 주요 정책·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홍보협업체를 구성, 대내외 의견수렴 창구로 적극 활용하여 홍보 성과를 제고하기도 함 (우수 : 여가부, 산림청 등)
 -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홍보를 위해 매주 홍보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결혼이민자 등으로 구성된 모니터단을 통해 정책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여가부)

- 홍보협의체 활용내용이나 진행과정, 역할 등이 제시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미흡 : 외교부, 금융위, 기상청 등)
 - 특히, 정책홍보를 일방향 소통으로 인식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사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전반적으로 부족
 - '마드리드클럽 서울 원로정상회의' 홍보시, 외교부-브랜드위-마드리드클럽 간 홍보협의체를 구성하였지만 민관 협력보다는 일방적 홍보에 의존(외교부)

활동 단계

□ 뉴미디어 홍보 활용도

- 기존 정책블로그의 안정적 운영 외에도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적극 도입, 다양한 대국민 직접 홍보 활동을 전개 (우수 : 통일부, 통계청, 공정위 등)
 -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의 채널을 각 특성에 맞게 운영함으로써 시너지 효과 거양 및 부처 이미지 제고(통일부)
- 일부 부처는 뉴미디어 홍보 전략 및 비전이 부족하고, 타겟이 불분명한 홍보활동을 전개, 홍보 효과 저조
 - 트위터 등 SNS 운영시 블로그 콘텐츠의 일방적인 전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매체 특성을 고려한 운영기법 모색 필요

□ 대안론 브리핑 충실도

- 대체로 e-브리핑 시스템을 활용하여 시스템에 기반한 브리핑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보도 및 해명 자료, 사진자료 등 취재지원 서비스도 내실화 추세 (우수 : 방통위, 산림청, 중기청 등)
 - 브리핑 시스템 도입 이후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브리핑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정책브리핑에 대한 기자들의 조회 건수도 증가(방통위)
 - 대부분 기관이 브리핑 중계 장비를 갖추면서 브리핑이 양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브리핑 품질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됨
- 기자들은 대체로 각 부처의 취재지원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온라인 매체에 대한 취재지원 확대를 요구
 - 상주 기자와 온라인 취재기자에게 보도자료를 동시에 제공하고, 비공개 브리핑은 e-브리핑을 활용한 실시간 방송으로 전환 필요

□ 외신대상 홍보활동 수준

- 외신 대상 공식·비공식 접촉기회 확대를 통한 홍보네트워크 구축, 재외공관 활용 등 적극적·선제적 홍보 추진 (우수 : 기재부, 외교부 등)
- 일부 부처는 외신홍보 목표·전략·활동과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기획홍보가 아닌 일회성 홍보에 그침 (미흡 : 국토부, 과과부 등)
- 문화·환경·교육 등 외신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해 내는 자발적 노력과 함께 외신홍보 노하우 및 소스 공유 필요

□ 홍보콘텐츠 활용도

- 스마트폰 이용 확산에 따른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 및 웹페이지 개발·제공으로 정책정보 콘텐츠 확산 및 정보 접근성, 정책 이해도 제고에 노력 (우수 : 기재부, 법무부 등)
 - 공공부문에서 초기 '시사경제용어사전'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보급해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주목을 받음(기재부)

성과 단계

□ 주요정책 기획홍보 성과

- 적절한 사전 환경분석 및 충실한 기획, 홍보환경에 맞는 다양한 홍보수단 선택, 창의적 홍보기법 개발 등 참신한 아이디어와 다양한 홍보기법 적극 활용 (우수 : 농식품부, 권익위, 관세청, 방재청 등)
 - 정책 입안 초기부터 정책과 홍보의 결합을 통해 정책효과 제고
 - '원산지표시제' 관련 모바일 앱, 파워블로거, 만화 등 청년층에 특화된 홍보를 시도, 흥미·관심 유발이 어려운 농식품산업의 가능성과 호응도 증대에 기여(농식품부)
- 일반적이고 정형화된 홍보에 치중하는 등 참신하고 전략적인 홍보기획이 부족한 사례도 있음 (미흡 : 대검찰청, 외교부, 조달청 등)

□ 정책기사 반영도

- '09년 대비 다양한 매체 활용은 물론, 스토리텔링 기사 외에 인터뷰·기고 등 다양한 형태의 정책기사 통해 보도 효과성 제고
 - 특히 집행기관들이 미디어 믹스와 보도자료 구성력으로 언론 교섭력 등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돋보임
 - 다만, 단순 전달방식의 보도자료가 여전히 다수이므로 핵심 메시지나 키워드를 언론이 인용·보도하도록 작성방식 개선 필요
- 정책의 메시지가 효과적으로 구성되고 매체 활용의 적정성과 전달력 등이 우수한 경우, 언론 반영도가 높았음 (우수 : 공정위,
 - 다양한 매체와 기사 형태로 관심을 유도(공정위)
- 일부 부처는 절대적 보도량 부족과 함께 다양한 매체 활용과 적절한 배분이 잘 이뤄지지 않았고, 핵심 메시지 반영도 부족한 것으로 분석됨 (미흡 : 환경부, 법제처 등)

□ 기관장 홍보활동 수준

- 39개 부처 기관장 등이 총 4,829건의 방송출연, 인터뷰, 기고, 설명회, 강연회, 간담회, 뉴미디어 홍보 등 홍보활동 전개

〈활동유형별 기관장 홍보실적〉

방송출연	인터뷰	기고	정책설명회	강연회	간담회	뉴미디어 홍보	계
286	657	238	673	613	476	1,886	4,829

- 장관급 기관(부·위원회)의 실적(3,099건)이 차관급 기관(처·청)의 실적(1,730건)보다 많은 것으로 분석, 차관급 기관의 홍보 활동 활성화 필요
- 또한, 부처간 격차가 큰 점을 감안, 실적이 저조한 기관은 기관별 특성에 맞게 정책홍보 활동 강화 필요
 - 우수 : 농식품부(1,196건), 환경부(240건), 방재청(508건), 중기청(331건)
 - 미흡 : 대검찰청·병무청(0건), 법제처·문화재청(7건)
- 정책홍보 관련 인터뷰·기고 등 일반적인 홍보활동 이외에 기관장 현정방문 및 개인 트위터 활용 사례 등이 돋보였으나, 기관장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상존
 - 딱딱하고 권위적인 기관 이미지 쇄신을 위해 기관장의 언론 노출, 캐리커처 활용, 기관장 개인 트위터 활용 등 젊고 감성적인 홍보전략 활용(법무부)

3 개선·보완 사항

□ 맞춤형 홍보전략 수립으로 대국민 정책소통 강화 필요

- 부처별 특성에 맞는 홍보계획 수립을 유도함으로써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지지도 및 체감도 제고
 - 특히, 민간전문가 등이 포함한 협의체를 홍보기획 단계부터 내실있게 활용함으로써 홍보효과 극대화 노력 필요
- 정책단계별·정책수요자별 특화된 홍보매체 선별 및 홍보메시지를 설정하고 홍보콘텐츠도 차별화하여 홍보 효과성 극대화 도모
- 부처별 역할분담 및 협력홍보를 통해 효과적인 정책홍보를 추진, 국정성과에 대한 지지 확산

□ 정책홍보에 대한 기관장의 지속적인 관심 제고

- 정책홍보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과 정책홍보 성과가 선순환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기관장이 정책현장을 직접 방문·설명함으로써 정책체감도를 제고하고, SNS 등 뉴미디어 홍보기법 적극 활용

□ 정책홍보 환경 변화에 따른 홍보기법 다양화 노력

- 트렌드에 따른 친편일률적인 뉴미디어 적용 보다는 각 부처 또는 정책 특성에 따른 전략적 뉴미디어 활용 방안 모색 필요
 -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활용에 있어 각 매체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매체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 대응
 - 모바일 앱의 경우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발하고, 비용 대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처별 공동개발 등 전략적 협조 방안 모색
- 기관별 홍보 노하우나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논의의 장 활성화 및 시스템 구축

6. 규제개혁

1 규제개혁 부문 평가개요

□ 평가 목적

- 각 중앙행정기관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규제개혁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추진노력 및 성과에 대해 평가

□ 평가 방향

- '국민생활 불편 규제 정비노력', '규제개혁 성과 홍보' 및 '제2단계 규제일몰제 적용' 등 금년도 중점 과제에 대한 평가를 강화
- 양적 규제정비 실적 외에 질적인 규제개혁 노력에 대한 평가 강화
 - 개별 규제의 정비실적 외에 복합적 규제 개혁과제(전략과제) 추진 노력·성과에 대한 평가 실시

□ 평가대상 기관 : 등록규제가 6개 이상인 31개 중앙행정기관

- 부 단위(18개)와 청 단위(13개) 기관별로 등록규제의 수를 기준으로 그룹핑하여 평가의 신뢰성 제고

구분	기관명	
부단위 (16)	I 그룹 : 5개 부처 (등록규제수 120개미만)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II 그룹 : 7개 부처 (등록규제수 120개이상~400개 미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환경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III 그룹 : 6개 부처 (등록규제수 400개이상)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청단위 (10)	I 그룹 : 7개 부처 (등록규제수 50개미만)	국세청, 관세청, 기상청, 문화재청, 특허청, 농촌진흥청, 해양경찰청
	II 그룹 : 6개 부처 (등록규제수 50개이상)	국가보훈처, 경찰청, 소방방재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식약청

• 등록규제가 5개 이하인 9개 기관(국무총리실,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검찰청, 조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통계청, 병무청, 방위사업청)은 제외

□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계획 (20, +2)	1. 추진기반의 적실성(20, +2)	1-1. 규제개혁 추진역량(8)
		1-2. 규제개혁 과제발굴의 적극성(12, +2)
집행 (30)	2. 시행의 적정성(30)	2-1. 신설·강화 규제의 적절성(20)
		2-2. 홍보와 의견수렴의 적극성(10)
산출/결과 (50, +2)	3. 규제개혁 성과(30, +2)	3-1. 규제개혁과제 이행실적(15, +2)
		3-2. 규제개혁 효과(15)
	4. 규제개혁 만족도(20)	4-1. 규제개혁만족도(20)

□ 평가방법

- 규제개혁추진에 수요자의 입장을 반영하고, 평가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관합동 규제개혁 평가단」을 구성·운영(총 10명)
- 평가지표의 특성에 따라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병행
 - 규제개혁과제 발굴 등 정량적 항목은 평가산식에 따라 점수 산출
 - 규제개혁 효과, 규제심사지침 준수 등 정성적 항목은 규제개혁평가단 및 규제개혁실에서 평가 실시
 - 고객만족도 및 규제영향분석의 충실성에 대한 평가는 전문연구기관(리서치 기관, 한국행정연구원)을 활용

2] 규제개혁 부문 평가결과

□ '10년의 규제개혁의 방향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및 미래성장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어 추진

- 관광·방송통신 등 서비스산업, 국토·환경 관련 규제를 포함, 총 1,375개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여 '10.10월말 기준으로 838개 과제를 완료(계획 969개 대비 86.5%)
- 중소기업 애로해소*, 농산어촌 현장애로 개선** 등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개선 중점 추진
 - *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 개선 등 14개 과제 개선 추진('10.5)
 - ** 농업·농촌, 수산·어촌, 식품, 산림의 4개 분야 100개 과제 개선안 마련('10.6)
 - 또한 정부·공공기관 등의 채용·승진상의 학력규제를 발굴·개선하는 등 불합리한 진입규제 정비
 - 공공부문 인사운용상의 학력규제 287개 과제에 대한 개선안 마련('10.7)

□ 일몰제 확대 적용 등을 통해 선진 규제개혁기반 구축

- 일정주기로 규제내용을 재검토하는 일몰제를 확대 도입하여 규제의 타당성 및 현실 적합성 제고
 - 일몰적용 검토대상 규제 4,692건중 1,044건(22.3%)에 대해 일몰 설정('10.6)
- 각 부처 자체규제심사 지원 기능 신설 등 규제정보화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신설·강화규제 심사의 투명성 및 편의성 제고

- 그러나, 일부 부처는 규제개혁과제 발굴, 홍보 및 의견수렴 등이 소극적이고, 자체규제개혁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또한 사후 정책환경변화, 관련기관 협의미흡 등으로 법령 개정이 지연되는 등 규제개혁 과제의 이행이 미진한 경우도 나타남
- 평가지표별로는, 계획단계의 '규제개혁과제 발굴의 적극성' 등의 실적은 양호한 편이나,
 - 집행단계의 '규제개혁과제 홍보의 적극성', 산출-결과단계의 '규제개혁의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기관별 평가결과
 - 기관별로는 부 단위 기관은 평균 66.4점, 청 단위 기관은 평균 66.9점으로 청 단위 기관이 근소하게 높게 나타남

평가결과	기관명<직제순>
최우수 (2)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우수 (5)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관세청, 산림청
보통 (17)	교육과학기술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해양경찰청
미흡 (7)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
	국가보훈처, 농촌진흥청, 기상청

단계별 평가결과

계획 단계

① 추진기반의 적실성

- 규제개혁 추진역량과 규제개혁 과제발굴의 적극성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해 '10년에 정비할 1,375개 과제를 발굴
 - 규제개혁과제 발굴은 당초 계획에서 경제단체, 지자체 등으로부터 건의를 받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과제가 누적으로 증가
 - '10.2월 : 1,073개 → 6월 : 1,310개(237개 ↑) → 10월 1,375개(65개 ↑)
 - 각 부처별로 현장 의견수렴, 내부 토론 및 각종 간담회 등 충실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과제 발굴
 - 특히, 각 부처별로 국민생활 불편사항 점검 TF를 구성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규정)를 발굴·정비 추진
 - 대통령께서 "서민생활에 불편이 되는 규정(규제)이 무엇이 있는지 일제히 점검"할 것을 지시('10.9월)함에 따라 10월 현재 각 부처가 500여건의 과제를 발굴
 - 다만, 일부 부처의 경우 등록규제 수 대비 과제발굴 실적이 전혀 없는 등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필요
 - 기관별로는 입지·환경규제는 물론 각종 진입규제 개선 등 다양한 과제를 발굴한 보건복지부, 환경부, 중소기업청, 식품의약품안전청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농촌진흥청 및 국가보훈처 등은 규제개혁 과제 발굴 등이 상대적으로 미흡

집행 단계

② 시행의 적정성

- 신설·강화규제의 적절성
 -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형성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시행
 - 규제개혁위원회는 812건의 신설·강화 규제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260건의 중요규제 중 110건(42.3%)에 대해 철회·개선 권고('10.10말 기준)

주요 사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국토해양부)

- 버스운전자격 부여와 관련, 시험합격 후 일정한 교육을 받도록 한 규정에 대해 규제의 실효성 등을 이유로 철회하도록 권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법무부)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시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영치의 대상이 되는 범위(위반회수, 체납 누적금액 등)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개선권고

- 전 부처별로 대체로 규제개혁위원회 철회·개선권고 등은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다만,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관세청 등 일부 부처의 경우 자체규제개혁위원회의 대면회의 비율이 극히 저조하고,
 - 외교통상부, 금융위원회, 국기보호처 등 일부 부처는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시 규제 대안분석 및 비용·편익 분석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

□ 홍보와 의견수렴의 적극성

- 각 부처에서는 주요 규제개혁 과제 발표 및 법령 입안단계에서부터 보도자료 배포 및 브리핑 등을 통해 적극 홍보
- 특히, 다양한 규제개혁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 등으로 일반국민 등의 체감도가 낮은 문제점 등을 반영하여,
 - 현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부처별 홍보 및 일선공무원 교육방안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홍보 추진

주요 사례

• 스마트폰 등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법아! 놀자' 앱(APP)에 시민관련 규제개혁사례 등 적극 홍보(법무부)

• 고용지원, 산업안전 등 각 부문별 추진성과에 대해 전광판, 일선기관 내 Digital TV,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고용노동부)

• 지방청별 '규제개혁단'을 중심으로 수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산주·입업인, 지역주민 등 수요자 의견수렴 강화(산림청)

- 다만, 일부 부처에서는 홍보 및 의견수렴이 형식적으로 추진되거나 보도자료 배포 등 일방적인 홍보에 그치는 문제 발생
- 기관별로는 충실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및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추진한 농림수산물부, 고용노동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외교통상부, 국방부, 문화재청, 해양경찰청 등은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의견수렴 및 홍보 등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

산출·결과 단계

① 규제개혁 성과

□ 규제개혁과제 이행실적과 효과

- '10.10월 완료대상과제 969건('10년도 규제개혁과제 총 1,375개)중 838개 과제(86.5%, 조기완료 170건 포함)를 완료하였으며,
 - 기업투자환경 개선, 국민부담경감 분야의 주요 과제들을 충실히 이행

주요 사례

주요 과제	조치 사항	주요 성과
① 투자활성화 및 미래대비		
대규모 단일공장 개발행위허가 제한 완화(국토해양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10.4)	대규모 단일공장 등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없이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민간투자 촉진
대기배출허용 특례기준 적용 확대(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10.4)	폐수처리수준이 수질환경기준을 충족할 경우 자연보전권역내 공장입지 제한 완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충전시 전기요금 반영방안 마련(지식경제부)	전기공급약관 개정('10.8)	관련 제도의 선제적 정비로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기여

주요 사례

주요 과제	조치 사항	주요 성과
2 국민부담 경감		
자동차 인터넷 등록제 시행 (국토해양부)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10.6)	자동차 등록업무의 온라인 처리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편익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
국유림 사용료 조정제도 개선(산림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0.7)	국유림 사용료 증가에 대한 상한선(9%)를 설정하여 국유림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3 시민 취약계층 및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한 규정 완화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업평가운용 지침 개정('10.2)	재무·수익성은 취약하나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지원 확대 * '10.9월말 기준 기술사업성전용자금을 통해 592개 업체, 1,956억원 지원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확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10.8)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양질의 일자리 확산 및 국민 노후소득보장 증진에 기여 * 단시간 근로자 5만여명 가입 확대 효과

- 다만, 일부 과제의 경우 관련 기관 협의지연, 상위법 개정 지연 등으로 계획 대비 추진이 지연
 - '축산물 소분(분할) 판매허용' 등의 과제는 상위법의 국회 심의 지연으로 추진 지연(당초 10월 완료 계획이었으나, 현재 법제심사중)
 - 또한, 사후 정책환경 변화, 정책내용 변경 등으로 지연되거나 추진이 중단된 과제들도 일부 존재
 - '전자게시대 설치근거 신설'은 도시미관·교통안전상의 문제점 지적 등으로 추진 지연(당초 6월 완료 계획이었으나, 현재 공청회 등 여론수렴중)
 - '간호조무사 자격교육 이수일수 완화'는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중단
- '09년 경제적 규제에 대한 1단계 검토에 이어, 사회·행정적 규제에 대한 2단계 일몰 확대 적용 실시('10.6월)
 - 일정주기(원칙3년)로 변화된 상황에 맞게 규제내용을 재검토·재설계
 - 각 부처 자체검토 및 총리실 재검토 등을 거쳐 총 4,692건중 1,044건(22.3%)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
 - 부처별로는 국토해양부(33.5%), 방송통신위원회(32.6%), 식품의약품안전청(100.0%), 경찰청(31.9%) 등이 1/3 이상의 규제에 대해 일몰 적용
 - 일몰적용 건수는 국토해양부(362건), 환경부(100건), 식품의약품안전청(100건) 등
- 기관별로는 법무부, 국토해양부, 관세청, 중소기업청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기상청, 해양경찰청 등은 규제개혁과제 이행률과 규제개혁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미흡

② 규제개혁만족도

- '10년도 규제개혁 만족도는 66.4점으로 어느 정도 만족한 수준*
 - 보통(50점)과 약간만족(66.67점)사이
 - '09년 조사결과(64.1점) 대비 2.3점 상승하였으며, 일반국민(1.9점 상승), 전문가(4.2점 상승) 집단의 만족도가 크게 상승
- 조사대상별로는 전문가의 만족도가 70.7점으로 일반국민(64.8점), 내부고객(63.9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조사대상별 연도별 만족도 조사결과 >

구분	일반인				전문가				내부고객				종합			
	'08	'09	'10	증감	'08	'09	'10	증감	'08	'09	'10	증감	'08	'09	'10	증감
전체	59.5	62.9	64.8	↑1.9	66.3	66.5	70.7	↑4.2	60.7	63.6	63.9	↑0.3	61.9	64.1	66.4	↑2.3

- 항목별로는 규제의 내용에 대한 만족도(68.8점)가 가장 높게 나온 반면,
 - 기간간 업무협조, 의견 수렴, 정책집행 신속성 등 규제과정에 대한 만족도(64.5점)와 규제성과 만족도(64.5점)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전년도와 유사한 결과

* '09년도 조사결과 : 규제내용 67.0점, 규제과정 62.5점, 규제성과 63.1점

- 기관별로는 교육과학기술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관세청, 병무청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기획재정부, 보건복지가족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문화재청, 국가보훈처 등은 상대적으로 미흡

③ 개선·보완 사항

- 규제개혁 가속화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개선 노력 강화
 -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규제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해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국민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규제 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
 - 또한 규제개혁 과제가 적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 이행노력 강화
-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통한 체감도 제고
 - 규제개혁 추진과정에서 일반국민, 경제단체 등 규제개혁 수요자에 대한 의견수렴 강화
 - 제도개선이 기 완료된 규제개혁 과제에 대한 현장 집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규제개혁 이행 성과 확산
 - 제도개선 사항과 그에 따른 성과를 국민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추진
 - 그동안의 주요 규제개혁 성과와 추진노력을 종합 정리하여뉴미디어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홍보 필요
- 신설·강화 규제 품질제고 노력 강화
 - 부처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대면회의의 비율 제고, 규제영향분석 내실화, 관련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신설·강화 규제 적절성 제고

7. 정책 및 민원만족도

① 국민만족도(정책·민원) 부문 평가개요

- 평가목적
 - 정부 정책의 최종 고객인 국민이 직접 평가한 만족도 결과를 반영·활용하여 민의에 입각한 정책 추진 도모
 - 중앙행정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대국민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유도
- 평가대상기관(39개)

구분	기관명
부단위 기관 (19)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청단위 기관 (20)	법제처, 국가보훈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대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해양경찰청

- 조사표본 및 평가대상기간
 - 정책만족도

조사대상자	모집단	표본	평가 대상기간
일반 국민	전국의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제주도 및 도서지방 제외)	총 3,900명 (13개 책형 × 300명)	'10.1.1~9.30
전문가	기관별 ①자세평가위원, ②정책고객(PCRM DB)중 교수·연구원, ③자문위원, ④관련분야 전공 교수와 학회·연구단체 종사자	총 1,710명 (38개 기관 × 45명)	

-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선정된 핵심과제 95개(부단위 3, 청단위 2)에 대해 일반국민과 전문가를 동일하게 조사

○ 민원만족도

조사 대상자	모집단	표 본	평가 대상기간
일반 국민	중앙행정기관 본청 및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민원접수대장에 기록된 민원인(방문·우편·전화)	일반민원 및 인터넷민원 모집단 구성 비율에 비례하여 각 기관별로 표본(250명 이상)을 추출하여 총 24,149명 대상으로 조사	'10.1.1~9.30
전문가	국민신문고, 중앙행정기관 본청 및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신청한 민원인		

* 민원만족도의 경우 상반기(1~3월), 하반기(4~9월) 등 2회 설문조사

□ 평가방법

- 설문조사는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한국행정연구원(민간 전문조사기관)에 위탁 실시
- 각 설문항목에 대하여 응답자의 만족도를 11점 리커트 척도에 따라 응답케 하고, 그 결과를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세부 설문내용)
항목 만족도 (70%)	민주성	• 정책수립·집행과정에서 고객의 의견수렴 및 공개와 소통을 통한 정책 협조노력 정도
	적정성	• 전략목표, 성과목표, 정책수단 등 정책의 구체적 내용이 적정하게 설정된 정도
	대응성	• 정책추진 과정에서 정책환경의 변화를 극복하고 문제점을 시정·보완하기 위해 노력한 정도
	효과성	• 정책이 당초에 의도한 계량 및 비계량적 성과가 실제로 나타난 정도
체감만족도 (30%)		• 해당정책 전반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총체적 만족도

○ 민원만족도

평가항목		평가지표(세부 설문내용)
항목 만족도 (70%)	민주성	• (인터넷민원) 민원신청시 인터넷 홈페이지 접근과 서식 입력이 간편한 정도
		• (일반민원) 민원담당 공무원과의 면담·통화와 서식 작성이 쉽고 간편한 정도
	대응성	• (인터넷·일반민원) 민원담당 공무원이 관련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한 정도
		• (인터넷민원) 인터넷 민원시스템에서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쉽게 알 수 있는 정도
효과성	• (일반민원) 민원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고 정중하게 민원인을 응대할 정도	
체감만족도 (30%)		• (인터넷·일반민원) 해당 민원서비스 전반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총체적 만족도

2 정책만족도 평가 결과

총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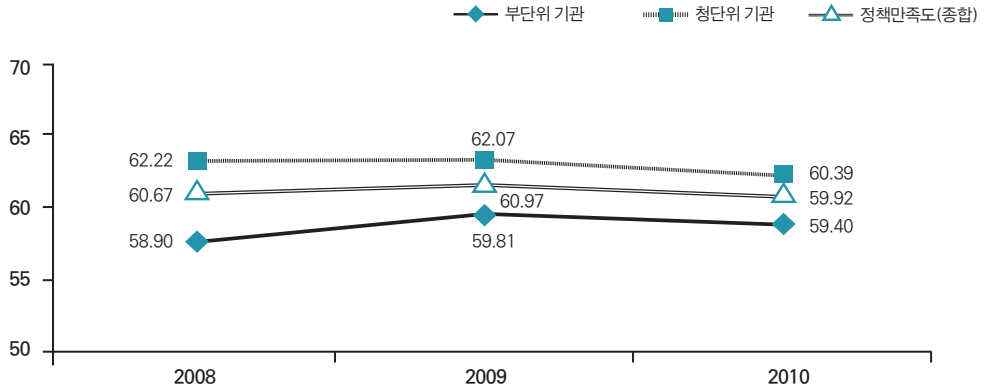
- 2010년도 39개 중앙행정기관(95개 핵심과제) 정책만족도 평균은 59.92점으로 나타남
 - 부 단위 기관의 정책만족도 평균은 59.40점이며, 청 단위 기관은 60.39점
 - 청 단위 기관의 정책만족도 수준이 부 단위 기관에 비해 0.99점 높음
- 2009년까지 정책만족도의 상승세가 지속 되었으나, 금년도는 전년 대비 일반국민과 전문가 만족도가 소폭 하락함으로써 상승세가 다소 주춤하는 양상

○ 최근 3년간 정책만족도 추이 : '08) 60.67 → '09) 60.97 → '10) 59.92점

- 부 단위 기관 : '08) 58.90 → '09) 59.81 → '10) 59.40점

- 청 단위 기관 : '08) 62.22 → '09) 62.07 → '10) 60.39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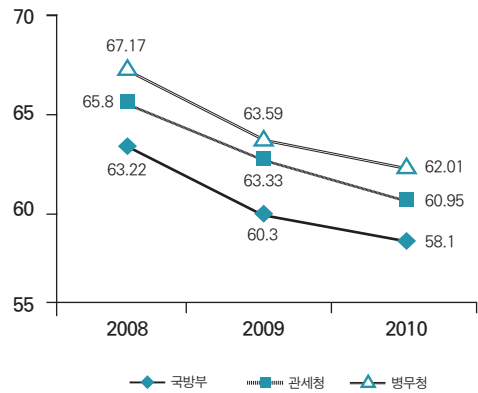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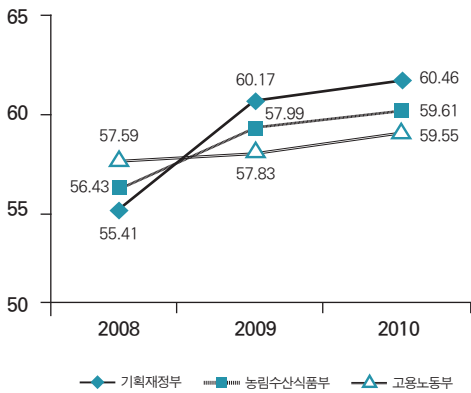
* 일반국민은 55.84점으로 2009년(56.66) 대비 0.82점 하락, 전문가는 69.06점으로 2009년(70.47) 대비 1.41점 하락



□ 또한, 최근 3년간 기관별 정책만족도 추이 분석결과

○ 지속적 상승 기관은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4개 기관이고

○ 지속적 하락 기관은 법무부, 국방부, 법제처, 관세청 등 13개 기관임



□ 한편, 조사항목별로 정책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 일반국민은 정책목표·수단의 '적정성'을, 전문가는 정책수립 과정에서의 의견수렴 등 '민주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

○ 반면,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정책의 '효과성'을 낮게 평가

* 일반국민 : 적정성(56.68) > 민주성(56.60) > 대응성(56.00) > 효과성(55.36)

* 전문가 : 민주성(69.40) > 적정성(67.75) > 대응성(67.62) > 효과성(67.08)

기관별 평가결과

부단위 기관

- 부 단위 19개 기관, 57개 핵심과제의 정책만족도 평균은 59.40점으로 나타남
 - 방송통신위원회가 63.60점(일반국민 59.51점, 전문가 71.25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임
 - 안전한 사이버 세상 구현(64.72), 방송통신 서비스 활성화 기반구축(62.44), 통신서비스의 경쟁촉진(62.15) 등 핵심과제 모두 높게 평가
 - 반면, 보건복지부는 56.60점(일반국민 57.15점, 전문가 55.31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임
 - 보건의료산업의 신성장 동력 육성(53.54),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효율성 제고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56.62), 지속발전을 위한 출산장려 추진(59.63) 등 과제 모두 대체로 낮게 평가

< 정책만족도 부 단위 기관 평가결과 >

평가결과	기관명<직제순>
상위 (4)	행정안전부, 환경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보통 (11)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하위 (4)	법무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

청단위 기관

- 청 단위 20개 기관, 39개 핵심과제에 대한 정책만족도 평균은 60.39점으로 나타남
 - 통계청이 68.65점(일반국민 63.42점, 전문가 76.90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임
 - 인구주택 총조사 등 대규모 통계조사의 효율적 실시(68.65) 과제가 청 단위 39개 핵심과제 중 가장 높은 평가
 - 반면, 방위사업청은 53.79점(일반국민 48.83점, 전문가 65.34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임
 - 최첨단 무기기술개발 및 수출지원 확대(52.50), 획득업무 선진화를 위한 국방계약체계 개선(54.65) 등의 과제에서 모두 낮은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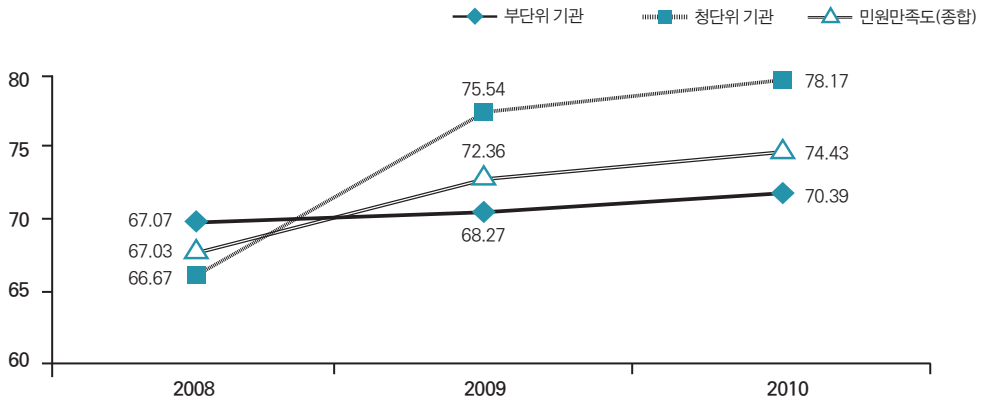
< 정책만족도 청 단위 기관 평가결과 >

평가결과	기관명<직제순>
상위 (4)	통계청, 소방방재청, 농촌진흥청, 해양경찰청
보통 (11)	법제처, 국가보훈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병무청, 경찰청, 문화재청, 산림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상청
하위 (4)	대검찰청, 방위사업청, 중소기업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③ 민원만족도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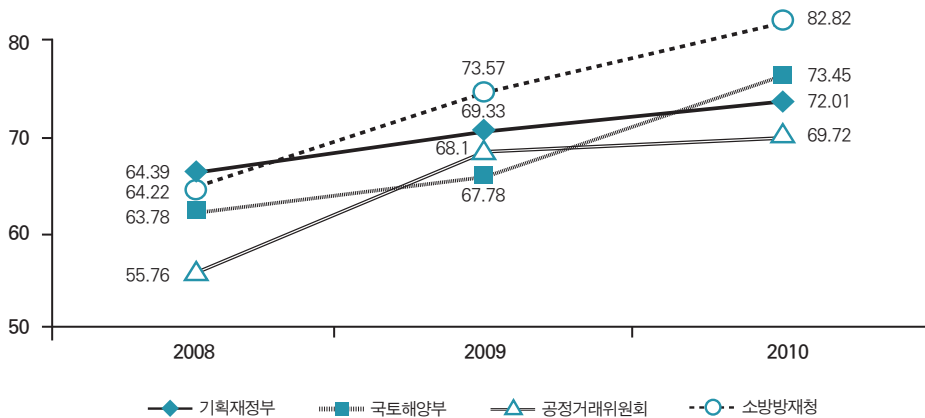
총평

- 2010년도 39개 중앙행정기관 민원만족도 평균은 74.43점으로 나타남
 - 부 단위 기관의 민원만족도 평균은 70.39점이며, 청 단위 기관은 78.17점
 - 청 단위 기관의 만족도 수준이 부 단위 기관에 비해 7.78점 높음
 - 민원종류별로는 일반민원과 인터넷민원 모두 동반 상승하였고, 특히 일반민원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더 큰 것으로 분석
 - 일반민원 만족도가 76.14점으로 2009년(73.22) 대비 2.92점 상승, 인터넷민원 만족도는 73.56점으로 2009년(71.53) 대비 2.03점 상승
- 한편, 민원만족도 평가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
 - 최근 3년간 민원만족도 추이 : '08) 67.03 → '09) 72.36 → '10) 74.43점
 - 부 단위 기관 : '08) 67.07 → '09) 68.27 → '10) 70.39점
 - 청 단위 기관 : '08) 66.67 → '09) 75.54 → '10) 78.17점



□ 또한, 최근 3년간 기관별 민원만족도 추이 분석결과

○ 지속적 상승 기관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22개 기관임(지속 하락 기관은 없음)



□ 한편, 조사항목별로 민원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 일반민원에서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도 등 '대응성' 항목이, 인터넷민원에서는 홈페이지 '접근성' 항목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
- 반면, 일반민원과 인터넷민원 모두 민원처리 결과의 '공정성' 항목에서 낮게 평가
 - 일반민원 : 대응성(80.34) > 접근성(78.35) > 신속성(77.25) > 공정성(55.36)
 - 인터넷민원 : 접근성(78.06) > 신속성(75.07) > 대응성(74.98) > 공정성(71.00)

기관별 평가결과

부단위 기관

- 부 단위 19개 기관 민원만족도 평균은 70.39점으로 나타남
 - 행정안전부가 84.08점(일반민원 69.32점, 인터넷민원 84.54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임
 - 인터넷민원의 '접근성'(85.34점), '신속성'(87.56점), '대응성'(87.72점) 항목 등이 평균보다 높아 전체 만족도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
 - 반면, 금융위원회는 58.40점(일반민원 71.03점, 인터넷민원 56.64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임
 - 일반민원 '공정성'(63.40)과 인터넷민원 '공정성'(43.53점) 등의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어 저조한 결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

평가결과	기관명<직제순>
상위 (4)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보통 (11)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하위 (4)	국방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청 단위 기관

< 민원만족도 부 단위 기관 평가결과 >

- 청 단위 20개 기관 민원만족도 평균은 78.17점으로 나타남
 - 해양경찰청이 85.90점(일반민원 88.43점, 인터넷민원 77.51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임
 - 일반민원의 '대응성'(91.53점), 인터넷민원의 '접근성'(85.07점) 항목 등이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아 전체 만족도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
 - 반면, 대검찰청은 59.69점(일반민원 59.54점, 인터넷민원 60.72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임
 - 일반민원 '공정성'(47.53점)과 인터넷민원 '공정성'(50.91점) 등의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어 저조한 결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

< 민원만족도 청 단위 기관 평가결과 >

평가결과	기관명<직제순>
상위 (4)	관세청,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해양경찰청
보통 (12)	국가보훈처,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산림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하위 (4)	법제처, 국세청, 대검찰청, 문화재청

Ⅲ. 향후 계획

□ 평가결과 환류, 개선조치

- 평가결과 종합 및 각 과제별 · 기관별 평가보고서를 환류시켜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는 등 정책 개선에 활용토록 조치
 - 내년도 업무보고 분기별 점검시 평가결과 반영 여부를 함께 점검
- 우수사례는 각 부처에서 상호 학습 및 벤치마킹하고
- 미흡사례에 대해서는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 · 추진
 - 미흡사례 중 심층 분석이 필요한 과제는 총리실에서 수시 현안과제로 선정, 개선 대안 마련

□ 평가방법 발전 방안 마련

- 이번 평가과정 · 결과에 대한 평가주체·피평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도 평가제도 개선에 반영
- 정책 부문의 경우 '과제' 중심 평가의 확대방안 및 분과 세분화 방안 등 연구
- 평가지표 구체화 방안 및 결과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통계기법 활용 등에 대한 방안 모색

2011년 특정평가 결과 보고서

I. 평가개요

□ 평가 목적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주요정책 및 관리역량을 평가함으로써 국정운영의 책임성 제고 및 국정성과 창출

□ 평가 대상기관 : 38개 중앙행정기관

- 장관급(19) : 15부, 4위원회(방송통신위·공정거래위·금융위·국민권익위)
- 차관급(19) : 17청, 2처(법제처·보훈처)
 - ※ 총리실, 대검찰청은 제외

□ 평가 부문 : 8개

- ① **핵심과제** : 국정과제 성과 가시화를 위해 중앙행정기관별 대표적 정책과제의 추진노력과 성과를 평가(38개 기관)
- ② **녹색성장 과제** : 녹색성장정책 체감도 제고,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위해 주요 녹색성장시책의 성과 평가(24개 기관)
- ③ **일자리 창출 과제** : 고용안정을 위한 일자리 대책의 추진노력 및 성과를 평가(11개 기관)
- ④ **서민생활 안정 과제**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친서민 정책과제에 대한 추진노력 및 성과를 평가(14개 기관)
- ⑤ **정책관리 역량** : 중앙행정기관별 주요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정책관리노력 및 성과를 평가(38개 기관)
- ⑥ **정책홍보** : 범정부적 핵심과제에 대한 충실한 홍보계획 수립 및 기관간 협력홍보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39개 기관)
- ⑦ **규제개혁** : 국민부담 완화와 편의제고를 위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추진노력 및 성과를 평가(31개 기관)
- ⑧ **국민(정책 및 민원)만족도** : 고객 위주의 정책추진과 행정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주요정책 및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 평가(39개 기관)

□ 평가 방법

- 평가대상 과제의 중요도·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정책형성·집행·성과 등 정책과정 전반을 평가하되, 정책성과에 중점
-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간전문가(205명) 평가단 구성, 참여 전문가간 상호 검증을 통해 평가 공정성·신뢰성 제고
- 대내외 정책여건에 따른 영향을 평가에 반영하고, 부처 업무설명회를 통해 피평가기관의 업무추진노력 및 성과 등을 설명할 기회 제공
- 평가방식은 평가단이 부처가 제출한 실적자료(10월말 기준)를 토대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병행하고,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확정
- 국민만족도 조사결과를 평가에 반영, 수요자 지향적 평가
 - 국민만족도 조사결과 반영 : 핵심과제, 일자리 창출 과제, 서민생활 안정 과제, 정책홍보, 규제개혁

□ 평가 결과 제시

- 평가결과는 평가 부문별 특성을 반영하여 기관별 등급화
- (절대평가) 일부 기관에 한정되어 추진되는 과제로 각 기관의 추진성과의 수준을 평가하는 2개 부문은 절대평가
 - ①일자리 창출 과제, ②서민생활 안정 과제
 - 절대평가 등급(5) :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 (상대평가) 전 기관 공통사항으로 기관간 우열이 필요한 6개 부문은 상대평가
 - ①핵심과제, ②녹색성장, ③정책관리역량, ④정책홍보, ⑤규제개혁, ⑥국민만족도
 - 상대평가 등급(4) :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II. 부문별 평가 결과

1. 핵심과제

1 평가개요

□ 평가목적

-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정책과제(핵심과제)들에 대한 추진노력 및 성과평가를 통해 정책 추동력을 확보하고 국정성과 창출 유도

□ 평가대상

- 대상기관 : 38개 중앙행정기관

정책단계	소관부처		비고
	장관급(19)	차관급(19)	
경제	I 기재부, 공정위, 금융위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II 농식품부, 지경부, 국토부, 방통위	농진청, 산림청, 중기청, 특허청	
사회문화	교과부, 문화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성가족부	문화재청, 식약청, 기상청	
일반행정	법무부, 행안부, 권익위	법제처, 경찰청, 소방청, 행복청	
외교통일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보훈처, 병무청, 방사청, 해경청	

- 대상과제 : 총 114개 과제(장관급 기관 각 4개, 차관급 기관 각 2개)

□ 평가방법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 민간전문위원(113명)으로 『핵심과제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
 - 평가의 전문성·객관성 확보 및 국민 시각에서의 평가를 위해 핵심과제별로 해당분야 민간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
 - 효율적인 평가업무 수행을 위해 경제 I·II, 사회문화, 일반행정, 외교통일안보 5개 분야별로 평가분과를 구성·운영
- 평가분과별로 각 부처의 실적자료(10월말 기준)를 토대로 평가지표에 따라 정량·정성평가 병행 실시
 - 부처내 평가대상과제들의 범위 및 비중 등 가중치를 고려
 - 분과별로 '부처업무설명회'를 개최하여 쟁점에 대한 토론과 피평가기관의 설명기회 제공

□ 평가지표

- 정책형성(20) : 정책목표의 적절성(6), 정책수단의 적절성(6), 분석·의견수렴 적절성(8)
- 정책집행(30) : 추진일정 충실성(9), 상황변화 대응성(15),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성(6)
- 정책성과(50) : 정책목표 달성도(25), 정책 효과성(15), 정책 만족도(10)

2 기관별 평가등급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최우수 (2)	공정거래위원회	산림청
우수 (10)	농림수산식품부, 법무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기상청, 관세청, 병무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보통 (20)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법제처, 국가보훈처, 조달청, 통계청, 소방방재청,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미흡 (6)	교육과학기술부,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방위사업청, 문화재청

* 직제순, 굵은 글씨는 포상 대상기관

③ 평가결과

총평

- (여건) '11년도는 유럽 재정위기,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일본 대지진 등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한편,
 - 대내적으로는 물가·전세값 상승,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서민생활 어려움, 대·중소기업 양극화 등에 따라 사회적 형평성 제고요구가 증대
- (성과) 정부는 거시경제 안정, 중소기업 및 서민·취약계층 보호, 미래성장 동력 확충 등을 핵심과제로 추진, 일정부분 성과 가시화
 - 세계 9번째로 무역 1조달러 달성, 통화스왑(중국, 일본) 체결로 외환유동성 확대, 취업자 수 증가 등 고용시장 개선 지속
 - 교육·보육·의료·주거비 경감, 서민금융 지원 등 서민가계 안정화를 위한 복지지출의 적극적 확대, 복지정보 통합관리방안 마련, 사회 복지담당인력 확충 등 복지전달체계 효율화 추진
 -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보증 및 자금지원 확대, 납품단가 조정체계 마련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
 - 4대강 사업의 성과 가시화, 지식재산 보호기반 강화, 정부 R&D 예산 확대, 녹색성장 선도 등 미래대비를 위한 제도 마련 및 투자 확충
 - 적극적인 정상외교로 에너지·자원 확보, 한-EU, 한-미 FTA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ODA 확대 등 국제위상 제고
- (미흡)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 물가상승, 전·월세난, 가계부채, 비정규직문제 등으로 서민·중산층의 정책성과 체감도는 낮은 실정
 - 산사태 피해, 공공시설 내 석면함유물질 발견 등 안전관리 미흡과 정전사태로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국민 불안 야기
 - 의료, 교육 등 핵심 서비스산업 선진화, 금융감독체계, 사립대학 구조조정, 군 지휘구조 개편 등 개혁과제는 이해관계자의 반발로 추진 지연
 - 공직 부정·비리의 잇따른 발생으로 정부 신뢰성 저하 초래

분야별 평가결과

① 경제분야

정책 추진여건 및 중점 추진사항

■ 정책추진여건

- ▷ 유럽 재정위기, 국제원자재·곡물 가격 상승,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지속
- ▷ 가계부채 및 저축은행 문제, 소비 위축, 물가상승 등 대내여건 악화

■ 중점추진사항

- ▷ 경제체질 강화, 재정건전성 증대, 국제경제 리더십 강화, 공공기관 효율화
- ▷ 가계부채, 외환건전성 등 시장불안요인 선제 대응, 금융시스템 선진화 등 건전한 금융환경 구축
- ▷ 정상급 자원의교를 통한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 ▷ 수자원 확보 및 홍수피해 감소,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4대강 사업의 성공적 완수
-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시장진입규제 개선 등 공정거래질서 확립
- ▷ 수출기업 지원체계 구축 및 국제 관세행정 선도

주요 정책성과

- 세계경제 침체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 속에서도 수출과 고용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기재부, 지경부, 고용부)
 - 수출대상국의 경기위축에도 '10. 3월 이후 20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하고 세계 9번째로 무역 1조 달러 달성
 - 경상수지 흑자규모(억 달러): ('11년 1분기)26.1 → (2분기)54.9 → (3분기)69.0 → ('11.10)42.3
 - 무역규모(억 달러): ('08)8,573 → ('09)6,866 → ('10)8,916 → ('11, 추정)10,850

- 적극적인 고용창출 정책을 통해 취업자수 및 고용률이 증가하고, 실업률이 감소하는 등 고용시장의 점진적 개선
 - 취업자 증감(전년동월비, 만명): ('10)32.3 ('11.1/4)42.3 (2/4)40.2 (7)33.5 (8)49.0 (9)26.4 (10)50.1
 - 실업률(%): ('11.3)4.3 → (4)3.7 → (5)3.2 → (6)3.3 → (7)3.3 → (8)3.0 → (9)3.0 → (10)2.9
 - 고용률(%): ('11.3)58.3 → (4)59.3 → (5)60.1 → (6)60.3 → (7)60 → (8)59.6 → (9)59.1 → (10)59.9
- 정상외교 등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위기상황에 대비한 외환유동성 확대
 - 외환보유고 추이(억 달러): ('11년 1분기)2,986 → (2분기)3,045 → ('10월 현재)3,109
 - 한·일, 한·중 통화스왑 체결 등을 통해 외환유동성 4,300억 달러 확보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도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공정위, 금융위, 관세청)**
 - 중소기업 납품단가의 합리적 조정체계를 마련 하고,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보급하는 등 대·중소업체 간 공정거래 풍토 조성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3.29)하여 중소기업에 납품단가 조정협의신청권을 부여하고 조정기간(30일) 이전에도 신속히 분쟁조정 협의에 조정신청이 가능토록 개선
 - 미래성장동력 분야 등 유망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자금 및 보증 지원 확대
 - 미래성장동력분야 보증 지원 25조원 및 부품소재·기술개발 분야 3.5조원 자금 공급
 - 정책금융공사가 시중은행을 통해 운영·시설자금을 지원하는 온렌딩 대출의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여 4조 215억원 공급 ('11.10월 기준)
 - 한-EU FTA의 관세 특혜를 위한 인증수출자 지정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입 지원
 - 인증수출자 지정 업체 증가: ('10)364 → ('11.10)3,370
-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한 다각적 지원 강화(금융위, 공정위, 농식품부)**
 - 서민층의 자활을 돕기 위한 미소금융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로 서민 자립기반 강화
 - 미소금융 지원 실적 증가: ('10년)15,194건 1,153억원 → ('11.10월)23,221건 2,569억원
 - 서민생활 밀접품목에 대한 카르텔 등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를 통해 서민 생필품 가격 안정 지원
 -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가격담합(20건) 및 리베이트 지급 등을 적발, 엄중제재
 -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농지연금 도입('11.1)*하여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
 - '11년 목표인원(500명) 대비 가입률은 188.6%(943명)로 농가당 월평균 96만원 지급('11. 10월 기준)
- **4대강 사업의 성과 가시화(국토부)**
 - 4대강사업으로 분류 및 지류의 하천수위가 낮아짐에 따라 기록적인 강우('11년 평균642mm-예년의 2.5배)에도 홍수피해 크게 감소
 - 홍수피해 규모: ('98년)1조543억원 → ('06년)1조5,356억원 → ('11년)945억원
 - 16개 다기능 보 등의 건설을 통해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고용영향평가('10.9~'11.6, 고용노동부) 결과, 88,4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
 - 자전거길 1,170km 설치('11. 10월 현재 공정을 68%)를 통해 하천을 복합 생활문화공간으로 재창조
- **우리경제의 미래성장 기반 조성(기재부, 지경부)**
 - 한-EU(7.1), 한-페루(8.1) FTA 발효 및 한-미 FTA 비준(11.29) 등을 통해 수출시장을 확대
 - 한-EU FTA로 발효 후 10년 간 GDP 5.6%, 고용 25.3만개, 수출 2,537백만 달러, 수입 2,175백만 달러의 증가 예상
 - 한-페루 FTA로 발효 후 1달 간 교역량이 전년 동기 대비 114% 증가
 - 녹색기술 R&D 확대, 산업육성지원을 통해 이차전지, LED, 태양광 등 선도 녹색산업의 수출 산업화 토대 마련
 - 이 분야를 포함, 조기성장동력화가 가능한 10개 생태발전형 신성장동력 육성 프로젝트 발표
 - 녹색 R&D 확대 추이 : ('08년)1.4조 → ('09년)1.9조 → ('10년)2.2조 → ('11년)2.5조
 - 세계시장 점유율 : 리튬이차전지(2위, 30%), LED(백라이트 2위, 20%), 폴리실리콘(3위, 15%)
 - 「산업융합촉진법」을 제정('11.4.15)하여 신산업 분야의 융합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부품·소재 분야에서 사상 최대인 무역흑자 800억 달러 달성 전망
 - '11. 10월까지 부품·소재 분야에서 714억 달러 무역 흑자 기록
 - 정상급 자원외교 등을 통해 UAE, 이라크 등으로부터의 안정적 원유공급기반을 마련
 - UAE 유전 확보('11.3, 10억배럴 이상, 자주개발률 4% 제고효과), 이라크 원유 우선공급권(25만b/d) 확보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대내외적 불확실성에 따른 성장 둔화 및 물가관리 목표달성 미흡(기재부)**
 - 세계경제의 침체에 따른 경제성장률 둔화, 투자 및 민간 소비의 감소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
 - 주요기관의 '11년도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IMF 4.5 → 4.0%, KDI 4.2 → 3.6%
 - ☞ 투자 촉진 및 경제체질 강화 등을 통해 경제활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이 필요
 -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최근 둔화되고 있으나, 환율변동 등 불안요인으로 인해 적정수준의 물가관리에 차질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비, %): ('11.1)4.1 (2)4.5 (3)4.7 (4)4.2 (5)4.1 (6)4.4 (7)4.7 (8)5.3 (9)4.3 (10)3.9
 - ☞ 품목별 수급안정대책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유통구조개혁, 경쟁촉진 등 구조적 개선노력에도 중점을 둘 필요
- **가계부채 증가 및 전·월세난 등에 대한 효과적 대응 미흡으로 국민경제 부담 가중(금융위, 국토부, 지경부)**
 -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관련 대책이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대한 공급감소 규제에 중점을 둬에 따라 대출 수요가 보험사 및 사금융 등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 발생
 - 가계부채(조원): ('10 4분기)797.5, ('11 1분기)808.2, ('11 2분기)826.0, ('11 3분기)840.9
 - '11. 3분기 들어 예금기관의 대출증가세는 둔화(전기대비 대출증가액 15조 → 10조)된데 반해, 보험사 대출이 3조원 증가하는 등 기타금융기관의 대출은 전기 대비 4조 증가 (2분기 2조 증가)
 - ☞ 보험사 등에 대한 가계대출 관리방안 등 대출수요 이동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 필요
 - 집값하락 등으로 인한 전세선호 현상으로 전세가가 상승하고 전세의 월세전환¹이 증가하여 서민·중산층의 주거난 심화
 - 아파트 임대차 유형변화('11.1~7월): 월세(반전세포함) 22% → 26%, 전세 78% → 74%
 - 전·월세 안정대책을 마련하였으나 그 효과에 한계
 - 전월대비 전국 전세가격 증가율: ('11.8월)1.1% → (9월)1.4% → (10월)0.9%
 - ☞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을 재점검하고 공공주택 조기 입주, 민간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활성화 유도 등을 중점 추진
 - 대형마트 내 주유소, 알뜰주유소 등 원가절감형 주유소 육성 등을 통해 시장경쟁 촉진과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있으나, 국내 석유가격 안정의 가시적 성과 미흡
 - ☞ 알뜰주유소 등 석유가격 인하 대책의 실효성있는 추진전략 마련
- **정전사태 등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한 체계적 대응 미흡(지경부)**
 - 전력수요 예측과 공급능력 판단실패, 전력 기관간의 정보 공유 부족 등으로 정전사태가 발생(9.15)하고, 이에 대한 대국민 안내 지연 등으로 혼란 초래
 - 동·하절기 에너지 수요 급증, 에너지 안전사고 등 다양한 상황에 따른 대응능력 확보 필요
 - ☞ 사전경보시스템, 위기대응 매뉴얼, 비상전력 확보방안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에너지 절약 및 수요관리 대책 마련 필요
- **주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및 금융시장개혁 과제의 지연(기재부, 금융위)**
 - 의료·교육 등 주요 서비스산업 선진화 관련 법률 제·개정이 관련 이해단체간 이견으로 지연
 - 가정상비약 약국의 판매(약사법), 결산상 잉여금 송금 허용(경제자유구역특별법) 등
 -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금융회사 감시기능 강화, 규제체계 개편 등을 위한 「경영구조개선법」의 제정 지연
 - ☞ 기관간·이해단체와의 협의 강화 및 관련절차의 신속한 이행을 통해 차질 없는 입법 추진
- **방송수신 취약계층 지원 및 방송사업자 간 갈등 조정 미흡(방통위)**
 - '12.12.31 디지털 전환에 대비하여 지상파를 직접 수신하는 취약계층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등의 지원 실적¹이 부진
 - 지원실적: 340,000 가구 중 30,230 가구 지원(9%)
 - 지상파방송사(MBC, SBS)와 위성방송사업자(KT SKYLIFE) 간의 재전송 관련 갈등으로 소비자 불편 초래
 - 위성방송사업자와의 갈등으로 MBC는 6일(4.14~4.20), SBS는 48일(4.27~6.14)간 수도권역 HD 방송 송출 중단되었으며, 현재 케이블방송사와도 갈등 진행중
 - ☞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전환 지원 확대 및 지상파 재송신 문제에 대한 적극적 해결책 모색 필요
- **국세체납 및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 미흡(국세청)**
 - 국세체납액 18조 2,384억원 중 현금정리 및 결손처분 등을 제외한 미정리 체납액이 5조 2,164억원('11년 3분기)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

- 해외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역외탈세 추정액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외국 과세당국과의 징수협조체계 미구축 등의 이유로 징수실적이 저조
 - '11. 1분기 추정액 4,741억원 중 315억원만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6.6%에 불과
- ☞ 국제채납액 징수 강화 및 외국 과세당국과의 지속적인 협력 등을 통한 역외탈세 대응역량 강화 필요

2012년 중점 추진과제

- **대내외적 경제충격에 대한 사전 대비 등 위기관리 철저**(기재부, 금융위)
 -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외화유동성 관리를 강화하고, 국제공조를 통해 외부충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필요
 - 가계부채의 수요·공급 분석 및 구조조정 방안 마련을 통해 가계부채문제가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특히 서민금융 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필요
-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제체질 강화 및 재정건전성 확보**(기재부, 지경부)
 - 내수시장 진작 및 투자활성화, 신성장 동력 육성, 대외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충격완화장치 마련 등을 통해 안정적 성장이 가능한 경제체질로 개선
 - 복지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여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방안을 강구하고, 지출 구조조정 등 지출 효율성 제고방안 마련
- **물가안정 등 체감 가능한 서민생활 안정대책 추진**(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금융위)
 - 공공요금, 농축수산물 가격, 전·월세 임차료 등 서민생활에 밀접한 품목의 수급관리를 통해 서민물가의 안정적 관리 실시
 - 금융기관 감독강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서민 신용경색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문화 확산**(지경부, 공정위, 금융위, 중기청)
 - 대·중소기업 간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을 강화
 -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분야 등에 금융지원 등을 통하여 창업 초기 기업 및 유망기업의 성장 촉진 지속
- **FTA의 차질없는 이행 준비**(기재부, 농식품부, 지경부 등)
 - 최근 비준된 한·미 FTA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제도 등의 이행준비사항 점검
 - 수출입기업 등의 FTA 활용지원과 농축산업 등 취약산업에 대한 지원 및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추진
- **주요 국제행사 및 국책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국토부)
 - 참가국 유치 및 박람회 홍보활동의 지속적 추진으로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활동 지원 강화
 - 4대강 구간의 하상변동, 수위, 수질, 생태계 변화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4대강 사업의 차질없는 마무리

② 사회·문화분야

정책 추진여건 및 중점 추진사항

- **정책추진여건**
 - ▷ 물가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라 서민·취약계층의 생계부담이 가중되어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비정규직 근로조건 및 청년층 고용상황 개선요구도 증대
 - ▷ 교육기회확대 및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요구가 커지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인권향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 집중
 - ▷ 한류확산, 국제체육행사 개최·유치 등으로 문화·스포츠에 대한 관심고조
 - ▷ 구제역, 일본원전사고 등으로 깨끗한 환경과 안전한 식품 등 삶의 질 향상 요구 상승
- **중점추진사항**
 - ▷ 복지전달체계 효율화, 건강보험 재정안정성 강화,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응,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 ▷ 일자리 창출 확산 및 인력개발, 노사관계 선진화, 고용환경 개선
 - ▷ 기초·원천연구 진흥, 학교교육 내실화 및 대학구조 개혁, 창의적 인재 양성
 - ▷ 관광산업 신성장 동력화, 스포츠 국제경쟁력 강화, 콘텐츠산업 전략적 육성
 - ▷ 맑은 물 환경 조성, 자연환경·생물자원 보전과 이용 및 기상에보역량 강화

주요 정책성과

- **수요자 중심의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복지서비스 강화(복지부, 여가부)**
 - 범정부 복지정보 통합관리방안¹을 마련('11.6월)하고, 사회복지담당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14년까지 7,000명)하는 등 복지 인프라 확대
 - 각 부처 복지사업(16개부처 289개)의 정보 통합관리(사회복지통합관리망)를 위해 근거규정 마련 및 추진단 구성('11.9월)
 - 복지 사각지대 일제조사²,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³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
 - 13천건(25천명)을 발굴하여 8천건에 대해 긴급복지, 기초생활급여 등 지원
 - ** 4인가구 (월)기준소득 인상(256 → 364만원), 61천명의 비수급 빈곤층 신규보호
 - 선택진료비 부담완화⁴, 일반병상 확대⁵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서민부담 완화
 -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 강화로 의료비 경감(선택진료비용 224억원 경감 예상)
 - **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병상 확대시 확대병상의 일반병상비율 상향(50% → 70%, '11.1월), 종합병원 신규 설립시 일반병상비율 70% 적용('11.7월)
 - 저소득 한부모 가족 등에 대한 양육비, 교육비 등 지원확대를 통해 가족기능 회복을 도모
 - '한부모가족 종합지원대책 수립'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등 정책적 지원확대, 저소득 한부모 가족 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대상 확대('10년 11만명 → '11년 13만명)
- **복수노조·근로시간 면제제도 정착과 노사관계 안정화(고용부)**
 - 복수노조관련 법적절차를 대다수 사업장에서 준수⁶하고 있으며, 근로시간 면제제도⁷도 정착단계에 진입
 - '11.10월 현재 노조법 준수율(교섭창구단일화 이행률)은 93%
 - **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률 95.9%, 한도 준수율 99.6%
 - 합리적인 교섭·쟁의 관행 정착지원, 노사의 사회적 책임 확산 등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노력으로 노사분규건수⁸ 및 근로손실일수⁹ 감소
 - 노사분규건수(1~10월, 건): ('08년)105 → ('09년)101 → ('10년)74 → ('11년)53
 - ** 근로손실일수(1~10월, 천일): ('08년)775 → ('09년)523 → ('10년)425 → ('11년)392
- **5세 의무교육 확대 및 직업교육 경쟁력 강화(복지부, 교과부)**
 - '12년부터 '5세 누리과정' 도입('11.5월)으로, 국가수준의 공통과정을 마련하고 보육 및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과 학부모의 부담 경감
 -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5세 과정을 일원화
 - (지원대상) ('11년) 하위 소득 70% → ('12년)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 (지원금액) ('11년) 17.7만원 → ('12년) 20만원 → ('16년) 30만원
 - 마이스터고 육성 및 지원 확대를 지속 추진하여 고등학교 직업교육선진화를 통한 취업 경쟁력 강화
 - 현대차, 삼성전자 등 대기업 마이스터고 채용 약정, 은행연합회의 3년간 은행권 2,700명 채용계획 발표 등
-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기반 마련 및 미래전략형 기술 개발(교과부, 기상청)**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11.5월, 대전)을 통해 기초연구 거점을 육성하고 국가과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추진 기반 마련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시, 생산유발효과 212조원, 고용유발 효과 136만명 등 경제적 파급효과 예상(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 기초연구 투자 확대¹⁰를 통한 기초연구역량 확보 및 미래 성장 동력화를 위한 세계적 수준의 원천기술 확보¹¹
 - 기초연구비 투자(조원): ('08년) 1.8 → ('09년) 2.5 → ('10년) 3.0 → ('11년) 3.4
 - ** 세계최초 40나노 32기가 낸드플래시 핵심기반기술 개발, 신개념 나프타 분해기술 세계최초 실용화 등
 - 기상예보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한국형 수치예보 모델 개발 추진 및 전문인력 확보, 국내외 공동연구개발 기반 구축
 - '11.2월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개발사업단을 발족하여 '19년까지 개발완료 예정(총 946억원)
- **국제체육행사와 한류확산을 통한 국가위상 제고(문화부)**
 -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확정¹²('11.7월)과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¹³로 국가이미지 제고
 - 하계올림픽, 월드컵축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이어 동계올림픽 유치가 성공함으로써 세계 6번째로 4대 스포츠대회를 모두 유치, 고용창출·관광효과 등 65조원의 경제적 효과 기대
 - **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역대최대 규모 선수단(202개국 1,945명) 및 관중(446,305명) 참여
 - 드라마, 영화, K-POP 등 '한류' 붐 조성에 기여하고, 문화교류를 통한 한국문화 저변 확대
 - 게임, 방송, 음악 등 콘텐츠 업체의 수출증가: ('10.6월)3,700억원 → ('11.6월)4,700억원

- 수질예보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예방적 수질관리체계 마련(환경부)
 - 4대강 보 중심의 수질감시체계를 구축하여 하천수질에 대한 선제적 관리기반 마련
 - 수질자동측정망을 신설(3개)·이전(13개)하고, 수질예보시스템 구축 및 시범 운영('11.8월~)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정책의 실효성 제고 필요(복지부)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하고, 중앙-지자체간 사업의 연계·조정 부족
 - 저출산 예산 현황(조원): ('09) 4.7 → ('10) 5.8 → ('11) 7.3
 - 최근 합계출산율은 증가추세이나, OECD 평균(1.74명, '09년 기준)에 미달하는 1.23명 수준으로서, 222개 비교대상 국가 중 최하위인 217위 차지('11년, KDI)
 -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공급은 급격히 확대되었으나, 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미흡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병원 평가결과 782개('10년말 기준) 중 1등급은 78개로 10%에 불과하고 농어촌 지역의 요양기관이 부족하여 지역간 서비스 격차도 발생
 - ⇒ 출산·육아·교육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보완 등 저출산 대책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노인요양서비스 성과평가 강화 및 서비스향상 방안 마련
- 복지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 미흡(교과부, 복지부)
 - 인화학교의 장애아동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대응 부족 및 일선학교와 교육청,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미흡 등으로 국민적 비난 여론 초래
 - 성폭력 사건 발생이후, 사건해결 진정이 지속 제기되었으나, 공론화되기까지 적극적·적시적인 대응 미흡
 -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빈번한 발생으로 부모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보육서비스 신뢰 저하 초래
 - 일산 어린이집 아동폭행 사건('11.1월), 서울 구립어린이집 아동폭행·천안 어린이집 아동폭행 사건('11.10월) 등
 - ⇒ 장애아동 성폭력 방지대책 강화 및 보육시설 아동 등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방안 마련
- 청년층 고용과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의 효과성 미흡(고용부)
 - 전반적인 고용상황은 개선되었으나, 정부의 청년실업 대책의 성과가 국민들에게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
 -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추세에 있으나,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이 개선되지 못하는 실정
 - 비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 비율이 정규직 근로자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11.8월)
 -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고용안정성이 낮은 상황
 - 근속기간 1.5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만료 후 계약 종료 비율(%):('10.6월)33.4 → ('11.1월)48.6 → ('11.6월)49.5
 - ⇒ 청년취업 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 비정규직 종합대책('11.9월)의 차질 없는 추진, 비정규직 근로조건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 대학재정운용의 비효율성과 대학구조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미흡(교과부)
 - 등록금 적립규모의 적정성 등 대학재정 운용의 비효율성 등으로 대학 등록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가계부담 가중 초래
 - 사립대학 평균등록금 추이(만원): ('05년)609 → ('07년)692 → ('09년)742 → ('11년)768
 - 대학구조개혁과정에서 평가 하위대학의 재정지원 제한과 관련, 교육계와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 미흡 등으로 대학들의 반발 초래
 - 평가기준 중 과반수 비중을 차지하는 '취업을' 및 '재학생 충원율' 적용에 따른 평가기준의 적절성 논란 등으로 일부대학의 교수 등이 반발 사퇴('11.9월)
 - ⇒ 대학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학구조개혁시 의견수렴 강화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한 평가기준 등 보완 필요
- 의약품 판매제도 개선 등 국민의 편의성·안전성 제고 필요(복지부)
 - 약국의 판매의약품 제도 도입에 따른 안전성 논란 확산 등 관련단체(의약계 등) 갈등에 대한 적극적 대응 미흡으로 제도 도입 지연
 - 약국의 판매허용에 대한 관련단체 설득 미흡으로 정책논란 및 입법추진 지연 초래
 - '원인 미상의 폐질환' 사망사건('11.4)으로,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유해 가능성 우려 등 국민 불안감 증대
 - ⇒ 약사법 개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개정취지를 충분히 홍보하며, 가습기 살균제 관계기관간(지경·환경·복지부, 식약청 등) 긴밀한 연계·협의를 통해 국민 불안감 해소 필요
 - 복지부는 유해성이 제기된 가습기 살균제 수거명령 실시 및 의약품 품질 지정 추진중
- 석면(함유)물질 관리대책 추진 미흡(환경부)

- 공공시설에 대한 석면함유물질 사용*, 폐석면광산** 주변지역의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안전 우려 지속제기
 - * 야구장, 학교운동장 등에서 사용중인 사문석에서 석면 검출('11.10월)
 - ** 충청지역의 폐석면광산 3개소(동아, 흥동백동, 흥동광사)에 대한 조사결과, 조사면적의 11.5% 토양에서 석면이 검출되고 이중 10.7%가 인체위해 판명
- ⇨ 석면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정밀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에 대한 환경보건 관리대책을 수립·추진
- **문화재 방재체제 구축 및 운영 미흡(문화재청)**
 - 재난예방을 위한 중요 문화재의 방재시스템 구축 저조* 등 문화재 및 방재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미흡
 - * 방재시스템 구축률('11년): 국보·보물은 100%이지만, 사적(28%) 및 중요민속문화재(41%)는 미흡
 - ⇨ 중요 문화재의 방재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고, 기 구축된 방재시설과 현장인력의 관리 실효성 제고
-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 구조 방항하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확대(복지부, 고용부)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일자리 확충과 함께 일을 통한 복지를 실현함으로써 중산층을 두텁게 하고 서민생활을 안정
 -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 대하여 일할 여건과 능력을 제고하되, 저소득 및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
 - 저출산 고령화 등 미래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중장기적 전략추진과 함께 그간 복지정책의 실효성을 보다 제고
 - 복지공무원 증원 및 복지통합관리망 지속 확충 등 인프라 구축과 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 생애주기별, 수혜대상별로 차별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
- **청년실업 완화 및 비정규직 보호 강화(고용부)**
 - 청년실업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인력미스매치 및 비정규직 문제 등과 연계하여 접근 필요
 - 학력인플레이션 및 고졸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능력에 기초한 체계적인 고졸채용 지원을 통하여 고졸자 취업 기회 지속적 확대
 - 비정규직 종합대책('11.9월)의 차질 없는 추진 및 근로취약계층의 보호 강화 지속 추진
- **노사관계 안정화 지속 추진(고용부)**
 - 노사의 사회적 책임 확산, 노사협력 지원 등으로 노사관계의 안정화를 지속 추진하여 노사관계 선진화 정착
 -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안정 국면에 진입하였으나, 교육·홍보·지도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긍정적 정착 노력 강화
- **교육제도 선진화 등 교육개혁과제의 차질없는 추진(교과부)**
 - 학령인구의 지속 감소, 대학경쟁력 제고 필요성 등을 고려, 교육재정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유아·고등교육의 투자 확대 및 효율성 제고
 - '12년 시행되는 5세 누리과정과 주5일제 수업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고 철저한 시행준비
 - 대안교육의 방향정립 및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공교육 체계와 조화롭게 추진 필요
-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 지원(문화부, 환경부)**
 - '18년 평창 동계올림픽, '14년 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 지원
 - 지구차원의 주요 환경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세계자연보전총회('12.9월)의 차질 없는 준비
- **한류 콘텐츠 활용·보호기반 강화(문화부)**
 - 글로벌 신시장 창출 지원 및 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 강화 등을 통해 한류확산 효과를 극대화
 - 국내에서 개최되는 K-POP 이벤트 등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외국인 관광상품 개발·홍보로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 **4대강 등 주요 국책사업의 수질 관리 강화(환경부)**
 - 환경기초시설 확충, 비점오염 저감 및 생태환경용지 조성사업 등을 통해 4대강 및 새만금 유역 수질관리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

③ 일반행정분야

정책 추진여건 및 중점 추진사항

■ 정책추진여건

- ▷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소외계층의 공직 참여 배려요구 증대
- ▷ 과대청사 신축·축제성 경비 과다 등 자치단체 전시성 예산 집행,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악화 등으로 지방재정 건전화 요구 증대
- ▷ 집중호우, 산사태, 폭설 등 대규모 재해 발생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 증대
- ▷ 민생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 및 기초질서 지키기 등 법질서 선진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 ▷ 고위층 도덕불감증, 권력형 부패가 잔존하고 국민권의 보호에 대한 관심 증가

■ 중점추진사항

- ▷ 경쟁력 있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 지방자치 선진화와 건전한 지방재정 구현
- ▷ 자연재해·인적재난에 대비하여 예방·구조시스템 강화
- ▷ 법제도 선진화 및 선진 법질서 확립, 범죄와 사고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 ▷ 반부패·청렴정책 실효성 제고 및 국민권의 보호 역량 강화

주요 정책성과

- 행정조직·인사제도 개선을 통해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행안부)
 - 정부인력 효율적 활용을 위한 유동정원제 확대 시행(12개→40개 기관), 장애인·북한이탈주민 등 소수계층 공직진출 확대 추진
 - 장애인 구분모집 비율 확대(6.58→6.67%), 중증장애인 25명·북한이탈주민 126명 채용 등
 - 유아휴직대상 확대(만6세→8세), 스마트워크센터 구축(8개소) 등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근무환경 조성
 - 방통위·교과부 등 12개 기관 시범기관 자·운영, 2,277명 참여('10.11~'11.9월)
- 법질서 확립 및 교통행정 개선으로 국민안전·편익 제고(법무부, 경찰청)
 - 강·절도·폭력범죄 등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단속 강화 및 범죄예방 활동을 통해 민생침해범죄 감소
 - 민생침해범죄 발생건수: ('09) 590,087건 → ('10) 585,637건 → ('11) 461,827건
 -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11.6),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11.4) 등 교통행정 개선으로 서민 편익 증진
 - 면허취득 소요비용 74만원→38만 4천원(49%절감), 전통시장 주변 공휴일 주간시간대 주·정차 허용구간 44% 확대(137개소 57.4km→219개소 82.8km)
- 국민중심의 법제개선 및 권익보호 강화(법제처·권익위·경찰청)
 - 입법과정에 국민의 시각을 반영하기 위한 국민법제관 운영, 민생 관련 불편해소를 위한 하위법령 정비
 - 국민법제관 : 30개 분야 739명 위촉(교통, 중소기업, 교육, 주택·토지 등)
 - 인허가 규제 140건, 경제활성화 166건, 국민불편 해소 157건 등 486건 법령정비
 - 국민신문고 외국어 민원창구 추가 개설, 인권침해·불공정수사 예방을 위한 「수사관교체 요청제」 도입(11.5) 등 국민권익 보호 확대
 - 태국어·우즈베크어 창구 개설, 국민신문고는 UN 등으로부터 모범사례로 선정
 - 수사관 교체요청 785건 중 599건(76%) 교체 승인('11.5~10월)
- 행정서비스 해외홍보 확대 및 외국인 관리시스템 개선(법무부·행안부)
 - 선진IT기술을 활용한 출입국심사서비스 및 전자정부시스템의 해외 홍보·수출 확대로 국가이미지 제고
 - 출입국심사 6년 연속 세계 1위(국제공항협회의 평가), 전자정부 UN 공공행정상 1위(정보화마을)·2위(민원24) 동시 석권 및 수출 확대('10년 1억 4,870만달러→'11년 2억 3,566만달러)
 - 등록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온라인 서비스 시행('11.11), 불법체류 외국인 거점지역 집중 단속 등을 통해 외국인 관리체계 효율화
 - 외국인 불법체류율: 전년 동기대비 1.6%p감소('10.10월 13.6%→'11.10월 12.0%)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재해·재난 등 위기상황 대응 미흡으로 국민불안감 초래(소방청·지경부)
 - 집중호우, 산사태 등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상황변화에 맞는 방재시스템 구축 미비
 - 수도권 집중호우('11.7)에 대한 대응미비로 자연재난 정부대응역량에 대한 불신 초래
 - 전력수급 불균형에 따른 대규모 정전사태('11.9)시 유관기관간 공조 미흡으로 국민 불편·피해 야기
 - 기후변화를 고려하여 재난방재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한 효과적인 긴급구조·대응체계 마련
 - 도시특성 및 기후변화 예상시나리오 등을 고려한 방재기준 재설정, 침수방지·산사태 등 위험지역 관리 등
-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 미흡(행안부)
 - 지방공기업 부실 경영, 호화청사 신축, 경제성 없는 경전철 추진 등 지자체의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 등으로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
 - 용인·의정부 등 경전철 개통이 임박한 지자체에서는 지역교통수요 예측 부실 등으로 큰 규모의 재정적자(용인 30년간 약 2조5천억, 의정부 10년간 약 2천3백억원, 경기개발연구원) 예상

- 채무과다 지자체에 대한 채무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등 지방채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나, 지방채무 증가에 대한 우려 상존
 - 지방채무 현황: ('08년) 19.2조 → ('09년)25.6조 → ('10년)28.9조 *'11년('12.6월 발표)
 - 재정자립도: ('08년) 53.9% → ('09년)53.6% → ('10년)52.2% → ('11년)51.9%
- ☞ 지방세 감면체계 정비,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운영 강화,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 촉진 등 재정건전성 제고방안 적극 추진
- **공직비리 사건으로 반부패·청렴정책에 대한 불신 초래(권익위)**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반부패·청렴정책에도 불구하고, 대형 공직비리 사건 발생으로 공직사회 이미지 실추
 - 00부 향응 연찬회('11.6), 상습카지노 도박 공무원 228명 적발('11.10), 저축은행 구조조정시 감독기관 종사자 연루('11.5) 등
 - ☞ 뇌물 수수자·공여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비리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보완책 마련
- **국민생활 관련 신규정책 추진시 공감대 형성 노력 부족(경찰청·행안부)**
 -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좌회전 전용 3색 신호등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국민 불편과 혼란 초래
 - '11.4월 전국 53곳에서 시범실시를 하였으나, 실시 1개월만인 5월에 철회
 - 선진기초행정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중인 '도로명주소 사업'은 민원 제기, 인지도 저하 등으로 기존 주소 병행사용 2년 ('12.1→'14.1) 연장
 - '97년 이후 3,700억원을 투입하여 '도로명주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11.7월 인지도 조사결과 '자신의 도로명주소를 정확히 기억한다'는 응답은 28%에 불과
 - ☞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신규정책 추진시 충분한 여론수렴 및 시민 불편 예방을 위한 부작용 방지 대책 선행 필요

2012년 중점 추진과제

- **엄정한 선거관리 및 공직기강 확립(행안부·권익위)**
 - 공무원 선거중립 등 공직기강 확립, 공명선거 홍보 강화 등 공직 선거(4.11 총선, 12.19 대선) 관리 철저
 - 선거 전 정치권 줄서기, 선거 부정개입, 금품·향응수수 감독강화 등
 - 부패유발 구조·관행에 대한 제도개선, 청렴교육 및 행동강령의 합리적 개선 등을 통해 사회 전반의 반부패 의식·문화 확산
- **민생침해범죄 단속 및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법무부·경찰청)**
 - 경기회복 둔화 및 고용시장 위축 등으로 어려운 경제사정에 따른 생계형 범죄가 증가될 전망
 - 강·절도·조직폭력 등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범죄 및 아동·장애인 등에 대한 성범죄에 엄정 대처하여 국민 치안 불안 해소
 - 범죄취약지역 방범시설 확충, 성범죄 단속을 위한 전담체계 보강 등
 - 법률조력인 제도 확대 등 사회적 약자 및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구제 내실화
 - 성폭력 피해아동 진술조사 전문인력 확대, 피해자 구조금제도 적극적 홍보 등
- **지방물가 안정 및 지방행정체제 선진화(행안부)**
 - 중앙과 지자체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및 지자체 물가 관리 노력 제고를 통한 지방물가 안정관리 도모
 - 국민·지자체 등 현장 중심의 의견수렴 등을 통한 국민공감대 바탕 위에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
 - 지자체 통합기준에 대한 공감대 형성, 통합시 지원대책에 대한 정책일관성 제고 등
- **세종시 안정적 정착 및 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혼란 최소화(행복청·행안부)**
 - '12년부터 공공기관이 이전되나 거주·도시 기반시설 미비로 입주민의 불편이 예상되고, 행정기관 분산으로 정착시까지 업무상 혼란 우려
 - '12년 이전기관 대상 공무원 4천여명 중 20%만 즉시 입주 가능
 - 세종시 생활편의·교육·의료시설 및 교통체계 등에 대한 점검·보완 강화
 - 중앙행정기관 분산으로 부처간 정보공유·정책조정 등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일하는 방식 개선 및 협업시스템 강화

④ 외교통일안보분야

정책 추진여건 및 중점 추진사항

■ 정책추진여건

- ▷ 세계 각국이 FTA 체결 추진 중이며, 에너지·자원 확보 경쟁도 가속화

- ▷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6자 회담 재개 요구 증가
- ▷ 북한은 민간차원의 남북접촉을 지속 제안하여 남남갈등을 유도
- ▷ 국방개혁 추진 및 우리 군의 사이버전 수행 역량 강화 요구 증대
- ▷ 북한의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이후 안보불안감이 증대하여, 확고한 전방위 군사대비태세 및 통일안보교육 강화 필요성 대두

■ 중점추진사항

- ▷ 북핵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 및 주요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
- ▷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FTA 등 경제외교를 통한 국가성장동력 창출
- ▷ 통일대비 인프라 구축 및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 유도
- ▷ 북한 도발에 대한 대비태세 강화 및 강도 높은 국방개혁 추진
- ▷ 병역면탈행위 감시 강화 및 방위사업의 효율적 추진

주요 정책성과

□ 정상회담 및 FTA 체결 확대를 통한 경제·안보 협력관계 증진(외교부)

- 적극적인 정상외교를 통해 미국 등 주요국과의 교류·협력 관계를 증진하고, 아중동·중남미 등 신흥국가와의 유대관계 확립을 통해 글로벌 외교지평을 확대
 -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5.21-22), 유럽 순방(독일·덴마크·프랑스, 5.8-15), 아프리카 순방(남아공·DR콩고·에티오피아, 7.2-11), 중앙아시아 순방(몽골·우즈벡·카자흐스탄, 8.21-26), 콜롬비아 대통령 방한(9.14-16) 등 22회 (10.31 기준)
 - 한-미 정상회담('11.10)을 통해 기존 한-미동맹을·테러리즘·기후변화·WMD 확산·경제위기·빈곤문제 등에 적극 협력 하면서 인류 공영에 기여하는 다원적 전략동맹으로 발전
 - 교류국과의 우호증진 외에 에너지·통상, 문화, 국제이슈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실질적 외교성과 창출
 - 한-인도 원자력 협정 체결, 한-우즈벡 수르길 가스전 개발 계약 체결, 한-카자흐 발하쉬 석탄화력발전소 정부간 협정 서명,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 한-프랑스 G20 공동성명 채택 등
- 한-EU FTA 잠정발효(7.1), 한-페루 FTA 발효(8.1), 한-미 FTA 비준(11.29) 등 경제·통상 네트워크 확대

□ 대북 대응태세 강화를 통한 북한 도발 억제(국방부)

- 천안함·연평도 도발 이후 한미 군사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여, 북한의 국지도발이 '10년에 비해 크게 감소('10년도 10건 → '11년도 1건)
 - 한·미 연합위기관리 및 합동 훈련*과 북한 도발에 대비한 공동 대응체계 정비** 등 한·미 군사동맹체제 강화
 - 평화연습(1.19-21), KR/FE 연습(2.28-3.10), 태극연습(5.30-6.1), UFG연습(8.16-27) 등
 - ** "공동 국지도발계획" 발간 추진, 연합위기관리 합의각서 개정 추진 등
 - 북한의 4대 비대칭 위협* 대응방안 정립 및 분야별 전력 보강**,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6.15) 등 군사대비능력 강화
 - 대량살상무기(WMD), 장사정포, 잠수함, 특수전부대
 - ** 후방지역작전 전담조직 개편('11.3), 수도권·대도시 대테러작전 지원계획 정립('11.7) 등

□ 해외 위기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재외국민 보호 기여(외교부, 국방부)

- 중동지역 시위 및 일본 대지진 등 위기사태 발생시 신속대응팀을 파견하여 우리 공관 및 현지 당국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재외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
 - 리비아 사태시 체류국민 1400여명을 인근국으로 안전하게 철수(2.23-3.7), 동일본 대지진 사태시 피해국민 구조 및 안전지역 이동 지원(3.12-4.30) 등
- 군 특수부대 및 해외파병부대의 성공적 작전 수행을 통해 해외 피랍선원 구출 및 분쟁지역 국민의 안전한 철수 지원
 - 아덴만 여명작전(1월), 리비아 교민철수 작전(3월), 한진 텐진호 구출 작전(4월) 등

□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남북교류협력 지속(통일부)

- 전반적인 남북교류가 제한된 가운데서도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입주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각종 규정·제도 정비** 추진
 - 전력·도로·소방·의료 등 기반시설 신속 및 개·보수, 입주기업 경영컨설팅 지원, 생산제품 판로개척 지원 등
 - **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시행(7.26) 등
 - 개성공단 생산활동이 전년동기 대비 6억달러가 증가하는 등 안정적인 성장세 유지
 - 전년동기(1~9월) 대비 생산 증가: '10년 23,231만달러 → '11년 29,583만달러
 - ** 북한 근로자 1,958명 증가('10.12월 46,284명 → '11.9월 48,242명)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서북지역 북한 도발 대응체계 미흡(국방부, 행안부/소방청)**
 - 북한의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 포사격(8.10)시 대응사격 지연, 아시아나 민항기 오인사격**(6.17) 등 서북지역의 군사 대응태세 정비 필요성 제기
 - 북한군은 8.10 13시경 연평도 NLL 인근에 해안포 3발 발사, 이중 1발이 NLL 하단 0.6km에 떨어졌으나, 우리 군은 14시경 K-9 자주포 3발 발사
 - ** 6.17 04시경 강화 교동도 초소에서 승객 119명을 태운 아시아나 여객기를 향해 공포탄 2발을 포함한 99발의 실탄 발사
 - 서북도서 주민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미흡하고, 유사시 주민안내 및 대피 시스템에도 문제점 노출
 - 8.10 연평도 인근 포격시 군에서 연평면에 대피 안내방송을 통보했으나, 연평면은 대피소 점검관개로 안내방송을 하지 않아 논란 발생
 - ☞ 신속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서북도서 책임지역 정비 및 긴급 보고·전파체제 보완, 서북 일부지역에서 유사시 주민보호를 위한 군·지자체간 협조체제 개선
- **군 선진화를 위한 국방개혁 추진 지연(국방부)**
 - 국방개혁 추진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6개 법률* 제·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어, 다수 개혁과제 추진이 전반적으로 지연
 -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사관학교 설치법」, 「국방대학교 설치법」, 「방위사업법」
 - ☞ 군 원로 등과의 적극 소통 및 대 국회 설명·홍보를 통해 국방개혁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추진
-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성과 도출에 한계(외교부, 통일부)**
 - 북한 비핵화와 관련하여 관련국의 공감대* 및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고, 비핵화 남북회담을 2차례 개최하는 등 6자회담 재개여건 조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 한·미·일 공조 및 중국·러시아와의 협의를 통해 남북대화를 우선으로 하는 사전 여건 조성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 확보
 - ** 제55차 IAEA 총회 제기 북한 UEP 및 경수로 건설에 우려를 표명하는 북핵결의안 채택(9.22) 등
 -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 미흡 및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표명 부족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성과 도출에는 한계
 - ☞ 미·일과의 긴밀한 공조 및 중·러의 협조 확보 노력을 지속하고, 대북정책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끄는 노력을 경주하여, 6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는 여건 조성
- **방산·군납 비리 잔존 및 품질 관리 미흡(방사청)**
 - 전투장비·무기부품·급식재료 등 군납품 공급과 관련, 원가 조작*, 불량 납품** 등 고질적인 비리 사례가 지속 발생
 - 초계함 음파탐지기 원가 조작, 군용낙하산 수입원가 조작, 군용 USB 원가 조작 등
 - ** 35mm 대공포 불량부품, 공업용 메탄올 함유 소독약, 곰팡이 햄버거 및 저질건빵 등
 - 계약 이후 군납품에 대한 품질 관리·감독이 미흡하고, 비리업체와 계약 지속 등 방위사업 시스템 전반에 걸친 부실 노정
 - 방사청은 '06년 이후 군납비리로 적발된 16개 업체 중 14개 업체와 319개 사업, 8,2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추가로 체결
 - ☞ 방위사업 관련 비리 방지대책 강화, 원가 검증시스템 및 군납품 사후 품질관리 개선, 부정당업체 제재 강화 등 추진

2012년 중점 추진과제

- **한반도 안보상황의 안정적 관리 및 국방개혁의 원활한 추진(국방부)**
 - '12년도 총선과 대선에 대비하여, 한반도 안보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주요국과의 안보협력체제 및 군사대비태세 강화
 - 국방개혁 관련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하위법령 정비·개혁안 세부작업 등 후속조치의 원활한 추진 및 국민의 공감대 확보 노력 강화
- **한반도 통일 인프라 구축 노력 지속(통일부)**
 - 통일재원 확보, 통일법제 연구, 남북교류협력 로드맵 구체화 등 통일 인프라 형성 및 공고화를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
- **글로벌 FTA 네트워크 지속 확대(외교부)**
 - 호주·콜롬비아 등 진행중인 FTA 협상의 타결을 추진하고, 동남아·중남미 지역 국가와의 사전협의 등 FTA 체결 다각화
- **2012년 핵안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외교부)**
 - '12년 핵안보 정상회의가 안보분야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하고, 국력 제고 및 외교 지평 확대의 기회가 되도록 노력
 - 국민적 관심 및 지지 제고를 위한 적극적 홍보를 실시하고,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한 참가국과의 외교적 노력 강화

□ 2012년 재외국민선거의 차질없는 시행 지원(외교부)

- '12년도 재외선거의 성공적 실시를 위해 주재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 홍보활동을 통해 재외국민의 이해·관심 제고

참고 **기관별 핵심과제 목록**

□ 장관급 기관 : 19개

부처명	과제명
기재부	①재정의 효율성 및 건전성 증대 ②경제체질 강화 및 기업환경 개선 ③국제 경제 리더십 강화 ④공공기관 효율성 제고
교과부	①창의적인 인재양성 기반 확충 및 과학기술인력 양성 ②학교교육 내실화 ③기초 원천 연구 진흥 및 미래 전략기술 개발 ④대학(원) 체제 개선 및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
통일부	①통일 대비 인프라 구축 ②북한이탈주민 희망프로젝트 추진 ③올바른 남북교류 질서확립 ④북한의 바람직한(비핵평화, 대외개방, 민생우선)변화 유도
외교부	①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국제적 기여 확대를 제고 ②경제를 살리는 외교를 통한 국가성장동력 창출에 기여 ③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안정 추구 ④재외국민 보호 및 재외동포 활동 지원을 통한 우리 국민의 편의 증진
법무부	①선진 법질서 확립 ②사회적 약자보호 및 국민편의증진 ③범죄방지 시스템구축 ④글로벌 외국인정책 추진
국방부	①북한 도발에 대한 대비태세 강화 ②국방개혁의 적극적 추진 ③전투형 군대 육성 ④한미 군사동맹 발전 및 국방외교 협력의 외연 확대
행안부	①경쟁력있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 ②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③지방자치 선진화와 건전한 지방재정 구현 ④저발전지역 지원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부	①콘텐츠산업의 차세대 성장 동력 육성 ②관광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③스포츠의 국제경쟁력 강화 ④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강화
농식품부	①농수산 식품 안전성 확보 ②농수산물의 효율적 수급관리 및 유통 효율화 ③식품산업 선진화 및 수출확대 ④농어촌 지역개발 및 복지여건 개선
지경부	①동반성장 기반 구축 ②산업의 성장동력 확충과 역량 강화 ③선진통상 강국실현을 위한 해외진출 및 개방확대 ④에너지 및 자원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복지부	①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제고 및 보장성 강화 ②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인프라확대 및 HT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 ③복지전달체계 개선 및 나눔문화확산 ④저출산·고령화에의 대응
환경부	①자연환경 및 생물자원의 보전과 이용 활성화 ②수질·수생태계보전을 통한 맑은 물 환경조성 ③지하수 및 상수도 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물 복지 구현 ④대기환경 보전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고용부	①일자리 창출 확산 및 인력 개발 ②고용환경 개선 ③공정과 책임의 노사관계 확립 ④취업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여성 가족부	①한부모가족, 성매매피해여성 등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강화 ②여성·아동의 인권보호및 체계적 지원 ③청소년의 역량 강화 ④양성평등 확산 및 여성의 역할 강화
국토부	①4대강 살리기의 성공적 완수 ②해양과 수변공간의 체계적 관리 ③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구현 ④물류해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송위	①방송통신시장 활성화 기반조성 ②스마트시대 대비 방송통신 서비스 산업 육성 ③방송통신 R&D 및 인프라 구축 지원 ④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생활 문화형성
공정위	①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거래질서 개선 ②시장경쟁 훼손행위 시정 등을 통한 시장질서 확립 ③진입규제 정비 등 경쟁촉진시책의 지속 추진 ④소비자 권익제고를 통한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금융위	①시장불안요인 선제대응 ②공정한 금융질서 확립 ③금융시스템의 선진화 ④기업자금지원 및 구조조정
권익위	①국민권익보호 역량 강화 ②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③행정심판 시스템 및 국민권익 제도 개선 ④국민권익 민간협력 및 국제 교류 강화

□ 차관급 기관 : 19개

부처명	과제명
법제처	①법제도 선진화 ②효율적 입법관리
보훈처	①보훈가족을 위한 능동적 복지 ②국민의 애국심 국가의식을 제고하는 보훈문화 조성
국세청	①탈세 예방·대응 체계 강화 및 숨은 세원 양성화 추진 ②수요자 지향적 세정운영 강화
관세청	①무역 1조 달러 시대에 걸맞는 수출기업 총력 지원체제 구축·운영 ②관세행정 국제 화와 개도국 지원 확대로 국제 관세행정 선도
조달청	①경제발전을 지원하는 공공조달 기능 강화 ②정부조달의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
통계청	①저비용·고효율 통계조사 실시 ②국정과제 뒷받침 통계의 지속 확충
병무청	①예외없는 병역 이행 체계 구축 ②보충역 복무 제도의 합리적 운영
방사청	①효율적인 방위사업 추진 ②방위산업 및 국방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
경찰청	①범죄와 사고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②수사시스템 개선 등을 통한 공감치안 확대
소방청	①자연재해·인적재난 예방시스템 강화 ②소방정책 선진화로 인명피해의 원천적 저감
문화재청	①문화재 활용 활성화로 국민의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 ②문화재 보존관리시스템의 고도화
농진청	①농산물 품질 경쟁력 제고 ②농업기술 보급 및 지역농업 특성화
산림청	①산림산업 활성화 및 휴양 서비스 증진 ②산림재해예방 및 생태계 보전·관리
중기청	①기술경쟁력 강화, 협력환경 구축 등 중소기업 성장기반 강화 ②창업 및 벤처 성장 촉진을 통해 경쟁력있는 중소기업 육성
특허청	①지식 재산의 창출·보호 기반 강화 및 활용 촉진 ②세계 최고 수준의 심사 서비스 제공
식약청	①식의약 안전관리체계 확대를 통한 국민의 건강한 생활 보장 ②의약품 및 의료기기 지원 체계 확대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기상청	①맞춤형 기상 예보 및 서비스 역량 강화 ②지진·화산폭발 등 위험기상 관측 및 대응능력 제고
해경청	①해양안전서비스 확보 ②해양오염 감축
행복청	①중앙행정기관 이전 및 도시기반 구축 ②최적의 정주여건 조성 및 원주민 재정착

2. 녹색성장 과제

1 평가개요

□ 평가목적

- 녹색성장 정책 4년차를 맞아 정책과제에 대한 추진노력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정책추동력 확보와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 성과 창출 유도

□ 평가대상 : 24개 기관, 28개 대과제 (3개 그룹)

* 1그룹 : 8개, 2그룹 : 7개, 3그룹 : 9개(녹색성장 정책 관련성을 기준으로 분류)

구분	기관명
부단위 (15)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외교통상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청단위 (9)	조달청, 소방방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기상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방위사업청, 통계청

□ **평가방법**

- 평가의 전문성·객관성을 위하여 학계 등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녹색성장 민간평가단」을 구성·운영(총 28명)
- 각 부처의 실적자료를 토대로 민간평가단이 과제별로 평가하고 기관별로 점수 부여
 -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하여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 민간평가단 조정회의(그룹별·그룹간)를 거쳐 평가결과 최종 확정

□ **평가지표**

- 계획(20) : 정책목표의 명료성(5), 정책내용의 타당성(5),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절성(10)
- 추진(30) : 추진과정의 효율성(5), 추진일정 준수 정도(10), 추진 과정상 협조노력(10), 정책 소통·교육·홍보 노력(5)
- 산출(50) : 성과목표 달성도(30), 정책 효과성(20)

※ 기관별 평가등급 및 구체적인 평가결과는 국무총리 주재 녹색성장위원회시(‘11.12.28) 별도 보고·발표 예정

2 평가결과

정책추진 여건

- 교토의정서 1차 기간 이후의 체제(Post Kyoto)에 대해 국제협상이 진행 중이며, 세계 각국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배출권거래제 도입,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관련정책을 본격 추진 중
- 우리나라도 부문별 감축목표 설정 후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준비하며, 녹색성장 정책 4년차를 맞아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실천적인 정책마련 요구 증대

주요 정책성과

□ **부문별·업체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발표(‘09.11, ‘20년 배출기준량 대비 30% 감축) 후속조치로서 부문별·업종별·연도별 감축목표^{*} 설정·발표(7.12)
 - 부문별 감축률 : 산업 18.2%, 수송 34.3%, 건물 26.9%, 공공기타 25.0%, 농림어업 5.2%, 폐기물 12.3% 등
- 이를 토대로 458개 목표관리업체와 협의를 거쳐 ‘12년도 업체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에너지 절약목표를 확정·발표(10.10)
 - 458개 관리업체의 ‘12년 온실가스 총 배출허용량은 예상배출량(BAU) 대비 약 9백만 CO2톤 감축된 598백만 CO2톤 (1.44% 감축)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법안 마련**

- 녹색위·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및 산업계와 협의, 정부 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4.15)
 - 국무총리실장 주재 회의(1.21), 국무총리 주재 회의(2.9), 부처간 이견 조정
- 특히, 시행시기 연기, 무상할당비율 상향조정, 과징금 인하 등 산업계의 의견을 대폭 반영^{*}
 - 1차 계획기간 시점 연기(‘13.1.1 → ‘15.1.1), 1차 계획기간 무상할당 비율 상향 (90% 이상 → 95% 이상), 과징금 인하 (톤당 배출권 평균 가격의 5배 → 3배)

□ **녹색기술 R&D 투자 확대**

- ‘11년 녹색기술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 투자는 16개 기관, 178개 사업에 총 2조 7,412억원으로서, ‘10년(2조 5,012억원) 대비 2,400억원 증가
 - 태양광·풍력 등 27대 중점 육성기술을 중심으로 ‘12년까지 ‘08년 대비 2배 이상으로 확대 추진 : 1.4(‘08) → 2.0(‘09) → 2.5(‘10) → 2.7(‘11) → 3.0조원(‘12)
 - 개인 기초연구사업은 242억원(‘10) → 379억원(‘11), 신재생에너지 등 신기술 융합연구는 200억원(‘10) → 213억원(‘11)으로 확대
- 녹색기술 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먹거리인 신성장 동력 추진기반 확충 추진

□ **녹색성장 핵심추진과제 이행점검을 통한 정책 추동력 제고**

- 그간 추진된 녹색성장 정책의 성과점검 지시(MP, 6.8)에 따라, 매월 국무총리 주재 이행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 핵심과제 점검 실시
 - 그린카 및 공공기관 에너지효율 향상대책(9.7),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10.31), 녹색생활·녹색교육 정책(11.28) 등
- 주요 정책별 성과를 평가하고 미흡사항을 점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녹색성장 정책의 추동력을 확보

□ 기타 성과

- 이외에도 '그린카드' 도입, 고속버스 환승시스템 확대, 녹색금융 활성화, 녹색 농업기술 개발, '한 가정 탄소 1톤 줄이기 운동' 등 다양한 녹색성장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 국민들의 녹색성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녹색생활·녹색소비 실천을 적극 유도하는 등 성과 거양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부처간 사업 중복추진으로 인한 비효율 초래

- 일부 녹색성장 사업의 경우 각 부처가 중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혼란 및 비효율 초래
 - (예) 녹색마을 조성사업(환경부, 농림부, 행안부, 산림청), 녹색길 조성사업 (행안부, 문화부, 환경부, 산림청) : 국회 및 언론 지적사항
- ⇒ 관련부처와 협의회 운영 강화, 사업 추진체계 및 사업대상 선정기준 마련, 점검·평가 강화를 통한 예산 집행상의 비효율 제거 필요
 - 자동차 연비(평균 에너지이용 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기준은 지경부, 환경부가 협력하여 통합 고시(환경부 소관) 제정으로 바람직한 선례 제공

□ 기후변화 적응대책 강화 필요

- 기온·해수면 상승, 기상재해 증가, 생태계 급변, 건강 위해 증가 등에 대처하기 위한 기후변화 적응대책이 온실가스 감축대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련 과제가 부족하고 추진의지가 미흡*
 - 환경부를 중심으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발표('10.10), 추진중에 있으나, 보건복지부, 식약청, 소방방재청 등 일부 부처들의 적응대책에 대한 의지 부족
- ⇒ 새로운 기후변화 예측 시나리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온·해수면 상승폭과 강수량 증가정도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중앙 부처와 지자체 차원의 분야별 적응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
 - 100년간 1.8℃ 상승하였으나, '20년까지 1.5℃, '50년까지 3.2℃ 상승 전망 (기존 시나리오는 '50년까지 2.0℃ 상승 전망)
 - 강수량 증가에 따른 침수대책, 해수면 상승에 따른 항만 보강방안 마련 등

□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성과평가 내실화 필요

- 일부 사업들의 경우 성과지표가 지나치게 단순*하고 에너지·온실가스 감축효과 등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
 - 계획 및 전략 수립여부, 법안 국회제출 여부, 회의 개최실적 등
- ⇒ 최대한 계량화한 정량적 성과지표를 선정하고, 비용 절감액, 온실가스 감축량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기대효과 도출 추진 필요

2012년 중점 추진과제

■ 정책추진여건

- ◇ 세계 경제위기로 녹색성장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반면, 신규투자를 통한 미래시장 선점 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가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
- ◇ 기후변화가 더욱 심각해지는 연구결과가 계속 발표되면서 국내적 으로는 배출권거래제 도입, 에너지 절약 확산, 적응대책 강화 등 녹색 성장 정책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전망

□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및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RPS) 시행

- '12년부터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체*(458개)를 대상으로 목표관리제가 본격 실시됨에 따라 이를 지원하는 등 관리
 - 연간 125,000 CO2톤 이상 배출업체로서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3 차지. '13년에 '12년도 감축실적을 평가, 목표미달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부여
- 발전회사들의 RPS* 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 지원 추진**
 -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22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10%를 신재생 에너지(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폐기물 등)에서 충당해야 함
 - RPS 공급인증서(REC) 발급, 거래 운영규칙 제정, 운영시스템 구축·운영 등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 기반 구축

- 법안 마련의 후속조치로 배출권 할당 주관부처 결정, 배출권거래소 선정 등 미해결 주요 쟁점에 대해 부처간 이견조정 추진*
 -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 제정 및 배출권거래 운영·관리 방식 연구 등
- 지경부, 환경부가 각각 추진중인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에 대한 장단점 분석 등 평가를 바탕으로 통합 운영방안 마련
 - 환경부는 '10년부터, 지경부는 '11.7월부터 각각 시범사업 시행중

□ **범국민적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운동 추진**

- 고유가 및 정전사태 등을 계기로 전국적, 범국민적인 녹색생활·녹색소비 캠페인¹⁾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 및 CO2 감축 추진
 - 전기기스 절약 뿐만 아니라 종이 사용량 감축(paperless office), 물 사용량 감축(중수도 확대 등), 도시광산사업(폐휴대폰, 폐전자제품 재활용) 확대 추진

□ **녹색건축·녹색교통 대책 확대**

- 공공임대주택 신재생에너지(태양광·태양열) 설치사업²⁾ 확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그린홈)을 지속 추진하고, 단열재 등 녹색건축기술 개발 강화
 - '11년에 태양광 13,322세대, 태양열 4,491세대 설치, 세대당 매월 약 3,500원의 전기료(태양광)와 약 4,500원의 급탕비(태양열) 절감
- 자동차 이용 감소를 위한 선진 녹색교통시스템³⁾ 연구, 반영 추진
 - Car Sharing (전기차 등), Car Pool Lane(전용차선), 자전거 무료대여시스템 등

□ **녹색농업 및 환경분야 녹색성장 사업 확대**

- 녹색 식생활운동 참여 활성화, 도시농업 확대,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 등 녹색농업사업⁴⁾ 지속 추진
 - 어선 LED 보급, 바다숲 조성, 저수지 리모델링을 통한 농업용수 확충 등
- 전기차 보급 확대⁵⁾, 녹색구매 지원센터 설치, 가연성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설치 지원⁶⁾ 등 적극 추진
 - '12년 전기자동차 2,500대, 충전기 2,600기 보급 계획
 - '12년 10개소에 344억원 지원,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포럼 개최 등

□ **다양한 소비자 선택 요금지 개발 추진**

- 에너지 절약을 확산하기 위해 전기요금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선택형 피크요금제⁷⁾,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⁸⁾ 등 도입 추진
 - 희망 소비자에 한해 전력피크 발생일과 시간대에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전력부하가 낮은 때에 낮은 요금을 부과(미국, 프랑스, 대만 등 널리 시행중)
 - 전력 피크 등을 반영하여 차등요금 조정 및 적용대상 확대

3. 일자리 창출 과제

1 평가개요

□ **평가목적**

- 일자리대책의 추진 노력 및 성과를 점검함으로써 정책추진 동력을 강화하고, 개선·보완책을 마련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 제고

□ **평가대상**

- 대상기관: 11개 부처
 -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산림청, 중소기업청
- 대상과제: 45개 과제
 - 기관별 '11년 성과관리시행계획 상 관리과제 중 예산규모가 일정수준 이상 또는 청년층 대상 사업 등 주요 일자리 창출 관련 과제 선정
 - 45개 과제를 과제의 성격에 따라 정부 일자리, 사회서비스·복지, 직업개발 및 창업, 노동시장 제도개선 등 4개 분과로 분류
 - 일자리 창출과제 현황: 참고

□ **평가방법**

- 정부업무평가위원 및 민간전문위원(14명) 등으로 「일자리 창출 과제 평가단」을 구성
- 평가분과별로 각 과제별 실적자료(10월말 기준)를 토대로 평가지표에 따라 정량·정성평가
-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각 분과위원장이 참여하는 검토회의를 개최, 기관별 평가결과 최종 확정

□ **평가지표**

- 정책형성(20): 정책목표의 적절성(15), 정책추진 기반의 확보(5)
- 정책집행(25): 추진과정의 적절성(20),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성(5)
- 정책성과(45): 목표달성도(25), 정책효과(20)
- 정책만족도(10)

2 기관별 평가등급

· 직제순, 굵은 글씨는 포상 대상기관

평가결과	기관명 < 직제순 >
우수 (3)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중소기업청
보통 (6)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미흡 (2)	외교통상부, 산림청

총평

- (여건) 경제회복세로 인해 전반적인 고용상황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청년·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고용 상황은 개선되지 않아 일자리 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수요증가
- (성과) 각 부처가 일자리 창출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함에 따라 고용 개선 흐름에 기여하고, 특히 취약계층 생활안정에 기여
 - '11.1~10월 평균 취업자가 전년동기대비 40.7만명 증가하여 '05년 이후 최고 증가세 시현, 실업률도 지속 하락하여 2%대 진입
 - 취업자 증감(만명): (1/4분기)42.3 → (2/4분기)40.2 → (3/4분기)36.3
 - 전체 실업률(%): (1/4분기)4.2 → (2/4분기)3.4 → (3/4분기)3.1, ('11.10월)2.9
 - 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요인과 함께 사회서비스 사업 활성화 등 정책지원 효과로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의 취업자 증가세 지속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취약계층 참여비율(70%) 설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확대
 - 열린고용사회 구현방안('11.9), 비정규직 종합대책('11.9) 마련 등으로 고용시장 차별시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분위기 확산
- (미흡) 청년실업이 뚜렷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안정적이며 질 높은 일자리 창출·연계에는 한계 노정
 - 청년층 대상 각종 취업연계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추진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고용상황 개선 미흡
 -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 미흡
 -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임금은 전체 임금의 약 50% 수준이며, 임시일용직 비율은 전체 평균의 약 2배로 일자리의 질적 수준이 낮은 실정

1 정부 일자리 분야

-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을 통해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 예산의 재정조기집행 등으로 차질없는 직접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 '11.9월 현재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은 예산대비 76.5%(8.8조원 중 6.7조원), 인원목표대비 95.7%(55.5만명 중 53.1만명) 지원 완료
 - 직접일자리 사업에 취업취약계층 의무고용 비율(70%) 설정 및 우선 참여 실시로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확대
 - '11.9월 현재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취업취약계층은 69.7%(53.1만명 중 37만명)
- 청년인턴 사업의 취업연계 강화 및 해외인턴·봉사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기재부·교과부·외교부)
 -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의 정규직 채용비율(20%) 달성여부를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여 취업연계 강화
 - 공공기관 청년인턴 정규직 전환율(%): ('09)2.8→('10)4.1→('11.9월)12.8
 - 다부처 연계사업인 해외인턴 사업, World Friends Korea 사업의 통합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해외인턴분과협의회'(교과부) 및 '봉사분과협의회'(외교부) 구성·운영
- 정부 일자리 사업의 유사·중복 해소로 효율성 제고(기재부·고용부)
 - 「제2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11.8)을 마련하여 유사·중복 사업의 주관부처 지정 및 참여자 선발·관리 강화 방안 마련
 - 공공근로형(행안부), 학생 안전보호(교과부), 국내·해외인턴(고용·교과부)
 - 다년간 지속 참여 제한 및 고액재산가의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제한 등
-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 미흡(산림청·행안부·교과부·외교부)
 - 직접일자리 사업이 단순 일자리 제공에 머무르고 사업참여자에 대한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프로그램으로의 연계 미흡
 - 산림분야 녹색 일자리 사업은 단순·임시 일자리 제공 사업을 반복하고 있으며, 사업을 통한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연계는 취약한 실정

-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취업연계효과가 낮아 소득보전의 기능을 주로 하여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 효과 미비
 - '11.10월 기준 참여자 62,422명 중 2,887명 취업연계(4.6%)
- 해외인턴 사업 및 World Friends Korea 사업 등은 취업으로의 연계가 가능하나 참여와 취업간의 시차, 일자리 사업으로의 인식 부족 등으로 취업 연계 미흡
 - 해외취업 담당부처(고용부)와 해외인턴·봉사 참여자에 대한 정보 공유부족 등으로 취업연계에 효과적으로 활용 곤란
- ⇒ 일자리 사업간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프로그램과 연계를 강화하여 사업의 효과성 제고
- 일부 사업의 취약계층 참여 목표 비율 달성 미흡(외교부·문화부)
 - 각 사업별로 취약계층 참여 목표를 설정·도려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은 목표에 비해 성과 미흡
 - '11.9월 현재 실적/목표(%): World Friends Korea 1.2/10, 문화예술교육활성화 3.1/10
 - ⇒ 채용목표 미달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을 통해 취약계층 우선 참여를 위한 가점제도 등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차년도 예산배정에도 반영

② 사회서비스·복지분야

주요 정책성과

□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의 고용흐름 개선 주도

- 고령화,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등 사회구조적 요인과 함께 사회서비스 사업 활성화 등 정책지원 효과로 큰 폭의 취업자 증가세 지속
 - 전년동기대비 취업자 증감, 천명

	'11.1/4분기	'11.2/4분기	'11.3/4분기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200	193	125
제조업	228	112	-12
전 체	423	402	363

□ 복지서비스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 구축(복지부·여성부)

- 인력 고용과 수가(酬價) 인센티브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수가(酬價) 가·감산 제도」를 개선하여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질 제고 및 일자리 창출
 -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종사자(천명): ('11.1)219→('11.6)223→('11.9)226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11.11)으로 지원대상자 및 서비스 제공 인력을 확대하여 복지서비스 및 일자리 동시 창출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지원대상자: (기준)3만명→(현행)5만명 서비스 제공인력: (기준)활동보조인→(현행)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등
- 아이돌봄 사업 등 보육서비스 확대로 여성 일자리 창출 및 경력단절 예방
 - 아이돌봄 활동인원(명): ('09)7,774 → ('10)7,262 → ('11.9월)9,991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가정(누적): ('09)99,163 → ('10)144,542 → ('11.10월)156,114

□ 저소득층·장애인·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 자립지원 강화(복지부·고용부·여성부)

- 자활사업 대상자 확대 및 개인 역량에 맞는 자활경로 제시 등 맞춤형 탈빈곤 프로그램 도입으로 저소득층의 일을 통한 자립 지원 강화
 - 취·창업률/탈수급률(%): ('10상반기)10.1/3.8 → ('11상반기)12.6/4.9
- 취업성공패키지에 기초생활수급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노숙인·출소자 등을 새롭게 포함하여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명): ('09)9,947 → ('10)25,229 → ('11.9월)55,197
- 장애인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 확대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확대로 장애인 일자리 확충
 -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1월~9월, 명): ('10)6,706 → ('11)9,461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활용한 취업지원 및 직업훈련 강화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 촉진
 - 새일센터 연계 취업인원(1월~9월, 명): ('10)69,290 → ('11)79,373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사회서비스·복지 분야 일자리의 질적 수준 제고 미흡(복지부·고용부)
 -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임금·근로조건 등 질적 수준은 여전히 낮은 실정

* '11.9 사업체 노동력 조사

	전 체	제조업	사회복지서비스
임시일용직 비율('11.9, %)	13.7	5.4	23.6
임금('11.8, 만원)	289	316	153

-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사업은 임금 수준이 낮고, 단기·임시 일자리로 일을 통해 실질적으로 자립하는데 한계
 - 정부 직접일자리사업 시간당 임금: 노인 4,500원, 장애인 4,470원(최저임금 4,320원)
- 사회적기업의 정부지원 의존도가 높아 정부 인건비 지원 종료 이후 고용이 유지되지 못하는 등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한계
 - '11.5월 현재 '10년 인건비 지원 종료 기업(18개)의 고용유지율은 52.6%에 불과
- ☞ 사회서비스·복지 일자리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고도화 노력 병행 및 시장자립형 일자리 사업 개발 지속 확대
- 관계 기관간 협조 미흡으로 사업 효율성 저하(고용부·복지부·여성부)
 - 사회적기업 관련 유사·중복사업 추진으로 일선 현장에서의 혼란 및 비효율 발생
 - 사회적기업(노동부), 마을기업(행안부), 농어촌공동체회사(농식품부) 등
 - 보육 관련사업 추진시 부처별로 별도 인프라를 구축함에 따라 예산 및 행정력 낭비 초래
 - 아이 돌보미사업(여성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에서 돌보미 양성·교육보육서비스 제공(복지부): 보육교사 교육원 등에서 보육교사 양성·교육
 - ☞ 관계기관 협의를 강화하여 유사 사업간 통합·연계 운영을 추진하고, 공동 활용이 가능한 사업 인프라는 신설 지양
 - 사업 집행과정의 효율성 제고 미흡(고용부)
 -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의 관리·감독 미비로 국외체류 중이거나 입원중인 사람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부정 수급 사례 발생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등의 민간위탁 규모를 확대하였으나, 예산 증가에 비해 취업지원 실적 증가 미비
 - '10년 대비 '11년 민간위탁사업 예산규모는 161% 증가하였으나, 민간위탁을 통한 취업지원 실적은 83% 증가에 불과
 - ☞ 사회적기업 및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점검 및 만족도 조사 등으로 민간위탁기관의 철저한 성과관리 추진

③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창업분야

주요 정책성과

- 중소기업 대상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맞춤형 인력양성으로 인력난 완화 지원(고용부·중기청)
 -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으로 신성장·녹색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녹색산업 훈련(1월~10월, 명): ('10)1,623 → ('11)8,256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확대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 연장으로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현상 완화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만명): ('10)2.9 → ('11)3.2산업기능요원제도 연장: (당초) '12년 폐지 → (연장) '15년 폐지
- 산업별·개인별 맞춤형 교육·훈련 강화로 인력 mismatch에 따른 구인·구직난 완화(교과부·지경부·고용부)
 - 산업별·개인별 특성에 맞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요·공급간 mismatch 해소에 주력하여 구인·구직난 완화
 - (산업별) 산학협력중심대학을 통한 산업계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으로 취업률 제고 17개 중심대학 전체 취업률 56.4% << 산중사업 참여학과 취업률 67.5% (개인별) 기간제 근로자, 이직예정자 훈련비 지원한도 인상(년100만원 → 200만원)
- 특성화고 취업 지원 강화로 취업을 제고(교과부·중기청·고용부)
 - 학교별 취업전담부서 운영 및 산업별·직종별 협약 체결 등을 통해 취업연계를 강화하여 특성화고 취업을 제고
 - 전체 특성화고 취업률(%): ('08)19 → ('09)16.7 → ('10)19.2 → ('11.10월)32.9
 - 중소기업 특성화고 취업률(%): ('08)23.8 → ('09)26.6 → ('10)29.6 → ('11.10월)38.1
 - 능력에 기초한 인사운영 문화 형성을 위한 「열린 고용사회 구현방안」('11.9)을 마련하여 고졸 취업자에 대한 차별 해소의 기반 마련
- 창업환경 개선을 통한 창업 지속 확대(중기청·지경부)
 - 온라인 재택창업시스템, 창업지원대상 확대 등 창업환경을 개선하여 '08년 이후 창업 지속 증가
 - 신설법인수(1월~10월, 개): ('08)43,727 → ('09)46,716 → ('10)49,958 → ('11)53,033

- 비수도권의 일자리 창출 규모와 연계한 지방투자촉진 지원금 지급 등으로 지방 창업 촉진 및 수도권·비수도권간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

· '11.10월말 기준 지원금 지원으로 1,030명의 비수도권 신규고용 창출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청년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취·창업 성과달성 미흡(고용부·중기청)**
 - 청년층 대상 각종 취업연계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고용상황 개선 미흡
 - 산학협력 강화, 청년취업아카데미, 청년인턴, 청년 취업진로 지원 등
 - 창업선도대학 등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청년창업 증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30세 미만 신설법인 등록 수(1월~10월, 개): ('10)2,661(5.3%) → ('11)2,310(4.4%)
 - 대학생 창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 고용부·중기청 등 다수의 부처에서 중복 추진되고 있어 사업간 연계·조정 필요
 - 고용부: 창조캠퍼스·창직인턴, '창직 아이디어 공모전' 운영중기청: 창업선도대학·대학창업교육패키지, '슈퍼스타 V' 운영
 - ⇒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한 교육 강화 및 취업지원 정보인프라를 확대하여 인력 미스매치 현상을 완화하고, 청년 대상 취업·창업 사업 관련부처간 협조체계 강화
- **해외취업 지원 사업의 사후관리 및 효과성 제고 미흡(고용부)**
 - 연수취업생에 대한 체계적인 만족도 조사가 미흡하고, 연수생에 대한 장기(1년 이상) 추적조사 필요
 - '11년 3차례의 모니터링은 8개 항목의 단순 조사에 불과
 - 취업 대상 국가는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국가에 편중
 - 민간 연수업체, 해외 인력알선업체에 주로 의존하여 양질의 일자리 발굴 미흡
 - 지역별 연수인원('11.1월~9월, %): 호주25.8, 중국24.2, 캐나다22.3, 일본6.5
 - ⇒ 해외취업자의 주기적인 추적조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국가다변화 및 국가별 전략직종 선정으로 맞춤형 연수프로그램 운영

④ 노동시장 제도개선 분야

주요 정책성과

- **노동시장 제도개선으로 일자리 창출 및 근로여건 개선(고용부)**
 - 임금피크제를 통해 임금유연화 및 고령자 고용안정 촉진
 - 100인 이상 사업장 임금피크제 도입율(%): ('09)9.2→('10)11.2→('11.9)12.3
 -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 개선, 시간제 보육교사 경력인정 등 시간제 근로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실시
 - 근로인원 산정시 시간제근로자를 0.5인으로 인정하여 중소기업이 종사자 기준초과 우려로 시간제 채용을 기피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조세특례제한법)
 - 20인 미만 사업장의 주40시간제 안착 지원 등 근로시간 줄이기 지속 노력
 - 상용직 초과근로시간(전년동기비 증감, 시간): (1/4분기) -2.9 → (2/4분기) -3.0 → (3/4분기) -2.6
- **일자리 정보제공 확대로 인력시장 미스매치 완화 지원(고용부)**
 - 지역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신설로 지역고용 동향 분석·제공
 - 지역별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공표·추진하는 지역 일자리 공시제 도입('10년)과 연계하여 빈 일자리수, 노동이동 조사·발표
- **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고용부)**
 - 고용과 관련된 현장의 각종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일자리현장지원단」신설·운영
 - '11.10월말 기준 13,947개 사업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 6,287건 해결 및 12,869명 취업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고용서비스망 통합 지연 및 고용통계 내실화 미흡(고용부)**
 - 일부 민간기관·지자체(6개)의 일자리 정보가 워크넷에 통합되었으나, 다수의 일자리 정보망은 통합되지 않고 별도 서비스 제공중
 - 교과부 알앤디잡, 여가부 e-세일시스템·위민넷, 경북·전북 일자리종합센터 등
 - 정부 발표 실업률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실업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개선 미흡
 - 구직단념자, '쉬었음' 인구 등 지표를 발표하고 있으나 실업 규모 및 노동시장의 노동력 상태를 파악하는데 한계
 - ⇒ 워크넷과 타 기관의 일자리 정보와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통계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기존 통계 개선 노력 지속

- 일부 노동시장 제도개선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논란 지속(고용부)
 - 시간제 일자리 확대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부정적 인식으로 시간제 근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
 - 경영계는 노무관리 비용 증가를, 노동계는 비정규직 확산을, 여성계는 고용의 질 저하를 우려
 -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의 청년고용 구축 효과에 대한 논란 지속
 - 정년연장으로 청년고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과 세대간 경쟁력있는 직종이 달라 청년고용의 구축효과가 없다는 의견 상존
- ▶ 불필요한 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노동시장 제도개선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효과 등에 대한 명확한 분석 및 홍보 필요

2012년 중점 추진과제

■ 정책추진여건

- ◇ '10년 이후 빠른 증가세를 보였던 취업자 수는 점차 금융위기 이전 수준의 증가세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
- ◇ 다만, 여전히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고용률 등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글로벌 재정위기 등으로 경기회복세가 둔화될 경우 전반적인 고용여건 악화 가능성 존재

- 일자리 정책 내실화로 일-성장-복지의 선순환 구조 구축(기재부·교과부·지경부·복지부·고용부·여가부 등)
 -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및 신성장동력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
 - 청년·저소득층·노인 등 취약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사업 확대로 일을 통한 자립 지원 및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 직접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중심으로의 정책전환 모색(기재부·고용부 등)
 - 소득보전을 위한 단순 일자리 지원에서 벗어나 직업훈련·취업연계를 강화하여 참여자의 자립이 가능하도록 지원
 - 장기적으로는 직접일자리 창출 사업의 비중을 줄이고 고용서비스* 및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선진국형 일자리 정책으로의 전환 모색
 - 사업주 및 구직자에 대해 구인·구직 정보제공,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청년실업 대책의 효과성 제고(기재부·교과부·고용부·중기청 등)
 -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각부처 정책을 종합 검토하여 정책 효과성 등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 및 관계기관 협조강화 필요
 - 중소기업·대기업간 근무격차 해소, 학력 차이에 따른 불이익 해소, 산업계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 체계 구축 등 노동시장 미스매치 완화로 청년실업의 구조적 요인 제거
 - 고졸 취업자의 정규직 전환 기회 확대 및 임금·승진의 동등한 기회부여 등으로 고졸 취업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지속
-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의 양적·질적 제고를 위한 노력 지속(기재부·복지부·고용부·여가부 등)
 - 고용유발효과 및 성장잠재력이 큰 사회서비스 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일자리 및 복지서비스 확충 지속
 - 기존의 예산지원 의존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장개척, 서비스 질 제고 등 사회서비스 제공주체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임금수준 및 근로여건 개선 도모
- 이해관계자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노동시장 제도개선 지속 추진(고용부)
 - 근로시간 줄이기, 임금피크제 등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유인체계 마련 등 지원 강화
 - 노동시장 제도개선 추진시 경제적·사회적 효과에 대해 사전 분석을 철저히 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 이해관계자와의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여 제도의 성공적 안착 도모

참고 일자리 창출 과제 현황

분과	대과제	관리과제	소관 부처
정부 일자리 (12)	정부차원 일자리 창출사업 (9)	• 공공기관 청년 인턴제 운영	재정부
		• 해외인턴 사업(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교과부
		• 고등학교 취업기능 강화 (산학협력 코디네이터 및 산업체 우수 감사 채용 사업)	교과부
		• World Friends Korea(해외봉사단파견)	외교부
		• ODA 청년인턴	외교부
		• 지역일자리 창출	행안부

분과	대과제	관리과제	소관 부처
정부 일자리 (12)	정부차원 일자리 창출 사업 (9)	•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예술강사 채용·파견 사업)	문화부
		• 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예술강사 채용·파견 사업)	문화부
		• 산림분야 녹색일자리 창출	산림청
	관련 제도 개선 (3)	•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 사업 내실화	재정부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효율화	고용부
		• 일자리 공시제 정착 및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인프라 구축	고용부
사회 서비스 복지 (14)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창출 (6)	•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및 인프라 조성	복지부
		• 탈수급 촉진을 위한 통합적 접근 (자활사업 등 탈빈곤 일자리 내실화)	복지부
		•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도입 등	복지부
		•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의 안정과 내실화	복지부
		• 보육지원대상 지속 확대	복지부
		• 사회적 기업 육성	고용부
	노동취약 계층에 대한 취업 지원 (8)	•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확대	복지부
		• 노인 사회참여 확대	복지부
		•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촉진	고용부
		• 고용지원서비스망 확충	고용부
		• 공공고용서비스 품질제고(직업안정기관 운영)	고용부
		• 취업성공 패키지를 통한 취약계층 취업지원	고용부
		•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지원 강화	여가부
		• 수요자 중심의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여가부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및 창업 지원 (13)	직업능력 개발 훈련 (10)	• 지역산업 수요와 연계한 우수인재 양성 및 기업지원(산학협력) 강화	교과부
		• 산학협력을 통한 맞춤형 인력 양성	지경부
		• 청년취업아카데미 및 청년의 창조적 도전 지원	고용부
		• 인턴과 안정적 일자리 연계 강화	고용부
		• 청년 취업진로 지원	고용부
		•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청년 해외취업 지원 사업)	고용부
		• 중소기업 현장인력의 상시적 능력개발 지원	고용부
		• 개인지원 직업능력개발 사업 통합	고용부
		•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기능인력 공급	중기청
		• 특성화고를 통한 예비기술(기능)인력 양성	중기청
	창업 지원 (3)	• 지역창업(지역투자활성화)과 일자리 확대 (투자촉진보조금, 지역일자리 매칭)	지경부
		• 창업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중기청
		• 1인 창조기업 지원	중기청
노동 시장 제도 개선 (6)	근무형태 다양화 (4)	•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확산	고용부
		• 고용유지·촉진·창출 지원	고용부
		•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퇴직제도 개선)	고용부
		• 근로시간 줄이기	고용부
	일자리 정책 체계 (2)	• 차세대 고용서비스망 확충	고용부
		• 노동시장분석 및 조사강화	고용부

4.서민생활 안정 과제

1 평가개요

□ 평가목적

- 핵심 국정운영 기조인 「서민생활안정」구현을 위해 친서민 정책과제에 대한 추진노력과 성과 등을 종합평가함으로써
- 정책의 추동력을 확보하고 서민층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 등 정책의 실효성 제고

□ 평가대상 : 14개 기관, 28개 과제 (4대 분야)

* 서민경제(10개), 보건·복지(11개), 주거(2개), 교육·문화(5개)

구분	기관명
부단위 (13)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청단위 (1)	중소기업청

□ 평가방법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4명), 민간 전문위원(27명)으로 「서민생활안정 과제 평가단」을 구성·운영
- 효율적인 평가업무 수행을 위해 서민경제, 보건·복지 등 4개 분야별로 평가분과를 구성
- 평가분과별로 각 부처의 실적자료(10월말 기준)를 토대로 평가지표에 따라 정량·정성평가
- 부처내 과제의 범위 및 비중 등 가중치를 고려하고, 민간 전문위원이 평가에 참여하는 등 평가결과의 공정성·객관성 제고
- 분과별 평가결과에 대해서 각 분과위원장이 참여하는 검토회의를 개최, 기관별 평가결과를 최종 확정

□ 평가지표

- 정책형성(15) : 정책목표와의 부합성(5), 정책내용의 타당성 및 계획의 체계성(10)
- 정책집행(25) : 추진일정의 준수성(5), 유관기관·정책과의 협조노력(5), 정책여건 및 상황변화에 따른 대응성(10), 대국민 소통·홍보노력(5)
- 정책성과(45) : 목표의 달성도(20), 정책의 효과성(25)
- 정책만족도(15)

2 기관별 평가등급

* 직제순, 굵은 글씨는 포상 대상기관

평가결과	기관명 (직제순)
우수(2)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청
보통(9)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미흡(3)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방송통신위원회

3 평가결과

총평

- (여건) 최근 경기회복 흐름에도 물가·전월세 상승,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서민들의 경기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상황이며,
 - 생계비 부담완화 대책추진 및 취약계층 대상 사회안전망 보강 등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
 - 금융위기 이후 소득불평등 심화(상대적 빈곤율 : '06)14.4 → '08)15.0 → '10)14.9)
- (성과) 정부에서는 복지지출을 확대하고 서민을 위한 정책과제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서민생활안정에 기여
 - '11년도 복지지출비는 86.4조원으로 '10년(81.4조원) 대비 6.4%p증가

- 서민우대금융 확대 등을 통해 서민층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영세 자영업자 경영개선 지원을 통한 골목상권·전통시장 활성화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대한 보건복지 서비스 확대
- 보금자리주택 제도개선과 더불어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확대 등의 효과로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 확대
-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정책 등을 통해 교육·육아비용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강화

□ (미흡) 서민생활안정 정책의 추진노력 및 성과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효과가 크지 않거나 일부 정책은 실효성이 낮은 문제도 노정

- 대학등록금·통신요금·각종 금융수수료 등의 경감대책에 대한 서민들의 체감도는 여전히 저조
- 소상공인 점포개선 및 신용보증, 중소기업 지원 등은 대상에 따른 맞춤형 지원 부족
- 전월세 안정대책, 저소득층 대상 문화바우처 사업 등은 당초 목적에 비해 정책효과 미흡

분야별 평가결과

① 서민경제분야

주요 정책성과

- 서민층 금융지원 확대 및 금융비용 부담 완화로 서민생계 안정 도모(금융위)
 - 미소금융 등 서민우대금융 확충과 제도개선으로 서민생계자금 및 창업·운영자금 지원 확대
 - '11. 1~10월말 현재,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을 통해 총 1조 9,723억원(222천명) 지원
 - 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 인하*(연44%→연39%), 대출금리 비교공시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서민층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 대부업체 이용자 약 200만명의 이자부담 중 최대 3,150억원 경감효과 예상
-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인 경영지원(중기청, 지경부)
 - 골목상권의 니들가게 개점지원, 상권별 과밀정보 제공 등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
 - 니들가게 육성을 통해 전체 87.2%가 매출증가(평균 매출액 23.2% 증가), 1일 평균 고객 수 21.2% 증가
 - 상권정보시스템 이용자 급증 : ('10) 26천건 → ('11) 49천건
 - 시설현대화·경영 지원, 주변 상권과의 연계 등을 통해 자생력 있는 전통시장이 점차 증가추세
 - ('06) 168개 → ('08) 185개 → ('10) 264개
 - 전통시장 및 지하상가의 백열전구, 할로겐램프를 LED조명으로 교체 지원을 통해 매년 약 27.5억원(30,660MWh)의 전기요금 절감가능
 - 총 311개 시장(개별점포 총 16,206개) 조명교체를 위해 점포당 평균 617천원 지원
- 시장 투명성 제고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보호 강화(공정위)
 - 주요 상조업체(자본금 3억원 이상) 등록을 실시¹⁾하고, 업체의 재무상태 등에 대한 정보공개²⁾를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지원
 - 총 304개 상조업체 정보 등록('11.10월말 기준)
 - 300개 업체 대상 조사결과 상조업체 가입자수 355만 명, 선수금 2조 1,819억원('10년말)
 - 불공정 금융투자약관에 대한 심사 및 시정을 통해 고객의 권리를 강화하고, 금융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
 - 신용카드 약관, 할부금융 약관 등 총 1,061개의 약관을 심사하여 156개 불공정약관(356개 조항)에 대하여 시정요청('11.10월말 기준)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금융수수료 개선 요구에 대한 다각적 대응 미흡(금융위)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를 통한 가맹점 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업종(요식업 등)에서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수수료 인하요구가 확산
 - 또한 은행권의 수수료 수입 과다, 카드사의 포인트 적립 및 할인 축소 등 소비자 혜택 감축추진에 대해서도 부정적 여론이 확산
 - ⇒ 중소기업의 불만과 부담을 감안하여 정책수혜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 강구 필요

- 다양한 정책대상에 따른 탄력적 지원대책 미흡(중기청, 환경부)
 -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점포개선·신용보증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급증하는 50대 이상 중고령층의 생계형 창업(약 310만 명)에 특화된 대책이 미흡
 - 영세 자영업자(5인 미만 사업장) 중 50대 비중은 55.7% 차지('11년 상반기, 노동연구원)
 - 경쟁력 있는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용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미흡한 수준
 - 용자신청(2,650억 원) 대비 예산은 43%(1,150억원)에 불과
- ☞ 소상공인 창업·운영, 중소기업 지원시 수요자 요구에 대응하는 최적화된 지원 필요
- 서민생활 밀접분야의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 미흡(공정위)
 -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불법 다단계 판매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및 사전 예방조치 미흡
 -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마천동 일대에 거주하며 불법 다단계 판매에 관여하고 있는 대학생 등 종사자 수가 5,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11.10)
 - 서민생활과 직결된 헬스클럽, 이동전화 서비스 등 계속거래 분야[※]의 불공정약관(계약해지시 환불거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지속 발생
 -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상품·서비스를 공급하는 거래
- ☞ 불법 다단계 판매, 계속거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불공정 거래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사전예방 점검 및 사후조치 방안 마련 필요

② 보건·복지분야

주요 정책성과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의료사고 피해구제 시스템 마련(복지부)
 - 중증환자, 신생아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및 취약계층 보험료 경감으로 의료비 부담 완화
 - 합입제 보험급여 추가, 폐·계면활성제 급여 인정,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30만원 → 40만원), 18세 미만 소아암환자 양상자 치료 보험적용 등
 - 생계형 체납보험료에 대한 결손처분('11.9월현재, 124,785건 약 929억원), 화재·부도·압류세대의 보험료 경감률 상향조정(20%→30%) 등
 -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11.4)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시스템[※] 마련
 - 기대효과 : 소송기간 단축(평균 26.3개월 → 4개월), 연간 6천건 이상 조정 기대
- 복지서비스 확대를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복지부, 환경부)
 -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확대(소득하위 50%→70%이하), 수요자 중심 어린이집 운영모델[※] 확대 등으로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사업('11.9),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11.7) 등
 - 저소득층 수도요금 감면(862천 가구), 옥내급수관 개량사업(2,728가구)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요금부담 완화 및 생활환경 개선
- 취약계층 생활안정 및 정착지원 강화(농식품부, 여가부, 고용부, 행안부, 방통위)
 - 농지연금제도 도입('11.1~)에 따른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보장, 농어촌주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제고를 위한 건강보험료 (28%) 지원
 - 농지연금제도의 '11년 가입 목표치(500호) 초과(943호), 농가당 월평균 96만원
 - 매월 463천 세대에 건강보험료 지원('11년 예산 : 1,544억원)
 - 장애인·고령층 등 소외계층의 웹 접근성 제고, 농어촌의 광대역 가입자망 확대(49%→60%) 등 계층간-도농간 정보격차 해소 노력
 -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4,000여개, 사랑의 그린 PC 1.7만대 등 보급
 - 다문화 가정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정착 지원[※] 및 교육·취업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안정적인 정착지원 강화
 - 외국인 주민 밀집거주지역의 생활환경 및 인프라 개선(11개 지자체, 13개 사업), '민원24' 등 외국어 안내서비스 확대('11.9), 이북도민관리시스템 구축('11.11) 등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확대('10)159개소→('11)200개소) 및 고용부 '워크넷'과의 연계를 통한 취업지원 강화('11.8월 현재, 총 10,222명 취업 연계)
- 취약근로자의 권리구제 강화 및 근로조건 개선(고용부)
 - 체불예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및 임금체불 처리시스템(체불제로서비스팀) 운영을 통한 체불피해 근로자의 권리구제 신속화[※]
 - 고의·상습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및 금융신용제재 근거 등 마련(국회계류중)
 - 체불민원 조정대상 75,596건 중 55,379건을 5일 이내 조정('11.10)
 - 비정규직 권리보호 기반 마련[※] 및 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차별 개선언건 확대[※] 등을 통한 취약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 차별시정제도 활성화,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담은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11.9)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및 위촉사업장 증가 : ('10)3,839명(3,503개) → ('11)4,698명(4,336개)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실효성 미흡(복지부, 환경부)**
 - 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의료기관 부족, 야간·공휴일의 24시간 비상의료체계 대응 미흡으로 의료서비스의 질과 접근성 저하
 - 응급의료 취약 郡지역(43곳) 중 16곳만 응급의료기관 설치·지정('11.9)
 - 의료취약지의 전문의 등 의료인력 및 장비부족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 질 저하
 - 어린이·노약자 등에 대한 환경보건대책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에 특화된 서비스 부족 및 주거개선 등 실질적인 사업과의 연계 미흡 등으로 인해 정책 체감도는 낮은 수준
 - 건강나누리 캠프(40회 1,580명), 건강도우미서비스(2,000가구), 환경보건센터(12개소) 등
 - (예시) '11년의 건강도우미 서비스(총 2,000가구) 중 취약가구는 1,800가구이나 이중 30가구(1.7%)만 주거개선(벽지·장판 교체) 지원 예정
 - ☞ 의료취약지를 대상으로 우선순위에 따른 의료인프라 집중지원, 취약계층 대상 보건·의료서비스의 내실화 및 관리·감독 강화, 취약가구 주거개선 사업과의 연계 강화 등
- **통신료 부담 완화정책의 실질적 체감효과 미흡(방통위)**
 - 통신업계 설득을 통한 통신비 인하에도 불구하고, 요금인하폭 및 내용이 기대수준에 못미쳐 서민들의 실질적 체감효과 저하
 - 이동통신요금 인하방안('11.6) : 기본료 1천원 인하, 무료메시지 50건 등
 - ☞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해 재판매사업자(MVNO) 지원정책 보완, 요금제의 투명성 제고 및 선불요금제 활성화 등 지속 추진
 - 기존 사업자의 설비를 도매로 제공받아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사업자
- **취약계층 생활안정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미흡(농식품부, 고용부, 여가부)**
 - 농지연금제도 설계시 농촌사회의 다문화가정 증가추세에 대한 고려 미흡으로 인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노출될 우려 제기
 - 부부 모두 65세 이상으로 가입대상이 한정되어 부부간 연령격차가 큰 결혼이민 다문화가정의 경우 고령의 남성농업인은 제도수혜에서 제외되는 결과 초래
 - 가족간·부부간 갈등예방 등을 위한 다양한 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나, 결혼이민자의 가치 및 세대간 갈등으로 인한 다문화 가정의 이혼증가 추세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프로그램 내실화 필요
 - 다문화가정 이혼건수 : ('05)4,171건 → ('07)8,671건 → ('09)13,653건 → ('10)14,319건
 - 최저임금 위반 피해근로자의 자발적 신고 미흡 및 적극적인 지도·감독 미흡 등으로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 저하
 -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196만명('10.8) 대비 근로자의 신고는 664건에 불과('11.9)
 - ☞ 다문화가정의 증가추세를 반영한 농지연금제도 보완 및 가족해체 증가에 대응한 프로그램 내실화, 최저임금 준수를 제고 및 위반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③ 주거분야(국토부)

주요 정책성과

- **보급자리주택 공급 제도개선을 통한 서민·취약계층의 내집마련 기회 확대**
 - 분양주택 및 10년·분납형 임대주택을 소형 위주로 공급 확대
 - 60㎡이하 소형주택 비중 : (분양주택) 20% → 70%, (임대주택) 60% → 80%
 - 소형 보급자리 분양주택의 특별분양에만 적용하던 소득·자산기준을 일반공급분까지 확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의 100%이하, 부동산 2.1억원 이하, 자동차 2,600만원 이하 등
 - 보급자리주택내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대하고, 장기임대주택의 5% 이상을 고령자용 주택으로 공급
 - 기존의 직식 샤워시설, 야간 센서 등 11개 시설 이외에 높낮이 조절세면기, 좌변기 안전 손잡이 등 추가
-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한 주거복지 지원 확대**
 - 최소 주거면적 상향조정, 설비·구조기준 강화 등 최저 주거기준 개선을 통해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11.4)
 - (최소 주거면적) 4인가구 기준 : 37㎡ → 43㎡, (설비기준) 하수도시설 추가, (구조기준) 화재안전시설 추가
 -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가점, 주택개보수 사업 및 자금 지원시 우선순위 부여 등

-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다문화·장애인 가구*** 등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확대('11.3)
 - (주택구입 자금) 대출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 3천만원, (전세자금) 대출소득기준 : 세대주 연소득 3천만원 → 3천 5백만원 등
 - ** (주택구입 자금) 대출금리 : 연 4.7% → 4.2%
 - *** (주택구입 자금) 대출금리 : 연 5.2% → 4.7%, (전세자금) 대출금리 : 연 4.0% → 3.5%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보금자리주택 적기공급 차질**
 - 보급자리주택 공급이 사업시행자의 재무여건 악화, 해당지역 주민·지자체의 반대 등으로 금년도 목표(15만호) 달성이 불투명
 - 수도권 보급자리주택 공급목표는 4만1천가구이나, 3만여가구 사업불투명
 - ☞ 민간주택시장을 고려하여 보급자리주택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사업추진시 보급자리지구 주변 주민실득 강화 등 이해갈등의 원활한 조정방안 마련
 - 보급자리주택 공급이 주택매매 수요감소 및 시세하락 등 민간주택시장 침체 등의 원인이라는 지적 제기
- **전월세 안정대책의 실효성 미흡**
 - 세제 및 건설자금 지원, 전월세주택 공급확대 및 전세자금 지원 등 전월세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 전월세 안정방안('11.1), 전월세안정 보완대책('11.2), 전월세시장 안정방안('11.8)
 - 공공부문 주택공급능력의 약화 및 민간주택시장 위축 등에 따른 신축 주택공급 부족 등으로 전월세가격 안정화 효과 미흡
 - '11.1~9월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 14%('10년 5.1%)
 - 주택공급(준공기준) : ('10.1~10) 279,260호 → ('11.1~10) 266,893호
 - ☞ 기존 전월세 안정대책의 종합점검을 통한 보완책 마련으로 정책 효과성 확보

④ 교육·문화분야

주요 정책성과

- **대학등록금·육아 부담완화 정책으로 서민생활안정 도모(교과부)**
 - 든든학자금 대출제도의 특별추천제 도입, 대출금리 인하(5.2→4.9%) 및 생활비 상환방식 개선(졸업후 소득발생시까지 상환유예)으로 든든학자금의 이용자 증가
 - 든든학자금 이용건수(금액) : ('10) 232,448건(8,456억원) → ('11.10) 302,481건(10,877억원)
 - 국가장학금 확대*를 통한 취약계층 등 대학생의 교육비 부담경감
 - ('10) 4,196억원(125천명) → ('11) 5,218억원(136천명)
 - 유치원 종일제 확대*,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310개)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서비스 체계 구축
 - 유치원 종일제 운영률 : ('09) 95% → ('10) 97% → ('11) 99%
- **위기청소년에 대한 안전망 내실화(여가부)**
 - 위기청소년 종합지원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확충* 및 두드림존(청소년 자립역량 지원) 프로그램 운영 확대**
 - ('09) 97개소(98천명) → ('10) 166개소(128천명) → ('11.10) 186개소(110천명)
 - ** ('09) 20개소 → ('10) 30개소 → ('11) 36개소
 - 청소년 가출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거리상담·보호 지원노력
 - 가출청소년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시범운영(10개지역 123가구), 민관합동 아웃리치(거리상담 및 보호, 6·10월), 청소년 쉼터 운영(83개소)
- **소외계층·지역의 다문화 지원을 통한 문화격차 완화(문광부)**
 - 공연, 문학, 전시, 창작 등 「문화나눔」사업을 통해 소외 지역·계층의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
 - 사랑티켓, 문화멘토 등 9개사업을 통해 총 784,144명 수혜('11.10)
 - 우수 다문화콘텐츠 발굴, 지역 순회공연* 및 이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지역 다문화프로그램 확대**
 - ('10) 1개 작품, 총 10회(9개 지역) → ('11) 5개 작품, 총 30회(24개 지역)
 - ** ('10) 28개 → ('11) 50개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실효성 있는 학자금 부담경감 대책추진 필요(교과부)**
 - 학자금 대출개선, 국가 장학사업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대학등록금과 졸업후 미취업 등으로 인하여 대학생 신용유의자는 지속 증가
 - 학자금 대출 연체자는 69,837명('11.8월)이며,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유의자는 '09년 22,142명, '10년 26,097명, '11년 8월 현재 28,453명으로 증가
 - ⇒ 학자금 대출로 인한 대학생 신용유의자의 양산방지 및 서민의 학자금 부담경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보완대책 강화
- **저소득층 대상 「문화바우처」사업의 실효성 미흡(문광부)**
 - 사업 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발굴 노력 부족, 사업 지원기준 변경²⁾에 따른 혜택 축소 등으로 사업추진 실적은 저조³⁾
 - ('10) 개인당 연5만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11) 가구당 연5만원(저소득층 가구 청소년·복지시설 거주자 추가지원)
 - 문화카드 발급자수 : ('10) 469천명 → ('11.10) 297천명 (금년도 목표(680천명) 대비 약44%)
 - ⇒ 대상자 발굴을 위한 지자체와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및 적극적인 사업홍보 등을 통한 문화카드 이용률 제고 등 사업의 실효성 제고
- **위기청소년에 대한 선제적 대응노력 강화 필요(여가부)**
 - 다양한 청소년 상담채널 구축, 거리아웃리치 활동 등을 통해 위기청소년 예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가출 등 위기청소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가시적 성과는 미흡
 - 가출청소년(신고) 현황 : '08)23천명 → '09)22천명 → '10)28천명(경찰청)
 - 또한, 가출청소년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보호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
 - 전국 83개 청소년 쉼터 수용인원은 851명('10)으로 가출청소년(28천명) 대비 3%
 - ⇒ 각종 청소년 위기 예방·보호 프로그램 운영성과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 강구와 더불어 위기청소년 보호 인프라 지속 확충

2012년 중점 추진과제

■ 정책추진여건

- ◇ 유럽재정 위기여파 등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지속으로 경제성장 둔화, 물가 상승, 가계 실질소득 감소 등이 예상됨에 따라 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복지요구는 증대
- ◇ 또한, FTA 확대 등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어촌과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대책 확대 필요성이 증가

- **대내외적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에 따른 서민생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민생활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확충(기재부, 복지부, 고용부 등)**
 -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하되, “일을 통한 복지” 등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근로의욕 저하·시장기능 저하 등 제도적 부작용도 최소화
 - 또한, 서민층이 체감하는 가시적 정책성고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 관련 부처와의 연계 및 소통·홍보 등 정책적 역량 집중
 - 서민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기 추진대책을 지속 점검·보완 및 내실화하는 한편, 서민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발굴 추진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 **서민층 생활·생업 안정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통한 금융지원 대책의 효과성 제고 및 생활안정지원 강화(금융위, 지경부, 농식품부 등)**
 - 미소금융, 햇살론 등 기존 서민금융 지원망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되, 가계부채 상황 등을 감안하여 서민금융기관의 여신 건전성 관리방안도 강구
 - 서민층의 가계부담을 고려하는 에너지요금 현실화방안과 실효성 있는 농어가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 추진
- **서민의 보건의료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고,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등 복지서비스 확대(복지부, 농식품부, 행안부, 고용부)**
 - 약국의 판매의약품제도의 조속한 도입, 의료취약지의 선택·집중지원 및 응급의료기반 확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노력 강화
 - 다문화가족 증가추세를 반영한 농지연금 제도개선, 농어촌·장애인 등 취약계층 정보격차 완화 및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 보호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지원확대 및 제도개선 등의 지속적 추진(국토부)
 - 공공주택 공급 능력 및 민간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한 보급자리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지자체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계획된 물량을 차질없이 공급
 - 전월세 주택 공급 및 주택자금 등의 지원 확대, 주택기금 대출기준 개선, 전월세 시장상황의 모니터링 등을 통해 시의성·실효성 있는 전월세 안정화 대책 추진
- 서민층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부담 경감 및 문화복지 내실화를 통한 서민생활의 안정 확보(교과부, 복지부, 문광부)
 - 학자금 대출제도의 지속개선 및 취약계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확대 등 서민의 교육비 부담완화 지속 추진
 - 5세 누리과정의 조기정착 및 소외계층 문화바우처 사업의 실효성 제고노력

참고 서민생활안정과제 현황 (분야별)

분야	과제명	주요내용
서민경제 (7개기관, 10개과제)	소기업 금융지원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행안부)	• 영세소기업 금융지원 • 친서민 세제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활성화 등 농가생활안정 지원 (농식품부)	• 농작물 재해보험 활성화 및 농가경영회생지원시스템 구축 • 농기계 임대 활성화
	취약계층 에너지 안전 및 복지 서비스 강화 (지경부)	• 기초생활수급가구 LPG호스 교체 • 사회복지시설 가스·전기시설 점검 및 교체 • 전통시장내 백열등을 LED로 교체
	환경분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환경부)	• 생계형 화물차 환경개선 부담금 경감, 영세상인 종량제 봉투값 경감 • 중소기업 환경자금 및 화학물질관리 기술지원, 영세사업장 소음진단·개선 지원 등
	불공정행위 시정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소비자 권익 강화(공정위)	• 국민피해 다발분야의 불공정약관 시정 • 국민생활 밀접분야의 표준약관 제·개정
	취약계층 피해다발분야 소비자 피해예방 (공정위)	• 부당한 특수거래·할부거래 피해예방·시정 • 전자상거래 분야 피해예방 • 취약계층 소비자교육 강화
	미소금융 활성화 등 서민층 금융애로 해소 (금융위)	• 미소금융 활성화 • 서민대출의 안정적 운영 • 신용회복지원 강화
	서민층 금융 이용부담 경감 및 피해방지 (금융위)	• 저소득층 금리부담 경감 • 신용카드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 완화 • 불법 사금융 피해최소화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 (중기청)	• 상권별 과밀정보 제공 및 소상공인 경영혁신역량 제고 • 골목슈퍼를 경쟁력 있는 현대식점포(나들가게)로 개선 • 자영업자 신용보증지원을 통한 경영환경 개선
	전통시장 활성화(중기청)	•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 지원 • 자생적 영업기반 확보를 위한 경영개선 지원
보건·복지 (8개기관, 11개과제)	다문화가정 지원 및 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 (행안부)	• 더불어 사는 다문화사회 구현 • 취약계층 정보화 역기능 및 정보격차 해소
	농어업인 건강 연금보험료 지원 등 농어촌 복지 개선(농식품부)	• 농어민 건강 연금 보험료, 취약농가 인력 지원,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용자 • 농지연금 활성화
	우정사업의 나눔경영 확대 (지경부)	• 나눔과 배려의 행복사회 조성 • 우체국보험의 나눔경영 확대

분야	과제명	주요내용
보건·복지 (8개기관, 11개과제)	취약아동·보육지원 강화(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유자 중심 보육서비스 확충 • 취약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
	서민의 의료 이용부담 완화 및 편의 제고(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의료전문모금기관 설립 지원 등 서민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 서민의 병원 이용편의 제고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 등 환경복지 강화(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상하수도 확충,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 • 석면피해구제 및 환경성질향 예방·관리강화
	취약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고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대 고용질서(체불예방, 최저임금확보, 서면근로계약 활성화) 확립 • 3대 고용차별(비정규직, 여성, 고령자) 시정 강화
	취약계층 근로복지 강화(고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근로자의 복지 증진 • 일·가정 양립형 일자리 함께하기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가족 지원(여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기반마련 • 다문화가족 지원 확대 • 건전한 국제결혼문화 조성 지원
	통신비 경감 등 방송통신 이용환경 개선(방통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요금 부담 완화 •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정책 강화 •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송통신 이용자 피해구제
	도농(都農)간 정보격차 해소(방통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광대역망 구축 및 서비스 모델 발굴
주거 (1개기관, 2개과제)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정착(국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금자리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 • 서민을 위한 실용적 보금자리 주택건설
	취약계층 주거지원 등 서민 주거복지 안정(국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 전·월세 등 주거비 안정 •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주거지원 강화
교육·문화 (3개기관, 5개과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저소득·소외계층 교육지원(교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정·탈북청소년 교육지원 • 장애학생 지원 확대 •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학비부담 경감 등 교육복지 강화(교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 내실화 • 든든학자금 제도 정착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여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지원 • 지역사회 청소년 위기 개입 강화 • 청소년 인터넷 중독 해소
	소외계층 문화복지 강화(문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외계층·지역 문화향유 지원 • 다문화사회 문화권 신장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및 편의시설 개선
	문화분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문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 중소 스포츠용품 제조업체 해외진출 등 지원

5. 정책관리 역량

1 평가개요

□ 평가목적

- 각 부처가 주요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정책활동의 관리 노력 및 성과를 평가하여 적극적인 리더십 발휘를 통한 정책성과 창출을 촉진

□ 평가대상

○ 대상기관 : 38개 중앙행정기관

분야	소관부처		
	장관급(19)	차관급(19)	
경제	I	기재부, 공정위, 금융위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II	농식품부, 지경부, 국토부, 방통위	농진청, 산림청, 중기청, 특허청
사회문화	교과부, 문화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성가족부		문화재청, 식약청, 기상청
일반행정	법무부, 행안부, 권익위		법제처, 경찰청, 소방청, 행복청
외교통일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보훈처, 병무청, 방사청, 해경청

□ 평가방법

- 평가의 전문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민간 전문가 평가단’* (38명)을 구성·운영
 - 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핵심과제 평가와 동일하게 5개 평가 분과(경제 I·II, 사회문화, 일반행정, 통일외교안보)로 구분
- 전문가 평가단이 각 부처에서 제출한 실적자료(10월말 기준)를 토대로 평가지표의 특성에 따라 정량·정성평가를 병행
- ‘부처 업무설명회’를 통해 피평가기관의 설명기회 제공

□ 평가지표

- 이슈대응(30) : 정책이슈 선제적 발굴·대응 정도(10), 나눔과 배려 관련 정책수행 노력(20)
- 조정·통합(15) : 정책 이해관계자 지지확보 활동의 적극성(5), 부처간 협력도(5), 대 국회 지지 확보 및 대응 노력(5)
- 집행관리·지원(40) : 통계 선진화 기반조성 노력(5), 업무계획 이행·관리 노력(5), 행정관리 효율화 노력(30)
- 공직기강 확립 노력(15) : 자체감사·감찰활동 강화 노력(8),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노력(4), 반부패 분위기 및 의식제고 노력(3)

2] 기관별 평가등급

* 직제순, 굵은 글씨는 포상 대상기관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최우수 (2)	행정안전부	병무청
우수 (8)	고용노동부, 법무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관세청, 국세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보통 (18)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통일부, 국방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통계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기상청, 문화재청, 중소기업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해양경찰청
미흡 (8)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법제처, 국가보훈처, 방위사업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 평가결과

총평

- (여건) 무상급식 등 복지논쟁·대규모 정전사태·한미FTA 비준 등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일으키는 정책현안 이슈들이 지속 발생
 - 나눔과 배려에 기반한 공정사회, 공직부패 고리 차단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 (성과) 정책과제 발굴의 현장성을 강화하고 국회·언론 등에서 제기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정책의 적시성·적합성 제고
 - 범정부적 현안에 대한 관계부처간 공동대응이 확산되고, 다양한 경로를 활용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에 대한 지지와 순응도 제고에 노력
 -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통계 개발 및 개선을 위한 노력과 통계의 정책 활용도 향상
 -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3%) 달성,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확대 등으로 사회적 약자 배려와 공정사회 구현에 숭신
 - 부처 자율적으로 구조적인 부조리 분야에 대한 기획점검 실시 등 비리척결을 위해 노력

- (미흡) 정치권 대립 등으로 국회의 원활한 협조를 얻기 어려워 주요 법안 등이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 다수 발생
 -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기 대치가 지연되거나 대중적·소극적 대응으로 문제가 확산되고 국민불신이 가중되는 사례 발생
 - 정책추진과정에서 폭넓은 의견수렴·설득 및 공감대 형성 노력 부족으로 정책집행에 일부 차질 발생
 - 일부부처의 경우 온정주의적 처분관행이 지속되고 있고, 부패소지가 있는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대한 인식도 다소 부족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이슈 대응

- 정책이슈 선제적 발굴·대응
 - 이해관계자·국회·언론 등에서 제기된 정책이슈들에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책의 효과성 및 현장 적합성 제고에 노력
 - 고용부 : '일자리 현장 지원단'을 운영,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각 부처·지자체와 공동으로 해결(6,287건)
 - 여가부 : 아동·청소년 교육시설 종사자(141만명)를 전수조사하여 부적격자 배제 조치
 - 산림청 : 산림치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치유 효과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단기방문·장기체류형 치유의 숲을 조성·운영
 - 그러나 정책현안이 사회이슈가 된 이후 대처하거나 대중적·소극적 대응으로 오히려 국민들의 불신이 가중되는 사례 발생
 - 지경부 : 전력공급의 안정적 관리 미흡으로 대규모 정전사태(9.15)를 유발하였고, 대처과정에서도 책임회피 논란을 야기
 - 경찰청 : 인천 조직폭력배 난투극 발생('11.10월)시 초동대응 및 상황보고 미속 등 공권력 침해 범죄에 대한 사전 대응 미흡
 - 행복청 : '12년까지 시범생활권에 12천여 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키로 했던 7개 건설사가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건설사업을 포기, 약천여세대 공공주택 공급에 차질 발생
- ⇒ 잠재적 이슈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외부에서 제기된 이슈에 대해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

나눔과 배려

- 장애인 고용 노력(의무고용률 : 정부·공기업·준정부기관 3%, 기타공공기관 2.3%)
 - 부처(38개, 3.06%)·공기업(27개, 3%)·준정부기관(81개, 3.26%) 전체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였고, 21개 부처는 중증장애인 35명을 특별채용 하는 등 장애인 고용에 선도적 역할
 - 국가보훈처(6.71%)·병무청(4.42%)·고용부(3.94%)·환경부(3.82%)·행안부(3.35%)·산림청(3.3%) 등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회하고 중증장애인 특별채용도 실시
 - 일부 부처와 기타공공기관(122개)은 의무고용률에 미달
 - 공정위(2.92%)·경찰청(2.58%)국방부(2.56%)·농진청(2.55%)·기재부(2.53%)·기상청(2.52%)·방통위(2.37%)·교과부(2.18%)·외통부(1.45%)
 - ⇒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기관장이 장애인 고용 현황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중증장애인 특별채용 확대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노력(구매의무 : 총구매액의 1% 이상)
 - 일괄구매 방식 등 각 부처 실정에 맞는 방식을 통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확대를 위해 노력
 - 행안부 : 각 실국에서 집행하는 500만원 미만 소모품 구입비 지출을 억제하고, 운영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10년 634백만원→'11년 3,388백만원)
 - 조달청 :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적극적 구매활동으로 우선구매비율이 4.26%로 최고
 - 그러나 전체부처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은 0.54%로 구매의무(1%)에 미치지 못하는 등 전반적으로 실적이 저조
 - 해경청 등 일부부처는 계속해서 구매실적 저조
 -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우수기관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 하는 등 우선구매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식 강구 필요
-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노력(중소기업제품(50%, 의무), 기술개발제품(10%, 권장))
 - 전체부처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율('10년 54.3%→'11년 62.1%)과 기술개발제품 구매율('10년 3.1%→'11년 5.2%)이 '10년 대비 증가
 - 특히, 중소기업제품 법정 구매율(50%)은 34개 부처가 달성
 - 국방부 : 산하 기관의 중기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등의 적극적 노력으로 중기제품 구매율이 전년보다 12.2% 증가('10년 71.4%→83.6%)
 - 그러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권장 구매율(10%)에 미달한 부처가 31개에 이르고, 일부부처의 경우 구매실적이 전무
 - 금융위·국가보훈처 등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이 전무
 - ⇒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대한 부처의 인식 제고 및 기관별 구매실적에 대한 자체평가 등을 통해 구매동기 유발 필요

조정·통합

□ 정책 이해관계자 지지 확보 활동의 적극성

- 대다수 부처가 정책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간담회·공청회 등 다양한 통로를 활용한 의견수렴으로 실질적 정책성과 창출 노력
 - 법무부 : 학계·변협·관계부처 등 폭넓은 의견수렴으로 형법 개정안 국회 제출('11.3)
 - 행안부 : '04년 이후 추진 지연되었던 「개인정보보호법」을 시민단체·국회 대상으로 공청회·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및 설득으로 입법화
 - 특허청 : 변리사회를 설득하여 「발명진흥법」을 개정,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범위를 변리업 이외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하고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
- 일부부처는 이해관계자간 이견이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정책 추진시 폭넓은 의견수렴이나 설득·설명 노력 등이 부족
 - 교과부 : 대학구조개혁과정에서 평가 하위대학의 재정지원 제한과 관련, 충분한 공감대 형성 미흡 등으로 평가기준의 적절성 논란 및 대학들의 반발 초래
 - 금융위 : 금융위의 가계대출 증가율 적정수준 관리 의도가 일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취급 제한 등으로 알려지는 등 정책상대방과의 의사소통이 미흡
- ☞ 이해관계자와의 다양한 소통 창구 마련을 통해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 노력을 강화하고 시민단체·언론 등에 대한 설득 노력도 병행

□ 부처 간 협력도

- 범정부적 현안에 대해 부처가 공동 대응하거나 협의를 통해 정책에 관한 부처간 이견이 조정·해소되는 추세 확산
 - 법무청 : 교과부와 연계로 온라인 확인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역 모집병들의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에 따른 불편을 해소('11.8월~10월까지 13,641명 수혜)
 - 농진청 : 중기청·식약청과 공동주최로 '농공상 융합 EXPO'를 개최하여 농공상 창업지원 활성화를 통한 동반성장에도 기여(계약체결 8개 업체 42억원)
 - 복지부 : 자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5세 누리과정" 지원범위 관련 부처간 이견(복지부·교과부 100% / 기재부 소득하위 70%)을 극복하고, 도입 합의('11.5월)
- 일부 정책은 관계부처간 충분한 협의가 부족하거나 지연되어 정책수립·집행을 실효하거나 정책 혼선을 초래
 - 국방부·보훈처 : 6.25전쟁 전사자 사망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적극적 협의 부족 및 책임 공방으로 인해 정부의 신뢰성 저하
- ☞ 부처간 이견이 있는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정책수립 단계부터 관계부처에 대한 사전설명과 협의 등을 강화할 필요

□ 대 국회 지지 확보 및 대응 노력

- 대부분의 부처가 예산, 입법, 현안 정책 등의 추진시 적극적으로 국회에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얻기 위해 노력
 - 권익위 : 「공익신고자보호법」개정을 위해 정무위 위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
 - 관세청 : 국회의 적극적 협조를 통해 포워더(화물운송주선업자) 관리요건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여 포워더의 물류 지배력을 약화할 탈법행위를 방지
- 일부의 경우 쟁점 정책이나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법안 등의 해결을 위한 대 국회 지지 확보 및 대응 노력 미흡
 - 방통위 : 종편 방송이 개시되었음에도, 종편의 직접광고 허용여부에 대한 여야간 입장대립으로 미디어법 법안이 상임위에 계류 중
 - 보훈처 : 보훈단체 수익사업 운영실태 문제점 개선(매출 10억이상 사업장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등)을 위한 관련법을 개정안이 관련단체 반대 등으로 국회 통과 지연
- ☞ 국회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당정협의·정책설명회 등을 적극 추진하고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득 등의 전방위적 노력 필요

집행관리·지원

□ 통계 선진화 기반조성 노력

-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통계 개발 및 기존통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고, 통계를 활용한 정책수립 및 집행·업무개선·예산 절감·평가 등 통계의 정책 활용도 제고
 - 교과부 : 통계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교육통계 품질관리 개선방안'을 시행하여 대학의 교육환경 및 질적 수준 평가 등에 활용(78개 부실대학 및 300개 우수대학 선정)
 - 국세청 :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주요세목에 대한 경정 결정 통계 및 연말정산 현황을 세분화하여 저출산 대책·여성인력 활용방안 등 마련에 활용
- 그러나 일부부처는 정책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통계의 개발·개선 및 통계 활용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부족
 - 법제처 : 정부 승인통계 및 e-나라지표 등으로 관리되고 있는 통계가 전무
- ☞ 각 부처별로 통계역량(전담조직·전문인력 등)을 강화하고 정책 수립시 통계 활용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

□ **업무계획 이행·관리 노력**

- '11년도 업무계획 과제 1,185개 중 지연과제는 총 109개로 이중 부처에 책임 있는 사유로 지연된 과제는 55개(부처당 약 1.4개)
 - 대외환경 및 추진여건 변화에 따른 지연, 법률 국회통과 지연 등은 제외
- 지연의 주요원인은 근거법을 제·개정, 기본계획 수립 등 선행절차 지연에 따른 것으로 당초 추진계획이 미흡한 것 등에 기인
 - ⇒ 계획단계부터 철저한 사전예측과 준비를 통해 연초부터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연요인 최소화 노력 필요

□ **행정관리 효율화 노력**

- 청 단위가 부 단위보다 조직·인력 운용의 효율성이 높았으며, 정보화 역량은 전부처의 수준이 높고 부처간 편차도 적었음
 - 38개 기관 모두 유동정원을 지정·운영하여 효율적 인력운용을 통한 신규증원 억제에 기여하였으며, 특별채용시험의 절차 준수로 시험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노력
 - 법제처·권익위 등 19개 기관이 모바일 서비스 및 SNS 등 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서비스를 확대하였고, 외교부·복지부 등 15개 기관은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보안을 강화
- 그러나 자체 조직진단에 대한 부처 역량이 부족하고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8.5%)이 '11년 목표(10%)에 미달
 - 금융위 : 4급 이상 여성관리자 및 일반직 고위공무원단 이공계 임용실적 전무
 - 방사청 :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이 낮고(25%), 고위공무원단 성과를 관대하게 평가
- ⇒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부처 자체 조직진단 역량을 강화하고,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위한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등 필요

공직기강 확립 노력

- 대부분의 부처에서 기관장을 중심으로 공직기강 확립 의지를 갖고 비리 척결을 위해 노력
 - 각 부처 자율적으로 불합리한 관행을 발굴·개선하고 구조적인 부조리 분야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하는 등 소기의 성과 달성
 - 교과부 : 비리발생 우려가 높은 업무분야에 대한 예방적 제도개선(학교생활기록부 부당정정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업무특성을 고려한 기획점검 실시(학교 출지 근절을 위한 기획점검 등)
 - 공정위 : 내부감찰팀 신설, 청렴음브즈만 도입, 퇴직공무원 윤리규정 강화 등 비리예방 활동 강화
- 일부부처의 경우 공직비리에 대한 온정주의적 처분관행이 지속되고, 부패소지가 있는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인식이 결여
 - 외교부 : 상하이 사건 관련자의 징계결과에 대한 상급기관의 재심의 요구를 미조치
 - 국토부 : 연찬회 사건에 대해 언론보도 등으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된 후에야 관련자에 대한 조치를 재검토 하는 등 관행적 비리에 대한 대처가 미흡
- ⇒ 각 부처는 비위자 엄정 처벌, 감사역량 강화, 업무특성 및 조직문화에 따른 관행적·구조적 비리 척결 등 공직기강 확립 노력 강화 필요

2012년 중점 추진과제

- 내년도는 총선·대선 등 정치권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정책이슈가 제기되고 시혜성 정책요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사회적 논란 가능성이 있는 정책이슈가 사회문제로 심화·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점검 및 선제적 대응에 역점
- 특히, 대폭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 다양한 정책요구에 대해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
- 임기 마지막 해, 선거 등 정치권 상황을 감안하여 대내외 상황에 흔들림 없는 엄정중립의 복무자세 및 공직기강을 확립
- 공공문명이 앞장서 장애인고용·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를 실천하여 나눔과 배려에 기반한 공정사회를 구현

6. 정책홍보

1 평가개요

□ **평가목적**

- 법정부적 핵심과제에 대한 충실한 홍보계획 수립 및 기관간 협력홍보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

□ **평가대상**

- 대상기관 : 39개 중앙행정기관
 - 업무특성에 따라 정책기관과 집행기관으로 구분하되, 지표별로 조직특성(정원 및 홍보담당인원)에 따른 분류를 병행하여, 평가의 형평성·수용성 제고

구분	기관명
정책기관 (19개 장관급)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집행기관 (20개 차관급)	법제처, 국가보훈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대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평가방법

-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민·관 합동 정책홍보 평가단」 운영(총31명)
- 각 부처가 e-IPSES 시스템에 등록·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정량·정성 평가 실시, 필요시 근거자료 확인 및 현장조사를 병행
- 부처별 정책홍보 추진 성과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국민 소통 활성화 및 평가결과의 객관성 확보

□ 평가지표

- 정책홍보 기획(25) : 법정부적 홍보계획의 충실성(15), 범부처 홍보계획과의 연계(10)
- 정책홍보 활동(30±5) : 뉴미디어 홍보 활용도(20), 대언론 브리핑 충실도(5), 외신대상 홍보활동 수준(5), 주요 정책 공보대응 실적(±5)
- 정책홍보 성과(45) : 주요정책 기획홍보 성과(25), 정책 브랜드 홍보성과(10), 기관장 홍보활동 수준(10)

② 기관별 평가등급

· 직제순, 굵은 글씨는 포상 대상기관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최우수 (2)	행정안전부	중소기업청
우수 (6)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경찰청, 산림청
보통 (25)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미흡 (6)	지식경제부, 환경부, 금융위원회	법제처, 대검찰청, 방위사업청

③ 평가결과

총평

- (여건) 트위터·페이스북 등 뉴미디어가 활성화되면서 대국민 정책정보 제공 유형이 다양화되고, 정책 이슈의 파급력도 증가
 - 한-미 FTA·4대강 등 법정부적 국정과제 및 다수부처 관련 정책 이슈에 대응한 부처간 협력 홍보의 필요성 증가
- (성과) 「공정사회」·「천서민정책」등 국정 아젠다 및 핵심 국정성과에 대한 법정부적 홍보를 통해 대국민 체감도 제고에 노력
 - 온라인대변인제도 활성화·공직자 SNS 활용 가이드라인 도입 등 법정부적 온라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뉴미디어를 정책홍보에 적극 활용하는 등 미디어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 '스토리 텔링' 등 국민 눈높이에 맞춘 부처별 기획홍보를 통해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 인지도 및 공감대 제고
 - 기관장의 정책현장 설명회 및 트위터 등 SNS 활용을 통한 적극적 소통 노력으로 국민의 관심·지지 제고
- (미흡) 관계 부처간 사전 협의 및 조정 절차 없이 단독 보도를 추진하거나, 부처간 발표내용이 달라 신뢰성이 저하되는 사례 존재
 - 일부 부처는 매체별 특성에 맞는 콘텐츠 생산이나 정책고객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이 다소 부족
 - 일부 부처는 보도자료 배포·브리핑 등에 주로 의존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 홍보기법의 활용이 미흡

분야별 평가결과

① 정책홍보 기획

주요 정책성과

- ‘공정사회’, ‘친서민정책’ 등 핵심 국정 아젠다에 대한 범정부적 연계·협력홍보를 통해, 대국민 정책 체감도·인지도 제고
 - 부처별 단위과제 홍보도 국정운영 기조에 맞춰 정책성과를 체계적·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홍보 시너지 효과 달성
 - (공정사회) 공정병역 분위기 조성을 위한 병역명목 선정, SNS를 활용한 병역이행 홍보를 공정사회 구축 노력과 연계하여 홍보 시너지 달성(병무청)
 - (친서민정책) ‘전통시장 홍보’를 위한 온·오프라인 행사, 민간단체 연계 이벤트 등을 적극 활용하여 친서민 정책 체감도 제고(중기청)
- ‘부처 대변인 협의회’ 등 부처간 홍보협의체를 적극 활용, 부처간 엇박자·중복 등을 방지하고 정부 정책홍보의 일관성·효과성 제고
 - 정책발표 이전 관계부처간 정책공유 : △2010 국가정보보호지수(방통위) △국가사이버안전수준(행안부) △제1차 한·중·일 대테러협의회(외교부) 등
 - 현안이슈 조기발표 : △설 연휴 교통관리대책 조기발표(2.1→1.26, 경찰청), 유사이슈 통합발표 : △국제국물가 상승 대응방안 △수산물 수급동향(농식품부 통합발표)
- 주요정책 기획 홍보시 면밀한 홍보환경 분석 하에, 페이스북·트위터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적절히 활용하여 홍보성과 제고
 - 추석 특별수송대책 홍보 관련 귀성객들이 필요로 하는 실용적 정보를 제공하는 등 스마트폰을 정보전달 및 확산 수단으로 적절히 활용(국토부)
 - 스마트재난관리안전체계 홍보시 동일 콘텐츠로 다양한 미디어를 홍보수단으로 활용(방재청)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구제역 ▲B 원전사고 ▲복지논쟁 가속화 등 대형 이슈 발생으로 ‘공정사회’, ‘친서민정책’ 등 주요 국정 아젠다 홍보성과 일부 희석
 - ⇒ ‘공정사회’, ‘공생발전’ 등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대국민 소통 노력 지속
- 외교부·방사청 등 일부 부처는 정책대상별 전략과 프로그램이 구체화되지 못하여 효과적인 대국민 소통에 다소 한계
 - 정부 3년 성과홍보시 홍보전략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세부 액션플랜의 참신성도 미흡(외교부), 홍보 메시지가 부각되지 못하고, 홍보 프로그램도 미약(방사청)
 - ⇒ 부처별·정책 고객별 특성에 맞는 홍보 아이템 및 홍보 프로그램 발굴 노력 강화
- 일부 부처는 일부 사안에 대해 정부 내부 사전 협의·조정 절차 없이 부처 단독 발표를 추진함으로써 홍보 시너지 효과 반감 및 신뢰 저하 초래
 - 수능시험에 IT 과목을 포함한다는 지경부 발표 직후, 사전협의를 없었다며 교과부가 반박함으로써, 부처간 엇박자 사례로 부각
 -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금융위), 장병 사기 복지증진 예산확대(국방부)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사전 조율·협의 절차 누락
 - ⇒ 주요정책 발표시 관계부처간 사전 홍보계획을 수립·공유하여 부처간 유기적 협력홍보 전개 및 정책홍보의 효과성 제고

② 뉴미디어 활용

주요 정책성과

- 교과부·통일부·중기청 등 다수 부처가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SNS를 적극 활용하여, 온라인홍보 활성화에 기여
 - SNS마이스터고 이벤트(교과부), SNS 전략가이드북 마련(통일부), 카페트 브리핑(중기청) 등 SNS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국민과 소통
- 행안부·방재청 등은 정책포털(www.korea.kr)에 주요 국정과제와 홍보현안에 대한 정책정보 및 정책기고를 적극 게재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 및 체감도 제고에 기여
 - 전관여유 근절, 도로명 주소전환 등 현안정책 기고 통해 국민들이 알기쉽게 설명(행안부)
 - 지속적인 정책기고 통해 재난방지, 안전사고 등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 환기(방재청)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검찰청 등 일부 부처의 경우, 매체별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정책고객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려는 노력 미흡
 - 페이스북에 트위터 메시지 단순 연동(법무부) 및 블로그 단순 링크(병무청) / '11.8~10월간 트위터 10건, 페이스북 6건(법제처), 페이스북 실적 없음(검찰청)
 - ⇒ 부처별 정책 특성에 적합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생산·홍보하고, SNS 매체별 특성에 맞는 홍보전략 수립·운영

□ 일부 부처는 개조식 보도자료 그대로 정책포털에 연계하거나 정책기고 게재실적이 저조하여, 수요자 중심의 홍보전개 및 소통 노력 미흡

• 5세 누리과정, 대학등록금, 원자력 등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수요가 높은 반면 정책기고 게재실적 저조(교과부)

⇒ 일반 국민이 인터넷 포털에서 정책정보 검색시 친근하고 이해하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 콘텐츠 마련

③ 대언론 홍보

주요 정책성과

□ 농식품부 산림청 등 다수 부처가 e-브리핑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대언론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기자만족도 상승 등 취재 환경 개선

• 브리핑 : 32회('10년) → 42회('11년, 31%증) / 공개자료 : 545건 → 675건('11년, 24%증)

• 출입기자 취재지원 만족도 : 52.05%('10년) → 63.15%('11년)

□ 주요정책 관련 언론보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11.6월, 온라인 '홍보카페' 개설) 및 선제적·체계적 공보대응 활성화로 정책 신뢰성 제고

• 총 401건의 대응이슈를 발굴, 245건(61.1%)에 대해 적극 대응('11.5~10)

□ 외교부·금융위 등은 외신 대상 홍보 네트워크 구축 등 전략적·체계적인 대외신 홍보를 통해 국가 이미지 및 신뢰도 제고

• 국내·외 외신 및 해외투자자 대상 텔레컨퍼런스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정책을 설명하여, 한국경제 관련 부정적 뉴스를 사전에 차단(금융위)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일부 부처는 허위·과포보도나 온라인 상의 이슈에 대해 상황 설명에 소극적이거나, 부처간 사전협의가 다소 미흡

• 온라인 게임 프로그램 해킹 관련 경찰청과 문화부간 발표 상이('11.8)

⇒ 오프라인 상의 공보대응과 함께 온라인 상의 이슈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부처간 협력 대응체계 강화

□ 교과부 등 일부 부처는 외신 홍보와 관련, 주요 의사결정자의 동정 및 부처 행사 홍보에 치중하는 등 전략적 홍보에 한계

• 외신홍보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나 아젠다 발굴 실적 미흡(교과부)

⇒ 주요 국제 행사시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콘텐츠 개발, 외신 대상 홍보 플랫폼 다변화 등 포괄적인 홍보전략 마련

④ 기관장 홍보활동 및 정책 브랜드 홍보

주요 정책성과

□ (기관장 홍보활동) 39개 부처 기관장이 총 5,025건의 방송출연, 인터뷰, 정책설명회, 뉴미디어 홍보 등 활발한 홍보활동 전개

• 기관장 홍보실적이 전년 대비 4.1% 증가

〈활동유형별 기관장 홍보실적〉

구분	방송출연	인터뷰	기고	정책설명회	강연회	간담회	뉴미디어홍보	계
'11년	239	467	207	981	400	543	2,188	5,025
'10년	286	657	238	673	613	476	1,886	4,829

○ 외교·문화·국토부 등 25개 기관장이 개인 SNS를 활용, 국민과 직접 소통하려는 노력 가속화('10년은 농식품부·법무부 등 15개 기관장만 활용)

○ 특히, 행안·국토부, 방재·농진청 등은 기관장이 현장방문 등 계기를 적극 활용, 정책홍보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정책 공감대 확산에 기여

• 자전거길 개통 관련, SNS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한 일관성 있는 홍보를 추진하여 긍정적 이슈로 전환(행안부)

- (정책 브랜드 홍보) 각 부처의 대표 정책(58개)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선호도는 보통이상 수준(6.45점, 10점 만점)

※ 정책 브랜드 국민인식조사 개요

- 대상/방법 : 전국 일반국민 600명 / 면접조사
- 조사기간 : '11.10.28~11.8
- 조사내용 : 정책 브랜드(58개*)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50%), 선호도(50%)
- 장관급(19) : 기관당 2개(38개) / 차관급(20) : 기관당 1개(20개)

- 정책별로는 소방차 길 터주기(방재청), 현금영수증(국세청), 성폭력 안전지대(법무부)가 국민 인지도·선호도에서 우수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기관장 홍보활동) 기관장별 홍보활동 격차가 크고, 일부 부처는 기관장이 관련 행사 참석 외에 적극적인 정책홍보 노력이 부족
 - 기관장 실적 저조 : 대검찰청·식약청·법제처·문화재청(청단위), 국방부·금융위(부단위)
- 방송출연·인터뷰 등 언론활동 실적은 작년에 비해 감소하여, 일반국민에게 영향력이 큰 매체의 효과적 활용 노력은 다소 미흡
 - 방송출연 : 286건('10) → 239건('11) / 인터뷰 : 657건('10) → 467건('11) / 기고 : 238건('10) → 207건('11)
 - ⇒ 방송 등 영향력 있는 매체 활용도 제고, 기관장을 적극 활용·부각시키는 홍보전략 수립 및 뉴미디어 활용 노력 강화
- (정책 브랜드 홍보) 검찰시민위원회(검찰청), 한국농업의 바람, 강소농(농진청),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법무부) 등 일부 부처의 정책 브랜드에 대한 국민 선호도·인지도 저조
 - ⇒ 국민과의 상호교감 속에 긍정적 이미지를 가진 네이밍 탐색 노력 및 정책 브랜드에 대한 대국민 노출을 강화

2012년 중점 추진과제

■ 정책추진 여건

- ◇ 스마트폰 등을 중심으로 뉴미디어의 활용도가 지속 증가하면서 이용자간 정책정보의 교류·확산 속도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
- ◇ 인터넷·IT기기를 통한 '2040 세대'의 정책과정 참여 증대 전망

- 국정 운영 성과에 대한 전략적 홍보 강화
 - '공생발전', '공정사회' 등 주요 국정 아젠다에 대한 그간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별 특성에 맞는 홍보계획을 수립·시행
 - 범정부적 연계·협력 강화를 통해 정책 홍보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국정 성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 '2040 세대'와의 소통 강화를 위한 뉴미디어 홍보 활성화
 - '2040 세대'의 공감대 확보를 위해 연령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 제공을 확대하고, 기존의 텍스트 위주 보도자료 외에 인포그래픽스 (infographics)*를 이용한 홍보 활성화
 - 사진·삽화 등 시각적 표현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
 - 온라인 대변인 제도의 안정적 정착 등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한 온라인 홍보 대응체계의 활용 강화
- 기관장의 능동적 대국민 소통 노력 지속 확대
 - 국민과의 직접적 소통을 통한 정책 이해도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해 기관장이 정책현장을 직접 방문·설명하는 노력 강화
 - 기관장을 적극 활용·부각시키는 홍보전략을 수립하고, 기관장의 SNS 활용을 통한 양방향 소통 활성화

7. 규제개혁

1 평가개요

- 평가목적
 - 국민부담 완화와 편의 제고를 위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추진 노력 및 성과를 평가

□ 평가대상

- 대상기관 : 등록규제가 6개 이상인 31개 중앙행정기관
 - * 부 단위(18개), 청 단위(13개) 기관별로 등록규제 수를 기준으로 그룹핑, 평가결과와 신뢰성 제고
 - ※ 등록규제가 5개 이하인 9개 기관(국무총리실,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검찰청, 조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통계청, 병무청, 방위사업청)은 제외

□ 평가방법

- 규제개혁추진에 수요자의 입장을 반영하고, 평가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관합동 규제개혁 평가단」을 구성·운영(총 10명)
- 평가지표의 특성에 따라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병행
 - * '규제개혁과제 발굴' 등은 정량적 평가, '규제개혁 효과' 등 정성적 항목은 민관합동 규제개혁평가단에서 평가, 고객만족도' 등은 전문연구기관을 활용

□ 평가지표

- 추진기반의 적실성(21, ±3) : 규제개혁 추진역량(8), 규제개혁과제 발굴의 적극성(13, ±3)
- 시행의 적정성(34) : 신설·강화규제의 적절성(22), 홍보와 의견수렴의 적극성(12)
- 규제개혁 성과(30, -3~+4) : 규제개혁과제 이행실적(15, -3~+4), 규제개혁 효과(15)
- 규제개혁 만족도(15)

2 기관별 평가등급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최우수(2)	국토해양부	관세청
우수(5)	환경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17)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업부, 지식경제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미흡(7)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국가보훈처, 국세청, 농촌진흥청

3 평가결과

총평

- (여건) 미국·유럽의 재정위기와 경기침체, 물가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 기업경영상의 애로요인과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계속됨에 따라, 이를 해소·완화하기 위한 규제개선 요구 증대
- (성과) 각 부처가 총 928개 규제개혁과제를 개선하여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공정사회 구현」 등에 기여
 - 국민생활 불편사항 일제 개선, 건설산업 하도급 규제 개선 등을 통해 규제에 인한 국민부담을 경감하고,
 - 기업의 부담능력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도록 하는 규제적용 차등화 방안을 마련, 규제부담 형평성 제고
 - 신설·강화하고자 하는 규제에 대한 체계적 검토로 불합리한 규제 형성 억제 및 규제 품질 제고
 -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를 강화하고 규제영향평가를 내실화하여 중소기업 부담 및 시장경제 왜곡을 최소화
 - 규제위는 신설·강화규제 총 954건을 심사, 중요규제 173건 중 87건 개선 또는 철회 권고
- (미흡) 일부 규제개혁과제는 법률개정 등 후속조치가 미진하여 규제개혁의 가시적 성과 도출 미흡
 - 관계기관·이해관계자 협의 미흡, 정책환경 변화 등으로 당초 계획에 비해 추진 일정이 지연
 - * 10월 기준 완료대상과제 942건 중 142건이 계획 대비 지연
 - 일부 부처에서는 자체규제심사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 불합리한 규제신설 억제에 한계

1 규제개혁과제 발굴·정비

분야별 평가결과

- '11년은 각 부처별로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국민부담 경감 등을 위해 총 928건의 과제를 개선 완료
 - * 1,434개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고 10월 기준 완료대상과제 942건 중 928건 완료(완료율 98.5%)

- '산업단지내의 입주 최소 분할 면적 완화'(1,650㎡→900㎡) 등 입지·창업 규제 개선 등을 통해 기업투자환경 개선
- '직장보육 시설 설치 가능 층수 제한 완화'(3층→5층) 등 각종 생활 규제 개선으로 국민부담 경감
- '한부모·조손가족 주민등록 수수료 면제' 등 부담능력의 차이를 고려한 규제개선으로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

주요 사례

주요 과제	조치사항	주요성과
① 투자활성화 및 미래대비		
• 산업단지 입주 최소 분할면적 제한 완화 (지식경제부)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11.7)	• 산업단지 내 소규모 기업의 입주를 지원, 산업단지 분양률 제고 및 중소기업 기업환경 개선
• 관공호텔 교통유발계수 조정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11.9)	• 1~3급 관공호텔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및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 신규 확충에 기여
② 국민부담 경감		
• 직장보육시설 설치가능 층수 완화 (보건복지부)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11.4)	• 보육시설 설치가능 층수를 확대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
• 장내기능시험 및 도로주행 시험 통합·일원화(경찰청)	•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11.4)	•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 및 비용부담 경감
③ 취약계층 및 중소기업 지원		
• 한부모·조손가족 주민등록 관련 수수료 면제(행정안전부)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11.3)	• 한부모·조손가족 등 취약계층의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절감
• 모바일콘텐츠 수익배분 환경 개선 (방송통신위원회)	• 모바일 콘텐츠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제정('11.4)	• 오픈마켓 사업자와 개발자간 공정한 거래기반 및 동반성장 환경 조성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교육과학기술부, 국가보훈처 등 일부 부처는 등록규제 수에 비해 과제 발굴 실적 미흡**
 - 교과부 : 등록규제 수 495개, 과제 수 30개 / 보훈처 : 등록규제 수 192개, 과제 수 17개
 - ⇒ 경제단체·지자체 건의, 국민제안 공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의견수렴 및 개선과제 발굴 추진
- **완료대상과제 중 142개 과제는 관련 기관 협의지연, 상위법 개정 지연 등으로 계획 대비 추진이 지연**
 - '하천, 하천수온도차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에 포함'(지경부) 과제는 이해 관계자 협의 미흡으로 입법 지연(6월 완료 계획이었으나, 현재 입안 중)
 - '축산물의 가능성 표현 허용'(농림부)은 관계부처(복지부, 식약청 등) 이견 등으로 지연(9월 완료 계획이었으나, 현재 부처협의 중)
 - 규제개선이 완료된 경우에도 현장의 추진성과 및 이행실태 등이 미흡한 경우도 존재
 - 일부 과제는 선행되어야 할 연관사업의 지연, 정책환경 변화, 정책내용 변경 등으로 지연되거나 추진 중단
 - '동반성장이행 우수기업에 공동계약 인센티브 부여'(기재부)는 동반성장지수 발표(동반성장위원회)가 늦어짐에 따라 지연(당초 5월 완료 계획이었으나, 현재 입안 중)
 - ⇒ 규제개혁과제의 적시 법령 개정을 위해 신속한 정부 내 입법 절차 추진 및 대국회 설득 노력 등 후속조치 이행 강화
 - ⇒ 제도 개선이 완료된 규제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현장 집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규제개혁 이행 성과 확산

② 신설·강화규제 심사

주요 정책성과

-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시행하여,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형성을 사전에 억제**

- 규제개혁위원회는 954건의 신설·강화 규제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173건의 중요규제 중 87건(50.2%)에 대해 철회·개선 권고('11.10말 기준)
 -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11.8월 개정, 총리실)에 따라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내실화
 - 주요 개정내용 : 비용·편익 분석절차 단계별 세분화, 미래가치의 적정할인을 제시 등

주요 심사 사례

- 변호사법 시행령 개정안(법무부)
 - 로펌 근무 퇴직공직자의 보수·월별 상세활동내역 제출의무 관련, 보수내역은 제출하되 월별 활동내역 및 보수의 산정내역 제출은 삭제토록 개선권고
-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환경부)
 - 폐지·고철을 폐기물 관리법 적용대상으로 추가하는 개정안에 대해 폐지·고철에 대한 규제 필요성 등을 추가 검토토록 하고 철회권고

- 기획재정부 등 일부 부처의 경우 자체규제개혁위원회의 대면회의 비율이 매우 저조하여 실질적 심사에 한계
 - 자체규제개혁위원회(7회)를 모두 서면회의로 개최하였으며, 22건의 자체 심사규제에 대해 모두 원안 동의
 - ⇒ 주요 안전에 대한 대면회의 의무적 개최,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한 체계적 안전처리 등을 통해 자체심사의 내실화 도모
- 법무부, 문화재청 등 일부 부처는 규제 대안 및 비용·편익 분석 등 규제영향분석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
 - ⇒ 규제영향분석시 규제 신설·강화 이외에 피규제자 부담이 낮은 대안의 검토, 규제도입에 따른 B/C 분석 등을 충실히 수행
 - 총리실은 각 부처 담당자의 규제영향분석 역량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우수사례 전파·확산

③ 중점과제 정비

주요 정책성과

- 핵심 국정과제와 직결되거나 다수부처 관련 과제는 총리실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점 개선하여 국민불편 해소 및 공생발전 기반 조성에 기여

< 국민불편 해소 >

-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발굴·개선
 - 임신부 출산휴가를 산전·산후 분리사용 허용 등 511건
- 영업자 부담경감을 위해 각종 신고·제재 등 영업규제 발굴·개선
 - 약국 명칭, 소재지 변경신고 위반 등에 대한 형벌 규정의 과태료 전환 등 65건

< 공생발전 기반 조성 >

- 건설분야 공생발전 기반 확충을 위한 건설하도급 규제 합리화
 - 하도급자에 대한 부담특약 유형 확대 등 10건
- 공생발전을 위하여 기업규모 등에 따라 규제를 차등적용토록 하는 '중소기업 규제부담 형평성 제고방안' 마련
 - 총리 주재 「중소기업 애로해소 대책회의」개최(10.31)
- 주요 규제개혁과제의 성과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적극 알림으로써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
 - 각 부처별로 설문조사를 통해 기업·국민이 뽑은 'Best 10-10' 과제에 대해 다양한 수단을 활용(Media Mix)하여 홍보
 - 홍보 영상물 제작·표출(K-TV, 국회방송, 유튜브 등), 지하철 광고 및 홍보 로고·캐치프레이즈 제작 등 종합적 홍보 실시

주요 심사 사례

- '공무원 응시연령 폐지'에 대해 TV 생활방송, 중앙신문 등을 통해 스토리텔링에 기반하여 홍보 실시(행정안전부)
- 각종 농식품분야 규제개혁의 내용을 홍보만화로 제작하여 블로그, 페이스북, 온라인 카페 등에 지속 홍보(농림수산식품부)
- '온라인 재택창업시스템을 통한 창업절차 간소화'에 대해 중앙·지역 방송, 신문, 인터넷, 현장방문 등을 통한 효과적 Media Mix로 반복·지속적으로 홍보(중소기업청)

- 문화체육관광부 등 일부 부처는 전략과제(관계부처 합동)의 이행이 당초 계획 대비 부진
 - '비디오올 제작업 영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의 과태료 전환' 과제는 상위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제작에 관한 법률) 개정 지연으로 시행령 개정 지연
 - ⇒ 일반국민 등 규제개혁 수요자에 대한 의견수렴을 강화하여,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전략과제 지속 개선 추진
- 국방부, 금융위원회 등 일부 부처는 규제개혁과제에 대한 홍보가 형식적이거나 보도자료 배포 등 일방적인 홍보에 그침
 - ⇒ 제도개선 사항과 성과를 국민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주요 규제성과를 종합 정리, 정책고객별로 차별화된 홍보 실시

④ 규제개혁 만족도

- '11년도 규제개혁에 대한 종합 만족도는 67.2점('10년 66.4점 대비 0.8점 상승)으로 나타남
 - 약간만족(66.67점)과 만족(83.33점)사이
 - 부단위 기관에서는 농식품부*가 73.8점으로 가장 높고, 국방부**가 55.9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임
 - 일반국민 71.6점, 전문가 79.2점, 내부고객 70.4점
(‘어선기관 변경시 개조허가 면제대상 확대’ 과제 등의 내용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 일반국민 54.1점, 전문가 63.3점, 내부고객 44.2점
(‘사공유지 정리 종합대책 마련’ 과제 등의 내용·절차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첨단위 기관에서는 관세청*이 80.4점으로 가장 높고, 보훈처**가 55.4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임
 - 일반국민 78.8점, 전문가 85.5점, 내부고객 74.7점(‘외국인 여행자에 대한 내국세 환급절차 개선’ 과제에 내용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 일반국민 48.3점, 전문가 67.9점, 내부고객 60.7점(‘국가공공자 등 보훈특별고용제도 개선’ 과제의 내용·성과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규제개혁만족도 평가결과(직제순) 〉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우수 (7)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관세청, 경찰청, 산림청
보통(17)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방재청, 문화재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상청, 해양경찰청
미흡(7)	기획재정부, 통일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2012년 중점 추진과제

■ 정책추진 여건

- ◇ 유럽의 재정위기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과 함께, 가계부채와 물가, 고용불안 등 전반적인 경기전망이 불투명하여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애로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
 - OECD는 우리나라 '12년 경제성장률을 금년과 비슷한 3.8%로 전망
 - 중소기업 부담 경감 및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 주요 규제개혁 과제의 지속적인 추진 노력 필요

- 규제부담 차등화 등 공생발전을 위한 규제 정비
 - 규제부담 능력이 낮은 중소기업 등에는 규제의 차등 적용으로 규제부담의 형평성 제고
 - 서민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민생친화적(Life-Friendly)으로 정비
- 일자리 창출 및 경기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 입지·환경 등의 규제개선 및 행정조사 등 각종 부담의 경감을 통해 기업투자환경 개선
 - 과도한 부담이 되는 규제 신설·강화는 최대한 억제
-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 제고 및 개혁 인프라 확충
 - 그간 완료한 규제개혁 과제의 이행상황·성과 점검, 주요과제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을 통해 개혁성과의 현장 착근 및 체감도 제고

8. 국민(정책·민원) 만족도

1 국민만족도(정책·민원) 부문 평가개요

□ 평가목적

- (정책만족도) 국민이 직접 평가한 주요정책에 대한 만족도 결과를 반영·활용하여 고객 위주의 정책 추진 도모
- (민원만족도) 중앙행정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대국민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유도

□ 평가대상기관(39개)

구분	기관명(직제순)
부단위기관(19)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청단위기관(20)	법제처, 국가보훈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대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해양경찰청

□ 조사표본 및 평가대상기간

○ 정책만족도

조사대상	모집단	표본	대상기간
일반국민	전국의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제주도 및 도서지방 제외)	총 4,800명 (16개 책형 × 300명)	'11.1.1~9.30
전문가	기관별 ① 자체평가위원, ② 정책고객(PCRM DB)중 교수·연구원, ③ 자문위원, ④ 관련분야 전공 교수와 학회·연구단체 종사자	총 1,710명 (38개 기관 × 45명)	

* 기관별로 선정된 핵심과제 114개(부단위 4, 청단위 2)에 대해 설문조사

○ 민원만족도

구분	모집단	표본	대상기간
일반민원	중앙행정기관 본청 및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민원접수대장에 기록된 민원인(방문·우편·전화)	일반민원 및 인터넷민원 모집단 구성 비율에 비례하여 각 기관별로 표본(250명 이상, 최대 450명)을 추출하여 총 25,337명 대상으로 조사	'10.10.1 ~ '11.9.30
인터넷민원	국민신문고, 중앙행정기관 본청 및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신청한 민원인		

* 민원만족도의 경우 상반기('10.10~'11.4), 하반기('11.5~9월) 등 2회 설문조사

□ 평가방법

-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 조사
- 정책만족도 조사는 일반국민과 전문가를 70:30 비율로 반영

□ 평가항목

○ 정책만족도

평가항목	평가지표(세부 설문내용)	
항목 만족도(70%)	민주성	• 정책수립·집행과정에서 고객의 의견수렴 및 공개와 소통을 통한 정책 협조노력 정도
	적정성	• 전략목표, 성과목표, 정책수단 등 정책의 구체적 내용이 적정하게 설정된 정도
	대응성	• 정책추진 과정에서 정책환경의 변화를 극복하고 문제점을 시정·보완하기 위해 노력한 정도
	효과성	• 정책이 당초에 의도한 계량 및 비계량적 성과가 실제로 나타난 정도
체감만족도(30%)	• 해당정책 전반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총체적 만족도	

○ 민원만족도

평가항목		평가지표(세부 설문내용)
항목 만족도 (70%)	접근성	• (인터넷민원) 민원신청시 홈페이지 접근과 서식 입력이 간편한 정도 • (일반민원) 담당 공무원과의 면담·통화와 서식 작성이 용이한 정도
	신속성	• (인터넷·일반민원) 담당 공무원이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한 정도
	대응성	• (인터넷민원) 민원시스템에서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쉽게 알 수 있는 정도 • (일반민원)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민원인을 응대한 정도
	공정성	• (인터넷·일반민원) 민원처리 결과의 근거·이유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도
체감만족도(30%)		• 해당 민원서비스 전반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총체적 만족도

2 정책만족도 평가 결과

총평

- 2011년도 39개 중앙행정기관(114개 핵심과제) 정책만족도 평균은 63.22점으로 나타남
 - 부 단위 기관의 정책만족도 평균은 61.81점이며, 청 단위 기관은 64.56점
 - 청 단위 기관의 정책만족도 수준이 부 단위 기관에 비해 2.75점 높음
- 금년도는 전년에 비해 일반국민과 전문가 만족도가 모두 상승함으로써 상승세로 반전
 - 최근 3년간 정책만족도 추이 : '09) 60.97 → '10) 59.92 → '11) 63.22점
 - 부 단위 기관 : '09) 59.81 → '10) 59.40 → '11) 61.81점
 - 청 단위 기관 : '09) 62.07 → '10) 60.39 → '11) 64.56점
 - 일반국민은 58.96점으로 2010년(55.84) 대비 3.12점 상승(5.6%), 전문가는 71.22점으로 2010년(69.06) 대비 2.16점 상승(3.1%)
- 한편, 조사항목별로 정책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 일반국민과 전문가는 모두 정책수립집행 과정에서의 의견수렴 등 '민주성' 항목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
 - 반면,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정책의 '효과성'을 낮게 평가
 - 이는 국민들이 느끼는 정책성과에 대한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데 기인
 - 일반국민 : 민주성(59.55) > 적정성(59.19) > 대응성(58.98) > 효과성(58.47) • 전문가 : 민주성(71.25) > 적정성(69.84) > 대응성(69.63) > 효과성(69.06)

기관별 평가 결과

부 단위 기관

- 부 단위 19개 기관, 76개 핵심과제의 정책만족도 평균은 61.81점으로 나타남
 - 여성가족부가 67.14점(일반국민 61.97점, 전문가 75.33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임
 - 양성평등 확산 및 여성의 역할 강화(66.55), 여성·아동의 인권보호 및 체계적 지원(66.50), 한부모가족·성매매피해여성 등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강화(66.26), 청소년의 역량 강화(64.19) 등 핵심과제 모두 높게 평가
 - 반면, 통일부는 58.05점(일반국민 59.97점, 전문가 53.56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임
 - 올바른 남북교류질서 확립(53.52), 북한이탈주민 희망프로젝트 추진(58.96), 북한의 바람직한 비핵평화·대외개방·민생우선 변화유도(59.13), 통일대비 인프라 구축(59.43) 등 과제 모두 대체로 낮게 평가

< 정책만족도 부 단위 기관 평가결과 >

평가결과	기관명 <직제순>
상위 (4)	지식경제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보통 (11)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업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하위 (4)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통일부, 국토해양부

청 단위 기관

- 청 단위 20개 기관, 38개 핵심과제에 대한 정책만족도 평균은 64.56점으로 나타남
 - 기상청이 68.87점(일반국민 64.22점, 전문가 75.81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임
 - 맞춤형 기상예보 및 서비스 역량 강화(69.72), 지진·화산폭발 등 위험기상 관측 및 대응능력 제고(64.66) 등 핵심과제가 모두 높게 평가
 - 반면, 방위사업청은 59.24점(일반국민 56.04점, 전문가 63.70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임
 - 효율적인 방위사업 추진(58.04), 방위산업 및 국방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58.78) 등의 과제에서 모두 낮은 평가

< 정책만족도 청 단위 기관 평가결과 >

평가결과	기 관 명 (직제순)
상위 (4)	병무청, 농촌진흥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보통 (12)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산림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하위 (4)	법제처, 국가보훈처, 방위사업청, 중소기업청

③ 민원만족도 평가 결과

총평

- 2011년도 39개 중앙행정기관 민원만족도 평균은 73.72점으로 나타남
 - 부 단위 기관의 민원만족도 평균은 68.84점이며, 청 단위 기관은 77.68점
 - 청 단위 기관의 만족도 수준이 부 단위 기관에 비해 8.84점 높음
- 2010년까지 상승세가 지속되었으나, 금년도는 일반·인터넷 민원 만족도에서 모두 소폭 하락함으로써 하락세로 반전
 - 최근 3년간 민원만족도 추이 : '09) 72.36 → '10) 74.43 → '11) 73.72점
 - 부 단위 기관 : '09) 68.27 → '10) 70.39 → '11) 68.64점
 - 청 단위 기관 : '09) 75.54 → '10) 78.17 → '11) 77.68점
- 한편, 조사항목별로 민원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 일반민원에서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도 등 '대응성' 항목이, 인터넷민원에서는 홈페이지 '접근성' 항목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
 - 반면, 일반민원과 인터넷민원 모두 민원처리 결과의 '공정성' 항목에서 낮게 평가
 - 이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기인
 - 일반민원 : 대응성(79.42) > 접근성(78.05) > 신속성(75.93) > 공정성(71.66) · 인터넷민원 : 접근성(78.21) > 대응성(74.60) > 신속성(73.88) > 공정성(69.17)

기관별 평가 결과

부 단위 기관

- 부 단위 19개 기관 민원만족도 평균은 68.84점으로 나타남
 - 행정안전부가 82.55점(일반민원 65.04점, 인터넷민원 82.90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임
 - 인터넷민원의 '접근성'(81.99), '신속성'(78.45), '대응성'(81.52) 항목 등이 평균보다 높아 전체 만족도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
 - 반면, 금융위원회는 60.60점(일반민원 62.47점, 인터넷민원 60.30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임
 - 일반민원 '공정성'(50.59)과 인터넷민원 '신속성'(52.77)과 '공정성'(47.08) 등의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어 저조한 결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

< 민원만족도 부 단위 기관 평가결과 >

평가결과	기 관 명 (직제순)
상위 (4)	통일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보통 (11)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하위 (4)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청 단위 기관

□ 청 단위 20개 기관 민원만족도 평균은 77.68점으로 나타남

- 해양경찰청이 92.21점(일반민원 94.36점, 인터넷민원 82.60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임
 - 일반민원의 '접근성'(90.65), '신속성'(90.49), 공정성(89.16) 항목 등이 평균보다 높아 전체 만족도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
- 반면, 대검찰청은 64.95점(일반민원 65.96점, 인터넷민원 59.20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임
 - 일반민원 '공정성'(52.04)과 인터넷민원 '신속성'(57.59), '대응성'(56.72), '공정성'(42.32) 등의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어 저조한 결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

〈 민원만족도 청 단위 기관 평가결과 〉

평가결과	기 관 명 <직제순>
상위 (4)	관세청, 병무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보통 (12)	국세청, 조달청, 통계청, 방위사업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하위 (4)	법제처, 국가보훈처, 대검찰청, 경찰청

Ⅲ. 향후 추진계획

□ 평가결과 환류 및 정책 개선

- 평가결과 종합 및 각 과제별·기관별 평가보고서를 부처에 환류하여 2012년 업무계획에 반영하는 등 정책개선에 활용
 - 「2012년 업무계획 작성지침」에 2011년 평가결과를 2012년 업무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여 부처에 기통보
 - 내년도 정부업무평가(정책관리 역량 분야)에서 평가결과 반영여부 점검
- 평가결과 우수사례는 각 부처에 전파하여 상호 학습 및 벤치마킹을 통해 정책의 품질 제고
- 미흡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별로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추진
 - 미흡사례는 내년도 정부업무평가시 우선 점검하고, 심층분석이 필요한 과제는 총리실에서 정책현안과제로 선정, 개선방안 마련

□ 평가결과 우수기관 포상

- 평가결과 부문별로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포상금 지급
- 평가 우수기관 유공자에 대한 포상 병행

□ 평가방법 발전방안 마련

- 평가과정·결과에 대한 피평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도 평가계획 수립·운영시 반영
- 평가대상 수준 및 범위, 평정결과와 공정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통계기법 활용 등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
 - ※ 정부업무평가위원·정책분석평가실 워크숍시(12.16~17) 개선방안 토론

2012년 특정평가 결과 보고서

I. 평가개요

□ 평가 목적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주요정책·관리역량을 평가함으로써 국정운영의 책임성 제고 및 국정성과 창출을 유도
- (근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에 의거하여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

□ 평가 대상기관 : 40개 중앙행정기관

- 장관급 기관(21) : 부(15) 및 장관급 기관¹⁾(6)
- 방송통신위원회·국가과학기술위원회(신규)·원자력안전위원회(신규)·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 차관급 기관(19) : 외청(17) 및 차관급 기관²⁾(2)
- 법제처·국가보훈처

□ 평가 부문 : 7개

- ① **핵심과제** : 중앙행정기관별 대표적 정책과제의 추진노력과 성과를 평가(40개 기관)
- ② **일자리 과제** : 일자리 대책의 추진노력 및 성과를 평가(11개 기관)
- ③ **녹색성장과제** :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주요 녹색성장 시책의 성과를 평가(24개 기관)
- ④ **정책관리 역량** : 중앙행정기관의 주요업무 추진에 따르는 필수적인 정책활동의 관리노력 및 성과를 평가(40개 기관)
- ⑤ **규제개혁** : 국민부담 완화와 편의제고를 위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추진노력 및 성과를 평가(28개 기관)
- ⑥ **정책홍보** : 범정부적 핵심과제에 대한 홍보계획 수립 및 기관간 협력홍보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41개 기관)
- ⑦ **국민(정책 및 민원)만족도** : 고객 위주의 정책추진을 위해 주요정책 및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만족도를 평가(41개 기관)

□ 평가 방법

-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평가부문별로 민간전문가 평가단을 구성³⁾·운영하여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제고
- (민간전문가 평가단) 핵심과제 196명, 일자리과제 14명, 녹색성장과제 23명, 정책관리역량 38명, 규제개혁 14명, 정책홍보 18명
- 정책형성·집행·성과 등 정책과정 전반을 점검·평가하되, 정책성과에 중점
- 핵심과제·일자리과제·규제개혁·정책홍보 부문 평가의 경우 수요자 지향적 평가를 위해 국민만족도 조사결과를 평가에 반영
- 부처 업무설명회를 통해 피평가기관의 업무추진 노력 및 성과에 대한 소명 기회 제공
- 평가방식은 평가단이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병행 실시⁴⁾하고,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확정
- 각 부처가 제출한 실적자료(10월말 기준)를 토대로 실시

□ 평가 결과 제시

- 평가결과는 평가 부문별 특성을 반영하여 기관별 등급화
-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으로 구분하여 평가
- (상대평가)전 기관 공통사항으로 기관 간 우열이 필요한 6개 부문은 상대평가
- ① 핵심과제 ② 녹색성장과제 ③ 정책관리역량 ④ 규제개혁 ⑤ 정책홍보 ⑥ 국민만족도
- 상대평가 등급(4) :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 (절대평가)일부 기관에 한정되어 추진되는 과제로 각 기관이 추진한 성과의 수준을 평가하는 일자리과제 부문은 절대평가⁵⁾
- 절대평가 등급(5) :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II. 부문별 평가결과

1. 핵심과제

1 평가개요

□ 평가목적

- 중앙행정기관의 대표적 정책과제에 대한 추진노력 및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정책 추동력을 확보하고 국정성과 창출 유도

□ 평가대상

- 대상기관 : 40개 중앙행정기관

분야	소관부처	
	장관급(21)	차관급(19)
경제	I 기재부, 국과위, 공정위, 금융위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II 농식품부, 지경부, 국토부, 방통위	농진청, 산림청, 중기청, 특허청
사회문화	교과부, 문화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성가족부	문화재청, 식약청, 기상청
일반행정	법무부, 행안부, 원안위, 권익위	법제처, 경찰청, 방재청, 행복청
외교통일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보훈처, 병무청, 방사청, 해경청

- 대상과제 : 총 98개 과제(장관급 기관 각 3개, 차관급 기관 각 2개)

□ 평가방법

-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핵심과제 평가단」을 구성
 - 평가의 객관성·전문성·공정성 확보 및 국민 시각에서의 평가를 위해 핵심과제별로 해당분야 민간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
 - 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경제I·II, 사회문화, 일반행정, 외교·통일·안보 5개 분야별로 평가 분과를 구성·운영
- 평가 분과별로 각 부처의 실적자료(10월말 기준)를 토대로 평가지표에 따라 정량·정성평가 병행 실시
 - 부처 내 평가대상과제들의 범위 및 비중 등 가중치를 고려
 - 분과별로 '부처 업무설명회'를 개최하여 피평가기관의 소명 기회 제공

□ 평가지표

- 정책형성(20) : 정책목표의 적절성(6), 정책수단의 적절성(6), 분석·의견 수렴 적절성(8)
- 정책집행(30) : 추진일정 충실성(9), 상황변화 대응성(15),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성(6)
- 정책성과(50) : 정책목표 달성도(25), 정책 효과성(15), 정책 만족도(10)

2 기관별 평가등급

- 직제순, 굵은 글씨는 포상 대상기관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최우수(2)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우수(9)	외교통상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소방방재청, 관세청, 조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해양경찰청
보통(24)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통일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국가보훈처, 국세청, 통계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문화재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미흡(5)	국방부, 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농촌진흥청, 기상청

③ 평가결과

총평

- (여건)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및 세계경제 침체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한반도 주변 정세의 유동성 증대
 -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불안 및 주택시장 침체, 경기둔화 등에 따라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에 대한 요구 증대
- (성과)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 중소기업 지원 및 서민·취약계층 보호,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을 중점 추진하여 가시적 성과 달성
 - 물가·고용의 안정세 유지,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 및 FTA 성과 가시화, 재정건전성 등에 따른 국가신용등급 상향
 - 불법사금융 척결대책 추진 및 연대보증제도 개선 등 서민·중소기업 지원 강화, 보육·교육·의료비 부담 경감, 범정부 복지정보연계시스템 구축 등 사회안전망 확충 및 지속가능성 제고
 - 4대강 사업 완공, 여수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및 신산업 창출기반 확충 등을 통한 미래 경쟁력 제고
 - 런던 올림픽에서의 선전, 한류 확산 등 국가이미지 제고 및 외국인 관광객 1천만 시대 개막, 능력 중심의 열린 고용문화 확산
 -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UN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재진출 등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에 주도적 참여
- (보완필요)각 분야의 의미 있는 진전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제·고용·교육·안전관리·안보 분야에서 일부 아쉬운 측면 존재
 -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성장률 하락, 가계부채의 질적 취약성과 부동산 시장 위축 등이 향후 경제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청·장년층 고용대책과 대학구조개혁 관련 낮은 체감도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유해물질 누출사고에 대한 체계적 대응 미흡, 원전·방사선 안전관리 및 성범죄 대응체계의 실효성 강화 필요
 - 전방 접적지역의 경계시스템, 보고체계 등에 문제점 노정

분야별 평가결과

① 경제분야

정책 추진여건 및 중점 추진사항

■ 정책추진여건

- ▷ 유럽 재정위기, 세계경제 침체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지속
- ▷ 지난해보다 성장률 둔화가 예상되고,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대내여건 불안

■ 중점추진사항

- ▷ 재정건전성 증대, 경제체질 강화를 통한 안정적 성장, 대외통상 강화
- ▷ 가계부채 문제 등에 선제대응, 서민금융 확대, 금융시스템 선진화
- ▷ 성장동력 확충 및 중견기업 육성, 에너지·자원의 수급구조 혁신
- ▷ 효율적 국토해양 관리, 주거안정 및 대중교통 서비스 확충,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
- ▷ 농수산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수급관리,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시장개방 대응
- ▷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 강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주요 정책성과

- 글로벌 경제위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여 국가신용등급 상향 등 성과 도출(기재부, 지경부, 금융위)
 - 국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적극적 외환관리 등을 통해 경기둔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외부충격에 대비
 - 총 외환보유액(억달러) : ('11.12) 3,064 → ('12.9) 3,220
 - 국내은행 외화유동성(억달러) : ('11.6) 43 → ('12.8) 324
 - 물가 안정, 취업자수 2,500만 유지 등 물가·고용지표들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직접투자(FDI)도 증가
 - 소비자 물가상승률(% , 전년동월비) : ('11.6) 4.2 → ('12.1) 3.4 → ('12.5) 2.5 → ('12.9) 2.0
 - 취업자수(천명) : ('12.1) 23,732 → ('12.3) 24,265 → ('12.6) 25,117 → ('12.9) 25,003
 - 1~9월 외국인 직접투자(억달러, 신고액) : ('10) 72 → ('11) 75 → ('12) 112
 - 주요국의 신용등급 하락 추세 속에서 국가 재정 건전성 등에 힘입어 세계 3대 신용평가사 모두 국가신용등급을 상향 조정
 - (무디스, 8.28) A1 → Aa3, (피치, 9.6) A+ → AA-, (S&P, 9.14) A → A+

- **FTA 성과 가시화 및 글로벌 녹색성장분야에서의 주도적 역할 수행**(기재부, 지경부, 관세청, 산림청)
 - 세계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FTA 혜택 품목의 수출이 증가하여 경제의 버팀목 역할 수행
 - 한·미 FTA 발효 이후 한·미 무역 총 교역량이 전년 동기 대비 3.9% 감소했음에도 한·미 FTA 혜택품목(자동차·석유제품 등) 수출은 13.9% 증가 (비혜택품목 수출은 1.5% 감소)
 -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설립, 세계자연보전총회(WCC)의 성공적 개최 등으로 글로벌 녹색성장 리더십이 강화되는 계기 마련
 - GCF 사무국 유치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연간 3,800억원으로 예상(KDIS)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기업활동 지원 및 서민경제 안정화 노력 지속**(농식품부, 금융위, 중기청)
 - 창업과 경영에 큰 부담이던 연대보증제도('12.5) 및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면책제도('12.4)를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금융부담 경감
 - 개인사업자 대출 중 연대보증 여신 비중 : ('12.4) 8.6% → ('12.5) 0.2%
 - 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척결방안」을 마련('12.4)하고, 불법 대부업체 집중단속 및 피해자에 대한 금융·법률지원 실시
 - 검·경의 집중단속으로 불법대부업자 7,343명 검거(구속 216명)
 -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기본 법률상담(521명) 및 부당이득반환소송(29명, 35건) 지원
 -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2,306건 중 661건(29%)에 대해 햇살론 등 서민금융지원
 - 농·축산물 유통단계 간소화를 위한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12.8), 「축산물 유통구조 합리화 방안」('12.1) 등을 추진하여 생산-유통-소비자간 상생 유통환경 조성 및 농·축산물 가격 안정 도모
 - 정가매매 확대, 거래대금 정산소 설치 등으로 농산물 도매시장 가격변동 완화 예상
 - 유통과정을 단순화(7단계→3단계)하여 유통비용 절감(한우 22.7%, 돼지 18.2%) 기대
- **신산업 창출 기반 확충 및 자원공급의 안정성 제고를 통한 미래경쟁력 강화**(지경부, 국과위)
 - 신성장동력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R&D 지원으로 스마트폰, OLED 분야 등에서 세계최고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녹색제품·기술 수출이 증가하는 등 신산업 육성 성과 일부 가시화
 -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세계 1위(3분기, 39.5%)를 기록중이고, OLED는 94%(3분기) 점유
 - 녹색제품·기술의 수출이 '05년 세계 15위에서 '10년 7위로 상승하였으며, '15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4위로 올라설 전망
 - 신성장동력 R&D 지원(조원) : ('09) 1.8 → ('10) 1.9 → ('11) 2.2 → ('12) 2.8
 - 석유·가스 및 전략광물에 대한 자주개발률을 제고하여 중장기 자원가격 상승과 변동성 심화 등 수급구조의 불확실성에 대한 위기대응능력 강화
 -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 ('09) 5.7 → ('10) 10.8 → ('11) 13.7 → ('12) 20 (전망치)
 - 6대 전략광물(유연탄, 우라늄, 철, 동, 아연, 니켈) 자주개발률(%) : ('09) 25.1 → ('10) 27 → ('11) 29 → ('12) 31.3
- **4대강 사업, 여수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등 대규모 국책사업 및 국제행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국토부)
 - 4대강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연내 완공 예정)으로 수자원 확보, 홍수피해 예방 및 국민 삶의 질 제고와 더불어 물 관련 기술의 해외수출 발판 마련
 - 볼라벤 등 3개의 대형 태풍에도 4대강 본류에 홍수 피해 미발생
 - 생태공원(130km²), 자전거길(1,757km), 캠핑장 등 수변시설이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4대강 방문객 1,000만명 돌파('12.9)
 - 4대강 기술협력 MOU 체결 : 모로코, 파라과이, 태국
 - 여수엑스포(5.12~8.12)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국가브랜드를 제고하고 해양선진국 도약 및 남해안권 발전 토대를 구축
 - UN, OECD 등 10개 국제기구 및 104개 국가 참여, 국내외 관광객 820만 관람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세계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성장을 하락 및 경기 불안정에 대한 대응 필요**(부처공동)
 - 대외여건 악화로 경기회복이 지연되어 GDP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에 미치지 못하고, 소비자심리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등 경기전망지표 하향 추세
 - GDP 성장률 전망치(조정) : (기재부) 3.7% → 3.3%, (한은) 3.5% → 3.0% → 2.4%
 -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 ('12.1Q) 2.8 → (2Q) 2.3 → (3Q) 1.6
 - 소비자 심리지수 : ('12.5) 105 → (6월) 101 → (8월) 99 → (10월) 98
 - 기업경기실사지수(제조업 BSI) : ('12.5) 83 → (6월) 82 → (8월) 72 → (10월) 69
 - ⇒ 글로벌 위기상황의 상시화·장기화에 대비하여 경제활력 제고, 서민생활 안정 등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

- **가계부채의 질적 취약성 및 부동산시장 위축에 따른 국민경제 불안(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89%, '11년)이 OECD 평균(75.9%, '10년)을 상회하고 있으며, 다중채무자 및 자영업자의 대출 증가 등 질적 취약성이 심화됨에 따라 지속적인 경제불안요인으로 작용
 - 다중채무자(만명) : ('10) 700 → ('11) 722 → ('12.5) 718
 - 자영업자 대출잔액(조원) : ('10) 145 → ('11) 158 → ('12.7) 168
 - ☞ 가계부채 증가속도의 안정적 관리와 함께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노력 지속 필요
 - 주택가격 하락 및 매매거래 감소와 전세가격 상승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하우스푸어 및 서민 주거안정 문제가 대두
 - '12.1~10월 주택매매거래량은 554,882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30.4% 감소
 - ☞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층 주거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
- **동반성장 및 공정경쟁 문화의 지속적 확산 필요(방통위, 공정위, 중기청)**
 - 대기업집단 계열사 내부거래 금액 및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2·3차 협력업체의 동반성장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
 - 내부거래 금액(조원) : ('11.5)144.7 → ('12.5)186.3(28.7% 증가)
 - 동반성장 개선노력 만족도(전경련) : (대기업-1차 협력사간) 82.7%, (1-2차협력사간) 39.7%
 - ☞ 동반성장 문화가 전체 산업계에 확대·파급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촉진
 - 이동통신 사업자간 보조금 과열경쟁으로 인해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대책의 효과가 미흡하고 공정경쟁을 저해
 - 이동통신 재판매제(MVNO) 가입자수 : ('12.10) 106만명(총가입자 5,331만명의 1.9% 수준)
 - ☞ 보조금 과열경쟁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통해 공정경쟁질서를 확립할 필요
- **서비스산업·금융시장 선진화 등 제도개선법안의 입법노력 강화 필요(기재부, 금융위)**
 - 일자리 확대, 경기변동에 대한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제정이 지연되어 대외 경쟁력 하락 우려
 -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OECD국가에 크게 미흡(美的 48.6%, 日的 65.7% 수준)하며, 제조업의 41.4% 수준('09년 기준)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국회통과 노력 필요
 - ☞ 이해관계자 및 국회 등의 지지확보를 통해 관련 법률이 신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

향후과제

- **글로벌 위기상황의 상시화·장기화에 대비한 체계적·구조적 대응(부처 공통)**
 - 유럽 경제위기 장기화에 따라 건전 재정운영, 외화유동성 관리 등 외부충격에 대한 철저한 대응준비 필요
 - 가계부채의 질 악화 및 주택시장 침체 등 대내 불안요인에 대한 안정적 관리를 통해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관리 및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속하고, FTA 활용역량 강화를 통한 수출확대 지원
- **기업환경개선, 성장동력 확충 등 경제활력 제고 노력 지속 추진(기재부, 지경부, 국과위, 중기청)**
 - 기업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민생경제 안정화 도모
 - R&D 투자, 융복합화 지원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서비스산업 육성 등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 강화
-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및 상생문화의 정착(지경부, 공정위, 중기청)**
 - 동반성장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유통분야 공정거래 질서 확립, 일감 몰아주기 관행 개선 등 제도적 뒷받침
 - 체감도가 낮은 2·3차 협력업체 등에 동반성장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 경주 필요
-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및 녹색성장 기반 확대(기재부, 지경부)**
 - 해외자원 개발, 원유공급처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자원 공급능력을 제고하고, 정확한 수급전망에 기반한 에너지 공급설비 확충
 - 배출권거래제 시행,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에 대비하여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역량 및 대외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그린에너지 시장 활성화 등을 통한 녹색 산업 육성

② 사회·문화분야

정책 추진여건 및 중점 추진사항

■ 정책추진여건

- ▷ 고령화 등으로 노후생활 및 지속가능한 보건·복지에 대한 관심 증가
- ▷ 경기둔화 지속 및 양극화 심화로 청·장년층의 일자리 요구 증대
- ▷ 주5일제·웰빙·녹색생활 확산으로 질 높은 소비, 문화예술 욕구 증가

■ 중점추진사항

- ▷ 복지예산 확대, 보건복지서비스의 효율성 개선, 보육·양육 지원 확대식품안전 강화 등을 통한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 ▷ 안정적 고용유지, 취약계층 취업 지원 강화 및 열린고용 환경 조성
- ▷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환경 조성 및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 ▷ 녹색생활 실천 및 선제적인 기후변화 대응 강화

주요 정책성과

□ 사회안전망 확충 및 지속가능성 제고(복지부, 식약청)

-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해 2012년 복지예산은 전년대비 6.4%가 증가한 92조원을 투입
 - 복지예산 규모는 정부 총 지출의 28.2%를 차지하는 역대 최고 수준
- 복지대상자와 수급이력 정보를 연계 관리하는 등 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 범정부 복지정보연계시스템 개통('12.8),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구축('12.9)등을 통해 전국 6.3만 가구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전년대비 30.3% 증가)
-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¹⁾하고 상비약품에 대한 접근 편의성²⁾을 개선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속 가능성 제고
 -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병·의원급 적용('12.7), 약가인하('12.4), 의원급 만성질환관리('12.4)로 7개 질병 진료비 21%, 약품비 14%, 의원급 고혈압·당뇨 진료료 10% 경감 예상
 - 상비약품 약국의 판매('12.11월, 13품목), 의약품 재분류('12.8월, 504품목) 실시
- 식중독³⁾, 나트륨 등 위해요소에 대한 관리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 강화
 -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강화 등으로 식중독 27% 감소('11.9월, 6,293명→'12.9월, 4,604명)

□ 취약계층 고용 지원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 및 능력 중심의 열린고용 문화 확산(교과부, 복지부, 고용부, 여가부)

-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고용률과 취업자 수는 안정적인 증가 추세
 - 고용률 : ('09) 58.6% → ('10) 58.7% → ('11) 59.1% → ('12.9) 60.0%
- 여성·수급자·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개선 노력(「기간제법」, 「파견법」 개정, '12.2)
 - '여성 새일센터'의 경단여성 취업 증가: ('11) 4,7만명 → ('12) 5,9만명
 -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취업 촉진: ('11) 63,728명 → ('12) 68,038명
 - 저소득근로자 국민연금('12.8월, 605천명, 544억)·고용보험료 지원('12.8월, 394천명, 63억)
-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이 확대⁴⁾되고, 마이스터고·특성화고 등 고졸 취업률⁵⁾이 개선되는 등 '열린고용'이 사회적으로 확산
 - 민간기업 의무고용률 상향(2.3%→2.5%), 대기업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치(12.8월, 267개사 858명 고용) 등
 - 고졸 취업률은 전년대비 6.0%p 증가('11년, 23.3%→'12년, 29.3%)하고, 특성화고 진학 준비율은 11.9%p 감소('11년, 32.5%→'12년, 20.6%)

□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및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교과부, 복지부, 여가부)

- '드림스타트' 사업 확대, '누리 과정' 5세 아동 전면 실시('12.3) 및 3~4세 아동까지 확대('12.1) 등 아동의 건전한 양육기반 마련
 - 센터·지원아동 수: ('11) 131개, 44,651명 → ('12.6) 181개, 50,786명
-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현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위기청소년 조기발견·치료·복귀 지원 프로그램 확충
 - 학교 내 인성교육 및 Wee 센터 확대, 또래상담 프로그램 및 학업중단 숙려제 전국 실시, 학교폭력 신고전화 '117'로 통합
- 구조조정 등을 통해 대학 경쟁력 기반⁶⁾을 강화하고, 국가 장학금 지원(1.75조원), 대출제도 개선⁷⁾ 등 등록금 부담을 경감
 - 37개 국립대학 성과목표제 도입('12.2), '08년 이후 사립대학 통폐합으로 입학정원 4천명 감소, 재정지원(43개)·학자금대출(13개) 제한대학 지정('12.8)
 - '든든학자금' 대출금리 인하('11년, 4.9%→'12년, 3.9%), 성적요건 완화(B→C) 등

- '문화·체육·과학 강국'으로서의 위상 제고 및 취약계층 문화 접근성 확대(문화부, 교과부, 문화재청)
 - K-POP 등 한류 확산¹, 관광시설 확충, 문화자원 개발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증가² 및 관광수익 흑자 전환³
 - 유튜브 K-POP 조회수 : ('10) 8억회 → ('11) 23억회, 191%증가
 - 외국인 관광객 : ('11.9) 709만명 → ('12.9) 844만명, 19% 증가
 - 외국인 관광수입 : ('11.8) 72.4억 달러 → ('12.8) 95.9억 달러, 32.4% 증가
 - 런던 올림픽(하계·장애인)에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기록하고, 문화축제 현지 홍보 등으로 스포츠 강국으로서 위상 강화
 - 하계 종합 5위, 장애인 종합 12위, 가디언 등 현지 언론에 한국 다수 보도
 - '아리랑 3호' 발사 성공(12.5)으로 세계 4번째로 상용위성을 보유하는 등 우주개발, 첨단기술 역량 강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충
 - '살아 숨쉬는 4대 궁·종묘 만들기' 등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문화바우처'를 통한 취약계층 문화 접근성 확대
 - 궁궐 관람객('11.9→'12.9/만명) : 내국인 444 → 506, 외국인 115 → 166
 - 바우처 503천매 발급('12.9.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수혜자 160만명
- 선제적인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및 녹색생활 실천 등 온실가스 감축기반 강화(환경부, 기상청)
 - GCF(녹색기후기금) 유치('12.10)를 통해 녹색성장 선도국 위상을 제고하고, 울릉도·독도 감시소 설치('12.2) 등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 확대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검증체계 개선⁵ 등 산업·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기반을 강화
 - ('11) 490개 → ('12) 580개, 배출량 산정방식 및 보고서식 개편 등('12.6)
 - 그린카드 380만장 보급, 탄소포인트제⁶ 273만 세대, 온실가스 감축 사업장 확대('11년, 61개 → '12년, 500개) 등 녹색생활 실천기반을 강화
 - 가정용 전기·상수도 등 절감시 포인트 제공('12.6월, 3,564백만 포인트 지급)

개선·보완 필요사항

- 청·장년층 고용대책의 효과성 제고 필요(고용부)
 -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고용위축 등으로 인해 청년체감 고용사정은 여전히 어려움
 - 청년고용률(15~29세,%) : ('09)40.5 → ('10)40.3 → ('11)40.5 → ('12상)40.7 → ('12.3/4)40.8
 - 베이비붐 세대 고용연장 및 전직지원사업을 다양화하고 있으나, 활용성과가 부족하고 고용의 질도 낮은 상황
 - 내일희망찾기 34.0%(53천명/156천명), 50+새일터적응지원 53.1%(1,062명/2천명)
 - 55~64세 취업현황('12.5월) : 생계형 자영업자 37.7%, 임시·일용직 29.2%
 - ☞ 청년고용의 체감도 제고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충, 고학력 미스매치 완화 노력을 강화하고, 장년층 고용연장 및 전직지원서비스 강화
- 대학구조 개혁 및 성과목표제 실효성 제고 필요(교과부)
 - 인구구조 변화, 학령인구 감소로 '18학년도부터 대입정원이 고교졸업자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어 대학구조 개혁 필요성 증대
 - 대입 초과 정원(전망, 천명) : ('12)△84 → ('18) 4.7 → ('22) 127
 - 대학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립대학에 성과목표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소극적인 목표설정 등 운영 성과 미흡
 - 취업률을 전년과 동일 또는 낮게 설정, 기개선내용을 계획으로 설정 등
 - 국립대학의 경쟁력은 현상 유지 또는 하락하고 있는 상황
 - 세계대학 순위평가('07→'11) : 경북대(493→501~550위권), 전남대(512→551~600위권), 충남대(515→551~600위권)
 - ☞ 대학별 특성화 노력을 통한 효과적인 구조개혁 실시 및 사전심사 강화 등 성과목표제 실효성 제고
- 상수원 녹조 발생 등 하천 관리체계 정비 필요(환경부)
 - 하절기 한강·낙동강 등 주요 상수원 및 하천에서 장기간 녹조현상 발생
 - 지자체 공공하수처리장 부실운영 사례에 대응한 실태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 필요
 - 남양주시 하수처리장에서 '06.6~'12.8월간 연평균 1,275톤의 하수 무단 방류
 - ☞ 상수원·하천 녹조 대응시스템을 체계화하고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실태 모니터링 강화

- 건강검진 관리 강화를 통한 질병예방 기능 제고 필요(복지부)
 - 지정 검진기관 증가('09년, 6,430개소 → '12.6월, 17,022개소)로 접근성은 증가했으나, 시설·장비 미흡^{*)} 및 검진대상자 미 참여^{**} (전체 대상자의 약 30%인 500만명) 문제 상존
 - 검진 실시기준 위반, 검진인력 미 배치, 검진장비 부실 등 적발건수 : ('10) 285개소 → ('11) 433개소 → ('12.9) 410개소
 - 건강검진 수검률(암제외) : ('09) 63.3% → ('10) 64.3% → ('11) 69.7% (검진 미수검 사유 : '시간이 없고 바빠서'(49.0%), 개선요구 사항은 '아간 및 주말 검진 확대'(24.6%))
 - 특히,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율은 53.8% 수준('11년 기준)
 - ⇒ 건강 검진기관 지도점검 강화 등을 통한 검진수준 향상, 검진시간 확대, 검진 필요성 홍보 강화 등 수검률 제고 노력 필요
- 문화예술기금 운용에 대한 관리·감독 부족(문화부)
 -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민족고유문화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문화예술 진흥기금^{*)}의 운용성과 미흡^{**}
 - 기금규모 : 2,690억원('12.7기준)
 - 최근 3년간 총 630억원 운용손실 발생
 - 기금운용계획 사전심의 부족 등 투자에 대한 타당성 검증 및 감독 기능 미흡 등이 기금운용 손실에 연계
 - ⇒ 자산운용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연기금투자풀(기재부)에 위탁운용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 필요

향후과제

- 수요자 중심 복지서비스 및 맞춤형 취업 강화(복지부, 고용부, 여가부)
 - 보육·양육에 대한 균형적 지원 강화, 사회보험 재정 건전화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복지서비스 제공
 - 청장년층의 적성·능력에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 확충 및 여성·노인·장애인의 취업역량 강화로 사회참여 확대
 - 직업교육과 고졸취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열린고용' 문화 확산
-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청소년 보호 강화(교과부, 여가부)
 - 학교내 인성교육 확대, 교사·학생·부모간 소통 강화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대책의 현장 체감도 제고
 - 위기청소년의 학교 적응 지원을 강화하고, 다문화·탈북·장애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 청소년 역량개발 강화 및 다문화 가족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 지원
-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식약청, 환경부)
 - 식품, 의약품 및 생활용품에 대한 위해성 관리 강화로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노력
 - 환경유해 물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독성화학물질 누출사고 대응 시스템 개선을 통해 국민 환경안전 강화
- 한류 지원 강화 및 국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문화부, 문화재청)
 - 한류관련 콘텐츠의 해외수출을 확대하고 관광자원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해 외국 관광객 유치 활성화
 - 주요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관리체계 확립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문화예술 향유 프로그램 개발·보급 확대

③ 일반행정분야

정책 추진여건 및 중점 추진사항

- 정책추진여건
 - ▷ 범죄취약계층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우려 심화
 - ▷ 자연재해 및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안전 확보 요구 증대
 - ▷ 공직 생산성·투명성 제고와 지방자치제의 안정적 발전 기대
- 중점추진사항
 - ▷ 법질서 확립을 통해 범죄와 사고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
 - ▷ 재해·재난에 대비하여 예방·구조시스템 확충
 - ▷ 국민권익보호·구제를 강화하고 청렴정책 추진으로 투명사회 구현
 - ▷ 공직경쟁력 및 개방성 제고, 지방자치 선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 ▷ 세종특별자치시 이전기관 안정적 정착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주요 정책성과

- **법질서 확립 및 사회적약자 권의보호 강화(법무부, 권익위, 경찰청)**
 -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주취폭력·불법사금융 단속을 강화하고, 범죄예방 활동을 통해 강·절도 등 민생침해범죄 감소
 - 주취폭력(경거, 명) : ('11.1~9)879 → ('12.1~9)2,134/ 불법사금융(경거, 명) : ('11.1~9)8,027 → ('12.1~9)11,727
 - 살인·강도 등 5대 민생침해범죄 : ('11.1~9) 461,827건 → ('12.1~9) 451,191건
 - 아동·지적장애인 대상 지문·사진 사전등록제 도입('12.6), 성폭력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법률조력인 제도** 도입('12.3) 등 취약계층 보호 강화
 - *12.6~10월 61만여명 아동·장애인 등록 / 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75명 발견·구조
 - ** 법률조력인제도('12.3~10) : 법률조력인 848명 선정, 2,395명의 피해자 지원
 - 외국인근로자·다문화 가족 등을 위한 이동신문고 및 법률상담 확대, 저소득층 법률지원을 위한 법률홈닥터 도입('12.5) 등 소외계층 권익 증진
 - 이동신문고 : ('11) 32회 793건 상담 → ('12) 37회 1,213건 / 이동법률상담 : ('11) 17개 지역 853건 → ('12) 54개 지역 935건 / 법률홈닥터 : 무료 법률상담 4,920건
- **예방대책 강화 등을 통해 재해 피해 저감(방재청, 산림청)**
 - 자연재해 피해 우려지역(2,587개소) 관리책임자 지정·관리, 위험지역 주민 사전대피 및 신속대응체계 구축 등을 통해 태풍·산불피해 저감
 - 태풍 피해(사망·실종, 명) : ('02, 루사)246 → ('03, 매미)131 → ('12, 볼라벤·덴빈·산바)7
 - 산불피해(ha) : ('11)1,084 → ('12)69 ※최근 10년 평균 : 1,135ha
 - 급경사지·노후주택 등 재난위험지대 안전관리 강화, 현장안전요원 확대 배치 등으로 해빙기·행락철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감소
 - 해빙기('12.1~3) 및 지역축제 행사('12.1~10월 852건)시 인명피해 3년 연속('10~'12) 0건 / 여름철 물놀이('12.6~8) 최근 3년 평균(59명) 대비 57.6%('12년 25명) 감소
- **행정·법제서비스 개선으로 행정효율화 및 국민편의 제고(행안부, 법제처)**
 - 고졸자 공직 진입경로 확충, 민간경력자 및 장애인·저소득층 공직 채용 확대 등 채용경로 다양화를 통해 공직 개방성 제고
 - 고졸 지역인재 9급 추천채용제 신설(104명), 특성화고 출신 기능인재 채용 확대('11년 53명 → '12년 100명), 5급 일괄채용 확대('11년 93명 → '12년 103명), 장애인·저소득층 채용 확대(135명 → 195명)
 - 자치단체 기능개편 등을 담은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 확정('12.6), 국민생활 직결 분야의 유동정원제 활성화** 등을 통해 행정효율화 도모
 - *36개 시군구 통합 및 특·광역시 자치구·군 개편 추진 / 청주·청원 통합 결정(6.27)
 - ** 국민생활 안전(6,602명), 복지·문화(350명) 등 주요현안에 10,012명 재배치·활용
 - 입법과정에서 국민의 시각을 반영하는 국민법제관을 활성화**하고 신속·편리한 법령해석서비스** 제공으로 국민편의 증진
 - 국민법제관 : ('11) 28개 분야 804명 → ('12) 33개 분야 1,062명 / 청소년법제관 신설('12.6)
 - ** 법령해석 요청 증가('11년 1,110 → '12년 1,465)에도 불구 처리기간 단축('11년 30.0일 → '12년 27.3일)
-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및 조기 정착 도모(행안부, 행복청)**
 - 광역도로망 조기 개통, 자치사무 이관, 공공기관 준공·이전 등 세종특별자치시 출범(7.1) 기반 확충
 - (광역도로)대전 유성 연결('12.3), 오송역 연결('12.9) / (대중교통)BRT 개통('12.9) / (정부청사 준공)1단계 1구역 총리실('12.4) / 2구역 국토부 등 10개 기관('12.11 예정)

개선·보완 필요사항

- **재난·안전사고 대응역량 강화 필요(행안부, 지경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원안위, 방재청)**
 - 유해물질 누출사고*, 다중이용시설 안전사고** 등에 대한 대응 미흡으로 국민불안감 유발
 - (주)휴브글로벌 부산 누출사고('12.9, 5명 사망) 발생시 유해물질 안전관리체계 다원화(4개 부처 5개 법률)·효율적 초동대처를 위한 정보공유 및 장비부족 등으로 피해 확산
 - ** 부산 지하철 화재사고('12.8, 44명 부상)시 대피통로 협소·피난시설물 설치 미흡 등 지하철 안전사고 우려 증가(최근 1년간 부산지하철 유사화재 3회 발생)

- 원자력발전소 전력공급 중단사건*, 생활주변 시설 방사선 검출** 등으로 원전·방사선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 제기
 - 고리 1호기 전력공급 중단사고('12.2)시 전력공급 중단사실을 미인지하고 재가동 승인('12.3) / 위조된 품질검증서를 이용한 원전부품 사용으로 영광 5·6호기 가동 중단('12.11)
 - ** 노원구 도로 등에서 방사선 검출
- ☞ 국가위기관리 매뉴얼 보완, 비상대응훈련 강화, 원전·방사선 안전관리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재난대응 역량 내실화
- **범죄 대응체계 및 치안대책 강화 필요(법무부, 고용부, 경찰청)**
 - 112신고센터 위급상황 대처 부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 이원화*, 검·경간 범죄정보 공유 미흡** 등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우려 심화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여가부, 성인 대상 성범죄자는 법무부에서 신상정보 관리
 - ** 검·경간 범죄자 정보(전자발찌 착용자 위치정보 및 DNA 신원확인) 실시간 공유 미흡
 - *** 성범죄(건) : ('11.1~9) 16,516건 → ('12.1~9) 16,843건
 - 고용허가제 만기도래 외국인 근로자 자진출국 유도 등 불법체류자 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 외국인 지속 증가 및 강력범죄로 인한 사회문제화
 - 불법체류자(명) : ('10)168,515 → ('11)167,780 → ('12.8)175,679 / 불법체류 외국인범죄('12.1~8):1,038명
 - ☞ 성범죄자 관리체계 개선, 불법체류자 관리·감독 및 치안 유관 기관간 협력시스템 확충 등을 통해 범죄 대응체계 강화
- **지방재정 위기관리 노력 지속 필요(기재부, 행안부)**
 - 사회복지비 부담 증가, 지방공기업 채무 증가, 중북·전시성 사업 등에 따른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위기관리 대책 지속 필요
 -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률 지속 증가('08년 35% → '12년 39%)
 - ** 지방공기업 부채(조원) : ('07)27.7 → ('08)32.4 → ('09)42.7 → ('10)46.5 → ('11)49.4
 - ☞ 지방재정 상황 주기적 점검 및 지방 투자사업 사전심사 강화 등 지방재정 건전성·책임성 확보 대책 지속 추진

향후과제

- **재난 대응역량 및 국민생활 안전 강화(법무부, 행안부, 경찰청, 방재청)**
 - 범정부 재난대응 협력시스템을 강화하고, 재난대응매뉴얼 정비·비상대비 훈련 내실화 등을 통해 대형·특수재난 사고 대응 강화
 - 범죄취약계층에 대한 예방·대응 강화를 통해 국민 치안불안 해소
- **행정효율성 제고 및 공직기강 확립 노력 강화(행안부, 권익위, 법제처, 행복청)**
 - 공직개방성 제고와 융합행정 강화 요구에 대응하여 정부조직·인력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국제기구 유치 등 국제사회 역할 확대에 따른 공직의 글로벌 역량 강화
 - 공공기관 이전 대비, 정보공유·민원처리 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효율화 방안 지속 추진
 - 부패유발구조·제도 개선 등 공직비리 예방시스템을 강화하고, 행정투명성 제고를 통해 공직사회 신뢰도 제고
- **지방행정체제 선진화 및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행안부)**
 - 지방행정체제 개편 과정에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고, 선제적 지방재정 위기관리 등을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책임성 제고

④ 외교·통일·안보분야

정책 추진여건 및 중점 추진사항

- **정책추진여건**
 - ▷ 남미 신흥시장 부상 등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교역 파트너 다각화 필요
 - ▷ 북한 정권교체에 따른 한반도 안보상황 유동성 증가
- **중점추진사항**
 - ▷ 전략적 한반도 안보협력 및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강화
 - ▷ 통일대비 인프라 구축 및 남북관계 발전기반 조성
 - ▷ 북한 도발 대비 군사태세 강화 및 국방개혁 등 선진 군사역량 구축

주요 정책성과

-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전략적 안보협력 강화(외교부, 국방부)**
 - 한·미 정상회담(3.25), 외교장관회담(3.9), 외교·국방 장관회의(6.14)의 정례화(격년) 등을 통해 양국 간 포괄적 안보협약체* 공고화
 - 임기중 정상회담 11회, 미 대통령 방한 3회
 - ** 한·미 동맹, 북한문제 등 양국 간 현안을 포함한 범세계적 협력 사항 논의
 -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4.13)에 대해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도출하고 한·미 미사일지침을 개정** (10.7)하여 북한 위협에 대한 효과적 억지 능력 확보
 - UN 안보리 의장서명 도출(4.16), 40여개국 규탄 성명 표명, G8 정상회의 공동성명(5.19)
 - **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300→800km), 무인기 탑재중량 증가(500kg→2.5ton) 등
 - 핵안보정상회의* 개최(53개국, 3.27), UN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 재진출** (10.18)로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에 주도적 참여 기반 마련
 - 핵물질 최소화, 원자력시설 보호 등 핵·방사능 테러방지 실천합의(11개 분야 정상선언문 채택)
 - ** 1차 UN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 진출('96~'97)
-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국격 제고 및 국가 경쟁력 강화(외교부)**
 - 한·미 FTA 발효(3.15), 한·터키(8.1) 및 한·콜롬비아 FTA 체결(8.31) 등 경제협력 네트워크 확대로 국익 창출
 - 한·미 FTA 발효이후 △對美 수출은 4.4% 증가 △외국인 직접투자자는 28.9% 증가(전년동기대비)
 - 글로벌 녹색성장기구(GGGI)의 국제 기구화 및 녹색기후기금(GCF) 유치('12.10)를 통해 녹색성장 분야의 국제적 위상 강화
 - GGGI는 한국주도 설립 최초국제기구(16개국)로 개도국 전략수립 등 지원, GCF는 기후변화협약에 의거한 개도국 기후변화 적응지원 특화기금 '20년부터 연1천억달러 조성 예정)
- **북한의 국지도발 억제 및 해양경비 역량 확충(국방부, 해경청)**
 - 정부의 강력한 대응의지 천명 및 단호한 군사응징 태세로 북한의 군사도발을 효과적으로 억제
 - 북한의 국지도발 현황 : ('10)10건 → ('11) 1건 → ('12.9) 0건
 - 주변국과의 영유권 갈등해결 대응력 강화를 위해 위기 대응 훈련 및 전력보강을 실시하여 해양 안보* 및 주권 수호 역량 강화
 - 독도 : 함정 증강(6→7척) 및 항공순찰 강화(주 2회→1일 1회), 위기대응 훈련 5회
 - 이어도 : 함정증강(6→7척), 이어도 수호 훈련 2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통일부)**
 -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정착현황을 재점검,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북한이탈주민 종합대책 수립·추진(4월)
 - 민간 통합 정착시스템 구축, 하나원 서비스 내실화, 취업을 통한 조기 자립, 탈북 청소년 교육지원 강화, 탈북여성 맞춤형 지원 등 (통일부 등 8개 부처)
 - 제2하나원 건립(화천 간동)을 통해 북한이탈주민(23천명, '11년말) 증가에 대응하고 남한사회 정착기반 마련
 - 공정률 100%(10월말 현재, 12.5개원예정), 최대 500명 수용, '11('10)년 2,706(2,401)명 입국
-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평한 병역의무 이행 정책(병무청, 방사청)**
 - K9 자주포, T-50 훈련기, 수리온 헬기 등 주요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핵심부품 국산화 사업」을 추진*하여 수출 경쟁력 확보**
 - 11개 핵심부품 국산화에 2년간 55억원을 투자하여 579억원 수입대체 효과 창출 예상
 - ** 방위산업 수출 현황(억달러) : ('09) 8.30 → ('10) 6.31 → ('11) 3.71 → ('12.10) 20.40
 - 병역감면제도를 악용한 병역면탈 방지 및 예외 없는 병역의무 부과* 등으로 병역의 공정성·형평성 강화
 -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확인신체검사, 병무직원 사법경찰관 부여(4월), 5년차 재징병검사제 시행(1월) 등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전방 접적지역 기강 확립 및 경계시설 보강 대책 필요(국방부)**
 - 동부전선에서 북한군이 GOP 철책을 통과하여 귀순하는 등 전방 접적지역의 경계시스템, 보고체계 등에 문제점 노출
 - ⇒ 경계태세 강화, DMZ 지역 감시체계 보강, 상하급 부대 간 상황보고 체계 명확화 등 대책 수립 필요

□ **분단 이재민의 고통 해소 노력 지속 필요(통일부)**

-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의 고통화로 소재지 파악, 가족 상봉, 전사자 유해발굴 등이 시급한 상황이나, 북한의 소극적 태도¹⁾로 답보 상태
 - 이산가족 상봉 제의(8.8), 국제적십자 회의 시 대북접촉 요청(8.31)을 했으나 북한측 무대응
- ☞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설득으로 이산가족 교류 및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협의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

□ **국내개발 무기 신뢰도 제고 노력 필요(방사청)**

- 대잠수함 미사일 등 국내 개발 일부 무기체계에서 운용간 성능결함 발생으로 전력화 지연
 - 해군훈련 중 오작동 발생(청상어, '12.6), 미사일 목표물 타격 실패(홍상어, '12.7)
- ☞ 개발단계 설계품질 확보, 양산·운용단계 품질 검증 및 참여 업체 책임강화 등 전주기 품질 관리제를 통한 무기체계 성능향상 노력 필요
 - 완제품 검사 위주의 품질보증에서 업체선정, 개발, 시험평가, 양산, 운용별 품질보증 실시

향후과제

□ **한반도 주변 주요국과의 협력외교 강화(외교부, 통일부, 해경청)**

- 북한 비핵화 등 한반도의 평화·안정 정착을 위해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주요국과 전략적 협력관계 내실화
-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과거사, 중국과의 불법조업·탈북자 복송 문제 등 주요 외교현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처방안 강구
- UN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 수임에 대비한 의제 준비 및 한반도 안보상황에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한 외교적 역량 강화

□ **체계적인 통일 대비 및 분단 이재민 고통 해소 노력 강화(통일부)**

- 통일준비 체계화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남북협력기금법」개정 논의의 진전을 위해 대국회 협조 및 대국민 설득 노력 강화
- 이산가족 교류촉진, 납북자 및 국군포로 송환,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강화 등 분단이재민 고통 해소 노력 지속 강구

□ **국방개혁 지속 추진 및 전방 대비 태세 강화(국방부)**

- 국방개혁 관련법안²⁾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하위 법령 정비 및 개혁방안 세부작업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
 -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사관학교 설치법」
- GOP 경제 과학화 시스템 조기 도입 등 경제체계 강화로 전방 접적지역의 군사대비 태세 확립

참고 기관별 핵심과제 목록

□ 장관급 기관 : 21개

부처명	과제명
기재부	① 재정운용 효율화 및 재정건전성 증대 ② 경제체질 강화를 통한 안정적 성장 도모 ③ 대외통상 강화를 통한 경제협력 확대
교과부	① 학습과 일자리를 연계하는 선진교육체제 확립 ② 모두를 위한 창의·인성교육 확산 ③ 융합과 창조의 선진 연구개발체제 구축
외교부	① 한반도의 평화·안정 추구 ② 국가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외교 강화 ③ 글로벌 협력외교를 통해 성숙한 세계국가로서의 위상 제고
통일부	① 내실 있는 통일미래 준비 ② 분단이재민의 고통 해소 ③ 남북관계 발전기반 조성
법무부	① 법질서 확립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기반 조성 ② 국민 권익 증진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따뜻한 법치 ③ 개방과 통합의 외국인 정책 추진
국방부	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 ② 선진 군사역량 구축 ③ 군 복지증진 및 복무여건 개선
행안부	① 효율적 정부조직 및 인력 운영 등을 통해 경쟁력 있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 ② 지방자치 선진화와 건전한 지방재정 구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 ③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문화부	① 생활 속 문화·체육환경 조성 및 문화예술 창조역량 강화 ② 스마트 환경을 선도하는 콘텐츠 강국 구현 ③ 매력 있는 관광 한국 실현
농식품부	① 농수산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안정적 수급관리 ②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시장개방 대응 ③ 농수산식품 성장동력 창출 및 수출 확대

부처명	과제명
지경부	① 성장동력 확충 및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 산업강국 실현 ② 해외진출 및 개방 확대를 통한 선진통상강국 실현 ③ 에너지·자원의 수급구조 혁신을 통한 녹색성장 주도
복지부	① 사회안전망 강화 및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② 보건의료의 지속 가능성 제고 및 성장기반 확충 ③ 노후소득보장 체계 내실화 및 보육서비스 확대
환경부	①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생활 실천을 통해 기후변화·에너지 위기에 적극 대응 ② 맑은 물 환경 조성을 통한 물 복지 구현 ③ 국민 생활 속 환경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고용부	① 고용 촉진 및 일자리 창출 지원 ② 인적자원의 질과 경쟁력 제고 ③ 상생의 고용환경 구축
여성가족부	① 여성의 역할 강화 및 양성평등 체계 구축 ② 건강한 청소년 성장을 위한 지원 강화 ③ 여성·아동의 인권보호 및 지원
국토부	① 효율적이고 안전한 국토해양관리 ② 주거안정 및 대중교통 서비스 확충 ③ 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통위	① 스마트 생태계 조성 및 네트워크 고도화 ② 품격 높은 방송 구현 및 미디어 경쟁력 제고 ③ 방송통신 이용자 복지 증대 및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문화 조성
국과위	① R&D 투자효율화 및 성과 극대화 ② 미래 성장동력 전략 및 계획 수립
원안위	① 최상의 원자력안전관리체계 확립 ② 방사선 안전관리 및 재난대비 체제 구축
공정위	① 하도급·유통·가맹사업 분야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② 경쟁제한적 행태 시정 및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③ 소비자역량 및 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위	① 시장불안요인 선제대응 ②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 및 서민금융지원 확대 ③ 금융시스템 선진화
권익위	① 권익보호 구조 확대로 역할함이 없는 사회 구현 ② 청렴정책 추진 강화로 투명사회 구현

□ 차관급 기관 : 19개

부처명	과제명
법제처	① 선진법제 구축 및 국민에게 친근한 법령 만들기 ② 효율적 법제지원 및 법령 해석
보훈처	①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보훈문화 확산 ② 국민이 공감하는 국가유공자 인정과 보상
국세청	① 성실 신고기반 확충을 통해 안정적으로 세입 확보 ②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행위 엄단
관세청	① FTA 총력지원체계 운용으로 FTA 효과 극대화 ② 불공정무역 단속강화로 대외거래질서 확립 및 민생안정 도모
조달청	① 경제 활력을 지원하는 조달시스템 구축 ② 조달제도 개선을 통한 공공조달서비스 선진화
통계청	①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통계의 효율적 생산 ② 통계인프라 강화로 국가통계를 선진화
병무청	① 예외 없는 병역이행체계 정착 ② 보충역 복무제도의 합리적 운영
방사청	① 방위산업 선진화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 ② 국방 기술 역량 및 품질 안정성 제고
경찰청	① 범죄와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 확보 ② 법질서 확립 및 사회 안정 강화
방재청	① 자연재해·인적재난 예방시스템 강화 ② 소방정책 선진화로 인명피해 저감
문화재청	① 문화유산의 효율적·체계적 보호를 위해 보존·관리체계 개선 ② 문화유산에 대한 새로운 가치창출과 확산으로 국민의 향유기회 확대
농진청	① 농축산물 품질경쟁력 강화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 ② 농촌활력화 및 농업인 역량 강화
산림청	① 산림자원 육성 및 산림재해 적기 대응 ② 산림휴양서비스 증진 및 목재산업 육성
중기청	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육성 ②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특허청	①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기반 강화를 통한 지식재산 강국 실현 ② 신속·정확한 심사를 통한 지식재산 서비스 고도화

부처명	과제명
식약청	①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보장을 위한 식품 안전망 확충 ② 세계시장 확대에 대비한 의약품·의료기기 안전관리체계 강화
기상청	① 위험기상 사전 대응 및 기상서비스 강화 ② 기후변화 대응 지역기후 서비스 및 기상산업 육성 강화
해경청	① 경비체제 및 해양범죄 대응역량 강화 ② 해양안전관리 및 오염방제 체계 강화
행복청	① 이천기관 안정적 정착 지원 및 기반시설 적기 구축 ② 자족기능 강화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2. 일자리과제

1 평가개요

- (평가목적)국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정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정책 추진동력 강화를 위해 주요 일자리 과제에 대한 평가 추진
- (평가대상)'12년도 각 부처 일자리 과제 중 예산규모나 정책적 중요성이 큰 11개 부처 32개 과제
 - 4.6조원 규모, 직접일자리 56.4만개중 45.3만개 대상
- (평가주체)정부업무평가위원, 민간전문가(14인)가 참여하는 「일자리 과제 평가단」을 구성·평가(4개 분과로 편성·운영)
 - ① 청년고용개선 분과, ② 열린고용 및 현장중심의 인적자원양성 분과, ③ 사회서비스일자리 및 취약계층 지원 분과, ④ 노동시장 제도개선 분과
- (평가방법)각 부처의 실적자료(10월말 기준)를 토대로 평가지표에 따라 정량·정성평가 병행 실시
 - 정책형성(25점), 정책집행(30점), 정책성과(35점), 만족도(10점)
 - 분과별로 '부처업무설명회'를 개최하여 쟁점에 대한 토론과 피평가기관의 설명기회 제공

2 기관별 평가등급

- 직제순, 굵은 글씨는 포상 대상기관

평가결과	기관명
최우수(1)	중소기업청
우수(1)	교육과학기술부
보통(9)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산림청

3 평가결과

총평

- (성과)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른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고용률과 취업자수 모두 꾸준한 증가세를 지속, '09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
 - 고용률 (15세이상,%) : ('08)59.5 → ('09)58.6 → ('10)58.7 → ('11)59.1 → ('12상)59 → ('12.9)60
 - 취업자 증감(천명) : ('08)144 → ('09)△71 → ('10)323 → ('11)415 → ('12상)449 → ('12.9)685
- '12년 직접일자리 목표 56.4만개중 56만개를 지원('12.8월)하고, 이 중 73%(41.2만개)는 취약계층에게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 생활안정에 기여
-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단계별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창업지원 인프라, 자금지원 확대 등 청년의 창조적 도전을 지원함으로써 창업증가
 - 신설법인수(1~9월, 개) : ('10)45,136 → ('11)47,959 → ('12)56,752

- 고교 직업교육 강화, 차별요소 제거, 先취업-後진학 지원 등 범정부적 노력으로 공공·민간의 열린 고용 문화 확산
 - 특성화고 취업률(%) : ('09)16.7 → ('10)19.2 → ('11)25.9 → ('12)37.5
- 기초생활수급자의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확대와 탈 수급 유인을 강화함으로써 일을 통한 자립기반 확충
 -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명) : ('10)2,480 → ('11)7,855 → ('12)8,262
 -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성공패키지 취업률(%) : ('10)34.2 → ('11)43.1 → ('12)50.3
- (보안필요)경기침체에 따른 고용불안에 대비, 취업취약계층의 취업지원 및 고용안정을 강화하고, 청·장년층 대상 맞춤형 지원 강화
 - 직접일자리 사업의 취약계층 참여와 안정적 일자리로 연계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과 지속가능성 제고 노력 강화 필요
 - 청년 체감 고용 개선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학력 미스매치 완화 등 지속 추진하고, 장년층 고용연장 및 전직지원서비스 지원 강화 필요
 -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 고용안정지원사업 활성화 등 노동시장 유연성·안정성 확보노력 지속 필요

분야별 평가결과

① 청년고용개선 및 인적자원 양성

주요 정책성과

- 청년의 창조적 도전을 적극 지원하여 창업률 조성(중기청)
 - '청년전용 창업자금'(2,300억원)을 신규 지원하고 성실한 창업실패자의 경우 상환금 일부를 면제해 줌으로써 청년 창업자의 위험을 분담
 - 청년전용 창업자금 목표치(1,800명)를 상회한 3,534명에게 지원('12.9)
 -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선도대학 등 창업지원인프라를 지방으로 확산함으로써 청년창업 저변 확대
 - 청년창업사관학교 : ('11)안산 → ('12)광주·경산·창원 3개 추가지점, '11년 1기 졸업생 212명 전원 창업하여 682명 일자리 및 290억원 매출 발생('12.6)
 - 19개월 연속 신실법인 증가세를 기록하는 등 신규창업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39세 미만 청년 창업도 증가
 - 신실법인수(1~9월, 개) : ('10)45,136 → ('11)47,959 → ('12)56,752
 - 39세 미만수(1~9월, 개) : ('10)14,112 → ('11)14,057 → ('12)16,017
- 범정부적 노력으로 열린고용 문화 확산(교과부, 고용부, 기재부, 중기청)
 - 고교 직업교육 및 취업연계 강화, 先취업·後진학 지원으로 대학 진학비중이 감소하는 등 고학력 미스매치 완화 토대 마련
 - 특성화고 취업률(%) : ('09)16.7 → ('10)19.2 → ('11)25.9 → ('12)37.5
 - 특성화고 진학준비자 비중(%) : ('11)32.5 → ('12)20.6 (11.9%p ↓)
 - 공공·민간의 고졸채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학력보다 실력과 성과로 평가받는 열린고용 사례 증가
 - 공공기관 고졸채용 확대(명) : ('11.9)590 → ('12.9)1,670
 - 30대 그룹(명) : ('11)37,273 → ('12)41,000 / 금융권(명) : ('11)672 → ('12)873
 - (한국수력원자력)고졸자도 입사 4년 후 대졸과 동등 대우, (기업은행) 고졸행원 부활, (두산중공업) 기술임원 신설, 생산직원의 직함을 사무직과 동일화
- 더 많은 청년층에게 다양한 고용기회 확대(기재부, 고용부, 외교부 등)
 -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청년 신규채용 여력을 확대하고, 경영평가제도 개선, 모니터링을 통해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독려
 - 공공기관채용(명) : ('11)10,000 → ('12)15,000 / 10,764명 채용('12.9)
 - 중소기업 인턴제를 확대하고, 훈련연계형 인턴제 추진으로 사업을 내실화하는 등 안정적 일자리로 연계 강화
 - 중소기업인턴(명) : ('11.8)21,882 → ('12.8)26,139 (19.5% ↑) / 정규직 전환률(%) : 83.9 ('11.12)
 -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추진시 '제2의 중동붐'을 활용, 중동지역 전문인력 진출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청년의 다양한 경험 지원
 - 글로벌청년리더사업 중동진출인원(명) : ('11)563 → ('12)819 / 취업 331, 인턴 305, 봉사 183

□ 학교로부터 노동시장 이행 원활화 추진(고용부, 교과부)

- 기업체 경험이 있는 '취업지원관'(대학 162·특성화고 478명), '산학협력 중점교수'(794명)를 확대 배치하여 학교의 취업지원 기능을 강화
- 청년취업아카데미 확대*, 산학협력 선도대학 내 '현장실습 지원센터' 설치(51개) 등으로 학생들에게 산업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 확산
 - ('11)50개 기업·사업주단체, 118개 대학 → ('12)59개 기업·사업주 단체, 142개 대학

개선·보완 필요사항

□ 청년 체감 고용여건 개선노력 강화 필요(공통)

- 각종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 한계와 경기둔화로 청년 고용률은 크게 개선되고 있지 못한 상황
 - 청년고용률(15~29세,%) : ('09)40.5 → ('10)40.3 → ('11)40.5 → ('12상)40.7 → ('12.3/4)40.8
- ☞ 청년층이 희망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기반 마련과 고학력 미스매치 등 구조적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 강화 필요

□ 직업훈련 등 인력양성사업의 효과성 제고 필요(고용부, 지경부, 중기청)

- 실업자 재취업 훈련은 산업계 인력수요와 훈련생 훈련수요간 불균형과 영세 훈련기관 증가 등으로 취업성과가 다소 부진
 - 내일배움카드제 전체 138개 직종중 주방장및조리사 등 5개 직종이 60% 이상('12.10)
 - 내일배움카드제 취업률(%) : ('10)33.6 → ('11)38.2 → ('12.9)25.8
-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훈련은 중소기업의 훈련에 대한 적극적 유인책 부족, 부처별 유사사업으로 인한 비효율 존재
 -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고용부)외에 이와 유사한 '인력구조고도화 사업(중기청) 별도 운영
-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은 전체 산업수요 측면에서 관계기관간 상시적 협의체계 및 취업성과 등 객관적 성과관리 체계 미흡
 -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은 고용부 소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과 지경부 등 각 부처 소관의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대별되나, 관계기관간 수평적 연계 협력이 부족하고, 취업 등 성과관리 체계가 취약해 과잉 양성 우려 등 존재
- ☞ 부처간 연계강화 및 일원화된 관리체제로 사업 성과 제고 필요

□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내실화 필요(고용부, 교과부, 외교부)

- 국가별·직종별 맞춤형 진출 전략이 부족하여 해외 연수사업 취업률이 낮고 단순서비스 직종에 쏠림현상이 지속
 - 글로벌취업지원사업 취업률(%) : 53.1(취업자/참여자=8천명/15.7천명, '10~'12.9)
 - 직종별 해외연수취업(%, '12.9) : 사무/서비스 85.8, IT 4.0, 의료 1.3, 기계/금융/토목 0.3 등
- 해외인턴·봉사사업은 현지 안전관리와 사업종료 후 취업희망자 취업연계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할 필요
 - 해외인턴 : 취업 미 관리/ 해외봉사 : KOICA 해외봉사단원만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실시, 현지 관리인력 부족(68명 관리요원이 1,600명 봉사단원 관리)
- ☞ 국가별·직종별 프로그램 다양화로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사업관리·참가자 안전체계 강화, 통합 내실화 등을 통해 성과 제고

② 사회서비스 일자리 및 취약계층 지원

주요 정책성과

□ 저소득층의 일을 통한 자립기반 확충(복지부, 고용부)

- 자활사업 참여자를 확대(61천명 → 66천명)하고, 희망키움통장 확대 등 근로유인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자활성공률 증대
 - 희망키움통장 가입가구(누적, 가구) : ('10)10천 → ('11)15천 → ('12)18천
 - 자활성공률(%) : ('10.6)10.1 → ('11.6)12.6 → ('12)16.8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있어 근로유인을 강화함으로써 저소득층 및 취업취약계층의 취업능력 향상 및 일을 통한 자립에 기여
 -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기초생활수급자도 탈수급한 경우 일정기간(2년) 교육·의료를 제공하는 '이행급여' 지급대상에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명) : ('10)2,480 → ('11)7,855 → ('12)8,262
 -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성공패키지 취업률(%) : ('10)34.2 → ('11)43.1 → ('12)50.3

□ 취업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 강화(고용부, 복지부, 여가부 등)

- (여성)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확대(90개 → 100개)로 취업지원 강화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12.6.7)
 - 새일센터 취업자수(명) : ('10.9)6.9만 → ('11.9)7.9만 → ('12.9)8.9만

- (장애인)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11년 9,461명 → '12.5월 10,279명) 및 맞춤형훈련과 장애유형별 특성화 훈련강화를 통해 장애인 취업 지원
 - 맞춤형훈련 취업률 : 94.6%(455/481명) / 장애유형별 훈련 취업률 : 81.2%(181/223명)
 -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률(%) : ('10)2.19 → ('12)2.22
- (노인)공공분야 노인 일자리 확대(200천개 → 220천개), 시니어 인턴십 등 시장자립형 일자리 확대로 노동시장 참여 활성화
 - 시니어인턴십 참여 : ('11)3,000명, 54억원 → ('12)3,550명, 64억원
- **사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문화부, 행안부, 복지부)**
 - 문화예술강사 지원사업을 관계기관 협력사업으로 추진하여 군부대·교정시설·소년원 등 문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5일 수업제 전면실시에 대응하여 문화예술분야 일자리를 확대
 - 학교 예술강사 지원(4,263명), 토요문화학교 강사(753명) 등 총 5,741명
 -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시 취약계층 접수리 지원(4,779가구), 농어촌 일손돕기(1,286가구) 등을 통해 소외계층의 생활불편 해소
 -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등록제로 전환하여 이용자 선택권 확대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12.2.5 시행)

개선·보완 필요사항

- **직접일자리사업의 취약계층 참여 확대 및 민간 일자리로의 연계 강화 필요(고용부, 행안부, 복지부, 산림청 등)**
 - 직접 일자리사업의 취업취약계층 참여비율은 73.5%('12.7월)에 달하나, 일부 사업은 목표에 미달하고 관리가 미흡
 - 문화예술교육활성화(2.8%/10%), 해외봉사단(6.1%/15%), 산림서비스 도우미(47.5%/50%), 숲가꾸기(18.3%/20%) 등
 - 특정 참여자가 한시적 일자리사업에 반복 참여하는 문제가 있으며, 취업알선·직업훈련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로의 이동 지원 노력 부족
 - 중앙부처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인원 중 2년 이상 반복참여자는 37.8%(518천명/1,371천명, '09.1~'12.5)
 - (예)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에 대한 적극적 취업연계 실적은 5.7% 수준
 - ☞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제3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12.9.7)에 따라 일자리사업을 취업취약계층 중심으로 운영하고, 직업훈련기회 제공 등을 통해 민간 일자리로 이동을 유도
-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과 지속가능성 제고 필요(복지부, 고용부, 행안부 등)**
 -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노력을 하고 있으나, 돌봄 종사자의 낮은 임금과 자격 미비·교육 부족 문제 지속
 - '12년 돌봄서비스 단가인상률 목표치 : 3%, 최저임금인상률 : 6.1%
 - 아이돌봄서비스 종사자 중 자격증 소지자는 44%, 의무교육시간 미이수사례 빈발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지원이 대부분 인건비 등 직접지원에 치중되고, 성장단계나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은 부족
 - 사회적기업 육성예산 1,760억원중 70%인 1,237억원이 인건비 지원
 - 마을기업 예산 262억원중 인건비·재료비·시설비 등 직접지원비중이 70%수준
 - ☞ 투입인력에 대한 적절한 교육훈련, 자격제도 운영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 강화와 사회적기업의 판로개척지원, 신규수요 발굴 등을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필요
- **장년층 고용연장 및 전직지원서비스 활용도 제고 필요(고용부 등)**
 - 임금피크제 등 고용연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평균 정년은 57세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고,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연령은 53세 수준
 - 기업평균정년(세) : ('08)57.1 → ('09)57.2 → ('10)57.3 → ('11)57.4 → ('12)57.4
 - 50세 이상 고용률은 증가하고 있으나, 주된 일자리에서의 빠른 은퇴로 생계형 자영업자나 임시·일용직이 다수를 차지하는 등 고용의 질은 낮음
 - 55~64세 종사자 지위별 취업현황('12.9) : 생계형 자영업자 37.7%, 임시·일용직 28.8%
 - 베이비붐 세대 퇴직 후 취업지원 사업이 계속 다양화되고 있으나, 통합적 정보 제공 미흡, 인지도 부족 등으로 활용성과 미흡
 - 청장년층 대상 '내일희망찾기 사업' 참여율(%) : 34.0(53천명/156천명)
 - 50+새일터 적응지원사업 참여율(%) : 53.1(1,062명/2,000명)
 -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취업률(%) : ('11)35.1 → ('12.9)23.2
 - ☞ 장년층의 주된 일자리에서의 고용연장과 영세 자영업으로의 진입억제, 창업교육 등을 통해 고용의 질을 제고하고, 재취업 통합 정보 인프라 구축으로 전직 지원사업의 활용도 제고

③ 노동시장 제도개선

주요 정책성과

□ 자치단체 주도의 일자리 창출 지원 확대(고용부)

-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사업에 244개 자치단체 모두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일자리 문제가 지방행정의 우선과제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
 - 일자리 공시제 참여수 : ('10)209개 → ('11)227개 → ('12)244개
-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중앙 주도 정책으로 착안하기 힘든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지원
 - ('11)131개 자치단체 174개 사업 → ('12)136개 자치단체 276개 사업
 -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취업실적(명) : ('09)3,641 → ('10)3,878 → ('11)5,768

개선·보완 필요사항

□ 노동시장 유연성·안정성 제고 노력 강화 필요(고용부)

-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사업 지원 실적이 부진하고, 대기업의 활용도는 낮은 상황
 - 지원금 지급실적 24% (602명/2,463명, '10~'12.8)
 - 50인 미만 기업에 승인기업 집중(65%, 595개), 300인 이상 기업은 11.8%(108개)
- 고용안정지원사업 중 고용촉진·고용창출사업 및 자영업자 전직지원사업이 엄격한 요건, 홍보부족 등으로 지원실적이 부진
 - 고용촉진지원금 25.4%(121억/479억), 고용창출지원금 32.9%(166억/505억)
- ☞ 시간제 일자리 적합 직무 발굴과 인식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 등 활성화 방안 추진

향후과제

□ 청년 고용의 구조적 문제 해소를 위한 노력 강화(기재부, 고용부 등 공동)

- 민·관 공동으로 청년 대상 양질의 일자리 확충 노력 강화 및 해외취업, 창업 등 새로운 일자리 개발 지원
- 창업의 양적 증가 뿐만 아니라 창업유지율에도 정책 목표를 두고, 사후관리를 통해 성공가능성이 있는 창업 지원 강화
- 열린 고용 정책이 지속적인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고교 직업교육 내실화, 능력중심 고용문화 정착 노력 지속 추진
- 뿌리산업, 신성장동력산업 인재육성 및 대·중소기업 상생 인력양성 확대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미래 일자리 창출기반 마련

□ 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자립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고용부, 복지부 등)

- 경기 불안에 민감한 청·장년층, 여성,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의 근로조건 보호 등 사회안전망 강화
- 장년 및 노인은 재직근로자 고용유지와 정년연장을 지원하고, 퇴직전부터 전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재직중 전직지원서비스 강화
- 자영업자의 준비된 창업 유도를 위한 현장교육 강화, 전직지원서비스 강화로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 추진
- 비정규직, 저학력자,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훈련 참여를 확대하고, 직업훈련이 근로조건, 고용형태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내실화

□ 일자리 지키기, 나누기 및 유연화 지원(고용부)

- 경제 불확실성으로 경영여건 악화시에도 구조조정 최소화를 위해 고용유지지원사업 확대 및 내실화
- 경영악화 기업의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직접 지원제도 도입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
- 임금피크제 등 기업의 자율적 고용연장 확산과 장시간 근로개선 등 일자리를 지키고 나누는 고용구조 정착
- 고학력 여성, 일·학업병행 희망 청년, 장년층 등 대상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편과 컨설팅 및 인식개선 추진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효율화 및 사업간 연계 강화(공통)

- 경기 불확실성 증가에 대비,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취약계층 중심으로 운영하고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효율화 지속
- 직접일자리 사업이 민간 일자리로 가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직접일자리 사업과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과의 연계를 강화
- 중앙정부간, 중앙정부-지자체간, 공공-민간간 서비스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지자체에 유사사업 융합운영 등 자율성 확대
-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자체가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사업 기획기능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참고 일자리과제 평가대상

□ 분야별 과제목록

분야		과제	소관부처
청년고용 개선(8)	취·창업지원(3)	·청년 취·창업 역량강화	고용부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생 취·창업 역량강화	교과부
		·청년 창업 활성화	중기청
	신규채용 및 인턴지원(2)	·공공기관 신규채용 확대	기재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고용부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3)	·글로벌 취업지원	고용부
·해외인턴사업		교과부	
·해외봉사단파견 사업(World Friend Korea 사업)		외교부	
열린고용 및 현장중심의 인적자원 양성(7)	열린고용확산(3)	·고졸 취업 문화 정착(특성화고·마이스터고 지원)	교과부
		·고졸자 등 능력개발·취업지원	고용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교육 및 중소기업 취업연계	중기청
	산업현장 중심의 인적자원 양성(4)	·국가기간 전라직종 훈련	고용부
		·중소기업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	고용부
		·중소기업 재직자 교육·연수 지원	중기청
		·산업전문인력 역량 강화	지경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활성화	복지부
사회서비스 일자리지원(6)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및 인프라 조성	복지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행안부	
	·사회적 기업 육성	고용부	
	·문화예술교육활성화	문화부	
	·산림분야 녹색 일자리 창출	산림청	
	·취약계층 취업성공 지원	고용부	
취약계층지원(7)	·개인의 능력개발 지원	고용부	
	·여성·장애인 고용 촉진	고용부	
	·장년층 고용연장·촉진 지원	고용부	
	·경력단절여성 등 여성 취업지원	여가부	
	·장애인·노인일자리 지원	복지부	
	·자활사업	복지부	

분야	과제	소관부처
노동시장 제도개선(4)	•장시간 근로 개선	고용부
	•시간제 일자리 창출	고용부
	•지역일자리 공시제 등 내실화	고용부
	•고용 안정 지원	고용부

□ 부처별 과제목록

부처(과제수)	관리과제	기준치
기획재정부(1)	•공공기관 신규채용 확대	100
교육과학기술부(3)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생 취·창업 역량강화	40
	•해외인턴사업	10
	•고졸 취업 문화 정착(특성화고·마이스터고 지원)	50
외교통상부(1)	•해외봉사단파견 사업(World Friend Korea 사업)	100
행정안전부(1)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00
지식경제부(1)	•산업전문인력 역량 강화	100
보건복지부(4)	•사회서비스 일자리 활성화	20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및 인프라 조성	20
	•자활사업	30
	•장애인·노인일자리 지원	30
고용노동부(15)	•청년 취·창업역량강화	7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8
	•글로벌 취업지원	4
	•고졸자 등 능력개발·취업지원	7
	•국가기간 전략직종 훈련	7
	•중소기업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	5
	•사회적 기업 육성	6
	•취약계층 취업성공 지원	10
	•개인의 능력개발 지원	5
	•여성·장애인 고용 촉진	9
	•장년층 고용연장·촉진 지원	6
	•장시간 근로개선	9
	•시간제 일자리 창출	4
	•지역일자리 공시제 등 내실화	6
	•고용안정 지원	7

부처(과제수)	관리과제	가중치
여성가족부(1)	·경력단절여성 등 여성 취업지원	100
문화체육관광부(1)	·문화예술교육활성화	100
산림청(1)	·산림분야 녹색 일자리 창출	100
중소기업청(3)	·청년 창업 활성화	60
	·특성학교·마이스터고 교육 및 중소기업 취업연계	30
	·중소기업 재직자 교육·연수 지원	10

3. 녹색성장과제

1 평가개요

□ 평가 목적

- 중앙행정기관의 녹색성장과제에 대한 추진노력 및 성과평가를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 평가 대상

- 대상기관 : 24개 중앙행정기관

구분	기관
장관급(15개)	기재부, 교과부, 외교부, 국방부, 행안부, 문화부, 농식품부, 지경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방통위, 금융위
차관급(9개)	조달청, 통계청, 방사청, 방재청, 농진청, 산림청, 중기청, 식약청, 기상청

* 녹색성장과의 업무상 연관성을 감안, 녹색성장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한 24개 중앙행정기관으로 선정

- 대상과제 : 총 40개 과제(* 불임 참고)

□ 평가방법

- 평가의 전문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민간평가단(23명)」을 구성하고, 정책분야에 따라 5개 분과*로 운영
 - * ① 온실가스 감축(8개 과제) ② 녹색산업·녹색기술1(7개 과제) ③ 녹색산업·녹색기술 2(8개) ④ 녹색생활(8개) ⑤ 적용·국제협력(9개)
- 민간평가단에 대한 기관별 평가과제 설명회(5월)를 통해 평가과제를 보완·확정
- 각 기관의 실적자료(10월말 기준)를 토대로 기관별 추진실적 설명회(10월)를 거쳐 민간평가단에서 우수/미흡사례 및 우수/미흡기관 선정
- ※ 기관별 등급·점수는 소관 평가과제 점수를 합산 후 평균하여 산출

□ 평가지표

단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계획과정	계획수립의 적절성(20%)	① 정책목표의 명료성(5%) ② 정책내용의 타당성(5%) ③ 성과지표의 적절성(10%)
집행과정	추진과정의 적절성 등(30%)	① 추진과정의 효율성(5%) ② 추진일정 준수 정도(10%) ③ 추진 과정상 협조노력(10%) ④ 정책소통·교육·홍보 노력(5%)
산출과정	성과 달성도(50%)	① 성과목표 달성도(30%) ② 정책 효과성(20%)

2 기관별 평가등급

· 직제순, 굵은 글씨는 포상 대상기관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최우수(1)	방송통신위원회	
우수(6)	농림수산식품부, 금융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
보통(14)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조달청, 통계청, 방위사업청, 소방방재청, 중소기업청
미흡(3)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3 평가결과

총평

- (성과)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 및 시행령을 제정(11.15 시행),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고효율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
 - 그린 ICT 기술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개발, 녹색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등을 통해 녹색산업·녹색기술 활성화 추진
 - 스마트 기기 간 자동통신·제어를 통해 냉난방 조절 등 에너지 절감
 - 그린리더 양성, 건물에너지 DB 구축 등을 통해 녹색생활을 유도하고, 지자체 적응대책 수립 지원 등을 통해 적응 강화 추진
 - 녹색기후기금(GCF) 송도 유치, GGGI 국제기구 출범, 녹색 ODA 확대 발표 등을 통해 녹색성장 선도국가로 도약
 - 녹색성장 정책 추진현황 점검회의(국무총리 주재)를 7차례 개최, 관련정책의 내실화 및 효과성 도모
 - Smart Grid·LED(2월), 에너지 효율(4월), 녹색금융·녹색ODA·물산업(5월), 녹색생활(6월), 지자체 녹색성장(8월), 생물다양성(9월) 등
- (보완필요)
 - 목표관리체계의 예상배출량 설정의 적정성 제고,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등 온실가스 감축노력 제고 필요
 - 입지규제 완화, R&D 및 금융지원 강화, RPS제도 보완 등
 - 구체적인 녹색 일자리 창출방안을 마련하고 녹색소비·녹색가정 실현을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할 필요
 -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대책 보완, GGGI 조속한 국회비준 추진 필요

분야별 평가결과

① 온실가스 감축분야

주요 정책성과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법률 및 시행령 제정(녹색위, 총리실 등)
 -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대폭 감축 및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할 배출권거래제 법령 제정·시행(11.15)
 - 녹색위, 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력 및 산업계·시민단체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보완을 거쳐 법령 마련, 시행
 - '15년 제도 도입으로 인한 산업계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1차 계획기간('15~'17년)은 배출권을 100% 무상할당하는 등 보완장치 마련

- 중소기업의 자발적 감축사업체계 개편 및 지원 강화(지경부)
 - 자발적 감축사업(KVER) 참여대상을 '목표관리제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정부구매단가 상향, 비용지원 등 추진*
 - * '05년 사업실시부터 '12.9월까지 882건, 1,450만 CO2톤을 인증. 이중 '12.6월까지 436건, 741만 CO2톤을 톤당 평균 4,920원에 정부구매(총 364억원 지급)
 - ** 구매단가를 상향하고(톤당 5,000원→12,000원), 인벤토리 구축·사업계획서 작성·타당성 평가·실적 검증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12년 140건, 5억원)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도입 등 녹색농업 기반 구축(농식품부)
 - 녹색농업기술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효과를 산정하기 위한 방법론* 개발, 검·인증 체계 구축, 저탄소 인증지침 개발
 - * 산업부문과 달리 농업부문은 탄소감축 방법론이 거의 없는 실정. 목재 펄릿, 지열 히트펌프, 폐열회수 등 방법론 6건 개발 완료
 - 화학비료 사용량 저감, 에너지 절감 등으로 CO2를 20%~60%감축하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시범사업* 추진
 - * 8개 품목, 10개 농업브랜드 경영체에서 시범사업 실시, E마트 등 유통업체의 관심 표명에 따라 판촉행사 협의중

개선 보완 필요사항

- 목표관리제도의 예상배출량 설정의 적정성 보완 필요(지경부, 환경부)
 - 금년 관리업체들(458개)의 예상배출량이 실제보다 많이 설정되어 배출허용량(감축목표) 설정시 애로 초래
 - * '12.10월 조사결과 '12년 예상배출량이 과다한 부분을 파악, 조정(18백만톤 삭감: 600백톤→582백만톤)
 - ☞ 현장점검 등 면밀한 검증을 통해 예상배출량을 적정하게 설정하는 등 제도운영의 실효성 제고 필요
- 관광산업의 온실가스 감축노력 유도 강화 필요(문화부)
 - 목표관리제 대상인 10개 관광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대상업체들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였으나, 非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교육·홍보 및 자발적 감축노력 유도 강화 필요
 - ☞ 목표관리제 대상업체들 이외에 중소 관광호텔, 테마파크 등의 동참노력 유도* 필요
 - * 에너지관리공단 등과 협조,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고 전기·난방 등 낭비요인을 찾아 에너지 절약시책을 강구하고 관련 직원 교육 등 추진

향후과제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실행기반 구축(녹색위, 환경부 등)
 - '15년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기본계획, 국가 할당계획(안)을 수립하고 업체별 할당기준, 각종 지침* 마련
 - * 부문별·업체별 배출전망 및 할당기준과 방법, 업체별 할당·조정·취소의 기준과 방법, 경매·이월·차입·상쇄·인증의 세부기준과 지침 등 마련

② 녹색산업·녹색기술분야

주요 정책성과

- 그린 ICT 기술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방통위)
 - M2M 기반의 홈에너지 관리서비스*, 통합 교통정보 스마트앱**, 그린 IDC*** 등 그린 ICT를 활용한 녹색사업모델 10종 개발
 - 2013년 이후 시범사업 추진 및 보급 확산 추진
 - *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간(Machine-to-Machine)의 자동 교신·제어를 통해 냉난방을 자동조절하고 전기사용을 모니터링(가구당 에너지 10% 감축가능)
 - ** 교통상황, 대중교통 정보, 환승주차장 정보 등 각종 교통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스마트폰용 앱 개발(자가용 기준 최대 25%, 연간 48만원 감축가능)
 - *** 부하·발열관리, 효율적 공간 재배치 등 그린 IDC(인터넷 데이터센터) 구축(전력 사용량 최대 50% 감축가능)
 - 저렴한 보급형 스마트워크 솔루션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원격근무, 영상회의 등 스마트워크 확산 적극 추진
 - 향후 「스마트워크 촉진법」 및 가이드라인 제정, 컨설팅 추진
 - * ①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IP TV 등의 기기를 활용, 사무실, 재택, 이동중 등 언제 어디서나 영상회의 등 영상·문서협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 ② 기업과 근로자를 연결해주는 모바일 오피스, ③ 스마트마켓 구축 등

□ **녹색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방안 적극 추진(금융위)**

- 녹색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¹⁾하고, 녹색인증 보유 기업에 대해 우대²⁾를 강화, 자금지원의 효과성 제고
 - 녹색산업 지원실적(조원) : ('09) 6.2 → ('10) 9.0 → ('11) 12.0 → ('12.10) 15.1
 - 여신 제공시 금리 인하, 보증비율 상향(85% → 90%), 보증료 0.5%p 감면, 펀드 투자대상 편입시 가점 부여 등
- LED 팩토링 온렌딩 대상을 확대(LED → 태양광사업 및 에너지 절약 전문사업)하고 한도도 상향조정(350억원 → 700억원)

□ **녹색투자·녹색소비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기재부)**

- 에너지효율 재정사업 조정³⁾, 에너지 고효율 건축 인증기업에 공공사업 참여기회 확대⁴⁾, 수송부문 에너지효율 제고 세제 지원⁵⁾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녹색성장 확산 지원
 - 유사한 사업들을 평가, 조정 : 지자체 LED 보급(지경부, 환경부)은 지경부로 일원화, 그린카드(환경부)와 탄소캐시백(지경부)은 그린카드로 통합 등
 - 녹색기업 인증 및 에너지 효율성 인증실적 보유 건축기업의 수주기회 확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개정, 9월 현재 51건의 공공사업 수주)
 - 하이브리드차 세제혜택 일몰 연장, 대중교통비 사용분 100만원 추가 공제 확대 등(세법 개정안 국회 제출, 9.28)

□ **개도국 중소기업에 사업지원을 통한 녹색성장 전파(중기부)**

- ASEIC(ASEM 중소기업 녹색혁신센터, '11.6 설치) 운영을 통해 개도국 중소기업에 녹색경영 컨설팅, 녹색기술 보급 등 추진⁶⁾
 - ASEIC : ASEM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Ecolnnovation Center
 - ASEM 국가별 에코이노베이션 지수 개발, 한중 녹색협력포럼 개최 등

개선·보완 필요사항

□ **녹색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극적 노력 강화 필요(고용부)**

- 취약계층의 녹색일자리 고용촉진을 위해 '13년까지 녹색산업분야 사회적 기업' 200개소 인증을 목표로 하였으나, 목표에 미달⁷⁾
 -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한 학교급식, 재활용, 지역생태 및 문화재 관리 등
 - '11년 109개에서 '12년 목표를 51개가 증가한 160개로 수립하였으나, 인증신청 부족 등으로 9월말 현재 13개(25%)가 증가한 122개에 불과
- ⇒ 구체적인 녹색 일자리 창출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녹색 사회적 기업 목표('13년 200개소) 달성 필요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노력 강화 필요(지경부)**

- 선진국과 중국 등에 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가 크게 낮은 상황⁸⁾이고 보급실적도 목표를 미달⁹⁾
 - '20년 목표 : 덴마크 35%, 독일 18%, EU 20%, 중국 15%, 한국 6.1%
 - ※ '11년 보급목표가 '03년 2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시 5.0%였으나, '08년 3차 기본계획 수립시 3.2%로 하향조정되었고 '11년 실적은 2.7%(잠정)
 - ('10년)목표 2.98%, 실적 2.61%, ('11년)목표 3.20%, 실적 2.70%(잠정)
- ⇒ 입지규제 완화, 주민 수용성 제고, R&D 및 금융지원 강화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적극 추진 필요
- 최근 세계적 경기침체 등으로 태양광 산업이 위기에 처한 가운데 매년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PS)의 차질 우려¹⁰⁾
 -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 등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보급하도록 의무화('12년 2%, '20년 10%)
 - 최근 인천만 등 대형 조력발전소 건립계획도 관계부처 및 주민반대로 무산되어 향후 RPS 목표달성에 차질 예상
- ⇒ RPS 목표 미달로 부과될 과징금 수입(전력산업기반기금 귀속)의 신재생에너지분야 재투자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 RPS 가중치의 적정성도 재검토, 조정 필요(조력, 수상 태양광 등)

향후과제

□ **전기요금체계 개편 및 Smart Grid 적극 추진(지경부, 기재부)**

- 전압별 요금제, 시간대별 차등요금제 등 도입을 통해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스마트그리드 도입을 위한 요금체계 구축
- 스마트그리드 거점도시 지정, 핵심기술 적극 개발, 스마트기기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스마트그리드 산업생태계 조성

③ 녹색생활분야

주요 정책성과

- '그린 리더' 양성, '그린 터치' 무상보급으로 녹색생활 유도(환경부)
 - 녹색생활을 선도하는 '그린 리더'를 양성¹하고 컴퓨터 대기전력 절약 소프트웨어인 '그린터치'를 무상보급²하는 등 그린스타트 운동³ 확산 추진
 - 일정시간 교육과정 이수후 그린리더 자격증을 부여. 에너지 절감 컨설팅, 기후변화교육 강의 등 지역 녹색활동 선도. '12년 21,953명 양성
 - 홍보 리플릿 지역 네트워크 배포 및 녹색기업협의회와 MOU체결 등을 통해 28만대의 PC에 그린터치를 설치, 전력 439만kWh, CO2 1,861톤 감축
 - 민관 거버넌스 기구인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통해 워크샵, 포럼, 연수, 포상, 경연대회, 홈페이지·SNS 운영 등을 통해 녹색생활 확산 추진
- 건물에너지 통계DB 구축사업 적극 전개(국토부)
 - 경기·인천지역 120만동의 건물 유형별 에너지 통계를 구축하고대국민 포털서비스를 제공(12월)하여 에너지절약 동참 유도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을 제정(2월), 통계자료 제출근거를 마련하고, 지경부·환경부·지자체·에너지공급기관(한전, 난방공사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 전국적인 건물에너지 통계DB를 2014년까지 구축할 계획
- 녹색성장통계 제공을 통한 녹색생활 실천 적극 유도(동계청)
 - 녹색성장지표 홈페이지⁴(<http://green.kostat.go.kr>)를 구축하여 녹색성장의 인지도를 높이고 자발적인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
 - 녹색성장정책지표, 녹색생활지표, OECD 녹색성장지표 등을 제공하고 특히, "나의 녹색생활 실천 점수는?" 코너를 구축하여 녹색구매, 녹색가정, 녹색교통, 녹색직장에서의 자신의 실천점수를 체크하게 하여 학습을 유도

향후과제

- 녹색소비 지원 강화 및 취약계층 지원방안 마련(환경부)
 - 녹색소비가 국민들의 삶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지원⁵ 필요
 - 녹색제품 구매시 소득공제, 부가가치세 감면 등 인센티브 확대 필요
 - 녹색매장으로 지정된 매장에 대한 인센티브⁶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녹색매장 대폭 확대를 유도할 필요
 - 녹색매장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 등
 - 저소득층 등 녹색소비 취약계층의 녹색소비 혜택 불균형을 시정할 지원방안⁷을 강구
 - 저소득층에게 일정한도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를 직접 보조해주는 '녹색구매 바우처제도' 등 도입 검토
- 자전거를 통한 대중교통 대체노력 강화(행안부)
 - 레저용 자전거 이용 확대성과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자전거를 통해 자가용 이용을 대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도심 출퇴근용 자전거 활성화 노력 강화 필요
 - 국내외 성공사례(파리, 청원 등)를 벤치마킹, 도심 자전거 차도 확충⁸, 자전거 출퇴근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안전대책 등 보완
 - 교통체증 가중여부 등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차도 확충 필요

④ 기후변화 적응분야

주요 정책성과

- 국가 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 생산·배포(기상청)
 - 전지구·한반도·남한 상세 등 3종류의 새로운 시나리오⁹를 작성하여 관계부처·지자체의 적응대책 보완에 활용토록 함으로써, 기관별로 각기 다른 시나리오 사용에 따른 혼란을 방지
 -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기온이 3.2℃상승(기존 시나리오는 2.0℃)하고 연 강수량은 15.6% 증가할 전망(기존 시나리오는 11.5%)
-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지원 강화(환경부)
 - 지자체의 적응대책 시행계획에 대한 취약성 평가 및 대책 제시¹⁰, 컨설팅단 구성·운영¹¹ 등을 통해 대책수립을 적극 지원
 - 적응대책 시행계획 수립 시범사업을 추진한 16개 기초 지자체 대상
 - 8개 시·도 및 1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토론 및 컨설팅 실시

- 기후변화 대응 식품안전 영향분석 및 안전관리 강화(식약청)
 -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 시나리오¹⁾를 개발하고 '국가 식품안전 위해요소 DB' 구축, CO2 저감 식품제조공정도 개발²⁾
 - 현재 추세대로 온난화가 진행될 경우 2030년에 식품안전수준이 14.4% 하락 전망. 국내 3대 기후권역별 식중독 발생 예측모델도 개발
 - 현재 식품업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산화전분 제조기술을 대체하고 소모전력과 CO2 배출량을 50% 절감할 수 있는 선택적 산화공정 기술 개발

개선·보완 필요사항

- 기후변화 요인별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대책 보완 필요(복지부)
 - 노인 등에 대한 폭염대책은 수립하였으나, 오존농도·미세먼지 증가로 인한 호흡기질환 증가, 매개 감염병 질환 증가, 폭한 등에 대한 건강관리대책이 더 강화될 필요
 - ☞ 기후변화 요인별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건강관리대책 마련 필요

향후과제

- 산업부문 등 경제부문 적응대책 수립(지경부)
 - 적응대책이 대부분 건강, 재해예방, 농수산업, 물관리, 산림 등에 치우쳐, 산업계 등 경제부문의 적응대책 강화 필요
 - 환경부, 지경부, 금융위, 기상청이 협력, 기후리스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거나 hedge할 수 있는 방안(기후파생상품 등) 적극 연구
- 기후변화 적응 관련 R&D 강화(환경부 등)
 - 온실가스 감축(mitigation)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과되어온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에 대한 경제적 분석³⁾을 강화할 필요
 - 지구온난화 정도가 더욱 심화됨에 따라 환경, 보건, 농수산업 뿐만 아니라 산업계에 대한 영향·대안 분석, 도시 인프라 설계기준 강화 연구 등 필요
- 방재기준 강화에 따른 소요비용 고려(방재청)
 - 기상이변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방재기준⁴⁾ 강화시, 소요비용에 대한 예측 및 고려도 감안하여 적정수준을 설정할 필요
 - 소하천 관리기준,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등

⑤ 국제협력 및 기타분야

주요 정책성과

- GCF 유치를 통한 녹색성장 선도기반 마련(기재부, 외교부, 환경부)
 - 기후변화의 World Bank라 불리는 GCF⁵⁾ 본부를 송도에 유치(10.20), 국격을 제고하고 녹색성장 선도국 도약기반 마련
 - GCF(Green Climate Fund, 녹색기후기금) 선진국에서 2020년까지 매년 1,000억불 규모로 기금을 조성,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
- GGGI 국제기구화를 통한 녹색성장 확산기반 구축(외교부)
 - 우리나라가 최초로 주도하여 설립한 GGGI⁶⁾를 국제기구로 출범(10.18)시켜 녹색성장 모델의 국제적 확산 기반을 구축
 - GGGI(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 녹색성장을 글로벌 의제로 확산하고 개도국의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10.6월 설립
- AFoCO 설치 등을 통한 산림분야 국제협력 강화(산림청)
 - AFoCO⁷⁾(아시아산림협력기구) 산림협력 협정 발효, 사무국 개소(서울) 등을 통해 주도권 선점, 탄소배출권 확보 등 국익 증진
 - 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 아시아 국가들의 조림, 산림녹화, 산림복구 등을 통해 목재자원 확보, 황사 방지, 탄소배출권 확보 등 추진

개선·보완 필요사항

- GGGI의 국회비준 조속추진 필요(외교부)
 - GGGI는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하고 우리나라에 본부를 두고 있으나, 아직 국회 비준을 받지 못해⁸⁾ 동 기구를 통한 녹색성장 선도에 한계 노정
 - 서명한 18개국 중 5개국 비준(덴마크, 가이아나, 키리바시, 필리핀, 카타르)
 - ☞ 국회비준을 조속히 완료, GGGI의 이니셔티브 유지 필요

향후과제

- GCF 유치 후속조치의 확실한 추진(기재부, 외교부 등)
 - 직접적 후속조치* 뿐만 아니라, 외국인 정주여건 제고방안**,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등 범정부적으로 추진****함으로써 GCF 유치의 파급효과 극대화 추진
 - 임시 사무국(독일 본) 이전, 본부협정 체결, 특별법 제정, 운영비 확보 등
 - ** 주거·교육·의료·관광·문화 등
 - ***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력·국제금융·R&D·컨벤션산업 등
 - **** 범정부 추진 기획단을 구성·운영
- 개도국 녹색성장 추진 지원 확대(외교부, 기재부 등)
 - 녹색 ODA 비중목표('20년 30%) 달성을 위해 일반 원조의 녹색화, 맞춤형 녹색 ODA 수요 발굴 등을 추진하고, 금년 종료되는 EACP*를 확대한 GGGP** 사업 적극 발굴·추진
 - EACP(East Asia Climate Partnership,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 : 물관리, 신재생에너지, 산림, 폐기물, 저탄소 도시 등 5개 중점분야에 대해 10개 개도국에서 17개 프로젝트를 수행(2009~2012)
 - ** GGGP(Global Green Growth Partnership, 글로벌 녹색성장 파트너십) : 동아시아 개도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 개도국을 대상으로 양자·다자, 유상·무상, 민·관 등 다양한 녹색성장 지원사업을 추진

참고

2012년 녹색성장 평가과제 목록

분야	평가과제(40개)	주관부처
온실가스 감축(8개)	• 농림·수산·식품부문 온실가스 감축 추진	농식품부
	• 산림 탄소흡수원 확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	산림청
	•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 추진	지경부
	•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총괄·조정	환경부
	•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추진	환경부
	•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추진	국토부
	•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추진	행안부
	•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 추진	국토부
녹색산업·기술 1(7개)	• 에너지 가격체계 및 친환경적 세제 개편	기재부
	• 녹색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금융위
	• 녹색기술 R&D 투자확대 및 녹색인력 양성	교과부
	• 산업구조의 저탄소·고효율화 추진	지경부
	• 녹색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녹색기술 개발 촉진	지경부
	•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확대	지경부
	• 녹색일자리 창출 및 인력 양성	고용부

분야	평가과제(40개)	주관부처
녹색산업·기술(8개)	· 녹색환경산업 육성·글로벌화	환경부
	· 방송통신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방통융합산업 인프라 구축	방통위
	· 녹색의료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수출 활성화	복지부
	· 식품·의약품부문 신성장산업 육성 지원	식약청
	· 공공조달시장의 녹색제품 구매 확대	조달청
	· 녹색 국방기술 개발 추진 강화	방사청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농업기술 개발	농진청
	· 중소기업 녹색성장 지원	중기청
녹색생활(8개)	· 녹색교육 내실화 및 그린스쿨 활성화	교과부
	· 건물·교통부문의 녹색생활 실천 촉진	국토부
	· 저탄소·에너지 절감형 국방운영체계 구축	국방부
	·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 및 지방 녹색성장 추진 강화	행안부
	· 문화·체육부문 녹색생활 실천 및 녹색관광 활성화	문화부
	· 농식품부문 녹색생활 실천 강화	농식품부
	· 녹색생활 실천 기반구축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환경부
	· 가정생활에서의 녹색성장 실천 확대	여가부
적응 및 국제협력(9개)	· 대 개도국 녹색공여 확대	기재부
	· 녹색성장 관련 국제회의의 기여 및 GGGI 국제기구화 추진	외교부
	·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 관리체계 구축	복지부
	· 기후변화 대응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식약청
	· 범국가적 기후변화 적응체계 구축·추진	환경부
	· 기후변화에 대응한 사전예방적 방재체계 구축	방재청
	· 기후변화 예측정보 생산 및 활용 확대	기상청
	· 기후변화 적응 농업기술 개발	농진청
	· 녹색성장 관련 각종 통계 개발 및 제공	통계청

4. 정책관리역량

1 평가개요

□ 평가 목적

- 각 부처가 주요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정책활동의 관리 노력 및 성과를 평가하여 적극적인 리더십 발휘를 통한 정책성과 창출을 촉진

□ 평가대상

○ 대상기관 : 40개 중앙행정기관

분야	소관부처		
	장관급(21)	차관급(19)	
경제	I	기재부, 공정위, 금융위, 국과위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II	농식품부, 지경부, 국토부, 방통위	농진청, 산림청, 중기청, 특허청
사회문화	교과부, 문화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성가족부	문화재청, 식약청, 기상청	
일반행정	법무부, 행안부, 권익위	법제처, 경찰청, 방재청, 행복청	
외교통일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원안위	보훈처, 병무청, 방사청, 해경청	

□ 평가방법

- 평가의 전문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민간 전문가 평가단'(38명)을 구성·운영
- 전문가 평가단이 각 부처에서 제출한 실적자료(10월말 기준)를 토대로 평가지표의 특성에 따라 정량·정성평가를 병행
- '부처 업무설명회'를 통해 피평가기관에게 설명기회 제공

□ 평가지표

평가항목(배점)	평가지표(배점)
1. 정책이슈관리(15)	1-1. 정책이슈 대응 노력(15)
2. 정책조정·통합 관리(40)	2-1. 부처 간 협력도(20)
	2-2. 대 국회 지지 확보 및 대응 노력(10)
	2-3. 이해관계자 지지 확보 및 대응 노력(10)
3. 특정시책 이행 관리(35)	3-1. 나눔과 배려 관련 정책수행 노력(15)
	3-1-1. 장애인 고용(5)
	3-1-2.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5)
	3-1-3. 공공구매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5)
	3-2. 공직기강 확립 노력(15)
	3-2-1. 자체감사·감찰활동 강화 노력(8)
3-2-2.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노력(4)	
3-2-3. 반부패 분위기 및 의식제고 노력(3)	
3-3. 통계기반 정책관리 노력(5)	
4. 주요정책 집행관리(10,+5)	4-1. 업무계획 이행·관리 노력(10)
	4-2. 재정집행 이행·관리 노력(가점. 0~5)

② 기관별 평가등급

* 직제순, 굵은 글씨는 포상 대상기관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최우수(2)	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우수(10)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병무청, 통계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22)	교육과학기술부,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농촌진흥청, 특허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미흡(6)	국방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처, 국가보훈처, 문화재청

③ 평가결과

총평

- (여건)전반적인 내수시장 위축과 경기침체로 국민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재난·재해, 성폭력, 학교폭력 등 부처간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대처해야 할 정책이슈 증가
- (성과)정책이슈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이에 적극 대응하는 등 국민눈높이에 맞는 정책관리를 통한 정책효과성 제고 추진
 - (정책이슈)열린고용 확산, 비정규직 차별시정, 하절기 전력관리 등 제기되는 정책이슈들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사회적 논란 확산 방지
 - (부처협력)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 성폭력 및 학교폭력 대응, 주 5일제 전면 실시 등 부처간 공동협력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및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해 노력
 - (국회·이해관계자 지지 확보)배출권거래제법 국회통과, 의약품 약국의 판매 실시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들에 대한 의견수렴과 적극적 설득을 통해 갈등관리를 제고
 - (공직기강 및 재정집행)비리발생 우려가 높은 분야에 대한 기획감찰 및 예년대비 집행을 개선 등을 통해 청렴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공직사회가 되기 위해 노력
 - (나눔과 배려)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확대 등으로 사회적 약자 배려와 공정사회 구현 노력
- (보완필요)일부 현안사안에 대해서는 부처협력 및 공동대응 미흡 등으로 효과성 있는 대책마련 지연
 - (정책이슈)'구미 화학물질 누출사고' 등 급박한 사고발생에 대해 부처간 협력 및 공동대응 미흡
 - (정책조정·통합)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 및 장기요양보험제도 등 개선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대책마련이 지연되고 있어 효과적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① 정책이슈 관리

- 정책이슈 대응 노력
 - 이슈 발생 초동단계에서 범부처적 협조를 통한 적극적인 대응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조치로 정책의 효과성 제고

- * **농식품부** : '소 해면상뇌증(BSE)' 발생('12.4.25)에 대응하여, 수입 축산물 검역 강화, 수출작업장 현지점검 및 BSE 관련 국내외 동향정보 제공으로 국민 불안 해소
 - * **지경부** : 산업계 절전유도, 안정적인 공급능력 확보 및 국민 에너지 절약을 포괄한 「**하계전력수급대책**」을 수립하여 하계 전력수급 안정화
 - * **기재부·농식품부·지경부** : 한·미 FTA 비준에 따른 피해산업 보호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추가 보완대책을 수립('12.1월), 재정지원을 '17년까지 22.1조원에서 24.1조원으로 확대
 - * **금융위** : 저신용·저소득 계층의 대부업·사채 등 사금융 의존 경향 증가로 '불법사금융'에 따른 피해가 심화되자 범정부적 협력으로 '불법사금융 척결방안'을 마련, 불법사금융 피해자 원스톱 구제 시스템 마련
 - * **해경청** : 중국 불법어선의 흉포화 등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단속역량을 강화하여 어민·수자원 보호에 기여 ('12.9월 현재 295척 검거, 전년 대비 85척 ↑)
 - 그러나 일부 돌발적 이슈발생에 대해서는 사후적 처방에 의존하고, 단기적·소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정책 효과성 저하 사례 발생

- * **환경부·지경부·고용부·행안부·방재청** : (주)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관련, 역할정립 및 대응 미흡으로 피해 확산과 정부의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점 노출
 - * **국방부** : 전방 접적지역의 경계·보고체계 및 정보공유 문제점 노출됨으로써 DMZ 지역 감시체계 보강, 상하급 부대간 상황보고 체계 명확화 등 대책 수립 필요
 - * **경찰청** : 수원 여성납치 살인사건(4.1) 이후 '112 신고센터 종합개선대책'(5.22)에도 불구하고 112 신고에 대한 부실 대응 사건이 재발, 치안력 제고방안 강구 필요
- ⇨ 사회적 이슈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적극 대응함으로써 정책 신뢰성 제고 필요

② 정책조정·통합 관리

□ 부처 간 협력도

- 일자리 창출, 복지기반 확충, 녹색 성장 등 범정부적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동 대응·협력 강화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

- **기재부·환경부** : 녹색기후기금(GCF)의 인천 송도 유치('12.10월)로 글로벌 녹색성장 리더십의 강화와 사무국 유치에 따른 경제파급효과가 연간 3,800억원으로 예상
- **교과부·복지부** : 부처간 협력으로 5세 누리과정 시행('12.3월) 및 3~4세 확대를 결정('12.1월)하여, 유치원(교과부)과 어린이집(복지부)의 교육과정을 일원화하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을 지원키로 합의
- **고용부** : 범정부적 열린고용 협력체계(교과부·중기청 등 6개기관) 구축·추진으로 고졸 취업을 상승(특성화고 취업을 '11)25.9%→('12) 37.5%, 11.6% ↑) 및 사회적 인식 전환 계기 마련
- **방통위**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 관련 법무부와 경찰청간 이견을 적극 조율, 위급상황 시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 다만, 일부 정책의 해결방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 입장차이로 인한 협력부족으로 정책성과 발생 지연

- **국방부·보훈처** : 6.25전쟁 전사자 사망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적극적 협의 부족 및 책임 공방으로 제도 개선 지연
- **방통위** : 인터넷 이용환경 변화에 따라 본인확인제(인터넷실명제)개선 필요성 제기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처와 협의 조정 미흡으로 제도개선 지연
- **경찰청·국토부** : 전체적인 교통사고 수는 감소하였으나, 교통약자(노인 등)를 중심으로 교통사고 사상자 수가 증가함에도 원인분석 및 감소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련 기관간 공조체계 미흡

- ⇒ 부처간 이견이 있는 정책추진시 사전에 목표달성도,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예상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

□ 대 국회 지지 확보 및 대응 노력

- 입법, 예산 및 쟁점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부처가 국회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협조를 얻기 위해 노력

- **복지부** : 당초 의약품 오남용 등을 우려하여 국회에서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확보품목 우선선정(13개) 등 안전관리방안 제시 등을 통해 국회 지지를 확보하여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의 판매 시행('12.11월)
- **행안부** :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인하추진('12.9월)시, 취득세 감면에 반대하던 지자체·야당 등을 설득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조기개정
- **방통위** : 30년간 독점체제였던 지상파방송 광고판매시장에 경쟁도입을 위해 핵심쟁점의 여·야 이견에 대한 조율을 통한 「미디어랩법」의 조속한 입법 추진('12.2월)
- **지경부** : 대기업 등 이해관계자 반발로 여·야 의원 간 다소 이견이 있어 폐기될 우려가 있었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의 국회 설득·소통 강화를 통한 법 개정(5.23)으로 공생발전 기반 마련

- 일부 법안은 18대 국회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쟁점법안의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해관계자 설득 부족으로 처리 지연

- **국토부** :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에 대해 국회에서 분양가 상승 우려 등의 이유로 입법 지연
- **금융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형 투자은행(IB) 도입 등에 대한 국회 내 이견 존재로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 금융투자산업 경쟁력 제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의 입법 지연
- **국과위** : 「과기분야 정출연(연)법」개정(안)의 단일법안화 및 개별기관 법인격 해체에 대한 개별 연구기관의 전통과 정체성 훼손 우려 제기로 처리지연

- ⇒ 국회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당정협의·정책설명회 등을 적극 추진하고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득 등의 전방위적 노력 필요

□ 이해관계자 지지 확보 및 대응 노력

- 해당 정책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정책 대상별 차별화된 설득 노력으로 관련정책의 지지 확보

- **복지부** : 약기인하 관련 관련업계 의견수렴(장관면담, 국회토론회 등), TV·라디오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 등으로 시민단체의 지지 유도 및 정책의 성공적 이행 도모
- **환경부** : 산업계 등의 반발로 1년간 지연되어 왔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환경부-지경부 간 정책협의회(3.19) 등을 거쳐 법 제정 추진 합의
- **농식품부** : 한·미 FTA 관련 농어업분야 국내 보완대책 및 세부이행계획 마련 과정에서 농어업인 단체 및 지자체 담당공무원 대상 간담회·현장 설명회를 적극 추진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
- **방통위**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민번호 사용제한 관련,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및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정책에 대한 지지 확보

○ 그러나, 일부 부처의 경우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득 미흡으로 갈등이 확대되거나 정책지연 등의 사례 발생

- **원안위** : 고리원전 사건, 노원구 도로포장재 방사성폐기물 등으로 국민들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불안감 증가,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정책 추진 관련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 및 해결방안 마련 필요
- **외교부·국방부** : '한·일 정보보호협정'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설명 부족, 오해 소지가 있는 안건 처리과정 등 언론과 정치권의 문제제기에 적기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추진에 차질 발생
- **국토부** : 'KTX 경쟁체제 도입' 관련 제기된 논란(민영화·특혜의혹·요금인상 등)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고 공감대 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전략 수립 필요

⇒ 이해관계자와의 다양한 소통 창구 마련을 통해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 노력을 강화하고 시민단체·언론 등에 대한 설득 노력도 병행

③ 공직기강 확립 노력

【성과】

○ 자체 감찰활동을 통해 다수의 비위공무원을 적발·조치하는 등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비리근절대책 마련·추진

- **국토부** : 윈스트라이크아웃제·비리자진신고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비리 제로화 방안'을 마련·시행('12.6월)하고, 상시감찰 통해 비위직원 적발·조치
- **해경청** : '12년 총 14차례의 공직기강 점검활동을 통해 132명의 비위자 자체적발 및 조치(중징계 31명, 경징계 84명, 불문경고 17명)

○ 불합리한 제도·관행 사례를 적극 발굴·개선하고, 비리발생 우려가 높은 업무분야에 대한 기획점검 실시

- **행안부** : 관서운영경비의 관행적 부당집행에 대한 점검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지자체 청소서비스 위탁영역에 대한 기획 감찰을 통해 위법·부당사례 적출 및 예산 누수 방지방안 마련
- **산림청** : 공용차량 사용일지 기록 강화, 정부구매카드 사용 활성화 등으로 부실관리 관행을 개선하고, 정책자금 및 지원·위탁사업 등에 대한 실태를 기획 점검하여 회수 등 조치

○ 대부분 기관에서 적정 감사·감찰 인력(정원 대비 0.8%)을 확보하고, 감사부서 근무자의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 적극 노력
 • 국방부·권익위·보훈처 등 대부분의 기관이 해당(27개 기관, 67.5%)

【보완필요】

- 일부부처의 경우 공직기강 해이 또는 비위행위 직원에 대한 자발적인 조사·적발 노력이 미흡하고, 온정주의적 처벌 관행이 잔존
- **농식품부·복지부·기상청** : 국회·언론에서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지적이 있고, 외부기관의 비위공직자 통보사항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적발실적이 전무함
- 일부기관은 관행적·구조적 비리 척결을 위한 자체적인 점검·개선 노력이 부족하고, 자체 감사역량 강화 노력도 미흡

- **기상청** : 공직기강 확립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사례 제출복지부 : 전년도 사례 또는 전년도 확정계획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제출
- **여가부·국과위·원안위** : 감사부서 근무자에 대한 교육 및 포상 등 감사역량 강화 노력 미흡

⇒ 비위자 엄정 처벌, 자체감사 활성화, 업무특성 및 조직문화에 따른 구조적·관행적 비리 척결 등 공직기강 확립 노력 강화 필요

④ 주요정책 집행관리

□ 업무계획 이행·관리 노력

- '12년도 업무계획 과제 851개 중 1분기 지연과제는 29개(3.4%, 부처 귀책사유 21개), 2분기 지연과제는 47개(5.5%, 부처 귀책사유 22개)로 증가
- '11년 대비(109개, 9.2%) 지연과제 수와 비율은 감소(△62개, △3.7%)
- 대외환경 및 추진여건 변화에 따른 지연, 법률 국회통과 지연 등은 제외
- 부처 귀책사유로 볼 수 있는 지연원인에는 '절차이행 지연', '관계기관 등 이견', '정책방향 수정'이 해당

과제수	원인별		절차이행 지연	관계기관 등 이견	정책방향 수정
	1분기	2분기			
1분기	21		14(66.7%)	5(23.8%)	2(9.5%)
2분기	22		8(36.4%)	9(40.9%)	5(22.7%)

- **국토부** : 관계기관과의 의견수렴 및 재원확보 방안 마련 등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여수박람회 사후 활용방안 마련' 일정 지연
- **교과부** : 재정전략실장 보임기준, 직제 및 사무분장에 다소 기간이 소요되어 서울대학교 법인 정착 지원을 위한 'CFO 영입 공모' 일정 지연
- **조달청** : 거래소의 상장심사 일정 및 시스템 개발 지연 등으로 민관공동비축 활성화를 위한 '구리 ETF 상장' 일정 지연
- **농식품부** : 농협에 대한 정부 지원내용의 지연확정(2.24) 및 노조반발로 인한 이행약정서 체결 지연(5.29)으로 인해 '유통지원자금 운용 및 조성방안' 고시 제정 지연
- **고용부** : 채용공시내용 중 세부고용형태에 대한 관계부처와의 이견 조율과정에 일정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공공기관 고용구조 공시' 지연
- **보훈처** : 조성예정지(보은군) 주민의 반발로 인한 유치지 변경(괴산군)과정에서 일정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국립묘지 안정능력 확충을 위한 '중부권 호국원 실시설계 착수' 지연
- **교과부** : 주 5일 수업제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한 만족도 조사를 1학기말 또는 학년말에 시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추진일정을 연기

☞ 계획단계부터 철저한 사전예측과 준비를 통해 연초부터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연요인 최소화 노력 필요

□ 재정집행 이행·관리 노력

- 유로존 불안 등 대내·외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각 부처의 집행관리 노력 강화에 따라 예년 대비 집행을 개선 ('10~'11년 평균 75.3%→'12년 78.9%, 3.6%p 증가)
- 2개년 평균 대비 '12년 재정집행을 증가 부처 26개(10% 이상 증가 부처 5개, 5% 이상 증가 부처 10개), 감소 부처 13개

- **국토부** : 예산 및 주택기금 사업의 공정관리, 제도개선 노력 등으로 집행률이 제고(4.77%p 상승)되고, 주택기금 사업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 지원 확대 등 제도개선 노력으로 2개년 대비 집행률이 12.27% 증가
- **방재청** : 재해예방사업(6,535억원, 본예산의 80% 수준)은 조기추진단 구성·운영, 현장방문·점검 등 지자체 재정집행 강화를 통해 2개년 평균보다 5%이상 집행을 제고

- 그러나, 일부 부처(농식품부, 국방부, 농진청 등)대규모 사업의 집행 부진으로 전체 집행을 제고 미흡

- **농식품부** : 혁신회계 세수부족으로 소속기관 이전을 위한 토지매입, 공정절차 추진 등이 지연되어 2개년 평균 대비 집행 저조(△10.42%p)
- **국방부** : 주의회계는 한·미간 특수정보시설 건설비용 지급방식 이견으로 2개년 평균대비 집행 저조(△9.8%p)
- **농진청** : 혁신회계 농업생명연구단지조성사업(4,874억원)이 종전부지 매각 지연에 따른 세수부족으로 2개년 평균대비 집행 저조(△5%p)

☞ 집행부진 부처·사업에 대한 적기 배정계획 수립 및 집행애로요인 해소 등 집행관리를 강화하고, 대내·외 재정위기의 상시·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의 경기보완적 역할 수행 필요

□ 정책현안과제 이행상황 점검·평가 결과

- 총 25개 과제 398개 개선조치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과제별 개선방안의 취지에 따라 충실하게 이행 - 추진완료된 개선조치는 291개(73.1%), 정상추진 중인 개선조치는 84개(21.1%), 지연·미흡은 23개(5.8%)
- 대부분의 과제는 개선조치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개선효과를 달성하여 국정 운영성과 제고에 기여
 - 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 미소금융 확대, 사회적기업 활성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확대 등
- 다만, 일부 개선조치는 일정이 지연되거나 조치내용이 미흡하여 개선방안 이행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
 - 한약재 원산지표시제도 도입, 농어촌 119 구급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등

⑤ 특정시책 이행관리

□ 장애인 고용 노력(의무고용률 : 정부·공기업·준정부기관 3%, 기타공공기관 2.5%)

- 상당수의 부처(40개, 3.26%)·공기업(27개, 3.16%)·준정부기관(83개, 3.45%)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
 - 특히, 법제처는 중증장애인 지속 채용으로 4.37%를 달성하였고,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던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장애인 적합 직위 발굴 등으로 의무고용 준수기관으로 전환
- 일부 부처(10개, 2.15%)와 기타공공기관(125개, 1.96%)은 의무고용률 미달
 - 농촌진흥청(2.96%), 기상청(2.94%), 기획재정부(2.89%), 경찰청(2.75%), 국방부(2.71%), 교육과학기술부(2.30%), 행정북해도시간설청(2.07%), 외교통상부(2.02%), 국가과학기술위원회(0.82%), 원자력안전위원회(0%)
- ⇒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기관장이 장애인 고용 현황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중증장애인 특별채용 확대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노력(구매의무 : 총구매액의 1% 이상)

- 다품목 구매 및 일괄구매 방식, 수의계약 도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확대를 위해 노력

- **여기부** : 연구용역 등 간접집행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유도 등의 구매촉진노력의 결과로 평가대상기관 중 가장 높은 구매비율(3.20%)과 18개 지정품목 구매기준의 유일한 달성
- **산림청** : 구매실적을 통합 성과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사무용품 등 소모품자재의 경우 계약부서에서 일괄구매 하는 등으로 구매실적 증가
- **방재청** : 사무용품 등 소모성자재를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집중 구매제', 부서별 구매목표 할당, 담당자 지정 등의 제도 시행

- 그러나, 전(준)부처 총 구매액(17조 4,342억원)에 대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비율은 0.60%로 저조
 - 총 구매액이 큰 기관의 상대적으로 낮은 실적*으로 구매비율은 다소 저조하나, 기관별 구매비율 평균값은 0.99%로 구매목표 비율 1%에 근접
 - 총 구매액 1조원 이상 중 4개 기관 구매비율(총구매액) : 교과부 0.27%(1조3,585억원), 국토부 0.33%(3조1,410억원), 지경부 0.68%(5조7,500억원), 방위사업청 0.31%(1조2,349억원)
- ⇒ 우선구매 제고를 위한 기관별 우수사례의 공유와 함께 d-Brain시스템을 이용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자동집계 방식으로 구매실적의 신뢰성 제고 필요

□ 공공구매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중소기업제품 50% 의무, 기술개발제품 10% 권장)

- 전(준)부처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율('11년 62.2%→'12년 63.4%)과 기술개발제품 권장 구매율 달성 기관 수('11년 4개 기관→'12년 16개 기관)가 '11년 대비 증가
 - 특히, 중소기업제품 법정 구매율(50%)은 36개 부처가 달성하였고, 26개 부처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율이 전년대비 증가

- **행안부** : 사무용품 공동구매제도 운영, 중기제품 우선구매 목표관리체계 구축, 구매실적의 성과평가 반영 등을 통해 중기제품 구매율이 전년대비 10.0% 증가('11년 53.0%→'12년 63.0%)
- **환경부** : 물품 구매절차 표준화, 소속기관에 대한 구매실적 점검 및 모니터링 등의 적극적 노력으로 중기제품 구매율이 전년대비 10.5% 증가('11년 44.0%→'12년 54.5%)
- **관세청** : 소속기관 중기제품 구매실적 통합성과관리 및 기관장(직원) 성과금 차등지급으로 중기제품 구매율이 전년대비 13.0% 증가('11년 69.8%→'12년 82.8%)

- 다만,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권장 구매율(10%)에 미달한 부처가 25개에 이르고, 일부 부처*의 경우 구매실적이 저조
- * 구매율 1% 미만 기관 : 경찰청(0%), 공정위(0.27%), 권익위(0.6%), 해경청(0.67%), 여가부(0.71%)
- ☞ 각 기관 특성에 부합하는 제도개선, 구매실적에 대한 자체평가 등 다각적인 노력과 중기제품 인식 제고 등을 통해 구매동기 유발 필요

□ 통계기반 정책관리 노력

- 통계를 활용한 법령 제·개정, 정책수립·집행, 예산절감 등 통계 활용도를 제고 하였고, 새로운 통계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통계작성 인프라 구축, 통계서비스 강화 등 국가통계 신뢰성 제고

- **교과부** : 통계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교육통계 품질관리 개선방안'을 시행하여 대학의 교육환경 및 질적 수준 평가 등에 활용 (78개 부실대학 및 300개 우수대학 선정)
- **국토부** : 부동산 행정정보를 일원화하고 불일치 자료를 정비하는 등 통계의 신뢰도 제고와 대국민 서비스 향상, 행정비용의 절감 등에 활용
- **경찰청** : 범죄통계 세분화(기준 : 7개 분야 → 개선 : 15개 분야) 및 DNA 통계 신규개발을 통해 형사정책 수립에 기여 (외국인범죄, 고령화범죄 분석 등)

- 다만 일부부처는 정책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통계 개발·개선 관심과 노력이 부족하고, 집계요류, 조사부실, 미승인 공표 등 통계관리 미흡으로 통계 신뢰성 관련 오해 야기

- **통일부** : 전문 인력, 예산의 확보, 통계전담체제 등이 미흡하고, 일부 분야에서 협력 및 통일을 대비한 자료의 구축과 정비가 필요
- **문화재청** :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재통합관리시스템 연계가 부족하며, 문화재통합관리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력된 정보의 확산에 초점을 맞출 필요

☞ 각 부처별로 통계역량(전담조직·전문인력 등)을 강화하고 정책 수립시 통계 활용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

5. 규제개혁

1 평가개요

□ 평가 목적

- 각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추진 노력 및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기업부담 완화와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적극적 규제개혁 노력 유도

□ 평가대상

- 대상기관 : 등록규제가 6개 이상인 28개 중앙행정기관
- 부 단위(17개)와 청 단위(11개) 내 등록규제 수를 기준으로 그룹핑, 평가결과의 신뢰성·수용성 제고

구분	기관명	
부단위 기관(17)	I 그룹 : 8개 부처 (등록규제수 300개 이상)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물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II 그룹 : 9개 부처 (등록규제수 300개 미만)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청단위 기관(11)	III 그룹 : 11개 부처	국가보훈처, 국세청, 관세청, 특허청, 해양경찰청, 경찰청, 문화재청, 소방방재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식품의약품안전청

※ 등록규제가 5개 이하인 기관(국무총리실,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검찰청, 조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통계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사회경제적 여건상 규제개혁이 어려운 기관(통일부, 농촌진흥청, 기상청)제외

□ 평가방법

- 평가지표의 특성에 따라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병행
- '규제개혁과제 발굴' 등은 정량적 평가, '규제개혁 효과' 등 정성적 항목은 민관합동 규제개혁평가단의 평가와 고객만족도 조사를 병행 실시
- 규제개혁추진에 수요자의 입장을 반영하고, 평가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관합동 규제개혁 평가단」을 구성·운영(총 14명)

□ 평가지표

구분		평가지표(배점)
종합 성과평가(70%)	계획 (30, ±5)	1-1. 규제개혁분야의 적절성(20) 1-2. 규제개혁발굴률(10) · 전략과제 발굴·검토·수용 기여도(±5)
	집행 (40)	2. 규제개혁 추진역량(15) 3. 추진의 적극성(5) 4. 입법절차 준수의 적절성(5) 5. 홍보의 적극성(15)
	규제개혁 성과(30, ±5)	6. 규제개혁과제 이행률(10) 7. 규제개혁 만족도(20) · 행정조사 정비실적(±5)
중점과제 ¹ 성과평가(30%) *참고	계획 (30, ±3)	1. 과제선정의 적절성(30) · 목표설정적 적극성(±3)
	규제개혁 성과(70)	2-1. 규제개혁 홍보(15) 2-2. 규제개혁 효과(35) 2-3. 규제개혁 만족도(20)

※ 종합성과평가(70%)와 중점과제 성과평가(30%)를 가중평균

2 기관별 평가등급

· 직제순, 굵은 글씨는 포상 대상기관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최우수(2)	농림수산식품부	특허청
우수(5)	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관세청, 중소기업청
보통(16)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해양경찰청
미흡(5)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문화재청

③ 평가결과

총평

- (여건)대외여건의 불확실성 속에 내수시장 위축과 불투명한 경기전망으로 기업경영상의 애로 및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이를 해소·완화하기 위한 규제개선 요구 증대
- (성과)기업활성화 지원, 국민 부담 완화 분야를 중심으로 총 946건의 과제를 개선 완료
 - 수요자·현장 중심의 과제 발굴 노력을 강화하고 체감도 높은 규제개혁 과제를 이행함으로써, 사회 각계의 요구분야를 지원
 - 전문연구기관 의뢰, 여론조사, 대국민 공모 등을 통해 '12년 추진과제 1,473건 발굴
 - 완료 과제 중 경제활력 제고 및 국민부담 경감 과제가 전체의 60%를 차지
 - 규제개혁 성과 홍보 강화, 국민·기업애로 제기사항의 수용률 제고 노력 등으로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고객 만족도 상승
 -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 청취를 강화하고 피규제자별 차별화된 전략적 홍보 노력으로 국민의 이해와 지지 제고
 - 국민·기업애로 제기사항 수용률(50%)은 우수(40% 이상), 만족도 평가결과는 69.4점으로 전년대비 2.2점 상승
- (보완필요)일부부처의 경우 규제개혁과제 발굴률 제고,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및 규제영향분석 강화 필요성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속적 개선 노력 필요
 - 규제건수 대비 발굴 노력이 부족하거나, 서면심사 대체 실시 등으로 충실한 규제 품질 정비 노력이 다소 부족

분야별 평가결과

① 각 부처 규제개혁과제 발굴·정비

주요 성과

- 다양한 발굴노력을 통한 체감도 높은 과제 선정
 - 전문연구기관 의뢰, 대국민 공모 및 여론조사 실시, 민원 및 언론 보도 분석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 수요를 파악
 - 행안부 : 국민 1,550명을 대상으로 SNS, 이메일 등을 통해 설문조사('11.11~12월) 실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중점과제로 도출
 - 금융위 :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해 IBK경제연구소에 의뢰, 실태조사(3,420개 업체, 금융기관 여신 및 보증담당자 600명) 실시
 - 관세청 : 對 국민 '氣-UP 규제개혁 과제 공모전'을 추진하여 199건 발굴, 세관직원이 직접 기업을 찾아가는 '규제발굴탐사단'을 운영, 15건 발굴
 - 농식품부 : 장관 농어촌 현장 방문(81개시·군, 총 62회) 실시, 농어촌지역 145개시·군 의견수렴('12.2.2~2.10), 국민제안 및 민원 분석 실시
 - 비용절감·생산증대 효과 및 사회적 편익 등이 크거나, 수혜자 수가 많아 파급효과가 큰 과제도 상당수 선정
 - 특허청 : 전자출원시스템 개선으로 1,400만명의 서비스 이용자가 87.5억원 절감, 특허신청 수수료 인하로 약 26만명의 서비스 이용자가 연간 4.5억원 절감
 - 기재부 : 개인사업자 예정신고 의무제도 폐지로 약 63만명이 신고의무 면제
- 기업 활성화 지원·국민 부담완화 과제의 신속한 이행
 - 전체 발굴 과제 총 1,473건 중 '12.9월 현재 완료대상 과제는 총 1,122건이며, 이중 946건 이행 완료(이행률 84%)
 - 특히, 경제활력 제고(369건, 39%)와 국민부담 경감(190건, 20%)에 대한 과제가 전체 완료 과제의 60%를 차지
 - 국토부 : 공공택지 선납대금 기간이자 인정범위 확대(12월 → 14월), 특허부분 하도급으로 원도급자가 직접시공비용 미준수시 발주자 서면승낙 생략 등 건설업체 부담완화
 - 고용부 : 근로조건 자율점검제도 중복항목 개선으로 사업주 부담 경감
 - 기재부 : 건설근로자 직접 노무비 구분 지급으로 서민 생활안정·보호강화
- 취약계층에 대한 규제부담 형평성 제고
 - 영세·중소영업자에 대한 규제 기준 완화, 규제 시기 조정 등을 통해 규제를 완화·차등 적용
 - 환경부 : 중소기업 폐기물 재활용업에 대한 시설기준 완화, 소규모 고물상 폐기물처리 신고의무 제외
 - 관세청 :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관세 납기 연장 허용
 - 낙도·산간 등 취약지역의 불편해소 및 인프라 확대를 위한 규제 기준 및 절차 완화
 - 방통위 : 낙도·오지 등의 초소형지구국 개선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 복지부 : 보건진료소 설치기준 완화(인구 500인 미만 지역도 보건진료소 설치 가능)

개선·보완 필요사항

- 규제개혁과제 발굴률 제고 노력 강화 필요
 - 일부 부처는 등록 규제건수 대비 발굴 과제 건수가 10%에 미달하는 등 규제개혁 발굴 노력에 소극적
 - 전체 평균(30.2%), 지경부(7.5%), 교과부(7.9%), 공정위(8.6%) 등
 - ☞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과제를 분석·발굴하여 다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적극 선정
 -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및 규제영향분석의 내실화 도모
 - 부처 자체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율이 총리실 규제위와 비교시 낮은 수준이고, 일부 부처의 경우 대면심사 비율이 저조
 - 총리실 규제위 : 49%, 부처 자체 규제위: 27%(전년대비10%→27%, 17%p↑)
 - 외교부, 금융위 등 일부 부처의 경우 서면심사로 대체하거나, 중요규제 23건 중 21건에 대해서 원안동의
 - 일부 부처는 규제 배경과 원인, 규제대안 검토, 규제비용/편익 분석 등 중요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을 형식적으로 실시
 - '규제영향분석서 내용의 충실성'이 전체 평균 64점으로 낮은 수준
 - ☞ 주요 안건 대면회의 의무 개최,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한 체계적 안건처리, 전문기관을 활용한 규제영향분석 등 충실한 심사 실시
- ② 규제개혁에 대한 고객 만족도

주요 성과

- 규제개혁 고객만족도 상승
 - '12년도 규제개혁 만족도는 69.4점으로 전년대비 2.2점 상승

구분	일반인				전문가				내부고객				종합			
	'10년	'11년	'12년	증감	'10년	'11년	'12년	증감	'10년	'11년	'12년	증감	'10년	'11년	'12년	증감
만족도	64.8	65.0	67.6	▲2.6	70.7	72.6	73.1	▲0.5	63.9	64.1	68.7	▲4.6	66.4	67.2	69.4	▲2.2

- 다른 항목에 비해 '의미 있는 과제 포함정도'(71%)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으로 수요자 요구사항 반영 노력에 대한 성과가 가시화
- 기관별로는 보건복지부, 국세청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특히 보건복지부는 전년대비 크게 상승(미흡→우수)
- 전략적 홍보 실시로 국민 체감도·인지도 제고
 - 과제 발표 단계에서부터 보도자료 배포 및 브리핑 등을 실시하고, 우수사례는 이해관계자, 수혜집단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
 - 방통위 : 단말기 유통·개방, MVNO(알뜰폰) 번호이동성 허용 등의 과제는 이행이전부터 지하철 스크린도어, 옥외 전광판, 홍보대사 등 통해 적극 안내
 - 특허청 : 특허고객·잠재고객·외국고객으로 나누어 차별화, 지식재산권 등록제도를 직접 이용하는 특허고객에게는 PCRM(Policy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정책고객서비스)을 통해 홍보, 잠재고객에게는 SNS·블로그 활용
 - 특히, 웹툰 등 홍보 영상물 및 심벌마크 제작, SNS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하여 규제개혁 성과 체감도 향상에 기여
 - 환경부 :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에 대한 관심유발을 위해 웹툰 제작·배포, 어린이 건강지킴이 카나리아(실내공기 측정장치) 개발·보급
 - 농식품부 : 농림어업 애로해소 만화 제작·배포(농식품분야 불합리한 규제를 바꿔나가는 제로맨)

개선·보완 필요사항

- 만족도 수준의 지속적 향상 노력 필요
 - 전년대비 만족도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만족도 수준은 여전히 약간 만족 수준으로 만족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요구
 - 보통(50) - 약간 만족(66.67) - 만족(83.33) - 매우 만족(100)
 - ☞ 수요자 중심의 과제 발굴을 지속 유도하고, 이행상황 점검 및 홍보 강화 등을 통해 기 완료한 과제의 체감도 제고 노력 강화
- 적극적 소통 노력 강화 필요
 - 일부 부처는 보도자료 배포 외에는 홍보 실적이 없는 등 양방향식 대국민 소통 노력 미흡
 - 국방부, 보건처 등은 보도자료, 언론 기고 외에는 피규제자 및 수혜자 등을 대상으로 한 차별화된 홍보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
 - ☞ 제도개선 사항과 성과를 국민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주요 규제성과를 종합 정리, 정책고객별로 차별화된 홍보 적극 실시

참고

2012년 녹색성장 평가과제 목록

□ 장관급 기관 : 17개

· 국방부는 중점과제 미제출로 종합과제만 평가

부처명	과제명
기재부	① 서민·중소기업 부담 완화 지원 ② 민간기업 편의제고 및 경제활성화 기반 마련
교과부	① 유아교육 운영의 합리화와 교육·보육비 지원대상 확대 ② 교원 연수부담 및 민간의 연수원 진입규제 완화 ③ 연구자 중심의 지원제도 행정업무 간소화 ④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외교부	① 여권행정제도 선진화
법무부	① 갈등조정절차 개선을 통한 국민편의 제고 ② 저출산·고령화 대비를 위한 국적 취득 및 회복절차 개선
행안부	① 지역경제 활성화 ② 정부 인사운영 합리성 제고
문화부	① 저작물 이용 활성화 ② 소규모 영세사업자 기업환경 개선 ③ 게임의 사행화 방지 ④ 예술인 복지증진
농식품부	① 농지관련 규제합리화 ② 농축수산물의 생산·가공 및 유통 규제개선 ③ 식품 제조·표시·인증 위생기준 합리화 ④ 농업기계, 농약, 품종(종자) 등 관련 규제합리화 ⑤ 어업 제도개선 ⑥ 축산위생·방역 규제합리화로 축산 선진화 및 국민건강 증진
지경부	① 중소기업 친화적 환경조성 ②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③ R&D 환경개선 ④ 에너지 수급환경 개선
복지부	① 보건의료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제고 ②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선제적 관리 ③ 복지소외계층 지원기준 완화 ④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사회적 기반 조성
환경부	① 환경영향평가 선진화 ② 가축분뇨 관리체계 선진화 ③ 환경규제 선진화 ④ 환경규제부담 차등화
고용부	① 취약계층 고용창출을 위한 규제차등화 및 제한 완화 ②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을 위한 제한 완화 ③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규제 완화 ④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검사 및 대상 등 규제완화 ⑤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절차 간소화
여가부	① 여성·아동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국토부	① 주택건설·공급 활성화로 주택시장 정상화 ② 전월세시장 안정 및 서민주거지원 강화 ③ 교통부문 생활민원 행정시스템 일원화 추진 ④ 공항이용자의 편의제고 및 항공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⑤ 토지이용 및 규제 합리화 ⑥ 해운항만산업의 규제완화
방통위	①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편의 증대 ② 방송통신사업 경영환경 개선
공정위	① 중소기업자를 위한 공정거래 합리화
금융위	① 중소기업 금융애로 요인의 획기적 개선 ② 금융투자업 관련 자산운용의 자율성, 창의성 제고 ③ 보험산업 선진화 ④ 서민금융 애로요인 타파

□ 차관급 기관 : 11개

• 국세청, 경찰청은 중점과제 미제출로 종합과제만 평가

부처명	과제명
보훈처	보훈대상 인정기준 합리화
관세청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추진
방재청	119 구조구급체계 개선 및 수요자 중심의 화재안전기준 선진화
문화재청	문화유산의 규제정비를 통한 보존·활용 극대화
산림청	산지이용규제 완화를 통한 경기활성화
중기청	창업환경 및 경기활성화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특허청	지식재산권의 창출·활용·보호기반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
식약청	① 신개발 바이오의약품 신속한 제품화 지원 ②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 지원
해경청	수상레저활동의 저변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6. 정책홍보

1 평가개요

□ 평가 목적

- 범정부적 핵심과제에 대한 충실한 홍보계획 수립 및 기관간 협력홍보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

□ 평가대상

- 대상기관 : 41개 중앙행정기관

• 업무특성에 따라 정책기관과 집행기관으로 구분하되, 지표별로 조직특성(정원 및 홍보담당인원)에 따른 분류를 병행하여 평가의 형평성·수용성 제고

구분	기관명
정책기관 (21개 장관급)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업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집행기관 (20개 차관급)	법제처, 국가보훈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대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평가방법

-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민·관 합동 정책홍보 평가단」 운영
 - 35명(공무원 17명, 민간전문가 18명)
- 평가단이 각 부처에서 제출한 실적자료를 토대로 평가지표의 특성에 따라 정량·정성평가 실시
- 부처별 정책홍보 추진 성과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국민 소통 활성화 및 평가결과의 객관성 확보

□ 평가지표

- 기획협력(10) : 주요 정책과제 홍보계획의 충실성(10)
- 소통활동(48) : 범정부적 협력 홍보 충실성(5), SNS 등 온라인 소통(20), 정부매체 활용 실적(8), 주요정책 온/오프라인 오모대응(10), 외신대상 홍보활동 실적(5)
- 성과확산(42) : 주요정책 기획홍보를 통한 우수사례 도출 실적(20), 정책 브랜딩에 대한 국민평가(5), 정책성과백서 등 정책기록(7), 기관장 홍보활동(10)

② 기관별 평가등급

* 굵은 글씨는 포상 대상기관, 직제순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최우수(2)	고용노동부	경찰청
우수(12)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국민권익위원회	산림청, 관세청, 통계청, 소방방재청,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보통(23)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가보훈처, 국제청, 조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문화재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미흡(4)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처, 대검찰청

③ 평가결과

총평

- (여건)국민의 관심영역 확장, 뉴미디어의 등장 등으로 기존의 획일적인 홍보로는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매체별·세대별 눈높이에 맞춘 차별화된 홍보방식 필요
- (성과) '대국민 정책소통 강화'라는 법정부 홍보기조 하에서 핵심 정책성과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 전개
 - 고졸시대·학교폭력 대책·녹색성장 등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부처간 유기적인 협력홍보 활동이 활성화
 - 해안보정상회의·여수세계박람회·런던올림픽 등 주요 계기를 활용한 법정부적 사전 홍보기획 및 다양한 홍보활동이 돋보임
 - (뉴미디어 소통활성화) 뉴미디어 홍보의 경우 스마트 미디어 확산으로 기존의 SNS 홍보수단 외에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 및 모바일 웹을 정책홍보에 활용, 환경변화에 대응한 적극적 소통활동 강화
 - 모바일에 적합한 플랫폼과 내용을 함께 개발, 카카오톡 활용, 마이피플 오픈채널 운영 등 스마트 미디어의 특징인 실시간성·현장성을 소통활동에 적극 반영
 - (홍보역량 향상) 부처의 주요 정책에 대한 기획홍보 역량이 꾸준히 향상, 기관장 중심의 창의적·능동적 대국민 소통이 정책 인지도 제고에 기여
 - 빈기별 정책홍보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을 통해 각 부처의 정책홍보 기획역량과 전문성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평가
 - 2040 타깃으로 한 국가 "멋진 사나이"(국방부), FTA에 대비한 「우리 임산물 소비 촉진」(산림청), 금융위원장과 함께하는 1박2일 서민금융현장 속으로(금융위), 「청년창업 스토리」스물셋 청춘, 새로운 날개가 돋다(중기청) 등
 - (보완필요) 주요정책·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민간 홍보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 정형화된 홍보기법을 지양하고 대내외 의견수렴 창구로 활용하는 등 정책별 특화된 콘텐츠 개발 노력 필요
 - 방사선 안전 심포지움 관련(원안위), 검찰업무소개 교육자료 개발을 통한 검찰 홍보 관련(대검찰청) 등

분야별 평가결과

1. 기획·협력

① 주요 정책과제 홍보계획의 충실성

주요 성과

- 문화부·고용부·농진청 등은 주요정책 홍보계획 수립시 상황분석과 선제적 홍보계획 등 단계별 프로그램을 충실하게 구성, 홍보효과 극대화에 기여
 - "해안보 정상회의", "런던 올림픽",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경우 정확한 홍보여건 분석 및 다류 제작, 응원가 확산, 업종별 협의체와 MOU 체결, 주요포털(네이버, 다음)과 연계한 다양한 홍보방안 제시(문화부, 고용부 등)
 -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의 경우 홍보여건 분석 및 홍보전략에 따른 프로그램이 일관성 있게 제시(농진청)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정책 홍보목표와 전략 간에 구체화된 연계성이 약하고, 홍보기획 과정에서 부처협력 부분이나 명확한 역할 분담 부족
 - “차기 전투기(F-X) 사업” 등 주요 대형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시 체계적인 사전 홍보전략 수립 및 SNS를 활용한 홍보활동이 다소 미흡(방사청)
 - “물놀이 안전대책 홍보”의 경우 상황별 홍보타겟과 프로그램의 구체성이 약하고, 매년 비슷한 홍보전략으로 정형화 되어있음(해경청)

II. 소통 활동

① 법정부처 협력 홍보 충실성

주요 성과

- 지경부·여성부·방재청 등은 주요 정책발표 및 홍보일정 공유를 위한 ‘월간홍보계획’ 수립시, 주요 발표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작성, 범부처 홍보계획 연계에 적극 협조
 - “동계전력수급 대책회의”, “국민발전소 건설 주간” 등(지경부),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 성과 및 계획” 등(여성부), “황사피해 방지대책” 등(방재청)은 월간홍보계획을 매월누락 없이 전회 제출하여 부처 간 정책 공유도를 높임
- 고용부·국토부·산림청 등은 월별로 발생 가능한 예상·반복·주요 계기 이슈에 대해 선제적 소통활동을 기획
 - “한국 잡월드(JOB WORLD) 개관 등(고용부)”, “자전거 대축전” 등(행안부), “4대강 이용 활성화”, “여수세계박람회” 등(국토부), “산사태 발생 및 대응” 등(산림청)은 관련 부처간 협조 하에 시의성 있는 홍보활동 이행
 - 4대강 수변 “한강문화 개관식”, “자전거 관광상품”, “녹색자전거 열차”, “달성보 문화장터 개장식 등 지역문화축제 활성화로 국민 공감도 및 이해도 제고에 기여

개선·보완 필요사항

- 주요 정책발표 시 유관부처와의 협력홍보 강화 필요
 - “아시아법제포럼 개최” 홍보를 상반기 동안 계획하였으나, 단순기고 및 전광판 광고에 그쳐 대국민 인지도 미흡(법제처)

② SNS 등 온라인 소통

주요 성과

- 교과부·농식품부·중기청 등 정부부처의 SNS 등 온라인 소통에 대한 인식과 이해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수요자 중심 맞춤형 홍보로 어려운 이슈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도 제고에 기여
 - 다양한 오프라인 매체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홍보효과 극대화
 - 소셜기부(사회공헌활동) 등을 통해 정책의 공익성과 시민참여를 견인, SNS 등 뉴미디어를 다양한 오프라인 매체와 연계하여 적극적 정책홍보(교과부, 농림부 등)
 - 고객참여 뮤직비디오 “시장 스타일” 제작·배포, 정책정보 동영상 제작 등 공감형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새롭고 다양한 홍보기법으로 활용(중기청)
 - 일시적·1회성 이벤트 중심의 정책홍보에서 상시적·지속적 소통활동으로 전환,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
 - 고용부·환경부·중기청 등 일부기관은 스마트 미디어 사용자 증가로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마이피플) 등 스마트 앱을 활용한 새로운 정책홍보 방식을 도입
 - 모바일에 적합한 플랫폼과 내용을 함께 개발(UCC·웹툰, 카카오톡 활용 및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월급쟁이수다, 노동법 365 등) 홍보전개(고용부, 환경부 등)
 - “마이피플 오픈채널 운영”으로 정부 부처 처음으로 스마트폰 메신저로 정책고객에게 최신 정보제공(중기청)

개선·보완 필요사항

- 부처별로 온라인 소통 활용실적 및 수준차이가 크고, 쌍방향적 의사소통보다는 일방적 정보전달에 치중
 -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외에 다양하고 참신한 SNS 매체나 소셜융합 서비스 활용 필요
 - 기관장의 동재 알림, 기관장 에세이 연재 등에만 의존하여 다양한 홍보방식 활용전략 다소 미흡(석약청 등)

③ 온·오프라인 오보 대응

주요 성과

- 외교부·문화부 등은 부정확한 정보가 확산되기 전에 적극적인 정보제공 및 지속적 모니터링으로 선제적·체계적 오보 대응 활성화 및 정책 신뢰성 제고에 기여
 - 민감한 이슈를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언론보도 이후 타매체로 이슈 확산 방지
 - “독도”관련 오보 확산 방지 및 사실 전달을 위해 기자들에게 즉각 문자공지 및 백그라운드 미팅(외교부)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공사현장 화재” 관련 왜곡보도 확산방지를 위해 원인조사 및 중앙사고수습지원본부 설치 등 처리 사항을 언론에 적극 공개(문화부)

개선·보완 필요사항

- 잘못된 사실관계 및 오보·왜곡보도 등 대응이 필요한 이슈에 대해 소극적 대응으로 정정보도, 긍정적 후속보도, 타 매체 확산 방지 등의 성과가 부족
 - “기초연구 하나까? 年 1조 주고나면 끝?”(교과부)/ “수해복구 왜 늦나 했더니...작년 예산을 올 4월에야 집행”(방재청)/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 늦어져”(법제처) 등 비판적 보도에 대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효과적 대응이 부족

III. 성과 확산

① 주요정책 기획홍보를 통한 우수사례 도출

주요 성과

- 고용부·권익위·경찰청 등은 치밀한 환경분석 및 충실한 기획, 홍보환경에 맞는 다양한 홍보수단 선택, 창의적 홍보기법 개발 등 참신한 아이디어와 다양한 홍보기법을 적극 활용
 - 정책 입안 초기부터 정책과 홍보의 결합을 통해 정책효과 제고
 - “몰라서 혜택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취업성공패키지 & 내일희망 찾기 사업」그물망 홍보”의 경우 핵심 메시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기조와 스토리 텔링 등 프로그램 실행이 우수(고용부)
 - “5대 폭력 척결활동 홍보”를 통해 폭력에 대한 인식전환 및 언론보도 관점전환 등 국민적 관심 유도에 기여(경찰청)

개선·보완 필요사항

- 일반적이고 정형화된 홍보에 치중하는 등 참신하고 전략적인 홍보기획 부족
 -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홍보기법 및 콘텐츠 개발 등 대내외 의견수렴 창구로 활용 필요
 - “알뜰폰(MVNO 서비스)”, “방사선 안전 심포지엄”의 경우 공모전, 홍보대사 위촉, 온라인 홈페이지 게재 등 정형화된 홍보기법으로 참신성 부족(방통위, 원안위)
 - “검찰업무소개 교육자료 개발을 통한 검찰 홍보”의 경우 실제 홍보활동을 통해 얻어낸 성과가 아닌 ‘계획’을 기술하는 수준에 그침(대검찰청)

② 정책브랜드 홍보

주요 성과

- 각 부처의 대표 정책(60개)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선호도는 보통이상 수준(2.74점, 5점 만점)
 - 정책별로는 감기약 등 편의점판매(복지부), 디지털 방송전환(방통위), 보금자리주택(국토부) 순으로 국민 인지도·선호도에서 우수
 - ☞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생활공감형 정책이나, 국민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방향의 정책이 상대적으로 인지도·선호도가 높은 경향

개선·보완 필요사항

- 보비스(찾아가는 보훈복지서비스), 0404 등 일부 정책 브랜드의 경우 국민 선호도·인지도가 낮아 개선 필요
 - ☞ 정책의 브랜드만 봐도 정책의 비전과 가치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략적이고 독창적인 네이밍 구현 필요

③ 기관장 홍보활동

주요 성과

- 41개 부처 기관장이 총 6,014건의 방송출연, 인터뷰, 정책설명회, 강연회 등 활발한 홍보활동 전개

《활동유형별 기관장 홍보실적》

구분	방송출연	인터뷰	기고	정책설명회	강연회	간담회	계
'12년	474	844	409	1,698	1,383	1,206	6,014
'11년	239	467	207	981	400	543	2,837

• 기관장 홍보 실적이 전년 대비 47.1% 증가

- 지경부·통계청·관세청 등은 기관장의 다양한 매체활용 소통활동과 함께 SNS 등 뉴미디어를 통해 국민과의 직접소통 노력도 활발히 전개
 - 기관장의 캐리커처 개발 및 자필편지 형식 등 친근한 소통활동(지경부)
 - SNS 및 블로그에 통계에 관한 글을 시리즈로 연재(통계청)
 - FTA를 활용한 수출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관장과의 연계딜레이 홍보가 참신(관세청)
- 교과부·국토부·행안부·금융위 등은 기관장의 현장소통 계획을 전략적으로 기획, 다양한 현장 프로그램 운영으로 정책 공감대 확산에 기여
 - “학교폭력 현장소통 프로젝트 ‘필통-톡(talk)’”(교과부), “국민 행복을 위한 서민주거해결사”(국토부), “찾아가고 싶은 자전거길”(행안부), “금융위원장과 함께하는 1박2일 서민금융현장 속으로”(금융위)

개선·보완 필요사항

- 일부 기관장의 경우 1회성 이벤트 및 제한된 정책고객을 타깃으로 하는 현장소통으로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확산 미흡
 - 정책홍보 관련 인터뷰·기고·현장소통 등 일반적인 홍보활동을 다양한 매체와 연계하는 홍보기획 부족

향후과제

- 맞춤형 홍보전략 수립으로 대국민 정책소통 강화 필요
 - 부처별 정책과 고객 특성을 고려한 홍보계획을 수립, 정부정책에 대한 대국민 이해와 공감도 제고
 - 특히, 민간전문가 등이 포함된 협의체를 홍보기획 단계부터 내실있게 활용함으로써 다양하고 참신한 홍보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정책단계별·수요자별 특화된 홍보매체 및 메시지를 설정하고 홍보콘텐츠도 차별화하여 홍보 효과 극대화 도모
 - 부처별 역할분담 및 협력홍보를 통해 효과적인 정책홍보를 추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국민 공감 확산
- 정책홍보 환경 변화에 따른 홍보기법 다양화 노력
 - 트렌드에 따른 친편일률적인 뉴미디어 활용 보다는 각 부처 또는 정책 특성에 따른 전략적 뉴미디어 활용 방안 모색 필요
 -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활용에 있어 각 매체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매체별 특성에 따른 차별적 활용
 - 모바일 앱의 경우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발하고, 유관부처 공동개발 등 전략적 협조 방안 모색
 - 기관별 홍보 노하우나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논의의 장 활성화 및 시스템 강화

7. 국민(정책·민원) 만족도

1 평가개요

□ 평가 목적

- (정책만족도)국민이 직접 평가한 주요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고객 위주의 정책 추진 도모
- (민원만족도)중앙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대국민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유도

□ 평가대상기관(41개)

구분	기관명(직제순)
부 단위 기관(21)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청 단위 기관(20)	법제처, 국가보훈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대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해양경찰청

□ 평가방법

- 설문조사는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한국행정연구원(민간 전문조사기관)에 위탁 실시
- 각 설문항목에 대하여 응답자의 만족도를 11점 리커트 척도에 따라 응답케 하고, 그 결과를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



□ 조사표본 및 평가대상기간

- 정책만족도 : 핵심과제 98개(부단위 3, 청단위 2)

조사대상	모집단	표본	대상기간
일반국민	전국의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제주도 및 도서지방 제외)	총 3,900명(13개 책형×300명)	'12.1.1~'9.30
전문가	기관별 ① 자체평가위원, ② 정책고객(PCRM DB)중 교수·연구원, ③ 자문위원, ④ 관련분야 전공 교수와 학회·연구단체 종사자	총 1,800명(40개 기관×45명)	

○ 민원만족도

구분	모집단	표본	대상기간
일반민원	중앙행정기관 본청 및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민원접수대장에 기록된 민원인(방문·서신·전화)	일반민원 및 인터넷민원 모집단 구성 비율에 비례하여 각 기관별로 표본(250명 기본, 최대 450명)을 추출하여 총 25,136명 대상으로 조사	'11.10.1~'12.8.31
인터넷민원	국민신문고, 중앙행정기관 본청 및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신청한 민원인		

□ 평가항목

○ 정책만족도

평가항목	평가지표(세부 설문내용)
항목만족도	• 수립·집행과정의 민주성, 정책내용의 적정성, 추진과정의 대응성, 정책 효과성
체감만족도	• 해당정책 전반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총체적 만족도

○ 민원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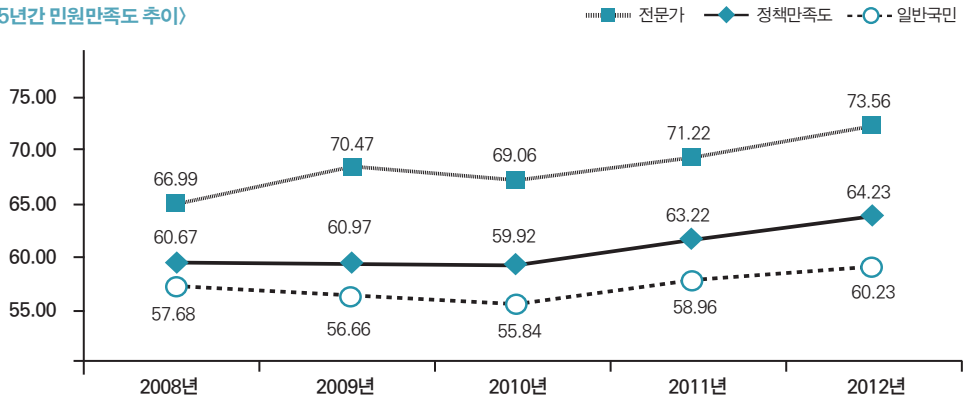
평가항목	평가지표(세부 설문내용)
항목만족도	• 민원신청의 접근성, 민원처리의 신속성, 처리과정의 대응성, 민원처리 결과의 공정성
체감만족도	• 해당정책 전반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총체적 만족도

2 정책만족도 평가 결과

총 평

- 2012년도 41개 중앙행정기관(98개 핵심과제) 정책만족도 평균은 64.23점으로, 전년(63.22점) 대비 1.01점 상승
 - 부 단위 기관 평균은 63.25점(전년 대비 1.44점 상승), 청 단위 기관 평균은 65.26점(전년 대비 0.7점 상승)
 - 청 단위 기관의 정책만족도 수준이 부 단위 기관에 비해 2.01점 높음
- 전년 대비 일반국민과 전문가의 만족도가 모두 상승하였으며, '10년 이후 정책만족도 평균이 지속 상승세'
 - ('08)60.67 → ('09)60.97 → ('10)59.92 → ('11)63.22 → ('12)64.23점
 - 일반국민 만족도는 60.23점(전년 대비 1.27점 상승), 전문가 만족도는 73.56점(전년 대비 2.34점 상승)

〈최근 5년간 민원만족도 추이〉



기관별 평가 결과

부 단위 기관

- 부 단위 21개 기관(60개 핵심과제) 정책만족도 평균은 63.25점
 -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여성가족부 등이 높은 정책만족도를 보임
 - 방송통신위원회는 '품격 높은 방송 구현 및 미디어 경쟁력 제고', '스마트 생태계 조성 및 네트워크 고도화' 과제에서 높게 평가
 -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우 '권익보호 구제 확대로 억울함이 없는 사회구현', 여성가족부는 '건강한 청소년 성장을 위한 지원강화' 과제에서 높은 만족도

〈정책만족도 부 단위 기관 평가결과〉

평가결과	기관명(직제순)
우수(6)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보통(15)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금융위원회

청 단위 기관

- 청 단위 20개 기관(38개 핵심과제) 정책만족도 평균은 65.26점
 - 산림청, 기상청, 병무청 등이 높은 정책만족도를 보임
 - 산림청은 '산림자원 육성 및 산림재해의 적기 대응', '산림휴양서비스 증진 및 목재산업 육성' 과제에서 높게 평가
 - 기상청은 '위험기상 사전 대응 및 기상서비스 강화', 병무청은 '보충역 복무제도의 합리적 운영' 등의 과제에서 높은 만족도

〈정책만족도 청 단위 기관 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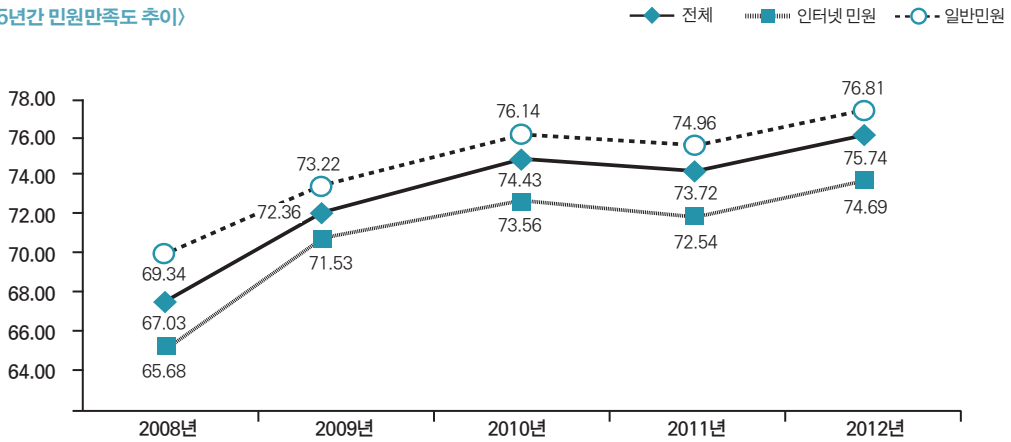
평가결과	기관명(직제순)
우수(6)	법제처, 병무청, 소방방재청, 산림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보통(14)	국가보훈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대검찰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③ 민원만족도 평가 결과

총 평

- 2012년도 40개^{*} 중앙행정기관의 민원만족도 평균은 75.74점으로, 전년(73.72점) 대비 2.02점 상승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모집단(65) 및 표본(27)이 과소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
 - 부 단위 기관 평균은 72.21점(전년 대비 3.37점 상승), 청 단위 기관 평균은 78.95점(전년 대비 1.27점 상승)
 - 청 단위 기관의 만족도 수준이 부 단위 기관에 비해 6.74점 높음
- 전년 대비 일반민원과 인터넷민원 만족도가 모두 상승하였으며, '11년의 소폭 하락 이후 상승세로 반전'
 - ('08)67.03 → ('09)72.36 → ('10)74.43 → ('11)73.72 → ('12)75.74점
 - 일반민원 만족도는 76.81점(전년 대비 1.85점 상승), 인터넷민원 만족도는 74.69점(전년 대비 2.15점 상승)

〈최근 5년간 민원만족도 추이〉



기관별 평가 결과

부 단위 기관

- 부 단위 20개 기관의 민원만족도 평균은 72.21점
 -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부 등이 높은 만족도를 보임
 -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반민원과 인터넷민원의 '대응성', '접근성' 등의 항목에서 높게 평가
 - 고충민원 사전검토제 및 표준서비스제 도입('12.2), 만족도 결과의 민원담당자 성과평가와의 연계 등 민원행정 개선노력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
 - 법무부는 일반민원의 '공정성', '신속성' 등에서 높게 평가
 - 전화응대 표준매뉴얼 배포('12.4), 민원 우수답변자 포상(분기별 4명) 등 민원행정 개선노력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

<민원만족도 부 단위 기관 평가결과>

평가결과	기관명(직제순)
우수(6)	통일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보통(14)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물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청 단위 기관

- 청 단위 20개 기관의 민원만족도 평균은 78.95점
 - 해양경찰청, 병무청 등이 높은 만족도를 보임
 - 해양경찰청은 '대응성', '공정성' 등의 항목에서 높게 평가
 -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12.10), 화상 수화 통역서비스 및 장애인·고령자 구술민원 신청제('12.8) 등 민원인과 취약계층의 편의를 위한 지속적 민원행정 개선노력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
 - 병무청은 '대응성', '신속성' 등의 항목에서 높게 평가
 - '고객의 소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11.2) 및 불만고객 집중관리시스템 운영 등 민원행정 개선노력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

<민원만족도 청 단위 기관 평가결과>

평가결과	기관명(직제순)
우수(6)	관세청, 병무청, 소방방재청, 중소기업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보통(14)	법제처, 국가보훈처, 국세청, 조달청, 통계청, 대검찰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Ⅲ. 향후 추진계획

- 평가결과 환류 및 정책 개선
 - 평가결과 종합 및 각 과제별·기관별 평가보고서를 부처에 환류하여 2013년 업무계획에 반영하는 등 정책개선에 활용
 - 「2013년 업무계획 작성지침」에 2012년 평가결과를 2013년 업무계획에 반영토록 조치
 - 평가결과 우수사례는 각 부처에 전파하여 상호 학습 및 벤치마킹을 통해 정책의 품질 제고
 - 미흡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별로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추진
 - 미흡사례는 내년도 정부업무평가시 우선 점검하고, 심층분석이 필요한 과제는 총리실에서 정책현안과제로 선정, 개선방안 마련
- 평가결과 우수기관 포상
 - 평가결과 부문별로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포상금 지급
 - 평가 우수기관 유공자에 대한 포상 병행
- 평가방법 발전방안 마련
 - 평가과정·결과에 대한 피평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도 평가계획 수립·운영시 반영
 - 평가대상 수준 및 범위, 평정결과와 공정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
 - ※ 정부업무평가위원·정책분석평가실 워크숍시(12.13~14) 개선방안 토론

2012 정부업무평가 백서

1판 1쇄 인쇄 2012년 12월

1판 1쇄 발행 2012년 12월

발행기관 국무총리실 정책분석평가실

주 소 339-7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 정부세종청사

전화번호 044-200-2470

팩스번호 044-200-2481

기획·편집 동아 E&D

